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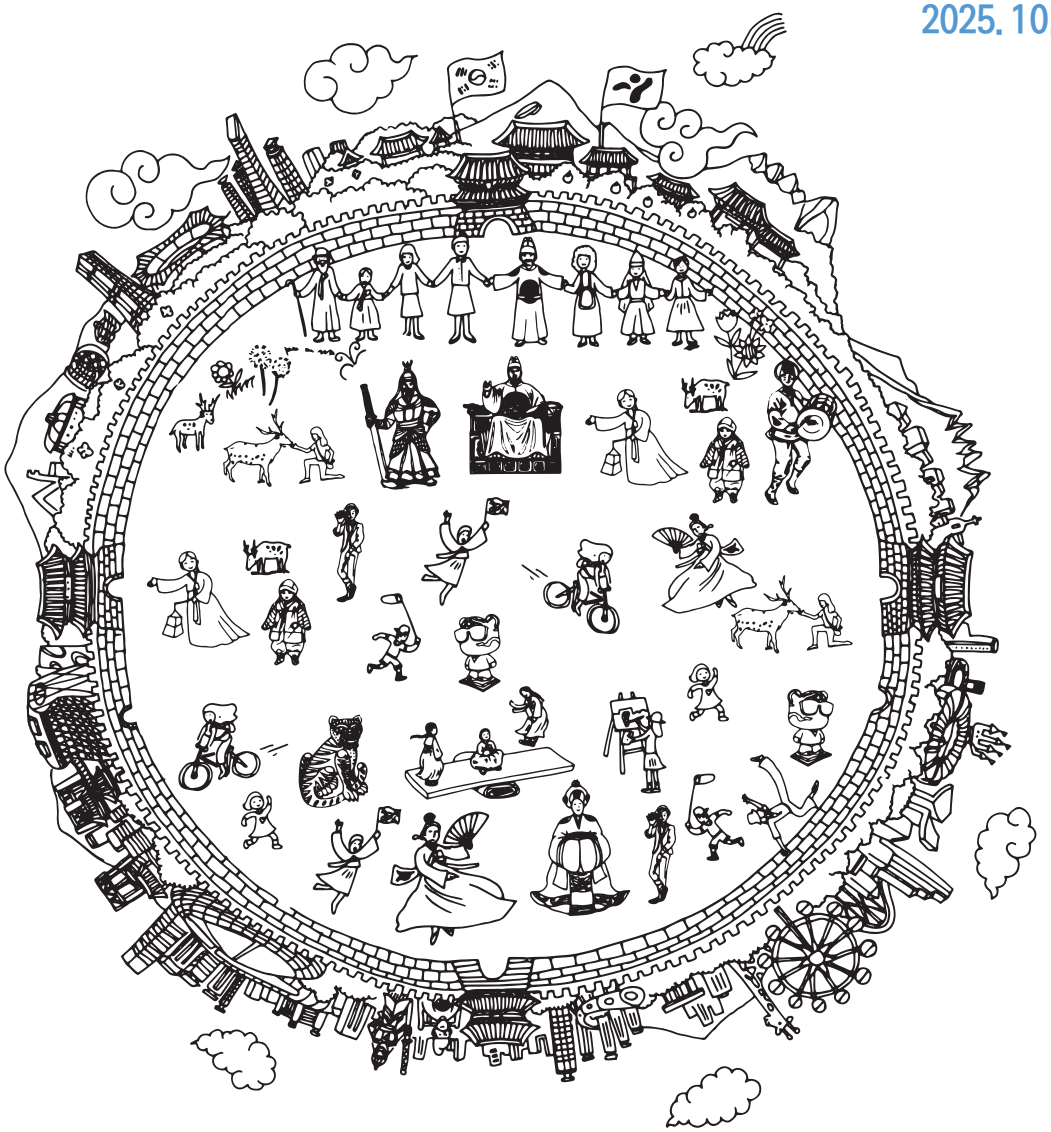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4097호

2025. 10. 2.(목)



서울특별시

목 차

◈ 자치법규 등

[조 례]

제978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 ····· 5
제978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 8
제979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0
제9791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2
제979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14
제9793호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 16
제979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8
제9795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0
제9796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 22
제9797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 29

[입법예고]

제2025-2823호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32

[행정예고]

제2025-2831호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공고안 행정예고 ····· 44

◈ 고 시

제2025-487호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고시 ····· 300
제2025-54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청계천) ····· 302
제2025-543호 강북구 수유동 47-52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지구계획 승인(변경)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 303
제2025-547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소음영향지역 지정 수정 고시 ····· 309
제2025-548호 목4동 728-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554
제2025-549호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연장 통지 ····· 569
제2025-55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570

제2025-551호 본동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574
제2025-552호 천호 · 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천호 · 성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 603
제2025-553호 가락우창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673
제2025-554호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연장 통지 ····· 694
제2025-555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 695
제2025-556호 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압구정 5구역(한양1,2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5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698
제2025-558호 도시관리계획[대림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BYC) 세부개발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768
제2025-559호 서초구 양재동 1-26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변경) 고시 ····· 781
제2025-560호 서초구 양재동 1-26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변경) 고시 ····· 785
제2025-561호 방학신동아1단지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786

◈ 공 고

제2025-2792호 종합건설사업자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 820
제2025-2793호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 821
제2025-2802호 국가유산수리업등 신규 등록 공고 ····· 822
제2025-2809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823
제2025-2810호 반환기간 경과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 824
제2025-2811호 도시관리계획(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특별계획구역⑧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 826
제2025-2813호 종합공사시공업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 841
제2025-2815호 반환기한 경과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 842
제2025-2817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843
제2025-2821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852
제2025-2828호 도시관리계획(경희궁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공고 ····· 854
제2025-2836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855
제2025-2838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청문조서 열람 · 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 874
제2025-2839호 중도매업 허가취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876
제2025-2842호 종합건설사업자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 877

제2025-2844호 반환기한 5년 이상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공시송달 공고 ····· 878
제2025-284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방수설비, 하수도, 공원) 결정(안) 열람공고 ····· 880
제2025-2846호 「2040 서울 공업지역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공고 ····· 884
제2025-2864호 공유재산 변상금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886

◈ 구 고 시

제2025-151호 도시관리계획(부암동 지구단위계획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종로구) ····· 887
제2025-15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성북구) ····· 890
제2025-132호 도시계획시설(백련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서대문구) ····· 893
제2025-161호 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고시(마포구) ····· 895
제2025-163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변경) 고시(마포구) ····· 896
제2025-8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강서구) ····· 897
제2025-176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주차장) 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서초구) ····· 903

◈ 구 공 고

제2025-1338호 익선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 건축물 불허용도에 관한 결정(변경)-(종로구) ····· 905
제2025-1295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안) 열람공고(용산구) ····· 907
제2025-1306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안) 열람공고(용산구) ····· 916
제2025-1125호 도시관리계획(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국립서울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광진구) ····· 926
제2025-1310호 도시관리계획(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강북구) ····· 933
제2025-1653호 불광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열람 공고(은평구) ····· 935
제2025-1707호 도시관리계획(개봉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 공고 - 구로구 개봉동 170-33일원 개봉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구로구) ····· 948
제2025-1713호 온수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구로구) ····· 952
제2025-1719호 도시관리계획[동작구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재정비)] 결정 (변경)(안) 열람공고(동작구) ····· 954
제2025-1736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을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동작구)취 공고 ····· 955
제2025-1852호 도시계획시설(관악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안) 열람공고 (관악구) ····· 959

제2025-1912호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공사완료 공고(서초구) ····· 976

◈ 사업소고시

제2025-41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977

◈ 사업소공고

제2025-412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미래한강본부) ····· 978
제2025-413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수시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미래한강본부) ····· 980
제2025-28호 한성백제박물관 2025년 자료 공개 구입 공고(한성백제박물관) ····· 993

◈ 정 정

제2025-557호 도시관리계획(강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 995

자치법규 등

[조 례]

◈ 서울특별시조례 제978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인
2025년 10월 2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교육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격차를 완화하며, 학생에게 균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도서구입비"란 학생이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참고서, 전자책 등 도서를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교육감은 학생의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습과 관련된 도서 및 자료가 모든 학생에게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5조(도서구입비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경감하고 학습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도서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서구입비는 저소득층 학생, 취약계층 학생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도서구입비의 지원 범위, 절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절차) ① 도서구입비의 지원을 받으려는 학생은 교육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지원 절차 및 서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환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구입비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범위 밖의 품목에 사용한 경우

②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도서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③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8조(예산 확보 및 관리) ① 교육감은 도서구입비 지원을 위한 예산을 매년 책정하고,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예산의 사용은 투명하게 관리되며, 지원 대상과 범위, 지원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매년 공개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의 도서구입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도서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격차를 완화하며,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의 형평성과 공공성을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생의 도서구입비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제3조)

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구입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4조 및 제5조)

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학생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도록 함(제5조 및 제6조)

라.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7조)

마.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함(제8조)

바. 도서구입비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제9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78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인
2025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

제9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장애정도, 학교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교원을 둘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적합한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시 내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인 장애학생의 권리 신장 및 차별을 해소하고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차원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인 장애학생의 문화예술활동 등에 해당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특수교육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항 규정 (제4조)

나. 통합교육 지원에 대한 상위법 근거하여 특수교육 교원 및 인력 채용에 대한 조항 신설 (제9조의3)

◈ 서울특별시조례 제979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인
2025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운영 등”을 “운영, 남녀공학으로의 전환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이란 단성(單性) 학교를 남녀공학 학교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제1항 중 “필요할 경우 학교를 통폐합, 이전재배치 하거나 통합운영학교”를 “필요한 경우 통폐합, 이전재배치, 통합운영학교 운영, 남녀공학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 적정규모학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시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교의 적정규모화, 이른바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남녀공학 전환학교 지원사업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을 추가함(제2조제2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791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인
2025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학교에 66제곱미터 이상의 여유 교실이나 공간이 없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특수학급은 66㎡ 이상의 교실에 설치하여야 하나,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 44㎡ 이상의 교실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나. 그러나 현행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기준이나 예외 규정이 없어, 학교 현장에서 시행령의 취지를 반영한 유연한 특수학급 설치에 어려움이 있음.

다. 서울 관내 학교의 특수학급 수용 여건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교실 면적 부족은 특수학급 확충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분석됨에 따라 66㎡ 이상 교실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도 교육감의 판단에 따라 44㎡ 이상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66㎡ 이상의 여유 교실이 없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44㎡ 이상의 교실에도 설치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함(제5조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79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인
2025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를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설치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위원회 설치 근거와 서울특별시의 위원회 설치 근거가 다른 바 관련 조례가 동일한 내용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위원회 설치 근거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각 호는 삭제함(제3조의2제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793호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인
2025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 4차 산업혁명 융합 기반 기술을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역기능 예방 교육 등 방지 대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생성형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학습격차 심화, 기술의존에 따른 기초학력 저하, 윤리·사회성 약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나. 이에 교육감이 교육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역기능을 예방·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균형 잡힌 환경에서 미래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로 4차 산업혁명 교육 시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3조제2항)

나. 기본계획에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역기능 예방 교육 등 방지 대책이 포함되도록 함(제4조제2항제6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79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인
2025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감은 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사업 중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업무를 학생 정신건강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업무를 정신건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기존에는 용역계약 방식으로 운영되어 학기 초 지원 공백과 행정 절차의 비효율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개선하여 학생 지원의 안정성과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 사업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정신건강 전문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신설(제7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795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인
2025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가목 중 “학교”를 “전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학교”로 하고, 같은항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100분의 40 감면

가. 전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학교가 소재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과 근무하는 기관 또는 영업소(지점을 포함한다), 재학하는 학교의 소재지가 해당 자치구에 있는 자로 구성된 단체가 평생교육활동이나 생활체육활동을 위해 6개월 이상 장기 사용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학교 시설을 이용한 주민의 생활체육, 평생교육 목적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생활권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용료 감면이 전개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이나 생활체육활동을 위해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가 소재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50%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의 경우에 사용료의 100분의 60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제9조제1항제2호 가목)

나. 전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학교가 소재한 자치구의 주민과 근무하는 기관 또는 영업소 등의 소재지가 해당 자치구에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가 평생교육이나 생활체육을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장기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40을 감면함(제9조제1항제4호 가목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796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인
2025년 10월 2일

제1조(「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제2호가목 중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제12조제2항"을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법 제7조제4항"을 "법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제16조의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제17조의"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을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4조 중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제7조"를 "제8조"로 한다.

제9조 전단 중 "제5조부터 제6조"를 "제6조부터 제7조"로, "제7조"를 "제8조"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6조”를 “제7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7조”를 “제8조”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제3조”를 “제6조”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2조”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제7조제1항제3호”를 “제8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7항제6호 중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제9조 중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

2항제6호”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중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각각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교육청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제2조제2호”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제2조제2호”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별지4호”를 “별지제4호”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시”를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제24조(「서울특별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제25조(「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제26조(「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제27조(「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28조(「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도로교통공단

제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9조(「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0조(「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제2조”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제2조”로 한다.

제31조(「서울특별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제3조”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제3조”로 한다.

제32조(「서울특별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제2조제2호”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제2조제2호”로 한다.

제33조(「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로 한다.

제34조(「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를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10조제1항”을 “법 제10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2호마목 중 “같은 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129조”로 한다.

제46조 중 “제14조제6항”을 “제14조제8항”으로 한다..

제35조(「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을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7조(「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8조(「서울특별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을 “서울특별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으로 한다.

제39조(「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교육감”을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 한다.

제40조(「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41조(「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위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42조(「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22조2제4항”을 “법 제22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43조(「서울특별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제1항의 제1항의 적극행정”을 “제1항의 적극행정”으로 한다.

제44조(「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교육자치법」 제32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현행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의 일부가 상위 법령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시행 2025.5.15.][서울특별시조례 제9585호, 2025.5.15., 일괄개정] 등 자치법규의 제·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거나,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및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용어와 문구가 있어,

나. 5년 이상 개정이 없던 장기 미정비 조례 등을 포함하여 관련 조례를 일괄적으로 개선·정비하여 관련 법령의 내용과 일치시키고, 용어와 문구 등을 알맞게 수정하여 교육 수요자와 시민이 조례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등 인용 조문 개정 사항 반영을 통한 정합성 확보(제1조~제9조)

나. 조례의 제명 개정사항 반영(제10조~제37조)

다.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 명칭 개정 사항 반영(제38조)

라.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및 어문규정에 따라 용어와 문구를 알맞게 수정(제39조~제44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797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인
2025년 10월 2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원이 인공지능사회에서 필수적인 자질을 갖추고 인간의 존엄성에 바탕을 둔 윤리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3조제1호의 인공지능을 말한다.
2. “인공지능 교육”이란 인공지능사회에서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에 대한 학습을 통해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갖추고 인공지능윤리를 준수하도록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시민의 권익과 생명·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공지능 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역 특성이나 학교 여건, 학생 개개인의 적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인공지능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소속 학교의 학생에게 양질의 인공지능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교육감은 체계적인 인공지능 교육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교육 지원 기본 방향 및 목표
2. 인공지능 교육 지원 전략 및 세부 과제
3. 학교급별 맞춤형 인공지능 교육과정 연계 방안
4. 인공지능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5. 인공지능 활용 능력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실시
6.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및 사례발굴
7. 인공지능 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敎具) 지원
8. 그 밖에 교육감이 인공지능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

흥 조례」 제4조에 따른 4차 산업혁명 교육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선도학교 등의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체계적인 인공지능 교육 지원을 위하여 선도학교 및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인공지능 교육 지원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선도학교 및 연구학교를 대상으로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선도학교 및 연구학교의 지정·운영 방법 및 절차, 평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실시) ① 교육감은 수요자 중심의 인공지능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교육 현황 및 만족도, 인공지능윤리 준수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맞춤형 인공지능 교육의 운영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교육·연수의 실시) 교육감은 인공지능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장,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에 필요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인공지능 학습 문화 조성) ① 학교장은 인공지능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학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교육과 학습공동체 및 동아리 활동을 연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인공지능 학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성과를 낸 개인, 단체 등 사례를 발굴하고 우수사례 확산에 필요한 캠페인, 행사 개최, 홍보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인공지능윤리 지침) 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이 교육적 목적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침을 수립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사람의 생명, 신체적·정신적 건강, 재산, 권리 등 보호
2.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3. 허위 조작 정보 등 생성 및 유포 방지
4. 명예훼손 및 혐오 표현 방지
5.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과도한 의존 및 오남용 방지
6. 그 밖에 교육감이 인공지능윤리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표창) 교육감은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인공지능 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교,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가.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확산에 따라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 윤리의식이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강조되고 있으나, 현행 교육과정만으로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임.

나. 따라서, 학생과 교원의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교육 및 연수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 활용 능력과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지원 목적을 규정함(제1조).

나.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다.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제4조).

라. 선도학교 등의 지정 · 운영 관련 근거를 규정함(제5조).

마. 수요자 중심의 인공지능 교육 운영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함(제6조).

바. 인공지능윤리 지침 안내를 규정함(제9조).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823호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자체감사 시 저연차 공무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문답 절차 시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장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조사 대상자 등 대상으로 문답서 작성 시 변호사 참여 규정 신설
(안 제14조의2 관련)
나. 주의·훈계 처분 대상자에 대한 대체처분 제도 신설(안 제19조의2 관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감사담당관(전화: 02-2133-30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팩 스: 02)768-8837
2) 이메일: linnette@seoul.go.kr
3) 우 편: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5동 4층 감사담당관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85조”를 “「지방자치법」 제185조”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로, “같다.)”를 “같다)”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변호인의 참여) ① 위원회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문답서 작성 시 관계자가 신청하는 경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변호인의 참여요건과 제한사유는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7조제7항 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사위원장은(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감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변상명령 :”을 “변상명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책요구 :”를 “문책요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시정요구 :”를 “시정요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주의요구 :”를 “주의요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개선요구 :”를 “개선요구:”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권고 :”를 “권고:”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통보 :”를 “통보:”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고발 :”을 “고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훈계 :”를 “훈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고·기관경고 :”를 “경고·기관경고:”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주의 :”를 “주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병과 할”을 “동시 부과할”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교육이수 또는 현장봉사) ①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 당시 재직기간(공무원 임

용일 기준) 5년 미만인 공무원의 경우,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훈계 처분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의 처분을 각각 교육이수 또는 현장봉사로 대체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 대상 공무원은 지적된 분야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이수시간은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장봉사 대상 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서 15시간 이상을 봉사하여야 한다.

④ 교육이수 또는 현장봉사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감사처분결과를 통보받은 날(재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이수 확인서 또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기한 내 교육이수 또는 현장봉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해당 공무원에게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훈계 처분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호 중 “변상명령 :”을 “변상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책요구 :”를 “문책요구:”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주의요구, 시정요구 :”를 “시정요구, 주의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본문 중 “통보 :”를 “통보:”로 한다.

제23조 중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또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자치구, 자치구금고 및 자치구비 보조단체·기관 (「지방자치법」 제185조 및 제187조부터 제19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한한다)	4. ---------- ----------「지방자치법」 제185조 --------- ---------- -------- 한정한다)
제7조(감사실시 통보) 위원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를 준용한다. 이하 같다.)는 제5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제7조(감사실시 통보)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같다)---------- ---------- ---------- ---------- -----. ----------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 설>	제14조의2(변호인의 참여) ① 위원회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문답서 작성 시 관계자가 신청하는 경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변호인의 참여요건과 제한사유는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7조(일상감사) ① ~ ⑥ (생략)	제17조(일상감사)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상감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⑦ ----------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18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위원장은(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제18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제19조(감사결과 처분) ① 시장은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감사결과 처분) ① ----------.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1. 변상명령: ----------
2.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2. ---------- 문책요구: ----------
3. 시정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정요구: ----------
4. 주의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4. 주의요구: ----------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
5. 개선요구 : 감사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개선요구: ----------
6. 권고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권고: ----------
7. 통보 :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통보: ----------
8. 고발 :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	② ----------

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 할 수 있다.	---------- ---------- ----------.
1. 훈계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1. 훈계: ---------- ---------- ---------- ----------
2. 경고·기관경고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장 및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한다.	2. 경고·기관경고: ---------- ---------- ---------- ---------- ---------- ----------.
3. 주의 :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3. 주의: ---------- ---------- ----------
③ 시장은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요구(이하 “처분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처분 등을 병과 할 수 있다.	③ ---------- ---------- ---------- ---------- ---------- -------- 동시 부과할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2(교육이수 또는 현장봉사) ①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

	한 행위 당시 재직기간(공무원 임용일 기준) 5년 미만인 공무원의 경우,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훈계 처분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의 처분을 각각 교육이수 또는 현장봉사로 대체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 대상 공무원은 지적된 분야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이수시간은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장봉사 대상 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서 15시간 이상을 봉사하여야 한다. ④ 교육이수 또는 현장봉사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감사처분결과를 통보받은 날(재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이수 확인서 또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기한 내 교육이수 또는 현장봉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해당 공무원에게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훈계 처분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2조(감사결과의 처리 등)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관련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처분 등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조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감사결과의 처리 등) ---------- ---.
1. 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고	1. 변상명령: ----------
2.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2. ---------- 문책요구: ----------
3. 주의요구, 시정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3. 시정요구, 주의요구: ----------
4. 개선요구, 권고, 통보 : 2개월	4. ---------- 통보: ----------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내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 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 ---------- --. ---------- ---------- ---------- ---------- ---------- ---------- ----------
제23조(감사정보 관리) 위원회는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하는 감사활동 정보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감사정보 관리) --------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
제27조(재심의신청 등) ① (생략) ② 위원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재심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재심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제27조(재심의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행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831호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공고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확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SOQ 평가 시 과업수행 계획서 세부평가항목 추가
- BIM 등 스마트건설 활용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계획 평가

3. 의견제출
이 공고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기술심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술심사담당관(전화: 02-2133-85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기술심사담당관
- 이메일 : hee3408@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행정예고문 및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

2025. 00. 00.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0000호)

서 울 특 별 시

(기 술 심 사 담 당 관)

목 차

제Ⅰ장.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절 적용기준(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기술인평가서/기술제안서 평가) ····· 2

제2절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수행실적 평가) 세부기준 ···· 10

제3절 기술인평가서에 따른 평가(기술인평가서 평가) 세부기준 ····· 77

제4절 기술제안서에 따른 평가(기술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120

제Ⅱ장.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절 적용기준(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기술인평가서 평가) ····· 153

제2절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수행실적평가) 세부기준 ···· 162

제3절 기술인평가서에 따른 평가(기술인평가서 평가) 세부기준 ····· 219

제Ⅰ장.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Ⅰ장.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절 적용기준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기술인평가서/기술제안서 평가)

제1절 적용기준(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기술인평가서/기술제안서 평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별표2에 따라 서울특별시(산하사업소·자치구·투자기관 포함)에서 시행하는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이하 "용역"이라 한다)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평가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엔지니어링에 따른 설계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과 기술인평가서, 기술제안서를 토대로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② "기술인평가서 평가 적격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따른 설계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중 수행실적평가 결과 90점 이상을 확보한 자로서 기술인평가서 제출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③ "기술제안서 평가 적격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중 수행실적평가 결과 90점 이상을 확보한 자로서 기술제안서 제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④ "입찰안내서"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용역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숙지하여야 하는 용역의 범위·규모, 입찰관련 제출서류 작성기준, 기타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 등을 포함한 문서를 말한다.

제3조(수행실적평가 적용범위) ① 수행실적평가는 영 제52조 및 규칙 제28조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해당하는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방법) ①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용역금액 및 공종에 따라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이하 "수행실적평가"라 한다), 기술인평가서에 따른 평가(이하 "기술인평가서 평가"라 한다), 기술제안서에 따른 평가(이하 "기술제안서 평가"라 한다)로 구분되며, 적용범위는 본절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다.

제5조(기술인평가서·기술제안서 평가 적용범위) ① 기술인평가서 평가 및 기술제안서 평가는 용역비 및 공종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의 금액기준과 난이도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 금액 기준

가. 기술인 평가서 평가 적용범위

· 기본계획, 기본설계 : 용역비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의 용역

· 실시설계 : 용역비 1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의 용역

※ 기본 및 실시설계는 실시설계를 적용

나. 기술제안서 평가 적용범위

· 기본계획, 기본설계 : 용역비 15억원 이상의 용역

· 실시설계 : 용역비 25억원 이상의 용역

※ 기본 및 실시설계는 실시설계를 적용

2. 난이도 기준

가. 공공의 안전 확보, 역사문화 보전 등을 위하여 기술인의 특별한 설계경험과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로서 발주부서가 인정하는 경우

나. 국내 설계실적이 많지 않거나 복합공종, 입지 및 지반조건, 인접시설 등으로 인해 설계 및 시공에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경우

다. 신기술·신공법, 친환경 건설기법 등 기술발전을 목적으로 발주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발주부서는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당 용역의 특성상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평가부서)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발주부서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당경쟁 등이 우려되어 평가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평가부서를 달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배점기준) ① 수행실적 평가, 기술인평가서 평가, 기술제안서 평가에 대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범위 및 평가방법은 각각 별도로 정한 평가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발주부서는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할 수 있고,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며,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인 경우는 원점수를 적용한다.

③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업무 중복도의 평가기준일은 발주기관에서 용역의 특성을 감안한 기술인 투입계획에 따라 입찰공고일로부터 1개월 내외를 기준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기술인 투입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적격자 등의 선정)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수행실적 평가"에 의해서만 실시하는 경우 "수행실적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수행실적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순으로 15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②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기술인평가서 평가"에 의해서 실시하는 경우 "수행실적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를 기술인평가 적격자로 선정하여 기술인평가 평가서를 제출케 하고 기술인평가서 평가결과 85점 이상인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수행실적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를 "기술인평가 적격자" 로 선정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수행실적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순으로 15위 까지를 "기술인평가 적격자" 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기술제안서 평가"에 의해서 실시하는 경우 "수행실적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 업체를 기술제안 적격자로 선정하여 기술제안서를 제출케 하고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기술제안 적격자" 로 선정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수행실적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으로 15위 까지를 "기술제안 적격자" 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수행실적 평가, 기술인평가서 평가, 기술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 등을 정하여 입찰공고시 공시한다.

- 발주청은 평가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발주청의 필요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1에 첨부된 양식을 활용할 수 있음)

⑤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선정된 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된 업체는 입찰참가 적격자에서 제외하고 잔여업체만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결과 통지)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평가결과 및 적격여부를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공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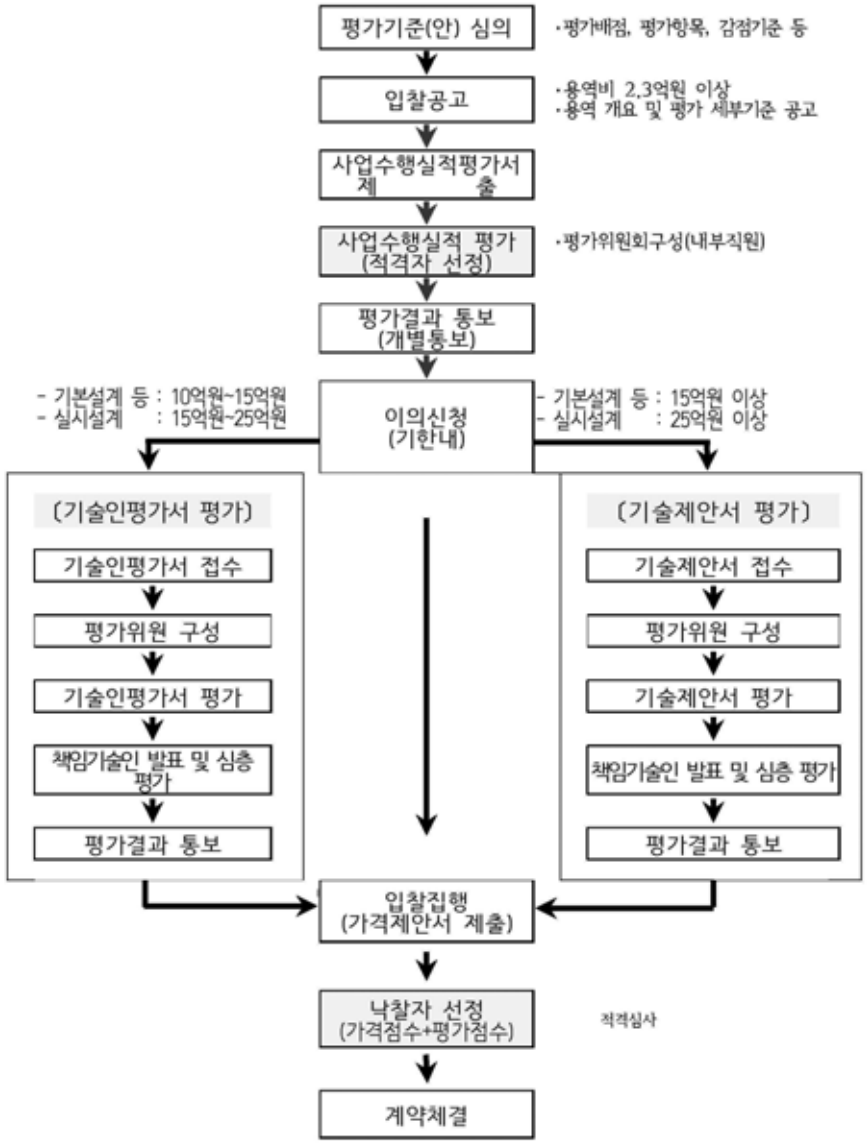
제10조(경과규정) 이 기준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것으로서 이 기준 시행 후 국토교통부 고시 및 행정안전부 예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각각 변경된 기준에 따라야 한다.

첨부 : 1. 설계 등 용역사업자 선정 절차도
2. 기술인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대상 용역 선정기준

첨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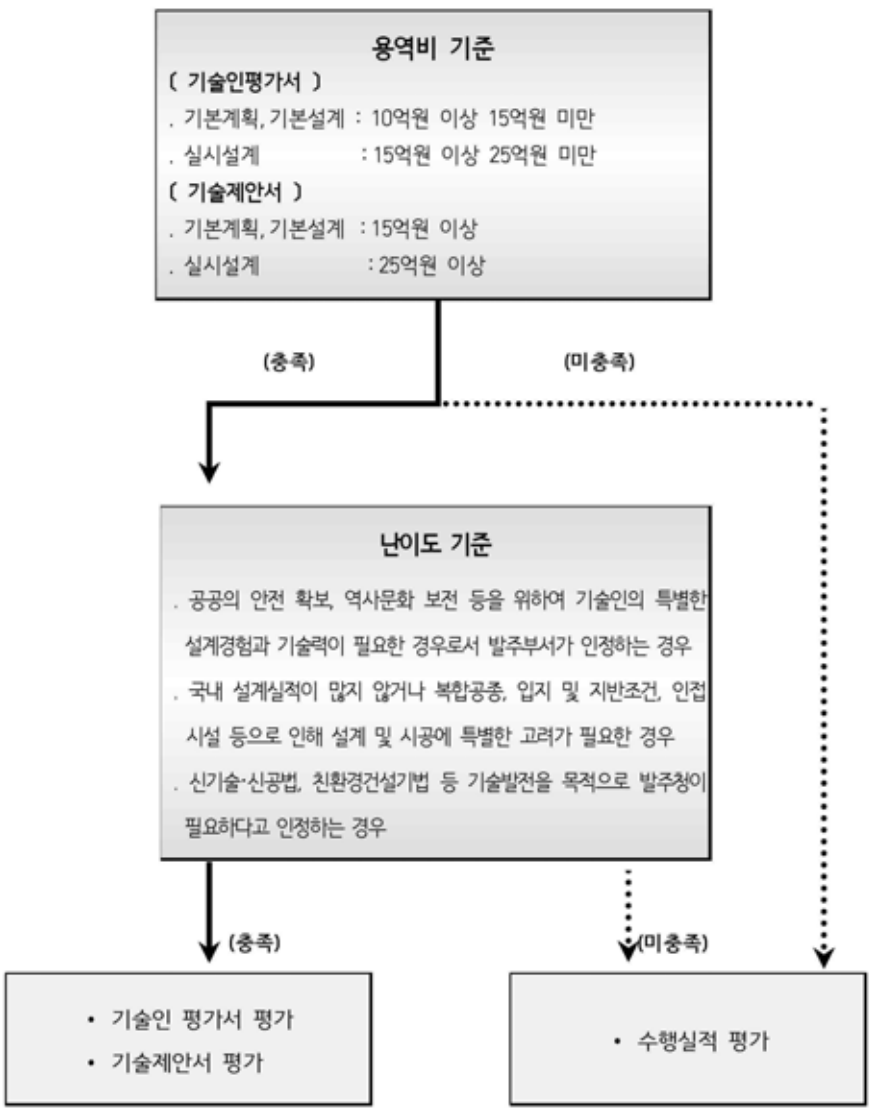
설계 등 용역사업자 선정 절차도

(용역비 2.3억원 이상)



첨부 2

기술인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대상 용역 선정기준



기술인평가서 평가 및 기술제안서 평가 난이도 대상 시설물(예시)

전문분야	시설물별 난이도 대상기준
도 로	①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트교 등 경간장 100m 이상 특수교량 ② 3km 이상 해저 또는 하저터널 ③ 도시부 장대지하도로(500m 이상) ④ 통제센터와 연계된 통합시스템이 필요한 지능형교통체계시설 ⑤ 출입시설(완전입체교차) 신설, 확장 개량 설계 용역 및 공용 중인 기존교량(경간장 100m 이상)의 전면 개량 설계 용역 ⑥ 자연재해위험지구(산사태, 홍수 등), 환경보호·보전지역(국립공원, 수변구역, 백두대간 등)으로 지정된 지역 및 문화재, 천연기념물 서식지 등의 통과가 예상되는 경우
수자원	① 댐(총 저수량 1천만톤 이상) ② 배수갑문(2,000㎥/sec 이상)
철 도	① 장대교(연장 400m 이상, 경간장 70m 이상) 및 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트교 등) ② 철도차량기지 ③ 일반터널(3km 이상 터널), 해저 또는 하저터널 ④ 도심구간 ⑤ 자연재해위험지구(산사태, 홍수 등)로 지정된 구역, 환경보호·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구역(국립공원, 수변구역, 백두대간 등), 문화재, 천연기념물 서식지 등의 통과가 예상되는 경우

전문분야	시설물별 난이도 대상기준
공 항	① 활주로, 여객·화물터미널
플랜트	① 고도처리방식에 의한 정수장, 하수(5만톤/일 이상)·폐수(1만톤/일 이상) 처리시설 ② 폐기물(쓰레기, 슬러지 등) 소각시설(30톤/일 이상),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슬러지 건조 및 매립시설 ③ 가스공급시설 ④ 열병합발전설비, 집단에너지시설 등
건 축	① 초고층건축물(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②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 ③ 다중이용건축물 ④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30m 이상인 건축물
기 타	① 하저터널 ② 첨단교통체계 시설 ③ 설계 예상기간이 1년 이상으로 설계기간 단축이 필요한 경우 ④ 기타 특별한 기술력이 요구되어 발주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규모 공사의 설계용역

제Ⅰ장.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2절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수행실적평가) 세부기준

제2절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수행실적평가) 세부기준

1. 일반사항

가. 목적

이 기준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규모(추정가격 2.3억원) 이상의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의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을 위한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수행실적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업무수행 시 담당실무자의 이해를 돕고 평가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기하는 데 있다.

나. 용어의 정의

(1) "입찰참가 적격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중 수행실적평가 결과 90점 이상을 얻은 자로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으로 15위 까지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2) "수행실적(능력) 평가기준에 대한 건설기술심의"라 함은 입찰공고전 발주부서에서 정한 사업수행실적 세부평가기준(안)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행실적 평가팀(위원회)"이라 함은 발주부서에서 정하는 사업수행실적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팀 또는 위원회를 말한다.

다. 평가방법 및 절차

(1) 발주부서는 입찰공고기간 중 입찰희망자에게 세부평가기준을 반드시 배부 또는 공람토록 하여야 하며, 평가완료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 후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평가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3)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4)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용역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 설계수행실적·전차용역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5)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

(6) 용역수행실적 및 신용도(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기관이 발급한 시행규칙 제27조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의 용역수행실적은 2014년 5월 23일 이후부터 입찰공고한 용역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용역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7) 발주부서는 수행실적 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8) 발주부서는 각 사업별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규모(추정가격 2.3억원) 이상의 설계 등 용역 추진 시 "수행실적평가" 기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중 일부 내용(의무사항 등)을 조정 또는 변경없이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기술심사담당관과 사전 서면 협의로 건설기술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9) 발주부서는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하여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발주부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인에 공개하여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단, 실무기술인의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다.)

(10) 발주부서는 제(9)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을 통하여 진행중인 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1) 평가위원회는 제(10)항에 따라 오류, 누락사항 등을 보고받은 경우 해당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처리하여야 한다

(12) 발주부서는 수행실적 평가의 객관성 · 공정성 및 평가서류의 오류 등에 대한 적용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팀(위원회)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가) "수행실적 평가 팀" : 절대평가 항목 평가

1) 구성 : 발주부서 직원 3인 이상 5인 이내

2) 평가방법 : 수행실적 평가기준(평가 항목별 배점)에 의거 평가

(나) "수행실적 평가위원회" : 상대평가 항목 평가(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

1) 구 성 : 내부 위원 3인 이상 5인 이내

2) 위 원 장 : 발주부서장 또는 발주부서장이 평가위원 중에서 지명

※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지휘·총괄하며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3) 내부위원 : 발주부서가 소속된 실국의 공무원을 제외한 타 실국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등 외부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음

4) 평가결과공개 : 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 평가 결과(평가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점수)를 시 홈페이지 또는 발주기관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3)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제(15)항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 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발주청에서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기준 제시)

(15) 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상대평가 시 업체수별 배분표 :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

업체수	등급					업체수	등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7	2	3	7	3	2
4	1	2	1			18	2	4	7	3	2
5	1	2	1	1		19	2	4	7	4	2
6	1	2	1	1	1	20	2	4	8	4	2
7	1	2	2	1	1	21	2	4	9	4	2
8	1	2	3	1	1	22	2	5	9	4	2
9	1	2	3	2	1	23	2	5	9	5	2
10	1	2	4	2	1	24	2	5	10	5	2
11	1	2	5	2	1	25	3	5	10	5	2
12	1	3	5	2	1	26	3	5	10	5	3
13	1	3	5	3	1	27	3	5	11	5	3
14	1	3	6	3	1	28	3	6	11	5	3
15	2	3	6	3	1	29	3	6	11	6	3
16	2	3	6	3	2	30	3	6	12	6	3

※ 참여업체수가 30개 초과 시 등급별 배분율은 위 배분표를 기준으로 등급별 업체수 결정

(16)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외설계 수행실적, 전차용역 수행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 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유사용역 수행실적, 재정상태 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외설계 수행실적, 전차용역 수행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17)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설계 등 용역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용역사업의 총용역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18)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적격자로 평가 및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시공 일괄입찰(Design-Build 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 유사용역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금액은 준공일 기준의 한국 화폐단위 환율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하되, 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의 설계보상 대상자의 유사용역 실적은 낙찰자의 80%로 한다. 다만, 실적금액(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설계용역에 한함)은 낙찰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중 건설부문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에서 인정한다..(단, 당해 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19) 해외설계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부서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양식 18) 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용역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포함된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0)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용역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부서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양식 19)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용역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용역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용역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21)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설계용역 입찰에 참여할 경우

-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 등 "주관적 평가항목" 평가시 부실(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또는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부실 또는 유착비리 사항은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구분 없이 적용하되,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에도 지분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하고

  •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품질사고 또는 최근 5년내 안전사고 관련 입찰참가제한·효력상실·영업정지·자격정지 요구 등 행정처분 요청사항, 최근1년내 품질사고 관련 벌점부과사항)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운영 중인 One-PMIS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에 활용하여야 한다.

  •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지정현황)는 재무국(재무과)에서 운영하는 서울계약마당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 활용하여야 한다. (※ 공사·공단 등은 재무부서 '공공구매 실적관리' 담당을 통해 시스템 자료 검색)

※ 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용역발주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서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 수행에 대한 책임성과 경각심 고취 및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

(22) 용역수행 조직표를 작성(아래예시 참조)하여 분야별 참여기술인 및 인원수를 명기하여 제시토록 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미평가자는 등급 만 명시)



(23)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 또는 0.2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발주부서에서 입찰공고시 인정 기준 제시)

(24) 발주부서는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업무중복도 평가 대상인 주 공종 분야(3~5분야)를 제시하여야 한다.

(25)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26)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용역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27)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단, 2020년 6월 30일까지 CEMS 및 별도 증빙서류 등을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28) 설계 등 용역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용역에의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29)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양식 21)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라. 수행실적평가에 의한 용역사업자 선정절차

(1) 발주부서의 장은 해당 설계용역이 수행실적 평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공고문에 기재

【업무 흐름】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술심사담당관과 사전 서면협의 대체(가능)

■ 수행실적평가서와 첨부서류 제출

■ 각 참여업체별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7일 이상 홈페이지 공개(의견수렴)

■ 평가팀 및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One-PMIS 부실사항 확인)
■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점수 통보

■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된 기한 내에 신청

■ 가격제안서 제출

■ 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 평가결과(평가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점수)를 홈페이지에 공개

■ 적격심사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하여야 한다.

(2) 해당 설계용역 입찰공고문에는 수행실적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작성지침, 평가항목 등 입찰자가 수행실적 평가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일체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발주부서는 해당 설계용역의 입찰자가 수행실적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수행실적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세부내용은 작성지침에 따른다.

(4) 발주부서의 장은 수행실적 평가결과를 해당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하며, 결과를 통보받은 입찰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발주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다.

(5) 발주부서의 장은 해당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된 최종 수행실적평가 결과를 계약부서에 통보하고 계약부서의 장은 공고된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

2. 평가 기준

가. 항목별 배점 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참 여 기 술 인 (50)	사 업 책임기술인 (15)	등급	3	절대평가
		경력	4	
		유사용역실적	5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상대평가
	분 야 별 책임기술인 (19)	등급	4	절대평가
		경력	7	
		유사용역실적	8	
	분 야 별 참여기술인 (14)	등급	4	절대평가
		경력	5	
		유사용역실적	5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2)	교육훈련	1	절대평가
		전차용역수행실적	1	
용역 수행실적 (15)	회사실적 (15)	유사용역 실적건수	6	절대평가
		유사용역 실적금액	6	
		전차용역수행실적	1	
		용역수행성과	2	절대평가
신 용 도 (10)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지정기간, 부과벌점	7	절대평가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개발실적		2	절대평가
	활용실적		3	
	투자실적		10	
업무중복도 (10)	사업책임기술인		3	절대평가
	분야별책임기술인		4	
	분야별참여기술인		2	
	실무기술인		1	
합 계			100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절대평가
	젊은 기술인 참여		0.2	
감점	비리관련		10	절대평가

비고

1.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설계용역 입찰에 참여시 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 등 "주관적 평가 항목" 평가시 부실(품질 및 안전사고 등) 또는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One-PMIS(부실), 서울계약마당(유착비리) 자료 활용)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나. 항목별 세부 배점기준

<table>
<tr><th colspan="3">평 가 항 목</th><th>평가방법</th><th>배점</th><th colspan="6">점 수 계 산 방 법</th></tr>
<tr><td rowspan="20">참여기술인(50)</td><td rowspan="6">사업책임기술인(15)</td><td>등 급</td><td rowspan="2">절대평가</td><td rowspan="2">3</td><td>특 급</td><td colspan="2">고 급</td><td colspan="2">중 급</td><td>초 급</td></tr>
<tr><td colspan="6">3 2.2 1.5 0.7</td></tr>
<tr><td>경 력</td><td rowspan="2">절대평가</td><td rowspan="2">4</td><td>15년 이상</td><td>15년 미만 13년 이상</td><td>13년 미만 11년 이상</td><td>11년 미만 9년 이상</td><td>9년 미만</td></tr>
<tr><td>4</td><td>3.6</td><td>3.2</td><td>2.8</td><td>2.4</td></tr>
<tr><td>유사용역 실 적</td><td>절대평가</td><td>5</td><td>10건 이상</td><td>10건 미만 ~8건 이상</td><td>8건 미만 ~6건 이상</td><td>6건 미만 ~4건 이상</td><td>4건 미만</td></tr>
<tr><td>5.0</td><td>4.5</td><td>4.0</td><td>3.5</td><td>3.0</td></tr>
<tr><td>기술능력 및 업무관리 능력</td><td>상대평가</td><td>3</td><td>수</td><td>우</td><td>미</td><td>양</td><td>가</td></tr>
<tr><td>3.0</td><td>2.4</td><td>1.8</td><td>1.2</td><td>0.6</td></tr>
<tr><td colspan="7">※ 평가시 부실 또는 유착비리 사항 반영
※ 용역비와 상관없이 모든 용역 평가</td></tr>
<tr><td rowspan="6">분야별 책임기술인(19)</td><td>등 급</td><td rowspan="2">절대평가</td><td>4</td><td>고급 이상</td><td colspan="2">중 급</td><td colspan="2">초 급</td></tr>
<tr><td colspan="6">4 3 2</td></tr>
<tr><td>경 력</td><td rowspan="2">절대평가</td><td rowspan="2">7</td><td>10년 이상</td><td>10년 미만 9년 이상</td><td>9년 미만 8년 이상</td><td>8년 미만 7년 이상</td><td>7년 미만</td></tr>
<tr><td>7</td><td>6.3</td><td>5.6</td><td>4.9</td><td>4.2</td></tr>
<tr><td>유사용역 실 적</td><td>절대평가</td><td>8</td><td>7건 이상</td><td>7건 미만 ~6건 이상</td><td>6건 미만 ~5건 이상</td><td>5건 미만 ~4건 이상</td><td>4건 미만</td></tr>
<tr><td>8</td><td>7.2</td><td>6.4</td><td>5.6</td><td>4.8</td></tr>
<tr><td rowspan="6">분야별 참여기술인(14)</td><td>등 급</td><td rowspan="2">절대평가</td><td>4</td><td colspan="3">중 급 이상</td><td colspan="2">초 급</td></tr>
<tr><td colspan="6">4 3</td></tr>
<tr><td>경 력</td><td rowspan="2">절대평가</td><td rowspan="2">5</td><td>5년 이상</td><td>5년 미만 4년 이상</td><td>4년 미만 3년 이상</td><td>3년 미만 2년 이상</td><td>2년 미만</td></tr>
<tr><td>5</td><td>4.5</td><td>4.0</td><td>3.5</td><td>3.0</td></tr>
<tr><td>유사용역 실 적</td><td>절대평가</td><td>5</td><td>5건 이상</td><td>5건 미만 ~4건 이상</td><td>4건 미만 ~3건 이상</td><td>3건 미만 ~2건 이상</td><td>2건 미만</td></tr>
<tr><td>5</td><td>4.5</td><td>4.0</td><td>3.5</td><td>3.0</td></tr>
<tr><td rowspan="4">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2)</td><td>교육훈련</td><td>절대평가</td><td>1</td><td colspan="6">- 참여 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 / 평가대상인원) × 1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 / 평가대상인원) × 0.5점</td></tr>
<tr><td rowspan="3">전차용역 수행실적</td><td rowspan="3">절대평가</td><td rowspan="3">1</td><td>구분</td><td>2년 미만</td><td>2년 이상 3년 미만</td><td>3년 이상 5년 미만</td><td>5년 이상</td></tr>
<tr><td>사업책임 기술인</td><td>0.5</td><td>0.4</td><td>0.3</td><td>0</td></tr>
<tr><td>분야별 책임기술인</td><td>0.5</td><td>0.4</td><td>0.3</td><td>0</td></tr>
</table>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table>
<tr><th colspan="3">평 가 항 목</th><th>평가
방법</th><th>배 점</th><th colspan="5">점 수 계 산 방 법</th></tr>
<tr><td rowspan="11">용역
수행실적
(15)</td><td rowspan="11">회사실적</td><td rowspan="2">유사용역
실적건수</td><td rowspan="2">절대
평가</td><td rowspan="2">6</td><td>2건 이상</td><td colspan="2">2건 미만 ~ 1건 이상</td><td colspan="2">1건 미만</td></tr>
<tr><td>6</td><td colspan="2">5.4</td><td colspan="2">4.8</td></tr>
<tr><td rowspan="2">유사용역
실적금액</td><td rowspan="2">절대
평가</td><td rowspan="2">6</td><td>35억 이상</td><td>35억 미만~
30억 이상</td><td>30억 미만~
20억 이상</td><td colspan="2">20억미만</td></tr>
<tr><td>6</td><td>5.4</td><td>4.8</td><td colspan="2">4.2</td></tr>
<tr><td rowspan="3">전차용역
수행실적</td><td rowspan="3">절대
평가</td><td rowspan="3">1</td><td colspan="2">용역 후 3년 이내
(해당업체)</td><td colspan="3">해당업체 외 모든
참여업체</td></tr>
<tr><td colspan="2">1</td><td colspan="3">0.8</td></tr>
<tr><td colspan="5">※ 공동도급 시 계산 예 : 0.8 + 0.2 × (전차용역 지분율 × 입찰시지분율)</td></tr>
<tr><td rowspan="4">용역수행
성과</td><td rowspan="4">절대
평가</td><td rowspan="4">2</td><td colspan="5">-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table><tr><td>용역평가 결과</td><td>95점 이상</td><td>95점 미만 92점 이상</td><td>92점 미만 89점 이상</td><td>89점 미만 86점 이상</td><td>86점 미만</td></tr><tr><td>점수</td><td>2점</td><td>1.8점</td><td>1.6점</td><td>1.4점</td><td>1.2점</td></tr></table>* 용역평가는 건진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8" 또는 "1.6"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발주청에서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td></tr>
<tr><td rowspan="2">신 용 도
(10)</td><td>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td><td>지정기간,
부과벌점</td><td>절대
평가</td><td>7</td><td colspan="5">- 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td></tr>
<tr><td>재정상태
건실도</td><td>신용평가
등급</td><td>절대
평가</td><td>3</td><td colspan="5">-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table><tr><td>회사채</td><td>BBB-이상</td><td>BBB-미만 B-이상</td><td>CCC+ 이하</td><td>미제출</td></tr><tr><td>기업어음</td><td>A3-이상</td><td>A3-미만 B-이상</td><td>C이하</td><td>미제출</td></tr><tr><td>기업신용</td><td>BBB-이상</td><td>BBB-미만 B-이상</td><td>CCC+이하</td><td>미제출</td></tr><tr><td>점수</td><td>3.0</td><td>2.8</td><td>2.1</td><td>0</td></tr></table>* 소규모 용역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용역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td></tr>
</table>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table>
<tr><th colspan="2">평 가 항 목</th><th>평가
방법</th><th>배점</th><th>점 수 계 산 방 법</th></tr>
<tr><td rowspan="2">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td><td>개발실적</td><td>절대
평가</td><td>2</td><td>-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 (등록유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 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건설신기술 : 2.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table>
<tr><th>구분</th><th>5년 미만</th><th>5년 이상
10년 미만</th><th>10년 이상
20년 미만</th></tr>
<tr><td>특허</td><td>100%</td><td>80%</td><td>60%</td></tr>
<tr><td>실용신안</td><td>100%</td><td>80%</td><td>-</td></tr>
</table>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 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td></tr>
<tr><td>활용실적</td><td>절대
평가</td><td>3</td><td>-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단, 2020년 4월 1일 이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준공된 용역사업부터 적용하며, 2020년 4월 1일 이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이미 준공된 용역사업은 종전의 기준 따름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5">가중치</th></tr>
<tr><th>1.0</th><th>0.9</th><th>0.8</th><th>0.7</th><th>0.6</th></tr>
<tr><td>활용건수
(건)</td><td>5 이상</td><td>5 미만
4 이상</td><td>4 미만
3 이상</td><td>3 미만
2 이상</td><td>2 미만</td></tr>
<tr><td>활용금액
(억원)</td><td>20 이상</td><td>20 미만
18 이상</td><td>18 미만
16 이상</td><td>16 미만
14 이상</td><td>14 미만</td></tr>
</table>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td></tr>
</table>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table>
<tr><th colspan="2">평 가 항 목</th><th>평가방법</th><th>배점</th><th>점 수 계 산 방 법</th></tr>
<tr><td>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td><td>투자실적</td><td>절대평가</td><td>10</td><td>1) 최근 3년 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 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 투자액 / 건설부문 총 매출액)
<table>
<tr><td>구분</td><td>1.50% 이상</td><td>1.50% 미만 1.25% 이상</td><td>1.25% 미만 1.00% 이상</td><td>1.00% 미만 0.75% 이상</td><td>0.75% 미만 0.50% 이상</td></tr>
<tr><td>점수</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r>
</table></td></tr>
<tr><td>업 무 중 복 도 (10)</td><td>사업 책임기술인</td><td>절대평가</td><td>3</td><td>1) 참여기술인 중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2)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table>
<tr><td>중복율</td><td>250%미만</td><td>250%이상 ~ 350%미만</td><td>350%이상 ~ 450%미만</td><td>450%이상 ~ 550%미만</td><td>550%이상</td></tr>
<tr><td>점수</td><td>3.0</td><td>2.7</td><td>2.4</td><td>2.1</td><td>1.8</td></tr>
</table>
– 철도분야
<table>
<tr><td>중복율</td><td>300%미만</td><td>300%이상 ~ 400%미만</td><td>400%이상 ~ 500%미만</td><td>500%이상 ~ 600%미만</td><td>600%이상</td></tr>
<tr><td>점수</td><td>3.0</td><td>2.7</td><td>2.4</td><td>2.1</td><td>1.8</td></tr>
</table>
– 수자원분야
<table>
<tr><td>중복율</td><td>300%미만</td><td>300%이상 ~ 400%미만</td><td>400%이상 ~ 500%미만</td><td>500%이상 ~ 600%미만</td><td>600%이상</td></tr>
<tr><td>점수</td><td>3.0</td><td>2.7</td><td>2.4</td><td>2.1</td><td>1.8</td></tr>
</table>
– 상수도분야
<table>
<tr><td>중복율</td><td>300%미만</td><td>300%이상 ~ 400%미만</td><td>400%이상 ~ 500%미만</td><td>500%이상 ~ 600%미만</td><td>600%이상</td></tr>
<tr><td>점수</td><td>3.0</td><td>2.7</td><td>2.4</td><td>2.1</td><td>1.8</td></tr>
</table>
– 하수도분야
<table>
<tr><td>중복율</td><td>300%미만</td><td>300%이상 ~ 400%미만</td><td>400%이상 ~ 500%미만</td><td>500%이상 ~ 600%미만</td><td>600%이상</td></tr>
<tr><td>점수</td><td>3.0</td><td>2.7</td><td>2.4</td><td>2.1</td><td>1.8</td></tr>
</table>
– 국토도시분야
<table>
<tr><td>중복율</td><td>300%미만</td><td>300%이상 ~ 400%미만</td><td>400%이상 ~ 500%미만</td><td>500%이상 ~ 600%미만</td><td>600%이상</td></tr>
<tr><td>점수</td><td>3.0</td><td>2.7</td><td>2.4</td><td>2.1</td><td>1.8</td></tr>
</table>
– 기타분야(조경, 기계 등)
<table>
<tr><td>중복율</td><td>300%미만</td><td>300%이상 ~ 400%미만</td><td>400%이상 ~ 500%미만</td><td>500%이상 ~ 600%미만</td><td>600%이상</td></tr>
<tr><td>점수</td><td>3.0</td><td>2.7</td><td>2.4</td><td>2.1</td><td>1.8</td></tr>
</table></td></tr>
</table>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table>
<tr><th colspan="2">평 가 항 목</th><th>평가
방법</th><th>배점</th><th>점 수 계 산 방 법</th></tr>
<tr><td></td><td>분야별 책임기술인</td><td>절대
평가</td><td>4</td><td>1)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3)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도로분야
<table>
<tr><td>중복율</td><td>250%미만</td><td>250%이상
~
350%미만</td><td>350%이상
~
450%미만</td><td>450%이상
~
550%미만</td><td>550%이상</td></tr>
<tr><td>점수</td><td>4.0</td><td>3.6</td><td>3.2</td><td>2.8</td><td>2.4</td></tr>
</table>
- 철도분야
<table>
<tr><td>중복율</td><td>300%미만</td><td>300%이상
~
400%미만</td><td>400%이상
~
500%미만</td><td>500%이상
~
600%미만</td><td>600%이상</td></tr>
<tr><td>점수</td><td>4.0</td><td>3.6</td><td>3.2</td><td>2.8</td><td>2.4</td></tr>
</table>
- 수자원분야
<table>
<tr><td>중복율</td><td>300%미만</td><td>300%이상
~
400%미만</td><td>400%이상
~
500%미만</td><td>500%이상
~
600%미만</td><td>600%이상</td></tr>
<tr><td>점수</td><td>4.0</td><td>3.6</td><td>3.2</td><td>2.8</td><td>2.4</td></tr>
</table>
- 상수도분야
<table>
<tr><td>중복율</td><td>300%미만</td><td>300%이상
~
400%미만</td><td>400%이상
~
500%미만</td><td>500%이상
~
600%미만</td><td>600%이상</td></tr>
<tr><td>점수</td><td>4.0</td><td>3.6</td><td>3.2</td><td>2.8</td><td>2.4</td></tr>
</table>
- 하수도분야
<table>
<tr><td>중복율</td><td>300%미만</td><td>300%이상
~
400%미만</td><td>400%이상
~
500%미만</td><td>500%이상
~
600%미만</td><td>600%이상</td></tr>
<tr><td>점수</td><td>4.0</td><td>3.6</td><td>3.2</td><td>2.8</td><td>2.4</td></tr>
</table>
- 국토도시분야
<table>
<tr><td>중복율</td><td>300%미만</td><td>300%이상
~
400%미만</td><td>400%이상
~
500%미만</td><td>500%이상
~
600%미만</td><td>600%이상</td></tr>
<tr><td>점수</td><td>4.0</td><td>3.6</td><td>3.2</td><td>2.8</td><td>2.4</td></tr>
</table>
- 기타분야(조경, 기계 등)
<table>
<tr><td>중복율</td><td>300%미만</td><td>300%이상
~
400%미만</td><td>400%이상
~
500%미만</td><td>500%이상
~
600%미만</td><td>600%이상</td></tr>
<tr><td>점수</td><td>4.0</td><td>3.6</td><td>3.2</td><td>2.8</td><td>2.4</td></tr>
</table></td></tr>
</table>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table>
<tr><th colspan="2">평 가 항 목</th><th>평가
방법</th><th>배점</th><th>점 수 계 산 방 법</th></tr>
<tr><td></td><td>분야별 참여기술인</td><td>절대
평가</td><td>2</td><td>
1)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2)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3)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도로분야
<table>
<tr><td>중복율</td><td>250%미만</td><td>250%이상
~
350%미만</td><td>350%이상
~
450%미만</td><td>450%이상
~
550%미만</td><td>550%이상</td></tr>
<tr><td>점수</td><td>2.0</td><td>1.8</td><td>1.6</td><td>1.4</td><td>1.2</td></tr>
</table>
- 철도분야
<table>
<tr><td>중복율</td><td>300%미만</td><td>300%이상
~
400%미만</td><td>400%이상
~
500%미만</td><td>500%이상
~
600%미만</td><td>600%이상</td></tr>
<tr><td>점수</td><td>2.0</td><td>1.8</td><td>1.6</td><td>1.4</td><td>1.2</td></tr>
</table>
- 수자원분야
<table>
<tr><td>중복율</td><td>300%미만</td><td>300%이상
~
400%미만</td><td>400%이상
~
500%미만</td><td>500%이상
~
600%미만</td><td>600%이상</td></tr>
<tr><td>점수</td><td>2.0</td><td>1.8</td><td>1.6</td><td>1.4</td><td>1.2</td></tr>
</table>
- 상수도분야
<table>
<tr><td>중복율</td><td>300%미만</td><td>300%이상
~
400%미만</td><td>400%이상
~
500%미만</td><td>500%이상
~
600%미만</td><td>600%이상</td></tr>
<tr><td>점수</td><td>2.0</td><td>1.8</td><td>1.6</td><td>1.4</td><td>1.2</td></tr>
</table>
- 하수도분야
<table>
<tr><td>중복율</td><td>300%미만</td><td>300%이상
~
400%미만</td><td>400%이상
~
500%미만</td><td>500%이상
~
600%미만</td><td>600%이상</td></tr>
<tr><td>점수</td><td>2.0</td><td>1.8</td><td>1.6</td><td>1.4</td><td>1.2</td></tr>
</table>
- 국토도시분야
<table>
<tr><td>중복율</td><td>300%미만</td><td>300%이상
~
400%미만</td><td>400%이상
~
500%미만</td><td>500%이상
~
600%미만</td><td>600%이상</td></tr>
<tr><td>점수</td><td>2.0</td><td>1.8</td><td>1.6</td><td>1.4</td><td>1.2</td></tr>
</table>
- 기타분야(조경, 기계 등)
<table>
<tr><td>중복율</td><td>300%미만</td><td>300%이상
~
400%미만</td><td>400%이상
~
500%미만</td><td>500%이상
~
600%미만</td><td>600%이상</td></tr>
<tr><td>점수</td><td>2.0</td><td>1.8</td><td>1.6</td><td>1.4</td><td>1.2</td></tr>
</table>
</td></tr>
</table>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table>
<tr><th colspan="2">평 가 항 목</th><th>평가
방법</th><th>배점</th><th>점 수 계 산 방 법</th></tr>
<tr><td></td><td>실무기술인</td><td>절대
평가</td><td>1</td><td>1) 용역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2)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3)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4)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도로분야
<table>
<tr><td>중복율</td><td>250%미만</td><td>250%이상
~
350%미만</td><td>350%이상
~
450%미만</td><td>450%이상
~
550%미만</td><td>550%이상</td></tr>
<tr><td>점수</td><td>1.0</td><td>0.9</td><td>0.8</td><td>0.7</td><td>0.6</td></tr>
</table>
- 철도분야
<table>
<tr><td>중복율</td><td>300%미만</td><td>300%이상
~
400%미만</td><td>400%이상
~
500%미만</td><td>500%이상
~
600%미만</td><td>600%이상</td></tr>
<tr><td>점수</td><td>1.0</td><td>0.9</td><td>0.8</td><td>0.7</td><td>0.6</td></tr>
</table>
- 수자원분야
<table>
<tr><td>중복율</td><td>300%미만</td><td>300%이상
~
400%미만</td><td>400%이상
~
500%미만</td><td>500%이상
~
600%미만</td><td>600%이상</td></tr>
<tr><td>점수</td><td>1.0</td><td>0.9</td><td>0.8</td><td>0.7</td><td>0.6</td></tr>
</table>
- 상수도분야
<table>
<tr><td>중복율</td><td>300%미만</td><td>300%이상
~
400%미만</td><td>400%이상
~
500%미만</td><td>500%이상
~
600%미만</td><td>600%이상</td></tr>
<tr><td>점수</td><td>1.0</td><td>0.9</td><td>0.8</td><td>0.7</td><td>0.6</td></tr>
</table>
- 하수도분야
<table>
<tr><td>중복율</td><td>300%미만</td><td>300%이상
~
400%미만</td><td>400%이상
~
500%미만</td><td>500%이상
~
600%미만</td><td>600%이상</td></tr>
<tr><td>점수</td><td>1.0</td><td>0.9</td><td>0.8</td><td>0.7</td><td>0.6</td></tr>
</table>
- 국토도시분야
<table>
<tr><td>중복율</td><td>300%미만</td><td>300%이상
~
400%미만</td><td>400%이상
~
500%미만</td><td>500%이상
~
600%미만</td><td>600%이상</td></tr>
<tr><td>점수</td><td>1.0</td><td>0.9</td><td>0.8</td><td>0.7</td><td>0.6</td></tr>
</table>
- 기타분야(조경, 기계 등)
<table>
<tr><td>중복율</td><td>300%미만</td><td>300%이상
~
400%미만</td><td>400%이상
~
500%미만</td><td>500%이상
~
600%미만</td><td>600%이상</td></tr>
<tr><td>점수</td><td>1.0</td><td>0.9</td><td>0.8</td><td>0.7</td><td>0.6</td></tr>
</table>
</td></tr>
<tr><td colspan="3">합 계</td><td>100</td><td></td></tr>
</table>

다. 비리관련 감점사항

구 분	감 점 사 유	감점	감점기간
비리감점	1.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	3	당해심의
	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	2	적발일부터 1년
	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	적발일부터 2년

라. 가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 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 기술인 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용역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용역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3.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인 평가 : 50점

(1) 사업책임기술인 : 15점

○ 등급평가(3점)

-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 제9조(건설기술자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배 점 〉

등 급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점 수	3	2.2	1.5	0.7

○ 경력평가(4점)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분야에 대한 설계, 시공, 시험, 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 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단, 설계 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평가는 당해분야의 60%를 적용한다.(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100%를 인정한다.) 다만, 용역비 2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전문분야 외의 경력평가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경력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하는 경력으로 평가
- 참여건설기술인이 발주부서·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

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계약전문기술인"라 한다)를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배 점 〉

경 력	15년 이상	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점 수	4	3.6	3.2	2.8	2.4

○ 유사용역수행실적평가(5점)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등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

(단, 설계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 또는 0.2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발주청에서 입찰공고시 인정 기준 제시)

-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실적평가는 당해분야의 60%를 적용한다.(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100%를 인정한다.) 다만, 용역비 2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전문분야 외의 경력평가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용역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함(유사용역 실적 인정범위는 당해 용역규모와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제한하지 못하며, 특히 용역비가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규모의 0.7배 이내에서 제한하여야 한다.)

- 용역의 특성에 따라 발주부서의 장이 정하는 기준으로 하되 기준은 최근 10년동안 해당용역과 유사한 설계 참여실적("예" 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의 경우 "도로 및 공항분야의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참여실적 인정, 철도, 지하철, 고속철도, 택지개발, 구획정리, 단지조성, 운동장, 도시계획, 상하수도, 하천, 수자원, 항만, 시설물 보수보강,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은 불인정함" 등으로 구체적 명시)으로 참여기간, 실적건수, 실적금액, 실적규모(연장, 면적 등)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
- 해당 기술인에 대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 등이 발행한 경력증명의 실적 중 공사명, 수행기간, 금액,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함

〈 배 점 〉

실 적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점 수	5	4.5	4.0	3.5	3.0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3점)

-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에 대한 평가는 "양식16"를 참고하여 업체가 제출한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받아 해당 용역 관련 경험, 용역수행상 주안점, 용역 성공조건, 일정계획, 품질보증체계, 전문가 활용계획, 추가 제안사항 등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에 따라 상대평가 하되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시 업체 또는 참여기술인이 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사항이 있거나,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인 경우에 이를 평가점수에 반영하여 평가 실시
  - 부실 또는 유착비리 사항은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구분 없이 적용하고,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에도 지분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품질사고 또는 최근 5년내 안전사고 관련 입찰참가제한·효력상실·영업정지·자격정지 요구 등 행정처분 요청사항, 최근 1년내 품질사고 관련 벌점부과사항)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운영 중인 One-PMIS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에 활용하여야 한다.
  -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지정현황)는 재무국(재무과)에서 운영하는 서울계약마당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 활용하여야 한다. (※ 공사·공단 등은 재무부서 '공공구매 실적관리' 담당을 통해 시스템 자료 검색)

〈 배 점 〉

평 가	수	우	미	양	가
점 수	3.0	2.4	1.8	1.2	0.6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2) 분야별 책임기술인 : 19점

○ 등급평가(4점)

–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9조(건설기술자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배 점〉

등 급	고 급 이 상	중 급	초 급
점 수	4	3	2

○ 경력평가(7점)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분야에 대한 설계, 시공, 시험, 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 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단, 설계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평가는 당해분야의 60%를 적용한다.(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100%를 인정한다.) 다만, 용역비 2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전문분야 외의 경력평가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경력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하는 경력으로 평가
- 참여건설기술인이 발주부서·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전문기술인"라 한다)를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배 점 〉

경 력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점 수	7	6.3	5.6	4.9	4.2

○ 유사용역실적평가(8점)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등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

(단, 설계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 또는 0.2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발주청에서 입찰공고시 인정 기준 제시)

-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실적평가는 당해분야의 60%를 적용한다.(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100%를 인정한다.) 다만, 용역비 2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전문분야 외의 경력평가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용역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함(유사용역 실적 인정범위는 당해 용역규모와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제한하지 못하며, 특히 용역비가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규모의 0.7배 이내에서 제한하여야 한다.)

- 용역의 특성에 따라 발주부서의 장이 정하는 기준으로 하되 기준은 최근 10년 동안 해당용역

과 유사한 설계 참여 실적(예 : 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의 경우 "도로 및 공항분야의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참여 실적 인정, 철도, 지하철, 고속철도, 택지개발, 구획정리, 단지조성, 운동장, 도시계획, 상하수도, 하천, 수자원, 항만, 시설물 보수·보강,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은 불인정함" 등으로 구체적 명시)으로 참여기간, 실적 건수, 실적 금액, 실적 규모(연장, 면적 등)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로 절대평가 한 결과를 배분율에 의거 평가 후 합산

- 해당기술인에 대한 위탁업무수행기관 또는 발주청 등이 발행한 유사용역수행 실적 중 공사명, 수행기간, 금액,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함

〈 배 점 〉

실 적	7건 이상	7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점 수	8	7.2	6.4	5.6	4.8

※ 평가 시 업무중요도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대한 점수배분율을 정하여 평가함

· 대상 : 등급, 경력, 유사용역실적 등

<예 : 분야별 책임기술인 5인의 경우, 점수 배분 후 각 분야별 평가 결과 합산 방법>

평가	점 수 배분율(%)	7건 이상	7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비 고
배점	100	8	7.2	6.4	5.6	4.8	
분야①	40	3.2	2.88	2.56	2.24	1.92	
분야②	20	1.6	1.44	1.28	1.12	0.96	점 수 → 3.2+1.44+1.44+0.64+0.56 = 7.28
분야③	20	1.6	1.44	1.28	1.12	0.96	
분야④	10	0.8	0.72	0.64	0.56	0.48	
분야⑤	10	0.8	0.72	0.64	0.56	0.48	

(3) 분야별 참여기술인 : 14점

○ 등급평가(4점)

-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3조(건설기술자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배 점 〉

등 급	중급이상	초 급
점 수	4	3

○ 경력평가(5점)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 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분야에 대한 설계, 시공, 시험, 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 감리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단, 설계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평가는 당해분야의 60%를 적용한다.(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100%를 인정한다.) 다만, 용역비 2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전문분야 외의 경력평가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경력은 해당기술인의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하는 경력으로 평가
- 참여 건설기술인이 발주부서·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 배 점 〉

경 력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5.0점)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등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

(단, 설계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 또는 0.2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발주청에서 입찰공고시 인정 기준 제시)

-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실적평가는 당해분야의 60%를 적용한다.(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100%를 인정한다.) 다만, 용역비 2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전문분야 외의 경력평가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용역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함(유사용역 실적 인정범위는 당해 용역 규모와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제한하지 못하며, 특히 용역비가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규모의 0.7배 이내에서 제한하여야 한다.)

- 용역의 특성에 따라 발주부서의 장이 정하는 기준으로 하되 기준은 최근 10년 동안 해당용역과 유사한 설계 참여실적(예 : 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의 경우 "도로 및 공항분야의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참여 실적 인정, 철도, 지하철, 고속철도, 택지개발, 구획정리, 단지조성, 운동장, 도시계획, 상하수도, 하천, 수자원, 항만, 사설물 보수보강,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은 불인정함" 등으로 구체적 명시)으로 참여기간, 실적건수, 실적금액, 실적규모(연장, 면적 등)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절대평가 한 결과를 배분율에 의거 평가 후 합산

- 해당기술인에 대한 위탁업무수행기관 또는 발주청 등이 발행한 유사용역수행 실적 중 공사명, 수행기간, 금액,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함

〈 배 점 〉

실 적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 분야별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평가와 같은 방법으로 점수 배분율을 정하여 평가함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 2점

○ 교육훈련(1점)

- 참여 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1점(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0.5점(1점)

※ ( )안의 배점은 당해 용역과 관련된 전차용역이 없는 경우 적용

○ 전차용역 수행실적(1점)

- 참여 건설기술인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전차용역이라 함은 당해 용역의 前단계 용역(「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용역으로 '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을 말하며 전차 용역준공일로부터 공고일 기준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하되 수행중이거나 완료되지 않은 전차용역의 실적은 발주부서가 발행한 실적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기성율 확인자료)를 첨부한 경우 기성율 부분에 대하여 실적을 인정
- 공동도급으로 해당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참여비율에 따라 적용하며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각 0.5점 적용함
- 전차용역을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 기술인의 평가는 용역참여 지분율만 산정하여 인정
- 당해 용역과 관련된 전차용역이 없는 경우 전차용역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

· 사업책임기술인 : 0.5점

용역완료 후 2년 미만	용역완료 후 2년 이상 3년 미만	용역완료 후 3년 이상 5년 미만	용역완료 후 5년 이상
0.5	0.4	0.3	0

· 분야별 책임기술인 : 0.5점

용역완료 후 2년 미만	용역완료 후 2년 이상 3년 미만	용역완료 후 3년 이상 5년 미만	용역완료 후 5년 이상
0.5	0.4	0.3	0

※ 예 : ○○공사 실시설계용역 : 6개월 전 준공된 동 공사 60%의 지분율로 기본설계 전차용역에 사업 책임기술인으로 참여한 A와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한 B, C 기술인이 금회 실시설계용역(분야별 기술인은 B, C 기술인 포함 4인)에 참여 신청을 한 경우 평가는 사업 책임기술인 0.3점[1.0점×0.6(지분율)×0.5점(사업 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 0.15점[1.0점×0.6(지분율)×0.5점(분야별 책임기술인)×2/4(인)]=0.45점임

나. 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 15점

-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건설공사의 용역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함(유사용역 실적 인정범위는 당해 용역규모와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제한하지 못하며, 특히 용역비가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규모의 0.7배 이내에서 제한하여야 한다.)
-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발주부서의 장이 정하는 기준으로 하되 기준은 최근 5년 동안 해당용역과 유사한 설계 참여실적(예 : 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의 경우 "도로, 공항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참여실적인정, 철도, 지하철, 고속철도, 택지개발, 구획정리, 단지조성, 운동장, 도시계획, 상하수도, 하천, 수자원, 항만, 시설물 보수·보강,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은 불인정함" 등으로 구체적 명시)으로 실적건수, 실적금액, 전차용역 수행실적에 따라 절대평가
  -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 발주청,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의 자료 확인
- 전차용역을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용역참여지분율만 인정, 공동도급으로 해당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참여비율에 따라 적용하며 직전단계 용역사업을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는 전체용역비에 대한 하도급금액 비율을 적용함
- 당해용역이 전차용역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
- 하나의 용역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용역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
-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용역에 인정되는 전차용역 및 인정범위, 인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
- 당해용역과 관련된 전차용역이 없는 경우 전차용역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유사용역수행실적 건수 또는 금액 배점에 합산

〈 배 점 〉

- 실적건수

실 적	2건 이상	2건 미만~ 1건 이상	1건 미만
점 수	6(7)	5.4(6.3)	4.8(5.6)

※ ( )안의 배점은 당해 용역과 관련된 전차용역이 없어 전차용역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을 유사용역수행실적 건수 배점에 합산하는 경우 적용

• 실적금액

실 적	35억 이상	35억 미만~30억 이상	30억 미만~20억 이상	20억 미만
점 수	6(7)	5.4(6.3)	4.8(5.6)	4.2(4.9)

※ ( )안의 배점은 당해 용역과 관련된 전차용역이 없어 전차용역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을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 배점에 합산하는 경우 적용

• 전차용역 수행실적

용역완료 후 3년 미만(해당업체)	해당업체 외 모든 업체
1.0	0.8

• 용역수행성과(2)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이상 86점 미만	86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용역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8" 또는 "1.6"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발주청에서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기준 제시)

다. 신 용 도 : 10점

(1)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7점)

- 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예 : 2개사가 50:50의 비율로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 이 중 1개사가 영업정지 등 제재 1개

월 있는 경우 [(0.2점×0.5)+(0점×0.5) = 0.1점 + 0 = 0.1점]

(2) 재정상태 건실도(3점)

○ 신용평가 등급(3점)

- 신용평가 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를 활용할 수 있다.

< 예시 : 신용평가 등급 기준 >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 소규모 용역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용역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 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 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 등급, 등급 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5점

(1) 개발실적(2점)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 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평가 합산 후 평가
  - 건설신기술 : 건당 2.0점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1.0점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5점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 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개발 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설계 등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설계 등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인정범위 등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사전에 입찰참가자에게 고지할 것

(2) 투자실적(10점)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설립 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설계 등 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 배 점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 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 분	1.50% 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 수	10.0	9.0	8.0	7.0	6.0

(3) 활용실적(3점)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마. 업무중복도 : 10점

- 발주부서에서는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 업체로부터 제출 받은 평가 자료를 7일 이상 시 홈페이지 또는 발주부서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 시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용역으로,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용역,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역으로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관리용역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당해용역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1) 사업 책임기술인(3점)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로서 업무하중(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합계를 금회 용역기간으로 나누어서 평가(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
-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한 경력확인서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 평가,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의 경우에는 참여 업체가 작성 제출한 참여 기술인의 용역 배치현황을 기초로 평가, 다만,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월 미만인 용역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 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에 따라 차등 평가

〈 배 점 〉

- 도로분야

중복율	250%미만	250%이상~350%미만	350%이상~450%미만	450%이상~550%미만	550%이상
점수	3.0	2.7	2.4	2.1	1.8

- 철도분야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400%미만	400%이상~500%미만	500%이상~600%미만	600%이상
점수	3.0	2.7	2.4	2.1	1.8

- 수자원분야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400%미만	400%이상~500%미만	500%이상~600%미만	600%이상
점수	3.0	2.7	2.4	2.1	1.8

- 상수도분야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400%미만	400%이상~500%미만	500%이상~600%미만	600%이상
점수	3.0	2.7	2.4	2.1	1.8

- 하수도분야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400%미만	400%이상~500%미만	500%이상~600%미만	600%이상
점수	3.0	2.7	2.4	2.1	1.8

- 국토도시분야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400%미만	400%이상~500%미만	500%이상~600%미만	600%이상
점수	3.0	2.7	2.4	2.1	1.8

- 기타분야(조경, 기계 등)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400%미만	400%이상~500%미만	500%이상~600%미만	600%이상
점수	3.0	2.7	2.4	2.1	1.8

(2) 분야별 책임기술인(4점)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로서 업무하중(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합계를 금회 용역기간으로 나누어서 평가(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
-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한 경력확인서 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 평가,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의 경우에는 참여 업체가 작성 제출한 참여 기술인의 용역 배치현황을 기초로 평가, 다만,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월 미만인 용역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 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에 따라 차등 평가

〈 배 점 : 용역의 특성 등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 〉

- 도로분야

중복율	250%미만	250%이상~350%미만	350%이상~450%미만	450%이상~550%미만	550%이상
점수	4.0	3.6	3.2	2.8	2.4

- 철도분야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400%미만	400%이상~500%미만	500%이상~600%미만	600%이상
점수	4.0	3.6	3.2	2.8	2.4

- 수자원분야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400%미만	400%이상~500%미만	500%이상~600%미만	600%이상
점수	4.0	3.6	3.2	2.8	2.4

- 상수도분야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400%미만	400%이상~500%미만	500%이상~600%미만	600%이상
점수	4.0	3.6	3.2	2.8	2.4

- 하수도분야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400%미만	400%이상~500%미만	500%이상~600%미만	600%이상
점수	4.0	3.6	3.2	2.8	2.4

- 국토도시분야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400%미만	400%이상~500%미만	500%이상~600%미만	600%이상
점수	4.0	3.6	3.2	2.8	2.4

- 기타분야(조경, 기계 등)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400%미만	400%이상~500%미만	500%이상~600%미만	600%이상
점수	4.0	3.6	3.2	2.8	2.4

(3) 분야별 참여기술인(2점)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로서 업무하중(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합계를 금회 용역기간으로 나누어서 평가(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
-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한 경력확인

서 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 평가,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의 경우에는 참여 업체가 작성 제출한 참여 기술인의 용역 배치현황을 기초로 평가, 다만,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월 미만인 용역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 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에 따라 차등 평가

〈 배 점 : 용역의 특성 등에 따라 분야별 참여기술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 〉

- 도로분야

중복율	250%미만	250%이상~350%미만	350%이상~450%미만	450%이상~550%미만	550%이상
점수	2.0	1.8	1.6	1.4	1.2

- 철도분야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400%미만	400%이상~500%미만	500%이상~600%미만	600%이상
점수	2.0	1.8	1.6	1.4	1.2

- 수자원분야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400%미만	400%이상~500%미만	500%이상~600%미만	600%이상
점수	2.0	1.8	1.6	1.4	1.2

- 상수도분야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400%미만	400%이상~500%미만	500%이상~600%미만	600%이상
점수	2.0	1.8	1.6	1.4	1.2

- 하수도분야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400%미만	400%이상~500%미만	500%이상~600%미만	600%이상
점수	2.0	1.8	1.6	1.4	1.2

- 국토도시분야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400%미만	400%이상~500%미만	500%이상~600%미만	600%이상
점수	2.0	1.8	1.6	1.4	1.2

- 기타분야(조경, 기계 등)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400%미만	400%이상~500%미만	500%이상~600%미만	600%이상
점수	2.0	1.8	1.6	1.4	1.2

(4) 실무기술인(1점)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로서 업무하중(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

에 따라 차등 평가

- 용역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합계를 금회 용역기간으로 나누어서 평가(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
-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한 경력확인서 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 평가,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의 경우에는 참여 업체가 작성 제출한 참여 기술인의 용역 배치현황을 기초로 평가, 다만,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월 미만인 용역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 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에 따라 차등 평가

〈 배 점 : 용역의 특성 등에 실무기술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 〉

- 도로분야

중복율	250%미만	250%이상~350%미만	350%이상~450%미만	450%이상~550%미만	550%이상
점수	1.0	0.9	0.8	0.7	0.6

- 철도분야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400%미만	400%이상~500%미만	500%이상~600%미만	600%이상
점수	1.0	0.9	0.8	0.7	0.6

- 수자원분야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400%미만	400%이상~500%미만	500%이상~600%미만	600%이상
점수	1.0	0.9	0.8	0.7	0.6

- 상수도분야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400%미만	400%이상~500%미만	500%이상~600%미만	600%이상
점수	1.0	0.9	0.8	0.7	0.6

- 하수도분야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400%미만	400%이상~500%미만	500%이상~600%미만	600%이상
점수	1.0	0.9	0.8	0.7	0.6

- 국토도시분야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400%미만	400%이상~500%미만	500%이상~600%미만	600%이상
점수	1.0	0.9	0.8	0.7	0.6

- 기타분야(조경, 기계 등)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400%미만	400%이상~500%미만	500%이상~600%미만	600%이상
점수	1.0	0.9	0.8	0.7	0.6

4. 수행실적평가서 작성방법

가. 제출서류 명세

(1) 용역참여 신청서 1부

(2) 용역관련 해당 등록증 사본 각1부

(가)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나) 설계업 등록증(전력)

(다)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 및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회원수첩

(3)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공동도급 시 : 공동수급 협정서 1부 첨부)

나. 서류 작성 방법

(1) 페이지 수 : 제한 없음

(2) 인쇄 및 제본

(가) 용지크기 : A4(210mm / 297mm)

(나) 재 질 : 백상지(80g/㎡), 양면인쇄

(다)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 조판인쇄

(라) 제본방법 : 무선 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마) 제본순서

1) 설계 등 용역 수행실적 평가서 표지서식 (양식1)

2) 용역참여 신청서 (양식2)

3) 용역관련 등록증 사본

4) 공동수급 협정서

5) 공동수급 협정 체결현황 (양식3)

6) 참여기술인 자격사항 (양식4)

7)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양식5)
8) 기술인보유현황 확인서
9) 사업 책임기술인 경력확인서
10)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확인서
11) 분야별 참여기술인 경력확인서
12) 참여 기술인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식6)
13) 회사 유사용역 사업수행 실적 (양식7)
14) 관련 협회발행 실적 증명서
15) 기술용역 실적 증명서 (양식8)
16) 업체 영업정지 및 기술인 자격업무정지등 (양식9)
17) 업무정지 및 제재 현황 확인서
18)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양식10)
19) 세무서 발급 최근 재무제표 증명원
20)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양식11)
21)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양식12)
22) 참여기술인 교육실적 (양식13)
23) 전차용역과 관련된 사항 (양식14)
24) 전차용역 실적 증명서
25) 벌점 관련 사항 (양식15)
26)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 확인서 사본
27)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양식16)
28)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17)
29)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18)
30)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19)
31)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 (양식20)
32)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21)

(3)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가)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 여백에 업체 대표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공동 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한다.

②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나)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한다.

다) 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는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양식 1]

접수번호	

설계 등 용역 수행실적 평가서

용 역 명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양식 2]

용 역 참 여 신 청 서

수 신 :

참 조 :

제 목 : 설계 등 용역사업자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

아래 용역에 대한 "설계 등 용역사업자 수행실적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용 역 명 :

붙임 : 설계 등 용역사업자 수행실적 평가서 1부. 끝.

20 . . .

회사명 :

주 소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양식 3]

공동수급 협정 체결현황

<table>
<tr><th>구분</th><th>업체명</th><th>주소</th><th>대표자</th><th>전화</th><th colspan="2">출자비율</th><th>비고</th></tr>
<tr><td rowspan="3">공동이행</td><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d></td></tr>
<tr><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d></td></tr>
<tr><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d></td></tr>
<tr><td rowspan="5">분담이행</td><td rowspan="2">업체명</td><td rowspan="2">주소</td><td rowspan="2">대표자</td><td rowspan="2">전화</td><td colspan="2">분담내용</td><td rowspan="2">비고</td></tr>
<tr><td>업종</td><td>비율</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계</td><td></td><td></td><td></td><td></td><td colspan="2">100%</td><td></td></tr>
</table>

[양식 4]

참여 기술인 자격 사항

구 분		분 야	등급	주민등록번호	자 격 내 용		학력 내용		소속회사	비고
					자격명	취득일	최종학력	취득일		
사업책임기술인	○ ○ ○									
분야별책임기술인	○ ○ ○									
	○ ○ ○									
	○ ○ ○									
	○ ○ ○									
	○ ○ ○									
분야별참여기술인	○ ○ ○									
	○ ○ ○									
	○ ○ ○									

첨부 : 1. 자격증 사본
2. 기술인 경력 확인서 1부.

[양식 5]

참여 기술인 경력사항

구 분		성 명	현재까지 경력	평 점	비고
사업책임기술인			년 개월		
분야별 책임 기술인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분야별 참여 기술인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 현재까지의 경력은 소지한 자격과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해당분야 설계경력 기재

첨부 : 설계용역 수행실적 확인서(건설기술인 위탁업무수행기관 또는 발주부서 등 확인)

[양식 6]

참여기술인 유사용역 수행실적

성명	용역명	금액 (백만원)	평가대상 실적		사업기간		참여기간	
			공종	규모	계약일	준공일	착수일	종료일
	소 계 건	( )	소계	( )				
	소 계 건	( )	소계	( )				

※ 유사용역 참여실적은 주 공종분야 설계참여 실적으로 참여기간, 실적건수, 실적금액, 실적규모 중 발주부서가 정하는 실적을 기재

첨부 : 설계용역 수행실적 확인서 사본(건설기술인 위탁업무수행기관 또는 발주부서 등 확인)

[양식 7]

회사 유사용역 사업수행 실적

업체명	용 역 명	금액 (백만원)	발주 기관	용역기간 (년/월/일)		평가대상 실적		지분율 (%)
				착공	준공	공종	규모	
	소 계 건	( )				소계	( )	

※ 최근 5년 이내에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해당 용역과 유사한 주 공종분야 설계수행 실적으로 건설기술인 위탁업무수행기관 또는 엔지니어링 진흥협회 등 증빙자료 첨부

※ 건축인 경우 참여한 건축사(사업책임 또는 건축분야 책임기술인)의 경력확인서에 기재된 실적 중 해당분야(공고에 명시) 유사용역 사업수행 실적임

첨부 : 설계용역 수행실적 확인서 사본(건설기술인 위탁업무수행기관 또는 발주부서 등 확인)

[양식 8]

기술용역 실적증명서

<table>
<tr><td rowspan="4">신청인</td><td>업체명 (상호)</td><td colspan="3"></td><td>대 표 자</td><td></td></tr>
<tr><td>영업소재지</td><td colspan="3"></td><td>전 화 번 호</td><td></td></tr>
<tr><td>사업자번호</td><td colspan="3"></td><td>제 출 처</td><td>서울시</td></tr>
<tr><td>증명서 용도</td><td colspan="3">적격심사 신청용</td><td></td><td></td></tr>
<tr><td rowspan="4">용역 수행실적 내용</td><td>용 역 명</td><td colspan="2"></td><td>구 분</td><td colspan="2">설계( ) :
건설사업관리( ) :
기타( ) :</td></tr>
<tr><td>용 역 개 요</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계 약 번 호</td><td rowspan="2">계약일자</td><td rowspan="2">계약기간</td><td rowspan="2">계약규모</td><td colspan="2">이행실적</td><td rowspan="2">비 고</td></tr>
<tr><td>공동비율</td><td>실 적</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4">증명서 발급기관</td><td colspan="6">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td></tr>
<tr><td colspan="6">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td></tr>
<tr><td colspan="6">주 소 : (FAX번호:)</td></tr>
<tr><td colspan="3">발급부서 :</td><td colspan="3">담당자 : (인)</td></tr>
</table>

※ ① 민간회사 실적은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기술용역 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 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④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

[양식 9]

업체 영업정지 및 기술인 자격·업무정지등

업체명 및 기술인성명	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 유 요 약
	~			
	~			
	~			
계				

※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업체가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사항과 기술인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

첨부 : 각 관련기관의 확인서

[양식 10]

신 용 평 가 등 급 확 인 서(설계 등, 건설사업관리)

○ 신용평가등급 현황

구 분	신용평가등급	해당점수	참여지분율	평가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공고일 포함)에 평가하여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붙임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양식 11]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구 분	업 체 명	명 칭	등록일시 (출원일)	경과기간	점 수 (건당점수×가중치)
건설신기술					
	소 계				
	소 계				
특 허 및 실용신안					
	소 계				
	소 계				
계					

※ 1) 해당용역에 필요 유무 관계없이 작성

2) 동일건으로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한건으로 인정 함

첨부 : 인증서 및 증명서 사본, 등록권리자 확인원(공고일 1년 이내 발급)

○ 활용실적

구 분	업 체 명	명 칭	활용실적		비고
			건수	금액(천원)	
건설신기술					
	소 계				
	소 계				
특 허 및 실용신안					
	소 계				
	소 계				
계					

※ 1) 해당 용역에 필요 유무 관계없이 작성

2) 동일 건으로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한 건으로 인정 함

첨부 : 1. 인증서 및 증명서 사본

2. 활용실적 증명서(한국건설신기술협회)

○ 투자실적

업체명	1년차			2년차			3년차			계	비고
	A	B	A/B ⓐ	A	B	A/B ⓑ	A	B	A/B ⓒ		
가										(ⓐ+ⓑ+ⓒ)/3 × 참여 지분율	
나										(ⓐ+ⓑ+ⓒ)/3 × 참여지분율	
계										가 + 나	

※ 1. A : 건설기술 개발 투자액, B : 건설부문 총 매출액

첨부 : 3개년 재무제표

[양식 12]

참여기술인 업무 중복도

구 분 (성 명)		용역 업무 현황					비 고 (용역중단 여부 등)
		용역명	발주부서	용역비 (백만원)	참여기간		
					배치일	종료일 (예정일)	
사업 책임기술인 ○ ○ ○							
		소 계 건		( )			
분야별 책 임 기술인	○○○						
		소 계 건		( )			
	○○○						
		소 계 건		( )			
분야별 참 여 기술인	○○○						
		소 계 건		( )			
실 무 기술인	○○○						
		소 계 건		( )			

※ 참여 기술인의 건설기술인 위탁업무수행기관에서 발행한 경력 확인서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과 관련 협회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 중인 용역을 모두 기재

[양식 13]

참 여 기 술 인 교 육 실 적

○ 참여 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이수한 교육실적

참여 건설사업관리원 성명	교육 과정명	교육 기간	비 고
점 수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		

첨부 : 지정기관 발행 지정서 또는 그 사본

[양식 14]

전차 용역과 관련된 사항

1. 전차 용역사업자 평가

용 역 명	용역 개요	발주처	용역 기간	준공후 경과기간	전차용역 참여비율	금회용역 참여비율	비고 (진행중용역의 기성율)
			~				
			~				

2. 전차용역 참여기술인 평가

용 역 명	성 명	참 여 당시역할	전차설계의 종류	준 공 후 경과기간	금회용역 분야의 수	참여기간(연/월/일)		비고 (진행중용역의 기성율)
						시작일	완료일	

※ 전차용역 참여기술인으로서 해당 설계용역 참여기술인으로 포함되었을 경우에 한함.
(용역기간의 1/2 미만 참여기술인은 인정하지 아니함)

첨부 : 발주부서 발행 실적증명서 등 (용역의 종류, 참여 기술인 명단 및 참여 기간 명시)

[양식 15]

벌점 관련 사항

○ 참여업체 및 참여 기술인이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벌점에 따라 평가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측정기관	누계벌점	벌점점수	비 고
계				

[양식 16]

○○용역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20 . .

업 체 명

210mm×297mm
(백상지 80g/㎡)

1. 기술능력 평가서

1.1 해당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해당 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시행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내에 시행한 용역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 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해당 용역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 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 관리능력 평가서

2.1 해당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 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해당 용역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용역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 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조직 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 (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용역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해당 용역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양식 17]

제200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table>
<tr><td rowspan="4">신 청 인</td><td>업체명 (상호)</td><td colspan="2"></td><td>대표자</td><td colspan="2"></td></tr>
<tr><td>영업소재지</td><td colspan="3"></td><td>전화</td><td></td></tr>
<tr><td>사업자번호</td><td colspan="3"></td><td>팩스</td><td></td></tr>
<tr><td>증명서용도</td><td colspan="2"></td><td>제출처</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10">연구수행
실적내용</td><td>사 업 명</td><td colspan="2"></td><td>과제유형</td><td colspan="2"></td></tr>
<tr><td>연구과제명</td><td colspan="2"></td><td>총연구기간</td><td colspan="2"></td></tr>
<tr><td>연 구 내 용
(요약)</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8">기업부담금 내역</td><td>구 분</td><td>참여형태</td><td>연구수행(참여)기간</td><td>기업부담금(현금)</td><td colspan="2">비고</td></tr>
<tr><td>1차년도</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2차년도</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3차년도</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4차년도</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5차년도</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합 계</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7">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td></tr>
</table>

[양식 18]

해외설계 수행실적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용 역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처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지분율 %)			
5) 신 청 자 (대 표)	5-1)회사명		5-2)면허번호		5-3)대 표 자		
	5-4)영업소재지				5-5)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용역규모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 물량은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용 역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처		

[양식 19]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용역					
1) 공 사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참여기술인	○○○				개월
5) 실무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발 주 처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공 사 명		

[양식 20]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3쪽 중 제1쪽)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

1. 회사개요

등록번호		등록일		전문분야		관리번호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2. 제재처분 내용

연월일	제재종류	처분기관	사유 및 기간	용역명

3.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현황 (금액: 백만원)

구분	합계		계획·조사		설계		건설사업관리				공동주택·다중이용건축물 감리		기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그 밖의 건설사업관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완료														
진행 중														
교체율(최근 1년간)			%		배치 총원			명		교체 총원			명	

가. 완료된 용역

일련번호	용역종류	용역명	계약기간	사업개요(총공사비/사업규모)	발주청(인허가기관)	용역비(백만원)

작성방법

1. 제재처분 내용은 제재처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의 제재 내용을 기재합니다.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현황의 교체율, 배치 총원, 교체 총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용역에 한정하여 산정합니다.
3. 완료된 용역의 사업개요 중 총공사비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4. 진행 중인 용역의 공사개요 중 총공사비 및 공사기간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5. 참여기술인 현황의 구분란은 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분야별 참여기술인/기술지원기술인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3쪽 중 제2쪽)

○ 관리번호: ○ 회사명:

나. 진행 중인 용역

용역명				용역종류	
발주청 (인허가기관)			계약기간	. . ~ . .	
사업규모				공종	
계약 및 이행 내용	구분	금액(백만원)	계약 또는 이행 기간		용역이행비율
	전체		~		%
	기성분		~		
	금차계약분		~		
	향후잔여분		~		
공사개요	총공사비	백만원	공사기간	. . ~ . .	

○ 참여기술인 현황

구분	계	등급별				직무분야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토목	건축	기계	기타
참여인원									

일련번호	구분	분야	성명	생년월일	기술인등급	참여기간	비고
						~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3쪽 중 제3쪽)

○ 관리번호: ○ 회사명:

4. 벌점

일련번호	연도/반기 구분	측정기관	용역명	부실사례	벌점	반기 평균 벌점	누계평균 벌점
발 급 용 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7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 직인

[양식 21]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

제Ⅰ장.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3절. 기술인평가서에 따른 평가(기술인평가서 평가) 세부기준

제3절 기술인평가서에 따른 평가(기술인평가서 평가) 세부기준

1. 일반사항

가. 목적

이 기준은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의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해 기술인 평가 제도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업무수행 시 담당실무자의 이해를 돕고 평가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기하는 데 있다.

나. 용어의 정의

(1) "기술인 평가 적격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중 수행실적 평가결과 90점 이상을 확보한 자로서 기술인평가서 제출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기술인 평가서 제출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으로 15위 까지를 기술인 평가서 제출 자격을 부여한다.

(2) "입찰참가 적격자"는 기술인 평가 적격자 중 기술인 평가서 평가를 통해 85점 이상을 얻은 자로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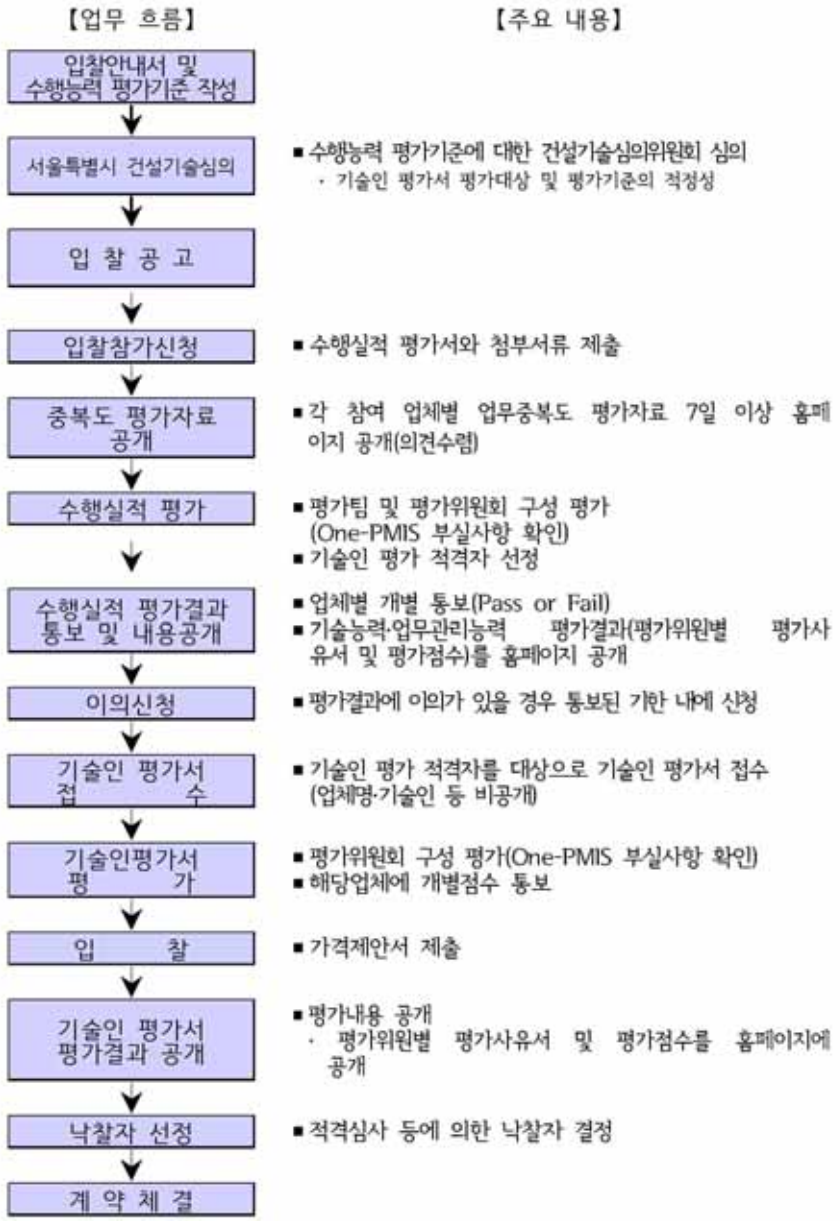
(3) "기술인 평가서"는 입찰자가 입찰참가자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하기 위해 해당 용역에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경력 및 역량을 갖춘 참여기술인,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제안하는 입찰 제출문서를 말한다.

(4)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평가"는 기술인 평가서 평가의 핵심요소로서 해당 용역에 참여하는 설계팀의 구성체계, 설계팀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경험, 업무중복도 등을 제출받아 해당 용역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인의 기술능력과 경험이 요구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수행계획 및 방법"은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 및 해당용역 적용성 등에 대한 내용을 제출받아 해당용역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인의 기술능력과 업무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기술인 평가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입찰안내서 및 발주부서에서 정하는 기술인평가서 평가규정에 따라 해당 발주부서에서 기술인 평가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다. 기술인평가서 평가에 따른 용역사업자 선정절차



(1) 발주부서는 입찰공고 전에 기술인 평가서 평가 대상의 적정성 및 입찰 공고문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발주부서의 장은 입찰공고 시 해당 설계용역이 기술인평가서 평가대상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공고하여야 한다.

(3) 해당 설계용역 입찰 공고문에는 기술인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작성지침, 평가항목 등 입찰자가 기술인 평가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일체를 첨부하여야 한다.

(4) 발주부서는 해당 설계용역의 입찰자가 수행실적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수행실적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세부내용은 본 절 4.기술인평가서 작성방법에 따른다.

(5) 수행실적 평가는 제1장 제2절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수행실적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6) 발주부서는 수행실적 평가결과 및 기술인 평가서 평가 참여 적격여부를 해당 입찰자에게 통보하며, 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 평가결과(평가위원별 평가 사유서 및 평가점수)를 시 홈페이지 또는 발주부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7) 수행실적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입찰자 중 기술인 평가 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기술인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8) 발주부서는 입찰자가 기술인 평가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 하여야 하며, 기술인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제시한다.

(9) 발주부서는 입찰자가 제출한 기술인 평가서가 제시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0) 기술인 평가서의 평가는 해당 설계용역에 대한 "기술인 평가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11) 발주부서의 장은 기술인 평가서 평가결과를 해당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결과를 통보받은 입찰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발주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다.

(12) 기술인평가서 평가결과는 평가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점수를 시 홈페이지 또는 발주부서 홈페이지에 실명 공개하여야 한다.

(13) 발주부서의 장은 해당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된 최종 기술인평가 결과를 계약부서에 통보하고 계약부서의 장은 공고된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

(14)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설계용역 입찰에 참여할 경우

-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수행방법, 기타 등 "주관적 평가항목" 평가시 부실(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또는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평가위원에게 관련 자료 제공 시 업체가 특정되지 않도록 익명 조치(업체명 비공개 등)를 하여야 한다.)
  - 부실 또는 유착비리 사항은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구분 없이 적용하되, 공동도급으로 참여사에도 지분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하고
  -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품질사고 또는 최근 5년내 안전사고 관련 입찰참가제한·효력상실·영업정지·자격정지 요구 등 행정처분 요청사항, 최근 1년내 품질사고 관련 벌점부과사항)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운영 중인 One-PMIS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에 활용하여야 한다.
  -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지정현황)는 재무국(재무과)에서 운영하는 서울계약마당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 활용하여야 한다.(※ 공사·공단 등은 재무부서 '공공구매 실적관리' 담당을 통해 시스템 자료 검색)

※ 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는 용역발주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에 대한 책임성과 경각심 고취 및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

라. 용역의 공고 및 입찰 등록

(1) 사전준비

(가) 발주부서는 해당 사업이 기술인 평가서 평가용역 선정 금액조건을 충족 하더라도 특별한 설계 경험, 소량의 국내 설계실적, 신기술·신공법 등 기술인 평가서 평가가 필요한 용역인가를 충분히 검토하여 기술인 평가서 평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발주부서는 해당 사업이 기술인 평가서 평가가 필요한 사업인지를 결정하기에 앞서 기술인 평가서 평가를 통해 얻고자 하는 용역의 목적과 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의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다) 발주부서는 기술인 평가서 평가대상 설계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계용역의 특성에 맞는 기술인 평가서 작성에 관한 세부지침과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2) 입찰안내서의 작성

(가) 입찰 안내서는 발주부서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유형, 규모, 조건 등 제반 특성을 반영하여 각 사업별로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입찰 안내서에는 사전준비 과정에서 결정된 기술인 평가서의 평가 목적과 기술능력, 업무관리 능력의 수준에 따라 수행계획, 수행방법, 평가항목 및 배점범위 등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입찰 안내서의 일반적 포함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사항(기술인 평가서 평가대상임을 명시)

2) 수행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술인 평가서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술인 평가서 작성지침

5) 입찰에 관한 사항

6) 부록(관련 양식 등)

(라) 입찰안내서에 포함될 사항은 사업의 특성 및 입찰방법 등을 고려하여 발주부서가 추가 또는 삭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마) 입찰안내서에 포함될 사항에는 기술인 평가서 평가와 관련된 사항 뿐 만 아니라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바) 입찰안내서에는 낙찰된 용역업체의 기술인 평가서를 용역계약문서로 정한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 기술인 평가서 입찰안내서의 일반적 포함사항 ≫

제1장 일반사항
1. 사업의 개요(사업의 목적, 개요, 기술인평가서 평가의 목적 및 방법 등)
2. 입찰안내서 유의사항
3. 입찰일정 및 제공자료(발주부서 제공 열람 및 제공자료 목록 제시)

제2장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관한 사항
1. PQ심사 개요
2. 입찰참가자의 자격요건
3. 제출서류
4. 심사기준 및 방법
5. 심사결과의 통보

제3장 기술인평가서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1. 기술인평가서 평가 개요
2. 기술인평가서 제출자의 자격요건
3. 제출서류
4. 심사기준 및 방법(실격 및 감점기준 포함)
5. 심사결과의 통보

제4장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
1. 일반사항
2. 기술인평가서의 구성
3. 기술인평가서 작성 일반사항(참여기술인에 대한 경력, 실적 등)
4. 수행계획 및 방법 작성지침(과업의 이해도, 단계별 작업계획, 예상문제점 및 처리대책 등)

제5장 기술인평가서 평가운영에 관한 사항
1. 평가 일반사항
2. 평가위원회 운영방법
3. 기술인평가서 평가 절차 및 방법
4. 평가세부기준
5.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방식

제6장 입찰에 관한 사항
1. 일반사항
2. 가격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식
4. 기타 특기사항

부록
1. 관련 양식
2. 참고자료

(3) 입찰공고

(가) 발주부서는 입찰공고 전에 기술인 평가서 평가 대상의 적정성 및 평가세부기준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나) 발주부서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려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에 입찰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발주부서는 입찰희망자에게 평가 세부기준을 배부 또는 공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발주부서는 낙찰된 용역업체의 기술인 평가서를 용역 계약문서로 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항을 입찰 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마) 발주부서는 입찰희망자가 기술인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미리 확보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바) 기술인평가서 평가와 관련한 입찰공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술인 평가서 평가 대상 설계용역 사업명

2) 사업 시행기관

3) 참여 기술인의 경력, 실적 등에 대한 요구조건(구체적)

4) 예정 용역비

5) 입찰일정

6) 수행실적 평가 면제 업체에 대한 특례에 관한 사항

7)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8) 기타 기술인 평가서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사항

(사) 발주부서는 기술인 평가서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용역업체 또는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 시 명시하여야 한다.

(아) 제공 자료의 목록은 다음과 같으며, 용역의 성격 및 특성에 맞게 발주부서가 제공자료를 변경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입찰안내서(기술인 평가서 작성 지침서 및 관련 서식 포함)

2) 위치도

3) 부지 및 토지이용 현황도

4) 관련 계획 등

(4) 제출도서의 목록 및 제출방법

(가) 기술인평가서 평가를 통한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을 위해 제출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는 기술인평가서 제출신청서, 기술인평가서, CD 또는 DVD, 청렴서약서 등이 있으며, 발주부서는 용역의 성격에 맞게 제출도서의 범위와 종류를 선택하여 입찰시 공고하여야 한다.

(나) 제출도서의 목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술인평가서 제출신청서(양식1)

2) 기술인평가서(양식2)

3) 제출도서 내용이 담긴 USB, CD 또는 DVD (책임기술인 발표 시 발표내용 포함)

4) 청렴서약서(양식5)

5) 기타 발주부서가 평가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사전 명시)

(다) 제출도서의 제출방법은 인편을 통한 직접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택배나 우편 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수방법, 도착기한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2. 평가기준

가. 평가항목별 배점 및 평가방법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 (70)		- 참여기술인의 경력	30	수행실적 평가점수를 환산하여 적용
		-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20	
		- 설계팀의 구성체계	5	기술인평가위원회에서 상대평가의 방법으로 평가하되, 수행방법(10), 기타(5) 평가시는 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 또는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 실시
		- 설계팀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경험	5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10	
수행계획 및 방법 (30점)	수행계획 (15)	-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 해당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 · 과업단계별 주요업무	3	
		-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5	
		-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	5	
		- 문제점 분석 및 처리대책	2	
	수행방법 (10)	-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 및 해당용역 적용성	10	
	기타(5)	- 책임기술인의 발표 및 면접	5	

※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설계용역 입찰에 참여시 수행방법, 기타 등 "주관적 평가 항목" 평가시 부실(품질 및 안전사고 등) 또는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One-PMIS(부실), 서울계약마당(유착비리) 자료 활용하고 평가위원에게 관련 자료 제공 시 업체가 특정되지 않도록 익명 조치(업체명 비공개 등)를 하여야 한다.)

나. 세부평가항목별 평가등급 및 평가등급별 가중치

<상대평가 시 신청자 수별 평가등급 배분>

-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율 :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

업체수	등급					업체수	등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7	2	3	7	3	2
4	1	2	1			18	2	4	7	3	2
5	1	2	1	1		19	2	4	7	4	2
6	1	2	1	1	1	20	2	4	8	4	2
7	1	2	2	1	1	21	2	4	9	4	2
8	1	2	3	1	1	22	2	5	9	4	2
9	1	2	3	2	1	23	2	5	9	5	2
10	1	2	4	2	1	24	2	5	10	5	2
11	1	2	5	2	1	25	3	5	10	5	2
12	1	3	5	2	1	26	3	5	10	5	3
13	1	3	5	3	1	27	3	5	11	5	3
14	1	3	6	3	1	28	3	6	11	5	3
15	2	3	6	3	1	29	3	6	11	6	3
16	2	3	6	3	2	30	3	6	12	6	3

※ 참여업체수가 30개 초과 시 등급별 배분율을 위 배분표를 기준으로 등급별 업체수 결정

<평가등급별 가중치>

- 평가등급별 가중치는 평가항목별(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로 구분 적용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수	우	미	양	가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	설계팀의 구성체계	1.00	0.98	0.96	0.94	0.92
	설계팀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경험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수행계획 및 방법	수행계획	1.00	0.95	0.90	0.85	0.80
	수행방법					
	기타(면접발표)	1.00	0.90	0.80	0.70	0.60

다. 기본사항

(1)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의 세부평가 항목 중 참여기술인의 경력,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방법은 수행실적 평가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의 경력 환산 점수

→ "수행실적" 참여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 평가점수(배점 27점) × 30/27

(나)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환산점수

→ "수행실적" 유사용역 실적 평가점수(배점 18점) × 20/18

(2) 기술인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설계팀의 구성체계, 설계팀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경험, 참여 기술인의 업무중복도)과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한 평가방법은 기술인평가서 평가대상자를 기준으로 세부평가 항목별로 상대평가 하여 평가 등급을 결정하고 세부 평가항목별 배점에 해당 등급별 가중치를 곱하여 항목별 점수를 산출한다.

(3) 기술인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상대평가 항목에 대한 최종점수는 항목별 점수의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단,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예시) 상대평가 항목별 점수의 합계점수에 따른 최종점수 산정

구분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위원6	최종점수
A업체	42.5(제외)	48.9	48.5	49.0	49.0(제외)	48.6	48.75
B업체	48.5	47.8	46.9	46.5(제외)	48.0	49.1(제외)	47.80
⋮	⋮	⋮	⋮	⋮	⋮	⋮	⋮

(4) 발주부서는 기술인평가서의 작성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다.

(5) 발주부서는 기술인평가서의 평가 시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인평가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정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구 내용은 모든 참여업체에 공지하여야 하며, 보완 요구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되, 익명성(업체명, 기술인 등)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6) 발주부서는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술인평가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7) 발주부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평가사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실명 공개하여야 한다.

3.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방법

가. 위원회의 구성

(1) 발주부서는 기술인평가서 평가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인평가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2) 평가위원은 우리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발주기관의 기술자문위원회 등 전문분야별 외부 심의위원과 5급 이상 공무원(내부 심의위원)을 원칙으로 선정한다. 내부 심의위원은 평가위원의 50% 이내로 구성하며, 발주부서가 소속된 실·국의 공무원을 제외한 타 실·국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선임한다.

이 경우 본부 산하 기획관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도시철도국 등은 각각 실·국으로 본다.

(3) 평가위원회는 용역의 성격과 특성을 고려하고 전문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5인 이상~10인 이내로 구성한다.

(4)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발주기관 내부직원(발주부서가 소속된 실·국의 공무원을 제외한 타 실·국 소속 공무원) 중 4급 공무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 내부직원으로 선임이 곤란한 경우는 평가위원 중에서 발주부서장이 지명한 평가위원이 위원장이 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지휘·총괄하며,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5) 발주부서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위 각호의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나. 평가위원의 선정

(1) 선정절차

후보위원 명부작성(평가전일) → 연락순서 추첨(평가당일 오전) → 연락 및 수락순서에 의해 선정 → 평가위원회 개최

(2) 평가위원 후보위원 명부작성

선정 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으로 명부를 작성하되 후보위원별 무작위로 정렬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밀봉·보관

(3) 연락순서 추첨

선정 예정인원의 일정 배수까지 고유번호가 부여된 후보자 명부의 번호지를 입찰 참가업체가 직접 추첨(입찰 참가업체 미 참석 시 발주부서 직원이 추첨)

(4) 연락 및 선정

(가) 입찰 참가업체 입회하에 명부 개봉

(나) 추첨순서에 따라 후보위원 참석여부 유선 확인(통화 기록지 작성 보관)

(다) 수락 순으로 위원 선정하고 소요인원이 확정되면 종결

(5) 평가위원 공개

선정된 위원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평가결과 발표 시 공개한다. 단, 선정된 위원 중 입찰 참가업체와의 이해관계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공개할 수 있다.

다. 평가위원회의 운영

(1) 발주부서는 기술인평가서 평가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2) 발주부서는 평가 시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에게 사업의 특성, 사업개요, 중점평가사항 등을 설명할 수 있다.

(3) 감점기준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끝난 후 평가결과 점수를 토대로 위원장 주관하에 합산과정에서 별도 적용하여야 한다.

(4) 평가위원은 공정한 평가와 비밀유지 등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양식3)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술인평가서의 평가는 익명(업체명, 기술인 등)을 전제로 작성된 기술인평가서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발주부서는 업체별 발표 및 개별질문이 완료된 후 비공개로 평가위원 간 종합토론회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행계획 및 방법의 발표 및 면접 운영

(1) 발주부서는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한 책임기술인의 발표 및 면접을 통해 책임기술인을 포함한 기술인의 기술능력과 업무관리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2)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설계용역 입찰에 참여할 경우

-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수행방법, 기타 등 "주관적 평가항목" 평가시 부실(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또는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평가위원에게 관련 자료 제공 시 업체가 특정되지 않도록 익명 조치(업체명 비공개 등)를 하여야 한다.)
  - 부실 또는 유착비리 사항은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구분 없이 적용하되,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에도 지분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하고
  -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품질사고 또는 최근 5년내 안전사고 관련 입찰참가제한·효력상실·영업정지·자격정지 요구 등 행정처분 요청사항, 최근 1년

내 품질사고 관련 벌점부과사항)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운영 중인 One-PMIS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에 활용하여야 한다.

-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지정현황)는 재무국(재무과)에서 운영하는 서울계약마당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 활용하여야 한다.(※ 공사·공단 등은 재무부서 '공공구매 실적관리' 담당을 통해 시스템 자료 검색)

※ 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는 용역발주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므로써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에 대한 책임성과 경각심 고취 및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

(3)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한 발표 및 면접은 책임기술인이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기술인평가서 평가 시에 익명성(업체명, 기술인 등)이 확보된 별도의 설명자료(파워포인트)를 평가위원에게 인쇄물로 배포할 수 있다.

(5) 책임기술인 발표 및 면접 시는 해당 당사인만 참석 가능하고 컴퓨터 조작 등을 위한 별도의 인원에 대한 참석은 허용하지 않는다. (발표 당사자가 컴퓨터 등 기기 직접 조작)

(6) 발주부서가 판단하기에 익명성 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평가위원이 피면접자의 신원을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대면 조치(익명성이 보장된 사전에 녹음된 발표자료로 대체, 가림막 설치 등)를 하여야 한다.

(7) 기술인평가서의 발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가) 기술인평가서 발표 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하여 정하며, 발표자는 타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나) 발표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10분(입찰공고에 명시) 이내에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도록 하며, 작성내용은 제출된 기술인평가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만약, 기술인평가서와 작성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평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다)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의 질의사항 중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질문하거나 대답을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질의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마. 평가기준 및 입찰참여 적격자 선정방법

(1) 발주부서는 기술인평가서 평가에 따른 방법으로 설계 등 용역사업자 선정 시는 수행능력(수행실적 + 기술인 평가서) 평가기준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 심의내용

1) 평가서류의 오류 등에 대한 적용여부 등

2) 기타 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발주부서의 사전심사 및 설명내용

(가) 발주부서는 입찰공고에 따라 제출된 기술인평가서 등 입찰서류를 기술인평가서 평가 이전에 사전심사하여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제규정 및 지침사항, 감점기준 등의 위배사항을 체크리스트(Check-List)로 작성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나) 발주부서의 사전심사 시에는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인평가서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은 배제하여야 한다.

(3) 감점기준

(가) 감점기준은 해당 기술용역 관련 규정(입찰유의서 등)과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 위반사항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공사의 성격 및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나) 감점기준의 주요 항목은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하며, 발주부서의 판단하에 추가 및 삭제할 수 있다.

1) 익명성을 위반하는 표지(標識)사용(업체명·기술인 표기, 암호 기재 등)

2) 지정 도서매수 초과 및 누락

3) 칼라 사용 위반

4)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 위반 등

(다) 감점기준은 입찰공고시에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 감점기준에 대한 예시 〉

평가항목	감점기준 (감점 및 실격)	감점 및 실격사항	비고
기술인평가서	- 익명성을 위반하는 표지(標識)사용(업체명·기술인 표기, 암호 기재 등)	실격처리	
	- 쪽수초과	쪽당 0.5점	
	- 항공사진·투시도·조감도·시뮬레이션 사용, 3D 효과, 일러스트 편집, 바탕면·여백부 치장	쪽당 0.5점	
	- 칼라 사용 위반	쪽당 0.5점	
	-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	쪽당 0.5점	
	- 표지, 제출서, 양식 미사용시	쪽당 0.5점	
책임기술인 발표	- 발표시간 초과	0.1점	
비리감점	1.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	3점	
	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	2점	
	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점	

(라) 발주부서는 감점기준에 해당하는 주요항목에 대해서는 보완요구를 통해 보완토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점 또는 실격처리 하여야 한다.

(4) 기술인평가서 평가 및 입찰참여 적격자 선정기준

(가) 발주부서는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기준상의 세부 평가항목, 배점범위, 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평가 세부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발주부서는 기술인평가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입찰공고 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은 평가위원회의 기술인평가서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여 적격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5) 기타 평가에 관한 사항

(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정에 따라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1) 기술인평가서 제출서류의 내용 중 허위기재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제출도서에 기술인평가서 업체명·기술인 등을 특정하여 기록한다든지 또는 암호를 기재하여 평가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익명성 위반)

3) 공정한 평가를 방해하는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서 위반사례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발주부서가 판단하기 곤란한 사항이나 불명확한 경우로서 평가위원회에서 지침서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한 경우

(나) 발주부서는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평가사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평가점수 및 평가사유서 등 평가결과를 실명 공개하여야 한다.(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발주부서 홈페이지)

(다) 평가사유서는 평가항목별로 요구조건의 부합정도와 장·단점을 비교하여 작성하되 계량적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평가사유를 제시하지 않을 수 있다.

(라) 발주부서는 낙찰된 용역업체의 기술인평가서(또는 기술인평가서의 일부)를 용역계약문서로 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항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바. 낙찰자의 결정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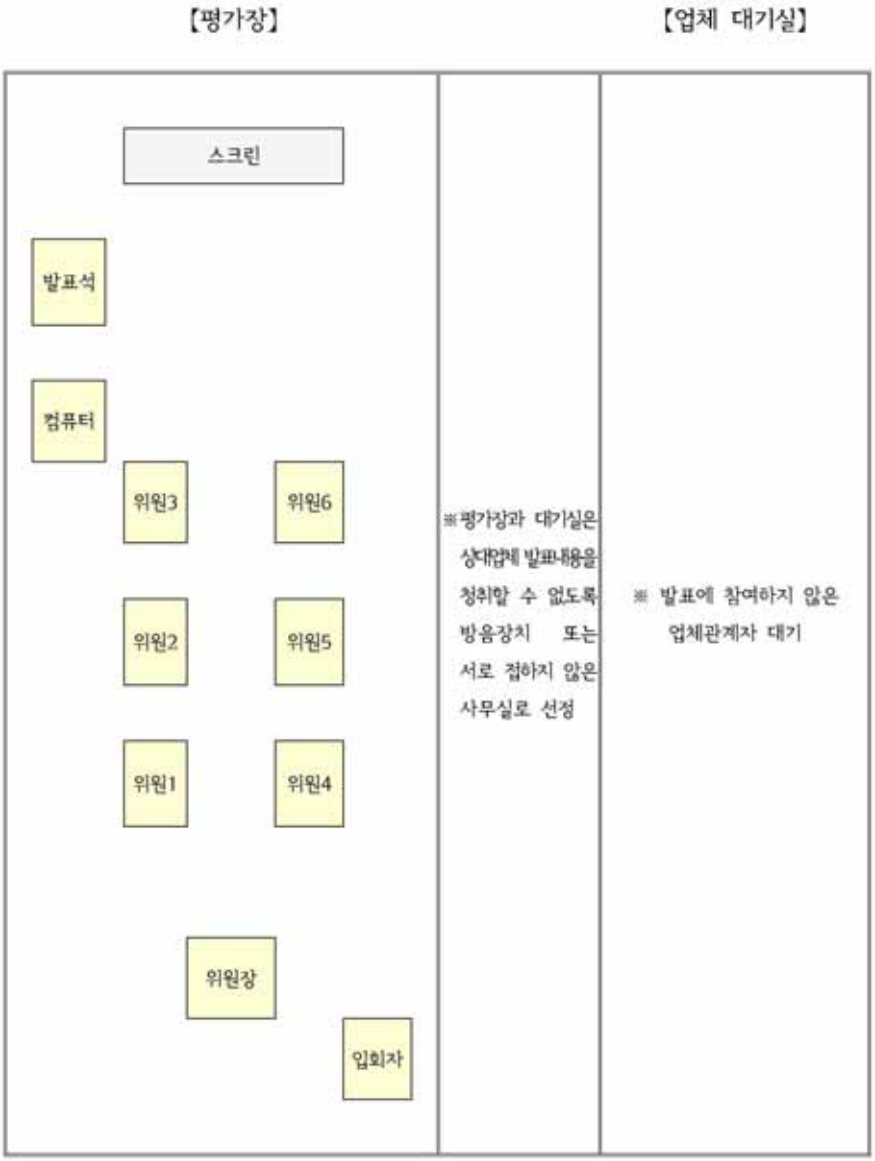
사. 평가결과의 녹화 및 기록관리

평가과정의 모든 절차는 동영상 촬영을 실시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입찰업체의 이의신청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기술인평가서 평가 진행절차(예시) 〕

【단계】	【진행 절차】	【주요 내용】
평가위원 선정	평가위원 후보 연락순서 및 업체 발표순서 추첨	- 발주부서장 주재, 업체대표가 추첨 - 업체대표 참석
	↓	
	평가위원 후보 연락 및 평가위원 선정	- 발주부서장 주재, 발주부서 직원 전화연락 - 업체대표 참석
	↓	
평가 진행	위원장 인사말씀	- 위원장 주재 - 평가위원, 업체발표자, 입회자 참석
	↓	
	사업개요 설명	담당팀장 → 평가위원 ※ 업체관계자는 퇴장
	↓	
	기술인평가서 요약발표	업체 발표 ※ 타 업체는 퇴장
	↓	
	질의 및 답변	평가위원↔해당업체 발표자
	↓	
	기술인평가서 평가	평가위원
	↓	
	감점사항 제출	발주부서 → 평가위원
	↓	
	입회자 평가서 서명	입회자 서명
	↓	
	평가종료	평가서 발주부서에 제출

〔 평가장 및 업체대기실 배치도(예시) 〕



4. 기술인평가서 작성방법

가. 일반사항

(1) 기술인평가서 작성의 기본원칙

(가) 기술인평가서 제출자는 본 용역의 규모와 특성에 부합하는 경력과 수행실적을 갖춘 참여기술인의 기술능력과 업무관리능력을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 사항은 해당 용역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다) 제출되는 기술인평가서는 익명성(업체명, 기술인 등)에 기초하여 작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술인평가서의 작성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다.

(라)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확인된 경우 입찰참가 적격자로서의 자격이 실격처리 된다.

(2) 기술인평가서의 포함사항

(가) 기술인평가서의 작성 시 본절 "2. 평가기준"에 있는 평가항목의 세부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나) 발주부서는 용역의 성격과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절 "2.평가기준"에 있는 평가항목의 세부사항과 평가방법의 일부를 변경하여 입찰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에 포함할 사항

1) 설계팀의 구성 체계

2) 설계팀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경험

3)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라) 수행계획에 포함할 사항

1) 해당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

2) 과업 단계별 주요업무

3) 과업 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4) 관련 계획 및 법령 검토사항과 설계적용 방안

5) 문제점 분석 및 처리대책

(마) 수행방법에 포함할 사항

1) 해당 용역 관련 특정경험

2) 해당 용역 관련 특정경험에 대한 적용사항

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

4) 전문가 활용계획

5) 기타 의견 및 추가사항

(3) 기술인평가서의 제출 및 반환

(가) 기술인평가서 제출자는 기술인평가서 제출 시 기술인평가서 제출신청서(양식1)와 함께 청렴서약서(양식5)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출된 기술인평가서 및 관련 서류는 제출받은 발주부서의 소유로 하며,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반환 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 제출된 기술인평가서 및 관련 서류는 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입찰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4) 기술인평가서의 수정·보완 및 관리

(가) 제출된 기술인평가서 및 관련 서류에 포함되는 내용 중 수행계획 및 방법에 관련된 사항은 수정 및 보완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발주부서는 기술인평가서의 평가에 있어서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인평가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부서는 보완 요구사항을 별도의 문서로 작성하여 기술인평가서를 제출한 모든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보완요구 기한까지 기술인평가서 제출자로부터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되, 익명성(업체명, 기술인 등)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라) 제출된 기술인평가서는 발주부서의 사전심사 및 서류보완 등 절차이행 후 봉인하여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평가실시 전 입찰참가업체 및 평가위원 입회하에 개봉한다.

(5) 기술인평가서 제출 기한 및 규격 관련

(가) 기술인평가서 작성기간은 수행실적평가결과를 개별 통보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용역의 성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는 작성기한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나) 기술인평가서의 작성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인평가서는 흑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기술인평가서의 규격은 A4 종으로 작성하되 불가피하게 A4규격을 초과하여 작성 제출한 경우에는 "쪽수 제한" 규정에 따라 A4분량만큼의 쪽수로 환산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예 : A3 1쪽은 A4 2쪽으로 간주)

3) 쪽수 표기는 총 매수에 대한 해당 쪽수를 표기한다. (예 : 15-1, 15-2 ·····, 15-26)

(다) 기술인평가서의 분량은 표지, 요약서, 목차 등을 포함하여 A4 15쪽 이내로 제한하며 항공사진, 투시도, 조감도, 시뮬레이션, 3D효과, 편집(맥편집, 스케치) 및 바탕면.여백부 치장 등은 사용할 수 없다.

1) 간지, 비교 노선도, 원본의 제출문 및 인쇄 내용이 없는 면은 쪽수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단,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과 관련한 증빙자료 등이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원본에만 첨부하는 부록에 표기할 수 있다.

2) 기술인평가서 표지는 양식2를 활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제한된 분량 안에서 평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필수적 사항이 부록이나, 첨부로 제시되는 경우는 부적격 처리하여야 한다.

4) 기술인평가서의 '요약서'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라) 발주부서는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인평가서 제출규격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입찰공고 및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 세부 작성지침

(1)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에 관한 사항

(가) 설계팀의 구성 체계

1) 기술인평가서 제출자는 발주부서가 제시한 참여기술인의 구성체계 및 경력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토대로 설계팀을 구성하여 수행 체계도를 알기 쉽게 제시하여야 한다.

2) 발주부서가 해당 용역의 특성과 관련한 전문가(VE, LCC, 경관설계, 내진설계 등) 및 특정 기술인(해당 용역의 특정 설비 등)를 포함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수행 체계도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 설계팀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경험

1)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책임기술인은 5건(10년 이내),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2건(5년 이내)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실적에 포함되는 사업은 사업별 세부내용 및 성과를 사업명별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계량화된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유사용역 수행실적을 제시하는 참여기술인의 범위는 발주부서가 사전에 요구한 기술인에 한한다.

4) 용역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 경험(세부내용 및 성과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1) 참여기술인은 현재 수행중인 사업과 해당 사업의 주요 업무를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참여기술인의 업무 강도가 과다한 경우에는 업무 강도가 해당 용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유와 업무 강도 감소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가) 해당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 과업 단계별 주요업무

1) 기술인평가서 제출자는 발주부서가 교부한 제공도서 등을 검토한 후에 과업의 성격을 명기하고,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책임기술인의 경험을 토대로 용역의 범위와 내용을 정의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성격 및 범위는 용역의 특성을 책임기술인이 검토한 후, 기술인평가서 평가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형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성격이 공법의 신규성, 공종의 상호복합 정도, 친환경 건설, 공사의 난이도 등을 책임기술인의 경험을 토대로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과업 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1) 과업의 성격을 규정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할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단계별로 분할한 후, 이의 시행순서를 명기하여야 한다.

2) 과업 단계별 작업계획은 과업수행 일정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3) 단계별 업무수행에 따른 필요 전문가 및 용역 수행팀의 구성에 대한 제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

1) 책임기술인은 해당 용역의 수행에 있어서 발주부서가 제시한 관련 계획, 법령 등이 용역에 미치는 영향과 용역의 목적 및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설계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책임기술인은 발주부서가 제시한 계획, 법령 이외에 해당 용역의 성공적 수행과 관련된 계획 및 법령이 있는 경우 이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설계 적용방안을 별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해당 용역과 관련하여 관련계획, 법령에서 제시하는 인허가 사항에 대한 대응계획도 포함시켜 설계적용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4) 책임기술인은 관련계획 조사 및 관련계획 간의 연계 시점을 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와 연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라) 문제점 분석 및 처리대책

1) 책임기술인은 해당 용역에 대한 기술제안 과정에서 파악된 사업계획, 설계 및 시공과정 등 단계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적시하고, 이의 처리대책을 기술제안의 형태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시된 문제점은 공사기간, 공사비 등 핵심적인 사항과 경미한 사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공사기간 및 공사비 등 핵심적인 문제는 공기단축, 설계VE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여 목적한 성과에 부합할 수 있는 제안을 하여야 한다.
4) 책임기술인은 해당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민원을 제시하고, 이의 예방을 위한 민원방지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방법에 관한 사항

(가) 해당 용역 관련 특정경험에 대한 적용사항

1) 책임기술인은 해당 용역에 필요한 업무나 공종 등에 필요한 참여기술인, 전문가 활용방안과 각종 설계기법의 활용방안을 동일용역의 특정경험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은 용역의 성공적인 완수나 공사기간 단축, 신기술신공법의 적용을 통한 공사비 절감, 위험요인 경감, 해외설계 수행경험 등과 관련한 것에 한한다.
3)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에 따라 제안되는 업무나 공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행체계와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기술인평가서의 구성 및 문서편집

(1) 기술인평가서의 구성은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가) 표지

(나) 요약(5쪽 이내로 작성)

(다) 목차

(라) 본문

(2) 문서편집

(가) 편집용지 : A4(세로) 210mm ×297mm

(나) 도면, 표 등에 한하여 필요한 경우 A3 규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A3 규격 1쪽은 A4 규격 2쪽으로 산정

(다) 줄 간격 : 160%

(라) 글씨색상 : 흑색

(마) 색채의 사용을 금지하며 사진, 그림 등은 회색조로 작성

(바) 쪽 번호는 중앙하단에 "○-1"의 형태로 표기

(3) 표지작성

제안서의 표지는 양식2를 이용하며 측면 등에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인쇄 및 제본

(가) 규격 및 재질

1) 규격 : A4(210mm ×297mm)

2) 재질 : 백상지 80g/㎡, 양면인쇄

3) 간지 : 본문과 같은 재질 사용(색깔이 있는 간지 사용 불가)

(나)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 조판 인쇄

(다) 제본방법 :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양식 1. 기술인평가서 제출 신청서

2. 기술인평가서(서식)

(양식 1)

기술인평가서 제출신청서

※ 접수번호 :				
사업명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 발주부서 ○○명)에서 시행하는 (* 용역명 :) 용역에 기술인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0 . . .

신 청 인 : (인)

장 귀하

----------절------취------선----------

기술인평가서 접수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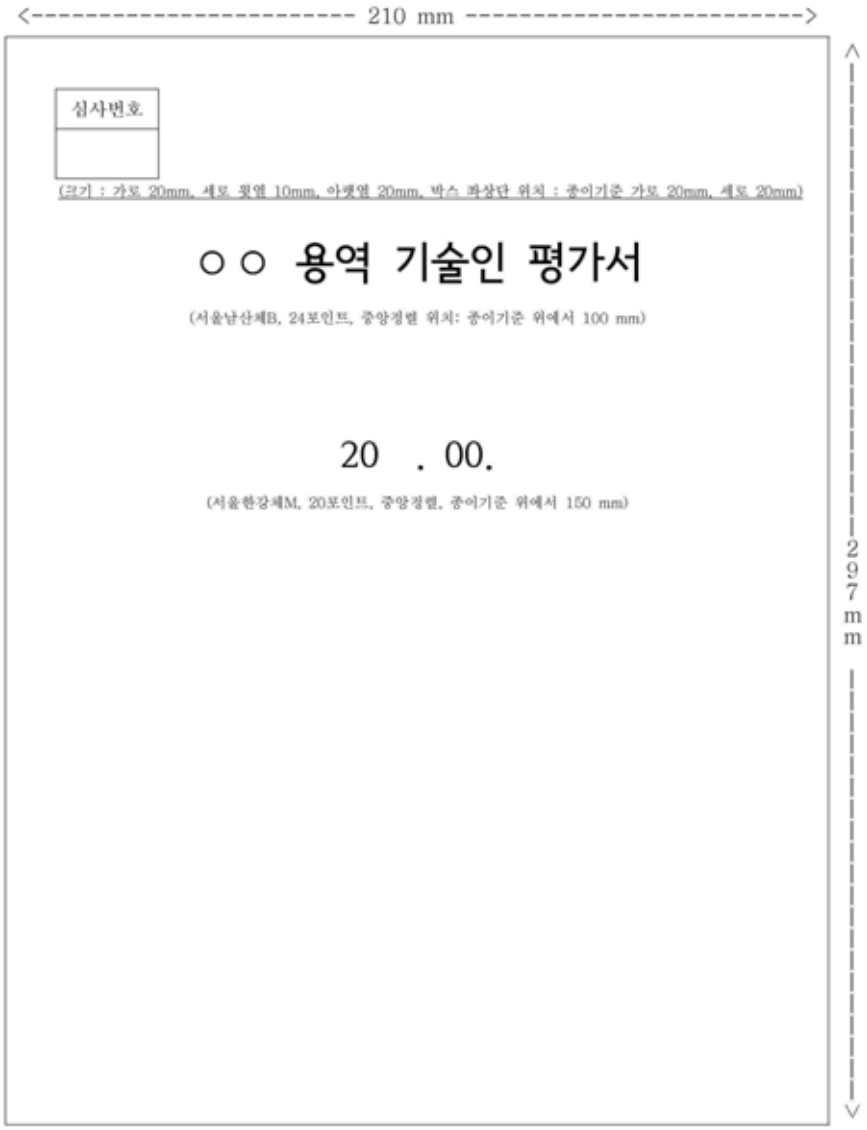
사업명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O.)	
			H.P.)	
주 소				

접 수 일 : 200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첨부 : 기술인평가서

(양식 2)



210mm×297mm
(백상지(80g/㎡))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요약서 (5page 이내, 서울한강체M, 15포인트, 중앙정렬, 160%)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목차

(1page 이내, 서울한강체M, 15포인트, 중앙정렬, 160%)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 104 -

1.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

(서울한강체M, 15포인트, 중앙정렬, 160%)

1.1 설계팀의 구성체계(제안 팀의 조직도 포함)(1page 이내)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 설계팀의 구성체계를 알기 쉽게 표현한 수행체계 조직도 제시
* 수행실적 평가 시 제출된 사업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 기술인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 용역 특성과 관련한 전문가, 특정 기술인 포함(역할 기재)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1.2 설계팀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경험(7page 이내)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1) 사업책임기술인			
a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용역 평가점수
	4) 사업 수행실적 및 경험 * 사업규모 및 금액, 용역수행상 주안점, 사업 수행성과, 역할 및 참여정도 등을 기술		5) 비고 * 현 회사 수행실적 여부 * 기술인평가서, 기술제안서 대상 용역 여부 등 기재
b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용역 평가점수
	4) 사업 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c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용역 평가점수
	4) 사업 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d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용역 평가점수
	4) 사업 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e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용역 평가점수
	4) 사업 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 00분야 책임기술인(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a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용역 평가점수
	4) 사업 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b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용역 평가점수
	4) 사업 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2) 00분야 책임기술인			
a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용역 평가점수
	4) 사업 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b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용역 평가점수
	4) 사업 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 책임기술인은 5건(10년 이내), 주요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2건(5년 이내)을 최근(공고일) 기준으로 제시
* 시행청별 연락처는 해당 프로젝트 내용에 대한 확인가능자의 연락처를 기재
* 현 회사에서 수행한 경우 비고에 표기
* 용역 평가점수는 있는 평가점수를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 00분야 책임기술인(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a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용역 평가점수
	4) 사업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b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용역 평가점수
	4) 사업 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2) 00분야 책임기술인			
a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용역 평가점수
	4) 사업 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b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용역 평가점수
	4) 사업 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 책임기술인은 5건(10년 이내), 주요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2건(5년 이내)을 최근(공고일) 기준으로 제시
* 시행청 별 연락처는 해당 프로젝트 내용에 대한 확인가능자의 연락처를 기재
* 현 회사에서 수행한 경우 비고에 표기
* 용역평가점수는 있는 평가점수를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1.3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1page 이내)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분 야		현재 수행중인 사업	시행청 (연락처)	중복일	주요 역할
사업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자	도 로				
	구 조				
	토 질				
	시 공				
	:				
업무하중 감소방안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2. 수행계획 (서울한강체M, 15포인트, 중앙정렬, 160%)
2.1.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2.1.1 해당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2page 이내)(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분 야	해당 설계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
사업책임	
도로분야	
토질분야	
구조분야	
시공분야	
: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을 핵심인력별(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2.1.2 과업단계별 주요업무(2page 이내)(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분 야	주요업무 및 특이사항
사업책임	
도로분야	
토질분야	
구조분야	
시공분야	
:	

* 해당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해당 용역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2.2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1page 이내)(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주요업무		작업계획(월)																								참여자 (투입인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조사	1)																									
	2)																									
	3)																									
	4)																									
	:																									
계획	1)																									
	2)																									
	3)																									
	4)																									
	:																									
설계	1)																									
	2)																									
	3)																									
	4)																									
	:																									
성과품 작성	1)																									
	2)																									
	3)																									
	4)																									
	:																									

* 용역수행 일정계획 제시(계획, 조사, 설계, 성과품 작성의 4단계를 기반으로 주요 업무별 일정 제시)

* 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2.3 관련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방안(1Page 이내)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 해당 용역과 관련한 관련계획을 나열하고 관련계획이 설계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2.4 문제점 분석 및 처리대책(1Page 이내)(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 해당 용역을 포함한 사업수행과정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3. 수행방법(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 및 당해용역 적용성)

(3page 이내, 서울한강체M, 15포인트, 중앙정렬, 160%)

3.1 해당용역 관련 특정경험(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은 용역수행실적 중 용역의 성공적인 완수나 공사기간 단축, 공사비 절감, 설계오류 및 위험요인 경감 등과 관련한 것에 한함 (책임기술인 위주로 기술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험도 추가 가능)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3.2 해당용역 관련 특정경험에 대한 적용사항(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에 따라 적용되는 사항이나, 제안되는 업무나 공종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행체계와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3.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 해당 사업수행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 설계성과품 품질 향상방안 등 포함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3.4 전문가 활용계획(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 해당 용역 수행관련 필요한 특수기술인/전문가에 대한 활용계획 제시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3.5 기타 의견 및 추가사항(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 해당 용역 수행관련 기타 의견제시사항, 추가 제안사항 등을 기재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양식 3 - 평가위원용)

청렴 서약서

ㅇ 용역명 :

본인은 위 용역의 기술인평가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으로 선임받아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고 공정하게 검토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소 속 :

직위(급): 성명 (서명)

장 귀 하

(양식 4 - 평가위원용)

동영상 촬영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기술인평가서 평가위원회 동영상 촬영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하여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해당 저작물은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따른 평가의 공정성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평가위원회 운영과정에서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에 동의함
- 해당 저작물은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따라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저작권)은 용역 발주기관에 있음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평가사유서 및 평가점수)는 실명공개

20 . . .

동의자 : 소 속 :

직위(급): 성명 (서명)

장 귀 하

(양식 5 - 기술인평가서 제출업체용)

청렴 서약서

ㅇ 용역명 :

본인은 위 용역의 기술인평가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소 속 :

직위(급): 성명 (서명)

장 귀 하

제Ⅰ장.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세부기준

제4절. 기술제안서에 따른 평가(기술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4절. 기술제안서에 따른 평가(기술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1. 일반사항

가. 목적

이 기준은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의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해 기술제안서 평가 제도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업무수행 시 담당 실무자의 이해를 돕고 평가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기하는 데 있다.

나. 용어의 정의

(1) "기술제안 적격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중 수행실적평가 결과 90점 이상을 확보한 자로서 기술제안서 제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 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기술제안서 제출 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으로 15위 까지를 기술제안서 제출 자격을 부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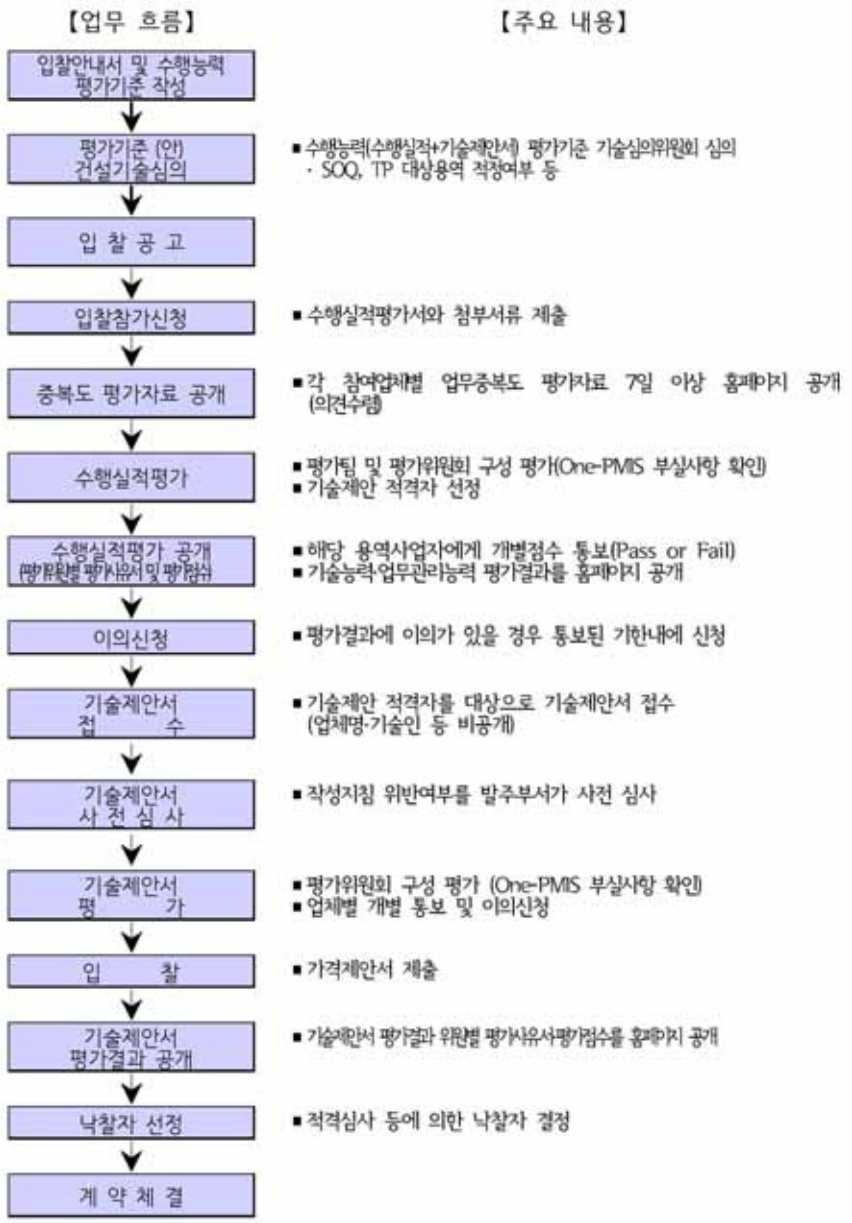
(2) "입찰참가 적격자"는 기술제안 적격자 중 기술제안서 평가를 통해 85점 이상을 얻은 자로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3) "기술제안서"는 입찰자가 입찰참가자 선정 및 평가절차에 참여하기 위해 해당 용역에 적용되는 기술 또는 공법, 친환경 건설기법, 용역 수행계획 및 방법 등 작업계획 및 기법 등을 제안하는 입찰 제출문서를 말한다.

(4) "수행계획 및 방법"은 기술제안서 평가의 핵심요소로서 입찰자가 해당 용역에 적합한 용역 수행계획 및 방법, 신기술·신공법 등 도입계획, 설계기술의 향상 등을 위한 방안 등을 포함한 제안사항으로 기술제안서에 포함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5) "기술제안서 평가 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입찰안내서 및 발주부서에서 정하는 기술제안서 평가 규정에 따라 해당 발주부서에서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다. 기술제안서에 따른 용역사업자의 선정절차



(1) 발주부서의 장은 입찰공고시 해당 설계용역이 제안서 평가대상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공고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2) 해당 설계용역 입찰공고문에는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작성지침, 평가항목 등 입찰자가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 판단되는 자료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3) 발주부서는 해당 설계용역의 입찰 참여자가 수행실적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수행실적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세부내용은 작성지침에 따른다.

(4) 수행실적 평가는 제1장 제2절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수행실적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5) 발주부서는 수행실적 평가결과 및 제안서 평가 참여 적격여부를 해당 입찰참여자에게 통보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수행실적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입찰참여자 중 기술제안 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7) 발주부서는 입찰자가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확보토록 하여야 하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제시한다.

(8) 발주부서는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제시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9) 제안서 평가는 해당 설계용역에 대한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10) 발주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결과를 해당 입찰자에게 개별통보하고, 결과를 통보받은 입찰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발주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다.

(11) 발주부서의 장은 해당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된 최종 제안서 평가결과를 계약부서에 통보하고 계약부서의 장은 공고된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

(12)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설계용역 입찰에 참여할 경우

-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수행방법, 기타 등 "주관적 평가항목" 평가시 부실(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또는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평가위원에게 관련 자료 제공 시 업체가 특정되지 않도록 익명 조치(업체명 비공개 등)를 하여야 한다.)

  • 부실 또는 유착비리 사항은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구분없이 적용하되,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에도 지분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하고

•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품질사고 또는 최근 5년내 안전사고 관련 입찰참가제한·효력상실·영업정지·자격정지 요구 등 행정처분 요청사항, 최근 1년내 품질사고 관련 벌점부과사항)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운영 중인 One-PMIS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에 활용하여야 한다.

•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지정현황)는 재무국(재무과)에서 운영하는 서울계약마당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 활용하여야 한다.(※ 공사·공단 등은 재무부서 '공공구매 실적관리' 담당을 통해 시스템 자료 검색)

※ 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는 용역발주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에 대한 책임성과 경각심 고취 및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

라. 용역의 공고 및 입찰 등록

(1)사전준비

(가) 발주부서는 해당사업이 기술제안서 평가용역 선정 금액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특별한 설계 경험 및 기술제안, 소량의 국내 설계실적, 신기술·신공법 등 기술제안서 평가가 필요한 용역인가를 충분히 검토하여 기술제안서 평가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발주부서는 해당사업이 기술제안서 평가가 필요한 사업인지를 결정하기에 앞서 기술제안서 평가를 통해 얻고자 하는 용역의 목적과 제안내용의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다) 발주부서는 제안서 평가대상 설계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계용역의 특성에 맞는 제안서 작성에 관한 세부지침과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 발주부서는 제안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해당 설계용역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입찰안내서의 작성

(가) 입찰안내서는 발주부서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유형, 규모, 조건 등 제반 특성을 반영하여 각 사업별로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입찰안내서에는 기술제안서 평가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이라는 사항과 사전준비과정에서 결정된 기술제안서 평가의 목적과 제안내용의 수준을 고려하여 수행계획, 수행방법, 평가항목 및 배점범위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다) 입찰안내서의 일반적 포함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사항(기술제안서 평가대상 용역임을 명시)
2) 수행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술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5) 입찰에 관한 사항
6) 부록(관련 양식 등)

(라) 입찰안내서에 포함될 내용은 사업의 특성 및 입찰방법 등을 고려하여 발주부서가 추가 또는 삭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마) 입찰안내서에는 기술제안서 평가와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바) 입찰안내서에는 낙찰된 용역업체의 기술제안서를 용역계약문서로 정한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 기술제안서 입찰안내서의 일반적 포함사항 ≫

제1장 일반사항
1. 사업의 개요(사업의 목적, 개요, 기술제안서 평가의 목적 및 방법 등)
2. 입찰안내서 유의사항
3. 입찰일정 및 제공자료(발주부서 제공 열람 및 제공자료 목록 제시)

제2장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관한 사항
1. PQ심사 개요
2. 입찰참가자의 자격요건
3. 제출서류
4. 심사기준 및 방법
5. 심사결과의 통보

제3장 기술제안서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1. 기술제안서 평가 개요
2. 기술제안서 제출자의 자격요건
3. 제출서류
4. 심사기준 및 방법(실격 및 감점기준 포함)
5. 심사결과의 통보

제4장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1. 일반사항
2. 기술제안서의 구성
3. 기술제안서 작성 일반사항(기술제안의 내용 및 범위)
4. 작업계획 및 기법 작성지침(수행계획, 수행방법, 신기술·신공법 등 도입, 기술자료 활용 및 설계기술 향상, 기타 등)

제5장 기술제안서 평가운영에 관한 사항
1. 평가 일반사항
2. 평가위원회 운영방법
3. 기술제안서 평가 절차 및 방법
4. 평가세부기준
5.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방식

제6장 입찰에 관한 사항
1. 일반사항
2. 제안사항의 채택 및 불채택
3. 가격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
4. 낙찰자 결정방식
5. 기타 특기사항

부록
1. 관련 양식
2. 참고자료

(3) 입찰공고

(가) 발주부서는 입찰공고 전에 기술제안서 대상용역 적정여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나) 발주부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려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에 입찰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발주부서는 입찰희망자에게 평가 세부기준을 배부 또는 공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발주부서는 낙찰된 용역업체의 기술제안서를 용역계약문서로 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항을 입찰공고 시 명시하여야 한다.

(마) 발주부서는 입찰희망자가 기술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미리 확보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바) 기술제안서 평가와 관련한 입찰공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제안서 평가 대상 건설엔지니어링 사업명
2) 사업시행기관
3) 기술제안의 내용 및 범위
4) 예정 용역비
5) 입찰일정
6) 수행실적 평가 면제 업체에 대한 특례에 관한 사항
7)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8) 기타 기술인평가서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사항

(사) 발주부서는 기술인평가서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용역관계자 또는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 시 명시하여야 한다.

(아) 발주부서는 입찰안내서와 함께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전(前)단계 조사 또는 용역 설계도서, 보고서, 계산서 등 자료일체를 입찰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용역의 성격 및 특성에 따라 발주부서가 제공자료를 변경하여 공고할 수 있다. 다만, 자료제공의 방법은 직접 방문을 통한 열람, 원본자료의 복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원본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출도서의 목록 및 제출방법

(가) 기술제안서 평가를 통한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을 위해 제출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는 기술제안서 제출신청서, 기술제안서, CD 또는 DVD, 청렴서약서 등이 있으며, 발주자는 용역의 성격에 맞게 제출도서의 범위와 종류를 선택하여 입찰시 공고하여야 한다.

(나) 제출도서의 목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술제안서 제출신청서(양식1)

2) 기술제안서(양식2, 검토 노선도 포함)

3) USB, CD 또는 DVD (기술제안서 발표시 발표내용 포함)

4) 청렴서약서(양식5)

5) 기타 발주부서가 평가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사전 명시)

(다) 제출도서의 제출방법은 인편을 통한 직접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택배나 우편에 의한 제출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방법, 도착기한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2. 평가기준

가. 평가항목별 배점 및 평가방법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 (30)		- 참여기술인의 경력	12	수행실적 평가점수를 환산하여 적용
		-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7	
		- 설계팀의 구성체계	3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상대평가의 방법으로 평가하되, 수행방법(35), 기타(5) 평가시는 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 또는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 실시
		- 설계팀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경험	3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5	
수행계획 및 방법 (70)	수행계획 (20)	-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0	
	수행방법 (35)	- 작업수행기법(사전조사 및 작업방법 등) - 각종 영향평가, 친환경건설기법 도입 -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 및 해당용역 적용성 - 경관설계 등 - 예상문제점 및 대책 등	35	
	기술향상 (10)	- 신기술·신공법의 도입과 그 활용성의 검토정도 및 관련 기술자료 등재 - 시설물의 생애주기비용을 감안한 설계기법 등	10	
	기타(5)	- 기술제안서 발표 및 면접	5	

※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이 설계용역 입찰에 참여시 수행방법, 기타 등 "주관적 평가 항목" 평가시 부실(품질 및 안전사고 등) 또는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One-PMIS(부실), 서울계약마당(유착비리) 자료 활용하고 평가위원에게 관련 자료 제공 시 업체가 특정되지 않도록 익명 조치(업체명 비공개 등)를 하여야 한다.)

나. 세부평가항목별 평가등급 및 가중치

< 상대평가 시 신청자 수 별 평가등급 배분 >

-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율 :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

업체수	등급					업체수	등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7	2	3	7	3	2
4	1	2	1			18	2	4	7	3	2
5	1	2	1	1		19	2	4	7	4	2
6	1	2	1	1	1	20	2	4	8	4	2
7	1	2	2	1	1	21	2	4	9	4	2
8	1	2	3	1	1	22	2	5	9	4	2
9	1	2	3	2	1	23	2	5	9	5	2
10	1	2	4	2	1	24	2	5	10	5	2
11	1	2	5	2	1	25	3	5	10	5	2
12	1	3	5	2	1	26	3	5	10	5	3
13	1	3	5	3	1	27	3	5	11	5	3
14	1	3	6	3	1	28	3	6	11	5	3
15	2	3	6	3	1	29	3	6	11	6	3
16	2	3	6	3	2	30	3	6	12	6	3

※ 참여업체수가 30개 초과 시 등급별 배분율은 위 배분표를 기준으로 등급별 업체 수 결정

< 평가등급별 가중치 >

- 평가등급별 가중치는 평가항목별(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로 구분 적용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	설계팀의 구성체계	1.00	0.98	0.96	0.94	0.92
	설계팀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경험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수행계획 및 방법	수행계획	1.00	0.95	0.90	0.85	0.80
	수행방법					
	기술향상					
	기타 (발표 및 면접)	1.0	0.9	0.8	0.7	0.6

다. 기본사항

(1)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의 세부평가항목 중 참여기술인의 경력,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방법은 수행실적 평가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의 경력 환산 점수

→ "수행실적" 참여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 평가점수(배점 27점) × 12/27

나)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환산점수

→ "수행실적"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 실적 평가점수(배점 18점) × 7/18

(2) 기술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설계팀의 구성체계, 설계팀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경험,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과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한 평가방법은 기술제안서 평가대상자를 기준으로 세부평가 항목별로 상대평가하여 평가 등급을 결정하고 세부 평가항목별 배점에 해당 등급별 가중치를 곱하여 항목별 점수를 산출한다.

(3) 기술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상대평가 항목에 대한 최종점수는 항목별 점수의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단,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예시) 상대평가 항목별 점수의 합계점수에 따른 최종점수 산정

구분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위원6	최종점수
A업체	73.5(제외)	79.9	79.5	80.0	80.0(제외)	79.6	79.75
B업체	79.5	78.8	77.9	77.5(제외)	79.0	80.1(제외)	78.80
⋮	⋮	⋮	⋮	⋮	⋮	⋮	⋮

(4) 발주부서는 기술제안서의 작성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다.

(5) 발주부서는 기술제안서의 평가 시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정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구내용은 모든 참여업체에 공지하여야 하며, 보완 요구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되, 익명성(업체명, 기술인 등)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6) 발주부서는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7) 발주부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평가사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실명 공개하여야 한다.

3.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방법

가. 위원회의 구성

(1) 발주부서는 기술제안서 평가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제안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2) 평가위원은 우리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발주기관의 기술자문위원회 등 전문분야별 외부 심의위원과 5급 이상 공무원(내부 심의위원)을 원칙으로 선정한다. 내부 심의위원은 평가위원의 50% 이내로 구성하며, 발주부서가 소속된 실·국의 공무원을 제외한 타 실·국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선임한다.

이 경우 본부 산하 기획관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도시철도국 등은 각각 실·국으로 본다.

(3) 평가위원회는 용역의 성격과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5인 이상~10인 이내로 구성한다.

(4)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발주기관(발주부서가 소속된 실·국 공무원을 제외한 타 실·국 소속 공무원) 내부직원 중 4급 공무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 내부직원으로 선임이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위원 중 발주부서장이 지명한 평가위원이 위원장이 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지휘·총괄하며,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5) 발주부서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위 각호의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나. 평가위원의 선정

(1) 선정절차

후보위원 명부작성(평가전일) → 연락순서 추첨(평가당일 오전) → 연락 및 수락순서에 의해 선정 → 평가위원회 개최

(2) 평가위원 후보위원 명부작성

선정 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으로 명부를 작성하되 후보위원별 무작위로 정렬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밀봉·보관

(3) 연락순서 추첨

선정예정인원의 일정배수까지 고유번호가 부여된 후보자 명부의 번호지를 입찰참가업체가 직접 추첨 (입찰참가업체 미참석 시 발주부서 직원이 추첨)

(4) 연락 및 선정

(가) 입찰참가업체 입회하에 명부 개봉

(나) 추첨순서에 따라 후보위원 참석여부 유선 확인(통화 기록지 작성 보관)

(다) 수락순으로 위원 선정하고 소요인원이 확정되면 종결

(5) 평가위원 공개

선정된 위원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평가결과 발표시 공개한다. 단, 선정된 위원 중 입찰참가업체와의 이해관계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공개할 수 있다.

다. 평가위원회의 운영

(1) 발주부서는 평가 시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에게 사업의 특성사업개요·중점 평가사항 등을 설명할 수 있다.

(2) 감점기준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끝난 이후, 평가결과 점수를 토대로 위원장 주관하에 합산과정에서 별도 감점 처리하여야 한다.

(3) 평가위원은 공정한 평가와 비밀유지 등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양식 3)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기술제안서 평가는 익명(업체명, 기술인 등)을 전제로 작성된 기술제안서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발주부서는 업체별 발표 및 개별질문이 완료된 후 비공개로 평가위원 간 종합토론회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행계획 및 방법의 발표 및 면접 운영

(1) 발주부서는 수행계획 및 방법 등에 대한 기술제안서의 발표 및 면접을 통해 책임기술인을 포함한 기술인의 기술능력과 업무관리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2)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설계용역 입찰에 참여할 경우

-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수행방법, 기타 등 "주관적 평가항목" 평가시 부실(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또는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평가위원에게 관련 자료 제공 시 업체가 특정되지 않도록 익명 조치(업체명 비공개 등)를 하여야 한다.)
  - 부실 또는 유착비리 사항은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구분없이 적용하되,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에도 지분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하고
  -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품질사고 또는 최근 5년내 안전사고 관련 입찰참가제한·효력상실·영업정지·자격정지 요구 등 행정처분 요청사항, 최근 1년내 품질사고 관련 벌점부과사항)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운영 중인 One-PMIS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에 활용하여야 한다.
  -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지정현황)는 재무국(재무과)에서 운영하는 서울계약마당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 활용하여야 한다.(※ 공사·공단 등은 재무부서 '공공구매 실적관리' 담당을 통해 시스템 자료 검색)

※ 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는 용역발주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에 대한 책

임성과 경각심 고취 및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

(3)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한 발표 및 면접은 책임기술인으로 하여금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기술제안서 평가 시에 익명성(업체명, 기술인 등)이 확보된 별도의 설명자료(파워포인트)를 평가위원에게 인쇄물로 배포할 수 있다.

(5) 책임기술인 발표 및 면접시는 해당 당사자만 참석가능하고 컴퓨터 조작 등을 위한 별도의 인원에 대한 참석은 허용하지 않는다. (발표 당사자가 컴퓨터 등 기기 직접 조작)

(6) 발주부서가 판단하기에 익명성 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평가위원이 피면접자의 신원을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대면 조치(익명성이 보장된 사전에 녹음된 발표자료로 대체, 가림막 설치 등)를 하여야 한다.

(7) 기술제안서의 발표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가) 기술제안서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하여 정하며, 발표자는 타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나) 발표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10분(입찰공고에 명시) 이내에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도록 하며, 작성내용은 제출된 기술제안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만약, 기술제안서와 작성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평가에 불이익을 주도록 할 수 있다.

(다)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의 질의사항 중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질문하거나 대답을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질의사항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마. 평가기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입찰참여 적격자 선정방법

(1) 발주부서는 기술제안서 평가에 따른 방법으로 설계 등 용역사업자 선정시는 수행능력(수행실적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 심의내용

1) 평가서류의 오류 등에 대한 적용여부

2) 평가세부기준 작성의 적정성

3) 기타 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발주부서의 사전심사 및 설명내용

(가) 발주부서는 입찰공고에 따라 제출된 기술제안서 등 입찰서류를 기술제안서 평가 이전에 사전심사하여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제규정 및 지침사항, 감점기준 등의 위배사항을 체크리스트(Check-List)로 작성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나) 발주부서의 사전심사시에는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제안서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은 배제하여야 한다.

(3) 감점기준

(가) 감점기준은 해당 기술용역 관련 규정(입찰유의서 등)과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 위반사항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공사의 성격 및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나) 감점기준의 주요 항목은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하며, 발주부서의 판단하에 추가 및 삭제할 수 있다.

1) 익명성을 위반하는 표지(標識)사용(업체명·기술인 표기, 암호 기재 등)
2) 지정 도서매수 초과 및 누락
3) 칼라 사용 위반
4)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위반 등

(다) 감점기준 및 총 감점 한도는 입찰공고 시에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 감점기준에 대한 예시 〉

평가항목	감점기준 (감점 및 실격)	감점 및 실격사항	비고
기술제안서평가시	- 익명성을 위반하는 표지(標識)사용(업체명·기술인 표기, 암호 기재 등)	실격처리	
	- 쪽수초과	쪽당 0.5점	
	- 항공사진·투시도·조감도·시뮬레이션 사용, 3D 효과, 일러스트 편집, 바탕면·여백부 치장	쪽당 0.5점	
	- 칼라 사용 위반	쪽당 0.5점	
	-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	쪽당 0.5점	
	- 표지, 제출서, 양식 미사용시	쪽당 0.5점	
책임기술인 발표	- 발표시간 초과	0.1점	
비리감점	1.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	3점	
	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	2점	
	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점	

(라) 발주부서는 필요시 감점기준에 해당하는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보완요구를 통해 보완토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점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하기에 심각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기술제안서 평가 및 입찰참여 적격자 선정기준

(가) 발주부서는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기준상의 세부평가항목, 배점범위, 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평가세부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발주부서는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은 입찰공고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야 한다.

(라) 발주부서는 평가위원회의 기술제안서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여 적격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5) 기타 평가에 관한 사항

(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정에 따라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1) 기술제안서 제출서류의 내용 중 분명한 허위기재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제출도서에 기술제안서 업체명·기술인 등을 특정하여 기록한다든지 또는 암호를 기재하여 평가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익명성 위반)

3) 공정한 평가를 방해하는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서 위반사례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발주부서가 판단하기 곤란한 사항이나 불명확한 경우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위반여부 등 결정

(나) 발주부서는 그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평가사유서를 제출하게 하고 평가결과는 실명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사유서는 평가 항목별로 요구조건의 부합정도와 장·단점을 비교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발주부서는 낙찰된 용역업체의 기술제안서를 용역계약문서로 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항을 입찰공고 시 명시하여야 한다.

바. 낙찰자의 결정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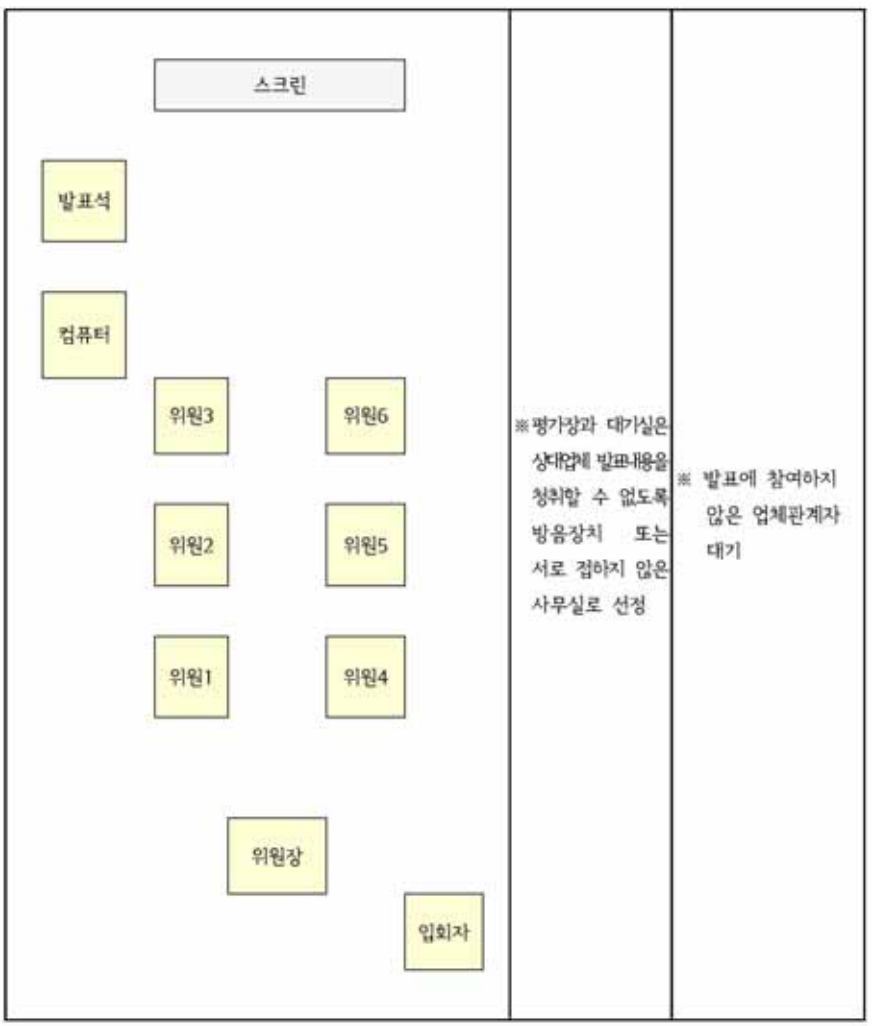
사. 평가결과의 녹화 등 기록관리

평가과정의 모든 절차는 동영상 촬영을 실시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입찰업체의 이의신청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기술제안서 평가 진행절차(예시) 〕

【단계】	【진행 절차】	【주요 내용】
평가위원 선정	평가위원 후보 연락순서 및 업체 발표순서 추첨	- 발주부서장 주재, 업체대표가 추첨 - 업체대표 참석
	평가위원 후보 연락 및 평가위원 선정	- 발주부서장 주재, 발주부서 직원 전화연락 - 업체대표 참석
평가 진행	위원장 인사말씀	- 위원장 주재 - 평가위원, 업체발표자, 입회자 참석
	사업개요 설명	담당팀장 → 평가위원 ※ 업체관계자는 퇴장
	기술제안서 요약발표	업체 발표 ※ 타 업체는 퇴장
	질의 및 답변	평가위원↔해당업체 발표자
	기술제안서 평가	평가위원
	감점사항 제출	발주부서 → 평가위원
	입회자 평가서 서명	입회자 서명
	평가종료	평가서 발주부서에 제출

[평가장 및 업체대기실 배치도(예시)]



4. 기술제안서 작성방법

가. 일반사항

(1) 기술제안서 작성의 기본원칙

(가) 기술제안서 제출자는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기술제안의 목적과 제안수준에 부합하도록 제공된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기술제안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해당 용역 관련 법규를 준용하여야 한다.

(다) 제출되는 기술제안서는 익명성(업체명, 기술인 등)을 기초하여 작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작성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다.

(라)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확인된 경우 입찰참가 적격자로서의 자격이 실격처리 된다.

(2) 기술제안서의 포함사항

(가) 기술제안서의 작성은 본절 "2.평가기준"에 있는 평가항목의 세부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나) 발주부서는 용역의 성격과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절 "2. 평가기준"에 있는 평가항목의 세부사항과 평가방법의 일부를 변경하여 입찰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에 포함할 사항

1) 설계팀의 구성 체계
2)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경험
3)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라) 수행계획에 포함할 사항

1)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2)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3)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
4) 문제점 분석 및 처리대책
5) 현장조사, 관련계획 조사 및 관련 계획 간의 연계의 적정성
6)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마) 수행방법에 포함할 사항

1) 작업수행기법(사전조사 및 작업방법 등)

2) 각종 영향평가, 친환경건설기법 도입

3)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 및 해당 용역 적용성

4) 특정경험에 따라 제안하는 특정업무, 공종에 대한 수행방법

5) 경관설계 등

6) 예상문제점 및 대책 등

(바) 기술향상에 포함할 사항

1) 신기술·신공법의 도입과 그 활용성의 검토정도 및 관련 기술자료 등재

2) 3차원 시뮬레이션, 경관 디자인 설계, 3차원 설계기법 도입 등 설계 개선방안

3) 시설물의 생애주기 비용을 감안한 설계기법 등

(3) 기술제안서의 제출 및 반환

(가) 기술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 제출 시 기술제안서 제출신청서(양식 1)와 함께 청렴서약서(양식 4)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출된 기술제안서 및 관련 서류는 제출받은 발주부서의 소유로 하며,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반환 또는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다) 제출된 기술제안서 및 관련 서류는 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입찰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라) 기술제안서에 포함되는 신기술(건설신기술 등)에 대한 사용결과와 특허권, 실용실안권 등 법령에 의해 보호받는 재료, 공법의 사용결과는 기술제안을 한 입찰자가 책임져야 한다.

(4) 기술제안서의 수정 및 보완

(가) 제출된 기술제안서 및 관련서류에 포함되는 내용 중 기술제안과 관련된 사항은 수정 및 보완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발주부서는 기술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내용은 모든 참여업체에 공지하여야 하고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모든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보완 요구기한까지 기술제안서 제출자로부터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되, 익명성(업체명, 기술인 등)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라) 제출된 기술제안서는 발주부서의 사전심사 및 서류보완 등 절차이행 후 봉인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평가실시 전 입찰참가업체 및 평가위원 입회하에 개봉한다.

(5) 기술제안서 제출 기한 및 규격 관련

(가) 기술제안서 작성기간은 수행실적 평가결과를 개별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용역의 성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는 작성기한을 연장, 또는 감축할 수 있다.

(나) 기술제안서의 작성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서는 흑백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비교 노선도에 한하여 3쪽의 범위 안에서 칼라표기를 인정할 수 있다.

2) 제안서의 규격은 A4 종으로 작성(비교 노선도는 제외)하되 불가피하게 A4규격을 초과하여 작성 제출한 경우에는 "쪽수 제한" 규정에 따라 A4분량만큼의 쪽수로 환산 적용하여야 한다. (예: A3 1쪽은 A4 2쪽으로 간주)

3) 쪽수 표기는 총 매수에 대한 해당 쪽수를 표기한다.(예 : 30-1, 30-2 ……, 30-30)

(다) 제안서의 분량은 표지, 요약서, 목차 등을 포함하여 A4 25쪽 이내로 제한하며 항공사진, 투시도, 조감도, 시뮬레이션, 3D 효과, 일러스트 편집(맥편집, 스케치) 및 바탕면 · 여백부 치장 등은 사용할 수 없다

1) 간지, 비교 노선도, 원본의 제출문 및 인쇄 내용이 없는 면은 쪽수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단, 각종 산출서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원본에만 첨부하는 부록에 표기할 수 있다.

2) 기술제안서 표지는 양식 2를 활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제한된 분량 안에서 평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필수적 사항이 부록이나, 첨부로 제시되는 경우는 부적격 처리하여야 한다.

4) 기술제안서의 '요약서'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라) 발주부서는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제안서 제출규격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입찰공고 및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 세부 작성지침

(1)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에 관한 사항

(가) 설계팀의 구성체계

1) 기술제안서 제출자는 발주부서가 제시한 참여기술인의 구성체계 및 경력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토대로 설계팀을 구성하여 수행체제도를 알기쉽게 제시하여야 한다.

2) 발주부서가 해당용역의 특성과 관련한 전문가(VE, LCC, 경관설계, 내진설계, 등) 및 특정 기술인(해당 용역의 특정설비 등)을 포함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수행 체계도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 설계팀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경험

1)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책임기술인은 5건(10년 이내),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2건(5년 이내)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시하는 실적에 포함되는 사업은 사업별 세부내용 및 성과를 사업명 별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계량화된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유사용역 수행실적을 제시하는 참여기술인의 범위는 발주부서가 사전에 요구한 기술인에 한한다.

4) 용역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 경험(세부내용 및 성과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1) 참여기술인는 현재 수행중인 사업과 해당 사업의 주요 업무를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참여기술인의 업무 하중이 과다한 경우에는 업무 하중이 해당 용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유와 업무 하중의 감소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가)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1) 기술제안서 제출자는 발주부서가 교부한 제공도서 등을 검토한 후에 과업의 성격을 명기하고, 제시된 기술제안 내용 및 범위 등을 반영하여 제안자의 경험을 토대로 용역의 범위와 내용을 정의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성격 및 범위는 용역의 특성을 제안자가 검토한 후, 기술제안서 평가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형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성격이 공법의 신규성, 공종의 상호 복합정도, 친환경 건설, 공사의 난이도 등을 제안자의 경험을 토대로 제시하여야 한다.

4) 도로사업의 경우 과업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는 검토 노선도를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과업 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1) 과업의 성격을 규정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할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단계별로 분할한 후, 이의 시행순서를 명기하여야 한다.

2) 과업 단계별 작업계획은 과업수행 일정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3) 단계별 업무수행에 따른 필요 전문가 및 용역수행팀의 구성에 대한 제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

1) 기술제안서 작성자는 해당 용역의 수행에 있어서 발주부서가 제시한 관련 계획, 법령 등이 용역에 미치는 영향과 용역의 목적 및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설계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안서 작성자는 발주부서가 제시한 계획, 법령 이외에 해당 용역의 성공적 수행과 관련된 계획 및 법령이 있는 경우 이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설계적용방안을 별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해당 용역과 관련하여 관련계획, 법령에서 제시하는 인·허가 사항에 대한 대응계획도 포함시켜 설계 적용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라) 문제점 분석 및 처리대책

1) 제안자는 해당 용역에 대한 기술제안 과정에서 파악된 사업계획, 설계 및 시공과정 등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적시하고, 이의 처리대책을 기술제안의 형태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시된 문제점은 공사기간, 공사비 등 핵심적인 사항과 경미한 사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공사기간 및 공사비 등 핵심적인 문제는 공기단축, 설계VE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여 목적한 성과에 부합할 수 있는 제안을 하여야 한다.

4) 제안자는 해당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민원을 제시하고, 이의 예방을 위한 민원방지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현장조사, 관련계획 조사 및 관련 계획 간의 연계의 적정성

1) 제안자는 과업 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현장조사, 관련계획조사 및 관련 계획 간의 연계시점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제안자는 현장조사 및 관련 계획에 관한 조사의 주요 항목 및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바)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1) 제안자는 수행계획에서 제시된 제안을 토대로 발주부서가 제시한 사업목표 및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조건은 반드시 발주부서 및 제안자가 제시하는 충족 요건을 병기하여야 한다.

(3) 수행방법에 관한 사항

(가) 작업수행기법(사전조사 및 작업방법 등)

1) 제안자는 수행계획에서 제시한 과업 단계별로 조사할 항목과 조사를 위한 작업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작업방법에는 조사를 위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을 명기하고, 조사를 위한 팀 구성 등에 대해 기술하여야 한다.

(나) 각종 영향평가, 친환경 건설기법 도입

1) 작성자는 교통·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영향평가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을 명시하고, 평가결과의 산출시점을 일정상에 제시하여야 한다.

2) 영향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관련 법령에 의해 발주되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친환경 건설기법의 도입이 필요한 용역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대상, 기술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기법의 도입에 따른 효과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 친환경 건설기법의 도입으로 인해 공사기간, 공사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제시하여야 한다.

5) 친환경 건설기법 중 건설폐자재 활용에 대해서는 건설폐자재의 발생 정도를 예측하여 타당하게 제시하고 설계시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경관 설계 등

1) 지구단위계획, 경관기본계획 등 경관 관련 계획, 해당 사업의 입지 특성과 주변 자연·인문환경을 고려하여 경관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향후 경관설계 핵심 주제 1개를 제시하여야 한다.

* 기술제안서 평가의 취지를 감안하여 구체적인 경관설계(예시 포함)를 제시하는 것을 금지하며, 구체적인 경관설계(예시 포함)가 제시된 경우 평가에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경관설계를 구현하기 위한 작업 단계별 경관전문가 참여 계획 또는 관련 경관 프로그램 및 도

구 활용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 및 해당용역의 적용성

1) 책임기술인은 해당용역에 필요한 업무나 공종 등에 필요한 참여기술인, 전문가 활용방안과 각종 설계기법의 활용방안을 동일용역의 특정경험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은 용역의 성공적인 완수나 공사기간 단축, 신기술신공법의 적용을 통한 공사비 절감, 위험요인 경감, 해외설계 수행경험 등과 관련한 것에 한한다.

(마) 특정경험에 따라 제안하는 특정 업무, 공종에 대한 수행방법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에 따라 제안되는 업무나 공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행체계와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1) 제안자는 수행방법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제시된 것 이외에 추가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핵심사항과 경미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안자는 도출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함께 제시하고, 대책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4) 기술향상에 관한 사항

(가) 신기술·신공법의 도입과 그 활용성의 검토정도 및 관련 기술자료 등재

1) 신기술신공법의 도입에 관련된 제안에서는 대상 신기술신공법, 특허, 실용신안 등에 대한 목록을 제시하고, 적용 대상을 명기하여야 한다.

2) 제안자는 신기술신공법 적용에 따른 활용규모를 제시하고, 실제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적용방법을 기술하여야 하며, 적용에 따른 성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제안자는 제안한 신기술·신공법 등에 대한 관련 기술자료를 첨부로 별도 제시할 수 있으나, 적용 기술당 1페이지를 넘을 수 없다.

4) 제안자는 신기술신공법 도입에 따른 공사기간 및 공사비 증가 등의 발생 등 위험요인 및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3차원 시뮬레이션, 경관 디자인 설계, 3차원 설계기법 도입 등 설계 개선방안

1) 제안자는 해당 용역의 성공적 수행과 다양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자료와 관련 장비,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경우에 이를 기술자료 활용사항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유하고 있는 장비 및 소프트웨어, 기술자료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제안자는 그 기술자료 등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다) 시설물의 생애주기비용을 감안한 설계기법 등

1) 제안자가 생애주기 비용을 감안한 설계기법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일반적인 기법과 비교하여 소요비용에 대한 경제성 측면을 정량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소요비용은 시공비용 뿐 만 아니라,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의 수선비용, 교체비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제안자는 시설물의 생애주기비용 고려 대상 시설물의 부위 및 공종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설계기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구체적인 산출자료는 부록에 첨부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자료는 제외하여야 한다.

다. 기술제안서의 구성 및 문서편집

(1) 기술제안서의 구성은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가) 표지

(나) 요약(5쪽 이내로 작성) - 기술인평가서 양식 사용

(다) 목차 - 기술인평가서 양식 사용

(라) 본문 - 기술인평가서 양식 준용

(2) 번호체계

(가) 평가항목(설계팀의 경험 및 역량, 수행계획, 수행방법, 기술향상)

서울한강체M(진하게), 15포인트, 가운데정렬, 문단여백 없음

(나) 세부평가항목(설계팀의 구성체계, …, 시설물의 생애주기비용을 감안한 설계기법 등)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양쪽정렬, 문단여백 없음

(다) 세부구성(작성자 자율 구성)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문단여백 없음

(라) 본문내용(작성자 자율 구성) : 1) / 가) / (1) / (가)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왼쪽 각 단계별 두 글자씩 여백 증가

(3) 문서편집

(가) 편집용지 : A4(세로) 210mm ×297mm

(나) 도면, 표 등에 한하여 필요한 경우 A3규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A3규격 1쪽은 A4규격 2쪽으로 산정

(다) 줄간격 : 160%

(라) 글씨색상 : 흑색

(마) 색채의 사용을 금지하며 사진, 그림 등은 회색조로 작성

(바) 쪽 번호는 중앙하단에 "○-1"의 형태로 표기

(4) 표지작성

(가) 제안서의 표지는 양식2를 이용하며 측면 등에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인쇄 및 제본

(가) 규격 및 재질

1) 규격 : A4(210mm ×297mm)

2) 재질 : 백상지 80g/㎡, 양면인쇄

3) 간지 : 본문과 같은 재질사용(색깔이 있는 간지 사용 불가)

(나)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 조판 인쇄

(다) 제본방법 :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양식 1. 기술제안서 제출 신청서

2. 기술제안서(서식)

(양식 1)

기술제안서 제출신청서

※ 접수번호 :				
사업명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 발주부서 ○○명)에서 시행하는 (* 용역명) 용역에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0 . . .

신 청 인 : (인)

장 귀하

절 취 선

기술제안서 접수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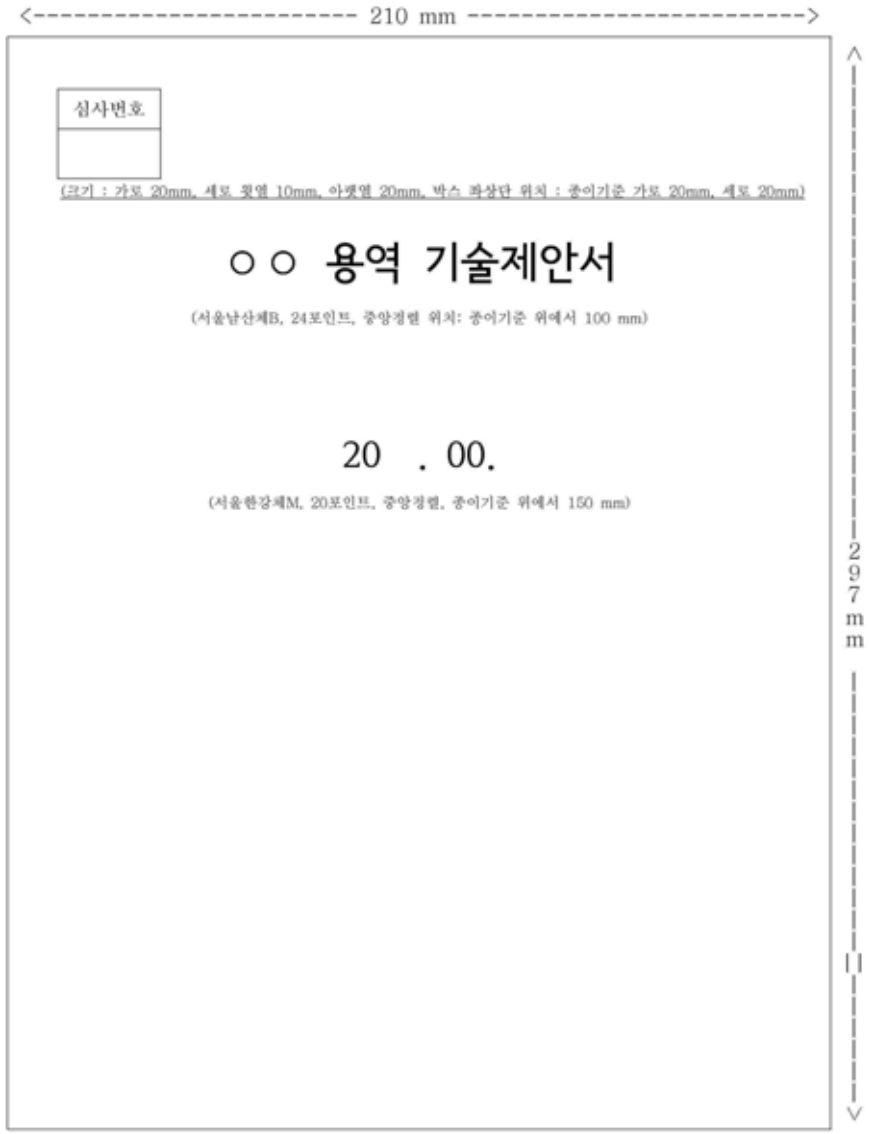
사업명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O.)	
			H.P.)	
주 소				

접 수 일 : 20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양식 2)



210mm×297mm
(백상지 80g/㎡)

(양식 3 - 평가위원용)

청렴 서약서

○ 용역명 :

본인은 위 용역의 기술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으로 선임 받아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고 공정하게 검토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소 속 :

직위(급): 성명 (서명)

장 귀 하

(양식 4 - 평가위원용)

동영상 촬영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 동영상 촬영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하여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해당 저작물은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따른 평가의 공정성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평가위원회 운영과정에서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에 동의함
- 해당 저작물은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따라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저작권)은 용역 발주기관에 있음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평가사유서 및 평가점수)는 실명공개

20 . . .

동의자 : 소 속 :

직위(급): 성명 (서명)

장 귀 하

(양식 5 - 기술제안서 제출업체용)

청렴 서약서

○ 용역명 :

본인은 위 용역의 기술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소 속 :

직위(급): 성명 (서명)

장 귀 하

제Ⅱ장.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Ⅱ장.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절 적용기준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기술인평가서 평가)

제Ⅱ장.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절 적용기준(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기술인평가서 평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및「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산하사업소, 자치구, 투자기관 포함)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평가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과 기술인평가서를 토대로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② "기술인평가 적격자"는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중 수행실적 평가결과 90점 이상을 확보한 자로서 기술인평가서 제출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기술인평가서 제출 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순으로 15위 까지를 기술인평가서 제출 자격을 부여한다.

③ "입찰안내서"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용역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숙지하여야 하는 용역의 범위·규모, 입찰관련 제출서류 작성기준, 기타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 등을 포함한 문서를 말한다.

제3조(수행실적평가 적용범위) 수행실적평가는 영 제51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해당하는 용역업체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방법)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용역금액 및 공종에 따라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이하 "수행실적평가"라 한다)", 기술인평가서에 따른 평가(이하 "기술인평가서 평가"라 한다)로 구분되며 적용범위는 본절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다.

제5조(기술인평가서 평가 적용범위) ① 기술인평가서 평가는 용역비 및 공종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적용되는 기술, 공법의 신규성, 공종간 상호복합의 정도, 친환경 건설기법(건설폐자재의 활용 등)의 요구정도, 공사수행의 난이도(지질이 특이하거나 공사대상이 문화재인 경우 등)등을 검토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 기술인 평가서 평가 적용범위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 용역비 20억원 이상의 용역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1호 각목을 필수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가. 토목공사 : 현수교·사장교·아치교·트러스교 등의 특수교량, 댐, 배수갑문, 하저터널, 첨단교통체계 시설의 공사

나. 건축공사 : 대경간 구조 등 특수공법 구조물공사, 환승복합 역사공사

다. 플랜트공사 : 다수의 기자재 공급자가 참여하는 플랜트 설비공사, 고도처리방식에 따른 정수장 공사, 하수폐수 처리공사, 폐기물소각시설 공사,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공사, 열병합발전설비 공사

② 발주부서는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당 용역의 특성상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평가부서)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업무의 연속성 등을 감안하여 발주부서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당경쟁 등이 우려되어 평가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평가부서를 달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배점기준) ① 수행실적평가, 기술인평가서 평가에 있어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범위 및 평가방법은 각각 별도로 정한 평가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발주부서는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인 경우는 원점수를 적용한다.

③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8조(적격자 등의 선정)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수행실적평가"에 의해서만 실시하는 경우 "수행실적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수행실적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순으로

15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②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기술인평가서 평가"에 의해서 실시하는 경우 "수행실적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를 기술인평가서 평가 적격자로 선정하여 기술인평가 평가서를 제출케 하고 기술인평가서 평가결과 85점 이상인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수행실적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를 "기술인평가 적격자"로 선정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수행실적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으로 15위까지를 "기술인평가 적격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수행실적평가, 기술인평가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 등을 정하여 입찰공고 시 공시한다.

- 발주청은 평가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④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선정된 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된 업체는 입찰참가 적격자에서 제외하고 잔여업체만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결과 통지)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평가결과 및 적격여부를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공시한다.

제10조(경과규정) 이 기준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것으로서 이 기준 시행 후 국토교통부 고시 및 행정안전부 예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각각 변경된 기준에 따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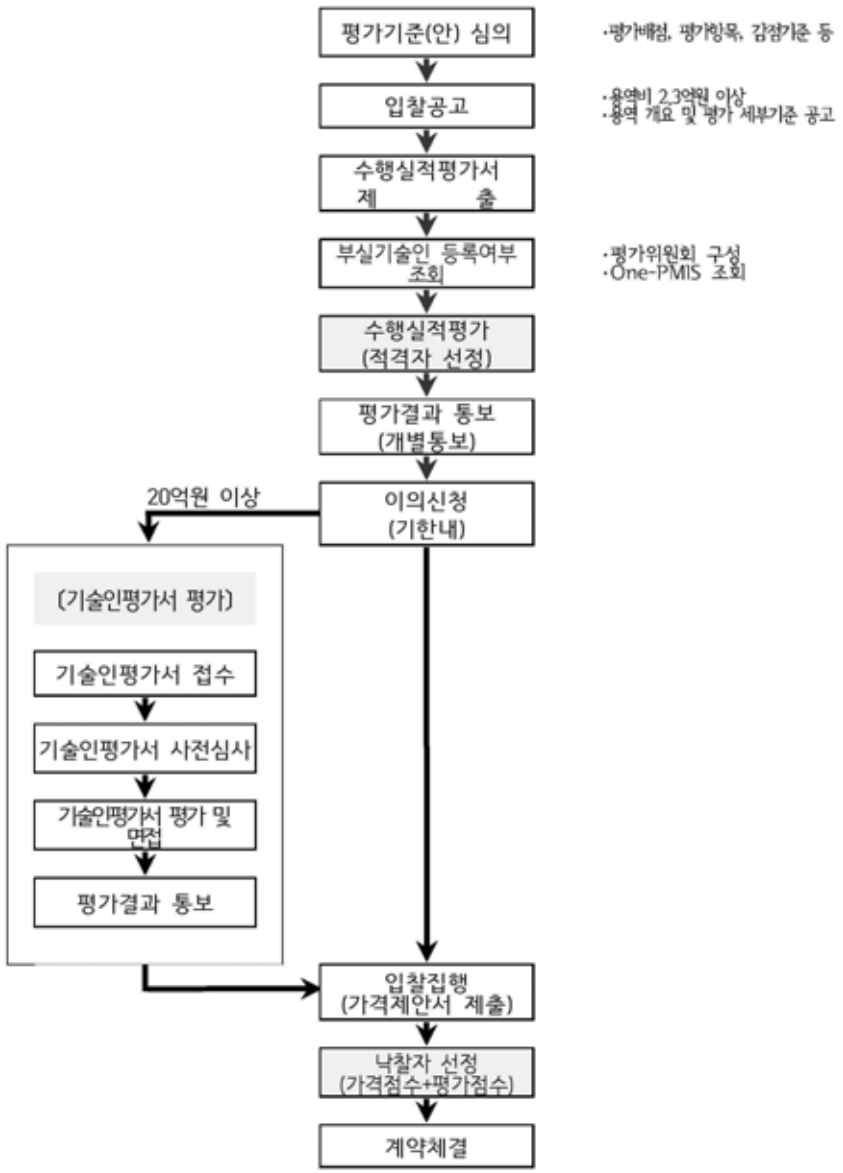
첨부 :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절차도

2. 기술인평가서 평가대상 용역 선정기준

첨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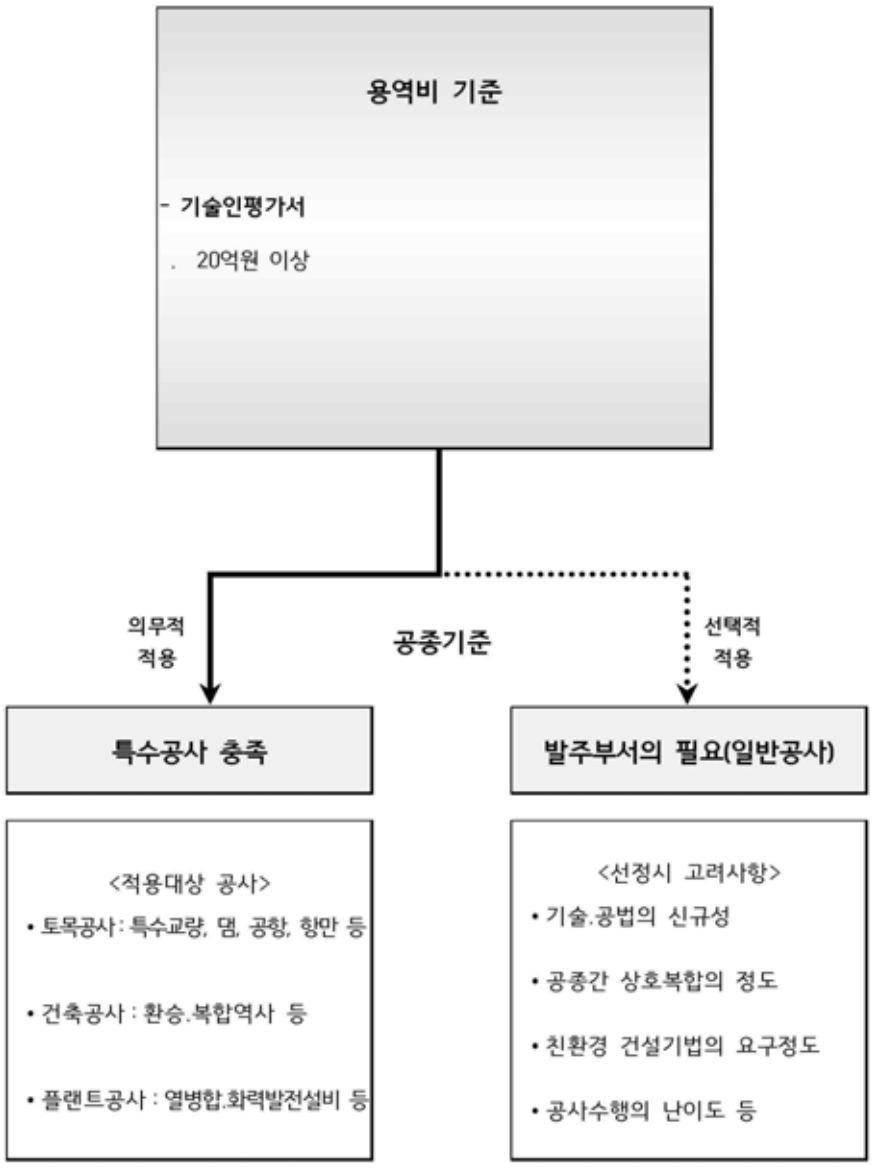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 절차도

(용역비 2.3억원 이상)



첨부 2

기술인평가서 평가대상 용역 선정기준



기술인평가서 평가 난이도 대상 시설물(예시)

전문분야	시설물별 난이도 대상기준
도 로	①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트교 등 경간장 100m 이상 특수교량 ② 3km 이상 해저 또는 하저터널 ③ 도시부 장대지하도로(500m 이상) ④ 통제센터와 연계된 통합시스템이 필요한 지능형교통체계시설 ⑤ 출입시설(완전입체교차) 신설, 확장 개량 설계 용역 및 공용 중인 기존교량(경간장 100m 이상)의 전면 개량 설계 용역 ⑥ 자연재해위험지구(산사태, 홍수 등), 환경보호·보전지역(국립공원, 수변구역, 백두대간 등)으로 지정된 지역 및 문화재, 천연기념물 서식지 등의 통과가 예상되는 경우
수자원	① 댐(총 저수량 1천만톤 이상) ② 배수갑문(2,000㎥/sec 이상)
철 도	① 장대교(연장 400m 이상, 경간장 70m 이상) 및 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트교 등) ② 철도차량기지 ③ 일반터널(3km 이상 터널), 해저 또는 하저터널 ④ 도심구간 ⑤ 자연재해위험지구(산사태, 홍수 등)로 지정된 구역, 환경보호·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구역(국립공원, 수변구역, 백두대간 등), 문화재, 천연기념물 서식지 등의 통과가 예상되는 경우

전문분야	시설물별 난이도 대상기준
공 항	① 활주로, 여객·화물터미널
플랜트	① 고도처리방식에 의한 정수장, 하수(5만톤/일 이상)·폐수(1만톤/일 이상) 처리시설 ② 폐기물(쓰레기, 슬러지 등) 소각시설(30톤/일 이상),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슬러지 건조 및 매립시설 ③ 가스공급시설 ④ 열병합발전설비, 집단에너지시설 등
건 축	① 초고층건축물(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②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 ③ 다중이용건축물 ④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30m 이상인 건축물
기 타	① 하저터널 ② 첨단교통체계 시설 ③ 설계 예상기간이 1년 이상으로 설계기간 단축이 필요한 경우 ④ 기타 특별한 기술력이 요구되어 발주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규모 공사의 설계용역

제Ⅱ장.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2절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수행실적평가) 세부기준

제2절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수행실적평가) 세부기준

1. 일반 사항

가. 목적

이 기준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규모(추정가격 2.3억원) 이상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해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평가(수행실적 평가)제도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업무수행시 담당실무자의 이해를 돕고 평가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기하는데 있다.

나. 용어의 정의

(1) "입찰참가 적격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중 수행실적 평가 결과 90점 이상을 얻은 자로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으로 15위 까지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2) "수행실적(능력) 평가기준에 대한 건설기술심의"라 함은 입찰공고 전 발주부서에서 정한 사업수행실적 평가세부기준 및 입찰공고문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행실적 평가팀(위원회)"이라 함은 입찰공고문 및 발주부서에서 정하는 사업수행실적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팀 또는 위원회를 말한다.

다. 평가방법 및 절차

(1) 발주부서는 입찰공고 기간 중 입찰희망자에게 평가세부기준을 반드시 배부 또는 공람토록 하여야 하며, 평가완료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 후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평가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3)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해당 용역 발주부서의 확인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4) PQ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

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5) 발주부서는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업무 중첩도의 평가기준일은 발주기관에서 용역의 특성을 감안한 기술인 투입계획에 따라 입찰공고일로부터 1개월 내외를 기준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기술인 투입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6)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7) 발주부서는 참여기술인,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실적 등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과도하게 경력 및 실적 등을 제한하는 기준을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8) 발주부서는 참여기술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취소(해지) 또는 기술인 교체 등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가) 참여기술인을 2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나) P.Q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발주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발주부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 동의서(양식 3)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해당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11) 발주부서는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7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3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5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부서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발주부서는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여건을 고려하여 중복배치 제외기간을 정할 수 있다)

(12) 발주부서는 수행실적평가 시 관련 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 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수행실적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용역사업자에 한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발주부서가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13) 발주부서는 각 사업별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규모(추정가격 2.3억원) 이상의 용역 추진시 "수행실적평가" 기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중 일부내용(의무사항 등)을 조정 또는 변경없이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기술심사담당관과 사전 서면협의로 건설기술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14) 발주부서는 수행실적 평가 시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행실적 평가팀(위원회)"을 구성하여 수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가) 수행실적 평가팀 : 절대평가 항목 평가

1) 구 성 : 발주부서 직원 3인 이상

2) 평가방법 : 수행실적 평가기준(평가 항목별 배점)에 의거 평가

(나) 수행실적 평가위원회 : 상대평가 항목 평가

1) 구 성 : 내부 위원 3인 이상 5인 이내

2) 위 원 장 : 발주부서장 또는 발주부서장이 평가위원 중에서 지명

※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지휘·총괄하며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

는다

3) 내부위원 : 발주부서가 소속된 실·국의 공무원을 제외한 타 실·국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등 외부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음

4) 평가결과 공개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 면접발표 평가 결과(평가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점수)를 시 홈페이지 또는 발주기관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5) 참여기술인의 자격은 영 제4조 별표 1 제2호에 의하여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자에 의한 기술인을 등급별로 차등 평가한다.

(16) 참여기술인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을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부서는 필요시 평가대상 기술인 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단,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최소 2인이상을 평가하여야 함), 이 경우 기술지원기술인은 투입인원이 3인 이내일 경우는 전원 평가하고, 3인 초과 시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평가대상 조정이 가능하다.

단, 미평가자는 기술인의 등급을 명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17)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나) 「주택법」 제2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다)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마)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18)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 시 이 기준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 발주부서는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한 사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할 수 있다.

(20) 주된 공종 결정은 해당 공사의 기술적 전문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예" 터널, 교량, 지하철, 고가차도 등)하되, 시공단계 수행대상 공사구간 중 터널·교량·지하철·고가차도 등이 포함된 공사는 해당분야 전문가(경력자) 1인 또는 2인 범위내에서 기술인으로 참여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1) 기술지원기술인은 가능한 건설사업관리대상의 모든 분야에 배치하되, 안전관리분야를 포함 최소 5개 분야 이상 되도록 기술지원기술인 투입계획을 수립한다

(22)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제(15)항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 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발주청에서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기준 제시)

(2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시공단계 상주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2)나)(2)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나)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 지 확인하여야 하며,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 발주부서는 필요시 참여업체 평가대상 기술인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24)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참여할 경우

-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면접발표 등 "주관적 평가 항목" 평가시 부실(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또는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부실 또는 유착비리 사항은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구분없이 적용하되, 공동도급으로 참

여사에도 지분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하고

-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품질사고 또는 최근 5년내 안전사고 관련 입찰참가제한·효력상실·영업정지·자격정지 요구 등 행정처분 요청사항, 최근 1년내 품질사고 관련 벌점부과사항)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운영 중인 One-PMIS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에 활용하여야 한다.
-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지정현황)는 재무국(재무과)에서 운영하는 서울계약마당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 활용하여야 한다.(※ 공사·공단 등은 재무부서 '공공구매 실적관리' 담당을 통해 시스템 자료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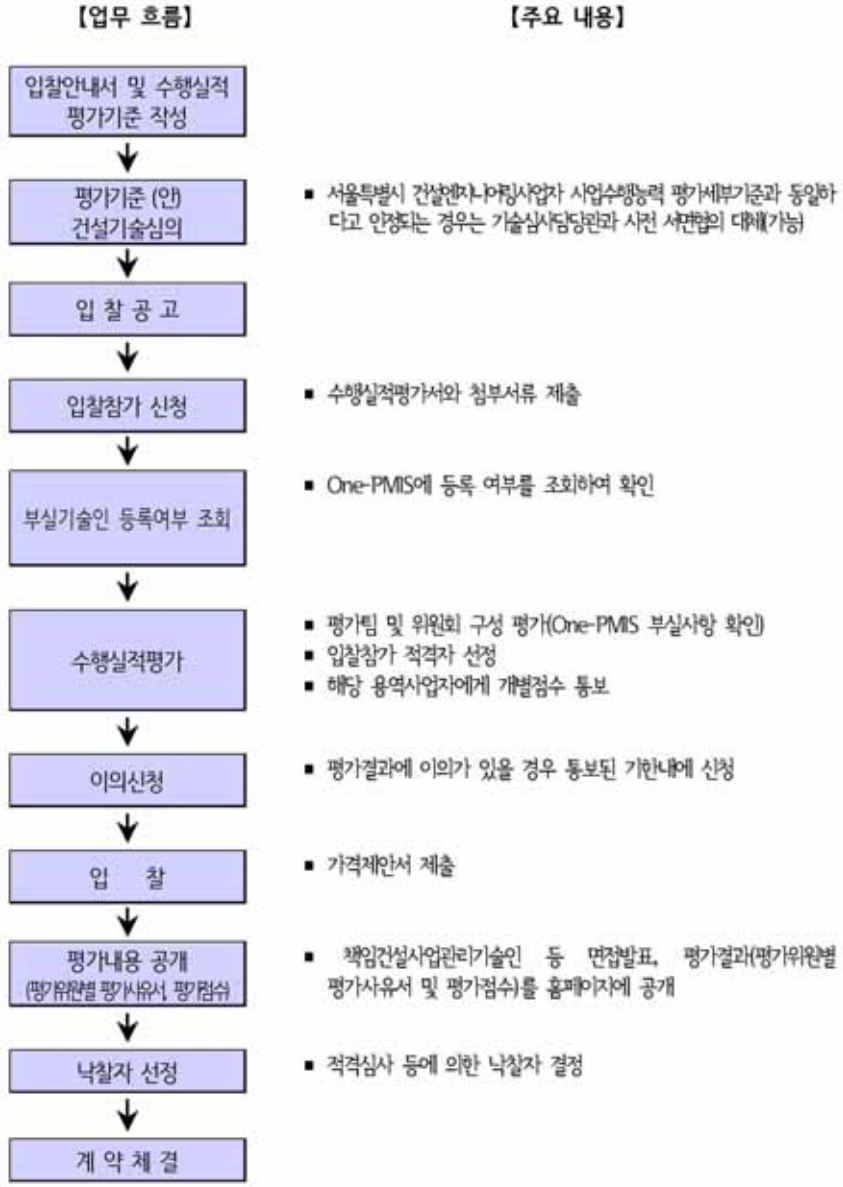
※ 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는 용역발주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에 대한 책임성과 경각심 고취 및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

(25) 용역수행 조직표를 작성하여 분야별 참여기술인 및 인원수를 명기하여 제시토록 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미평가자는 등급 만 명시)



(26)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양식 17)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라. 수행실적 평가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절차



(1) 발주부서의 장은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이 수행실적 평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공고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2)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공고문에는 수행실적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작성지침, 평가항목 등 입찰자가 수행실적평가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일체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발주부서는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자가 수행실적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수행실적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세부내용은 작성지침에 따른다.

(4) 발주부서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수행실적평가서 접수 시 불법하도급 감독소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부실기술인)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One-PMIS(최근 5년이내)에 조회하고 해당될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면접 발표 시 최저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면접발표 등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아래의 위반사항 업체에 대하여는 감점하여야 하고, 입찰공고 시 공고하여야 한다.

〈 비리감점 규정 〉

구 분	감 점 사 유	감점	감점기간
비리감점	1.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	3	당해심의
	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 위배	2	적발일부터 1년
	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	적발일부터 2년

(6) 발주부서의 장은 수행실적 평가결과를 해당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하며, 결과를 통보받은 입찰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발주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다.

(7) 발주부서의 장은 해당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된 최종 기술인평가 결과를 계약부서에 통보하고 계약부서의 장은 공고된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

2. 평가 기준

가. 항목별 배점 기준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평가방법
참 여 기 술 인 (60)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 (20)	등 급	부적격 시 실격	절대평가
		경 력	15(10)	
		실 적	9	
		교육훈련	1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 (23)	등 급		절대평가
		경 력	15(13)	
		실 적	9	
		교육훈련	1	
	기술지원기술인 10	등 급	3	절대평가
		경 력	6	
		교육훈련	1	
	면접발표 (7)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5)	상대평가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	
유사용역수행실적 (10)	회사실적 (10)	유사용역수행실적	8	절대평가
		용역수행성과	2	절대평가
신 용 도 (15)	업무정지	지정기간	7	절대평가
	벌점	부과기간	5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개발·활용실적		3	절대평가
	투자실적		7	
교체빈도 (5)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3	절대평가
	참여기술인		2	
합 계			100	
가점	공사비 절감가여 기술인		0.2	절대평가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0.3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10	절대평가

비고

1. 참여기술인의 ( )의 배점은 사업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기술인평가서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적용
2.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이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참여시 면접발표 등 "주관적 평가 항목" 평가시 부실(품질 및 안전사고 등) 또는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One-PMIS(부실), 서울계약마당(유착비리) 자료 활용)

나. 항목별 세부 배점기준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table>
<tr><th>평가
항목</th><th>평 가
요 소</th><th>배 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가.
참
여
기
술
인
(60)</td><td>(1) 책임
건설사
업관리
기술인</td><td>25
(20)</td><td>○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실격처리 함</td></tr>
<tr><td></td><td>(가)해당
분야
경력</td><td>15
(10)</td><td>
<table>
<tr><td>해당공사규모</td><td colspan="5">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경력 (단위 : 년)</td></tr>
<tr><td>1,000억원 이상</td><td>11이상</td><td>11미만
9이상</td><td>9미만
8이상</td><td>8미만
7이상</td><td>7미만</td></tr>
<tr><td>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td><td>9이상</td><td>9미만
7이상</td><td>7미만
6이상</td><td>6미만
5이상</td><td>5미만</td></tr>
<tr><td>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td><td>7이상</td><td>7미만
5이상</td><td>5미만
4이상</td><td>4미만
3이상</td><td>3미만</td></tr>
<tr><td>300억원 미만</td><td>5이상</td><td>5미만
3이상</td><td>3미만
2이상</td><td>2미만
1이상</td><td>1미만</td></tr>
<tr><td>점수</td><td>15
(10)</td><td>13.5
(9)</td><td>12
(8)</td><td>10.5
(7)</td><td>9
(6)</td></tr>
</table>
※( )의 배점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
</td></tr>
<tr><td></td><td>(나)직무
분야
실적</td><td>9</td><td>1)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6점)
<table>
<tr><td>등 급</td><td colspan="5">점 수 (단위 : 년)</td></tr>
<tr><td>특급기술인</td><td>15이상</td><td>15미만
13이상</td><td>13미만
11이상</td><td>11미만
9이상</td><td>9미만</td></tr>
<tr><td>고급기술인</td><td>12이상</td><td>12미만
10이상</td><td>10미만
8이상</td><td>8미만
6이상</td><td>6미만</td></tr>
<tr><td>점수</td><td>6</td><td>5.7</td><td>5.4</td><td>5.1</td><td>4.8</td></tr>
</table>
</td></tr>
</table>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table>
<tr><th>평가
항목</th><th>평 가
요 소</th><th>배 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가.
참
여
기
술
인</td><td></td><td></td><td>2)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3점)
<table><tr><th>등 급</th><th colspan="5">점 수(단위: 년)</th></tr><tr><td>특급기술인</td><td>7이상</td><td>7미만
5이상</td><td>5미만
3이상</td><td>3미만
2이상</td><td>2미만</td></tr><tr><td>고급기술인</td><td>5이상</td><td>5미만
4이상</td><td>4미만
3이상</td><td>3미만
2이상</td><td>2미만</td></tr><tr><td>점수</td><td>3</td><td>2.8</td><td>2.6</td><td>2.4</td><td>2.2</td></tr></table></td></tr>
<tr><td></td><td>(다) 교육
훈련</td><td>1</td><td>○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1) 교육훈련
<table><tr><th>구분</th><th>2주 이상</th><th>1주 이상 2주 미만</th></tr><tr><td>점수</td><td>0.5</td><td>0.3</td></tr></table>
2) 기술자격
<table><tr><th>구분</th><th>기술사.건축사</th><th>기사</th><th>산업기사</th></tr><tr><td>점수</td><td>0.5</td><td>0.3</td><td>0.1</td></tr></table></td></tr>
<tr><td></td><td>(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가) 해당 분야 경력</td><td>15
(13)</td><td>○ 해당 용역의 특성 및 총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기술인의 인원수 및 기술인 등급을 결정하여 발주부서의 장이 입찰공고시 제시
<table><tr><td>해당공사규모</td><td colspan="5">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경력 (단위 : 월)</td></tr><tr><td>300억원 이상</td><td>34이상</td><td>34미만
30이상</td><td>30미만
26이상</td><td>26미만
22이상</td><td>22미만</td></tr><tr><td>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td><td>26이상</td><td>26미만
21이상</td><td>21미만
16이상</td><td>16미만
10이상</td><td>10미만</td></tr><tr><td>100억원 미만</td><td>20이상</td><td>20미만
15이상</td><td>15미만
10이상</td><td>10미만
5이상</td><td>5미만</td></tr><tr><td>점 수</td><td>15
(13.0)</td><td>13.5
(11.7)</td><td>12.0
(10.4)</td><td>10.5
(9.1)</td><td>9.0
(7.8)</td></tr></table></td></tr>
</table>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table>
<tr><th>평가
항목</th><th>평가
요소</th><th>배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 rowspan="6">가.
참
여
기
술
인</td><td rowspan="4">(나) 직무
분야
실적</td><td rowspan="4">9</td><td>○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사업관리(5점)
<table>
<tr><th>등 급</th><th colspan="5">점 수(단위 : 년)</th></tr>
<tr><td>특급기술인</td><td>9이상</td><td>9미만
7이상</td><td>7미만
6이상</td><td>6미만
5이상</td><td>5미만</td></tr>
<tr><td>고급기술인</td><td>7이상</td><td>7미만
5이상</td><td>5미만
4이상</td><td>4미만
3이상</td><td>3미만</td></tr>
<tr><td>중급기술인</td><td>6이상</td><td>6미만
4이상</td><td>4미만
3이상</td><td>3미만
2이상</td><td>2미만</td></tr>
<tr><td>점 수</td><td>5.0</td><td>4.5</td><td>4.0</td><td>3.5</td><td>3</td></tr>
</table>
○ 시공, 시험, 검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사업관리(4점)
<table>
<tr><th>등 급</th><th colspan="5">점 수(단위 : 년)</th></tr>
<tr><td rowspan="2">특급기술인</td><td>4이상</td><td>4미만
3이상</td><td>3미만
2이상</td><td>2미만
1이상</td><td>1미만</td></tr>
<tr><td>4.0</td><td>3.6</td><td>3.2</td><td>2.8</td><td>2.4</td></tr>
<tr><td rowspan="2">고급기술인</td><td colspan="2">3이상</td><td colspan="2">3미만
2이상</td><td>2미만
1이상</td><td>1미만</td></tr>
<tr><td colspan="2">4.0</td><td colspan="2">3.6</td><td>3.2</td><td>2.8</td></tr>
<tr><td rowspan="2">중급기술인</td><td colspan="3">2이상</td><td colspan="3">2미만</td></tr>
<tr><td colspan="3">4.0</td><td colspan="3">3.6</td></tr>
</table></td></tr>
<tr><td>(다)교육
훈련</td><td>1</td><td>○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적용
<table>
<tr><th>구분</th><th>2주 이상</th><th>1주 이상 2주 미만</th></tr>
<tr><td>점수</td><td>1</td><td>0.5</td></tr>
</table>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설계단계에 참여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훈련 평가방법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td></tr>
<tr><td rowspan="2">(3) 기술
지원
기술인</td><td>(10)</td><td>○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기술지원기술인 평가배점을 참여기술인의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td></tr>
<tr><td>(가)등급</td><td>3</td><td>
<table>
<tr><th>해당 공사규모</th><th colspan="2">등 급(점수)</th></tr>
<tr><td rowspan="2">총공사비 300억원이상</td><td>특급기술인</td><td>고급기술인 이하</td></tr>
<tr><td>3</td><td>2</td></tr>
<tr><td rowspan="2">총공사비 300억원미만</td><td>고급기술인 이상</td><td>중급기술인</td></tr>
<tr><td>3</td><td>2</td></tr>
</table></td></tr>
</table>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table>
<tr><th>평가
항목</th><th>평 가
요 소</th><th>배 점</th><th colspan="6">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 rowspan="8">가.
참
여
기
술
인</td><td rowspan="6">(나) 해당
분야
경력</td><td rowspan="6">6</td><td>해당공사규모</td><td colspan="5">설계, 시공, 시험, 검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사업관리 경력 (단위 : 년)</td></tr>
<tr><td>1,000억원 이상</td><td>15이상</td><td>15미만
13이상</td><td>13미만
11이상</td><td>11미만
9이상</td><td>9미만</td></tr>
<tr><td>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td><td>13이상</td><td>13미만
11이상</td><td>11미만
9이상</td><td>9미만
7이상</td><td>7미만</td></tr>
<tr><td>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td><td>11이상</td><td>11미만
9이상</td><td>9미만
7이상</td><td>7미만
5이상</td><td>5미만</td></tr>
<tr><td>300억원 미만</td><td>9이상</td><td>9미만
7이상</td><td>7미만
5이상</td><td>5미만
3이상</td><td>3미만</td></tr>
<tr><td>점수</td><td>6</td><td>5.7</td><td>5.4</td><td>5.1</td><td>4.8</td></tr>
<tr><td>(다) 교육
훈련</td><td>1</td><td colspan="6">○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1) 교육훈련
<table><tr><td>구분</td><td>2주 이상</td><td>1주 이상 2주 미만</td></tr><tr><td>점수</td><td>0.5</td><td>0.3</td></tr></table>
2) 기술자격
<table><tr><td>구분</td><td>기술사,건축사</td><td>기사</td><td>산업기사</td></tr><tr><td>점수</td><td>0.5</td><td>0.3</td><td>0.1</td></tr></table>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1인에 한하여 적용</td></tr>
<tr><td>(4)면접
(발표)</td><td>(7)</td><td colspan="6">○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로하며, 사업단계에 따라 해당 분야의 참여기술인이 다를 경우 단계별 각 1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 ( )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업무수행능력 : 3점(1)
- 갖추어야 할 자질, 청렴도 등 : 2점(1)
-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 수 : 1.0, 우 : 0.9, 미 : 0.8, 양 : 0.7, 가 : 0.6, 미참석 : 0 〕
<table><tr><td>구 분</td><td>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td><td>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td></tr><tr><td>점 수</td><td>5</td><td>2</td></tr></table>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발표 자료는 양식16에 따라 A4 3쪽 이내로 작성된 수행계획서를 활용하여야 하며, 그 외의 자료는 사용 불가함(3쪽 초과분은 인정하지 않음)
※ 면접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평가(TP) 대상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평가시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품질 및 안전사고 등 부실사항 또는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 실시 (One-PMIS(부실), 서울계약마당(유착비리) 활용)
- 불법 하도급 감독소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부실기술인)은 항목별 배점에 가등급(60%) 적용(건설분야 하도급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시장방침 제459호, '10.11.30.) 이행 관련)</td></tr>
</table>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table>
<tr><th>평가
항목</th><th>평 가
요 소</th><th>배
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10)</td><td>(1) 유사
용 역
수 행
실적</td><td>8</td><td>1)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중에 해당 건설사업관리 기간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건설사업관리기간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을 인정
2)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이 토목공사인 경우(8)
<table>
<tr><th>해당 공사규모</th><th colspan="5">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단위 : 억원)</th></tr>
<tr><td>3,000억원 이상</td><td>80이상</td><td>80미만
70이상</td><td>70미만
60이상</td><td>60미만
50이상</td><td>50미만</td></tr>
<tr><td>3,000억원 미만
2,000억원 이상</td><td>60이상</td><td>60미만
55이상</td><td>55미만
50이상</td><td>50미만
45이상</td><td>45미만</td></tr>
<tr><td>2,000억원 미만
1,000억원 이상</td><td>50이상</td><td>50미만
45이상</td><td>45미만
40이상</td><td>40미만
35이상</td><td>35미만</td></tr>
<tr><td>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td><td>40이상</td><td>40미만
35이상</td><td>35미만
30이상</td><td>30미만
25이상</td><td>25미만</td></tr>
<tr><td>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td><td>30이상</td><td>30미만
25이상</td><td>25미만
20이상</td><td>20미만
15이상</td><td>15미만</td></tr>
<tr><td>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td><td>20이상</td><td>20미만
15이상</td><td>15미만
10이상</td><td>10미만
5이상</td><td>5미만</td></tr>
<tr><td>100억원 미만</td><td>10이상</td><td>10미만
8이상</td><td>8미만
6이상</td><td>6미만
4이상</td><td>4미만</td></tr>
<tr><td>점수</td><td>8</td><td>7.8</td><td>7.6</td><td>7.4</td><td>7.2</td></tr>
</table>
3)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인 경우(8)
<table>
<tr><th>해당 공사규모</th><th colspan="5">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단위:억원)</th></tr>
<tr><td>1,000억원 이상</td><td>30이상</td><td>30미만
25이상</td><td>25미만
20이상</td><td>20미만
15이상</td><td>15미만</td></tr>
<tr><td>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td><td>25이상</td><td>25미만
20이상</td><td>20미만
15이상</td><td>15미만
10이상</td><td>10미만</td></tr>
<tr><td>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td><td>20이상</td><td>20미만
15이상</td><td>15미만
10이상</td><td>10미만
5이상</td><td>5미만</td></tr>
<tr><td>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td><td>15이상</td><td>15미만
11이상</td><td>11미만
7이상</td><td>7미만
4이상</td><td>4미만</td></tr>
<tr><td>100억원 미만</td><td>10이상</td><td>10미만
7이상</td><td>7미만
4이상</td><td>4미만
2이상</td><td>2미만</td></tr>
<tr><td>점수</td><td>8</td><td>7.8</td><td>7.6</td><td>7.4</td><td>7.2</td></tr>
</table>
4) 해당 공사가 복합공종 공사이거나 주된 공종이 설비공사인 경우에는 발주부서에서 위 2)와 3)을 참고하여 용역수행실적을 작성(8)</td></tr>
</table>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table>
<tr><th>평가
항목</th><th>평가요소</th><th>배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td><td>(2) 용역
수행성과</td><td>2</td><td>1)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용역평가는 건진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table><tr><th>용역평가 결과</th><th>95점 이상</th><th>95점 미만 92점 이상</th><th>92점 미만 89점 이상</th><th>89점 이상 86점 미만</th><th>86점 미만</th></tr><tr><td>점수</td><td>2점</td><td>1.8점</td><td>1.6점</td><td>1.4점</td><td>1.2점</td></tr></table>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8" 또는 "1.6"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발주청에서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기준 제시)</td></tr>
<tr><td>다. 신용도
(15)</td><td>(1)영업(업무)
정지</td><td>7</td><td>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td></tr>
<tr><td></td><td>(2)벌점</td><td>5</td><td>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2)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td></tr>
<tr><td></td><td>(3)재정상태
건실도</td><td>3</td><td>1)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한다
<table><tr><td>회사채</td><td>BBB-이상</td><td>BBB-미만 B-이상</td><td>CCC+ 이하</td><td>미제출</td></tr><tr><td>기업어음</td><td>A3-이상</td><td>A3-미만 B-이상</td><td>C이하</td><td>미제출</td></tr><tr><td>기업신용</td><td>BBB-이상</td><td>BBB-미만 B-이상</td><td>CCC+이하</td><td>미제출</td></tr><tr><td>점수</td><td>3.0</td><td>2.8</td><td>2.1</td><td>0</td></tr></table>
※ 소규모 용역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용역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td></tr>
</table>

<table>
<tr><th>평가
항목</th><th>평 가
요 소</th><th>배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0)</td><td>(1)개발·
활용
실적</td><td>3</td><td>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기준점수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기준점수</th></tr>
<tr><td>개발실적</td><td>건설신기술</td><td>2.0점/건당</td></tr>
<tr><td rowspan="2">활용실적</td><td>건설신기술</td><td>0.5점/건당</td></tr>
<tr><td>건설기술에 관한 특허</td><td>0.3점/건당</td></tr>
</table>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5">가 중 치</th></tr>
<tr><th>1.0</th><th>0.9</th><th>0.8</th><th>0.7</th><th>0.6</th></tr>
<tr><td>실적건수
(건)</td><td>5이상</td><td>5미만
4이상</td><td>4미만
3이상</td><td>3미만
2이상</td><td>2미만</td></tr>
<tr><td>실적금액
(억원)</td><td>20이상</td><td>20미만
18이상</td><td>18미만
16이상</td><td>16미만
14이상</td><td>14미만</td></tr>
</table>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table>
<tr><th>구 분</th><th>5년미만</th><th>5년이상
10년미만</th><th>10년이상
20년미만</th></tr>
<tr><td>인정률</td><td>100%</td><td>80%</td><td>60%</td></tr>
</table>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td></tr>
</table>

<table>
<tr><th>평가
항목</th><th>평 가
요 소</th><th>배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td><td>(2)투자
실적</td><td>7</td><td>○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table>
<tr><td>구분</td><td>1.5%이상</td><td>1.50%미만
1.25%이상</td><td>1.25%미만
1.00%이상</td><td>1.00%미만
0.75%이상</td><td>0.75%미만
0.50%이상</td><td>0.5%미만</td></tr>
<tr><td>점수</td><td>7</td><td>6.8</td><td>6.6</td><td>6.4</td><td>6.2</td><td>6.0</td></tr>
</table>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td></tr>
<tr><td>마.
교
체
빈
도
(5)</td><td>(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td><td>3</td><td>○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 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table>
<tr><td>교체빈도율
(%)</td><td>5%미만</td><td>5%이상
10%미만</td><td>10%이상
15%미만</td><td>15%이상
20%미만</td><td>20%이상</td></tr>
<tr><td>점 수</td><td>3</td><td>2.5</td><td>2</td><td>1</td><td>0</td></tr>
</table></td></tr>
<tr><td></td><td>(2) 참여기술인</td><td>2</td><td>○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td></tr>
</table>

다.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table>
<tr><th>평가
항목</th><th>평가요소</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가점</td><td>(1) 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 (0.2점)</td><td>○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부서(인허가, 승인기관은 제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부서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table>
<tr><td>가중치</td><td>1.0</td><td>0.8</td><td>0.5</td></tr>
<tr><td>절감금액</td><td>10억원 이상</td><td>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td><td>5억원 미만
1억원 이상</td></tr>
<tr><td>절감비율</td><td>1.0% 이상</td><td>1.0% 미만
0.5% 이상</td><td>0.5% 미만
0.1% 이상</td></tr>
</table></td></tr>
</table>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부서로부터 절감실적을 인정받아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양식 14)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발주부서,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다. 공사비 절감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라. 발주부서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날인)
	(2)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감점	(1) 부패행위 관련자 (10점)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부서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부서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인의 평가방법

〈 해당분야 경력 〉

- 해당분야 경력이라 함은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에서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발주부서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인이 현장에 배치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이하 같다)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공사의 규모 및 공사특성을 고려하여 발주부서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 건설사업관리대상 공사구간 중 터널·교량·지하철·고가차도 등이 포함된 공사는 참여기술인 1인 또는 2인 범위내에서 해당분야 경력을 구체화하여 해당분야 경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설계·시공·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
-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발주부서에서 발행한 서류를 제출 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실적 등을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등 또는 해당용역 발주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참여기술인이 발주부서·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써 해당분야의 건설공사·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와 직무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 해당분야 이외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업무 실적은 해당 분야의 60%를 적용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비 5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 외의 경력 업무실적 평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직무분야 실적 〉

- 직무분야 실적이라 함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영 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사업관리, 기술자문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하며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공사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부서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예시) 토목, 건축, 국토개발, 환경, 교통 등

- 참여기술인이 발주부서·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써 해당분야의 건설공사·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와 직무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25점(20점)

(가) 해당분야 경력(15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 면접평가 하는 경우 10점)

〈 배 점 〉

해당 공사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사업관리, 기술자문 경력 (단위 : 년)				
1,000억원 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8이상	8미만 7이상	7미만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300억원 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점수	15 (10)	13.5 (9)	12 (8)	10.5 (7)	9 (6)

※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구간 중 터널·교량·지하철·고가차도 등이 포함된 공사는 참여기술인 1인 또는 2인 범위내에서 해당분야 경력을 구체화하여 해당분야 경력 평가

(나) 직무분야 실적(9점)

〈 배 점 〉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사업관리 (6점)

등 급	점 수(단위: 년)				
특급기술인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고급기술인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점수	6	5.7	5.4	5.1	4.8

- 시공, 시험, 검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사업관리, (3점)

등 급	점 수(단위: 년)				
특급기술인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고급기술인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년미만
점수	3	2.8	2.6	2.4	2.2

(다) 교육훈련(1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구분	2주 이상	1주 이상 2주 미만
점수	0.5	0.3

〈 기술자격 〉

구분	기술사·건축사	기사	산업기사
점수	0.5	0.3	0.1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25점(23점)

(가) 해당 분야 경력(15점, 면접평가 하는 경우 13점)

〈 배 점 〉

해당 공사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사업관리, 기술자문 경력(단위 : 월)				
300억원 이상	34이상	34미만 30이상	30미만 26이상	26미만 22이상	22미만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26이상	26미만 21이상	21미만 16이상	16미만 10이상	10미만
100억원 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점 수	15 (13)	13.5 (11.7)	12 (10.4)	10.5 (9.1)	9 (7.8)

※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구간 중 터널·교량·지하철·고가차도 등이 포함된 공사는 참여기술인 1인 또는 2인 범위내에서 해당분야 경력을 구체화하여 해당분야 경력 평가

(나) 직무분야 실적(9점)

〈 배 점 〉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사업관리 (5점)

등 급	점 수 (단위:년)				
특급기술인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고급기술인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중급기술인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5	4.5	4.0	3.5	3

-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사업관리(4점)

등 급	점 수 (단위 : 년)				
특급기술인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4	3.6	3.2	2.8	2.4
고급기술인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4	3.6	3.2	2.8	
중급기술인	2이상		2미만		
	4		3.6		

(다) 교육훈련(1점)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적용

〈 배 점 〉

구분	2주 이상	1주 이상 2주 미만
점수	1	0.5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설계단계에 참여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훈련 평가방법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3) 기술지원기술인 : 10점

- 기술지원기술인는 가능한 건설사업관리대상의 모든분야에 배치하되, 안전관리분야를 포함하여 5개 분야 이상이 되도록 기술지원기술인 투입계획을 수립할 것

- 기술지원기술인 투입인원이 3인 이내일 경우 전원을 평가하고, 3인이 초과시 초과인원에 대

하여는 발주부서에서 평가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가) 등급평가(3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2호 (전기분야의 기술인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사 규모별 절대평가

〈 배 점 〉

해당 공사규모	등 급(점수)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이하
	3	2
총공사비 300억원미만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3	2

(나) 해당 분야 경력(6점)

〈 배 점 〉

해당 공사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사업관리 경력(단위 : 년)				
1,000억원 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 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6.0	5.7	5.4	5.1	4.8

(다) 교육훈련(1점)

-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배 점(교육훈련) 〉

구분	2주 이상	1주 이상 2주 미만
점수	0.5	0.3

〈 배 점(기술자격) 〉

구분	기술사·건축사	기사	산업기사
점수	0.5	0.3	0.1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1인에 한하여 적용

(4) 면접·발표(7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자질검증을 위한 면접(발표) 실시 : 면접 또는 발표시 해당 당사자 외에 컴퓨터조작 보조자 등의 참석은 불가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발표 자료는 양식16에 따라 A4 3쪽 이내로 작성된 수행계획서를 활용하여야 하며, 그 외의 자료는 사용 불가함(3쪽 초과분은 인정하지 않음)
  - 면접 또는 발표 당사자가 컴퓨터 등의 기기를 직접 조작
- 점수산정방법 : 각 항목별 점수에 다음 계수를 곱하여 합계

  〔 수 : 1.0, 우 : 0.9, 미 : 0.8, 양 : 0.7, 가 : 0.6, 미참석 : 0점〕

※ ( )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 : 3점(1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갖추어야 할 자질, 청렴도 등 : 2점(1점)

구분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점수	5	2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 면접·발표시 불법하도급 관리·감독 소홀 기술인(부실기술인)인지를 One-PMIS(최근 5년 이내)에 조회한 후 해당될 경우 항목별 배점에 가등급(60%) 적용(건설분야 하도급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시장방침 제459호, '10. 11. 30.) 이행 관련)

※ 면접평가는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에 따른 기술인평가서 평가대상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건설사업관리용역 시 업체 또는 참여기술인이 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사항이 있는 경우에 이를 평가점수에 반영하여 평가 실시

- 부실 또는 유착비리 사항은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구분없이 적용하고,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에도 지분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품질사고 및 최근 5년내 안전사고 관련 입찰참가제한·효력상실·영업정지·자격정지 요구 등 행정처분 요청사항, 최근 1년내 품질사고 관련 벌점부과사항)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운영중인 One-PMIS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 활용하여야 한다.

-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지정현황)는 재무국(재무과)에서 운영하는 서울계약마당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 활용하여야 한다.(※ 공사·공단 등은 재무부서 '공공구매 실적관리' 담당을 통해 시스템 자료 검색)

〈 상대평가시 업체수별 배분표 〉

·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율 :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

업체수	등급					업체수	등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 3	1	1	(1)			17	2	3	7	3	2
4	1	2	1			18	2	4	7	3	2
5	1	2	1	1		19	2	4	7	4	2
6	1	2	1	1	1	20	2	4	8	4	2
7	1	2	2	1	1	21	2	4	9	4	2
8	1	2	3	1	1	22	2	5	9	4	2
9	1	2	3	2	1	23	2	5	9	5	2
10	1	2	4	2	1	24	2	5	10	5	2
11	1	2	5	2	1	25	3	5	10	5	2
12	1	3	5	2	1	26	3	5	10	5	3
13	1	3	5	3	1	27	3	5	11	5	3
14	1	3	6	3	1	28	3	6	11	5	3
15	2	3	6	3	1	29	3	6	11	6	3
16	2	3	6	3	2	30	3	6	12	6	3

※ 참여 업체수가 30개 초과 시 등급별 배분율을 기준으로 등급별 업체수 조정

·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방법 : 10점

-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준공 또는 수행중)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말함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준공(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중에 해당 건설사업관리 기간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 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건설사업관리 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을 인정

- 해당공사가 복합공종이거나 주된 공종이 설비공사인 경우에는 발주부서에서 아래 배점기준을 참고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을 작성
- 유사용역 수행실적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 실적은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60%를 적용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비 5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 외의 경력 업무실적 평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등 또는 해당 발주부서의 실적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동 기관의 실적증명이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수행중인 용역의 기성실적은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등에 신고 또는 발주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기성실적만 인정함
- 산정방법 :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의 70% 인정)×0.7 또는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상 감리실적 70% 인정)×0.7 또는 1.0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70%만 인정한다.

〈 배 점 〉

(1) 기술용역실적

-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이 토목공사인 경우(8점)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해당 공사규모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 (단위 : 억원)				
3,000억원 이상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00억원 미만 2,000억원 이상	60이상	60미만 55이상	55미만 50이상	50미만 45이상	45미만
2,000억원 미만 1,000억원 이상	50이상	50미만 45이상	45미만 40이상	40미만 35이상	35미만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40이상	40미만 35이상	35미만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100억원 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점수	8	7.8	7.6	7.4	7.2

-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인 경우(8점)

해당 공사규모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단위:억원)				
1,000억원 이상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15이상	15미만 11이상	11미만 7이상	7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 미만	10이상	10미만 7이상	7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점수	8	7.8	7.6	7.4	7.2

예시) 발주부서에서 시행예정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가 토목분야 중 도로공사에 해당되고, 2개 건설사업관리업체(A, B)가 공동도급으로 입찰응모 한 경우 유사용역실적 평가는

- 공동도급업체 실적 및 용역참여 지분율

· 해당 도로공사 건설사업관리 실적이 A사는 200억원, B사는 100억원이며, 용역참여 지분율은 A사와 B사가 6 : 4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200억원×0.6)+(100억원×0.4)=160억원 → 8점(공동도급시 해당 점수임)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09.3.1,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수행중인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2. 3. 2, 준공예정일 2014.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기간은 2012. 3. 2부터 2014. 5. 1까지 금액계상[2012. 3.2부터 2014. 5. 1까지의 선급금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2) 용역수행성과(2점)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용역평가는 건진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이상 86점 미만	86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8" 또는 "1.6"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발주청에서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기준 제시)

다. 신용도 평가방법 : 15점

(1) 영업(업무)정지 (7점)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벌점 (5점)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동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동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3) 재정상태 건실도 (3점)

○ 신용평가도 등급(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가능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방법 : 10점

(1) 개발·활용실적 (3점)

-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투자 실적 (7점)

-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98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분석·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마. 교체빈도 평가방법 : 5점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3점)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 배 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교체빈도율 (%)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점 수	3	2.5	2	1	0

(2) 참여 기술인 (2점)

-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바.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평가방법 : 0.2점

(1)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부서로부터 절감실적을 인정받아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양식 14)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발주부서,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다. 공사비 절감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라. 발주청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날인)

4. 수행실적 평가서 작성방법

가. 제출서류 명세

(1) 용역참여 신청서 1부

(2) 용역관련 해당 등록증 사본 각1부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록증

(나) 건설사업관리업 등록증(전력)

(다)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 및 엔지니어링활동주체 회원수첩

(라) 소방공사 건설사업관리업 등록증

(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공동도급 시 : 공동수급 협정서 1부 첨부)

나. 서류 작성 방법

(1) 페이지 수 : 제한없음.

(2) 인쇄 및 제본

(가) 용지크기 : A4 (210mm / 297mm)

(나) 재 질 : 백상지 (80g/㎡), 양면인쇄

(다)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 조판인쇄

(라) 제본방법 : 무선 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마) 제본순서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수행실적평가서 (양식1)

2) 용역참여 신청서 (양식2)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참여 동의서 (양식3)

4) 용역관련 등록증 사본

5) 공동수급 협정서
6) 공동수급 협정체결 현황 (양식4)
7) 참여기술인 자격사항 (양식5)
8) 기술인보유현황 확인서
9) 상주 책임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경력확인서
10) 상주 분야별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경력확인서
11) 기술지원기술인 경력확인서
12) 참여 기술인 경력·실적사항 (양식6)
13) 유사용역 사업수행 실적 (양식7)
14)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 확인서
15) 업체 영업정지 및 기술인 자격업무정지등 (양식8)
16) 제재현황 및 벌점 확인서
17)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양식9)
18)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양식10)
19) 재무제표 확인 또는 재정상태 검토보고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확인)
20) 신기술지정증서 및 특허, 실용신안 등록증 사본
21)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한국건설신기술협회)
22) 투자실적관련 사실증명원(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2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4) 참여기술인 교육실적
25) 참여기술인 업무중첩도(양식11)
26)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 교체빈도(양식12)
27) 벌점 관련 사항 (양식 13)
28)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관련 사항 (양식 14)
29) 감점 및 가점 사항(양식15)
30)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용역수행계획서(양식16)
31)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양식17)

(3)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 여백에 업체 대표자 원본대조 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한다.

②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나) 기술인평가서 평가대상 외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실시하는 책임건설사업기술인 등 면접발표시는 해당당사자 외에 컴퓨터조작 보조자 등의 참석은 불가(면접 또는 발표당사자가 컴퓨터 등 기기를 직접 조작)

(다)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한다.

(라)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마)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양식 1]

접수번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수행실적 평가서

용 역 명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양식 2]

용 역 참 여 신 청 서

수 신 :

참 조 :

제 목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아래 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용 역 명 :

붙임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수행능력 평가서 1부. 끝.

20 . . .

회사명 :

주 소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양식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참여동의서

□ 용 역 명 :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본인은 귀 00에서 발주하는 상기 용역의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함에 있어 ○○분야 (책임 / 분야별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참여함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참여기술 회 사 명 :
직 위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상기인의 용역 참여를 확인합니다.

확 인 자 회 사 명 :
대표 이사 : (인)

000000 귀하

[양식 4]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table>
<tr><th>구 분</th><th>업체명</th><th>주소</th><th>대표자</th><th>전화</th><th colspan="2">출자비율</th><th>비고</th></tr>
<tr><td rowspan="3">공동이행</td><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d></td></tr>
<tr><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d></td></tr>
<tr><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d></td></tr>
<tr><td rowspan="6">분담이행</td><td rowspan="2">업체명</td><td rowspan="2">주소</td><td rowspan="2">대표자</td><td rowspan="2">전화</td><td colspan="2">분담내용</td><td rowspan="2">비고</td></tr>
<tr><td>업종</td><td>비율</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계</td><td></td><td></td><td></td><td></td><td colspan="2">100%</td><td></td></tr>
</table>

[양식 5]

참여 기술인 자격 사항

구 분		분야	등급	주민등록번호	자격내용		학력내용		교육수료일자	소속회사
					자격명	취득일	최종학력	졸업일 또는 학위취득일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									
	○○○									
	○○○									
	○○○									
기술지원 기술인	○○○									
	○○○									
	○○○									
	○○○									

첨부 : 1. 자격증 사본

2. 기술인 경력 확인서 1부.

[양식 6]

참여기술인 경력·실적사항

□ 해당분야 경력현황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구 분	성명	분야	현재까지 경 력	평점	해당분야 용역참여실적		
					용 역 명	발주부서	참여기간
참여 기술인		해당 분야	년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소계	개월	
		분야 외	년 월				~ (월)
							~ (월)
							~ (월)
							~ (월)
					소계	개월	
		합계					

□ 직무분야 실적현황

구 분	성 명	분야	현재까지 경 력	평점	직무분야 용역참여실적		
					용 역 명	발주부서	참여기간
참여 기술인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감독 감리 등	년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계	개월	
		시공 시험 검사 감독 감리 등	년 월				~ (월)
							~ (월)
							~ (월)
							~ (월)
					계	개월	

[양식 7]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구 분		발 주 처	사 업 명	용역기간	용역비 (천 원)	기간비율	적용금액 (천원)	용역개요	분 야
완료	전체단계 건설사업관리								
		소 계							
	설계단계								
		소 계							
	시공단계								
		소 계							
	건축·주택감리								
		소 계							
	설계용역								
		소 계							
계									
진행	전체단계 건설사업관리								
		소 계							
	설계단계								
		소 계							
	시공단계								
		소 계							
	건축·주택								
		소 계							
	설계용역								
		소 계							
계									
합계									

※ 1. 유사용역 사업은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등록 또는 발주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실적 중 최근 3년 이내(공고일 현재 기준)에 수행한 유사용역 실적(종합, 건축, 토목, 설비, 전기 분야로 구분)

2.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등록 또는 발주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진행 중인 용역사업은 위 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기성실적만 인정

3.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공동도급으로 수행 시는 참여 비율에 의한 자사실적만 인정

첨부 : 1.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 확인서

2. 기성실적확인서

[양식 8]

업체 영업정지 및 기술인 자격·업무정지등

업체명 및 기술인성명	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 유 요 약
	~			
	~			
	~			
계				

※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업체가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사항과 기술인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

첨부 : 각 관련협회의 확인서

[양식 9]

신 용 평 가 등 급 확 인 서

○ 신용평가등급 현황

구 분	신용평가등급	해당점수	참여지분율	평가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공고일 포함)에 평가하여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붙임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양식 10]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 실적

구분	배점/건	업체명	건 명	출원자	출원일 (경과기간)	보호기간 (존속만료일)	평가점수	비고
건설 신기술	2.0점	A사						
		B사						

○ 활용 실적

구분	업체명	건 명	출원자	출원 일자	보호기간 (존속만료일)	경과 기간	활용 건수	실적금액 (천원)
건설신기술	A사							
	B사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A사							
	B사							

구분	배점/건	경과년수	업체명	활용건수 또는 활용금액	참여지분율 *사용실적	합계	가중치	평가점수
건설신기술	0.5점	보호기간 확 인	A사	건/ 억원	건/ 억원	건/ 억원		
			B사	건/ 억원	건/ 억원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	5년 미만	A사	건/ 억원	건/ 억원	건/ 억원		
			B사	건/ 억원	건/ 억원			
		10년 미만	A사	건/ 억원	건/ 억원	건/ 억원		
			B사	건/ 억원	건/ 억원			
		20년 미만	A사	건/ 억원	건/ 억원	건/ 억원		
			B사	건/ 억원	건/ 억원			
합계 점수								

※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붙임 1. 신기술지정증서,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 사본
2. 특허증 사본, 최초출원인 확인 증명서류 사본

○ 투자실적

업체명	구 분	1년차 (백만원)	2년차 (백만원)	3년차 (백만원)	1+2+3년차합계 (백만원)	비율(%)	평가점수	참여 지분율	최종점수
	건설기술 개발투자액								
	건설부분 총매출액								
	건설기술 개발투자액								
	건설부분 총매출액								
합계 점수									

※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 · 분석 · 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 제출

[양식 11]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구 분 (성 명)		현장 배치현황		점 수	비 고
		현 장 명	배 치 기 간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분야별 건설 사업 관리 기술인	○○○				
	○○○				
	○○○				
	○○○				
	계				
기술지원 기술인	○○○				
	○○○				
	○○○				
	○○○				
	계				
총 계					

[양식 1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교체빈도

현장명	현장배치 기술인 수	교체건수		교체빈도(%)	비고
		상주기술인	비상주 기술인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여기술인의 교체빈도

구 분 (성 명)		최근1년간 건설사업관리 현장에서 교체한 현장명	점 수	비 고
참 여 기술인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점=	
기술지 원 기술인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점=	
계				

[양식 13]

벌점 관련 사항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받은 벌점에 따라 평가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측정기관	벌점	벌점점수	비고
계				

[양식 14]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1)용역명			3)발주기관 (발주청)	
2)공사현장 위치				
4)공사개요	4-1)공사규모			
	4-2)총공사비			
5)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 (대표사)	5-1)회 사 명		5-3)대표자	
	5-2)등록번호		5-4)전화번호	
6)용역기간	20 . . . ~ 20 . . .			
7)과업범위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Ⅱ.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

※ 공사비 절감기술인에 해당되는 기술인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기술인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성 명	직무분야	생년월일	배치기간	대상여부	절감기여율(%)	절감금액(백만원)	비고
합 계	인					100		
1)책임								
2)분야별								
3)기술지원								

Ⅲ. 공사비절감 인정일 년 월 일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 주 기 관 장 직인

[양식 15]

가 점 및 감 점 확 인 서(건설사업관리)

○ 공사비 절감 기여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명	공사비 절감 사업명	총공사부기 계약금액(천원)	절감금액 (천원)	총절감금액 (억원)	절감 비율	가중치	평가점수
합계 점수							

▷ 실적 및 금액에 따른 가중치

구 분	100%	80%	50%
절감금액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총공사 부기금액 1% 이상	1% 미만~ 0.5% 이상	0.5% 미만~ 0.1% 이상

※ 1인이 2건 이상 실적이 있을 경우 실적금액 합산

※ 해당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금액과 총공사 부기금액 대비 절감금액 비율을 포함하여 공사비 절감에 기여한 상주 참여기술인을 증명하는 확인서[양식 14] 첨부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구 분		최근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명)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명)	신규 고용율	참여 지분율	평가점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	A 사					
	B 사					
합계 점수						

▷ 신규고용율에 따른 가점

구 분	1% 이상	2% 이상	3% 이상
신규 고용율	0.1 점	0.2점	0.3점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부패 행위 관련자

구 분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일	총공사부기 계약금액(천원)	피해금액(억원)	감점
참여기술인	(성명)				
	(성명)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	A 사				
	B 사				
합계 점수					감점 : 점

▷ 참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 감점 적용 점수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 (총공사 부기 계약금액 기준)	감점	비고
3% 초과하거나 10억 초과	5점	
1%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 초과하거나 10억 이하	3점	
1% 이하이거나 3억 이하	1점	

※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참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는 감점

[양식 16]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용역수행계획서

1. 인적사항

소 속(직 위)		생년월일	
주 소			
자 격 사 항			
자 격 명		취 득 일 자	비 고

2. 주요경력 사항

기간(년월일)	주 요 경 력 사 항	담 당 업 무
자 기 소 개		
1. 주요경력		

2.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계획(공사 특성에 맞게 조정)

가. 설계도서 검토 결과 및 제안사항

나. 공사 중점관리계획

▶공종별 시공 관리계획

▶품질, 안전, 공종 계획

▶기타 중점관리 착안사항

다. 당해 용역의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라. 공사 중 예상되는 민원발생시 대응방안

3. 용역지원 동기, 목표, 제안사항, 포부 등
(자유롭게 기술)

※ 반드시 A4 3쪽 이내로 작성하여야 하며 3쪽 초과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양식 17]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

제Ⅱ장.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3절. 기술인평가서에 따른 평가(기술인평가서 평가) 세부기준

제3절 기술인평가서에 따른 평가(기술인평가서 평가) 세부기준

1. 일반사항

가. 목적

이 기준은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해 기술인평가 제도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업무 수행 시 담당 실무자의 이해를 돕고 평가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다.

나. 용어의 정의

(1) "기술인평가 적격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중 수행실적평가 결과 90점 이상을 확보한 자로서 기술인평가서 제출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기술인평가 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으로 15위 까지를 기술인평가 자격을 부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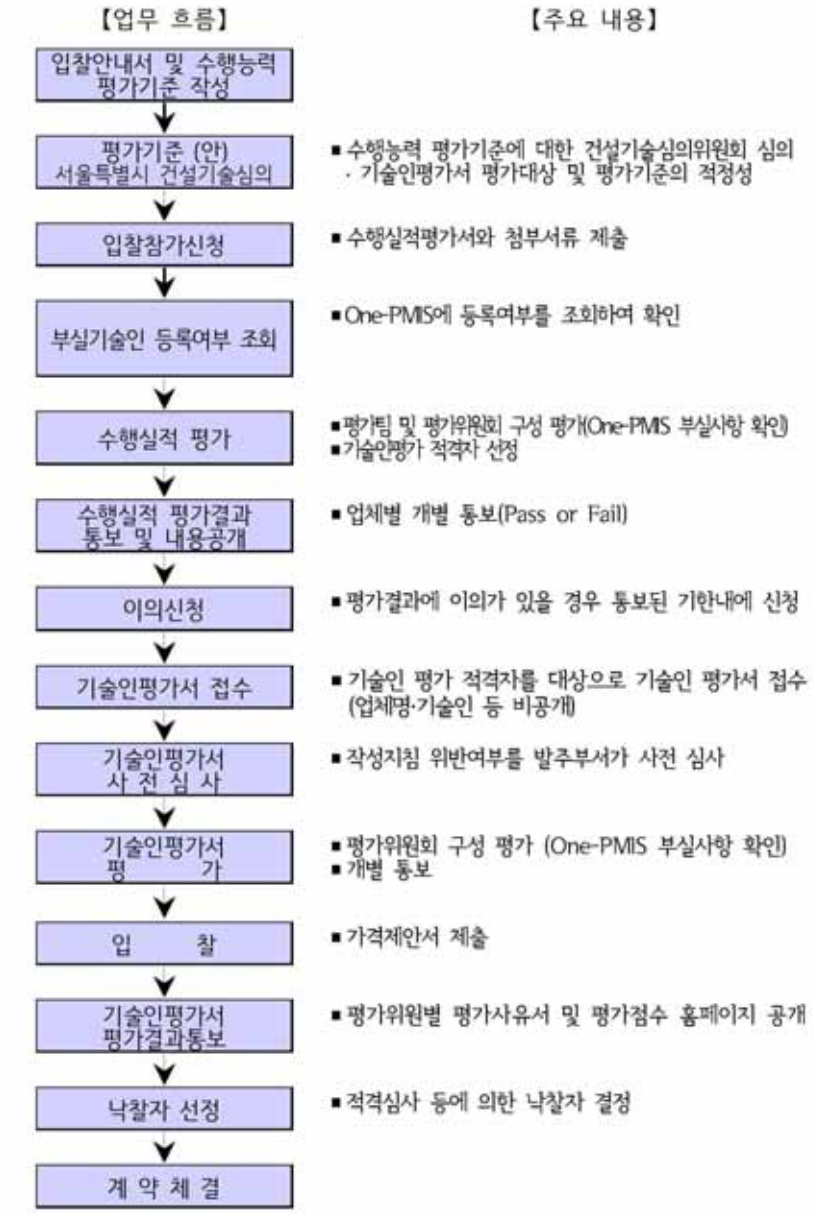
(2) "입찰참가 적격자"는 기술인평가 적격자 중 기술인평가서 평가를 통해 85점 이상을 얻은 자로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3) "기술인평가서"는 입찰자가 입찰참가자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하기 위해 해당 용역의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경력 및 역량을 갖춘 참여 기술인,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제안하는 입찰 제출문서를 말한다.

(4) "참여기술인의 수행계획 및 방법"은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공사 공종별 건설사업관리계획, 품질 및 안전·공정관리계획,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에 대한 내용을 제출받아 해당 용역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인의 기술능력과 업무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기술인평가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입찰안내서 및 발주부서에서 정하는 기술인평가서 평가 규정에 따라 해당 발주부서에서 기술인평가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다. 기술인평가서 평가에 의한 용역사업자 선정절차



(1) 발주부서의 장은 입찰공고 시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기술인평가서 평가대상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공고하여야 한다.

(2)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공고문에는 기술인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작성지침, 평가항목 등 입찰자가 기술인평가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일체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발주부서는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자가 수행실적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수행실적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세부내용은 본절 "4.기술인평가서 평가방법"에 따른다.

(4) 수행실적 평가는 제2장 제2절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수행실적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5) 발주부서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수행실적평가서 접수시 불법하도급 감독 소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부실기술인)에 해당되는자에 대하여 One-PMIS(최근 5년이내)에 조회하고 해당될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 발표 및 면접시 최저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6) 발주부서는 수행실적평가 결과 및 기술인평가서 평가참여 적격여부를 해당 입찰자에게 통보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 면접발표 평가결과(평가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결과)를 시 홈페이지 또는 발주부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7) 수행실적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입찰자 중 기술인평가 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기술인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8) 발주부서는 입찰자가 기술인평가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기술인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제시한다.

(9) 발주부서는 입찰자가 제출한 기술인평가서가 제시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0) 기술인평가서의 평가는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기술인평가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11) 발주부서의 장은 기술인평가서 평가결과를 해당 입찰자에게 개별통보하고, 결과를 통보받은 입찰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발주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다.

(12) 기술인평가서 평가결과는 평가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점수를 시 홈페이지 또는 발주부서 홈페이지에 실명 공개하여야 한다.

(13) 발주부서의 장은 해당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된 최종 기술인평가 결과를 계약부서에 통보하고 계약부서의 장은 공고된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

(14)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참여할 경우

-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수행방법, 발표 및 면접 등 "주관적 평가항목" 평가시 부실(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또는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평가위원에게 관련 자료 제공 시 업체가 특정되지 않도록 익명 조치(업체명 비공개 등)를 하여야 한다.)
  - 부실 또는 유착비리 사항은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구분없이 적용하되,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에도 지분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하고
  -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품질사고 또는 최근 5년내 안전사고 관련 입찰참가제한·효력상실·영업정지·자격정지 요구 등 행정처분 요청사항, 최근 1년내 품질사고 관련 벌점부과사항)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운영 중인 One-PMIS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에 활용하여야 한다.
  -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지정현황)는 재무국(재무과)에서 운영하는 서울계약마당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 활용하여야 한다.(※ 공사·공단 등은 재무부서 '공공구매 실적관리' 담당을 통해 시스템 자료 검색)

※ 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는 용역발주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므로써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에 대한 책임성과 경각심 고취 및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

라. 용역의 공고 및 입찰 등록

(1) 사전준비

(가) 발주부서는 해당 사업이 공법의 신규성, 공종간 상호 복합의 정도 등을 검토하여 기술인평가서 평가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발주부서는 해당사업이 기술인평가서 평가가 필요한 사업인지를 결정하기에 앞서 기술인평가서 평가를 통해 얻고자 하는 용역의 목적과 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의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2) 입찰안내서의 작성

(가) 입찰안내서는 발주부서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유형, 규모, 조건 등 제반 특성을 반영하여 각 사업별로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입찰안내서에는 사전준비과정에서 결정된 기술인평가서의 평가 목적과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의 수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입찰안내서의 일반적 포함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사항(기술인평가서 평가대상임을 명시)

2) 수행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술인평가서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

5) 입찰에 관한 사항

6) 부록(관련 양식 등)

(라) 입찰안내서의 포함사항은 사업의 특성 및 입찰방법 등을 고려하여 발주부서가 추가 또는 삭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마) 입찰안내서의 포함사항에는 기술인 평가서 평가와 관련된 사항 뿐만 아니라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바) 입찰안내서에는 낙찰된 용역업체의 기술인평가서를 용역계약문서로 정한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입찰공고

(가) 발주부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려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에 입찰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발주부서는 입찰희망자에게 평가 세부기준을 배부 또는 공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발주부서는 낙찰된 용역업체의 기술인평가서를 용역계약문서로 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항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라) 발주부서는 입찰희망자가 기술인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미리 확보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마) 기술인평가서 평가와 관련한 입찰공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술인평가서 평가 대상 설계용역 사업명

2) 사업 시행기관

3) 참여기술인의 경력, 실적 등에 대한 요구조건(구체적)

4) 예정 용역비

5) 입찰 일정

6) 기타 기술인평가서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사항

(바) 제공자료의 목록은 다음과 같으며, 용역의 성격 및 특성에 맞게 발주부서가 제공자료를 변경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입찰안내서(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서 및 관련서식 포함)

2) 공사관련 계획 및 설계도서 등

(4) 제출도서의 목록 및 제출방법

(가) 기술인평가서 평가를 통한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을 위해 제출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는 기술인평가서 제출신청서, 기술인평가서, CD 또는 DVD, 청렴서약서 등이 있으며, 발주부서는 용역의 성격에 맞게 제출도서의 범위와 종류를 선택하여 입찰시 공고하여야 한다.

(나) 제출도서의 목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술인평가서 제출신청서(양식1)

2) 기술인평가서(양식2)

3) USB, CD 또는 DVD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 발표시 발표내용 포함)

4) 청렴서약서(양식5)

5) 기타 발주부서가 평가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사전 명시)

(다) 제출도서의 제출방법은 인편을 통한 직접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택배나 우편 등에 의한 제출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방법, 도착기한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2. 평가기준

가. 평가항목별 배점 및 평가방법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가. 구성조직의 역량 및 적정성	소계	70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4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등급·실적·경력 및 교육·훈련 등에 따라 평가	"수행실적평가"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
	2) 유사용역수행실적	10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3) 신용도	15	1) 영업정지, 벌점 등의 처분내용에 따라 평가 2) 재정상태 건실도에 따라 평가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과업수행계획 및 방법	소계	30		
	1) 수행계획서	15	1)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2) 공종별 시공관리계획 3) 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 계획 4) BIM 등 스마트건설 활용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계획* 5)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	기술인평가위원회에서 상대평가의 방법으로 평가하되, 평가시 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 또는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 실시
	2) 수행방법	5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 및 해당 용역 적용성	
	3) 수행계획서 발표 및 면접	10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업무수행능력, 자질검증을 위한 발표 및 면접 실시	

※ 부실 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용역 입찰에 참여시 수행방법, 수행계획서 발표 및 면접의 "주관적 평가 항목" 평가시 부실(품질 및 안전사고 등) 또는 유착비리 사항

* 턴키 등 기술형입찰/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하며 기타공사는 설계·시공단계 BIM적용 의무화 시 해당 공사에도 적용

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One-PMIS(부실), 서울계약마당(유착비리) 자료 활용하고 평가위원에게 관련 자료 제공 시 업체가 특정되지 않도록 익명 조치(업체명 비공개 등)를 하여야 한다.)

나. 세부평가항목별 평가등급 및 평가등급별 가중치

<상대평가 시 신청자 수별 평가등급 배분>

-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율: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

업체수	등급					업체수	등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7	2	3	7	3	2
4	1	2	1			18	2	4	7	3	2
5	1	2	1	1		19	2	4	7	4	2
6	1	2	1	1	1	20	2	4	8	4	2
7	1	2	2	1	1	21	2	4	9	4	2
8	1	2	3	1	1	22	2	5	9	4	2
9	1	2	3	2	1	23	2	5	9	5	2
10	1	2	4	2	1	24	2	5	10	5	2
11	1	2	5	2	1	25	3	5	10	5	2
12	1	3	5	2	1	26	3	5	10	5	3
13	1	3	5	3	1	27	3	5	11	5	3
14	1	3	6	3	1	28	3	6	11	5	3
15	2	3	6	3	1	29	3	6	11	6	3
16	2	3	6	3	2	30	3	6	12	6	3

※ 참여업체수가 30개 초과시 등급별 배분율은 위 배분표를 기준으로 등급별 업체 수 결정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 가 항 목		수	우	미	양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 과업수행계획 및 방법	수행계획서	1.00	0.95	0.90	0.85	0.80
	수행방법					
	수행계획서 발표 및 면접	1.00	0.90	0.80	0.70	0.60

다. 기본사항

(1) 구성조직의 역량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방법은 "수행실적 평가"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가) 참여기술인 환산점수 : "수행실적" 참여기술인 평가점수(배점60) ×45/60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환산점수 : "수행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점수(배점10) × 10/10

(다) 신용도 환산점수 : "수행실적" 신용도 평가점수(배점15) × 15/15

(2) 참여기술인의 과업수행계획 및 면접 평가방법은 기술인평가서 평가 대상자를 기준으로 세부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 하여 평가등급을 결정하고 세부평가 항목의 배점별 해당 등급별 가중치를 곱하여 항목별 점수를 산출한다.

(3) 기술인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상대평가 항목에 대한 최종점수는 항목별 점수의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단,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예시) 상대평가 항목별 점수의 합계점수에 따른 최종점수 산정

구분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위원6	최종점수
A업체	22.5(제외)	28.9	28.5	29.0	29.0(제외)	28.6	28.75
B업체	28.5	27.8	26.9	26.5(제외)	28.0	29.1(제외)	27.80
⋮	⋮	⋮	⋮	⋮	⋮	⋮	⋮

(4) 발주부서는 기술인평가서의 작성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다.

(5) 발주부서는 기술인평가서의 평가 시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인평가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정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구내용은 모든 참여업체에 공지하여야 하며, 보완 요구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되, 익명성(업체명, 기술인 등)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6) 발주부서는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술인평가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7) 발주부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평가사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점수 등 평가결과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또는 발주부서 홈페이지에 실명 공개하여야 한다.

3.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방법

가. 위원회의 구성

(1) 발주부서는 기술인평가서 평가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인평가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2) 평가위원은 우리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발주기관의 기술자문위원회 등 전문분야별 외부 심의위원과 5급 이상 공무원(내부 심의위원)을 원칙으로 선정한다. 내부 심의위원은 평가위원의 50% 이내로 구성하며, 발주부서가 소속된 실·국의 공무원을 제외한 타 실·국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선임한다.

이 경우 본부 산하 기획관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도시철도국 등은 각각 실국으로 본다.

(3) 평가위원회는 용역의 성격과 특성을 고려하고 전문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4)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발주기관(발주부서가 소속된 실·국 공무원을 제외한 타 실·국 소속 공무원) 중 4급 공무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 내부직원으로 위원장 선임이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위원 중에서 발주부서장이 지명한 평가위원이 위원장이 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지휘·총괄하며,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5) 발주부서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위 각호의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나. 평가위원의 선정

(1) 선정절차

후보위원 명부작성(평가전일) → 연락순서 추첨(평가당일 오전) → 연락 및 수락순서에 의해 선정 → 평가위원회 개최

(2) 평가위원 후보위원 명부작성

선정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으로 명부 작성하되 후보위원별 무작위로 정렬된 고유번호 부여하여 밀봉·보관

(3) 연락순서 추첨

선정 예정인원의 일정 배수까지 고유번호가 부여된 후보자 명부의 번호지를 입찰참가업체가 직접 추첨(입찰참가업체 미참석 시 발주부서 직원이 추첨)

(4) 연락 및 선정

(가) 입찰참가업체 입회하에 명부 개봉

(나) 추첨순서에 따라 후보위원 참석여부 유선 확인(통화 기록지 작성 보관)

(다) 수락 순으로 위원 선정하고 소요인원이 확정되면 종결

(5) 평가위원 공개

선정된 위원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평가결과 발표 시 공개한다. 단, 선정 된 위원 중 입찰참가업체와의 이해관계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공개할 수 있다.

다. 평가위원회의 운영

(1) 발주부서는 기술인평가서 평가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2) 발주부서는 평가 시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에게 사업의 특성·사업개요·중점 평가사항 등을 설명할 수 있다.

(3) 감점기준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끝난 후 평가결과 점수를 토대로 위원장 주관하에 합산과정에서 별도 적용하여야 한다.

(4) 평가위원은 공정한 평가와 비밀유지 등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양식3)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술인평가서 평가는 익명(업체명, 기술인 등)을 전제로 작성된 기술인평가서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발주부서는 업체별 발표 및 개별질문이 완료된 후 비공개로 평가위원 간 종합토론회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참여기술인 과업수행계획 발표 및 면접 운영

(1) 발주부서는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 1인) 등의 발표 및 면접을 통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포함한 기술인의 기술능력과 업무관리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2)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참여할 경우

-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수행방법, 수행계획서 발표 및 면접의 "주관적 평가항목" 평가시 부실(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또는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부실 또는 유착비리 사항은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 구분없이 적용하되,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에도 지분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하고

  •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품질사고 또는 최근 5년내 안전사고 관련 입찰참가제한·효력상실·영업정지·자격정지 요구 등 행정처분 요청사항, 최근 1년내 품질사고 관련 벌점부과사항)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운영 중인 One-PMIS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에 활용하여야 한다.

  •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지정현황)는 재무국(재무과)에서 운영하는 서울계약마당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 활용하여야 한다.(※ 공사·공단

등은 재무부서 '공공구매 실적관리' 담당을 통해 시스템 자료 검색)

※ 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는 용역발주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므로써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에 대한 책임성과 경각심 고취 및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

(3) 참여기술인 과업수행계획 발표 및 면접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 면접발표 시 불법하도급 관리·감독 소홀 기술인(부실기술인)인지를 One-PMIS(최근 5년이내)에 조회한 후 해당될 경우 (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항목별 배점에 가등급(60%) 적용(건설분야 하도급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시장방침 제459호, '10. 10. 30.) 이행 관련)

(5) 기술인평가서 평가 시에 익명성(업체명, 기술인 등)이 확보된 별도의 설명자료(파워포인트)를 평가위원에게 인쇄물로 배포할 수 있다.

(6)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발표 및 면접 시는 해당 당사자만 참석가능하고 컴퓨터 조작 등을 위한 별도의 인원에 대한 참석은 허용하지 않는다.(발표 당사자가 컴퓨터 등 기기 직접 조작)

(7) 발주부서가 판단하기에 익명성 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평가위원이 피면접자의 신원을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대면 조치(익명성이 보장된 사전에 녹음된 발표자료로 대체, 가림막 설치 등)를 하여야 한다.

(8) 기술인평가서의 발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가) 기술인평가서 발표 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하여 정하며, 발표자는 타 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나) 발표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10분(입찰공고에 명시) 이내에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도록 하며, 작성내용은 제출된 기술인평가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만약, 기술인평가서와 작성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평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다)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의 질의사항 중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질문하거나 대답을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질의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마. 평가기준 심의위원회 및 입찰참여 적격자 선정방법

(1) 발주부서는 기술인평가서 평가에 의한 방법으로 용역사업자 선정시는 수행능력(수행실적 + 기술인평가서) 평가기준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 심의내용

1) 평가 진행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발주부서의 사전심사 및 설명내용

(가) 발주부서는 입찰공고에 따라 제출된 기술인평가서 등 입찰서류를 기술인평가서 평가 이전에 사전 심사하여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제 규정 및 지침사항, 감점기준 등의 위배사항을 체크리스트(Check-List)로 작성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나) 발주부서의 사전심사 시에는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인평가서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은 배제하여야 한다.

(3) 감점기준

(가) 감점기준은 해당 기술용역 관련 규정(입찰유의서 등)과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 위반사항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공사의 성격 및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나) 감점기준의 주요 항목은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하며, 발주부서의 판단하에 추가 및 삭제할 수 있다.

1) 익명성을 위반하는 표지(標識)사용(업체명·기술인 표기, 암호 기재 등)

2) 지정 도서매수 초과 및 누락

3) 칼라 사용 위반

4)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 위반 등

(다) 감점기준 및 총 감점 한도는 입찰공고시에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 감점기준에 대한 예시 〉

평가항목	감점기준 (감점 및 실격)	감점 및 실격사항	비고
기술인평가서	- 익명성을 위반하는 표지(標識)사용(업체명·기술인 표기, 암호 기재 등)	실격처리	
	- 쪽수초과	쪽당 0.5점	
	- 항공사진투시도·조감도·시뮬레이션 사용, 3D 효과, 일러스트 편집, 바탕면·여백부 치장	쪽당 0.5점	
	- 칼라 사용 위반	쪽당 0.5점	
	-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	쪽당 0.5점	
	- 표지, 제출서, 양식 미 사용시	쪽당 0.5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 발표	- 발표시간 초과	0.1점	
비리감점	-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	3점	
	-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	2점	
	-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점	

(라) 발주부서는 필요시 감점기준에 해당하는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보완요구를 통해 보완토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점 또는 실격처리 하여야 한다.

(4) 기술인평가서 평가 및 입찰참여 적격자 선정기준

(가) 발주부서는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 기준상의 세부 평가항목, 배점범위, 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평가 세부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발주부서는 기술인평가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은 입찰공고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은 평가위원회의 기술인평가서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여 적격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5) 기타 평가에 관한 사항

(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정에 따라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1) 기술인평가서 제출서류의 내용 중 허위기재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제출도서에 기술인평가서 업체명·기술인 등을 특정하여 기록한다든지 또는 암호를 기재하여 평가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익명성 위반)

3) 공정한 평가를 방해하는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서 위반사례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발주부서가 판단하기 곤란한 사항이나 불명확한 경우로서 평가위원회에서 지침서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한 경우

(나) 발주부서는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평가사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위원별 평가결과 및 평가사유서 등 평가결과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또는 발주부서 홈페이지에 실명 공개하여야 한다.

(다) 평가사유서는 평가 항목별로 요구조건의 부합 정도와 장·단점을 비교하여 작성하되 계량적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평가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발주부서는 낙찰된 용역업체의 기술인평가서(또는 기술인평가서의 일부)를 용역계약문서로 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항을 입찰공고 시 명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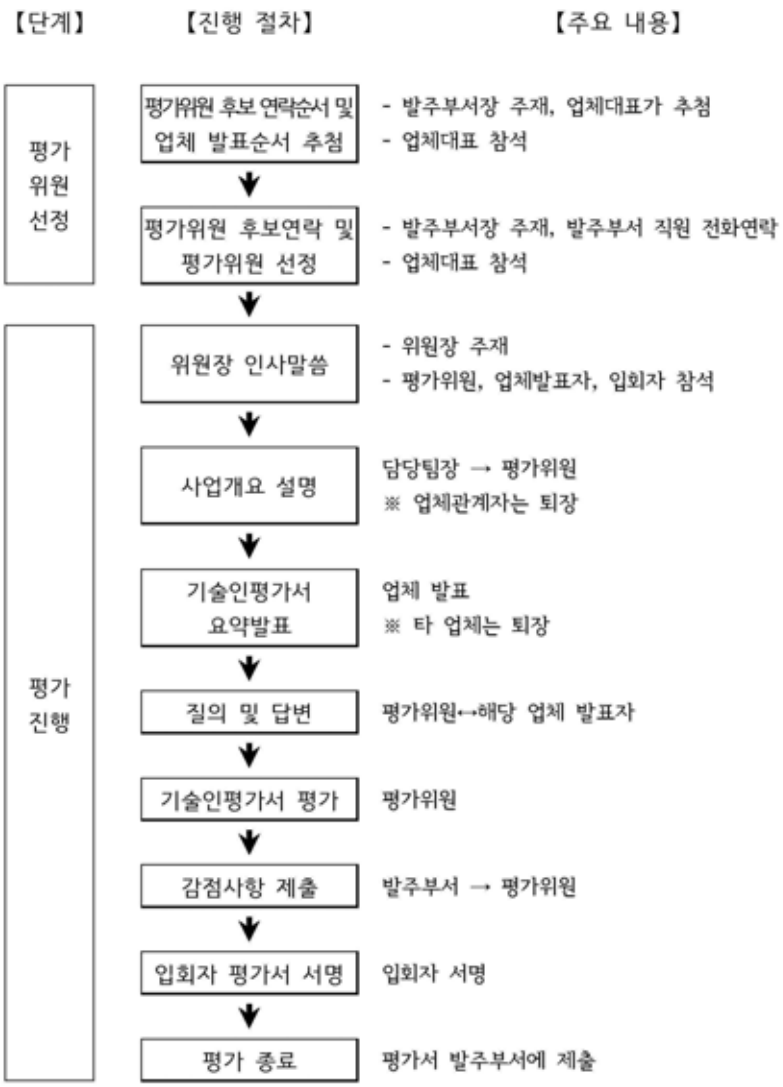
바. 낙찰자의 결정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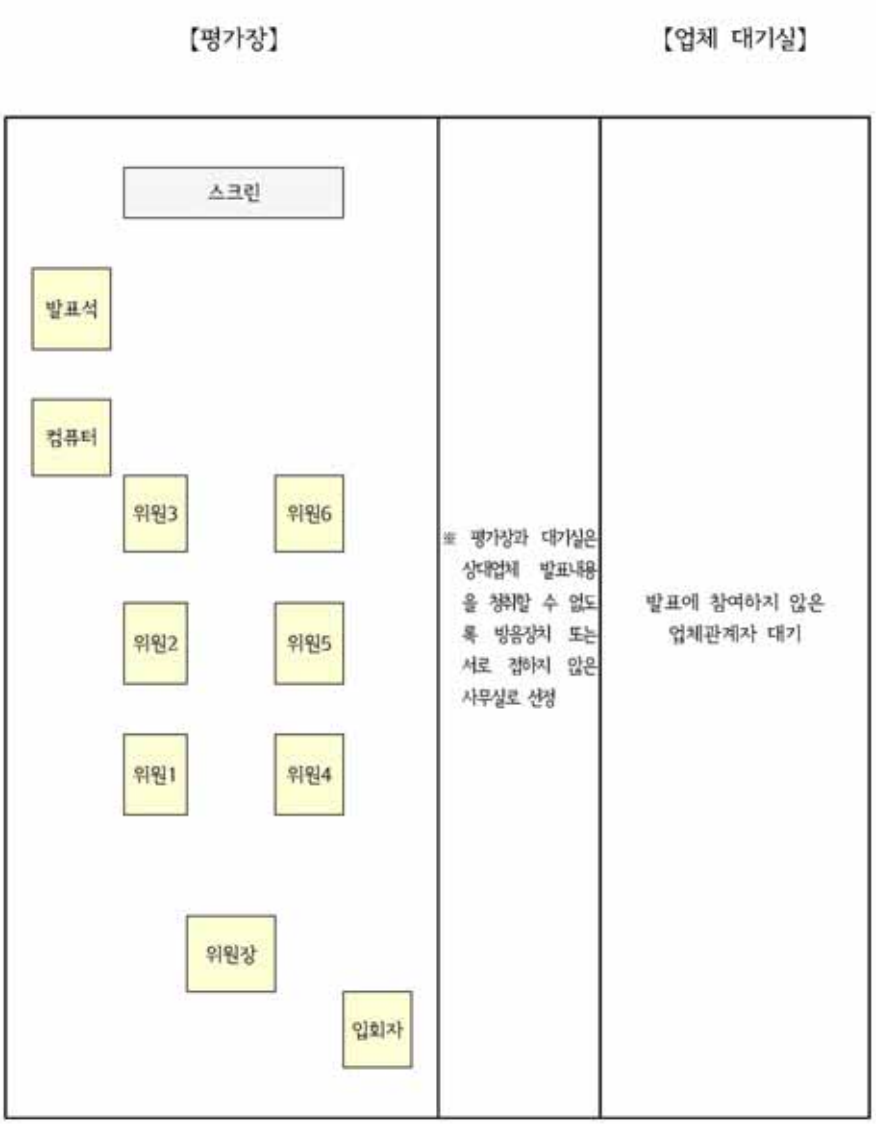
사. 평가결과의 녹화 및 기록관리

평가과정의 모든 절차는 동영상 촬영을 실시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입찰업체의 이의신청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기술인평가서 평가 진행절차(예시) 〕



[평가장 및 업체대기실 배치도(예시)]



4. 기술인평가서 작성방법

가. 일반사항

(1) 기술인평가서 작성의 기본원칙

(가) 기술인평가서 제출자는 본 용역의 규모와 특성에 부합하는 경력과 수행실적을 갖춘 참여기술인의 기술능력과 업무관리능력을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 사항은 해당 용역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다) 제출되는 기술인평가서는 익명성(업체명, 기술인 등)에 기반하여 작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술인평가서의 작성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다.

(2) 기술인평가서의 포함사항

(가) 기술인평가서의 작성은 본절 "2. 평가기준"에 있는 평가항목의 세부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나) 발주부서는 용역의 성격과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절 "2.평가기준"에 있는 평가항목의 세부사항과 평가방법의 일부를 변경하여 입찰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구성조직의 역량 및 적정성에 포함할 사항

※ 수행실적 평가점수를 환산하여 평가하므로 자료작성 불필요

(라) 참여기술인의 과업수행계획 및 방법에 포함 할 사항

1)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2) 공사 공종별 건설사업관리계획

3) 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 계획

4) BIM 등 스마트건설 활용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계획"

5)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

(3) 기술인평가서의 제출 및 반환

(가) 기술인평가서 제출자는 기술인평가서 제출 시 기술인평가서 제출신청서(양식1)와 함께 청렴서약서(양식5)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출된 기술인평가서 및 관련 서류는 제출받은 발주부서의 소유로 하며,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반환 또는 공개할 수 없다.

(다) 제출된 기술인평가서 및 관련 서류는 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입찰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 턴키 등 기술형입찰/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하며 기타공사는 설계·시공단계 BIM적용 의무화 시 해당 공사에도 적용

(4) 기술인평가서의 수정·보완 및 관리

(가) 제출된 기술인평가서 및 관련서류에 포함되는 내용 중 수행계획 및 방법에 관련된 사항은 수정 및 보완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발주부서는 기술인평가서의 평가에 있어서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인평가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부서는 보완 요구사항을 별도의 문서로 작성하여 기술인평가서를 제출한 모든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보완 요구기한까지 기술인평가서 제출자로부터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되, 익명성(업체명, 기술인 등)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라) 제출된 기술인평가서는 발주부서의 사전심사 및 서류보완 등 절차이행 후 봉인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평가실시 전 입찰참가업체 및 평가위원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5) 기술인평가서 제출 기한 및 규격 관련

(가) 기술인평가서 작성기간은 수행실적 평가결과를 개별 통보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용역의 성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는 작성 기한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나) 기술인평가서의 작성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인평가서는 흑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기술인평가서의 규격은 A4 종으로 작성하되 불가피하게 A4규격을 초과하여 작성 제출한 경우에는 "쪽수제한" 규정에 따라 A4 분량만큼의 쪽수로 환산하여 적용하여야 한다.(예 : A3 1쪽은 A4 2쪽으로 간주)

3) 쪽수 표기는 총 매수에 대한 해당 쪽수를 표기한다.(예 : 13-1, 13-2 …, 13-13)

(다) 기술인평가서의 분량은 표지, 요약서, 목차 등을 포함하여 A4 13쪽 이내로 제한하며 항공사진, 투시도, 조감도, 시뮬레이션, 일러스트 편집(맥편집, 스케치) 및 바탕면여백부 치장 등은 사용할 수 없다.

1) 간지, 비교 노선도, 원본의 제출문 및 인쇄 내용이 없는 면은 쪽수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2) 기술인평가서 표지는 첨부 2의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제한된 분량 안에서 평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필수적 사항이 부록이나 첨부로 제시되는 경우는 부적격 처리하여야 한다.

4) 기술인평가서의 '요약서'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라) 발주부서는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인평가서 제출규격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입찰공고 및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 세부 작성지침

(1) 참여기술인의 과업수행계획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가)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1) 기술인평가서 제출자는 발주부서가 교부한 제공도서 등을 검토한 후에 과업의 성격을 명기하고,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험을 토대로 용역의 범위와 내용을 정의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성격 및 범위는 용역의 특성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검토한 후, 기술인평가서 평가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형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성격이 공법의 신규성, 공종의 상호 복합정도, 친환경 건설, 공사의 난이도 등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험을 토대로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공사 공종별 건설사업관리 계획

1) 과업의 성격을 규정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할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단계별로 분할한 후, 이의 시행순서를 명기하여야 한다.

2) 과업 단계별 건설사업계획은 과업수행 일정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3) 단계별 업무수행에 따른 필요 전문가 및 용역 수행팀의 구성에 대한 제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 계획

(라) 예상되는 문제점 분석 및 개선대책 등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용역에 대한 기술제안 과정에서 파악된 사업계획, 설계 및 시공과정 등 단계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적시하고, 이에 대한 처리대책을 기술제안의 형태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시된 문제점은 공사기간, 공사비 등 핵심적인 사항과 경미한 사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공사기간 및 공사비 등 핵심적인 문제는 공기단축, 설계VE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여 목적한 성과에 부합할 수 있는 제안을 하여야 한다.

4)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민원을 제시하고, 이의 예방을 위한 민원방지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기술인평가서의 구성 및 문서편집

(1) 기술인평가서의 구성은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가) 표지

(나) 요약(5쪽 이내로 작성)

(다) 목차

(라) 본문

(2) 문서편집

(가) 편집용지 : A4(세로) 210mm ×297mm

(나) 도면, 표 등에 한하여 필요한 경우 A3규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A3 규격 1쪽은 A4 규격 2쪽으로 산정

(다) 줄간격 : 160%

(라) 글씨색상 : 흑색

(마) 색채의 사용을 금지하며 사진, 그림 등은 회색조로 작성

(바) 쪽 번호는 중앙하단에 "○-1"의 형태로 표기

(3) 표지작성

(가) 제안서의 표지는 양식2를 이용하며 측면 등에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인쇄 및 제본

(가) 규격 및 재질

1) 규격 : A4(210mm ×297mm)

2) 재질 : 백상지 80g/㎡, 양면인쇄

3) 간지 : 본문과 같은 재질사용(색깔이 있는 간지 사용 불가)

(나) 인쇄방법 : 공판타자, 검퓨터조판 인쇄

(다) 제본방법 :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양식 1. 기술인평가서 제출 신청서

2. 기술인평가서(서식)

(양식 1)

기술인평가서 제출신청서

※ 접수번호 :				
사업명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 발주청 ○○명에서 시행하는 (* 용역명) 용역에 기술인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0 . . .				
신 청 인 : (인)				
장 귀하				

- - - - - - - - - 절 - - - - - - - 취 - - - - - - - 선 - - - - - - - - -

기술인평가서 접수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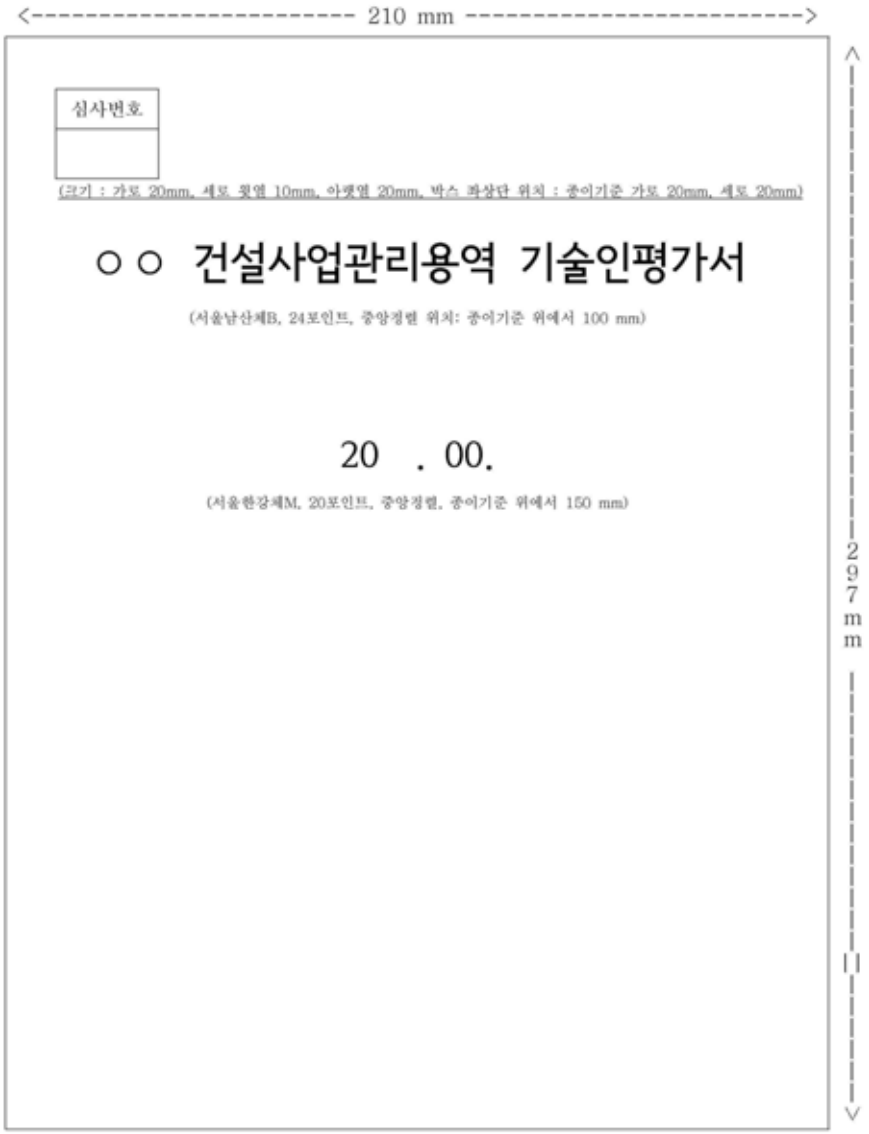
사업명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O.)	
			H.P.)	
주 소				

접 수 일 : 20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첨부 : 기술인평가서

(양식 2)



210mm×297mm
(백상지 80g/㎡)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요약서 (5page 이내, 서울한강체M, 15포인트, 중앙정렬, 160%)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목차

(1page 이내, 서울한강체M, 15포인트, 중앙정렬, 160%)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 243 -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참여기술인 과업수행계획 및 방법

(서울한강체M, 15포인트, 중앙정렬, 160%)

1.1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2page 이내)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분 야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 기술인		
기술지원 기술인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을 핵심인력별(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양쪽정렬, 160%)

1.2 공사공종별 건설사업관리계획(1page 이내)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주요업무		작업계획(월)																								참여자 (투입인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																									
	2)																									
	3)																									
	4)																									
	:																									
	1)																									
	2)																									
	3)																									
	4)																									
	:																									
	1)																									
	2)																									
	3)																									
	4)																									
	:																									
	1)																									
	2)																									
	3)																									
	4)																									
	:																									

* 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양쪽정렬, 160%)

1.3 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계획(1Page 이내)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 해당 구성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 목적물의 품질 향상방안 등 포함
* BIM 등 스마트건설 활용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계획
  ※ 턴키 등 기술형입찰/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하며 기타공사는 설계·시공단계 BIM적용 의무화 시 해당공사에도 적용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양쪽정렬, 160%)

1.4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1Page 이내)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 해당 용역을 포함한 사업수행과정 예상 문제점 및 개선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양쪽정렬, 160%)

1.5 해당용역 관련 특정경험(1Page 이내)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은 용역수행실적 중 용역의 성공적인 완수나 공사기간 단축, 공사비 절감, 설계오류 및 위험요인 경감 등과 관련한 것에 한함(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위주로 기술하며 분야별건설사업관리술인의 경험도 추가 가능)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양쪽정렬, 160%)

1.6 해당용역과 관련 특정경험에 대한 적용사항(1page 이내)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에 따라 적용되는 사항이나, 제안되는 업무나 공종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행체계와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양쪽정렬, 160%)

(양식 3 - 평가위원용)

청렴 서약서

○ 용역명 :

본인은 위 용역의 기술인평가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으로 선임받아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고 공정하게 검토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소 속 :

직위(급): 성명 (서명)

장 귀 하

(양식 4 - 평가위원용)

동영상 촬영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기술인평가서 평가위원회 동영상 촬영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하여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해당 저작물은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따른 평가의 공정성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평가위원회 운영과정에서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에 동의함
- 해당 저작물은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따라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저작권)은 용역 발주기관에 있음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평가사유서 및 평가점수)는 실명공개

20 . . .

동의자 : 소 속 :

직위(급): 성명 (서명)

장 귀 하

(양식 5 - 기술인평가서 제출업체용)

청렴 서약서

ㅇ 용역명 :

본인은 위 용역의 기술인평가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소 속 :

직위(급): 성명 (서명)

장 귀 하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발 행 인 : 서 울 특 별 시 장 오 세 훈
편 집 인 : 기 술 심 사 담 당 관 송 동 욱
발 행 일 : 2025 년 월 일
발행부서 :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 2133-8588)
제 작 : 기술심사담당관
기술관리팀장 최 원 혁
담 당 이 희 태

본 출판물의 저작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제Ⅱ장.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td><td>제Ⅱ장.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td></tr>
<tr><td>제3절 기술인평가서에 따른 평가(기술인평가서 평가) 세부기준</td><td>제3절 기술인평가서에 따른 평가(기술인평가서 평가) 세부기준</td></tr>
<tr><td>2. 평가기준
가. 평가항목별 배점 및 평가방법
<table><tr><td>1)수행계획서</td><td>15</td><td>1)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2) 공종별 시공관리계획
3) 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 계획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
<신 설></td></tr></table>
<신 설></td><td>2. 평가기준
가. 평가항목별 배점 및 평가방법
<table><tr><td>1)수행계획서</td><td>15</td><td>1)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2) 공종별 시공관리계획
3) 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 계획
4) BIM 등 스마트건설 활용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 계획*
5)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td></tr></table>
* 턴키 등 기술형입찰/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하며 기타공사는 설계·시공단계 BIM적용 의무화 시 해당 공사에도 적용</td></tr>
<tr><td>4. 기술인평가서 작성방법
가. 일반사항
(2) 기술인평가서의 포함사항
(라) 참여기술인의 과업수행계획 및 방법에 포함할 사항
1)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2) 공사 공종별 건설사업관리계획
3) 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 계획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td><td>4. 기술인평가서 작성방법
가. 일반사항
(2) 기술인평가서의 포함사항
(라) 참여기술인의 과업수행계획 및 방법에 포함할 사항
1)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2) 공사 공종별 건설사업관리계획
3) 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 계획
4) BIM 등 스마트건설 활용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계획*</td></tr>
</table>

<신 설>	5)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 * 턴키 등 기술형입찰/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하며 기타공사는 설계·시공단계 BIM적용 의무화 시 해당 공사에도 적용
[양식 2] 1. 참여기술인 과업수행계획 및 방법 1.3 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계획 * 해당 구성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 목적물의 품질 향상방안 등 포함 <신 설>	[양식 2] 2. 참여기술인 과업수행계획 및 방법 1.3 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계획 * 해당 구성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 목적물의 품질 향상방안 등 포함 * BIM 등 스마트건설 활용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계획 ※ 턴키 등 기술형입찰/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하며 기타공사는 설계·시공단계 BIM적용 의무화 시 해당 공사에도 적용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87호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고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3항 규정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고자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정대상 : 보행자우선도로 1개소

연번	자치구	도로명	폭원(m)	연장(m)
1	서대문구	증가로10길	4.5	180

2. 위치도(축척 없음) : 따로 붙임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행자전거과(☎02-2133-24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보행자우선도로 위치도

▢ 보행자우선도로 위치도

1) 증가로10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54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청계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하천의 명칭 : 청계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산업담당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12층

3. 점용의 목적
  - 목　적 : 서울시 청계천 공공미술 프로젝트 작품 전시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중구 태평로1가 1 등 12개소
  - 면　적 : A=260.0㎡

5. 점용기간
  - <커넥X천 파빌리온> : 2025. 9. 29. ~ 2026. 12. 30. (457일간)
  - <그곳에 있었다_청계천 2025> : 2025. 9. 25. ~ 2030. 9. 25. (5년간)
  - <그곳에 있었다 2024> : 2025. 9. 25. ~10. 31. (37일간)
  - <기억의 자리>, <청계유석>, <청계천 조우>, <청계초록: 눈길 손길>
    : 2025. 9. 15. ~ 11. 30. (77일간)

6. 최초허가 연월일 : 2025. 9. 16.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543호

강북구 수유동 47-52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지구계획 승인(변경)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49호(2020.11.12.)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된 '강북구 수유동 47-52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강북구 수유동 47-52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변경)·지구계획 승인(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강북구 수유동 47-52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 명 칭 : 강북구 수유동 47-52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7-52, 47-70
   ○ 면 적(변경)
   - [기정] 1,895.0㎡
   - [변경] 1,900.0㎡
2. 촉진지구 지정일(변경없음)
3.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1) 토지세목조서

- [기정]

연번	소재지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행정동	지번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종류 및 내용
		본번	부번								
1	강북구 수유동	47	52	대	1,514.8	[위탁자] 주식회사 에드가수유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 59(수유동)	1/1	-	-	-
2		47	70	대	380.2	[수탁자]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1/1			
합계					1,895.0	-					

- [변경]

연번	소재지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행정동	지번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종류 및 내용
		본번	부번								
1	강북구 수유동	47	52	대	1,519.8	[위탁자] 주식회사 에드가수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 133, 3층(상봉동)	1/1	-	-	-
2		47	70	대	380.2	[수탁자] 교보자산 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465 (서초동,강남교보타워)	1/1			
합계					1,900.0	-					

변경사유 : 지적확정 측량 성과도에 따른 대지면적 조정

2) 물건조서 : 삭제

- 변경사유 : 기존 건축물 철거에 따른 내용 삭제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강북구 수유동 47-52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강북구 수유동 47-52일원	1,895.0	증) 5.0	1,900.0	

- 변경사유 : 예정좌표측량성과도에 따른 대지면적 조정

7. 관계서류의 열람방법(변경없음)

Ⅱ.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1.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 명 칭 : 강북구 수유동 47-52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7-52, 47-70

○ 면 적(변경)

- [기정] 1,895.0㎡
- [변경] 1,900.0㎡

○ 공급촉진지구의 지정목적(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변경없음)

3.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4.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주택건설용지	1,895.0	증) 5.0	1,900.0	100.0	임대주택
합 계	1,895.0	증) 5.0	1,900.0	100.0	-

변경사유 : 예정좌표측량성과도에 따른 대지면적 조정

5.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없음)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변경) : [붙임] (도면게재생략)

[붙임]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강북구 수유동 47-52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강북구 수유동 47-52일원	1,895.0	증) 5.0	1,900.0	

변경사유 : 예정좌표측량성과도에 따른 대지면적 조정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계		1,895.0	증) 5.0	1,900.0	100.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895.0	증) 5.0	1,900.0	100.0	

변경사유 : 예정좌표측량성과도에 따른 대지면적 조정

(2)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해당사항 없음)

(3)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변경) :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기정]

도면 표시번호	가구번호	면 적(㎡)	위 치		비 고
			지 번	면 적(㎡)	
–	–	1,895.0	수유동 47-52	1,514.8	공동개발 지정 (역세권 청년주택)
			수유동 47-70	380.2	

– [변경]

도면 표시번호	가구번호	면 적(㎡)	위 치		비 고
			지 번	면 적(㎡)	
–	–	1,900.0	수유동 47-52	1,519.8	공동개발 지정 (청년안심주택)
			수유동 47-70	380.2	

변경사유 : 예정좌표측량성과도에 따른 대지면적 조정

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라)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도 : 게재생략

3.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4. 방재계획(변경없음)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

1) 토지세목조서(변경)

– [기정]

연번	소재지			지목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행정동	지번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종류 및 내용
		본번	부번								
1	강북구 수유동	47	52	대	1,514.8	[위탁자] 주식회사 에드가수유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 59(수유동)	1/1	–	–	–
2		47	70	대	380.2	[수탁자]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1/1			
합계					1,895.0	–					

– [변경]

연번	소재지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행정동	지번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종류 및 내용
		본번	부번								
1	강북구 수유동	47	52	대	1,519.8	[위탁자] 주식회사 에드가수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 133, 3층(상봉동)	1/1	–	–	–
2		47	70	대	380.2	[수탁자]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465 (서초동,강남교보타워)	1/1			
합계					1,900.0	–					

변경사유 : 예정좌표측량성과도에 따른 대지면적 조정

2) 물건조서 : 삭제

– 변경사유 : 기존 건축물 철거에 따른 내용 삭제

3) 토지취득방법(변경없음)

4) 존치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변경없음)

6.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7.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8.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위 치				공급대상자	공급시기	비 고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계	1,895.0	증) 5.0	1,900.0	100.0	–	–	–
주택건설용지	1,895.0	증) 5.0	1,900.0	100.0	자체사용	승인 후	–

변경사유 : 예정좌표측량성과도에 따른 대지면적 조정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547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소음영향지역 지정 수정 고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소음영향지역 지정 현황 및 감면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정사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호바항, 제2호사항, 제15조의3제2항 별표7에 따라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제4항에 의거하여 시립체육시설 운영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으로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과 감면율을 지정함

2. 지정기준
대규모 행사 및 체육경기에서 발생한 소음의 30분 등가소음 최대치가 주간 65dB(A), 야간 60dB(A)를 넘는 지역 지정

3. 대상지역 및 감면율
○ 대상지역 : 붙임1 참조
○ 감면율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별표2 ‘개인연습사용료’,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제15조의3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에 대해 50% 감면

4. 대상지역 지적도면과 세부 지번 현황 : 붙임2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체육정책과(☎02-2133-26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4항’의 지형도면의 원본파일(PDF)은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서울시설공단에 별도로 송부되어 해당 기관에서도 열람이 가능
※ 첨부된 관계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붙임 1)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소음영향지역 지정 현황

가. 잠실종합운동장

구	동	도로명 주소
강남구	대치동	역삼로 555 (더블유타워)
강남구	대치동	역삼로 556
강남구	대치동	역삼로 557 (제니스타워)
강남구	대치동	역삼로 558
강남구	대치동	역삼로 559
강남구	대치동	역삼로 560
강남구	대치동	역삼로 601 (보성(寶成)빌딩)
강남구	대치동	역삼로 604
강남구	대치동	역삼로 605
강남구	대치동	역삼로 607 (칠산컨벤션)
강남구	대치동	역삼로103길 8 (한국정밀빌딩)
강남구	대치동	역삼로107길 20-28 A동
강남구	대치동	역삼로107길 20-32 B동
강남구	대치동	역삼로107길 20-41
강남구	대치동	영동대로 324
강남구	대치동	영동대로 326 (컬쳐랜드 타워)
강남구	대치동	영동대로 330-7 401동(4차 풍림 아이원 아파트)
강남구	대치동	영동대로 330
강남구	대치동	영동대로 333
강남구	대치동	영동대로 334 (한성모터타워)
강남구	대치동	영동대로 336
강남구	대치동	영동대로 337
강남구	대치동	영동대로 338-10
강남구	대치동	영동대로 338
강남구	대치동	영동대로 340
강남구	대치동	영동대로 341
강남구	대치동	영동대로 342 (덕유빌딩)
강남구	대치동	영동대로 401 (포르쉐타워)
강남구	대치동	영동대로 405 (세원빌딩)

구	동	도로명 주소
강남구	대치동	영동대로 407
강남구	대치동	영동대로 410
강남구	대치동	영동대로 411 (빌딩)
강남구	대치동	영동대로 416 ((주)케이티앤지 타워)
강남구	대치동	영동대로 417 (오토웨이 타워)
강남구	대치동	영동대로 421
강남구	대치동	영동대로 422
강남구	대치동	영동대로 424
강남구	대치동	영동대로 429 (세아빌딩)
강남구	대치동	영동대로 430 (I`Park gallery)
강남구	대치동	영동대로 430 주차장(I`Park gallery)
강남구	대치동	영동대로 432
강남구	대치동	영동대로72길 3
강남구	대치동	영동대로72길 7
강남구	대치동	영동대로72길 10 301동(3차 풍림 아이원 아파트)
강남구	대치동	영동대로75길 9
강남구	대치동	영동대로76길 8
강남구	대치동	영동대로76길 10 (굳후렌드빌딩)
강남구	대치동	영동대로76길 12
강남구	대치동	영동대로82길 7
강남구	대치동	영동대로82길 9
강남구	대치동	영동대로82길 11 (도원빌딩)
강남구	대치동	영동대로82길 19 (항진빌딩)
강남구	대치동	영동대로82길 25 (혜승빌딩)
강남구	대치동	영동대로82길 29 (대신빌딩)
강남구	대치동	영동대로85길 6
강남구	대치동	영동대로85길 7
강남구	대치동	영동대로85길 9
강남구	대치동	영동대로85길 13 (송석빌딩)
강남구	대치동	영동대로85길 17-4 7동(비취타운)
강남구	대치동	영동대로85길 17-5
강남구	대치동	영동대로85길 17-6 5,6동(비취타운)

구	동	도로명 주소
강남구	대치동	영동대로85길 17-7 (월드빌아파트)
강남구	대치동	영동대로85길 17-8 3,4동(비취타운)
강남구	대치동	영동대로85길 17-9 (화인 하이빌 아파트)
강남구	대치동	영동대로85길 17-10 1,2동(비취타운)
강남구	대치동	영동대로85길 17-11
강남구	대치동	영동대로85길 17 (우정에쉐르)
강남구	대치동	영동대로85길 20-3
강남구	대치동	영동대로85길 20-5
강남구	대치동	영동대로85길 20-7
강남구	대치동	영동대로85길 20-9
강남구	대치동	영동대로85길 20 (대치3차 아이파크 오피스텔)
강남구	대치동	영동대로86길 6 (지산빌딩)
강남구	대치동	영동대로86길 9
강남구	대치동	영동대로86길 10-6
강남구	대치동	영동대로86길 10-7 (한티 빌딩)
강남구	대치동	영동대로86길 10-8 (석교빌딩)
강남구	대치동	영동대로86길 10
강남구	대치동	영동대로86길 11 (승원산업사)
강남구	대치동	영동대로86길 12
강남구	대치동	영동대로86길 17
강남구	대치동	영동대로86길 18
강남구	대치동	영동대로86길 21
강남구	대치동	영동대로86길 27
강남구	대치동	영동대로86길 28 (다올 빌딩)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 518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 520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 522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 524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 526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 528 (슈페리어타워)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 532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 534 (글라스타워)

구	동	도로명 주소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 606 (파크하얏트 서울)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 610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 614 (슈페리어사옥)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 616 B동(미래에셋타워)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 620 A동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 624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 626 (메디톡스빌딩)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104길 7 (디에이그룹빌딩)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104길 8 (성보D1)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104길 9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104길 10 (성보D2)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104길 11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104길 12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104길 19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104길 21 (세아아인스)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104길 26 (ST타워)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104길 31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108길 7 (동국빌딩)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108길 8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108길 11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108길 12 (하나빌딩)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108길 15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108길 19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108길 22 (서경빌딩)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108길 23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108길 25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108길 26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108길 28-1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108길 28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108길 29 (상림빌딩)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108길 42 (엠디엠타워)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114길 11

구	동	도로명 주소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114길 14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114길 16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114길 20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114길 23 (강남운전면허시험장)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114길 24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114길 26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114길 30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114길 38 (동일타워(DONGIL))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92길 7 (바른빌딩)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92길 11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92길 13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92길 14 (동우리빌딩)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92길 39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92길 43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92길 45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98길 6-9 (티아이타워)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98길 8 (코스모 대치)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98길 11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98길 12 (현대백화점 본사)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98길 15 (송강빌딩)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98길 16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98길 23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98길 24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영동교회)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98길 28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98길 32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 524 코엑스인터컨티넨탈서울(ASEM 및 한국종합무역센타단지)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 531 (봉은사)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 533 (윤곡빌딩)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 535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 537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 539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 541

구	동	도로명 주소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 543 (두에빌딩)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 601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 605 (현대성우대승빌딩)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 606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 608-10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 609 (현대성우홀딩스빌딩)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 610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 612 (광동한방병원)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 613 (에스케이쉴더스주식회사)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 616 (삼성1문화센터)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 617 (인탑스빌딩)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 618 (풍국빌딩)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 619 (JBK TOWER 빌딩)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 620 (유진빌딩)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 622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 623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 624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 625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 626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 627 (신코빌딩)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 628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 629 (정경0901)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 630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 632 (JK빌딩)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 633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 634 (20TOWER)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 636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 637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 638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 639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 640 (에스빌딩)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 641

구	동	도로명 주소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 644 별관(대웅제약)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 645 (라테라스)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03길 5 (성재빌딩)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03길 6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03길 8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04길 6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04길 7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04길 9-5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04길 9-7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04길 9-9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04길 10 (아이큐어타워)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05길 12-7 (삼성풍림2차아파트)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05길 12-11 (평화빌딩)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05길 24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05길 26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05길 28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05길 30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05길 32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05길 34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05길 45 A,B동(현대빌라2차)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05길 46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05길 48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05길 50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05길 54-1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05길 54-2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05길 54-3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05길 54-4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05길 54-5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05길 54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08길 3-6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08길 3-10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08길 3-12

구	동	도로명 주소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08길 3-14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08길 5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08길 19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08길 21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08길 23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08길 33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08길 39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09길 4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09길 8 A,B동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09길 10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09길 12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09길 14-8 (에스케이뷰 아파트)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09길 18 (금향빌라)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09길 22-5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09길 35 (조안빌딩)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09길 39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09길 41-3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09길 41-5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09길 41-6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09길 41-8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09길 43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09길 49-3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09길 49-7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09길 49-8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09길 49-9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09길 49-12 A,B동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09길 49-15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09길 49-20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09길 50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09길 53 가,나동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09길 54 A동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09길 62-1

구	동	도로명 주소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09길 62-2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09길 62-4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09길 62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09길 64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09길 66-1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09길 66-7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09길 66-8 1~16동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09길 66 (삼성펠레스)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11길 5 (씨에이치엠빌딩)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11길 6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11길 7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11길 8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11길 12 (태영빌딩)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11길 13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11길 14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11길 16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11길 18-3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11길 18-5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11길 18-7 (이다스빌딩)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11길 18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11길 20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11길 22-2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11길 22-4 (노바삼성)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11길 22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11길 25 (금호어울림아파트)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11길 26 101동(삼부아파트)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11길 31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11길 34 102동(삼부아파트)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11길 40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12길 6 (익성빌딩)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12길 12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12길 16-4

구	동	도로명 주소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12길 16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12길 18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12길 22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12길 23 (삼성빌딩)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12길 26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12길 27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12길 28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13길 19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13길 21 (아인빌딩)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13길 23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13길 25 (강변삼부아파트)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13길 33 (신동아 듀크빌)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13길 39 (골든빌)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13길 51 (동호주유소)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14길 12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14길 13 별관(서울의료원)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14길 20 (새마을금고연합회관)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14길 28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14길 30-5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14길 30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14길 32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14길 38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14길 40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14길 42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114길 46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97길 4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97길 10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97길 16 (곰바위)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97길 18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97길 20-1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97길 20-2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97길 20-4

구	동	도로명 주소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97길 20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97길 22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97길 24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99길 3 (선용빌딩)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99길 5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99길 7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99길 9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502 (위메프빌딩)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506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508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510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511 (무역회관)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512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513 (ASEM 및 한국종합무역센타단지)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517 (ASEM 및 한국종합무역센타단지)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520 (아이파크타워)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602 (미켈란 107)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607 (랜드마크빌딩)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611 (Chan&Chan Tower)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613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615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616 (Anam)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617 (찬이빌딩)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618 (호텔인나인)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619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621 (621빌딩)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622 (91빌딩)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626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630-3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630-4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630-5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630-6

구	동	도로명 주소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630-7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630 (스타빌딩)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632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638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640 101~103동(아이파크)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643 (경기고등학교)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644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646 (위레벤646)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648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06길 5 (아이파크 타워2)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06길 9 (S&J 빌딩)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06길 11 (현성빌딩)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06길 17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06길 23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06길 27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06길 29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06길 33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06길 37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06길 38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06길 40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06길 41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06길 42 (성도엔지니어링)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06길 45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2길 4 (삼성1파출소)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2길 5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2길 6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2길 9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2길 10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2길 15 (풍림아파트)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2길 22 (아셈아파트)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2길 24 (동구싼타빌)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2길 26 (삼성아트빌)

구	동	도로명 주소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2길 28 (아로빌딩)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2길 32 (한국문학번역원빌딩)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2길 36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2길 38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2길 42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2길 46 (엘에이치삼성도시형생활주택)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2길 51 (제이에스빌)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2길 53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2길 54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2길 55 (아이리스빌)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2길 57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2길 59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2길 61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2길 66 (아메리칸스탠다드바쓰하우스빌딩)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2길 67 (동일파크스위트)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4길 5 (이브자리)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4길 7-3 A,B동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4길 7-4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4길 7-8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4길 7-9 (주양(住羊)빌라)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4길 7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4길 9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4길 10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4길 11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4길 13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4길 15 (아셈힐)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4길 17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4길 19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4길 23 (월성아파트)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4길 29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4길 31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4길 33 (마이바움 삼성 · 창)

구	동	도로명 주소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4길 34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4길 35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4길 37 (다세대 주택)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4길 39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4길 41 (빌라하모니)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4길 43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4길 56 101동(래미안 삼성1차)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4길 56 201동(래미안 삼성1차)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4길 56 301~303동(래미안 삼성1차)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4길 56 501~504동(래미안 삼성1차)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4길 63 (삼부아그레빌)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4길 71-3 101동(삼성 대우멤버스카운티1차)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4길 72 (아펠바움)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5길 4 (J빌딩)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5길 5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5길 7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5길 9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5길 10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5길 11 가~다동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5길 12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5길 14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5길 15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5길 16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6길 5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6길 6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6길 7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6길 8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8길 3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8길 5-3 (가온재)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8길 5-4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8길 5-6 (다세대주택)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8길 6 (연암빌딩)

구	동	도로명 주소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8길 7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8길 8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8길 9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8길 12-3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8길 12-4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8길 12-5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8길 12-6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8길 12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8길 14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8길 18 A,B동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8길 22 (삼성리더스빌)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8길 29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8길 30-4 1,2동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8길 30-5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8길 30-5 제1동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8길 30-7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8길 30-7 (나동)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8길 30-8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8길 30-11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8길 30-12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8길 30-13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8길 31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8길 33 2,3동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8길 37 가~라동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8길 38-4 B동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8길 38-6 C동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8길 38 A동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8길 39 (교회)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8길 40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8길 43-6 A~E동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8길 43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8길 48

구	동	도로명 주소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8길 49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8길 50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8길 51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8길 52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8길 53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8길 54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8길 56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8길 65-1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8길 65-2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8길 65-3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8길 65-4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8길 65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8길 66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8길 67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8길 75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18길 76 102동(삼성 대우 멤버스카운티1차)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22길 2 (삼성 브르넨)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22길 6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22길 7-6 삼성어린이집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22길 8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22길 9 가,나동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22길 10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22길 12 (늘보람 23호관)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22길 15 (시공간빌딩)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22길 22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22길 23 가~다동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22길 28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22길 29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22길 31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22길 37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22길 41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22길 45 가~마동(마동)

구	동	도로명 주소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22길 46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28길 5 101~103동(청구아파트)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28길 15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28길 32-1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28길 32-3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28길 32-5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28길 32-7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28길 32-9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28길 32-11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28길 32-15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28길 32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28길 45 A동(헤렌하우스2)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28길 46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28길 51 B동(헤렌하우스2)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28길 54-4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28길 54-5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28길 54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28길 55 (다우림 하우스)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28길 56 1~3동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128길 59 (봉은중학교)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96길 8-8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96길 8 (석광빌딩)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96길 12 (페코빌딩)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96길 20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96길 26 (하나은행별관)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96길 34 (대윤빌딩)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96길 37
강남구	삼성동	올림픽대로 2847
강남구	삼성동	테헤란로 517 (현대백화점)
강남구	삼성동	테헤란로 521 호텔동(파르나스)
강남구	삼성동	테헤란로 538 (삼성역)
강남구	삼성동	테헤란로 607 (캐논 케이 타워)

구	동	도로명 주소
강남구	삼성동	테헤란로 619
강남구	삼성동	테헤란로 621
강남구	삼성동	테헤란로 623
강남구	삼성동	테헤란로 625
강남구	삼성동	테헤란로 629 (강남소방서)
강남구	삼성동	테헤란로103길 5 1,2동
강남구	삼성동	테헤란로103길 6
강남구	삼성동	테헤란로103길 8-7
강남구	삼성동	테헤란로103길 8-8
강남구	삼성동	테헤란로103길 8-10
강남구	삼성동	테헤란로103길 9
강남구	삼성동	테헤란로103길 10
강남구	삼성동	테헤란로103길 14
강남구	삼성동	테헤란로103길 17
강남구	삼성동	테헤란로107길 6 (SOLID CORPORATION)
강남구	삼성동	테헤란로107길 10
강남구	삼성동	테헤란로107길 11
강남구	삼성동	테헤란로107길 12
강남구	삼성동	테헤란로113길 7 별관(백암아트센터)
강남구	삼성동	테헤란로113길 12 (현대오토에버사옥)
강남구	삼성동	테헤란로113길 13
강남구	삼성동	테헤란로113길 15
강남구	삼성동	테헤란로115길 4
강남구	삼성동	테헤란로115길 30
강남구	삼성동	테헤란로87길 22 (한국도심공항터미널)
강남구	삼성동	테헤란로87길 46 호텔오크우드프리미어(ASEM 및 한국종합무역센타단지)
강남구	삼성동	테헤란로87길 58 컨벤션별관(ASEM 및 한국종합무역센타단지)
강남구	삼성동	학동로 610 (봉은초등학교)
강남구	청담동	학동로 508 (청담역)
강남구	청담동	학동로 609 1~3동(청담 삼익아파트)
강남구	청담동	학동로 609 5~7동(청담 삼익아파트)
강남구	청담동	학동로 609 9~10동(청담 삼익아파트)

구	동	도로명 주소
광진구	자양동	강변북로 2230 (아리랑 하우스)
광진구	자양동	강변북로 2260
광진구	자양동	강변북로 2278
광진구	자양동	강변북로 2326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 434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 438 (GS칼텍스 아시아주유소)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 442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 444 본동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 446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 450 (앙시레이크타워)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 454 (정도빌딩)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 456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 458 (연두빌딩)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 460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 462 ((주)아성테크노)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 464 (금비빌딩)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2길 5-8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2길 5-10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2길 5-12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2길 5-14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2길 5-15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2길 5-16 (효진하우스)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2길 5-17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2길 5-20 (L&H HOUSE)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2길 5-28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2길 5-30 (유니크빌)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2길 5-36 (선경빌)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2길 5-38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2길 5-40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2길 5-42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2길 5-44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2길 5 (제트라인/잠실점)

구	동	도로명 주소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2길 7 (오뗄빌딩)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2길 10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2길 11-4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2길 11-5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2길 11-7 (한양빌)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2길 11-8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2길 11-9 (정진빌)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2길 11-10 (해들빌)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2길 11-12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2길 11-14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2길 11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2길 13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2길 15-5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2길 15-7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2길 15-10 (영재빌라)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2길 15-11 A,B동(리센츠빌)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2길 15-12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2길 15-14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2길 15-17 (미래안)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2길 15-18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2길 15-20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2길 15-21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2길 15-22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2길 15-23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2길 15-24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2길 15-25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2길 15 (애드버스)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2길 17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2길 21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4길 6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4길 7-1 (파로스타워)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4길 7-6

구	동	도로명 주소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4길 7-7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4길 7-9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4길 7-11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4길 7-15 (부렴어린이집)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4길 7-17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4길 7-19 (해오름빌)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4길 7-22 (푸른채)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4길 7-26 (글로리아빌)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4길 7 (우신빌딩)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4길 8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4길 9-1 (아주하우스)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4길 9-3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4길 9-6 (삼성주택)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4길 9-10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4길 9-14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4길 9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4길 10-5 (주영빌)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4길 10-8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4길 10-9 (그린빌리지)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4길 10-10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4길 10-12 (303홈)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4길 10-13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4길 10-16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4길 10-17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4길 10-18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4길 10-20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4길 10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4길 11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4길 12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4길 13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4길 14-1 (태영주택)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4길 14 (욱빈하우스)

구	동	도로명 주소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4길 15-1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4길 15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4길 16 (잠실빌라)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4길 17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4길 18-1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4길 18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4길 19-1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4길 19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4길 20-1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4길 20 (올리브하우스)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4길 21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4길 22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4길 23 (로얄빌딩)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4길 24 (금옥빌)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4길 25-1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4길 25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4길 26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4길 27
송파구	잠실동	도곡로64길 29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 2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 11 (신천중학교)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 21 (잠일고등학교)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 63 (위너스오피스텔I)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 67 (위너스오피스텔II)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 69 (애플타워)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 75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 83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 87 (아시아 오피스텔)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 89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 91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 95 (파워개발(주) 잠실사옥)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 99

구	동	도로명 주소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 101 ((주)서일빌딩)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 105 (지애빌딩)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 107 (장학빌딩)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 109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 113 (민성빌딩)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 114 (우남빌딩)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 115 (그린빌딩)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 116 (일신빌딩)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 117 (정일빌딩)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 118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 119 (덕원빌딩)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 121 (베네빌딩)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 122 (성현교회)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 125 (삼화주유소)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 126 (오룡빌딩)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 127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 128 (BS타워)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 130 (덕양빌딩)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 132 (정방빌딩)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 135 A동(극동빌딩)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 139 B동(극동빌딩)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 140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 142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 145 (잠실본동복합청사)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5 (엘하임)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6-5 (청송빌딩)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6-7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6-10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6-11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6-12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6-13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6-17

구	동	도로명 주소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6-18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6-20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6-21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6-22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6-23 (세화빌라)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6-25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6-26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6-27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6-28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6-31 (대호빌라)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6-32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6-33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6-35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6 (삼풍빌딩)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7 (가원하우스)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8-7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8-8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8-10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8-11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8-12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8-14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8-15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8-16 (연빌라)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8-17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8-18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8-19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8-22 (선영빌라)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8-23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8-24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8-25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8 (양무리교회)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9 (신아빌딩)

구	동	도로명 주소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10 (잠실골프장)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11-1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11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13-1 (베네치아)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13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14-6 (우성감리교회)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14-14 (청명빌딩)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14-15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14-16 (승희빌라)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15 (명진빌라)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17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18-3 (영우)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18-5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18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19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20 (단일빌라)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21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22 (삼성베스트빌)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23-1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23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24 A동(동산빌라)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25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26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27-1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27 (선한사람들)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28-5 (골든 빌라트)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28-6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28-7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28-8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28-11 (예은빌라)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28-12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28-13

구	동	도로명 주소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28-14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28-15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28-16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28-19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28-20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28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29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30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31 (은현네오빌)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32-3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32-5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32-6 (청운빌라)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32-8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32-9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32-10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32-11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32-15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32-16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32-17 (태경 팰리스)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32-19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32-20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32-22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32-23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32-24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32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33-1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33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34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1길 35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3-5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3-6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3-7

구	동	도로명 주소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3-8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3-9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3-10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3-12 (초원팰리스)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3-13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3-15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3-16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3-17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3-18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3-19 (청담빌)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3-20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3-21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3-22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3-23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3 (유림빌딩)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4-5 (청운빌딩)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4-6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4-7 (인영하우스)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4-8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4-10 (뉴티로즈)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4-11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4-13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4-15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4-17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4-19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4-21 (굳 피플 하우징)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4-22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4-23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4-24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4-28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4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5 (다움리치빌)

구	동	도로명 주소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6 (세화빌딩)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7-1 (르보암하우스)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7-5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7-7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7-8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7-9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7-10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7-11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7-12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7-14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7-15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7-17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7-18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7-19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8-3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8-5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8-6 (지나하우스)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8-7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8-8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8-10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8-11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8-12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8-13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8-14 (초롱빌라쓰리)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8-15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8-16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8-17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8-18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8-19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8-21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8-22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8-24

구	동	도로명 주소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8-26 (옥하우스)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8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9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10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11-5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11-6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11-7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11-8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11-9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11-11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11-12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11-13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11 (동승빌딩)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12-3 (본예가)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12-4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12-7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12-9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12-10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12-11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12-12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12-14 (서정주택)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12-15 (황옥빌)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12-16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12-17 (서우빌)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12-18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12-20 (서정빌)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12-21 (H&J HOUSE)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12-22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12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13 (환우빌딩)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14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17

구	동	도로명 주소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19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20-4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20-7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20-8 (행복한 가정)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20-9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20-10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20-11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20-12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20-13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20-15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20-18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20-20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20-22 (한울빌)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20 (빌라)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22 A동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24-8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24-10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24-11 (이지스빌)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24-12 (테마빌)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24-13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24-14 (해돋는 집)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24-16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24-17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24-19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24-20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24-21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24-22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24 B동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26-16 (리치빌)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26-18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26-22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26-24

구	동	도로명 주소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26-28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26-32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2길 26 (잠실7동천주교회)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3길 1-1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3길 1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3길 3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3길 4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3길 5-1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3길 5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3길 6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3길 7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3길 8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3길 9-1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3길 9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3길 10 (하나빌라)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3길 11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3길 12-1 (경혜빌라)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3길 12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3길 13 (사랑이가득한집)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3길 14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3길 15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3길 16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3길 17 B동(동산빌라)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3길 18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5길 23-4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5길 23-5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5길 23-7 (헤디아빌)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5길 23-8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5길 23-10 (써니사이드 빌)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5길 23-12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5길 25 (영스빌)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5길 27

구	동	도로명 주소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5길 28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5길 29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5길 30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5길 31 (숨결49)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5길 32-1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5길 32-2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5길 32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5길 33-1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5길 33-2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5길 33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5길 34-1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5길 34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5길 35-1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5길 35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5길 36-1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5길 36-2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5길 36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5길 37-1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5길 37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5길 38-1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5길 38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5길 39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5길 40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5길 41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5길 42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5길 43 (고려시티빌)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5길 44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5길 45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5길 46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5길 47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5길 48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5길 49

구	동	도로명 주소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5길 50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5길 52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5길 55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5길 56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5길 58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5길 59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7길 29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7길 29 (대한예수교장로회신천교회)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7길 30-1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7길 32-2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7길 32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7길 34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7길 35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7길 36-1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7길 36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7길 37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7길 38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7길 43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7길 44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7길 45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7길 49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7길 52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7길 54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7길 55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17길 56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3-10 (렉스빌2차)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3-16 (다비드호텔)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3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6-5 (남미빌딩)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6-15 (금석빌딩)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6-19 (대진빌딩)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6-37 (해경)

구	동	도로명 주소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6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7-5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7-8 (모텔 칸)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7-9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7-13 (모텔 폼)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7 (민들레 빌딩)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8-8 (명소빌딩)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8-12 (승현빌딩)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8-16 (남광빌딩)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8-37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8-39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8-40 101동(LH 서울잠실 행복주택)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8-41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8-44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8-45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8 (태광빌딩)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9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14 (태원빌딩)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15-5 (팔공빌딩)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15-10 (로보그라트)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15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16-3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16-9 (한신빌딩)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16-13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16-15 (정안빌딩)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16-16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16-19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16-20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16-27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16-28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16-31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16-33

구	동	도로명 주소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16-34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16-35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16-36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16-37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16-38 (아시아빌라)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16-41 (영훈빌라)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16-42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16-43 (J.J빌라)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16-44 (원영빌라)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16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17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18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19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20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23-5 (포레스타)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23-6 (주식회사 호텔포레스타)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23 (SJ 에비뉴힐스)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24-7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24-11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24-12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24-13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24-14 (건영빌딩)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24-17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24-18 (은하빌딩)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24-19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24-27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24-28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24-30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24-31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24-33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24-34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24-36

구	동	도로명 주소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24-37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24-40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24-41 (초롱빌라)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24-42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24-43 (크리스탈하우스)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24-44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24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25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26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27 (반석빌딩)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28-5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28-6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28-7 (해경빌딩)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28-8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28-11 (영동빌딩)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28-12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28-13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28-14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28-16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28-17 (성경빌딩)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28-27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28-29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28-33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28-34 (트윈빌라)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28-35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28-38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28-39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28-40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28-42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28-43 (은혜빌라)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28-44 A(태양)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28

구	동	도로명 주소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29 (우림빌딩)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30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31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32-4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32-8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32-10 (남광빌딩)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32-11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32-13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32-14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32-17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32-18 (영해빌딩)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32-19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32-20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32-29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32-32 (새한빌)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32-33 (한신빌딩)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32-34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32-35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32-36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32-37 (원앙 에이스빌)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32-40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32-41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32-42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32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33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34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39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40-17 (손예빌딩)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40-27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40-28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40-29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40-30 (로뎀빌)

구	동	도로명 주소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40-33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40-34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40-37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40-38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40-39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40-42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41 (NS파인트리)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42-12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42-13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42-16 (정빌딩)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42-24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42-25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42-29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42-30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42-33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42-34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42-37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42-38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42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45 (페로스)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46-7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46-12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46-23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46-24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46-26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46-29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46-30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46-33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46-34 (다온빌)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46-35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46-36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46 가,나동(은전빌딩)

구	동	도로명 주소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48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49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50-1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50 (위더스빌딩(잠실))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51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52-5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52-8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52-19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52-23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52-24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52-28 (런던빌)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52-29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52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53 (AW TOWER)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54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56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57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7길 58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9길 5 (스토리2003)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9길 6 A,B동(sms)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9길 7 (동실빌딩)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9길 8 (정일빌딩)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9길 9 (유성빌딩)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9길 10 (MBC아카데미)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9길 14 (우화빌딩)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9길 17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9길 18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9길 19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9길 21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9길 22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9길 23 (운관빌딩)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9길 24

구	동	도로명 주소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9길 25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9길 26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9길 27 (향원빌딩)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9길 28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9길 29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9길 30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9길 31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9길 33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9길 34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9길 35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9길 36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9길 37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9길 39 (행복빌딩)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9길 40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9길 41-1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9길 41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9길 42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9길 43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9길 45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9길 46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9길 47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9길 48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9길 49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9길 50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9길 51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9길 52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9길 53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9길 54
송파구	잠실동	삼전로13길 44 (잠일어린이집)
송파구	잠실동	삼전로13길 46
송파구	잠실동	삼전로13길 47
송파구	잠실동	삼전로13길 48

구	동	도로명 주소
송파구	잠실동	삼전로13길 49
송파구	잠실동	삼전로13길 50-1
송파구	잠실동	삼전로13길 50
송파구	잠실동	삼전로13길 51
송파구	잠실동	삼전로13길 52
송파구	잠실동	삼전로13길 53-1
송파구	잠실동	삼전로13길 53
송파구	잠실동	삼전로13길 54-1
송파구	잠실동	삼전로13길 54
송파구	잠실동	삼전로13길 55
송파구	잠실동	삼전로13길 56
송파구	잠실동	삼전로13길 57
송파구	잠실동	삼전로13길 58 (샤인빌)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 58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 61 상가(트리지움)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 64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 66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 68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 70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 72 (우리은행잠실지점)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 74 (잠실엘타워)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 76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 78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 80 (송천빌딩)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 82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1-6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1-8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1-10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3-4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3-5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3-6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3-7

구	동	도로명 주소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3-8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3-9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3-10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3-11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3-13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3-14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3-16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3-18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3-20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3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5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7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8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9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10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11-1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11-3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11-4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11-5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11-6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11-7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11-9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11-10 (잠실 엘리티움)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11-14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11-16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11-18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11-22 (해피빌)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11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12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13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14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15

구	동	도로명 주소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16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17-1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17-3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17-4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17-5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17-6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17-8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17-9 (퍼스트빌2)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17-10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17-12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17-13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17-14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17-15 (힐링캐슬)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17-16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17-18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17-20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17-22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17-23 (잠실퍼스트빌)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17-24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17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18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19-3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19-4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19-5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19-6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19-7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19-8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19-9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19-10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19-11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19-12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19-13

구	동	도로명 주소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19-14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19-15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19-16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19-17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19-20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19-21 (신천쉐르빌)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19-22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19-24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19-25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19-27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19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20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21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22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23-1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23-4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23-5 (로얄캐슬)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23-6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23-7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23-8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23-9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23-10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23-11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23-14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23-15 (아델리움)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23-18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23-20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23-22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23-23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23-24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23-25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23-26

구	동	도로명 주소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23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24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25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26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28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29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30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31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32 (그레이스빌)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33 (옥산크리스탈하우스)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35-1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35 (동흥빌라)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36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37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38 (리치빌)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39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40 (두나빌라)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41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42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43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47 (하우징허브)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48-1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48 (대신빌딩)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49-1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49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50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51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52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53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54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55 (미리내빌)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57-1

구	동	도로명 주소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57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58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59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60 (흥성빌딩)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 8 (중소기업정보관(개방화장실))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 23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 25 (잠실종합운동장)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 44 (아시아공원)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 49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 74 (잠실월드메르디앙)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 76 (J타워)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 80 (영원빌딩)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 82 (잠실현대빌딩)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 86 (로이타워)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 88 (올림픽타워)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 92 (잠실두성빌딩)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 95 (서울잠일초등학교)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 96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 98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 99 101~172동(잠실엘스)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 100 (효창타워)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 101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 102 (서일빌딩)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 104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 105 (어린이도서관)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 106 (상록빌딩)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 107 (서울잠실2동우체국)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 108 (맥스빌딩)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 111 A동(잠실엘스상가)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 114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 116-1 (신원빌딩)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 116 (메디시티(MEDICITY))

구	동	도로명 주소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 118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 119 (잠실파인애플상가)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 120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 124 (환산빌딩)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 130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 132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 135 201~229동(리센츠)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 135 231~233,265동(리센츠)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 140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 145 상가(리센츠)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0길 5 (파로스관광호텔)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0길 8 (보명장)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0길 9 (진영빌딩)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0길 13-1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0길 13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0길 14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0길 15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0길 16 (혜성빌딩)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0길 17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0길 18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0길 19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0길 20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0길 21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0길 22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0길 24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0길 25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0길 26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0길 27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0길 28-1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0길 28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0길 29-1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0길 29 (석준빌라)

구	동	도로명 주소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0길 30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0길 31-1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0길 31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0길 32-1 (서정 하우스)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0길 32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0길 33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0길 34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0길 35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0길 36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0길 38 (아미캐슬)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0길 39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0길 40 (그린빌)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0길 41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0길 42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0길 43-1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0길 43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0길 45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0길 46 (봉수빌라)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0길 47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0길 48-1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0길 48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0길 49-1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0길 49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0길 50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0길 51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0길 53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0길 54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0길 55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0길 56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0길 57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0길 58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4-8 (스타파크)

구	동	도로명 주소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4-12 (씩스틴모텔)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4-14 (퍼니모텔)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4-15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4-17 (호텔 더캐슬)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4-23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4-25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4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5-9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5-11 (시안모텔)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5-17 (하루모텔)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5-19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5-21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5-25 (플러스모텔)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5-29 (로즈마리)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5-30 (모텔마쯔)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5 (정호빌딩)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8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9 (잠실천주교회)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12 (잠실사회복지관)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14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16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17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18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21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22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23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24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25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26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27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28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29 (삼호빌딩)

구	동	도로명 주소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30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31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33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34 (평산빌딩)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35-1 (준하우스)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35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36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37-1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37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38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39-1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39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40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41-1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41-2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41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42-1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42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43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44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45-9 A동(트윈캐슬)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45-11 B동(트윈캐슬)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45-15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45-17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45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46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48-1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48 (씨밀레)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50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51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51 (서울잠전초등학교)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52-5

구	동	도로명 주소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52-7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52-8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52-9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52-10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52-11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52-13 A동(수산빌라)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52-14 (전성빌라)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52-15 B동(수산빌라)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52-18 (우성빌라)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52-19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52-21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52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54-4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54-5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54-7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54-8 (리베하임)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54-9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54-10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54-11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54-12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54-13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54-14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54-15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54-16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54-17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54-18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54-19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54-20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54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58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60-5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60-6

구	동	도로명 주소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60-7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60-9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60-10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60-11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60-12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60-13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60-14 (서강캐슬)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60-15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60-17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60-18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60-19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60-20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60-21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60-22 (경우빌라)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60-23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60-25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60-29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60 (송보빌딩)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12길 62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4길 15 1~18동(아시아선수촌아파트)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4길 16 (정신여자중고등학교)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4길 17 (잠실7동 주민센터)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4길 17 중심상가(아시아선수촌아파트)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4길 32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4길 40 2동(우성아파트 상가)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4길 42 15~23동(우성아파트)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4길 42 1~3동(우성아파트)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4길 42 25~29동(우성아파트)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4길 42 5~13동(우성아파트)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4길 48 1동(우성아파트 상가)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4길 59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4길 59 (아주초등학교)

구	동	도로명 주소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4길 69 (아주중학교)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8길 4-11 (잠실 포레디움)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8길 4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8길 6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8길 7 (잠실 M타워)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8길 10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8길 11 (이루안 빌딩)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8길 12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8길 13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8길 19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8길 20 (잠실아이파크)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8길 21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8길 22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8길 23 (보현빌딩)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8길 27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8길 29 (정준빌딩)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8길 31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8길 32 (대양빌딩)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8길 33-1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8길 33 (동일하이빌)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8길 34 (봉봉빌)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8길 35 (복우빌)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8길 36 (유스틴하우스)
송파구	잠실동	잠실로 12 (잠신중학교)
송파구	잠실동	잠실로 24 (잠신고등학교)
송파구	잠실동	잠실로 26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송파구	잠실동	잠실로 32 (서울잠신초등학교)
송파구	잠실동	잠실로 62 301~305동(트리지움)
송파구	잠실동	잠실로 62 308,309동(트리지움)
송파구	잠실동	탄천동로 36
송파구	잠실동	한가람로 65 (한강공원잠실안내센터)

나. 목동운동장

구	동	도로명 주소
양천구	목동	목동동로 316-6 (도로환경관리센터)
양천구	목동	목동동로 316-8 (양천구청청소과차고)
양천구	목동	목동동로 316-10 (재활용집하장)
양천구	목동	목동동로 350 507~517동(목동신시가지아파트5단지)
양천구	목동	목동동로 350 525~534동(목동신시가지아파트5단지)
양천구	목동	목동동로 430 613~615동(목동신시가지아파트6단지)
양천구	목동	안양천로 914
양천구	목동	안양천로 916 (영학정)
양천구	목동	안양천로 939 (목동운동장)
영등포구	양평동	양산로 1
영등포구	양평동2가	선유서로25길 28
영등포구	양평동2가	양산로 14
영등포구	양평동2가	양산로 16
영등포구	양평동2가	영등포로3길 22
영등포구	양평동2가	영등포로3길 23 (CO-OP Residence/오목교)
영등포구	양평동2가	영등포로3길 24-1
영등포구	양평동2가	영등포로3길 24
영등포구	양평동2가	영등포로3길 26
영등포구	양평동2가	영등포로5길 45-1
영등포구	양평동2가	영등포로5길 45-2
영등포구	양평동2가	영등포로5길 45
영등포구	양평동2가	영등포로5길 48
영등포구	양평동2가	영등포로5길 49
영등포구	양평동3가	선유서로 115 101~102동(삼천리 아파트)
영등포구	양평동3가	선유서로 117
영등포구	양평동3가	선유서로 121
영등포구	양평동3가	선유서로 123-1
영등포구	양평동3가	선유서로 123
영등포구	양평동3가	선유서로 125 (그레이스타워)
영등포구	양평동3가	선유서로 127-1 (양평역 리버타워)
영등포구	양평동3가	선유서로 127

구	동	도로명 주소
영등포구	양평동3가	선유서로 129
영등포구	양평동3가	선유서로31길 1
영등포구	양평동3가	선유서로31길 2
영등포구	양평동3가	선유서로31길 3 (미디어 비즈 센타)
영등포구	양평동3가	선유서로31길 4-1
영등포구	양평동3가	선유서로31길 4-3
영등포구	양평동3가	선유서로31길 4-4
영등포구	양평동3가	선유서로31길 4-7
영등포구	양평동3가	선유서로31길 4-8
영등포구	양평동3가	선유서로31길 4-9
영등포구	양평동3가	선유서로31길 4-10
영등포구	양평동3가	선유서로31길 4-11
영등포구	양평동3가	선유서로31길 4-12
영등포구	양평동3가	선유서로31길 6-1
영등포구	양평동3가	선유서로31길 6-4
영등포구	양평동3가	선유서로31길 6-6
영등포구	양평동3가	선유서로31길 6-7 (소원캐슬)
영등포구	양평동3가	선유서로31길 6-8
영등포구	양평동3가	선유서로31길 6-10
영등포구	양평동3가	선유서로31길 6-12 (CENTRAL TOWER 호스텔)
영등포구	양평동3가	선유서로31길 6
영등포구	양평동3가	선유서로31길 8
영등포구	양평동3가	선유서로31길 10-4
영등포구	양평동3가	선유서로31길 10-8
영등포구	양평동3가	선유서로35길 3
영등포구	양평동3가	선유서로35길 5
영등포구	양평동3가	양산로 3
영등포구	양평동3가	양산로 5
영등포구	양평동3가	양산로 7
영등포구	양평동3가	양산로 9
영등포구	양평동3가	양산로 11 101동(양평역 미소지움)
영등포구	양평동3가	양산로1길 1

구	동	도로명 주소
영등포구	양평동3가	양산로1길 3-1 (호텔조커Ⅰ)
영등포구	양평동3가	양산로1길 3 A동(허리우드 하우스)
영등포구	양평동3가	양산로1길 4 (태창빌)
영등포구	양평동3가	양산로1길 5-1 D동(허리우드 하우스)
영등포구	양평동3가	양산로1길 5 (호텔조커Ⅱ)
영등포구	양평동3가	양산로1길 6
영등포구	양평동3가	양산로1길 7 (롯데팰리스)
영등포구	양평동3가	양산로1길 8-1
영등포구	양평동3가	양산로1길 8
영등포구	양평동3가	양산로1길 9-1
영등포구	양평동3가	양산로1길 9
영등포구	양평동3가	양산로1길 11-1
영등포구	양평동3가	양산로1길 11
영등포구	양평동3가	양산로1길 12
영등포구	양평동3가	양산로1길 13
영등포구	양평동3가	양산로1길 14
영등포구	양평동3가	양산로3길 7
영등포구	양평동3가	양산로3길 9
영등포구	양평동3가	양산로3길 10
영등포구	양평동3가	양산로3길 11
영등포구	양평동3가	양산로3길 12
영등포구	양평동3가	양산로3길 15

다. 서울월드컵경기장

구	동	도로명 주소
서대문구	남가좌동	가재울미래로 2 211동(DMC파크뷰자이)
서대문구	남가좌동	수색로 27 (가좌역)
서대문구	남가좌동	수색로 32
서대문구	남가좌동	수색로 34
서대문구	남가좌동	수색로 36 (모래내시장)
서대문구	남가좌동	수색로 36
서대문구	남가좌동	수색로 38 (백화점약국)
서대문구	남가좌동	수색로 39

구	동	도로명 주소
서대문구	남가좌동	수색로 40
서대문구	남가좌동	수색로 41
서대문구	남가좌동	수색로 42
서대문구	남가좌동	수색로 42 다동
서대문구	남가좌동	수색로 43
서대문구	남가좌동	수색로 48 (대화빌딩)
서대문구	남가좌동	수색로2길 19-17
서대문구	남가좌동	수색로4가길 3
서대문구	남가좌동	수색로4가길 7
서대문구	남가좌동	수색로4가길 10
서대문구	남가좌동	수색로4가길 15
서대문구	남가좌동	수색로4가길 17
서대문구	남가좌동	수색로4가길 23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서대문구	남가좌동	수색로4길 3-8
서대문구	남가좌동	수색로4길 3-12
서대문구	남가좌동	수색로4길 7 (녹십자약국)
서대문구	남가좌동	수색로4길 13
서대문구	남가좌동	수색로6길 8 (스타타워)
서대문구	남가좌동	수색로6길 17-10
서대문구	남가좌동	수색로6길 43 101~110동(래미안남가좌2차아파트)
서대문구	남가좌동	수색로6길 45 상가동(래미안남가좌2차아파트)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 23-3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 23-4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 23-5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 23-6 (한강타운)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 23-9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 23-10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 23-12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 23-14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 27-3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 27-4 (윤슬재)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 27-5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 27-7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 27-8 (우솔베르디움)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 27-9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 27-10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 29-3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 29-4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 29-5 (형제빌라)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 29-6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 29-7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 29-8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 33-3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 33-4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 33-5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 33-8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 33-9 (삼성주택)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 33-10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 47-6 (라움하우징)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 47-8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 47-10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 47-12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 47-14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 47-16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 47-18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 47-22 (대명엘레강스2)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 55-11 B동(낙원빌라)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 55-12 (하우스 오브 미쉘)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 55-14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1길 16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1길 17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1길 19 (대진판넬)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1길 20 (한강그린빌)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1길 21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1길 22 (한강그린빌아파트)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1길 33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1길 34 (준아교역사옥)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1길 38 (스테이지원 망원)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1길 39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1길 44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1길 45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1길 48 (현대리버빌)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1길 53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1길 70 A,B동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1길 88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1길 90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1길 96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3길 17 (강변연립주택)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3길 27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3길 36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3길 37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3길 38 (가람빌)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3길 40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3길 41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3길 43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3길 44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3길 46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3길 47-2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3길 47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3길 48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3길 49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3길 51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3길 53 (금강블루)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3길 56 가동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3길 58 나동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3길 59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3길 60-3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3길 60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3길 62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3길 67 101동(한강1차대주파크빌)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3길 68 가,나동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3길 70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3길 72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3길 73 (가람아트빌)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3길 76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3길 79 (강변타운아파트)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3길 80 (아르코발레노)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3길 82 (대명파크빌B동)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3길 83-3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3길 83-6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3길 84 (대명파크빌A동)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3길 86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3길 87 (리버빌)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3길 90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3길 91-5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3길 91-6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3길 91-7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3길 91 (명진화이트빌)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3길 92 (I HOUSE)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3길 93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3길 94 (신흥아너스빌)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3길 95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3길 96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3길 97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3길 98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3길 99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3길 100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3길 104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3길 105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3길 112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3길 115 201동(한강2차대주파크빌)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3길 116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3길 118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3길 122-5 2동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3길 122-6 5동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3길 122-7 3동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3길 122-8 6동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3길 122 4동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3길 124 1동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3길 125 (현진에버빌)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3길 127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3길 129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9길 23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9길 24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9길 28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9길 29-5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9길 29-6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9길 29-8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9길 29-9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9길 29-11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9길 29-15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9길 29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9길 30-1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9길 30-2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9길 30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9길 33-1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9길 33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9길 34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9길 35-1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9길 35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9길 36-1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9길 36 (어반클라인 이레)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9길 37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9길 44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9길 48 (베스트힐)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9길 49 (리치힐)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9길 50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9길 51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9길 52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9길 53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9길 54-4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9길 54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9길 55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9길 56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9길 57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9길 59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9길 61 (성락교회)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9길 65 (썬유빌)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9길 69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9길 70 (평화)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9길 71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9길 72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9길 73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9길 76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9길 82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9길 83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9길 84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9길 91-1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9길 91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9길 92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9길 94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9길 95-5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9길 95-6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9길 95-7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9길 95
마포구	망원동	동교로9길 97
마포구	망원동	마포나루길 386 (망원한강수영장)
마포구	망원동	마포나루길 407
마포구	망원동	마포나루길 429
마포구	망원동	마포나루길 435
마포구	망원동	마포나루길 437 (한강경찰서)
마포구	망원동	마포나루길 442 (수상택시)
마포구	망원동	마포나루길 467 (한강공원 망원안내센터)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1-1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1-4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1-5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1-9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1-10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1-11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1-12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1-13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1-14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1-15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1-16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1-17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1-18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1-19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1-20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1-21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1-22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1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3-1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3-2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3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5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7-1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7-3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7-4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7-5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7-6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7-8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7-10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7-12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7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8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9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11-4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11-5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11-6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11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12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13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14 102동(참존2차아파트)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15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16 101동(참존2차아파트)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17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19 (참존아파트)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21-1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21-2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21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22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23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24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25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26 (토기장이빌딩)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28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29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30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31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32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33-1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33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34-6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34-7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34-8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34-10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34-11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34-14 (아가도스)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34-15 (다세대주택)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34-17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34 (인광빌딩)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36 (한강로얄스위트아파트)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39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43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44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45-3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45-4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45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46-3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46-4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46-5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46-6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46-7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46-8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46-10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46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47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48-1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48-3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48-4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48-5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48-6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48-7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48-8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48-9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48-10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48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49-1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49-4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49-5 (이레쉐르빌)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49-6 (대명파크타운)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49 (망원빌딩)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50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51-3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51-5 (진흥푸르지오)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51-6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51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52-3 (망원휴먼타운)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52-7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52-8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52-9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52-10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52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53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54-1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54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55-3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55-4 (이레쉐르빌)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55-5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55-6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55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56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57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58-1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58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59-1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59-2 (신흥아너스빌)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59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60 (희망주택)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61-1 (태영아파트)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61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62-1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62-3 (이이헌(怡里軒))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62-4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62-5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62-8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62-9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62-10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62-11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62-12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62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63-1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63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64-2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64-3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64-5 B동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64-6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64-7 (황금리)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64-8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64-9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64-10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65-1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65-2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65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66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67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68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69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70-3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70-5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70-7 (동원파크빌)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70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71 (자연빌딩)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72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73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74-1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74-3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74-4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74-5 (노블캐슬)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74-6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74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75-1 (동남빌딩)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75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76-3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76-4 (아이원 빌)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76-6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76-8 (베스티움)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76-10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76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77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78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79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80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81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82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83-3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83-4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83-5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83-6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83 (누리빌딩)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84-5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84-6 (소이연빌리지)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84-7 (월드빌)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84-8 (소이연빌리지)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84-9 (동원씨티빌)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84-10 (한강리버힐)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84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85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86 (부광)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87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88 상가(삼성화원아파트)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89 (목화아파트)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92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93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94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95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96-1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96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97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 99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0길 3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0길 5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0길 6 (삼성화원아파트)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0길 10-3 (웨스트빌)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0길 10-4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0길 10-5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0길 10-6 (삼우캐슬)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0길 10-7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0길 10-8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0길 10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0길 11-8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0길 11-10 (진흥하임빌)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0길 11-12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0길 11-14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0길 11-16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0길 11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0길 13 1동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0길 14 (들국화쉐르빌)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0길 15 2동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0길 16-4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0길 16-8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0길 16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0길 19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0길 21 (하심정)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0길 23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0길 24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0길 27 (스위트하우스)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1길 3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1길 6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1길 7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1길 27-10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1길 27-28 가동(기룡하이츠)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1길 27-32 나동(기룡하이츠)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1길 27-38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1길 27-40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1길 27-54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1길 29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1길 35 (함성월드빌3차아파트 301동)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1길 38 101동(미원아파트)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1길 41-4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1길 41-6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1길 41-8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1길 41-9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1길 41-10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1길 41-11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1길 41-13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1길 41-14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1길 41-16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1길 41-17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1길 41-18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1길 41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1길 43-12 (라움하우징)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1길 43-13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1길 43-15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1길 43-17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1길 43-19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1길 43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1길 44-3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1길 44-4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1길 44-5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1길 44-6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1길 44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1길 47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1길 48 (삼원그린맨션)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1길 49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1길 50 (준빌딩)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1길 53-5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1길 53-6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1길 53-8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1길 53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1길 54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1길 56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1길 57 (샬롬)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1길 58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1길 68-3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1길 68-4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1길 68 (강촌빌딩)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1길 70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1길 72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1길 73 (함성월드빌아파트)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1길 76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1길 77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길 4 (동광빌)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길 5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길 6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길 10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길 12-5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길 12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길 16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길 18-6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길 18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길 22 (장수필하우스)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길 24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길 27 101~103동(망원2차대림아파트)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길 28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길 30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길 32-1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길 32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길 35-4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길 35-6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길 35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길 36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길 37-5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길 37-6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길 37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길 41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1길 42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2길 5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2길 7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2길 9 (해오름)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2길 10-4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2길 10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2길 14 (예향아파트)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2길 15 (뫼비우스)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2길 16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2길 17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2길 19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2길 24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2길 26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2길 30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2길 34-1 (한남파크빌)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2길 34 (한남파크빌)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2길 36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2길 37 (에덴빌라)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2길 40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2길 41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2길 46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2길 50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2길 51 (대림 화이트빌)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2길 54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2길 56 (진주아트빌)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2길 57-1 C동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2길 57 B동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2길 59 A동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2길 62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2길 63 (망원파출소)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2길 64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2길 65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2길 69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2길 70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2길 73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2길 75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2길 75 A동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2길 77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2길 80 (마포리버팰리스)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2길 81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2길 82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2길 87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2길 89-3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2길 89-5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2길 89-6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2길 89-7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2길 89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2길 90 (이에스빌)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2길 93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2길 94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2길 95-5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2길 95-6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2길 95-8 (아키텍트)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2길 95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2길 96 (류(버들))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2길 97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2길 98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2길 100 B동(삼성캐슬)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2길 103 101~104동(망원1차 대림 아파트)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2길 106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2길 108 (파라다이스베이)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3길 1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3길 4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3길 6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3길 7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3길 8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3길 12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3길 13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3길 14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3길 15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3길 19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3길 21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3길 24-3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3길 24-5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3길 24-7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3길 24 (2-1공영주차장)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3길 25 (에덴쉐르빌)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3길 26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3길 29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3길 30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3길 34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3길 35-1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3길 35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3길 37-4 (금강하이츠)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3길 37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3길 38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3길 41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3길 42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3길 44 (아람어린이집)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3길 45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3길 47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3길 48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4길 3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4길 5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4길 7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4길 8 201동(성원2차아파트)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4길 9-6 (금강쉐르빌)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4길 9-7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4길 9-8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4길 9-10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4길 9-18 13동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4길 9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4길 11-4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4길 11-6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4길 11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4길 15 (제일하이트빌)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4길 16-6 (용진빌)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4길 16-8 (착한나라어린이집)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4길 16-10 B동(행복타운)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4길 16-12 A동(행복타운)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4길 16 (망원주택)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4길 20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4길 23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4길 24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4길 25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4길 26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4길 27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4길 31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4길 32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4길 34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4길 38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4길 39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4길 41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4길 45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3-3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3-4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3-5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3-6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3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6-1 (선애 어린이집)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6 (청보주택)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7 (제일하이츠)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8-1 2동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8 1동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10-1 4동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10 3동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11-3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11-5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11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13-3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13-6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13-7 (망원선호빌)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13-8 (동광팰리스)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13-9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13-11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13-13 (성일가)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13-14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13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14-1 6동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14 5동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15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16-1 8동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16 7동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19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21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23-5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23-7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23-8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23-9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23-10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23-13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23-14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23-15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23-16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23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24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26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27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30 (제이에스빌딩)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31-5 (한솔빌리지)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31-7 (엘에스노블레스)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31-9 (두성하이츠빌)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31-11 (두원캐스빌)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31 (대호아트빌)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32 (다세대주택)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37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40-1 (망원리버팰리스)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40 (405-56다세대)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41-5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41-6 (진흥푸르지오)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41-9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41-12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41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42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46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47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48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49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50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56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57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59 (지상 리치빌)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60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61 (화이트빌)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62 (동서하이츠)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64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65 (제이원 빌딩)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66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67 (강변르네상스)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6길 68 (동광탑스빌)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3-4 (신아아트빌)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3-6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3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4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6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7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13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17-6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17-8 (패밀리움)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17-10 (아트 빌)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17-12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17-14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17-16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17-18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17 (지상빌딩)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19-6 (햇살하우스)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19-10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19-12 (팰리스 빌)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19-14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19-18 (동광빌)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19-20 (동서하이츠)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19-24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19 (명빌딩)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20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23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24 (한일주택)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28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30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31-5 (삼우빌리지)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31-6 (레디앙2차)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31-7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31-10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31-13 (다세대)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31-14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31-15 (SK드림파크빌)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31-17 (월드아트빌)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31-18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31-19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31-20 (M.팰리스빌)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31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33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34 (연세빌딩)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35-5 (건우주택)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35-8 (아펠리움)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35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36-6 가동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36-8 나동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36-9 (삼성캐슬)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36-10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36-12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36 (동아빌딩)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39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40-5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40-7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40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41-5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41-6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41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42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43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44-5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44-6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44-7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44-8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44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45 (선교복지관)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48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54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56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57 (송주 보르미 타운)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60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62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63 (망원루와르)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65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66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7길 68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8길 3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8길 6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8길 7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8길 9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8길 10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8길 13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8길 14-4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8길 14-6 (다세대주택)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8길 14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8길 15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8길 17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8길 21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8길 25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8길 26-3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8길 26-4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8길 26-5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8길 26-6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8길 26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8길 27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8길 29-3 (빌라신축공사)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8길 29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8길 30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8길 32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8길 34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8길 36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8길 39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8길 41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8길 43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8길 46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8길 47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8길 53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8길 55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8길 57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8길 60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8길 61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8길 63 (63B)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8길 67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8길 70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8길 71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8길 72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8길 73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8길 74
마포구	망원동	망원로8길 77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1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3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4 B동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6 A동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19 (공중화장실)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21 (구립샘물어린이집)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24-1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24-5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24-7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24-9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24-11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24-12 (구립망원2동2노인정)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24-13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24-15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24-21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24-25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24-33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24-35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24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26-1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26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28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30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31 101,102동(휴먼빌 아파트)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32-3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32-5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32-7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32-9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32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34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36 (두영이지안)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37 101,102동(마포한강제이스카이)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38-5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38-7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38-10 (월드팰리스)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38 (망원주택)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39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40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41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42 (센터빌)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43 401동(신부파스카아파트)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44-3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44-4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44-7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44-8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44-10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44-11 (예인리버빌)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44-14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44-15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44-16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44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46-1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46 (윤성빌딩)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47 (더웨이브)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48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50-1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50-2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50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52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53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54-1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54-4 (시나아트빌)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54 (시나아트빌)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55 (유림)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56-1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56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57-4 (망원빌라)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57-5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57-6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57-8 (망원빌라)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57-9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57-11 (해담)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57-12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57-14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57-15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57-16 (백송빌라)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57 (송정빌딩)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58-3 나동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58-5 가동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58 101,102동(동교센터빌)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59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60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61-4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61-5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61-7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61-8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61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63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65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66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67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68-3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68-5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68-7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68-8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68-11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68-13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68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69-1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69-3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69-4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69-5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69-7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69-9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69-11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69-13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69-14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69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70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71 (해가든빌)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72-6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72-10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72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73-2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73-3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73-4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73-5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73-6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73-7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73-8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73 (休家)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74-5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74-6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74-7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74-8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74-10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74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75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76-1 (형덕빌딩)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76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77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78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79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80-5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80-6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80-7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80-8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80-9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80-10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80-12 (하람이네)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80-13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80-15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80-16 (스타 애비뉴)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80-17 (다온빌)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80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82-1 D동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82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83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84-1 B동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84 C동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86 A동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87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88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89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90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91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11길 4-3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11길 4-4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11길 4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11길 8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11길 10 (에벤에셀)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11길 14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11길 15-4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11길 15-8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11길 15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11길 16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11길 23 (두영빌딩)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11길 24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11길 25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11길 26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11길 27 (노아아크빌)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11길 34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11길 35-3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11길 35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11길 37 (프리마빌딩)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11길 38 (마포월드컵제이스카이아파트)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11길 43 경비실(상암마젤란21아파트)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11길 61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11길 65 (삼정홈타운)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11길 73 (신부 파스카 5차아파트)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11길 75 (토리빌)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11길 77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11길 81 (비젼하우스)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11길 87 (슈펜하우스)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11길 97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11길 127 (문하우스)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11길 129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11길 137-7 B동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11길 137-8 B동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11길 137 A동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11길 139 A동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11길 147 (강림스위트빌아파트)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11길 151 6동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11길 153 10동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11길 157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11길 159 B동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11길 161 A동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11길 173 (문화연립)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11길 181 (동보프리미아)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11길 198 (망원유수지)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1길 24 (솔루체)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1길 30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1길 34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1길 41-6 가,나동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1길 41-14 (예지안 파크뷰)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1길 43 (선궁연립)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1길 46-8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1길 46 (그린월드)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1길 48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1길 52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3길 5 A동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3길 9 B동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3길 25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3길 26 A,B동(바우하우스)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3길 27 (엠에스피빌딩)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3길 29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3길 31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3길 33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3길 39-4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3길 39-6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3길 40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3길 41-4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3길 41-7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3길 41-8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3길 41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3길 42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3길 43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3길 46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3길 47 (화신센터빌)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3길 48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3길 51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3길 52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5길 4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5길 6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5길 8 (천우아파트)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5길 18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5길 27 (sunhouse)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5길 28 (망원초등학교)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5길 28 (서울망원초등학교)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5길 29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5길 38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5길 39-1 (광남캐스빌아파트)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5길 39 (광남캐스빌아파트)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5길 41-1 (광남캐스빌아파트)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5길 41 (광남캐스빌아파트)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5길 42 (서울특별시 청년교류공간)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5길 46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5길 48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5길 49 101동(탑건 진선미)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5길 52-1 나동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5길 52 가동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6길 4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6길 5-1 다동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6길 5-2 나동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6길 5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6길 7 가동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6길 8-4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6길 8-5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6길 8-7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6길 8-8 A동(이레쉐르빌)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6길 8-9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6길 8-10 B동(이레쉐르빌)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6길 8-11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6길 8-12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6길 8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6길 10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6길 14-4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6길 14-6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6길 14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7길 5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7길 6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7길 8 (반석빌딩)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7길 11 (망원2동주민센터)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7길 14 (벧엘교회)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7길 17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7길 18 (미래하임)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7길 23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7길 25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7길 26 (휴먼빌리지)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7길 28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7길 29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7길 32 (몬드리안 아파트)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7길 33 (효성빌딩)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7길 37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7길 38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7길 41-4 (망원주택)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7길 41-6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7길 41-8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7길 41-9 (한솔빌리지)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7길 41-10 (한아름아트빌)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7길 41 (상가주택)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7길 42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7길 45 (디오네빌딩)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7길 46-4 A동(삼우렉스빌)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7길 46-5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7길 46-6 B동(삼우렉스빌)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7길 46-8 (신부 파스카빌)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7길 46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7길 47 (라비앙로즈)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7길 48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7길 49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길 5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길 8-1 나동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길 8-3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길 8-5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길 8 가동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길 9 (JOON HOUSING)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길 11-4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길 11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길 12-5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길 12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길 13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길 14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길 15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길 17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길 23 나동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길 24 (보령빌딩)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길 25 가동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길 28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길 29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길 31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길 32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길 34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길 37-4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길 37-6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길 37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길 41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1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6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7 (삼화아파트)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8-2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8-4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8-6 (VILLE4699)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8-8 (소망빌라)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8-10 (세영주택)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8-14 (임진주택)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8-16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8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11 (삼화아파트)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12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14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15-1 (월드컵빌리지)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15 (대명시티빌)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17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18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20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29 (삼성빌라)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32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33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34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35 (현대아트빌)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38-5 (수정센터빌)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38-7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38 (세광아파트)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40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42-5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42-10 (동양하우징)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42-11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42-14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42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46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51 (동원그린빌)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57 101동(동원데쟈뷰아파트)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64 101동(한강월드컵아파트)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68-3 (성우리치빌)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68-8 (동양하우징)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68-9 (미래하이츠)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68-11 (라운지)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68-13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68 (바스크)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71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72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76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77 101,102동(꽃밭선호빌)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80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81 1,2동(목련센터빌)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82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86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87-4 4동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87-6 7동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87 가,나동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89 1동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91-3 5동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91-4 6동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91-5 8동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91-6 9동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91 2동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92-4 1동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92-8 2동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92-10 3동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92-11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92-12 4동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92-13 8동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92-15 9동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92-16 5동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92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93 3동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97-3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97-4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97-5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97-6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97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98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101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103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9안길 104 (라비앙로즈)
마포구	망원동	성산로 2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 67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 69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 73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 75 (비투어타이어빌딩)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 77 (망원역)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 79 (유용빌딩)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 81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 83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 85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 87 (마포로얄프라자)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 89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 91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 93 (에스케이빌딩)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 95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 97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 99-1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 99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 101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 103-1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 103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 105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 111 (망원우체국)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 113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 117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 119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 123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 125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 131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 133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 135 (선인빌딩)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 137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 139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 143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 145 (한익-2)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 147 (한익빌딩)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 149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 151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 155 (가은빌딩)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 157-4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 157-6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 157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 159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 161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 163-3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 163-5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 163-8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 163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 165-4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 165-5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 165-6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 165 (풍전빌딩)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 167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1길 8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1길 18-4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1길 18-6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1길 18-8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1길 18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1길 20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1길 22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1길 24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1길 27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1길 28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1길 30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1길 32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1길 34-3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1길 34 (아테나)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1길 35 101동(함성월드빌2차아파트)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1길 36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1길 37 (삼우월드 아파트)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1길 40-3 (하이벨로씨티)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1길 40-4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1길 40-5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1길 40-6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1길 40-7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1길 40-8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1길 40-11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1길 40-12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1길 40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1길 41-6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1길 41-7 (한아름빌라)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1길 41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1길 43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1길 44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1길 46-4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1길 46-6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1길 46-10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1길 46-12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1길 46-14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1길 46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1길 47-5 (대명엘레강스4)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1길 47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1길 50 (삼우하이뷰 아파트)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1길 51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1길 55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1길 56 (드림 하이츠빌)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1길 57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1길 58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1길 61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1길 65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1길 67-4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1길 67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1길 68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1길 71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1길 73-3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1길 73-6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1길 73-7 (이루빌)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1길 73-8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1길 73-10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1길 73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1길 74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1길 76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1길 77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1길 79-4 (명진렉스빌)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1길 79-5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1길 79-7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1길 79-8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1길 79-9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1길 79-10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1길 79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1길 80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1길 82 (동호쉐르빌)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1길 83-6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1길 83-8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1길 83-9 (월드빌라)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1길 83 (현대힐 타운)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1길 86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1길 87 (동원힐하우스)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7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8 (망원빌딩)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9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12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13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14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17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18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19-4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19-7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19-8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19-11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19-13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19-14 (아가도스2)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19-16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19-17 (하나빌)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19-18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19-19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19-22 (명품 빌)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19-23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19-24 (이레빌라텔)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19-26 (채움하이빌)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19-29 (이레아트빌)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19-36 101~104동(대명이튼캐슬)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19-36 106,107동(대명이튼캐슬)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19-42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19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20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22-3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22-5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22-6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22-7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22-8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22-9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22-10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22-11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22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23-6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23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27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28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29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31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34 (두드림빌딩)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37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40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42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43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45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46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47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49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50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55-5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55-9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55-15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55-20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55-24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55-26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55-28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55-30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55-32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55-34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55-36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55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56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57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60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61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62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63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64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69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70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71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72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73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78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79 (해오름 주상복합)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80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83-3 (해오름빌라)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83-5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83 (동명빌딩)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84-1 A동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84-2 C동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3길 84 B동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5길 4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5길 8 (대명타워빌딩)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5길 14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5길 16-1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5길 16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5길 17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5길 19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5길 20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5길 22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5길 23 (호호빌딩)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5길 24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5길 27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5길 37-5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5길 37-6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5길 37-7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5길 37-8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5길 37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5길 40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5길 41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5길 42 B동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5길 43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5길 44 (리치타운)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5길 45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5길 47-5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5길 47-6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5길 47-7 (노블캐슬)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5길 47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5길 48 (삼화에이스2)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5길 50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5길 53 (공원화장실)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5길 54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5길 56 (노블캐슬)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5길 59 (피노키오어린이집)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5길 61 (두영이지안빌)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5길 63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5길 67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5길 76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5길 77 A,B동(나동)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5길 78-5 (진흥하임빌)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5길 78-6 (노블캐슬)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5길 78-8 (동광탑스빌)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5길 78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5길 79 C,D동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5길 80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5길 84-4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7길 6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7길 7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7길 8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7길 9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7길 14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7길 16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7길 17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7길 18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7길 19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7길 21-1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7길 21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7길 22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7길 23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7길 24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7길 25-4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7길 25-5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7길 25-7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7길 25-8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7길 25-10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7길 25-11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7길 25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7길 27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7길 28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7길 30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7길 31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7길 32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7길 33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7길 35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7길 36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7길 37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7길 38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7길 39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7길 40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7길 42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7길 45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7길 47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7길 48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7길 49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7길 50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7길 51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7길 52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7길 53 (이레쉐르빌)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7길 54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7길 56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7길 57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7길 59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7길 60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7길 61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7길 62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7길 63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7길 64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7길 66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7길 67 (해오름아파트)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7길 68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7길 70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7길 74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7길 78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7길 80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7길 82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7길 84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9길 8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9길 12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9길 14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9길 15 (망원경)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9길 16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9길 17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9길 18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9길 19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9길 20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9길 21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9길 23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9길 24 (현플룻교습소)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9길 25-1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9길 25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9길 26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9길 27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9길 28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9길 29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9길 30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9길 31-1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9길 31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9길 32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9길 33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9길 34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9길 35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9길 36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9길 37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9길 39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9길 40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9길 41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9길 42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9길 43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9길 44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9길 51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9길 52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9길 54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9길 55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9길 56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9길 57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9길 59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9길 60 (다세대주택)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9길 61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9길 62 (프라임빌라)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9길 64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9길 65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9길 66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9길 67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9길 69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9길 70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9길 71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9길 72 (세안세르빌)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9길 73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9길 74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9길 75 (석우빌라 8차)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9길 78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9길 79 (석우빌라7차)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9길 80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9길 81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9길 83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9길 85-1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9길 85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9길 86 (하우스테이)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9길 87 (자명타운)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9길 90 (디자인팜)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9길 91 (동우쉐르빌)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9길 93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9길 94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19길 95 (망원499)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1길 2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1길 5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1길 6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1길 14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1길 16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1길 18 (가동)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1길 20 (나동)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1길 22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1길 24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1길 26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1길 28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1길 32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1길 34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1길 38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1길 39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1길 40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1길 41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1길 42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1길 43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1길 44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1길 45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1길 47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1길 50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1길 55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1길 57-1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1길 57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1길 61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1길 65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1길 66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1길 68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1길 71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1길 76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1길 82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1길 84 (신흥아너스빌)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3길 3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3길 4 (두성빌딩)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3길 5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3길 8 (DPJL)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3길 12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3길 14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3길 15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3길 17 (두손베스티움)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3길 18-2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3길 18-3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3길 18-4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3길 18-5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3길 18-6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3길 18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3길 19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3길 20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3길 21 (올빼미의 집)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3길 25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3길 29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3길 30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3길 31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3길 32-1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3길 32-2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3길 32-3 (망원다세대주택)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3길 32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3길 33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3길 34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3길 37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3길 38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3길 39 (엘림빌)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3길 41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3길 45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3길 46 A동(뉴서울아파트)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3길 47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3길 48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3길 49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3길 51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3길 52-1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3길 52-2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3길 52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3길 53 (중앙빌라)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3길 54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3길 55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3길 56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3길 63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3길 65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3길 69 (은강교회)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3길 70 (미레빌라트)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3길 73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3길 74 (세명빌라)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3길 75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3길 76 (진흥푸르지오)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3길 77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3길 78 (한아름빌라)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3길 79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3길 81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3길 82-3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3길 82-4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3길 82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3길 83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3길 84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3길 85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3길 87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3길 88-4 (금강쉐르빌)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3길 88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3길 91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3길 92-3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3길 92-5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3길 92-6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3길 92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3길 93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3길 96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4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5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7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8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13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17 (리츠아파트)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25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26 (마포영화블렌하임)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31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33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35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43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45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46 (남일빌딩)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47-7 (조은집)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47-8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47 (한흥빌딩)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48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51 (영훈빌딩)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52 (동신빌딩)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53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54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55 (망원새마을금고)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58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67-1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67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68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69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70-4 (블루빈)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70-5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70-6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70-7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70-9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70-10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70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71-1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71-2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71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74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75 (청화아파트)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78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79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81-1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81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83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85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86 (동교초등학교)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89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91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95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98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99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100 (라벨르빌)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101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104-6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104-7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104-8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104-10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104-12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104-14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104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105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106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107 (첼시하우스)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116-7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116-9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116-11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117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118 (그레이스빌)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122 (대성2차아파트)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125 (성원아파트)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128 (대성재건축아파트)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131 (라라빌딩)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133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134 (나성리치빌)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139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143 1동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145 2동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147 3동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149 4동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151 5동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155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157 C동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164 (망원청소년독서실)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169 (상진지업(주))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173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183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187 (리버팰리스2)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189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190 (민 체육센터)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191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195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201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5길 202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5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6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7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8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11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14 (스카이캐슬아파트)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15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17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18 (양지빌라)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20-1 (함성주택)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20 (함성주택2차)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21 101~103동(무궁화센터빌)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22 (망원빌라)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25 (삼화빌딩)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26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27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31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32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36-5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36-6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36-7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36-8 (예산빌라)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36-10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36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37-6 (대명하이츠)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37-7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37-10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37-11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37-12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37-14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37-15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37-18 (동서하이츠)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37 (성현교회)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38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41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42-5 (주택)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42-6 (새롬빌라)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42-7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42-8 (파인하우스)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42-9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42-10 (스카이 빌)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42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45-5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45-6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45-9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45-10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45-11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45-12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45-13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45-14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45-17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45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46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48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49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50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51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57-4 나동(효성빌라)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57-10 (들국화맨션)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57-12 (대림빌라)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57-14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57-18 (양림펠리스)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57 (한성빌딩)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58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60-4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60-6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60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61 가동(효성빌라)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64 (JY팰리스)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65-1 D동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65 A동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67-1 C동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67 B동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68 (미원2차아파트)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76 상가동(미원2차아파트)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84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87-5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87-6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87-9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87-10 (동광빌)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87-11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87-12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87-13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87-14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87-15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87-17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87-18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87-20 (삼원그린맨숀)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87-21 (백송)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87 (대한빌리지)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90-3 A동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90-5 B동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90-6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90-7 (청우하인즈빌)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90-8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90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91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93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96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97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98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104 A동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106 B동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110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113 101동(백합아파트)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114-6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114-8 (동광빌)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114-10 (탑그린빌)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114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116-5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116-6 (뫼비우스)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116-7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116-9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116 (진주빌라)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120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122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29길 123 (이레쉐르빌)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31길 3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31길 5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31길 6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31길 7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31길 11 (c 상가주택)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31길 13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31길 17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31길 18 (망원2치안센터)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31길 20-5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31길 20-6 (골드스톤하우스)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31길 20-7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31길 20-8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31길 20-10 (진성아트빌)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31길 20-12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31길 20-13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31길 20-14 (진흥하임빌)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31길 20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31길 21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31길 22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31길 29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31길 33 (광남캐스빌)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31길 37-5 (삼성아트빌)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31길 37-6 (삼성아트빌)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31길 37 (삼성아트빌)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31길 38-4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31길 38-5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31길 38-6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31길 38-8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31길 38-10 (꼬망스)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31길 38-11 (센터빌)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31길 38-12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31길 38-13 (늘품빌라)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31길 38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31길 39 (삼성아트빌)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31길 42 (국영빌딩)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31길 43 1~3동(성진센터빌)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31길 44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31길 56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31길 58-5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31길 58-7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31길 58-9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31길 58-11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31길 58-12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31길 58-13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31길 58 (R 해피하우스)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31길 62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31길 63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31길 67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31길 69 (망원2동노인정)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31길 77 101동(우림아파트)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31길 78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31길 83-5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31길 83-7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31길 83-8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31길 83 (윤이주택)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31길 85 (명남아띠)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31길 88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31길 89 101동(함성 드림빌 아파트)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31길 90 C동(바우하우스)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31길 92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31길 93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31길 102 (정윤빌라)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31길 103 아파트(대상3차)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31길 104 (한이그리고율)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31길 106 1,1동(로얄센터빌)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31길 107 상가동(대상3차아파트)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31길 113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31길 115 (로커스빌)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31길 116 (솔루체2차아파트)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31길 117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31길 120 A동(노블케슬)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로31길 122 B동(노블캐슬)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63 (형섭빌딩)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65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66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67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68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69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70-1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70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71-3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71-4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71-5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71-6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71-7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71-8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71-9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71-10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71-12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71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72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73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74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75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78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79-3 (서부농협망원지점)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79 (서부농협망원지점)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80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81-1 (S-빌딩)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82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83-1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83 (오체어스빌딩)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84-1 (진흥빌)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84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85-1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85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86-1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86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87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88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89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90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91 (대명파크뷰)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92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93-1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93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94 (그레이스빌딩)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95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96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97-1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97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98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99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100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101 50-A동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102 A,B동(노블캐슬)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103 50-B동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105-1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105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106-1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106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107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108-3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108-7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108-9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108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109-1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109 (연진빌딩)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110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111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112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113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117 (메디움 M)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118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119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120 (덕일빌딩)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121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125 (영신주방사옥)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127-6 (망원주택)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127-9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127-10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127-11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127-16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127-20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127-22 (늘푸른빌)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127-24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127-26 (동초빌라)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127-30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127 (망원제일빌딩)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128 (중보빌딩)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129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130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131-1 (세종빌라)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131 (쁘띠보네르)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132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133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134-1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134-5 (태광주택)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134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135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지역본부 용산마포지사)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136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138 (하우스)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139 (서일에버하임빌)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140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142-3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142-4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142-5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142-6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142 (C.M빌딩)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143-1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143 (뉴성신아파트)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144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145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146 (명현빌딩)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147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 147 가~다동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5길 3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5길 4-5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5길 4-6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5길 4-7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5길 4-8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5길 4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5길 6-3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5길 6-5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5길 6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5길 7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5길 9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5길 10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5길 13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5길 14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5길 15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5길 16 2동(가든센터빌)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5길 17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5길 18 1동(가든센터빌)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5길 20 B동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5길 22 A동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5길 26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5길 29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5길 30 (노블캐슬)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5길 33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5길 33 가,나동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5길 34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5길 37-3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5길 37-4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5길 37-5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5길 37-8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5길 37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5길 38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5길 40 (대명피렌체)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5길 41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5길 42 (라온빌)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5길 43-3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5길 43-4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5길 43-5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5길 43-6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5길 43-8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5길 43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5길 45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5길 46 (아가도스1)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5길 47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5길 48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6길 3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6길 4-5 (미산센트빌)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6길 4-7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6길 4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6길 7-2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6길 7-4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6길 7-5 101,102동(무지개센터빌)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6길 7-6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6길 9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6길 10 (망원1동주민센터)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6길 11-3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6길 11-5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6길 11-6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6길 11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6길 13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6길 15-5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6길 15 (화이트 빌)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6길 17 (명품 빌)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6길 25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6길 27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6길 33 (시티아파트)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6길 34 101동(태청아파트)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6길 37-5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6길 37-6 (윤스하우스)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6길 37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6길 39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8길 5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8길 8 (대상4차아파트)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8길 9-5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8길 9-6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8길 9-7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8길 9-8 (이레쉘르빌)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8길 9-9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8길 9-10 (들국화타운)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8길 9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8길 11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8길 14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8길 15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8길 16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8길 17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8길 20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8길 21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8길 22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8길 25-6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8길 25-8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8길 25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8길 28-4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8길 28-5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8길 28-6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8길 28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8길 29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8길 31 A,B동(파크캐슬)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8길 32 (국일빌딩)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8길 34 A,B동(차원스카이빌)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8길 35 (첼시하우스)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8길 36-6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8길 36-8 C동(차원스카이빌)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8길 36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8길 37 (스타 갤러리)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8길 39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8길 40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8길 41
마포구	망원동	포은로8길 42 (삼성씨티빌)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66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68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70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72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74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76 (마포APT)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77 101~106동(마포한강아이파크)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78 A동(삼성캐슬)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80-1 가동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80 나동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82-1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82-3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82-5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82 (휴먼스빌)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84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86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88 (래디앙1차)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90 (롯데장학재단기숙사)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91-1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91-4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91-5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91-6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91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92-3 (그레이컬렉션)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92-4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92-5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92-6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92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93-1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93-6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93-8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93-10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93-12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93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94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95-3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95-5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95-7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95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96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97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98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99-1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99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100-1 (리빙텔)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100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101-1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101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102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103-3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103-5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103-7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103-9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103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104-1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104-2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104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105 (길명아파트)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106-1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106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107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108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109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110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111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112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113-1 (노블즈빌)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113-3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113-4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113-5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113-6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113-7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113-8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113-9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113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114-1 (봉황빌딩)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114 (한빛월드빌)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115-1 (길명아파트)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115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116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117-1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117-3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117-4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117-6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117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118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119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120 (크라운빌아파트)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121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122-1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122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123 나동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124-1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124-2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124 (사철민박)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125-6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125-8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125-10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125-14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125 가동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126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127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128-1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128-2 (동호쉐르빌)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128-3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128-4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128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129-4 (한강리버힐)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129-5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129-7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129-8 (리버팰리스)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129-9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129-10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129-11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129-14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129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130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131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 132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0길 2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0길 3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0길 4 (망리단63)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0길 5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0길 6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0길 8 (미성하우스)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0길 9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0길 12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0길 14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0길 15 상가동(망원1차 대림 아파트)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0길 16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0길 18-1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0길 18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0길 20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0길 22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0길 24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0길 28-3 (대명엘레강스1)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0길 28-4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0길 28-6 (올림푸스빌)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0길 28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0길 29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0길 30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0길 31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0길 32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0길 33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0길 35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0안길 3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0안길 5-1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0안길 5-2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0안길 5-3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0안길 5-4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0안길 5-6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0안길 5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0안길 6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0안길 7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0안길 8-1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0안길 8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0안길 9-1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0안길 9-2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0안길 9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0안길 10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0안길 11-1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0안길 11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0안길 13-1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0안길 13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0안길 14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0안길 15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0안길 16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0안길 17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0안길 18-1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0안길 18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0안길 19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0안길 20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0안길 21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2길 3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2길 4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2길 5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2길 8 (한강그린빌)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2길 11 (샬롬하우스)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2길 15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2길 16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2길 17 (창진)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2길 18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2길 22 (롯데빌라)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2길 23 (동광팰리스)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2길 24-1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2길 24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2길 25 (성은베스트빌)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2길 29 (동삼빌라)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2길 33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2길 37 (제일빌라)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2길 39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2길 40-6 (삼성캐슬)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2길 40-7 (인욱빌)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2길 40-8 (샤인빌)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2길 40-10 (한강르네상스1차)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3길 6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3길 8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3길 10-3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3길 10-4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3길 10-6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3길 10-8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3길 10-10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3길 10-13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3길 10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3길 12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3길 16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3길 24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3길 29 (삼성캐슬)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5길 1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5길 3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5길 5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5길 6-3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5길 6-4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5길 6-6 A~C동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5길 6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5길 8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5길 9-3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5길 9-5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5길 9-7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5길 9-8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5길 9-9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5길 9-10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5길 9 (유진빌라)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5길 10-5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5길 10-6 (세명파크빌)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5길 10-7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5길 10-8 A~C동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5길 10-9 (망원 하우드)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5길 10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5길 13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5길 14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5길 15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5길 16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5길 17 (한가람빌)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5길 24 (아뜰리에)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5길 25-3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5길 25-5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5길 25-7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5길 25-9 (서림경로당)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5길 25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4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6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7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16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17-5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17-6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17-7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17-8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17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19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20-6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20-8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20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21-5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21-7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21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23-5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23-6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23-7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23-8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23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24 (다세대주택)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25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27-5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27-6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27-7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27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28-5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28-9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28-13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28-17 (동강하이텔)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28-18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30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31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32 (조광빌딩)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38 (영 하우징)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39-3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39-6 (나동)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39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41 가동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42-5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42-6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42-7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42-10 (우리빌라)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42-11 (이레쉐르빌)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42-13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42-14 (명진빌라)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42-15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42-16 (현대그린빌)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42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43-3 (다온스위트)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43-4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43-5 (하늘드리움)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43-6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43 (대명풀하우스4)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44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46-5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46-6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46-10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46-11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46-13 (다세대)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46-14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46-15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46-16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46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47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50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51-5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51-6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51-8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51-9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51-11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51 (보타닉 타운)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53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54-5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54-7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54-8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54-10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54-11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54-12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6길 54 (세림빌딩)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7길 4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7길 6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7길 8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7길 9 101동(태경크레앙스)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7길 10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7길 11 102동(태경크레앙스)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7길 12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7길 13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7길 14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7길 23 가동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17길 25 나동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3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4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6-1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6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7 (글로리캐슬)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13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15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16 (한독연립)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17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20-1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20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21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22-5 (이레쉐르빌)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22-6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22-7 (동원파크빌)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22-8 (동호쉐르빌)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22-9 (아름드리빌)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22-12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22-13 (강변타운)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22 (동서하이츠빌라)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23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25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26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33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35 (래미안빌)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36-3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36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37 (상아빌라)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38-3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38-4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38-5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38-6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38-7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38-8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38-11 (동림파크빌)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38-14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38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41-3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41-4 (A&A 빌리지 1차)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41-5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41-6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41-8 (대명엘레강스3)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41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42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43 (A&A 빌리지2차)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44-3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44-4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44-5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44-6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44-7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44-8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44-12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44-13 (진성파크빌)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44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46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47-1 12동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47 11동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49 10동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50-3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50-4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50-5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50-6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50-7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50-8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50-11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50-12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50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52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53 9동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54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61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62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63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64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65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66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69 (예건빌라)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70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71-5 (금강하이츠)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71-6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71-7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71 (와와모빌딩)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72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74-1 2-A동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74 2-B동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75-6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75-7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75-8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75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76-1 49-A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76 49-B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0길 77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1길 5 (RIVER VIEW 아파트)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1길 9 (URBAN_SHARE HOUSE)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1길 12-3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1길 12-4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1길 12-5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1길 12-6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1길 12-8 (길명허브빌라트)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1길 12-9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1길 12-13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1길 12-14 (길명2차허브빌라트)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1길 12-16 (이레쉐르빌)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1길 12-17 (이지빌)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1길 12-18 (한강리버힐)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1길 12-19 (이레쉐르빌)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1길 12-21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1길 12-22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1길 13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1길 21
마포구	망원동	희우정로21길 22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 162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 168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 170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 172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 174-1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 174-2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 174-3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 174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 176-1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 176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 178-1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 178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 180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 182-4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 182 (대응빌딩)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 184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 191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 192 (거북당약국)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 193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 194-4 (한양빌라)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 194 (체르니피아노)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 195-1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 195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 196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 197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 198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 199-1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 199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 200-1 B동(해피하우스)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 200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 202-1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 202-2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 202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 204-1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 204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 206-2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 206-3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 206-4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 206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 207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 208-1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 208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 209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 210-5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 210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 211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 212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 213-1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 213-2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 213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 214-3 (J클레식)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 214-4 B동(경성하이빌)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 214-7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 214-8 A동(경성하이빌)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 214 (라은빌딩)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 215-1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 215-4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 215-5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 215-8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 215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 216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 217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 218-4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 218-5 (거성리젠시)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 218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 219 (유정약국)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 221 (한양빌라)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 222-1 (진영주택)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 222-3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 222-5 (정희빌)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 222-9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 222-11 (다베로)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 223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 224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16길 4-3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16길 4-5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16길 5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16길 6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16길 8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18가길 5-3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18가길 5-5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18가길 6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18가길 7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18가길 8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18가길 12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18가길 16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18가길 18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18가길 22 2동(청솔하이츠아파트)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18가길 24 1동(청솔하이츠아파트)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18길 6-3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18길 6-5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18길 6-7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18길 6-9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18길 6-11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18길 6-12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18길 6-13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18길 6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18길 8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18길 12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18길 14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18길 16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19길 3-4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19길 3-6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19길 5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19길 6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19길 7-2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19길 7-3 (이레그린빌)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19길 7-4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19길 7-6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19길 7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19길 10 (대림아트빌)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19길 11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19길 13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19길 15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19길 19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19길 20 (서울북가좌초등학교)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19길 21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19길 23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19길 27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0길 3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0길 4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0길 5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0길 6 (이지라이프빌)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0길 9-1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0길 9-3 D동(해피하우스)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0길 9-4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0길 9-5 A동(해피하우스)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0길 9-6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0길 9-8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0길 9-9 E동(해피하우스)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0길 9-11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0길 9-12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0길 9-13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0길 9-16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0길 9-17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0길 9-19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0길 9-20 (행복아트빌)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0길 9-21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0길 9-24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0길 9-26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0길 9-27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0길 9-31 (한양아트빌)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0길 9-33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0길 10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0길 11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0길 12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0길 14-1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0길 14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0길 15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0길 16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0길 17-1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0길 17-2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0길 17-3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0길 17-4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0길 17-5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0길 17-6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0길 17-7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0길 17-8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0길 17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0길 18-2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0길 23-5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0길 23-9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0길 23-11 (신정빌라)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0길 23-13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0길 23-21 (수현아트빌)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0길 23-29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0길 23-33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0길 23-41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3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4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5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8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9 (드림빌)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10-4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10-5 가동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10-7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10-8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10-9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10-10 (한양빌라)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10-13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10-15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10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13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14 나동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15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17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18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19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21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22-4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22-6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22-7 (수정아트빌)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22-10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22-12 (동현아트빌)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22-13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22-14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22-15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22-17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22-19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22-23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23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25 가동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26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27 나동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29 다동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30 A동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31 라동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32-4 B동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32-5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32-6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32-8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32-13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32-17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32-21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32-23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32-33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32-35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32-37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32-41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32-43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32-49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33 마동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34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36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37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38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39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41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42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43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45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46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47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48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52-1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52-2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52-4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52-6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53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55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56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57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58 A동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60 B동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64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65 (㈜신영와코루가좌공장)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66 A동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69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72 B동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75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76 C동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1길 77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2길 3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2길 5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2길 6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2길 9-3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2길 9-5 (엘렌시아캐슬)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2길 9-6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2길 9-14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2길 9-15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2길 9-16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2길 9-17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2길 9-20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2길 9-24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2길 9-26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2길 9-28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2길 9-32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2길 13 (블리스빌)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2길 14 (넥스트빌)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2길 15 (대고샤인빌)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2길 16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2길 21-1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2길 21-5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2길 21-7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2길 29-19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2길 29-21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2길 29-23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2길 29-37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2길 29-39 A,B동(수성렉스빌)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2길 29-43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3길 2 (신진빌딩)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3길 3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3길 6-6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3길 7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3길 8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3길 10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3길 11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3길 13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3길 14 (가좌동성결교회)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3길 15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3길 17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3길 20-4 A~C동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3길 20-5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3길 21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3길 22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3길 24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3길 25 (현대빌라트)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3길 26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3길 27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3길 30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3길 32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3길 33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3길 34-10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3길 34-12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3길 34-14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3길 34-16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3길 34-18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3길 34-20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3길 34-22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3길 34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3길 35 (한양아트빌)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3길 38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3길 39 A동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3길 42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3길 43 B동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3길 46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3길 47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3길 48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3길 50-5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3길 50-10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3길 50-14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3길 52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3길 56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3길 58-3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3길 58-4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3길 58-7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3길 58-8 (신정빌라)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3길 58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3길 62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3길 64-3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3길 64-6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3길 66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3길 70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3길 74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3길 76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4길 1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4길 2 (여울목)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4길 4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4길 5 (영주아트빌)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4길 7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4길 8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4길 9 (경성하이빌)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4길 11 (일원빌리지)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4길 12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4길 15-4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4길 15-6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4길 15 (유한아트빌라)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4길 16 A동(한양아트빌)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4길 17 (에코빌)
마포구	북가좌동	거북골로24길 18 B동(한양아트빌)
마포구	북가좌동	불광천길 14
마포구	북가좌동	불광천길 16
마포구	북가좌동	불광천길 24 (신안 월드)
마포구	북가좌동	불광천길 28
마포구	북가좌동	불광천길 36
마포구	북가좌동	불광천길 42
마포구	북가좌동	불광천길 46
마포구	북가좌동	불광천길 48
마포구	북가좌동	불광천길 52
마포구	북가좌동	불광천길 54
마포구	북가좌동	불광천길 56
마포구	북가좌동	불광천길 58 (충전자동차공업사)
마포구	북가좌동	불광천길 60
마포구	북가좌동	불광천길 62
마포구	북가좌동	불광천길 64
마포구	북가좌동	불광천길 66
마포구	북가좌동	불광천길 68
마포구	북가좌동	불광천길 76
마포구	북가좌동	불광천길 82
마포구	북가좌동	불광천길 86
마포구	북가좌동	불광천길 96
마포구	북가좌동	불광천길 100
마포구	북가좌동	불광천길 102 B동(골든하이츠빌라)
마포구	북가좌동	불광천길 106 A동(골든하이츠빌라)
마포구	북가좌동	불광천길 110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 56 (성공타워1)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 100-35 (가재울고등학교)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 100-55 (북가좌1동주민센터)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 100-75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 100-75 (가재울중학교)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 100-95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 100-98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 100 101~115동(DMC 래미안 e편한세상)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 100 201~217동(DMC 래미안 e편한세상)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 100 301~311동(DMC 래미안 e편한세상)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 100 401~407동(DMC 래미안 e편한세상)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 100 501동(DMC 래미안 e편한세상)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 102 (DMC요진아파트)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 111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 115 (우성빌딩)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 123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 127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 131 (월드컵빌딩)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 132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 133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 134-5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 134-6 가동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 134-7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 134-10 나동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 134-11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 134-12 다동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 134-13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 134-16 라동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 134-17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 134-18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 134-19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 134-20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 134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 136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 138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 139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 143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 144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 145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 147-1 101,102동(북가좌신일해피트리아파트)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 147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 149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 151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 153-1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 153-3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 153-5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 153-10 (신도통운)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 153 A,B동(미다스)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 154 101,102동(월드컵 현대아파트)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 155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 157 101,102동(이랜드해가든)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10길 6-2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10길 6-4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10길 6-8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10길 6-9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10길 6-10 (영광빌라)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10길 6-11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10길 6-12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10길 6-16 (광명빌라)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10길 6-18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10길 8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10길 10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10길 11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10길 12-1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10길 12-4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10길 12-5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10길 12-9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10길 12-11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10길 12-12 B동(정방아트빌)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10길 12-13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10길 12-14 A동(정방아트빌)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10길 13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10길 17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10길 18-4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10길 18-5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10길 18-6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10길 18-7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10길 18-8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10길 18-9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10길 18-10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10길 18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10길 20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10길 21 (백운빌딩)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10길 24-4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10길 24-5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10길 24-6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10길 24-7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10길 24 (용재약국)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10길 26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10길 27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10길 30-3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10길 30-4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10길 30-5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10길 30-6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10길 30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10길 32-3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10길 32-5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10길 32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10길 34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10길 38-4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10길 38-6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10길 38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10길 40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10길 54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6길 17-6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6길 17-14 A,B동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6길 17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가길 4-3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가길 4-5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가길 4-7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가길 5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가길 6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가길 8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가길 9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가길 11 (한양빌라)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가길 12 (동산빌라)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가길 14 (한양아트빌)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가길 15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가길 16 (그린텔빌라)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가길 17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가길 20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가길 21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가길 22-3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가길 22-6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가길 22-7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가길 22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가길 23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가길 24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가길 27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가길 28-4 (대중빌라)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가길 28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가길 29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가길 30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가길 31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가길 33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가길 34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가길 35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가길 37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2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5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6-4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8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9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10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11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13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14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16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17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19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20-3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20-5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20-6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20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22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23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24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25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26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27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28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31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32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33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34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37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38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39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40 (우공팰리스)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41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46 (구립가좌제일어린이집)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47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48-3 1동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48-4 (가좌제일교회)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49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50 2동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51-3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51-4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52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53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54-3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54-4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54-5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54-6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54-7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54-8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54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55-4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55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57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59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60-2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60-3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60-4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60-5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60-6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60-7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60-8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61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62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64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65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66-3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66-4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66-5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66-6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66-7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66-8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67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68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69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70-5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70-7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70-8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72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73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75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76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77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78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79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길 80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나길 1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나길 4 (프라임빌)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나길 6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나길 9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나길 10 (위산인텔리안)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나길 11-3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나길 11-4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나길 11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나길 13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나길 14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나길 15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나길 17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나길 18-2 (명진빌라)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나길 18-3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나길 18-4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나길 18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나길 19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나길 21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나길 22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나길 24-3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나길 24-6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나길 24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나길 27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나길 28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나길 30-3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나길 30-4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나길 32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나길 34
마포구	북가좌동	수색로8나길 36
마포구	북가좌동	응암로 9-6
마포구	북가좌동	응암로 11
마포구	북가좌동	응암로 15-4
마포구	북가좌동	응암로 15-5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북가좌동	응암로 15-6
마포구	북가좌동	응암로 15-9
마포구	북가좌동	응암로 15-10
마포구	북가좌동	응암로 16
마포구	북가좌동	응암로 17-3
마포구	북가좌동	응암로 17-6
마포구	북가좌동	응암로 17-7
마포구	북가좌동	응암로 17-9
마포구	북가좌동	응암로 17-16
마포구	북가좌동	응암로 17-22
마포구	북가좌동	응암로 17-24
마포구	북가좌동	응암로 17-30
마포구	북가좌동	응암로 17-34
마포구	북가좌동	응암로 17 (성도빌딩)
마포구	북가좌동	응암로 19
마포구	북가좌동	응암로 21
마포구	북가좌동	응암로 23
마포구	북가좌동	응암로 25
마포구	북가좌동	응암로 28 1~6동(DMC한양)
마포구	북가좌동	응암로 32 상가(DMC한양)
마포구	북가좌동	응암로 33 (DMC현대아파트)
마포구	북가좌동	응암로 35 (선결아파트)
마포구	북가좌동	응암로 36
마포구	북가좌동	응암로 37 (선결아트빌)
마포구	북가좌동	응암로 39-3
마포구	북가좌동	응암로 39-4
마포구	북가좌동	응암로 39-5
마포구	북가좌동	응암로 39-6
마포구	북가좌동	응암로 39-7
마포구	북가좌동	응암로 39
마포구	북가좌동	응암로 41-4
마포구	북가좌동	응암로 41-6
마포구	북가좌동	응암로 41
마포구	북가좌동	응암로 42 (한울뉴타운아파트)
마포구	북가좌동	응암로 43-3
마포구	북가좌동	응암로 43-5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북가좌동	응암로 43 (두정빌딩)
마포구	북가좌동	응암로 45-1 (가원빌딩)
마포구	북가좌동	응암로 45-3
마포구	북가좌동	응암로 45-6
마포구	북가좌동	응암로 45-7
마포구	북가좌동	응암로 45-8
마포구	북가좌동	응암로 45
마포구	북가좌동	응암로 47 (청양빌딩)
마포구	북가좌동	응암로 53
마포구	북가좌동	응암로 54 (서부프라자)
마포구	북가좌동	응암로 55 (미주앤미여성의원)
마포구	북가좌동	응암로 57 (만솔빌딩)
마포구	북가좌동	응암로 58
마포구	북가좌동	응암로 59
마포구	상암동	마포나루길 296
마포구	상암동	마포나루길 316
마포구	상암동	마포나루길 332 (C& 한강랜드)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 18 (마포창업복지관)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 24-1 (나사렛유치원)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 24 (나사렛성결교회)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 31 (S-PLEXCENTER)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 37 (DMC 산학협력연구센터)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 45 (KBS미디어센타)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 72 (상상큐브)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 75 (디디엠씨(DDMC))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 76 (상암파출소)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 80 (PARK M)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길 1-1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길 1-3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길 1 (샤마임하우스)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길 3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길 7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길 9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길 15 (효인빌딩)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길 16 (주민센터)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길 19-5 (진성빌)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길 19-6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길 19-7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길 19-9 (오성빌딩)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길 19-10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길 19-12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길 19 (도경빌딩)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길 21 (WOO YUONG)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길 23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길 25-5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길 25-6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길 25-8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길 25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길 26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길 27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길 29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길 32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길 33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길 34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길 35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길 37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길 38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길 45 (해나리빌딩)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길 51-2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길 51-3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길 55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길 56 가동(상암마이빌)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길 57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길 58 (상암마이빌(나동))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길 61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길 63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길 64-1 (리안하우스)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길 64 (리솜하우스)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길 67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길 68 (리움하우스)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길 69 (보우빌딩)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길 73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길 75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길 77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길 78 가동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길 81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안길 3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안길 7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안길 8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안길 10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안길 12-5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안길 12-6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안길 12-7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안길 12-9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안길 12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안길 15-1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안길 15-2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안길 15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안길 17-1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안길 17-2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안길 17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안길 18-3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안길 18-5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안길 18-6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안길 18-10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안길 18-11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안길 18 (다대빌라)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안길 19-5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안길 19-6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안길 19-7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안길 19-8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안길 19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안길 20 (칸타빌레)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안길 21
마포구	상암동	매봉산로2안길 22
마포구	상암동	상암산로 34 (디지털큐브)
마포구	상암동	상암산로 38 (JTBC빌딩)
마포구	상암동	상암산로 48-6 (중앙일보빌딩)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상암동	상암산로 66 (CJ ENM CENTER)
마포구	상암동	상암산로 76 (YTN 뉴스퀘어)
마포구	상암동	상암산로 82
마포구	상암동	상암산로1길 15 (목양교회)
마포구	상암동	상암산로1길 23-12
마포구	상암동	상암산로1길 24 401,402동(상암 월드컵파크 4단지)
마포구	상암동	상암산로1길 24 404~412동(상암 월드컵파크 4단지)
마포구	상암동	상암산로1길 57 601동(상암월드컵파크 6단지)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 165 (수색승무관리소)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 179 (한샘상암)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 184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 189 (중소기업 DMC 타워)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 195-16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 196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 197 (상암1공영주차장)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 201 (상암월드교회)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 202 (차륜전삭고)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 205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 207 (상암빌라)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 209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 211-1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 211-3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 211-4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 211-5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 211-8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 211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 213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 214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 215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 217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 219-1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 219-2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 219-3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 219-4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 219-5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 219-6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 219-9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 219-10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 219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 223-1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 223-2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 223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 225-1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 227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 229-1 가,나동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 229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 255 미디어센터((주)문화방송)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3길 4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3길 7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3길 8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3길 9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3길 10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3길 12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3길 14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3길 15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3길 16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3길 17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3길 22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3길 25 (태림펜트윈)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3길 26-1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3길 26-2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3길 26-3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3길 26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3길 28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3길 30-1 (윤한빌딩)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3길 30-2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3길 30-3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3길 30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3길 33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3길 36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3길 37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3길 38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3길 40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3길 42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3길 43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3길 44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3길 45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3길 46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3길 47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3길 48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3길 52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3길 54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3길 58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3길 60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3길 64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3길 66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3길 70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5길 4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5길 7-1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5길 7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5길 8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5길 11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5길 12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5길 14 (상암빌딩)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5길 15-1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5길 15-2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5길 15-3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5길 15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5길 16-1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5길 16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5길 19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5길 20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5길 28 (반석빌딩)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5길 29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5길 30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5길 33 (동아쉐르빌)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5길 34 (하이파크)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5길 35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5길 36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5길 37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5길 39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5길 40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5길 42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5길 43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5길 45 (상암빌라)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5길 46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5길 47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5길 49-1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5길 49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5길 50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5길 51-1 (회정)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5길 51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5길 52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5길 53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5길 55-1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5길 55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5길 56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5길 57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5길 58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5길 59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5길 62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5길 63 (DMC 칸타빌)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5길 65-1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5길 65-2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5길 65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5길 66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5길 69-1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5길 69-2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5길 69-3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5길 69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5길 73-1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5길 73-3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5길 73-5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5길 73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5길 74
마포구	상암동	성암로15길 75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로 338 301~309동(상암월드컵파크 3단지)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로 365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로 386 (박정희 대통령 기념도서관)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로42길 12 810,811동(상암월드컵8단지)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293 (법화사)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295 (하이마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299 (상암 공동구관리동)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306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308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320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323 (제일라아트홀)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324-4 (현대자동차공업사)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324-10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324-11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324-13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324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325 (장수하늘소의 전설)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328-5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328-7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328-12 (상암미디어빌딩)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328-13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328-14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328 A,B동(세움테크사옥)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332-8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332-9 (HUMAN(휴먼))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332-10 (수봉빌)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332-12 (안언하우스)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332-13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332-15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332-16 (좋은생각)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332-17 (대진빌딩)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332-19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332 (청운빌딩)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332 (청운주택)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336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338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342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344-1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344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345 (상암경동빌딩)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346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347 (상암메디칼빌딩)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348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350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351-3 (상암주택)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351-5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351 나동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352-4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352-6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352-8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352-10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352-12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352-14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352-16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352-18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352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353 (상암초등학교)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356 (서서울농협 DMC 첨단주차전용건축물)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361 (DMC 이안상암2단지)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366 (DMC 홍보관)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375 (DMC 이안상암1단지)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381 상가동(상암 월드컵파크 4단지)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396 (누리꿈스퀘어)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2가길 6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2가길 11 201~203동(DMC상암센트럴파크2단지)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2가길 18 (단독주택및근린생활)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2가길 24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2가길 28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2나길 3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2나길 4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2나길 6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2나길 7 (대교빌라)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2나길 10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2나길 12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2나길 13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2나길 14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2나길 20 (위너스하임)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2나길 21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2나길 24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2나길 25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2나길 27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2나길 29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2다길 4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2다길 5 (토호빌)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2다길 6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2다길 10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2다길 13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2다길 14 (상암라이크)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2다길 15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2다길 19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2다길 21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2다길 22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2다길 23 B동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2다길 25 (우진빌딩)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2다길 28-5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2다길 28-7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2다길 28-9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2다길 28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2다길 31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2다길 32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2라길 3 (DREAM CASTLE)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2라길 8-4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2라길 8-6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2라길 8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2라길 11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2라길 12-4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2라길 13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2라길 14 (가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2라길 17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2라길 18 (상암빌라)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2라길 19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3길 6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3길 8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3길 10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3길 11 101~105동(DMC상암센트럴파크1단지)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3길 20 (해피하우스)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3길 23 (서진교회 비전하우스)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3길 28-1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3길 28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3길 30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3길 32 (월드컵타운)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3길 37 (서진교회)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3길 38 (예인하우스)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4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5-1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5-2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5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6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10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11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14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16 나동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17 (담아재)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19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20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22 (상암파크빌)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24-1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24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25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26-2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26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29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30-2 (하은)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30-4 (혜원빌딩)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30-5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30-7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30-9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30-11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30-13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30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32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33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35-3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35-5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35-6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35-7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35-8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35-10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35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37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39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40 (마포주민편익시설)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44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45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46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49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50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57-5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57-6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57-7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57-9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57-10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57-11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57-12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57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58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59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60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61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63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64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66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67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68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69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71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72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73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76-3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76-5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76-7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76-9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76-10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76-11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76-12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76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77 (수정빌리지)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78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79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81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4길 82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5길 2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5길 4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5길 5 (하나아트빌)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5길 6-6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5길 6-7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5길 6-8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5길 6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5길 7 (예솔하우스)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5길 9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5길 10 (더 클래식)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5길 13-4 (베로니스)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5길 13-5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5길 13-7 (유진빌)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5길 13-8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5길 13 (샬롬투)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5길 14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5길 15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5길 16 (그린빌라)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7길 8 101~106동(상암월드컵아파트 1단지)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7길 10 상가동(상암월드컵아파트 1단지)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7길 37 101,102동(상암 카이저팰리스 클래식)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7길 42 상가동(상암월드컵파크2단지)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7길 46 201~207동(상암월드컵파크2단지)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8길 3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8길 5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8길 7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8길 8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8길 9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8길 10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8길 11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8길 13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8길 14-8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8길 14-12 (민정빌딩)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8길 14-14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8길 14-18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8길 14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8길 15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8길 19 (상암 빌딩)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8길 23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8길 24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8길 25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8길 26 (용월)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8길 28-4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8길 28-5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8길 28-6 (유진빌리지)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8길 28-8 (진빌리지)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8길 28-11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8길 28-12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8길 28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8길 29-5 (빅스톤빌딩)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8길 29-6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8길 29-7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8길 29-8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8길 29-9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8길 29-10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8길 29-12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8길 30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8길 31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8길 32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8길 33-5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8길 33-6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8길 33-7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8길 33-8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8길 33-9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8길 33-10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8길 33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8길 35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8길 36 (상암주택A)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8길 38 (상암주택)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8길 39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8길 41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8길 45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8길 46 (다온 Ville)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8길 47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8길 49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8길 50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8길 51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8길 53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8길 54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8길 55-1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8길 55-2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8길 55 (바라라)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8길 56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8길 57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50길 3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50길 5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50길 6-1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50길 6-2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50길 6-8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50길 6-10 (월드원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50길 6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50길 7-1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50길 7-3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50길 7-5 (상암경로문화센터)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50길 7-7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50길 7-9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50길 7-10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50길 7-11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50길 7-12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50길 7-13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50길 7-14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50길 7-15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50길 7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50길 9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50길 12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50길 13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50길 14-5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50길 14-6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50길 14-7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50길 14-10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50길 14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50길 15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50길 16
마포구	상암동	증산로 14
마포구	상암동	증산로 32 (안내소)
마포구	상암동	하늘공원로 84 (한국지역난방공사)
마포구	상암동	하늘공원로 86 (마포자원회수시설)
마포구	상암동	하늘공원로 95 (탐방객안내소)
마포구	상암동	한강난지로 162 (한강공원 난지안내센터)
마포구	서교동	동교로13길 47 가,나동(제이빌리지)
마포구	서교동	동교로13길 49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서교동	동교로13길 51
마포구	서교동	동교로13길 52
마포구	서교동	동교로13길 53 (조광아트빌)
마포구	서교동	동교로13길 55 (Y 하우스)
마포구	서교동	동교로13길 56-5 (정현빌라)
마포구	서교동	동교로13길 56
마포구	서교동	동교로13길 57
마포구	서교동	동교로13길 59
마포구	서교동	동교로13길 60 (스위트하우스)
마포구	서교동	동교로13길 61
마포구	서교동	동교로13길 63
마포구	서교동	동교로13길 64-5 (벨라)
마포구	서교동	동교로13길 64-6
마포구	서교동	동교로13길 64
마포구	서교동	동교로13길 65 (서교블레스빌)
마포구	서교동	동교로13길 68 (포니이엔티빌딩)
마포구	서교동	성미산로2길 20
마포구	서교동	성미산로2길 21
마포구	서교동	성미산로2길 23
마포구	서교동	성미산로2길 33 (城廣빌딩)
마포구	서교동	성미산로2길 37-5 (금송빌)
마포구	서교동	성미산로2길 37-7 (그레이스빌)
마포구	서교동	성미산로2길 37-8
마포구	서교동	성미산로2길 37-9
마포구	서교동	성미산로2길 37-10
마포구	서교동	성미산로2길 37-11 (도시공간)
마포구	서교동	성미산로2길 37-15 (로얄캐슬 빌라)
마포구	서교동	성미산로2길 37-16
마포구	서교동	성미산로2길 39
마포구	서교동	성미산로2길 40 (그로리아)
마포구	서교동	성미산로2길 43
마포구	서교동	성미산로2길 46
마포구	서교동	성미산로2길 47
마포구	서교동	성미산로2길 49 (더 하우스 예당)
마포구	서교동	성미산로2길 51
마포구	서교동	성미산로2길 53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서교동	성미산로2길 54
마포구	서교동	성미산로6길 12
마포구	서교동	성미산로6길 18
마포구	서교동	성미산로6길 19
마포구	서교동	성미산로6길 21 (기린하우스)
마포구	서교동	성미산로6길 24 (트인빌)
마포구	서교동	성미산로6길 26 (트인빌)
마포구	서교동	성미산로6길 30
마포구	서교동	성미산로6길 33 (진흥하임빌)
마포구	서교동	성미산로6길 34 (골든힐)
마포구	서교동	성미산로6길 35
마포구	서교동	성미산로6길 37
마포구	서교동	성미산로6길 39
마포구	서교동	성미산로6길 40 B동(건우주택)
마포구	서교동	성미산로6길 42-6
마포구	서교동	성미산로6길 42-7
마포구	서교동	성미산로6길 42-9 (빌라)
마포구	서교동	성미산로6길 42-12
마포구	서교동	성미산로6길 42-14
마포구	서교동	성미산로6길 42 A동(건우주택)
마포구	서교동	성미산로6길 43
마포구	서교동	성미산로6길 45
마포구	서교동	성미산로6길 46-5 (일진주택)
마포구	서교동	성미산로6길 46-6 (써니빌)
마포구	서교동	성미산로6길 46-8 (서교1번가)
마포구	서교동	성미산로6길 46-10
마포구	서교동	성미산로6길 46
마포구	서교동	성미산로6길 48 (행복한집)
마포구	서교동	성미산로6길 49 (유니온빌딩)
마포구	서교동	성미산로6길 52
마포구	서교동	성미산로6길 53 (모멘텀빌딩)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 70-3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 70-4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 70 (오월배)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 72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 74 (원천빌딩)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 78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 80 (서교양경회관)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 82-1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 82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 84-1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 84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 86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 88 (서교월드빌딩)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 90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 92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 94 (명 빌딩)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 96 (영훈빌딩)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 98 (서현빌딩)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14길 5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14길 9-5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14길 9-6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14길 9-7 (민우빌리지)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14길 9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14길 10-5 (휴먼스빌)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14길 10-6 (솔향기)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14길 10-7 (스위트빌)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14길 10-8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14길 10-9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14길 10-10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14길 10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14길 12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14길 13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14길 16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14길 17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14길 18-8 (서교스위트하우스)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14길 19 (charis 빌딩)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14길 22 (서교스위트하우스)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14길 24 101동(솔루체)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14길 25 (우진빌딩)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14길 27 (서교빌딩)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16길 3 (맨토스빌딩)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16길 9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16길 13-3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16길 13-4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16길 13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16길 14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16길 15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16길 16 (주택)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16길 17-3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16길 17-4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16길 17 (더블제이빌딩)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16길 19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16길 20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16길 22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16길 23-3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16길 23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16길 25 (미래스위트하우스)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16길 26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16길 33 A동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16길 34 A동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16길 35 B동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16길 36 B동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16길 37 (다세대주택)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16길 38 (레이크빌)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16길 39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16길 40 (서교ARTE)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16길 44 (서교하랑채)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16길 45 (바이오그린빌라)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16길 47 (신세계드림빌아파트)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16길 51 (서교 자이빌)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16길 52-4 나동(센터빌)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16길 52-5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16길 52-7 (을유문화사)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16길 52-8 (두손베스티움)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16길 52-12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16길 52-16 (호정하우스)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16길 52 가동(센터빌)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16길 53 (시티하임)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16길 54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16길 57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16길 58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16길 60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16길 61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16길 62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16길 64 (젤뚜하우스)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16길 65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16길 66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20길 5 (제이디빌딩)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20길 6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20길 14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20길 15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20길 16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20길 17 (서교주택)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20길 21 (서교 Grace vill 2차)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20길 23 (플러스타운5차)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20길 24 A동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20길 26 A,B동(대상데코빌)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20길 27 (성운빌라)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20길 29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20길 30-2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20길 30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20길 31-3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20길 31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20길 33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20길 37 (미래스위트하우스)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20길 38-5 (더클래스)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20길 38-7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20길 38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20길 41 (The한울)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20길 42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20길 45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20길 46 (함성참좋은아파트)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20길 49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20길 50-3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20길 50-4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20길 50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20길 51-1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20길 51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20길 52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20길 53-4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20길 53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20길 56 (연립)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20길 57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20길 58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20길 59-3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20길 59-4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20길 59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20길 61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20길 62 (우리스위트하우스)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20길 65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20길 66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20길 67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로20길 68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북로7길 76-3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북로7길 76-7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북로7길 76-9 (서교주택)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북로7길 76-11
마포구	서교동	월드컵북로7길 82
마포구	서교동	잔다리로 125 (미송빌딩)
마포구	서교동	잔다리로 126
마포구	서교동	잔다리로 127-1 (레이즈빌딩)
마포구	서교동	잔다리로 127
마포구	서교동	잔다리로 128
마포구	서교동	잔다리로 129
마포구	서교동	잔다리로 131-8
마포구	서교동	잔다리로9길 4-6
마포구	서교동	잔다리로9길 4-8
마포구	서교동	잔다리로9길 4-10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 5 (상암 우남퍼스트빌스타)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 17 (한성자동차제2서비스공장)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 19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 29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 31 (성산2-1공영주차장)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 63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 65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 67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 69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 70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 78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 83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 87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 89-11 A동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 89-15 B동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 89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1길 3 가,나동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1길 4 (마포상암시티프라디움리버)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1길 8 (헤리티지 삼영)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1길 9 (마포클레세)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1길 17 (상암 퍼스티지 더올림 오피스텔)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1길 20 (KCC상암스튜디오380)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1길 23 (재규어/랜드로버 서비스센터)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3길 2 상가동(성아파트)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3길 3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3길 4 101동(성아파트)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3길 7 (상암 카리스 다올림 오피스텔)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3길 11 (상암미르웰한올림)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3길 16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3길 19 A~D동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3길 24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5길 9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5길 11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5길 13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5길 14 (성미연립)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5길 16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5길 18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5길 19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5길 20 (다은주택)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5길 21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5길 23 (주차장)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7길 12-11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7길 12-12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7길 12-14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7길 12-15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7길 12-16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7길 12-19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7길 12-20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7길 12 (MEK빌딩(멕빌딩))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7길 14 A,B동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7길 24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7길 28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7길 30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7길 35 (천주교성산2동성당교육관)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7길 36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7길 38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7길 41 (그레이스빌)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7길 44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7길 46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7길 48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7길 52-4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7길 52-5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7길 52-7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7길 52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7길 54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7길 58 (성현하이빌)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7길 60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7길 62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7길 68-5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7길 68-7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7길 68-9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7길 68-11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7길 68-15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7길 68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7길 70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7길 74-5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7길 74-6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7길 74-7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7길 74-8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7길 74-9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7길 74-10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7길 74-11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7길 74-13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7길 74-14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7길 74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7길 76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7길 82 가동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7길 84 나동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7길 89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7안길 5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7안길 7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7안길 8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7안길 9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7안길 11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7안길 15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7안길 17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7안길 19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7안길 21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7안길 25 (미소가)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7안길 27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7안길 29-1 (구립노인정)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7안길 29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7안길 30 103동(팰리스뷰)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9길 3 106동(월드컵아이파크)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9길 6 101~105동(월드컵아이파크)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9길 11 A,B동(유일빌리지2단지)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9길 13 A,B동(유일빌리지1단지)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9길 15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9길 16 (성사중학교)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9길 22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9길 23 (소노하우스)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로9길 24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0길 4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0길 7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0길 8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0길 10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0길 14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0길 15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0길 16 (만연센텀시티)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0길 19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0길 20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0길 21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0길 24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0길 25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0길 26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0길 30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0길 31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1길 6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1길 7-4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1길 7-5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1길 7-6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1길 7-7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1길 7-8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1길 7-9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1길 7-10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1길 7-11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1길 7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1길 8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1길 9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1길 10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1길 16 A~D동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1길 20 1동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1길 24-1 5동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1길 24-2 3동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1길 24 2동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1길 26 4동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1길 30 6동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1길 32 7동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1길 33 9동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1길 34 8동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1길 35 10동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1길 37 11동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2길 1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2길 10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2길 11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2길 13 A,B동(아성뜨란채)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2길 14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2길 16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2길 30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2길 34 (다다빌리지)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2길 38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2길 39 (다온숲)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2길 40 (디큐브)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4길 1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4길 3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4길 5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4길 7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4길 9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4길 10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4길 11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4길 12-3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4길 12-4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4길 12 (대웅 빌라)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4길 15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4길 16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4길 18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4길 19 (마하빌)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4길 21 (메종 드 엠)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4길 23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4길 24-7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4길 24-8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4길 24-10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4길 24-13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4길 24-14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4길 24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4길 25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4길 28-4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4길 28-5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4길 28-10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4길 28-17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4길 28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4길 30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4길 35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4길 38 (황금빌)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4길 39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4길 40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4길 43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4길 45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4길 46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4길 51 (성산에스하임2)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4길 52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4길 56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4길 57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4길 58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4안길 4 (성산빌라)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4안길 5 (이든빌)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4안길 6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4안길 7-4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4안길 7-5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4안길 7-7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4안길 7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4안길 10 (백송빌라)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4안길 11 (성운빌라)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4안길 13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4안길 14 (성산에스하임)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4안길 18 (엘림하우스)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4안길 22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4안길 23 (펠리체)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4안길 24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4안길 25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6길 5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6길 6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6길 8 (한영빌딩)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6길 12 (서일)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6길 14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6길 15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6길 16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6길 20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6길 23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6길 24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6길 25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6길 26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16길 28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2길 7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2길 8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2길 9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2길 10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2길 14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2길 15 (화이트빌)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2길 18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2길 19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2길 24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2길 27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2길 28 (새터빌)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2길 30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2길 34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2길 38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2길 42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2길 43 (골드쉐르빌)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2길 45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2길 46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2길 47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2길 48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2길 51-3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2길 51-4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2길 51-5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2길 51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2길 53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2길 57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4길 2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4길 7 (티타늄하우스)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4길 8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4길 9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4길 10 (명성카운티)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4길 13 (해비치)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4길 14 (동양하우징)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4길 20 (스페이스 봄)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4길 23 (주연하우스)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4길 24 (동서파크빌라)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4길 25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4길 30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4길 31 (선진하이빌)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4길 41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4길 45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4길 46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5길 7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5길 8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5길 11 201동(한림아파트)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5길 17 101동(한림아파트)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5길 20 (학산빌라)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5길 24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5길 26 (백송빌라)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5길 30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5길 32 (채움빌)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5길 36 (정운빌라)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5길 38 (그레이스빌)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5길 39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5길 40 (스위트빌)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5길 42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5길 44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5길 46 (청풍서래)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6길 1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6길 2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6길 7 (썬빌)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6길 8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6길 9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6길 10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6길 13 (HAPPY VILL)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6길 14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6길 19 (태광빌라)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6길 27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6길 31 (온세파인빌)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6길 35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6길 37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6길 38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7길 5 (예가크레시아)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7길 9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7길 12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7길 13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7길 16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7길 19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7길 20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7길 21 (월드아트빌)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7길 25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7길 26 (해비치하우스)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8길 2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8길 6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8길 7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8길 8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8길 9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8길 12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8길 13 (레인보우)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8길 19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8길 20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8길 22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8길 23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8길 31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8길 33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9길 6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9길 8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9길 11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9길 12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9길 15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9길 16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9길 19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9길 20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9길 21 (금강블루)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9길 22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9길 23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9길 24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길 1-5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길 1-6 (깊은샘교육센터)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길 1-10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길 1-12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길 1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길 2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길 3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길 6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길 7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길 9 (화이트빌)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길 10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길 13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길 15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길 17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길 22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길 25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길 26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길 33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길 34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길 35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길 36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길 37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길 39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길 41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길 42 A,B동(진엘르빌)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길 45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길 47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길 51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길 52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길 54 (백송빌라)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길 55-3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길 55-4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길 55-5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길 55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길 58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길 59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길 61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길 62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길 63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길 65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길 68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길 69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길 71 (세명타운)
마포구	성산동	새터산길 72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3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4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5-3 (대동빌라)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5-4 B동(이레빌라트)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5-5 A동(이레빌라트)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5-6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5-9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5-10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5-11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5-12 (대명풀하우스)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5-13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5-14 (251-21다세대주택)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5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7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8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9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11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12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13-1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13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14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15-4 (성운빌라)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15-5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15-7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15-9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15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16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17-4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17-6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17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18 (삼우캐슬)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19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20-1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20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21-1 (제일빌딩)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21 (진흥 하임시티)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22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23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24 (Yohan house)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25-3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25-4 (성미산 우성빌딩)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25-5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25-6 (공동육아협동조합우리어린이집)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25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26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27 (상가주택)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28-1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28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29-1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29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30-5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30-6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30-8 (이레텔)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30-9 (유성주택)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30-10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30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31-2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31 (효원)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32-1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32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33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34 (덕산빌딩)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35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36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37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38 (대한예수교장로회성서교회)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39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41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42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43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44-1 (이안휴빌)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44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46 (골드 오피스텔)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48-1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48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 51 (홍익대학교 부속 초,중,고)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1길 17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1길 23 (오십빌라)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1길 25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1길 26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1길 28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1길 31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1길 32-6 (퀸)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1길 32-7 (예림아너스빌)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1길 32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1길 35 (선경빌라트)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1길 36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1길 39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1길 40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1길 42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1길 43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1길 45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1길 62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1길 63 A동(지오빌)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1길 66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1길 67 B동(지오빌)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1길 71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1길 72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1길 75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1길 76 (네비게이토 영빈관)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1길 81 (지오빌)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1길 88 (성운빌라)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1길 89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1길 91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1길 92 A,B동(바움샤인빌)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1길 93-3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1길 93-5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1길 93-6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1길 93-7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1길 93-9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1길 93-10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1길 93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1길 95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1길 96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1길 99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1길 100 (양림아트빌)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1길 107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1길 109-6 (다오하우스)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1길 109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3길 19-4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3길 53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3길 56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3길 58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3길 60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3길 62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3길 64 (제이엠 빌라(3차))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3길 65 (네비게이토빌딩)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3길 66-1 (제이,엠빌라(2차))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3길 66 (제이,엠빌라(1차))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3길 70 (성일아트빌)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3길 72 (화이트빌)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3길 76-5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3길 76-7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3길 76-9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3길 76 (연광교회)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3길 77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3길 80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3길 81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3길 84-3 (함께주택4호)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3길 84-5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3길 84-6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3길 84-7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3길 84-8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3길 84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3길 85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3길 87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3길 89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3길 90 (현대밀레니엄)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3길 91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3길 94-3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3길 94-4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3길 94-7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3길 94-8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3길 94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3길 96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3길 97 (이에스하임)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5길 49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5길 51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5길 52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5길 53-1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5길 53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5길 56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5길 57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5길 59-2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5길 59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5길 61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5길 63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5길 65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5길 67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5길 71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5길 73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5길 75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5길 79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5길 81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5길 83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5길 84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5길 85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5길 86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5길 87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5길 88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4 (SH빌딩)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5-2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5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6 (성산빌딩)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9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10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12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13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14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15 (상윤빌딩)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21-11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21 (사울빌딩)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26-6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26-7 (에버그린)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26-8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26-9 (대명풀하우스2)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26-10 (스타캐슬)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26-11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26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27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29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30-6 (토티빌)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30-8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30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31 (석심빌딩)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32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42-5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42-6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42-7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42-8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42-11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42-12 (한흥시티빌)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42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43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46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47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50-6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50-7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50-8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50-12 (금성빌라)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50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51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54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56 (성도빌딩)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58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61 (용하빌딩)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62 (황금빌리지)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66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67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68-4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68-5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68-8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68-9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68-10 (준빌리지)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68-11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68-20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68-22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68-24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68-30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68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71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74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75-1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75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79-1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79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81-1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81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92 (상인 파크빌)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93 (화인리빙텔)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94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95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99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100-5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100-9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100-10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100-11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100-13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100-15 A동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100-16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100-17 C동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100-18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100-19 B동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100-20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100-21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100-22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100-23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100-25 (들국화타운)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100-28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100-29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100-30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100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104 (혜성파크빌)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1길 108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2길 6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2길 10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2길 15 (천주교회)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3가길 1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3가길 3-1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3가길 3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3가길 5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3가길 6-7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3가길 6-8 가동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3가길 6-9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3가길 6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3가길 7-1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3가길 7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3가길 8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3가길 9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3가길 11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3가길 12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3가길 14 (한빛위너스빌)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3가길 15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3가길 17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3길 1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3길 2 뒷동(마포 마을활력소)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3길 2 앞동(마포 마을활력소)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3길 3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3길 5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3길 6 (새롬빌)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3길 7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3길 8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3길 9 (화이트빌)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3길 10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3길 11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3길 12 (The 민성)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3길 13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3길 14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3길 17 (베데스다)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3길 24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3길 28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3길 29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3길 32 (가온누리)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3길 33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3길 35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3길 38 (메조트론Ⅱ)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3길 42 (궁전빌라)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3길 43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3길 44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3길 54 (성운빌라)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3길 56 (성산하이츠빌)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3길 61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3길 62 (소삼팔가)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3길 63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3길 64 (금아아트빌)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3길 67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3나길 2 (미래하임)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3나길 6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3나길 11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3나길 12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3나길 15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3나길 16-5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3나길 16-7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3나길 16-9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3나길 16-11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3나길 17 (건우주택)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3나길 18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3나길 19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3나길 20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3나길 22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3나길 27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3나길 30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3나길 33 (성산이튼캐슬)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3나길 34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3나길 37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4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5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7 (청구빌라)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8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9 (해피피플마포빌딩)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10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11 (㈜아츠스테이 성산1호점)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12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13 B동(시티하임Ⅱ)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21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23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25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31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32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33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35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37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38 (더원팰리스)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39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41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42 (백송아트빌)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48 (화이트빌)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49-3 (주택)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49 A,B동(갤러리하우스)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50-7 (조광아트빌)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50-11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50-12 (백송아트빌)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50-14 나동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50-15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50-18 가동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50 (리더스빌)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52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53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55-4 A,B동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55-7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55-8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55-9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55-12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55-14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57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58-7 (새롬빌라)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58-8 (스카이빌)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58-10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58-11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58-14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58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62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66-5 (성산하이츠빌)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66-7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66-8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66-10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66-14 (글로리아 빌)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66-17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66-19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66-21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66 (쎈터빌)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67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68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69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72-2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72-3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72-4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72-6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72-8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72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74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77-4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77-5 (삼성씨티빌)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77-6 (이레빌라트)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77-7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77-8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77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82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84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85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86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88-3 (베아트리스2차)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88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89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92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95-1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95-2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95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96 (새로운빌라)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97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길 98 (보아스메죵)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안길 4 (성산 지오)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안길 7 (세라노빌)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안길 10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안길 13 (성미산 공동주택)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안길 14 (오르막)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안길 15 (온음 공동체주택)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안길 16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안길 19 (삼성홈타운)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5안길 25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6길 5 (웃담)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6길 6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6길 7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6길 8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6길 9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7길 3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7길 4-3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7길 4-5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7길 4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7길 9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7길 11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7길 12 (성산시티빌라)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7길 13-3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7길 13-7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7길 13-9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7길 13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7길 21 (소행주)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7길 23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7길 24 (성서초등학교)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7길 24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7길 25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7안길 3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7안길 6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7안길 8-5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7안길 8-6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7안길 8-8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7안길 8-9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7안길 8-10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7안길 8-11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7안길 8-12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7안길 8-13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7안길 8-14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7안길 8-16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7안길 8-18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7안길 8-20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7안길 8-22 (푸른빌라)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7안길 8 (아티스빌)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7안길 9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7안길 11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7안길 12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7안길 13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7안길 14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7안길 16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7안길 17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7안길 19 (이레쉐르빌)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7안길 20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7안길 23-5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7안길 23-7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7안길 23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7안길 24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7안길 26-7 (더클래식)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7안길 26 (라인성서APT)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7안길 27 (예원빌리지)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7안길 34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7안길 38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7안길 40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7안길 42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7안길 43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7안길 44 (성미산어린이집)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7안길 48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7안길 49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로7안길 50 (동진하이빌)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 124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 126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 128 (마포중앙도서관)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 144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 154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 158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2길 5-4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2길 5-5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2길 5-6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2길 5-7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2길 5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2길 9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2길 13 (영풍빌딩)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2길 15 (동호 오피스텔)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2길 17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2길 19 (산.내.들)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2길 21-5 (호원빌)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2길 21-6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2길 21-7 (보영주택)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2길 21-8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2길 21-11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2길 21-12 B동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2길 21-20 A동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2길 21-21 (유니아란치움)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2길 21-25 (이레성산)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2길 21-26 (마포성산 휴먼타운2차)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2길 21-28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2길 21-30 (예지빌딩)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2길 21-31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2길 21-33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2길 21-34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2길 21-35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2길 21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2길 25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2길 27 (예진빌라)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2길 29 (메디칼K 빌딩)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2길 31 (샬롬 오피스텔)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2길 35-3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2길 35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2길 39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2길 41-4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2길 41-5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2길 41-7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2길 41-8 (글로리홈즈)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2길 41 (유니온빌딩)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2길 45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2길 47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2길 54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2길 55 (샤인빌딩)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2길 57 (미래빌라)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2길 59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2길 60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2길 63 (태남빌딩)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4길 2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4길 6-1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4길 6-2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4길 6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4길 8-1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4길 8 (월드컵빌딩)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4길 9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4길 12 (성산휴먼타운)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4길 15 (성산1동주민센터)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4길 18-1 5동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4길 18 1동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4길 20 6동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4길 33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4길 35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4길 42 (성서중학교)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4길 42 체육관(성서중학교)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4길 46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4길 50 (청운빌리지)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4길 53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4길 54-7 A동(성완그린빌라)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4길 54-9 B동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4길 54-11 (소담아트빌)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4길 54-13 (스카이빌)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4길 54-14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4길 54-15 (이지빌라)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4길 54-18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4길 54-19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4길 54-22 (미래하임)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4길 54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4길 55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4길 56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4길 59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4길 62 (신화 쉐르빌)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4길 64 (한맥힐하우스)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4길 65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4길 67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4길 70 B동(한강타운빌B동)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4길 72 A동(한강타운빌A동)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4길 74 (백송빌라)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4길 75 (대원아파트)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4길 75 경비실,관리사무실(대원아파트)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4길 78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4길 80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4안길 6 (월드힐하우스)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4안길 8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4안길 9 (나라키움 대학생 주택)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4안길 10 (별빛하우스)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4안길 11 (현대하이빌)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4안길 14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4안길 15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4안길 17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4안길 18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4안길 23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4안길 24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4안길 27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4안길 28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4안길 30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4안길 31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4안길 33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4안길 35 B동(호성그린파크B동)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4안길 37 A동(호성그린파크A동)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4안길 38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4안길 39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4안길 43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4안길 44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4안길 45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4안길 47-5 (슈펜하임)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4안길 47-6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4안길 47-8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4안길 47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4안길 49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4안길 50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4안길 54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4안길 55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6길 3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6길 7 (다베로)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6길 13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6길 16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6길 20-3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6길 20-4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6길 20-7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6길 20-8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6길 20-10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6길 20-12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6길 20-14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6길 20-16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6길 20 (태경빌딩)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6길 21-6 (삼영하이츠빌)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6길 21-8 (화이트빌)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6길 21-9 (녹색친구들)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6길 21-10 (노블하우스)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6길 21-11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6길 21-14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6길 21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6길 24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6길 25-3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6길 25-5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6길 25-6 A,B동(선호빌)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6길 25-10 (선호빌)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6길 25-11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6길 25-13 (미래하임)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6길 25-14 나동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6길 25-16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6길 25-18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6길 25-20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6길 25-24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6길 25 (연세빌딩)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6길 26 (리시본하우스)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6길 27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6길 29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6길 31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6길 34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6길 37-5 (미래하임)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6길 37-10 (성산힐아파트)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6길 37 (어반 하우스)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8길 6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8길 10 (화인텍빌딩)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8길 17 (한숲빌라)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8길 20 (세한빌딩)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8길 21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8길 23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8길 25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8길 26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8길 29 (동산주택)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8길 30 (아리택)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8길 32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8길 36 (S 92.14)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8길 38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8길 40 (더클래스)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8길 43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8길 44 (M 팰리스)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8길 47 (THE KIM'S VILLA(더킴스빌라))
마포구	성산동	성산로8길 48 (동원파크빌)
마포구	성산동	성암로 15-4
마포구	성산동	성암로 15-8
마포구	성산동	성암로 15-10
마포구	성산동	성암로 15 (금창타워)
마포구	성산동	성암로 17-3
마포구	성산동	성암로 17
마포구	성산동	성암로 19 101,102동(성재센트리움)
마포구	성산동	성암로 28 (가좌행복주택)
마포구	성산동	성암로 31 (화정빌딩)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성산동	성암로 33 (마포선혜사)
마포구	성산동	성암로 35 (루시드빌)
마포구	성산동	성암로1길 2
마포구	성산동	성암로1길 8 101동(성사1차풍림아파트)
마포구	성산동	성암로1길 12 상가(성사1차풍림아파트)
마포구	성산동	성암로1길 13 (유일빌리지)
마포구	성산동	성암로1길 14 A,B동(소노하우스 성산3차)
마포구	성산동	성암로1길 17
마포구	성산동	성암로1길 18 A,B동(소노하우스 성산2차)
마포구	성산동	성암로1길 22 A,B동(소노하우스 성산1차)
마포구	성산동	성암로3길 42-4
마포구	성산동	성암로3길 42-5
마포구	성산동	성암로3길 42-6 (메이빌)
마포구	성산동	성암로3길 42-7 (이즈그린빌)
마포구	성산동	성암로3길 42-8
마포구	성산동	성암로3길 42-9
마포구	성산동	성암로3길 42-10 2동
마포구	성산동	성암로3길 42-12 1동
마포구	성산동	성암로3길 42
마포구	성산동	성암로3길 46
마포구	성산동	성암로5길 28-12 101동(팰리스뷰)
마포구	성산동	성암로5안길 5-1
마포구	성산동	성암로5안길 5 (다세대주택)
마포구	성산동	성암로5안길 6
마포구	성산동	성암로5안길 9-5 (토천 Green Zone)
마포구	성산동	성암로5안길 9-7
마포구	성산동	성암로5안길 9
마포구	성산동	성암로5안길 10
마포구	성산동	성암로5안길 11
마포구	성산동	성암로5안길 12
마포구	성산동	성암로5안길 13
마포구	성산동	성암로5안길 14
마포구	성산동	성암로5안길 15
마포구	성산동	성암로5안길 16 가,나동(계림홈타운)
마포구	성산동	성암로5안길 17
마포구	성산동	성암로5안길 19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성산동	성암로5안길 22
마포구	성산동	성암로5안길 23
마포구	성산동	성암로5안길 25
마포구	성산동	성암로5안길 26 A,B동
마포구	성산동	성암로5안길 27
마포구	성산동	성암로7길 21
마포구	성산동	성암로7길 23
마포구	성산동	성암로7길 25
마포구	성산동	성암로7길 28
마포구	성산동	성중길 14
마포구	성산동	성중길 18
마포구	성산동	성중길 24 (나눔교회)
마포구	성산동	연남로11길 41
마포구	성산동	연남로11길 45
마포구	성산동	연남로11길 52
마포구	성산동	연남로11길 54
마포구	성산동	연남로11길 55
마포구	성산동	연남로11길 58
마포구	성산동	연남로11길 60
마포구	성산동	연남로11길 62
마포구	성산동	연남로11길 64
마포구	성산동	연남로11길 65
마포구	성산동	연남로11길 66
마포구	성산동	연남로11길 67
마포구	성산동	연남로11길 69
마포구	성산동	연남로13길 55 (동양하우징)
마포구	성산동	연남로13길 71 101~103동(헤리티지)
마포구	성산동	연남로13길 77 201동(헤리티지)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 100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 102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 104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 106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 108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 110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 112 (TWIN 빌딩)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 114 (효남빌딩)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 116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 118 (윤재빌딩)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 120-1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 120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 122-1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 122 (풍원빌딩)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 124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 126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 128-3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 128-4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 128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 132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 134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 136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 138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 140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 142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 144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 146 (송원빌딩)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 148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 150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 152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 154-1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 154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 156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 158 (아트센타)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 164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 166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 190 (이안상암II)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 190 (청역)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 192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 196 (대명비첸시티오피스텔)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 200 (SJ라벨라상암)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 202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 204 (이안상암)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 205 상가동(성산임대아파트)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 207 1~4,6,7동(성산임대아파트)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 211 (성산임대아파트)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 212 (청)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 212 보건소(청)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 213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 215 (성산임대아파트)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 220 (자동차검사소)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 221-46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 235 (마포농수산물시장,시설관리공단)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 240 월드컵주경기장(월드컵주경기장)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 243-48 (매점)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 243-60 (관리사무소(1))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 243-62 (평화의공원 현장근로자 대기실)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 251 (생활체육협의회)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20길 21-5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20길 21-7 (주연빌라2)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20길 21-11 (어썸시티)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20길 31-7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20길 31-9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20길 41-4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20길 41-5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20길 41-6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20길 41-7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20길 41-9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20길 41-12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20길 53-6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20길 59-5 (삼성빌라)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20길 59-7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26길 2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26길 6 (청우빌딩)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26길 9 (새싹유치원(별관))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26길 12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26길 13 (현대하이츠아파트)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26길 17 (부림 베스트빌 아파트)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26길 18 (센터빌)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26길 21 (그레이스 아파트)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26길 22 (삼성홈타운)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26길 23 (벨로스 아파트)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26길 27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26길 32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26길 33 (반트아파트)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26길 36-6 (보아스빌라)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26길 36-7 (에버그린빌라)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26길 36-8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26길 36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26길 37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26길 38 (김천하이츠빌)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26길 39 (시민공간 나루)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26길 40-3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26길 40-7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26길 40-8 (별빛하우스)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26길 40-9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26길 40-11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26길 40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26길 43 (해피존 아파트)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26길 45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26길 48 A동(시티하임Ⅱ)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26길 52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26길 56 (두리하이트빌)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26길 57 (자담이움아파트)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26길 58 (대성하우징)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28길 3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28길 4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28길 5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28길 6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28길 9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28길 10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28길 12-1 (진진아트빌)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28길 12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28길 13 (수 빌딩)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28길 16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28길 19 (리치베스트빌)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28길 20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28길 24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28길 29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28길 30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28길 33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28길 34 (파비오빌라트)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28길 35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28길 36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28길 38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28길 39 (동양하우징)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가길 3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가길 7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가길 8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가길 10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가길 11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가길 13 (집22106)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가길 14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가길 15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가길 16-3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가길 16-4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가길 16-5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가길 16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가길 17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가길 19 (해미주)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가길 20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가길 21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가길 22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가길 25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가길 26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가길 27 (GALAXY)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길 4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길 5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길 6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길 12 (노블에비뉴)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길 15-4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길 15-5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길 15-7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길 15-10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길 15-12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길 15-14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길 15-15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길 15-16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길 15-17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길 15 (블룸에비뉴)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길 16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길 21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길 25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길 26 2동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길 27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길 28 1동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길 30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길 31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길 34 (유안빌라)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길 35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길 37 (삼성홈타운)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길 40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길 41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길 42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길 43 (동석하우스)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길 45-3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길 45-4 (유니빅스9)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길 45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길 46-1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길 46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길 48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길 49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길 50 (금풍하이빌)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나길 7 3동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나길 8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나길 9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나길 12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나길 13-1 나동(용주하이츠맨션)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나길 13 가동(용주하이츠맨션(가))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나길 14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나길 15-1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나길 15-3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나길 15-4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나길 15-5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나길 15-6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나길 15-8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나길 15 (스르르주택)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나길 17 101~103동(다이아캐슬)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나길 18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나길 21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나길 22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나길 24 (예빈빌라)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나길 25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나길 26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나길 29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나길 32 B동(성산첼시)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나길 33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나길 38 A동(성산첼시)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다길 1 (화이트빌)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다길 5-3 E동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다길 5-4 B동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다길 5-5 (더플레이스)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다길 5 A동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다길 6 (삼화골든빌)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다길 9-3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다길 9-6 A,B동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다길 9-7 (성산 엘리시안)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다길 9 C동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다길 13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다길 16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다길 17 (슈펜 더 갤러리)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다길 20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다길 22 (성산휴먼타운)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다길 23-6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다길 23-10 (릿지빌라)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다길 23-12 (아비뇽 빌라)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다길 23-13 (엘지아파트)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다길 23-15 (엘지아파트)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다길 23-17 (월드컵타워)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다길 23-18 (아비뇽빌라)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다길 23-30 (아비뇽 빌라)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다길 23-32 (월드컵타워)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다길 23-34 (월드컵타워)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다길 23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다길 26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다길 27 (한강하이빌)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다길 28 (유니하우스)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다길 29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다길 30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다길 32 (서호주택)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다길 34 (레이즈빌)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다길 36 (별장빌라)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다길 37 (슈펜하임 성산)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다길 38 (별장빌라)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다길 41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0다길 42 (별장빌라)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2길 9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2길 11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2길 19 (보양 사옥 빌딩)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2길 22 (비에스빌딩)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2길 23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2길 24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2길 25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2길 26 (라비앙로즈)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2길 27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2길 28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2길 29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2길 31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2길 32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2길 35-4 (동광팰리스)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2길 35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2길 36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2길 39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2길 41-3 (언어치료 AAC 센터 사람과 소통)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2길 41-4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2길 41-5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2길 41-6 (유니하우스 블루)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2길 41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2길 42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2길 45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2길 46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2길 47-3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2길 47-4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2길 47 (NS building)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2길 49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2길 51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2길 52-5 4동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2길 52-7 7동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2길 52 3동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2길 54 2동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4길 6 (태림센트윈Ⅱ)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4길 7 (상암 스위트포레)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4길 8 (상암 도시엔 오피스텔)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4길 14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4길 16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4길 17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4길 18 (상암 수린나 오피스텔)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4길 20 (동우 자인채 스토리 상암)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6길 14 (상암 두산위브센티움)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6길 15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6길 18 (삼라마이다스)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6길 22 (코오롱모터스서울A/S센터)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6길 34-7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6길 34 (성원초등학교)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6길 34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6길 40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6길 42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6길 46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6길 47-1 나동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6길 47-10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6길 47-13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6길 47-16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6길 47-20 가동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6길 47-22 나동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6길 47 가동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6길 49-1 나동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6길 49 가동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6길 50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6길 51-1 A동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6길 51 B동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6길 52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36길 54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81 (열림교회)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82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86 (리치몬드빌딩)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88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90 (성일빌딩)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92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94 (유일빌딩)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97-5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97-6 (오늘하루)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97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98 (성일 APT)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99 (성산빌딩)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02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04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06-1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06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08 (정인빌딩)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09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10 (신성빌딩)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11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12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13-6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13-7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13-9 (세경빌딩)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13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14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17-6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17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18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19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20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21-4 (유한파크빌)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21-8 (동산빌딩)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21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22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25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26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27 (만민 하늘애)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28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29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31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32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33 (supen 빌딩)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36 (신안빌딩)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37 (씨에스타워)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51 (성미빌딩)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52 (초등학교)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52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55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57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61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62-4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62-6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62-7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62-8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62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63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64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65 (SMC)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66 (천주교성산2동성당)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67-4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67-6 (이삭 어린이집)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67 (나디 빌딩)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68 (세민하이파크)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69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70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71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73-1 (한사랑교회)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73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75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77-1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77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79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83 공중화장실(큰길어린이공원)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84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85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87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88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89 (가나안교회)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90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91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92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93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94 (세원아파트)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95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97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98-3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98-4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98-5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98-9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98-11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98-15 (한성)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98-17 (무리울새마을경로당)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98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199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200-4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200-7 나동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200-9 가동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200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201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202-5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202-7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202-8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202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203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204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205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206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207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210-7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210-11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210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211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216 201동(성산2차 e편한세상)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216 202동(성산2차 e편한세상)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216 203동(성산2차 e편한세상)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218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220 (월드컵빌리지)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221-7 101동(솔레움오피스텔)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221-9 102동(솔레움오피스텔)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221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222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224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227 (성산2동우체국)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233-1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233 제1상가동(성산시영아파트)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235 1~27동(성산시영아파트)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240 (마포소방서 성산119안전센터)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260 (성산시영아파트)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260 28~33동(성산시영아파트)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 262 상가동(성산시영아파트)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1길 14-10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1길 14-11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1길 14-12 (힐 하우스)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1길 14-13 (진성파크빌)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1길 14-14 (휴먼빌)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1길 31 (엘지그린빌)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1길 32 (연립주택)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1길 33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1길 35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1길 36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길 8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길 13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길 17 (사평빌딩)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길 19 (대성빌딩)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길 20-5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길 20-6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길 20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길 22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길 24-3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길 24-4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길 24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길 27 (성산1파출소)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길 30 (인산빌딩)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길 32 (월드하우스)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길 33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길 36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길 37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길 38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길 54 101,102동(자슬린하우스)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길 55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길 58 (세원주택)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길 61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길 62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길 68 (자슬린하우스)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길 71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길 74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길 78-5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길 78-7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길 78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길 79 (다온숲)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길 80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길 81 (석연주택)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길 82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길 83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길 84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길 85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길 87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길 88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길 91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길 93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길 95-4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길 95-5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길 95-6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길 95-7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길 95-8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길 95-12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길 95-13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길 95-14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길 95-18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길 95-20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길 95-21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길 95-22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길 95-25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길 95-29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길 95-33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길 95-39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길 95-41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길 95-43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길 95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길 96 (골든팰리스)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길 98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길 99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길 100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길 101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길 102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안길 3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안길 5 (에어콘테이너 빌딩)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안길 9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안길 13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안길 16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안길 17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안길 21 (대원빌딩)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안길 30 (함께주택3호)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안길 31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안길 34-5 A,B동(진영시티파크)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안길 34-9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안길 34-10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안길 34-15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안길 34-17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안길 34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안길 35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안길 37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안길 38 B동(성산트윈빌)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안길 40 A동(성산트윈빌)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안길 41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안길 43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안길 46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안길 51 (성산샤뜰레빌)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안길 57 (예그리나 5차)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안길 60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안길 62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안길 68 (신한빌딩)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안길 69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안길 73 가동(한맥아이홈)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안길 74-5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안길 74-6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안길 74-9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안길 74-10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안길 74-13 라동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안길 74-15 다동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안길 74-16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안길 74-17 나동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안길 74-18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안길 74-19 가동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안길 74-20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안길 74 (풍림주택)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안길 75 나동(한맥아이홈)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안길 77 (한맥아이홈)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안길 78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안길 79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안길 80 B동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안길 84 (골든빌오피스텔)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안길 88 (골든빌아파트)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2안길 89 (골든빌오피스텔)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5길 16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5길 20 (The We(더 위))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5길 23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5길 25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5길 27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5길 29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5길 30 (올라라건물값 빌딩)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5길 31-11 (성미산 체육관)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5길 33-1 A동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5길 33 B동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5길 34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5길 37 (나눔빌)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5길 38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5길 40 (동호쉐르빌)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5길 42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5길 43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5길 45-2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5길 45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5길 46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5길 47 (코램빌)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5길 50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5길 51-1 A동(A동)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5길 51 B동(B동)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5길 53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5안길 3-9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5안길 3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5안길 10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5안길 13 (골든빌아파트)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5안길 14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5안길 15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5안길 19 (성미어린이집)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5안길 26 (성산1동제1노인정)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5안길 40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6길 7 (영재빌딩)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6길 11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6길 14 (비밸런스21 빌딩)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6길 16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6길 28-6 (골든빌)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6길 28-12 (골드쉐르빌)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6길 28-14 (에버그린2)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8길 5 (파크매너)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8길 8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8길 13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8길 15 (동원가든빌)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8길 19 (화이트빌)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8길 20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8길 21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8길 25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8길 26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8길 30 (성산카운티)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8길 31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8길 34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8길 37 (다베로)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8길 40-6 (씨티빌)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8길 40-8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8길 40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18길 45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0길 11 (동양하우징)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0길 16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0길 18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0길 19 (한맥아이홈)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0길 20 (성산 아트빌)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0길 22 (더 트리니티)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0길 23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0길 25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0길 26 (골드쉐르빌)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0길 27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0길 30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0길 31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0길 34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0안길 1 (성산온세빌)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0안길 6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0안길 8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0안길 9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0안길 10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0안길 14 (동화)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0안길 18 (대호아트빌)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0안길 19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0안길 22-6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0안길 22-7 101동(서경팰리스)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0안길 22-9 102동(서경팰리스)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0안길 22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0안길 23 라동(두레홈)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0안길 25 나동(두레홈)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0안길 26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0안길 27 가동(두레홈)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0안길 29 다동(두레홈)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2길 5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2길 7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2길 16 (삼정 아트빌)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2길 18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2길 19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2길 20 (한맥아이홈)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2길 21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2길 22 (대호아트빌)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2길 23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2길 25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3길 9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3길 10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3길 13 (세원빌딩)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3길 14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3길 17 (골드쉐르빌)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3길 18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3길 20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3길 21 (화이트빌)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3길 23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3길 24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6길 17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6길 22-5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6길 22-7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6길 22-9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6길 22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6길 24-3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6길 24-4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6길 24-5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6길 24-6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6길 24-7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6길 24-8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6길 24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6길 26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6길 30-3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6길 30-4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6길 30-6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6길 30-7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6길 30-8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6길 30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6길 32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6길 34-4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6길 34-8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6길 34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6길 36 (온새미로)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7길 5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7길 6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7길 7 (우리근생빌)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7길 9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7길 10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7길 12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7길 13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7길 15 (동양하우징)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7길 16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7길 19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7길 23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7길 24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7길 25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7길 26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7길 28 (동원스위트홈)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7길 29 (대현하이빌)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7길 32 (동신 지오빌)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7길 34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7길 38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7길 41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7길 42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7길 43 (에이스타운)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7길 47 (한맥힐하우스)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7길 48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7길 49 (한맥힐하우스)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7길 52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7길 53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7길 54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7길 58 (더힐엠(THE HILL M))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7길 59 (별장빌라)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7길 61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27길 62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30길 8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30길 9-22 101~110동(성산월드타운대림아파트)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30길 9-31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30길 9-33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30길 9-35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30길 9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30길 13 상가동(성산월드타운대림아파트)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30길 14 (성산어린이집)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30길 22 (성산2동주민센터)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30길 24 (월드컵지구대)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30길 28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30길 30 104동(팰리스뷰)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30길 34 (성산지구연립주택 제31동)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30길 36-4 (어반캐슬)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30길 36-10 102동(팰리스뷰)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31길 3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31길 5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31길 6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31길 8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31길 10 (이삭 어린이집)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31길 11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31길 12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31길 13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31길 14-1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31길 14-3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31길 14-4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31길 14-5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31길 14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31길 16 (골드쉐르빌)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31길 17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31길 18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31길 20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31길 21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31길 22-2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31길 22-3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31길 22-4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31길 22 (더갤러리하우스)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31길 26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31길 27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31길 28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31길 29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31길 30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31길 31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31길 33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31길 34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31길 35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31길 36-5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31길 36-8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31길 36-10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31길 36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31길 37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33길 4 (다베로)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33길 5-1 B동(월드그랑빌)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33길 5-3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33길 5-4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33길 5-5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33길 5-6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33길 5 A동(월드그랑빌)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33길 8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33길 9-3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33길 9-9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33길 9 (성산캐슬빌라)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33길 10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33길 12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33길 14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33길 15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7길 76-8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7길 76-12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7길 76-14 (쇼콜라윰)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9길 59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9길 61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9길 65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9길 66 (삼성홈타운)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9길 67 (궁전빌)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9길 68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9길 69 (한울재)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9길 70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9길 72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9길 73 (성산빌)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9길 76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북로9길 78 (노엘빌딩)
마포구	성산동	잔다리로 128-5
마포구	성산동	잔다리로 130
마포구	성산동	잔다리로 131-3
마포구	성산동	잔다리로 131-4
마포구	성산동	잔다리로 131-6
마포구	성산동	잔다리로 131
마포구	성산동	잔다리로 132
마포구	성산동	잔다리로 133
마포구	성산동	잔다리로 134
마포구	성산동	증산로 87
마포구	연남동	성미산로15길 58-3
마포구	연남동	성미산로15길 58-6
마포구	연남동	성미산로15길 58-9
마포구	연남동	성미산로15길 58-11
마포구	연남동	성미산로15길 58-19
마포구	연남동	성미산로15길 58
마포구	연남동	성미산로15길 62
마포구	연남동	성미산로15길 64
마포구	연남동	성미산로15길 66-4
마포구	연남동	성미산로15길 66-5
마포구	연남동	성미산로15길 66-6
마포구	연남동	성미산로15길 66
마포구	연남동	성미산로15길 68
마포구	연남동	성미산로15길 72-4
마포구	연남동	성미산로15길 72-5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연남동	성미산로15길 72-6
마포구	연남동	성미산로15길 72-7
마포구	연남동	성미산로15길 72-9
마포구	연남동	성미산로15길 72-15
마포구	연남동	성미산로15길 72-17
마포구	연남동	성미산로15길 72-21
마포구	연남동	성미산로15길 72 (테이크 원)
마포구	연남동	성미산로15길 74
마포구	연남동	성미산로15길 76
마포구	연남동	성미산로15길 78
마포구	연남동	성미산로15길 80
마포구	연남동	성미산로15길 82 (진엘르빌)
마포구	연남동	성미산로15길 84-3
마포구	연남동	성미산로15길 84-4
마포구	연남동	성미산로17길 69
마포구	연남동	성미산로17길 71
마포구	연남동	성미산로17길 72
마포구	연남동	성미산로17길 73
마포구	연남동	성미산로17길 74
마포구	연남동	성미산로17길 75-1
마포구	연남동	성미산로17길 75-2
마포구	연남동	성미산로17길 75
마포구	연남동	성미산로17길 76
마포구	연남동	성미산로17길 77
마포구	연남동	성미산로17길 78
마포구	연남동	성미산로17길 79 (서울공공주택희망원룸)
마포구	연남동	성미산로19길 69
마포구	연남동	성미산로19길 73 (노엘 커뮤니티)
마포구	연남동	성미산로19길 75
마포구	중동	모래내로9길 25
마포구	중동	모래내로9길 27 A동,B동
마포구	중동	모래내로9길 29
마포구	중동	모래내로9길 30 상가(건영 월드컵 아파트)
마포구	중동	성암로 35-1
마포구	중동	성암로 37
마포구	중동	성암로 38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중동	성암로 41 101,102동(건영 월드컵 아파트)
마포구	중동	성암로 43-1 (더세영)
마포구	중동	성암로 43 (서호)
마포구	중동	성암로 45 (이다하우스)
마포구	중동	성암로 46-3
마포구	중동	성암로 46-7
마포구	중동	성암로 46-11
마포구	중동	성암로 46
마포구	중동	성암로 47-4
마포구	중동	성암로 47-5
마포구	중동	성암로 47-6
마포구	중동	성암로 47-7
마포구	중동	성암로 47
마포구	중동	성암로 48
마포구	중동	성암로 49 (대성에비뉴엘)
마포구	중동	성암로 53 (금창 타워빌)
마포구	중동	성암로 55
마포구	중동	성암로 58
마포구	중동	성암로 64
마포구	중동	성암로 79 상가동(성산2차현대아파트)
마포구	중동	성암로 91 101~106동(현대아파트)
마포구	중동	성암로 131
마포구	중동	성암로 133 (예원아파트)
마포구	중동	성암로 136
마포구	중동	성암로 148
마포구	중동	성암로 150
마포구	중동	성암로11길 7
마포구	중동	성암로11길 8
마포구	중동	성암로11길 9-3
마포구	중동	성암로11길 9-4
마포구	중동	성암로11길 9-5
마포구	중동	성암로11길 9-6 (빌라)
마포구	중동	성암로11길 9
마포구	중동	성암로11길 12
마포구	중동	성암로11길 13
마포구	중동	성암로11길 14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중동	성암로11길 15
마포구	중동	성암로11길 16-4
마포구	중동	성암로11길 16-5
마포구	중동	성암로11길 16-6
마포구	중동	성암로11길 16
마포구	중동	성암로11길 18
마포구	중동	성암로11길 19 B동
마포구	중동	성암로11길 20
마포구	중동	성암로11길 24
마포구	중동	성암로11길 28 (근생)
마포구	중동	성암로11길 32-1
마포구	중동	성암로11길 32
마포구	중동	성암로11길 34
마포구	중동	성암로11길 36
마포구	중동	성암로11길 52
마포구	중동	성암로11길 56 상가동(DMC마포청구아파트)
마포구	중동	성암로11길 60 101~104동(DMC마포청구아파트)
마포구	중동	성암로3가길 5
마포구	중동	성암로3가길 6
마포구	중동	성암로3가길 7
마포구	중동	성암로3가길 9
마포구	중동	성암로3가길 10
마포구	중동	성암로3가길 12
마포구	중동	성암로3가길 13
마포구	중동	성암로3가길 15
마포구	중동	성암로3가길 16
마포구	중동	성암로3가길 17
마포구	중동	성암로3가길 18 (부성주택)
마포구	중동	성암로3가길 21
마포구	중동	성암로3가길 22
마포구	중동	성암로3가길 23
마포구	중동	성암로3가길 24
마포구	중동	성암로3가길 27
마포구	중동	성암로3가길 28
마포구	중동	성암로3가길 31
마포구	중동	성암로3길 6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중동	성암로3길 7
마포구	중동	성암로3길 8-4
마포구	중동	성암로3길 8-6
마포구	중동	성암로3길 8
마포구	중동	성암로3길 9
마포구	중동	성암로3길 11
마포구	중동	성암로3길 14
마포구	중동	성암로3길 15 (상가)
마포구	중동	성암로3길 19
마포구	중동	성암로3길 20
마포구	중동	성암로3길 21
마포구	중동	성암로3길 22
마포구	중동	성암로3길 26
마포구	중동	성암로3길 27
마포구	중동	성암로3길 30
마포구	중동	성암로3길 34
마포구	중동	성암로3길 35
마포구	중동	성암로3길 38
마포구	중동	성암로3길 39
마포구	중동	성암로3길 40-1
마포구	중동	성암로3길 40
마포구	중동	성암로3길 41
마포구	중동	성암로3나길 3
마포구	중동	성암로3나길 5
마포구	중동	성암로3나길 6
마포구	중동	성암로3나길 7
마포구	중동	성암로3나길 8
마포구	중동	성암로3나길 12
마포구	중동	성암로3나길 13 (동하아트빌)
마포구	중동	성암로3나길 14
마포구	중동	성암로3나길 18
마포구	중동	성암로3나길 19
마포구	중동	성암로3나길 20 (근린생활시설)
마포구	중동	성암로3나길 23
마포구	중동	성암로3나길 24
마포구	중동	성암로3나길 25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중동	성암로3나길 26
마포구	중동	성암로3나길 29
마포구	중동	성암로3나길 30
마포구	중동	성암로3나길 31
마포구	중동	성암로5길 12 101,102동(동원월드타운아파트)
마포구	중동	성암로5길 15-5
마포구	중동	성암로5길 15-7
마포구	중동	성암로5길 15-8
마포구	중동	성암로5길 15-9
마포구	중동	성암로5길 15 (포레스트힐7차)
마포구	중동	성암로5길 16 101~103동(동원데쟈뷰)
마포구	중동	성암로5길 18
마포구	중동	성암로5길 19
마포구	중동	성암로5길 20 (가우디)
마포구	중동	성암로5길 21
마포구	중동	성암로5길 23
마포구	중동	성암로5길 26 (금강아트)
마포구	중동	성암로5길 27
마포구	중동	성암로5길 28-6
마포구	중동	성암로5길 28-7
마포구	중동	성암로5길 28-8
마포구	중동	성암로5길 29
마포구	중동	성암로5길 30
마포구	중동	성암로5길 32 (성대빌라)
마포구	중동	성암로5길 33
마포구	중동	성암로5길 35
마포구	중동	성암로5길 36 (마이빌)
마포구	중동	성암로5길 37
마포구	중동	성암로5길 38 (마이빌)
마포구	중동	성암로5길 40
마포구	중동	성암로5길 42 (동도맨션)
마포구	중동	성암로5길 46
마포구	중동	성암로5길 47
마포구	중동	성암로5길 48
마포구	중동	성암로5길 49 (257다세대주택)
마포구	중동	성암로5길 50-2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중동	성암로5길 50
마포구	중동	성암로5길 51
마포구	중동	성암로5길 54 (화이트베이216)
마포구	중동	성암로7길 3 201~203동(성산2차현대아파트)
마포구	중동	성암로7길 14 (강림 월드타운)
마포구	중동	성암로7길 22 (백명 TRENDY APT)
마포구	중동	성암로9길 2-3 (The House M[夢])
마포구	중동	성암로9길 2-5
마포구	중동	성암로9길 2-8
마포구	중동	성암로9길 2-12
마포구	중동	성암로9길 2-15
마포구	중동	성암로9길 2 D동
마포구	중동	성암로9길 4 B동
마포구	중동	성암로9길 8
마포구	중동	성암로9길 10
마포구	중동	성암로9길 14
마포구	중동	성암로9길 28
마포구	중동	성암로9안길 3
마포구	중동	성암로9안길 4
마포구	중동	성암로9안길 7
마포구	중동	성암로9안길 8-5
마포구	중동	성암로9안길 8-6 A동
마포구	중동	성암로9안길 8-7
마포구	중동	성암로9안길 8-9 C동
마포구	중동	성암로9안길 8-10 B동
마포구	중동	성암로9안길 8
마포구	중동	성암로9안길 9
마포구	중동	성암로9안길 12
마포구	중동	성암로9안길 14-2
마포구	중동	성암로9안길 14-4
마포구	중동	성암로9안길 14-5
마포구	중동	성암로9안길 14-6
마포구	중동	성암로9안길 14-7
마포구	중동	성암로9안길 14-8
마포구	중동	성암로9안길 14
마포구	중동	성암로9안길 16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중동	성암로9안길 19-3 2동
마포구	중동	성암로9안길 19-4
마포구	중동	성암로9안길 19 1동
마포구	중동	성암로9안길 20
마포구	중동	성암로9안길 21 5동
마포구	중동	성암로9안길 22
마포구	중동	성암로9안길 24
마포구	중동	성암로9안길 25 A,B동(신혼빌라)
마포구	중동	성암로9안길 26 (DMC석교)
마포구	중동	성암로9안길 28 A동
마포구	중동	월드컵북로 230 (현대상가)
마포구	중동	월드컵북로 236
마포구	중동	월드컵북로26길 23-1
마포구	중동	월드컵북로26길 23-2
마포구	중동	월드컵북로26길 23
마포구	중동	월드컵북로26길 25
마포구	중동	월드컵북로26길 31 (해오름)
마포구	중동	월드컵북로26길 33 (청우하이츠빌)
마포구	중동	월드컵북로26안길 6
마포구	중동	월드컵북로26안길 8
마포구	중동	월드컵북로26안길 12
마포구	중동	월드컵북로26안길 13
마포구	중동	월드컵북로26안길 14
마포구	중동	월드컵북로26안길 15
마포구	중동	월드컵북로26안길 18
마포구	중동	월드컵북로26안길 19
마포구	중동	월드컵북로26안길 20 (해피투게더)
마포구	중동	월드컵북로26안길 21
마포구	중동	월드컵북로26안길 22 A동,B동
마포구	중동	월드컵북로26안길 23
마포구	중동	월드컵북로30길 36-1 (이젠프리텔)
마포구	중동	월드컵북로30길 36-5
마포구	중동	월드컵북로30길 36-7
마포구	중동	월드컵북로30길 38
마포구	중동	월드컵북로30길 40 (블루빌)
마포구	중동	월드컵북로30길 44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중동	월드컵북로30길 46 (미다스빌)
마포구	중동	월드컵북로30길 47
마포구	중동	월드컵북로36길 1 1~3동(시직원주택)
마포구	중동	월드컵북로36길 11
마포구	중동	월드컵북로36길 13-8 A,B동
마포구	중동	월드컵북로36길 13
마포구	중동	월드컵북로36길 15
마포구	중동	월드컵북로36길 17
마포구	중동	월드컵북로36길 19 A동
마포구	중동	월드컵북로36길 21
마포구	중동	월드컵북로36길 23-1 B동
마포구	중동	월드컵북로36길 23 A동
마포구	중동	월드컵북로36길 25
마포구	중동	월드컵북로38가길 6-1 B동
마포구	중동	월드컵북로38가길 6
마포구	중동	월드컵북로38가길 8-1 (어린이집)
마포구	중동	월드컵북로38가길 8 A동
마포구	중동	월드컵북로38가길 10
마포구	중동	월드컵북로38가길 12 라동
마포구	중동	월드컵북로38가길 14 다동
마포구	중동	월드컵북로38가길 16 나동
마포구	중동	월드컵북로38가길 18 가동
마포구	중동	월드컵북로38가길 20 101,102동(계룡아파트101동)
마포구	중동	월드컵북로38가길 22-5 (수풍아파트)
마포구	중동	월드컵북로38가길 22 (계룡아파트상가동)
마포구	중동	월드컵북로38가길 24-1 B동
마포구	중동	월드컵북로38가길 24
마포구	중동	월드컵북로38가길 26 A동
마포구	중동	월드컵북로38가길 28
마포구	중동	월드컵북로38길 8
마포구	중동	월드컵북로38길 14
마포구	중동	월드컵북로38길 21 (한국우진학교)
마포구	중동	월드컵북로38길 25 (중암중학교)
마포구	중동	월드컵북로38길 26 (신북초등학교)
마포구	중동	월드컵북로38길 45
마포구	중동	월드컵북로38길 48 (월드컴참누리아파트 상가동)

구	동	도로명 주소
마포구	중동	월드컵북로38길 53 101~109동(월드컵참누리아파트)
마포구	중동	월드컵북로38나길 9 상가동(현대아파트)
마포구	중동	월드컵북로38나길 25
마포구	중동	월드컵북로38나길 27 (공원주택)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 193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 212 (대한예수교장로회 서부교회)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 216 101~106동(DMC SK VIEW)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 216 201,202동(DMC SK VIEW)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 217 (디엠씨 자이1단지)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 220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 222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 224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 226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 228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 229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 232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 234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 235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 236-1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 236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 236 (수색제일주유소)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 238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 240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 242-1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 242-2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 242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 245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 246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 248 (수색우체국)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 249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 250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 253 (수색역 펌프실)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 255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 256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 257 (모레내목재)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 260-1

구	동	도로명 주소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 260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 261-1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 261 (수색치안센터)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 262-1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 262-2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 262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 264-1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 264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 266-1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 266-6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 266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 268-2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 268-4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 268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 269-28 (미오당)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 269-46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 269-50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 270-1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 270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 271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12길 1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12길 2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12길 4-1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12길 4 (세원빌라)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14길 5-3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14길 5-5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14길 6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16길 3-1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16길 3-2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16길 3-3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16길 3-4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16길 3-5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16길 3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16길 4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16길 5-1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16길 5

구	동	도로명 주소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16길 6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16길 7-1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16길 7-2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16길 7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16길 8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16길 9-2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16길 9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 3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 5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 6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 7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 8-6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 8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 15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 16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 27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 27 102동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 28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 32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 34-4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 34-6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 34-8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 34-10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 34-12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 34-13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 34-16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 34-18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 34-20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 50-35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2길 1-7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2길 1-11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2길 1-13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2길 1-14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2길 1-15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2길 1-16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2길 1-18

구	동	도로명 주소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2길 1-19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2길 1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2길 5-2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2길 7-1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2길 7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2길 9-3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2길 9-5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2길 9-6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2길 9-7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2길 9-8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2길 9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2길 11-5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2길 11-12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2길 11-14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2길 11-16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2길 11-18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2길 11-20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2길 11-22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2길 11-24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2길 11-25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2길 11-26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2길 11-27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2길 11-28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2길 11-30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2길 11-32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2길 11-34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2길 11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2길 13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2길 15-1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2길 15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2길 18-3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2길 18-5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2길 18-6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2길 18-7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2길 18-8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2길 18-9

구	동	도로명 주소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2길 18-10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2길 18-13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2길 18-14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2길 18-16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2길 18-20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2길 18-22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2길 18-24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2길 18-28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2길 18-30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2길 18-32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2길 18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2길 21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로2길 21 A,B동
은평구	수색동	증산로1길 26 101~103동(DMC청구아파트)
은평구	증산동	수색로 175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은평구	증산동	수색로 188
은평구	증산동	수색로 190 (빌딩)
은평구	증산동	수색로 191
은평구	증산동	수색로 194
은평구	증산동	수색로 195
은평구	증산동	수색로 199 (신흥에너지산업)
은평구	증산동	수색로 200 101~103동(DMC센트럴자이)
은평구	증산동	수색로 200 201~206동(DMC센트럴자이)
은평구	증산동	수색로 200 301~304동(DMC센트럴자이)
은평구	증산동	수색로 200 401동(DMC센트럴자이)
은평구	증산동	수색로 205 (대왕보링)
은평구	증산동	수색로 205 (대왕보링(주))
은평구	증산동	수색로 217-1 (디엠씨 자이2단지(DMC 자이2단지))
은평구	증산동	증산로 209
은평구	증산동	증산로 221 (DMC덕원아파트)
은평구	증산동	증산로 231
은평구	증산동	증산로 233
은평구	증산동	증산로 235
은평구	증산동	증산로 237-1 (월드메르시안아파트)
은평구	증산동	증산로 241
은평구	증산동	증산로 245 (미그린아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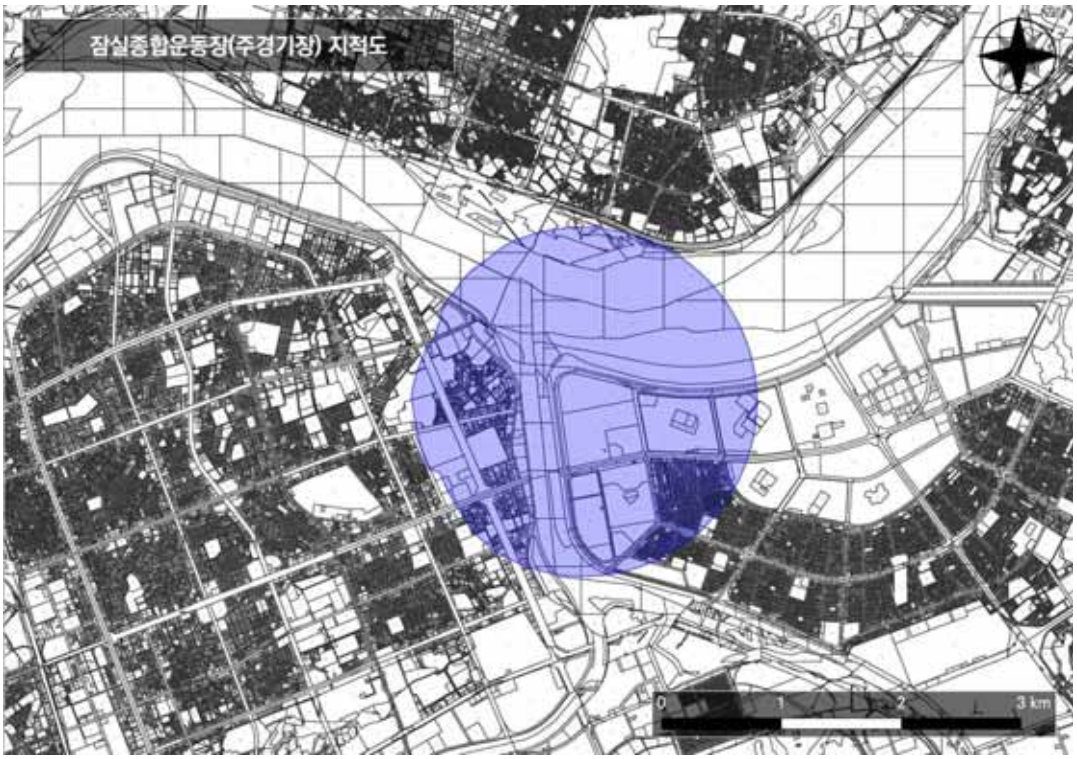
구	동	도로명 주소
은평구	증산동	증산로 249
은평구	증산동	증산로 251
은평구	증산동	증산로 253
은평구	증산동	증산로 255 (한성벨라루체)
은평구	증산동	증산로 257
은평구	증산동	증산로 261-3
은평구	증산동	증산로 261-5
은평구	증산동	증산로 261-6 (삼성베스트빌아파트)
은평구	증산동	증산로1길 4
은평구	증산동	증산로1길 6-10
은평구	증산동	증산로1길 6-12
은평구	증산동	증산로1길 6-14 A,B동
은평구	증산동	증산로1길 6-20 (월드메르시안아파트)
은평구	증산동	증산로1길 7-14 나동
은평구	증산동	증산로1길 7-18 (신성)
은평구	증산동	증산로3길 3
은평구	증산동	증산로3길 4
은평구	증산동	증산로3길 5-5
은평구	증산동	증산로3길 5-7
은평구	증산동	증산로3길 5-11 (월드파크빌)
은평구	증산동	증산로3길 5-15 (청운아파트)
은평구	증산동	증산로3길 5-21 101동(선정아파트)
은평구	증산동	증산로3길 6 (VISARIM빌딩)
은평구	증산동	증산로3길 8-15
은평구	증산동	증산로3길 8-16 (선정 아파트)
은평구	증산동	증산로3길 8-17
은평구	증산동	증산로3길 8-19
은평구	증산동	증산로3길 8-20
은평구	증산동	증산로3길 8-21
은평구	증산동	증산로3길 8-22
은평구	증산동	증산로3길 8-23
은평구	증산동	증산로3길 8-24
은평구	증산동	증산로3길 8-25 (미라벨)
은평구	증산동	증산로3길 8-26
은평구	증산동	증산로3길 8
은평구	증산동	증산로3길 1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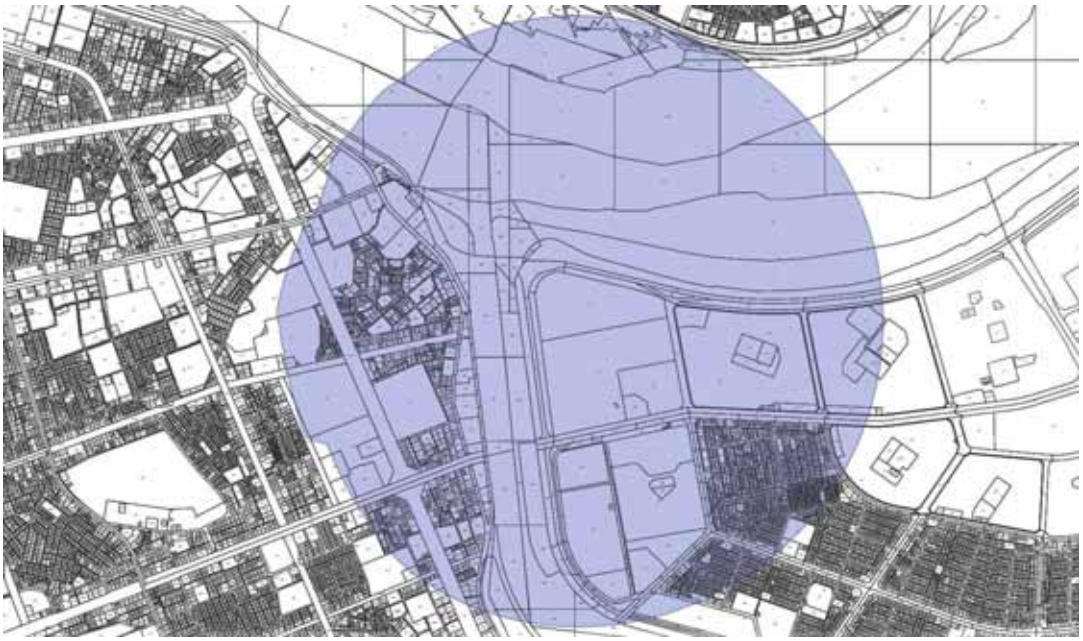
구	동	도로명 주소
은평구	증산동	증산로3길 12-15
은평구	증산동	증산로3길 12-18
은평구	증산동	증산로3길 12-19 (명지베스트빌)
은평구	증산동	증산로3길 12-20
은평구	증산동	증산로3길 12-21
은평구	증산동	증산로3길 12-22
은평구	증산동	증산로3길 12-23
은평구	증산동	증산로3길 12-24
은평구	증산동	증산로3길 12-25
은평구	증산동	증산로3길 12 (증산시장)
은평구	증산동	증산로3길 26-1 (DMC우방)
은평구	증산동	증산로3길 26-1 101~103동(DMC우방)
은평구	증산동	증산로5길 27-30 (증산중학교)
은평구	증산동	증산서길 14-7
은평구	증산동	증산서길 14-11
은평구	증산동	증산서길 14-15
은평구	증산동	증산서길 14-23
은평구	증산동	증산서길 14
은평구	증산동	증산서길 20-6
은평구	증산동	증산서길 20-6 (경부교통)
은평구	증산동	증산서길 20-22 가동
은평구	증산동	증산서길 20 (천주교교회)
은평구	증산동	증산서길 53-9 (서부동산교회)
은평구	증산동	증산서길 58-1
은평구	증산동	증산서길 58
은평구	증산동	증산서길 60
은평구	증산동	증산서길 61 (증산초등학교)
은평구	증산동	증산서길 62
은평구	증산동	증산서길 64-6
은평구	증산동	증산서길 64-8 (삼봉빌딩)
은평구	증산동	증산서길 64-14 (삼우빌딩)
은평구	증산동	증산서길 64-17

(붙임 2)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소음영향지역 지정 현황

○ 잠실종합운동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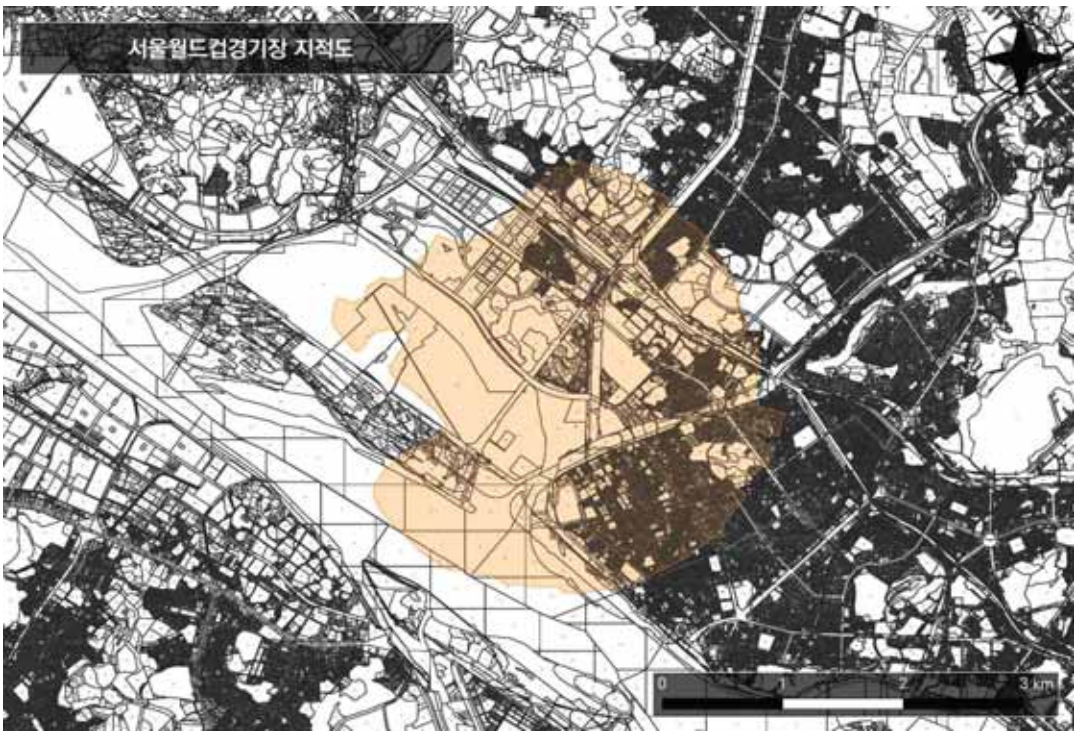


○ 목동운동장





○ 서울월드컵경기장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548호

목4동 728-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4동 728-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지정을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 목4동 728-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나.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구분	위치	관리계획 요건	노후·불량건축물	비고
기준	양천구 목4동 728-1번지 일대	대상 지역의 면적이 10만㎡ 미만일 것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
현황		27,139.0㎡	전체: 105동 노후·불량: 69동(65.7%)	-

다. 정비방향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계획을 통해 저층 노후 주거지의 계획적 공동개발 유도

2.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가. 관리지역의 지정

○ 관리지역의 지정 조서

구분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	목4동 728-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양천구 목4동 728-1번지 일대	-	증)27,139.0㎡	27,139.0㎡	-

○ 관리지역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명칭	결정 내용	결정 사유
-	목4동 728-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위치: 양천구 목4동 728-1번지 일대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면적: 27,139.0㎡	• 노후·신축건축물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 계획적·효율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과 정비기반시설 등의 확보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도모

나. 토지이용계획(안)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27,139.0	100.0	-
사업가능구역	공동주택 용지	A1	사업가능1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2,411.6	45.7	-
		A2	사업가능2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0,386.4	38.3	-
	정비기반시설	-	도 로	1,157.0	4.3	-
		C1	주 차 장	(1,200.0)	-	공공청사 하부 중복결정
	정비기반시설 외	C1	공공청사	1,200.0	4.4	주민센터
사업가능구역 외		B1	종교용지	1,005.2	3.7	성 당
		-	도 로	978.8	3.6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조합설립 등 단계에서 주민의견에 따라 사업가능구역이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차장·공공청사(중복결정)의 규모 및 사업 시기 등 세부 추진계획은 사업승인 시 관련 지자체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

다.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안)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	-	-	8	-	-	-	-	-	건설부고시 제3006호 ('66.12.28.)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한 도로확폭
변경	소로	1	1	10	국지도로	258	목동 734-23	목동 725-3	일반 도로		
기정	-	-	-	6	-	-	-	-	-	건설부고시 제3006호 ('66.12.28.)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한 도로확폭
변경	소로	2	1	6~8	국지도로	245	목동 734-14	목동 729-19	일반 도로		
기정	-	-	-	6	-	-	-	-	-	건설부고시 제3006호 ('66.12.28.)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한 도로확폭
변경	소로	2	2	8	국지도로	112	목동 728-21	목동 728-31	일반 도로		
기정	-	-	-	6	-	-	-	-	-	건설부고시 제3006호 ('66.12.28.)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한 도로확폭
변경	소로	2	3	6~8	국지도로	107	목동 729-1	목동 729-19	일반 도로		
기정	-	-	-	6	-	-	-	-	-	건설부고시 제3006호 ('66.12.28.)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한 도로확폭
변경	소로	3	1	6	국지도로	28	목동 728-28	목동 728-8	일반 도로		
폐지	-	-	-	6	-	-	-	-	-	건설부고시 제3006호 ('66.12.28.)	목동중앙남로 3가길
폐지	-	-	-	6	-	-	-	-	-	건설부고시 제3006호 ('66.12.28.)	목동중앙남로 3가길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 1-1	• 도로번호·시종점 부여 및 도로 확폭	• 대상지 일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지역으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번호와 시종점을 부여함 •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후 원활한 교통체계 유지를 위해 도로 폭원을 확보함
-	소로 2-1	• 도로번호·시종점 부여 및 도로 확폭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 2-2	• 도로번호·시종점 부여 및 도로 확폭	
-	소로 2-3	• 도로번호·시종점 부여 및 도로 확폭	
-	소로 3-1	• 도로번호·시종점 부여	
-	-	• 폐지	• 공동주택용지 편입으로 인해 도로 폐지함
-	-	• 폐지	

◯ 주차장 계획(안)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C1	주차장	목동 734-33	-	증)1,200.0	1,200.0	-	- 지상: 공공청사 - 지하: 주차장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향후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인근 개발사업과 주차 수요, 사업시행구역 조정 등을 고려하여 공영주차장 계획 조정
※ 주차장·공공청사(중복결정) 시설물의 규모 및 사업시기 등 세부 추진계획은 사업승인 시 관련 지자체 협의를 통해 조정

◯ 주차장 계획(안)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결정사유
C1	주차장	• 지역 주민과 기존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이용 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신설 - 규모: 지하 2개층, 약 40면, 연면적 약 2,070㎡ • 공공청사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효율적 토지이용을 도모 • 주차장 건립을 위한 세부 건축계획(안)은 추후 자치구 협의를 통해 마련

◯ 공공청사 계획(안)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C1	공공 청사	목동 734-33	-	증)1,200.0	1,200.0	-	- 지상: 공공청사 - 지하: 주차장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주차장·공공청사(중복결정) 시설물의 규모 및 사업시기 등 세부 추진계획은 사업승인 시 관련 지자체 협의를 통해 조정

○ 공공청사 건축물의 범위

구분	도면표시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수)	비고
신설	C1	60%	200%	7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공공청사 계획(안)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결정사유
C1	공공청사	• 노후화되고 면적이 협소해 이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목4동 주민센터를 이전 · 신축하기 위해 공공청사 부지로 계획 • 공공청사 건립을 위한 세부 건축계획(안)은 추후 자치구에서 마련

○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중복결정 내용	중복결정 사유
C1	주차장 공공청사	공공청사 하부에 주차장 신설	• 목4동 주민센터 이전 · 신축을 위한 공공청사 부지와 지역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안)

구분	세대수	설치기준	비고
사업가능1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427세대	세대당 2.5㎡ x 1.25 이상 설치	구역 내
사업가능2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345세대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제8조의4(주민공동시설) 1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수준

구분	시설유형	사유
권장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놀이터, 공동체육시설, 화장실,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공동작업장, 상생공방, 돌봄센터, 독서실, 서울형 키즈카페 등	• 모아타운 내 부족한 시설을 고려하여 사업가능구역 내 공동이용시설 조성 • 목사랑전통시장 인근에 시장과 연계될 수 있는 용도의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조성

라. 교통처리 계획(안)

구분	시설유형	사유
차량진출입구간	• 목동중앙남로5길(8m) • 목동중앙남로9가길(8m)	• 원할한 교통흐름과 강서고등학교 주변 보행 안전을 위해 확폭 계획한 목동중앙남로 5길,목동중앙남로 9가길 변으로 공동주택 및 공공청사 차량 진출입 입구 배치

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안)

구분				면적(㎡)	시행자	추진 단계	비고
합 계				25,155.0 (27,139,0)	-	-	-
사업가능1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목4동 732-1 일대	소 계		14,116.7	-	-	-
		A1	공동주택 용지	12,411.6			
		-	도로	505.1			
		C1	주차장 · 공공청사	1,200.0			
사업가능2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목4동 728-1 일대	소 계		11,038.3	-	-	-
		A2	공동주택 용지	10,386.4			
		-	도로	651.9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 )는 모아타운 면적임
※ 조합설립 등 단계에서 주민의견에 따라 소규모주택 관리계획 변경 신청 시 사업가능구역이 변동될 수 있음

바. 기타(건축협정)에 관한 계획(안)

사업 구역	면적(㎡)	설치 기준		비고
		통합 적용	완화 적용	
사업가능1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4,116.7	대지의 조경(제42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제44조), 지하층의 설치(제53조), 건폐율(제55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주차장법」 제19조) 등	대지의 조경(제42조), 건폐율(제55조), 용적률(제56조), 건축물의 높이제한(제6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제61조)	구역 내
사업가능2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1,038.3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사. 건폐율 · 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계획(안)

구분	내용		적용 구역
사업가능구역	건폐율	50% 이하	A1, A2
		60% 이하	C1
	용적률	기준(상향) 250% 이하 / 상한 300% 이하	A1, A2
		기준 200% 이하	C1
	높이	용도지역 층수 기준 적용	A1, A2, C1
서업가능구역 외	건폐율	60% 이하	B1
	용적률	기준 200% 이하	
	높이	용도지역 층수 기준 적용	

※ 기준용적률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에 따른 용적률
※ 기준(상향)용적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4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된 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법적상한용적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8조 및 제43조의4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시에는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용적률을 정할 수 있음

아.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용도 ·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안)

○ 건축물의 용도계획(안)

구분		계획 내용	비고
A1, A2	유 형	• 공동주택 용지	-
	허 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제2조 13호, 14호에 의한 부대 · 복리시설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44조 공동이용시설	
	불 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건축선 등 계획(안)

구분	적용 지역	계획 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관리지역 전체	• 대지 경계로부터 건축한계선 3m	•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연계하여 쾌적한 보행 공간 조성
저층부 가로활성화시설 배치구간	목동중앙남로3가길	• 주가로 및 생활가로 저층부로 연도형 가로활성화시설 배치 • 가로활성화시설 권장용도 배치 - 「주택법」 제2조제13호,제14호에 의한 부대 · 복리시설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44조 공동이용시설	• 주가로와 생활가로 활성화를 위한 저층부 근린생활시설 · 공동이용시설 배치 유도
기타 사항	목동중앙남로5길, 목동중앙남로9길	• 커뮤니티가로 저층부에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배치 권장 • 시장과 인접한 커뮤니티가로 저층부에 시장기능 지원 용도의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배치 권장	• 커뮤니티가로 활성화를 위한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배치 유도 • 시장과 조화를 이루고 연계될 수 있는 모아타운 조성

자.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계획(안)

구분		위치	기존 세대수	전체 세대수	임대주택 세대수	일반분양	비고 (임대비율)
도면 표시	사업 구역						
합 계			538	772	212	560	27.5%
A1	사업가능1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목4동 732-1 일대	319	427	104	323	24.4%
A2	사업가능2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목4동 728-1 일대	219	345	108	237	31.3%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임대주택 인수예정자와 협상을 통해 결정
※ 개별 사업시행계획(안) 통합심의 시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한여 제출(가로주택정비사업형에 한함)

차.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안)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안)	변경후		
합 계	27,139.0	-	27,139.0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27,139.0	감) 22,798.0	4,341.0	16.0	도로, 주차장 · 공공청사 종교시설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22,798.0	22,798.0	84.0	공동주택용지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카.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계획(안)

○특별건축구역 지정 결정 조서

구분	위치	면적(㎡)	특례 사항	완화 적용	비고
사업가능1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목4동 732-1 일대	14,116.7	•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 인접한 사업구역간 통합적·효율적 건축계획 도모 • 경관 특화를 위한 창의적인 배치 및 건축물 계획 유도	-
사업가능2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목4동 728-1 일대	11,038.3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적용배제 또는 완화사항

구분	내용
건축법	대지의 조경(제42조), 건축물의 건폐율(제55조), 건축물의 용적률(제56조), 대지 안의 공지(제58조), 건축물의 높이제한(제6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61조)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동주택의 배치(제10조), 기준척도(제13조), 비상급수시설(제35조), 난방설비 등(제37조)

타. 공공이 시행하는 사업과의 연계 계획(안) : 해당 없음

파. 경미한 변경에 관한 계획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면적을 100분의 5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 사업시행기간을 계획된 기간의 3년 이내에서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경우
-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을 법 제43조의3제5호 및 제7호의 사항을 완화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 계산착오·오기·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관련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4. 관계도서

○ 서울특별시 전략주택공급과(☎02-2133-8240) 및 양천구 재건축사업과(☎02-2620-3457)에 비치·열람하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관리계획 및 관리지역 결정도

○ 관리지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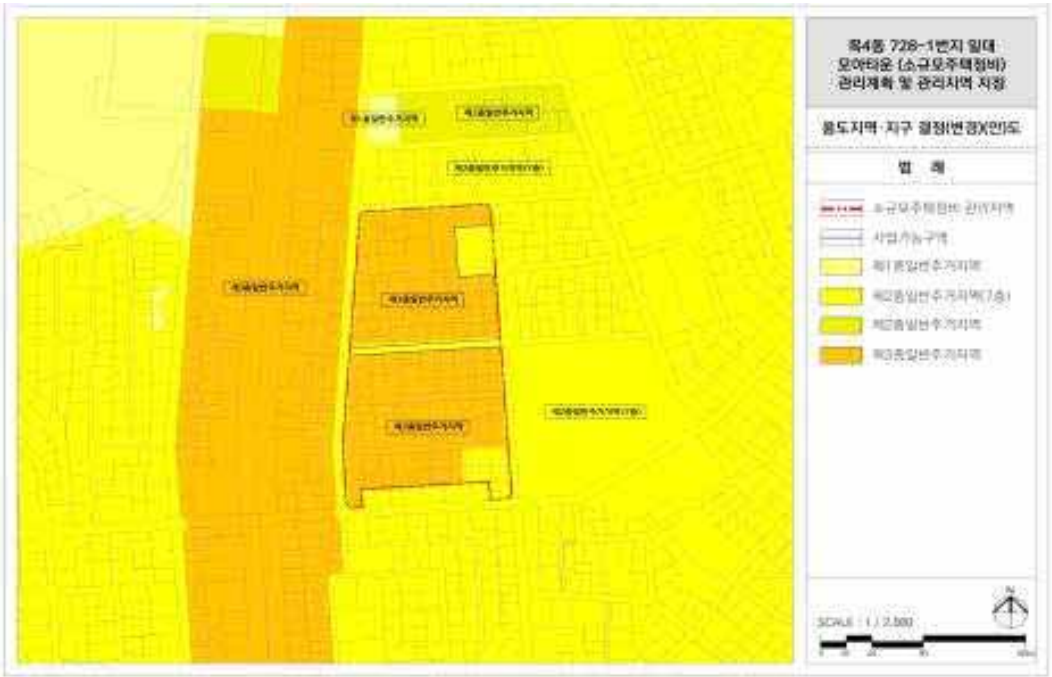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안)



○ 용도지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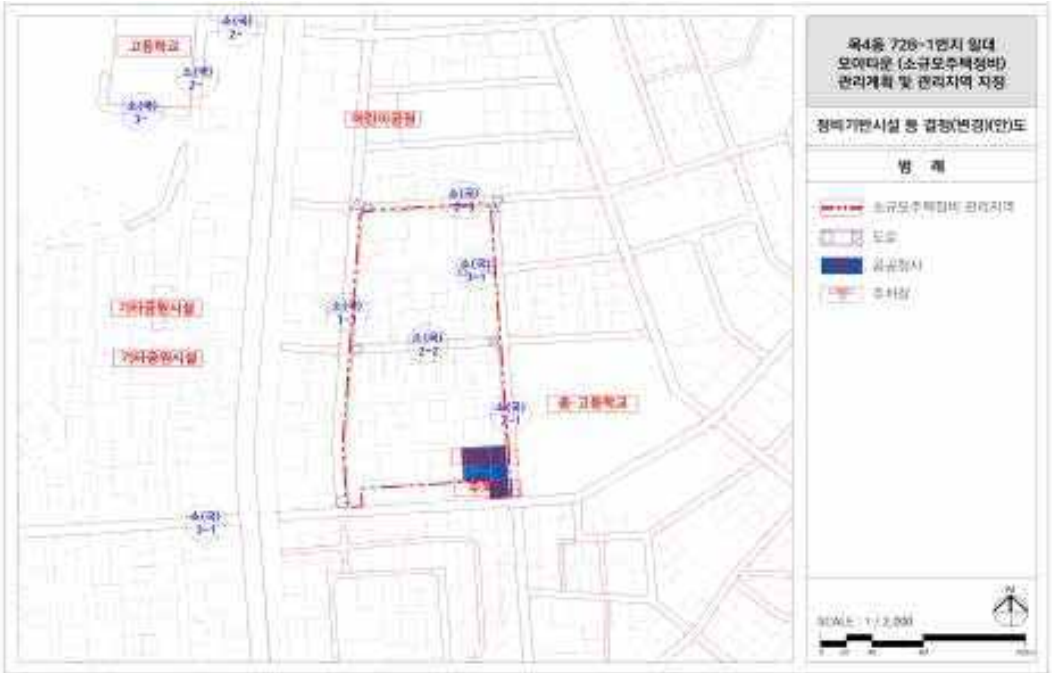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변경)



○ 정비기반시설 결정도(기정)



○ 정비기반시설 결정도(변경)



○ 건축물의 주용도 및 규모 결정도



○ 건축물 배치 및 기타사항 결정도



○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549호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연장 통지

올해 10월 추석 연휴가 장기간 이어짐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제7조의 규정에 의해,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기한연장 통지
 가. 관련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나. 대상 세목: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 종업원분
 다. 신고·납부 기한연장

당 초	변 경
2025. 10. 10.(금)	2025. 10. 15.(수)

2. 위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울시청 세무과(☏02-2133-34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55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용산구 이촌동 302-6번지 일대 노들섬에 대하여 2025년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25.7.2.)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 취지

○ 노들섬의 기존 복합문화시설을 문화예술중심 공간으로 특화함으로써 노들섬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문화명소로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결정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도로)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 조서 : 신설

1)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A	문화시설	문화시설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2-6번지 일원	-	증) 60,818.4	60,818.4	-	도로 중복결정 (7,153㎡)

2)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A	문화시설	○ 신설 - 면적 : 60,818.4㎡ - 주용도 : 문화시설	○ 노들 글로벌 예술섬으로서 정체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문화중심공간 및 세계적인 문화명소로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신설코자 함 ※ 일체화된 복합문화시설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공중정원 설치로 도로와 중복결정

3) 건축물의 범위

구분	시설명	위치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신설	문화시설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2-6번지 일원	60% 이하	60% 이하	55.65m 이하	-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 변경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가1	42~51	간선 도로	155	한강대교 노들섬하단	한강대교 노들섬상단	일반 도로	한강 대교	2010.2.18. (서고 제48호)	문화시설 중복결정 (7,153㎡)

3. 관계도면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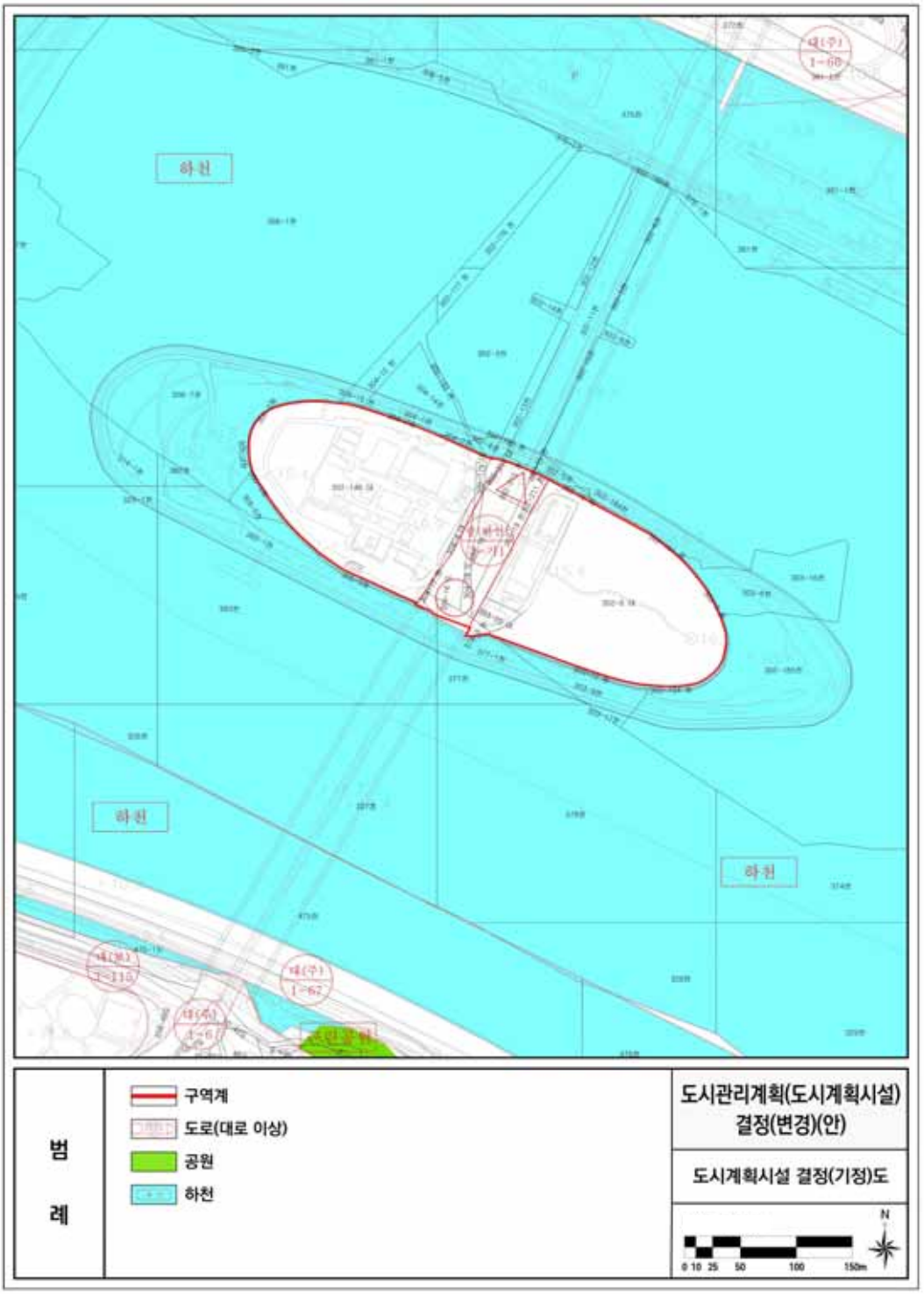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관계도서 열람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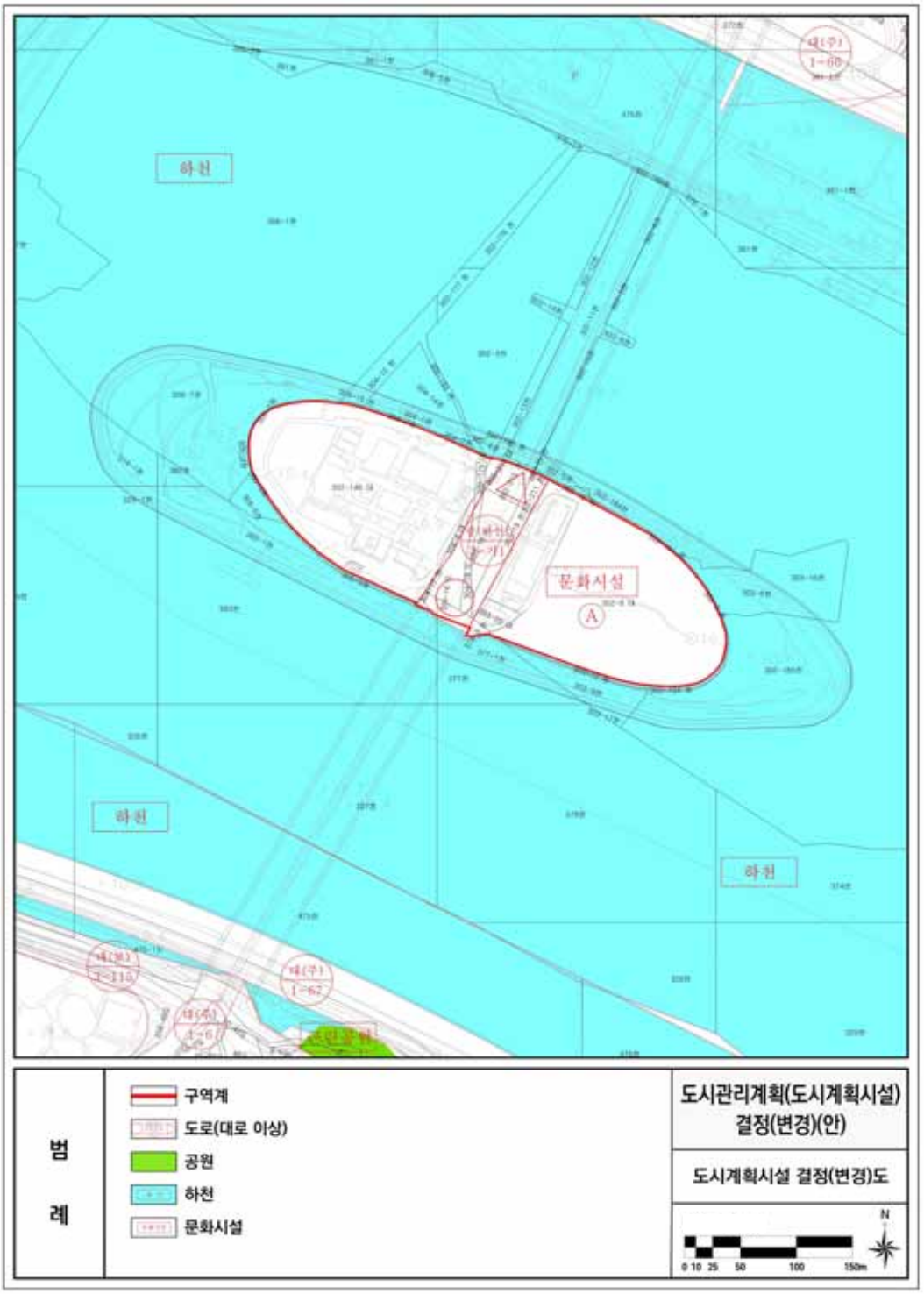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1층 (☏2133-8412)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도(기정)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도(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551호

본동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47번지 일대(이하 '본동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제101조의3,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5.7.18.)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본동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동작구 본동 47번지 일대	-	증) 51,696.0	51,696.0	-

2.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합계		51,696.0	100.0	-
정비기반시설 등	소계	12,989.2	25.1	-
	공원	7,897.7	15.3	세대당 3㎡ (3,240.0㎡)
	도로	5,091.5	9.8	-
획지	소계	38,706.8	74.9	-
	공동주택용지	38,706.8	74.9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포함

※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은 17세대 기부채납(환산면적 1,124.6㎡) 부담으로 하며, 정비기반시설 면적 산정에서 제외함 (향후 사업시행인가 시 대상지 감정평가를 통해 면적 최종 확정)

※ 건축물 기부채납은 신축 근린생활시설 내 지상 2층 ~ 3층부 건축물 기부채납(연면적 500.0㎡, 환산면적 287.5㎡) 부담으로 하며, 정비기반시설 면적 산정에서 제외함 (향후 사업시행인가 시 대상지 감정평가를 통해 면적 최종 확정)

3.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계획(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1,696.0	-	51,696.0	10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17,062.9	감) 7,703.7	9,359.2	18.1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30,400.7	감) 28,753.4	1,647.3	3.2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7,703.7	7,703.7	14.9	-
제3종일반주거지역	3,836.3	증) 28,753.4	32,589.7	63.0	-
일반상업지역	396.1	-	396.1	0.8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동작구 본동 39-2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703.7	• 지역 여건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획지 용도지역 상향
동작구 본동 49-20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28,753.4	• 지역 여건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획지 용도지역 상향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 : 해당사항 없음

4.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토지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은 정비구역 지정도서 참조)

가. 추정 비례율 산출근거

구분	항목			금 액(천원)
수입	합계			966,452,379
	분양주택	토지등소유자	455세대	489,034,037
		일반	373세대	409,751,120
	공공임대	재개발의무	141세대	43,678,450
		국민주택규모주택	94세대	11,849,572
		기부채납임대	17세대	-

구분	항목		금 액(천원)
	기타시설	근린생활시설	12,139,200
	매출부가세		-
	기타수입		-

구분	항목	금 액(천원)
지출	합계	508,658,905
	공사비	360,517,814
	보상비	28,117,125
	관리비	833,715
	설계비	13,998,556
	감리비	7,487,262
	부대경비	84,382,248
	수수료	13,322,185
종전자산추산액		383,427,304
추정비례율	119.40% = [총수입(9,664.5억원)-총지출(5,086.5억원)] ÷ 종전자산(3,834.2억원)	

※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공사비 및 분양가 변동표

비례율 변화표		변동률	공사비				
			-10%	-5%	0%(기준)	5%	10%
변동률		평균단위단가 (만원/3.3㎡)	495	523	550	578	605
분양가 (84형 일반분양가 기준)	10%	40,525	151.49%	146.69%	141.90%	137.11%	132.32%
	5%	38,683	140.23%	135.44%	130.65%	125.86%	121.06%
	0%(기준)	36,841	128.98%	124.19%	119.40%	114.60%	109.81%
	-5%	34,999	117.73%	112.93%	108.14%	103.35%	98.56%
	-10%	33,157	106.47%	101.68%	96.89%	92.10%	87.30%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2	65	40~58	주간선	1,400	노량진수원지	상도동 광장	일반도로	-	'78.6.15	양녕로
변경	광로	2	65	40~61	주간선	1,400	노량진수원지	상도동 광장	일반도로	-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6	35~45	주간선	4,730	한강대교남단	서울대교남단	일반도로	-	건고 349 ('79.9.4)	양녕로
변경	대로	1	6	35~48	주간선	4,730	한강대교남단	서울대교남단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	4	국지	90	본동19-66	본동24-2	일반도로	-	동작구고시 제2012-5호 ('12.1.12)	일부폐지, 선형변경
변경	소로	3	-	4	국지	45	본동25-7	본동24-2	일반도로	-		
신설	소로	2	1	8	국지	273	본동13-3	본동50-65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2	2	9	국지	50	본동19-66	본동24-54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1	6~8	국지	221	본동42-8	본동47	일반도로	-	-	-

■ 도로 결정 사유서

구분	도로명	위치	결정사유	비고
변경	광로 2-65	기점: 노량진수원지 종점: 상도동 광장	• 대상지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 차로 확폭 - 폭원 58m → 61m / 연장 20m	-
변경	대로 1-6	기점: 한강대교남단 종점: 서울대교남단	• 대상지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 차로 확폭 - 폭원 45m → 48m / 연장 50m	-
변경	소로 3-	기점: 본동25-7 종점: 본동24-2	• 대상지의 원활한 진출입과 도로확폭을 위해 일부구간 폐지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라 도로선형 변경	-
신설	소로 2-1	기점: 본동 13-3 종점: 본동 50-65	• 현황 노량진로26길 폐지에 따른 우회도로 신설	-
신설	소로 2-2	기점: 본동 47 종점: 본동 48	• 대상지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도로 신설	-
신설	소로 3-1	기점: 본동 42-8 종점: 본동 47	• 동측 현황도로(노량진로30길) 대상지 내 확폭 및 도시계획도로 지정	-

2)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주차장	본동 47-14일대	-	증) 554.6	554.6	-	공원④ 중복결정

■ 주차장 결정 사유서

구분	시설명	위치	결정사유	비고
①	주차장	본동 47-14일대	• 지역주민, 용양봉저정 외부이용객 등 주차이용 편의 제공	-

나. 공간시설

1)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원	어린이 공원	본동 50-16일대	-	증) 1,647.3	1,647.3	-	-
신설	②	공원	소공원	본동 37-1일대	-	증) 4,044.6	4,044.6	-	-
신설	③	공원	소공원	본동 19-12일대	-	증) 1,651.2	1,651.2	-	-
신설	④	공원	소공원	본동 47-14일대	-	증) 554.6	554.6	-	주차장 중복결정

■ 공원 결정 사유서

구분	시설명	위치	결정사유	비고
①	어린이공원	본동 50-16일대	• 본동초등학교 및 본동어린이공원과 연계한 어린이공원 신설	-
②	소공원	본동 37-1일대	• 대상지 주변 용양봉저정공원~안산~고구동산의 단절될 녹지축을 연결하는 공원조성	-
③	소공원	본동 19-12일대	• 대상지 주변 용양봉저정공원~안산~고구동산의 단절될 녹지축을 연결하는 공원조성	-
④	소공원	본동 47-14일대	• 지역주민, 용양봉저정 외부이용객 등을 고려한 공원조성	-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학교	중학교	본동21번지 일원	14,234.0	감) 483.0	13,751.0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고시 제1987-5호('87.2.21)	-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시설명	위치	결정사유	비고
변경	학교	본동 21번지 일원	• 본동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 편입된 학교시설 폐지	-

※ 본동 19-12, 19-52, 21-4, 22-1 필지 본동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 편입

2) 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사회 복지시설	-	본동 47일대	-	증) 지상2층: 250.0 증) 지상3층: 250.0	지상2층: 250.0 지상3층: 250.0	• 입체적 결정 범위 - 설치연면적 : 500.0㎡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층별 면적은 시설의 전용·공용·부대시설 등을 합한 면적이고, 향후 건축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의 성능수준, 설비, 세부용도 등은 서울시, 동작구와 협의하여 착공 시 확정하며, 사회복지시설은 준공 시 서울시에 기부채납(대지지분 포함)

■ 사회복지시설 결정 사유서

구분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신설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 지상2~3층 - 연면적 : 500.0㎡	• 지역 내 필요한 생활SOC 시설을 복합 조성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신설 • 구역 내 공공시설로 기부채납(대지지분 포함)하는 건축물은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법 정		계획면적(㎡)
			기 준	면적(㎡)	
주민공동시설	합 계	-	1,000세대 이상 : [500㎡+(2㎡×세대수)]X1.25	3,247.5	4,150.0
	경로당	지상	1,000 ~ 1,500세대 이상	375.0	400.0
	어린이집	지상		580.0	600.0
	작은도서관	지하		203.0	250.0
	주민공동시설	지하	-	-	1,300.0
	어린이 놀이터	옥외시설	-	-	1,000.0
	주민운동시설	옥외시설	-	-	600.0
근린생활시설		지상	-	-	2,470.0
관리사무실		지하	10+(세대수-50)X0.05 이상	61.0	150.0

※ 서울시 주택조례 제8조의4 및 별표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및 제55조의2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변경 될 수 있음

7. 기존건축물의 정비 · 개량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본동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51,696.0	-	38,706.8	동작구 본동 47번지 일대	227	-	-	227	-	

8. 건축물에 관한 계획

가.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최고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설	본동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51,696.0	-	38,706.8	동작구 본동 47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2.0 이하	기준 194.7 허용 221.9 상한 246.7 법적상한 292.7	150m 이하 (41층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규모 : 총 1,080세대 (조합원 분양분 455세대 + 일반분양 373세대 + 공공임대 252세대) ※ 세대수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최고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구분		세대수(세대)	비율(%)
합계		1,080	-
공동주택 (조합원 분양분)	소계	455	100.0
	59A type (전용 59.98㎡)	25	5.5
	59B type (전용 59.93㎡)	25	5.5
	59C type (전용 59.93㎡)	41	9.0
	84A type (전용 84.62㎡)	110	24.2
	84B type (전용 84.78㎡)	118	25.9
	102A type (전용 102.97㎡)	54	11.9
	102B type (전용 102.96㎡)	82	18.0
공동주택 (분양)	소계	373	100.0
	59A type (전용 59.98㎡)	17	4.6
	59C type (전용 59.93㎡)	171	45.8
	84A type (전용 84.62㎡)	60	16.1
	84B type (전용 84.78㎡)	52	13.9
	102B type (전용 102.96㎡)	73	19.6
공동주택 (공공임대)	소계	252	100.0
	39A type (전용 39.92㎡)	63	25.0
	59A type (전용 59.98㎡)	69	27.4
	59B type (전용 59.93㎡)	20	7.9
	59C type (전용 59.93㎡)	100	39.7

-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80%이상
- 임대주택건설 :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40㎡ 이하 공급

심의완화 사항

-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기준용적률 완화
  - 기준용적률 10% 상향
- 허용용적률 (20.0%) : 공공보행통로, 열린단지, 우수디자인+장수명주택, 방재안전, 보정계수 적용
- 사업성보정계수 적용: 1.36
  - 서울시 평균공시지가 / 대상지 평균 공시지가 = 5,861,129 / 4,308,123 = 1.36
- 용도지역은 공공재개발사업 공적지원(국토부 보도자료('20.6.16)) 및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상향 가능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법적상한 용적률 적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양녕로변 10m / 그 외 인접 대지경계로부터 3m

나. 용적률에 관한 계획

<table>
<tr><th>구분</th><th colspan="7">산정내용</th></tr>
<tr><td rowspan="2">토지
이용
계획
(㎡)</td><td>구역면적
(㎡)</td><td>획지(㎡)</td><td>신설 기반시설
(토지 및 지분)
(㎡)</td><td>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td><td>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td><td>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td><td>대지 내
폐지되는 기존
국·공유지
면적(㎡)</td></tr>
<tr><td>51,696.0</td><td>38,706.8</td><td>13,572.1</td><td>643.1</td><td>186.1</td><td>2,140.0</td><td>7,281.0</td></tr>
<tr><td>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td><td colspan="7">•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등 면적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 대지 내 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면적
= 13,572.1㎡+643.1㎡+186.1㎡−2,140.0㎡− 7,281.0㎡ = 4,980.3㎡
▶ 순부담률 : [(13,572.1㎡+643.1㎡+186.1㎡) − 9,421.0㎡] /
[(38,706.8㎡+13,572.1㎡−481.5㎡−101.4㎡ +643.1㎡+186.1㎡) − 9,421.0㎡] × 100 = 11.5%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순부담률 = 순부담면적 / 용도지역상향 면적 × 100
= {(13,572.1㎡+643.1㎡+186.1㎡) − 9,421.0㎡} / 36,457.1㎡ × 100 = 13.6%</td></tr>
<tr><td>기준
용적률</td><td colspan="7">• 194.7%(가중평균, 소형주택 공급으로 인한 기준용적률 10% 완화)
= (7,703.7 x 150%) + (27,812.0 x 190%) + (2,983.6 × 210%) + (207.5 × 400%) ÷ 38,706.8 = 184.7%
• 기준용적률 완화적용 : 184.7% + 10%(소형주택 공급) = 194.7%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0% + 10%(소형주택 공급) = 160.0%
-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 193.3% + 10%(소형주택 공급) = 203.3%</td></tr>
<tr><td>허용
용적률</td><td colspan="7">• 221.9%(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1.36)
=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최대20%)×사업성 보정계수
= 194.7% + 20.0% x 1.36(보정계수 적용) = 221.9%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60.0% + 20.0% x 1.36(보정계수 적용) = 187.2%
-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 203.3% + 20.0% x 1.36(보정계수 적용) = 230.5%</td></tr>
<tr><td>정비계획
(상한)
용적률</td><td colspan="7">• 246.7%(상한 인센티브)
= 정비계획 허용용적률 + 허용용적률 ×(1.3 x 가중치 × α토지 + 1.0 × α건축물(공공임대주택)+0.7α건축물(사회복지시설))
= 221.9% x 204.7% x {(1.3 x 0.712 x 0.109 + 1.0 x 0.0169 + 0.7 x 0.0049)} = 246.7%
• 사업부지의 허용용적률 : 204.7%
= {(7,703.7 x 170%) + (27,812.0 x 210%) + (2,983.6 × 230%) + (207.5 × 420%)} ÷ 38,706.8 = 204.7%
• 공공시설 제공부지 허용용적률 : 145.6%
= {(8,167.7 x 150%) + (1,134.6 x 190%) + (−4,057.0 × 190%) + (279.5 × 230%) + (132.5 × 420%) + (481.5 × 204.7%) + (101.4 × 204.7%)} ÷ (8,167.7 + 1,134.6 -4,057.0 + 279.5 + 132.5 + 481.5 + 101.4) = 145.6%
• 가중치 : 공공시설 제공부지 허용용적률 ÷ 사업부지의 허용용적률
= 145.6% ÷ 204.7% = 0.712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87.2 + 170.0% x (1.3 x 0.882 x 0.264) = 238.6%
-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 230.5% + 213.3% x (1.3 x 0.655 x 0.069 + 1.0 x 0.0211 + 0.7 x 0.0061) = 248.5%</td></tr>
</table>

구분	산정내용			
정비계획(상한) 용적률	가중치 산정식	가중평균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가중치 : 공공시설 제공부지 허용용적률 / 사업부지의 허용용적률	145.6% / 204.7% = 0.712	150.0% / 170.0% = 0.882	139.6% / 213.3% = 0.655
	·α토지: 기반시설 토지제공 면적 /기반시설 토지제공 후 대지면적	4,151.1㎡ / 38,123.9㎡ = 0.109	2,034.0㎡ / 7,703.7㎡ = 0.264	2,117.1㎡ / 30,420.2㎡ = 0.069
	·α건축물(공공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 환산부지 / 기반시설 토지제공 후 대지면적	643.1㎡ / 38,123.9㎡ = 0.0169	-	643.1㎡ / 30,420.2㎡ = 0.0211
	·α건축물(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환산부지 / 기반시설 토지제공 후 대지면적	186.1㎡ / 38,123.9㎡ = 0.0049	-	186.1㎡ / 30,420.2㎡ = 0.0061
법적 상한 용적률	292.7% 이하(가중평균)			

1) 허용용적률 산출근거

구 분	인센티브 내용	기준	계획
공공보행통로	•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 (지역권 등기 설정) - 기준 : 기준용적률 X (조성면적/대지면적) x α ※ α = 10이하 - 적용 : 194.7% x (1,368.2㎡ / 38,706.8㎡) x 1 = 6.8%	10%p이내	6.5%
열린단지	•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상가 등 열린 단지 조성(지형도면 고시) - 개방공간, 열린 단지 조성기준 준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개방되는 부분은 결정도면에 표시 (준공 후에도 유지)	5%p	5%
우수디자인+장수명주택	• 우수디자인 및 장수명주택 인증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자문)을 통해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우수디자인 및 장수명주택 인증(최우수 : 15%, 우수 : 10%)	15%p이내	10%
방재안전	• 화재 · 소방 · 피난안전 등 공동주택 안전성능개선 또는 저류지 설치 시 - 안전성능을 의무기준 보다 초과 설치 · 개선하는 경우 등 관련 위원회 심의 · 자문을 통해 적용	5%p이내	5%
대상지 적용량	• 인센트브 합산 26.5% 중 최종 25.6% 적용 - 사업성보정계수 적용시 완화사항 : 20% x 1.36 = 27.2% - 용도지역별 가중평균 산정시 확보가능량 : 25.6%	-	26.5% (25.6%)

다.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 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공공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없이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동별・동내 혼합과 층별 혼합)하고,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동・호수 배정도 조합원과 서울특별시(공공주택)가 동일・동시에 공개추첨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추첨 시에는 서울특별시가 필수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건설계획

계획기준	• 임대주택 건설 주택 전체(법적상한 증가분 제외) 세대수의 15% 또는 연면적의 10% 이상 •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전용면적 40㎡ 이하
산출근거	• 전체 세대수 : 937세대[1,080세대-143세대(법적상한 증가분 제외)] • 재개발 공공임대주택 건설 : 141세대 - 937세대 x 15% = 141세대 이상 ≤ 141세대 계획 •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40㎡ 이하 규모의 주택 건설 : 63세대 - 1,080세대 x 5% = 55세대 이상 ≤ 63세대 계획

건립규모	세대수	전체비율	임대주택 비율
합계	141	13.1%	100.0%
40㎡이하	63	5.8%	44.7%
40㎡초과~50㎡이하	-	-	-
50㎡초과~60㎡이하	78	7.3%	55.3%

2)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계획기준		•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 도시정비법에서의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공공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
법적상한용적률 (건축계획)		• 285.5% (건축심의에서 최종 결정)
상한용적률 (정비계획용적률)		• 246.7%
국민주택규모 주택의무면적	용적률 증가분	• 285.5% - 246.7% = 38.8%

	증가된 용적률의 50%	• 38.8% x 50% = 19.4% • 19.4% x 38,706.8㎡ (획지면적) = 7,509.1㎡			
	의무 연면적	• 7,509.1㎡ 이상			
국민주택규모 주택 확보계획		전용	공급면적	세대수	연면적
		59.94㎡	80.54㎡	94세대	7,571.4㎡
		7,571.4㎡ (계획) ≥ 7,509.1㎡ (의무확보기준)			

3) 기부채납 임대주택 건설계획

건립위치	전용면적	세대수	비고
획지	59.98㎡	11세대	-
	59.93㎡	6세대	-
합계		17세대	-

9.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결과

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도시경관	• 대상지 주변의 건축물과 조화되는 경관이미지를 연출하고, 이면부 저층 지역과의 스카이 라인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유도	-
환경보전	• 공사 시 사업부지 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가연성, 불연성 등으로 분리수거 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함 설치토록 유도 • 폐기물의 수거는 동작구의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토록 계획 • 물순환과 물환경 회복을 위한 빗물관리시설 설치	-
재난방지	•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화재에 대한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나.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오톱	비오톱보전 등급 향상	○	• 비오톱유형 : 상업 및 업무지비오톱 • 기능적 비오톱 확보	• 용도지역별 생태면적률 적용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경계획에 반영
생태네트워크	녹지·수생태 연결성 확보	○	• 자연생태적 가치성은 없으나 조경계획으로	• 조류 및 곤충의 식이식물을 도입토록 조경계획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개선됨 • 지리적으로 거시적 녹지축의 징검다리 역할 도모	수립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 상위계획 및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계획수립	•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
물순환(수질)	생태면적률 30%	○	• 구역내 발달된 수계 없음 • 생태면적율 30%이상 확보	• 향후 계획된 개발계획에 생태면적을 증대할 수 있는 조경계획 마련
바람 및 열	바람길 확보	○	• 입지조건 공기순환 양호	• 녹지공간 등의 오픈스페이스 확보
대기질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대기오염 최소화	○	• 미세먼지를 제외한 전 항목이 환경기준을 만족 • 공사 및 운영시 오염물질 발생	• 공사시: 먼지저감 대책 실행 • 운영시: 온실가스 흡수원 확보,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녹지조성(정화수종 선택)
친환경적자원순환	폐기물 발생량 최소화	○	• 건설 및 생활폐기물 발생	• 공사시 혼합건설폐기물 발생저감 및 재활용, 분별해체 노력 • 운영시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율 제고
소음·진동	소음·진동 최소화	○	• 공사시 소음 및 진동발생 (60미터 이내 영향권)	• 가설방음판넬 설치, 공사차량 주행속도 제한 등 조치
일조	일조 침해 최소화	○	• 계획구역 주변에 층고 낮은 건축물이 존재, 상호간섭함	•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건축물 입주민과의 협의 선행

10.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S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080세대	-

11.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노량진교회유치원, 본동초등학교, 동양중학교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며, 동법 제9조에 의거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을 적용함	거리 150m이내

12.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정비구역 현황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비고
	주민대표회의 구성 ~ 착공 전	착공 ~ 공사 완료	범죄예방설계 적용	
-	• 펜스 설치 및 유지관리 • 1일 오전·오후 1회 우범지역 순찰 •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규정 준수 안전 시공 •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비 계상	• 낮은 관목 및 울타리 등으로 놀이터 및 광장 주변 시야 확보 • 각종 출입구, 엘리베이터, 옥상등 주요지점의 CCTV 설치	거리 150m이내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본동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 본동 47번지 일대	-	증) 51,696.0	51,696.0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1,696.0	-	51,696.0	10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17,062.9	감) 7,703.7	9,359.2	18.1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30,400.7	감) 28,753.4	1,647.3	3.2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7,703.7	7,703.7	14.9	-
제3종일반주거지역	3,836.3	증) 28,753.4	32,589.7	63.0	-
일반상업지역	396.1	-	396.1	0.8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동작구 본동 39-2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703.7	• 지역 여건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획지 용도지역 상향
동작구 본동 49-20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28,753.4	• 지역 여건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획지 용도지역 상향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 해당사항 없음

나. 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2	65	40~58	주간선	1,400	노량진수원지	상도동 광장	일반도로	-	'78.6.15	양녕로
변경	광로	2	65	40~61	주간선	1,400	노량진수원지	상도동 광장	일반도로	-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6	35~45	주간선	4,730	한강대교남단	서울대교남단	일반도로	-	건고 349 ('79.9.4)	양녕로
변경	대로	1	6	35~48	주간선	4,730	한강대교남단	서울대교남단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	4	국지	90	본동19-66	본동24-2	일반도로	-	동작구고시 제2012-5호 ('12.1.12)	일부폐지, 선형변경
변경	소로	3	-	4	국지	45	본동25-7	본동24-2	일반도로	-		
신설	소로	2	1	8	국지	273	본동13-3	본동50-65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2	2	9	국지	50	본동19-66	본동24-54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1	6~8	국지	221	본동42-8	본동47	일반도로	-	-	-

■ 도로 결정 사유서

구분	도로명	위치	결정사유	비고
변경	광로 2-65	기점: 노량진수원지 종점: 상도동 광장	• 대상지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 차로 확폭 - 폭원 58m → 61m / 연장 20m	-
변경	대로 1-6	기점: 한강대교남단 종점: 서울대교남단	• 대상지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 차로 확폭 - 폭원 45m → 48m / 연장 50m	-
변경	소로 3-	기점: 본동25-7 종점: 본동24-2	• 대상지의 원활한 진출입과 도로확폭을 위해 일부구간 폐지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라 도로선형 변경	-
신설	소로 2-1	기점: 본동 13-3 종점: 본동 50-65	• 현황 노량진로26길 폐지에 따른 우회도로 신설	-
신설	소로 2-2	기점: 본동 47 종점: 본동 48	• 대상지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도로 신설	-
신설	소로 3-1	기점: 본동 42-8 종점: 본동 47	• 동측 현황도로(노량진로30길) 대상지 내 확폭 및 도시계획도로 지정	-

나)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주차장	본동 47-14일대	-	증) 554.6	554.6	-	공원④ 중복결정

■ 주차장 결정 사유서

구분	시설명	위치	결정사유	비고
①	주차장	본동 47-14일대	• 지역주민, 용양봉저정 외부이용객 등 주차이용 편의 제공	-

2) 공간시설

가)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원	어린이 공원	본동 50-16일대	-	증) 1,647.3	1,647.3	-	-
신설	②	공원	소공원	본동 37-1일대	-	증) 4,044.6	4,044.6	-	-
신설	③	공원	소공원	본동 19-12일대	-	증) 1,651.2	1,651.2	-	-
신설	④	공원	소공원	본동 47-14일대	-	증) 554.6	554.6	-	주차장 중복결정

■ 공원 결정 사유서

구분	시설명	위치	결정사유	비고
①	어린이공원	본동 50-16일대	• 본동초등학교 및 본동어린이공원과 연계한 어린이공원 신설	-
②	소공원	본동 37-1일대	• 대상지 주변 용양봉저정공원~안산~고구동산의 단절될 녹지축을 연결하는 공원조성	-
③	소공원	본동 19-12일대	• 대상지 주변 용양봉저정공원~안산~고구동산의 단절될 녹지축을 연결하는 공원조성	-
④	소공원	본동 47-14일대	• 지역주민, 용양봉저정 외부이용객 등을 고려한 공원조성	-

3)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학교	중학교	본동21번지 일원	14,234.0	감) 483.0	13,751.0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고시 제1987-5호('87.2.21)	-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시설명	위치	결정사유	비고
변경	학교	본동 21번지 일원	• 본동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 편입된 학교시설 폐지	-

※ 본동 19-12, 19-52, 21-4, 22-1 필지 본동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 편입

나) 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사회 복지시설	-	본동 47일대	-	증) 지상2층: 250.0 증) 지상3층: 250.0	지상2층: 250.0 지상3층: 250.0	• 입체적 결정 범위 - 설치연면적 : 500.0㎡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층별 면적은 시설의 전용·공용·부대시설 등을 합한 면적이고, 향후 건축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의 성능수준, 설비, 세부용도 등은 서울시, 동작구와 협의하여 착공 시 확정하며, 사회복지시설은 준공 시 서울시에 기부채납(대지지분 포함)

■ 사회복지시설 결정 사유서

구분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신설	사회복 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 지상2~3층 - 연면적 : 500.0㎡	• 지역 내 필요한 생활SOC 시설을 복합 조성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신설 • 구역 내 공공시설로 기부채납(대지지분 포함)하는 건축물은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면적(㎡)	획지		면적(㎡)			비고
			획지번호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본동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38,706.8	-	동작구 본동47번지 일대	-	증) 38,706.8	38,706.8	-

나. 건축물 용도 · 용적률 · 높이 · 건축선에 관한 결정 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가구	용도	비고
신설	허용 용도	획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제2조 제9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단지안의 부대시설복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가목및 다목의 시설	허용용도 외의 타용도 불허

2) 건축물의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 건폐율 계획

구분		용도지역	건폐율(가중평균)	비고
신설	획지	제2종,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52.0%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노선상업지역과 주거지역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획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에 따라 가중평균 건폐율 적용

나) 용적률 계획

구분		용적률(가중평균)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상한용적률	법적상한초과용적률	
신설	획지	194.7%	221.9%	246.7%	292.7%	건축계획용적률 285.5%

※ 노선상업지역과 주거지역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획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에 따라 가중평균 용적률 적용

■ 기준용적률 완화 사항(소형주택 확보)

항목	세부내용	완화기준	완화량
소형 주택	50~60㎡ 이하 분양주택 공급	• 기준용적률 완화량에 해당하는 연면적은 전용면적 50~60㎡ 이하 주택으로 건설 : 10.0% - [79.49㎡(59㎡A형 용적률 산정면적) x 17세대 + 80.54(59㎡C형 용적률 산정면적) x 171세대] / 38,706.8(대지면적) = 39.0%	최대 10%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구 분	인센티브(용적률)	기준	계획
공공보행 통로	•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 (지역권 등기 설정) - 기준 : 기준용적률 X (조성면적/대지면적) x α ※ α = 1이하 - 적용 : 194.7% x (1,368.2㎡ / 38,706.8㎡) x 1 = 6.8%	10%p이내	6.5%
열린단지	•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상가 등 열린 단지 조성(지형도면 고시) - 개방공간, 열린 단지 조성기준 준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개방되는 부분은 결정도면에 표시 (준공 후에도 유지)	5%p	5%
우수디자인 +장수명주택	• 우수디자인 및 장수명주택 인증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자문)을 통해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우수디자인 및 장수명주택 인증(최우수 : 15%, 우수 : 10%)	15%p이내	10%

구 분	인센티브(용적률)	기준	계획
방재안전	• 화재 · 소방 · 피난안전 등 공동주택 안전성능개선 또는 저류지 설치 시 - 안전성능을 의무기준 보다 초과 설치 · 개선하는 경우 등 관련 위원회 심의 · 자문을 통해 적용	5%p이내	5%
대상지 적용량	• 인센트브 합산 26.5% 중 최종 25.6% 적용 - 사업성보정계수 적용시 완화사항 : 20% x 1.36 = 27.2% - 용도지역별 가중평균 산정시 확보가능량 : 25.6%	-	26.5% (25.6%)

■ 상한용적률 완화 사항

구분	용적률 완화		비고
	공공시설 기부채납	국민주택규모주택건설	
신설	24.8%	38.8%	총 63.6%

다) 높이 계획

구분		용도지역	높이	비고
신설	획지	제2종,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150m 이하 (41층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라)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건축한계선	획지	• 양녕로변 10m • 그 외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다. 경관계획(배치 · 형태 등)

1)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단지배치계획	획지	• 한강변에 입지한 대상지 특성을 고려한 통경축 설정 및 건축물 배치계획 • 양녕로변 도로 소음 완화를 위한 수림대 조성 및 건축한계선 설정(10m) • 용도지역 혼재에 따른 높이를 고려한 배치계획 -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고층,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저층 배치 • 대지조성계획 - 구릉지 경관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절성토를 위한 단차계획 수립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 인접지역과 상생하는 열린 커뮤니티 단지 조성 • 기존 공원을 연결하는 생태녹지축 조성
보행동선 관련계획	획지	• 단지 내 보행동선 – 주동 연계 및 비상차량 동선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성 • 공공보행통로 조성 – 단지를 횡단하는 보행가로축으로 공공보행통로 조성(학교가는길) – 지하철역, 버스정류장등 주변지역과 연계되는 공공보행통로 조성 – 공공보행통로를 중심으로 단차를 고려한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계획 • 진출입 계획 – 주출입구 1개소 계획, 사업지 남측을 통한 부출입구 1개소 및 비상차량출입구를 계획하여 비상차량 이용 및 교통분산 기여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획지	• 근린생활시설 배치 구간 – 문주형 근린생활시설 계획으로 상징성 있는 진입거점 경관계획 • 주민공동시설 배치 구간 – 단지 내 지형차를 이용한 주민공동시설 배치 계획 – 단지 중심부 오픈스페이스와 연계하여 커뮤니티시설 활성화 – 인접지역과 상생하는 열린 커뮤니티 단지 조성

2)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건축물 외부형태	획지	• 주변 시가지, 공동주택, 자연경관 등을 고려한 입면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질감, 위압감 완화 • 과도한 분절 지양, 수직적 분절로 통일감 형성 • 한강변 경관과 조화로운 수직 패턴으로 개방감 확보 • 과도한 장식의 옥탑부 형태를 지양하고 모던한 옥탑부 형태로 정돈된 상층부 계획 및 스카이라인 형성
저층부 외관	획지	• 가로변 휴먼스케일 및 지형단차, 주변과 연계한 입면 디자인 계획 • 주변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저층부 디자인으로 조화로운 경관 창출
재료 및 색채	획지	• 단지 내 주동 강조색 변화를 통한 입면 연출 • 모던한 입면 패턴 적용, 저채도 위주 색채계획 • 양녕로 가로경관 변화를 고려한 건물별, 가로별 유사색채를 사용하여 조화로운 입면 연출
진입구 처리	획지	• 주출입구 전면공지 조성 • 동측도로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조성

3) 경관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스카이라인 및 경관	획지	• 단지 중앙부는 고층의 타워형으로 배치하고, 단지 도로변은 중저층의 판상형으로 배치하여 한강변에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 한강변에서 보이는 중앙부 고층 부분에 모던한 입면 패턴을 적용하여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 • 한강 조망권을 해치지 않으며, 구릉지에 순응하는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구축 및 높이계획 • 통경축 확보를 통해 시각적 차폐감 완화 및 한강 조망 확보 • 단지 중심부 주민생활과 관련된 주거생활권역 및 남측 녹지권역을 통해 생태녹지경관 조성
개방감	획지	• 한강-대상지-고구동산을 연결하는 통경축 계획으로 개방감 확보 • 녹지공간(공원, 수림대 등) 조성을 통해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단지 계획
조명계획	획지	• 주변 공원의 자연성을 저해하지 않는 형태의 조명시설 설치 • 공공보행통로 및 보행로 등에 안전한 보행을 위한 야간 조명 설치 계획

라.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1)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공공보행통로	• 도면에 표기	• 보행활성화를 위해 공공보행통로 지정(2개소) - 위치 및 폭원 : 주출입구~대상지 남측, 동측~어린이공원 6m • 필로티형으로 조성하며, 유효높이는 3m 이상으로 계획

2)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통행체계	• 동측 8m 도로변	• 노량진로30길 ~ 진출입구 : 양방통행

3) 환경관리계획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오톱	비오톱보전 등급 향상	○	• 비오톱유형 : 상업 및 업무지비오톱 • 기능적 비오톱 확보	• 용도지역별 생태면적률 적용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경계획에 반영
생태네트워크	녹지·수생태 연결성 확보	○	• 자연생태적 가치성은 없으나 조경계획으로 개선됨	• 조류 및 곤충의 식이식물을 도입토록 조경계획 수립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 지리적으로 거시적 녹지축의 징검다리 역할 도모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 상위계획 및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계획수립	•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
물순환(수질)	생태면적률 30%	○	• 구역내 발달된 수계 없음 • 생태면적율 30%이상 확보	• 향후 계획된 개발계획에 생태면적을 증대할 수 있는 조경계획 마련
바람 및 열	바람길 확보	○	• 입지조건 공기순환 양호	• 녹지공간 등의 오픈스페이스 확보
대기질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대기오염 최소화	○	• 미세먼지를 제외한 전 항목이 환경기준을 만족 • 공사 및 운영시 오염물질 발생	• 공사시: 먼지저감 대책 실행 • 운영시: 온실가스 흡수원 확보,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녹지조성(정화수종 선택)
친환경적자원순환	폐기물 발생량 최소화	○	• 건설 및 생활폐기물 발생	• 공사시 혼합건설폐기물 발생저감 및 재활용, 분별해체 노력 • 운영시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율 제고
소음·진동	소음·진동 최소화	○	• 공사시 소음 및 진동발생 (60미터 이내 영향권)	• 가설방음판넬 설치, 공사차량 주행속도 제한 등 조치
일조	일조 침해 최소화	○	• 계획구역 주변에 층고 낮은 건축물이 존재, 상호간섭함	•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건축물 입주민과의 협의 선행

4)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결정조서

◦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 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공공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없이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동별·동내 혼합과 층별 혼합)하고,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동·호수 배정도 조합원과 서울특별시(공공주택)가 동일·동시에 공개추첨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추첨 시에는 서울특별시가 필수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건립규모	전체 세대수	전체 비율(%)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공공임대주택 비율(%)		
			계	재개발 의무임대주택	기부채납 임대주택	국민주택 규모주택	전체 세대수 대비	전체비율	공공임대 중 국민주택 규모주택
합계	1,080	100.0	252	141	17	94	23.3	100.0	37.3
전용 39㎡	63	5.8	63	63	-	-	5.8	25.0	-
전용 59㎡	468	43.3	189	78	17	94	17.5	75.0	37.3
전용 84㎡	340	31.5	-	-	-	-	-	-	-
전용 102㎡	209	19.4	-	-	-	-	-	-	-

Ⅲ. 2025년 제7차(‘25.7.18.)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심의결과 : 수정가결

- 향후 건축심의(정비사업통합심의 등) 후속 절차 전 경관 및 건축계획을 위원회 보고

Ⅳ. 관계도면 : 붙임참조

1. 정비구역 결정도(신설)
2. 정비계획 결정도(신설)
3. 용도지역 · 용도지구 결정도(기정/변경)
4.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변경)
5.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신설)
6.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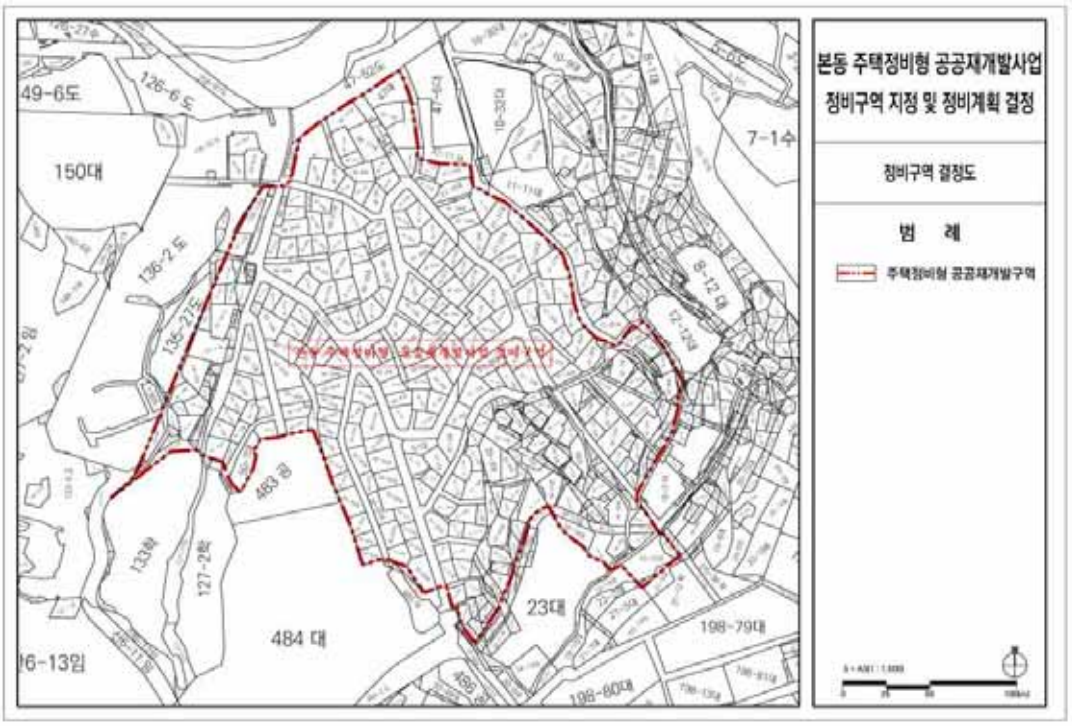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도서 :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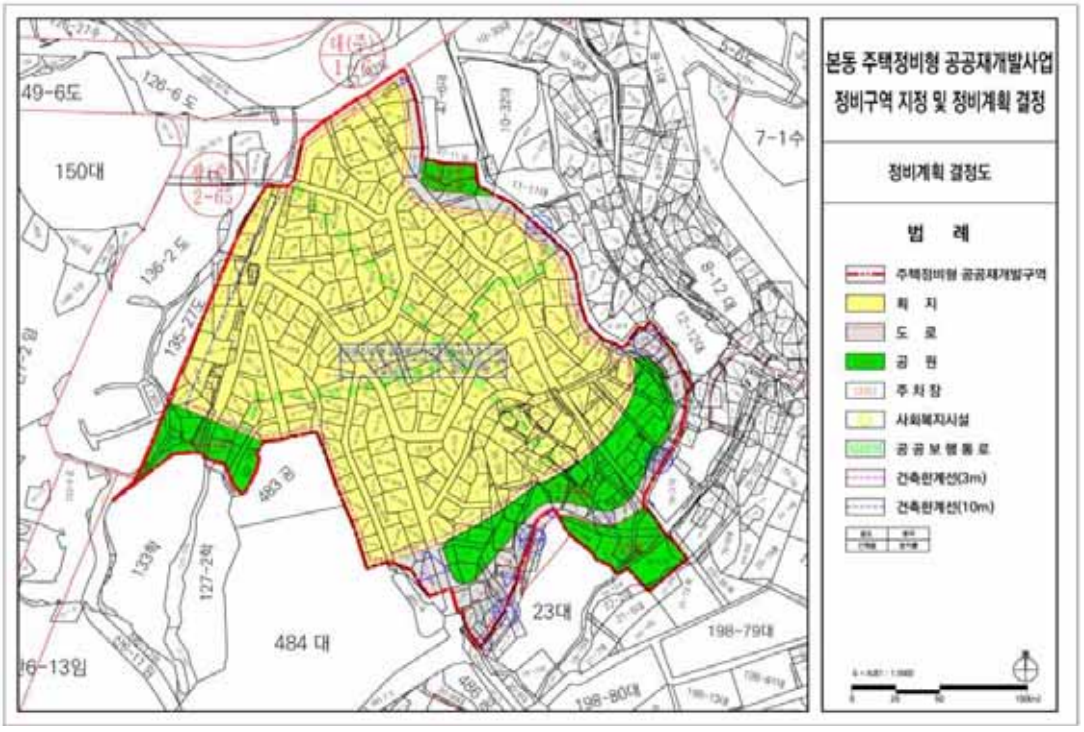
Ⅵ. 열람장소 : 시민의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192), 동작구 도시정비과(☎02-820-1963)에 관련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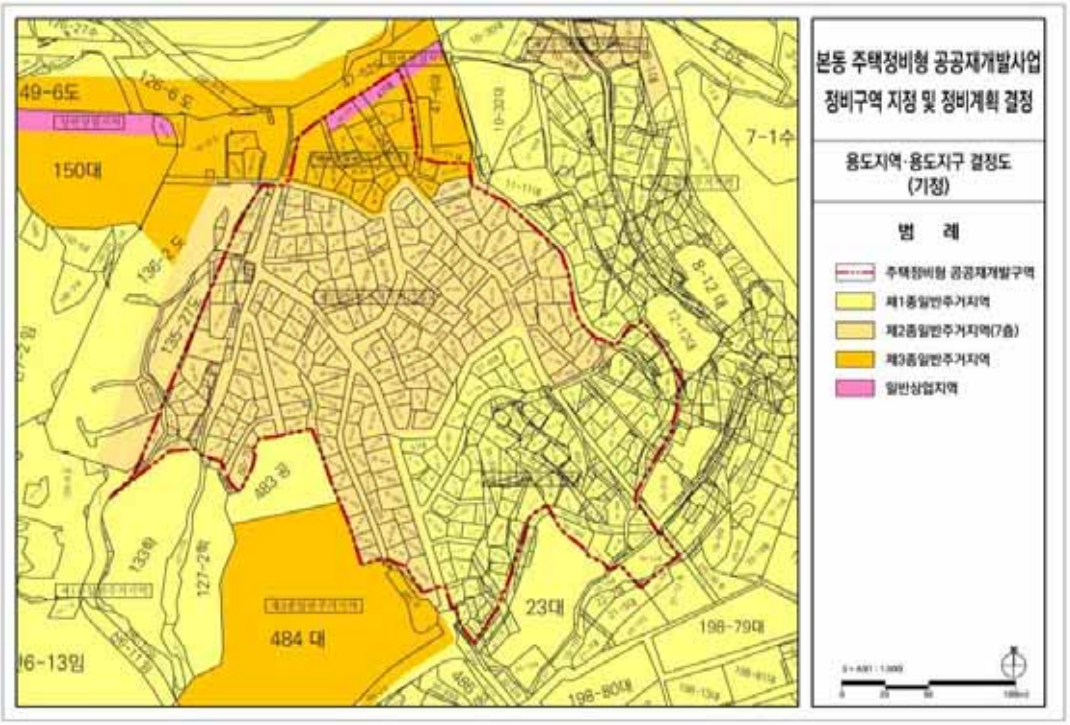
□ 정비구역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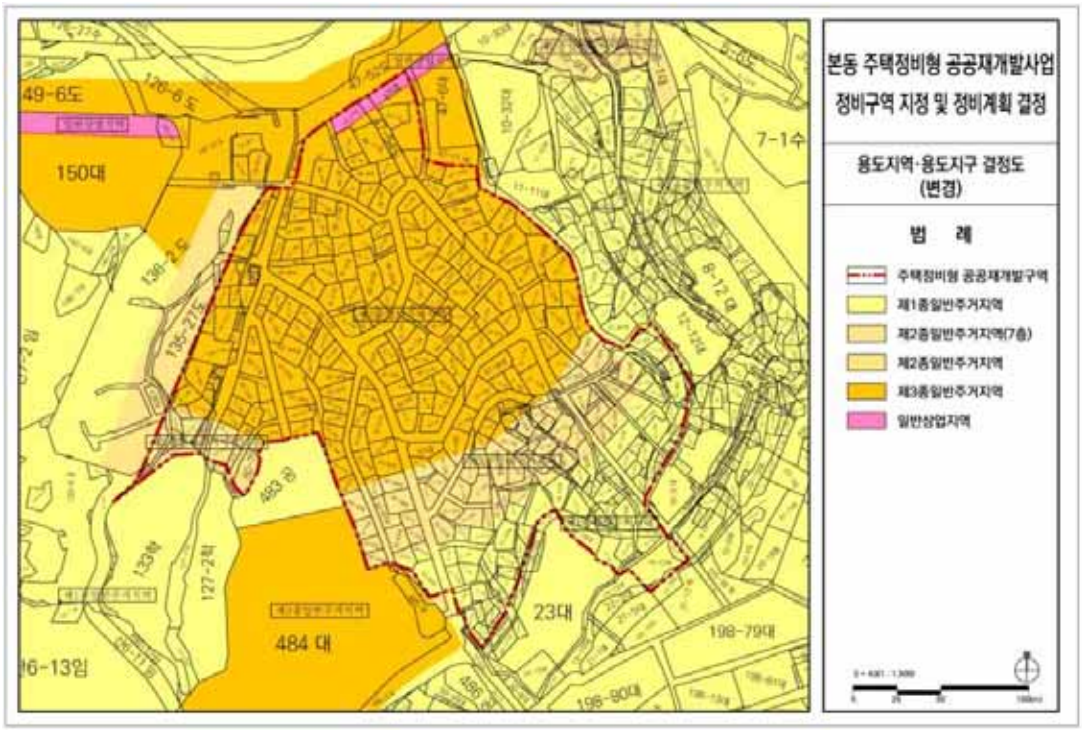
□ 정비계획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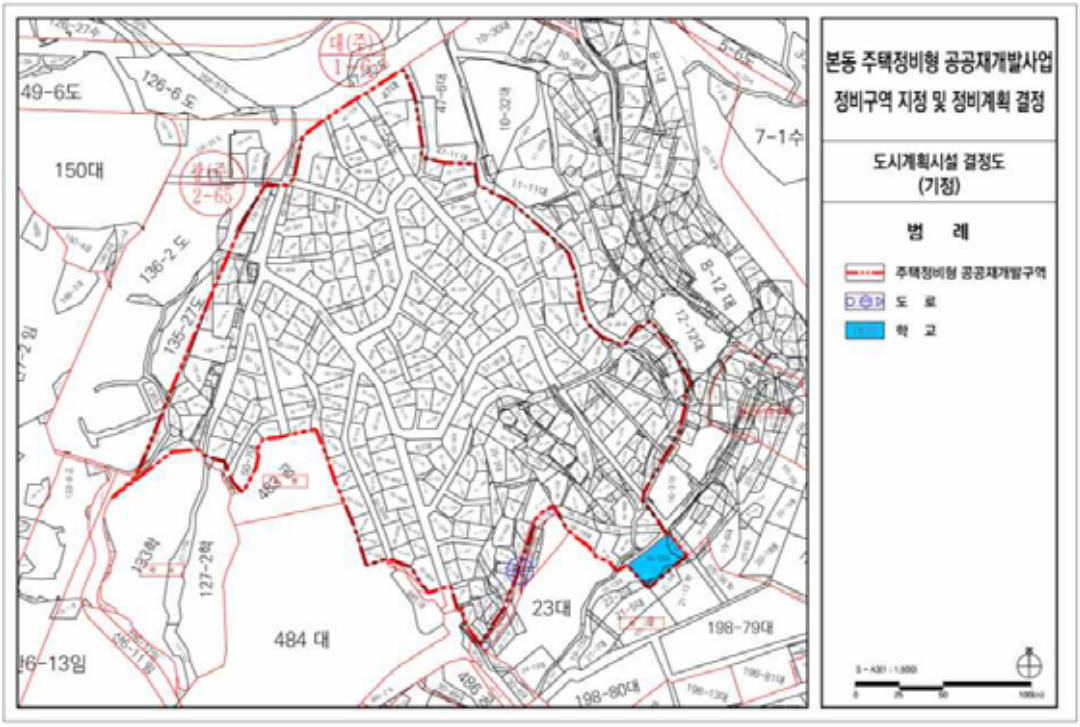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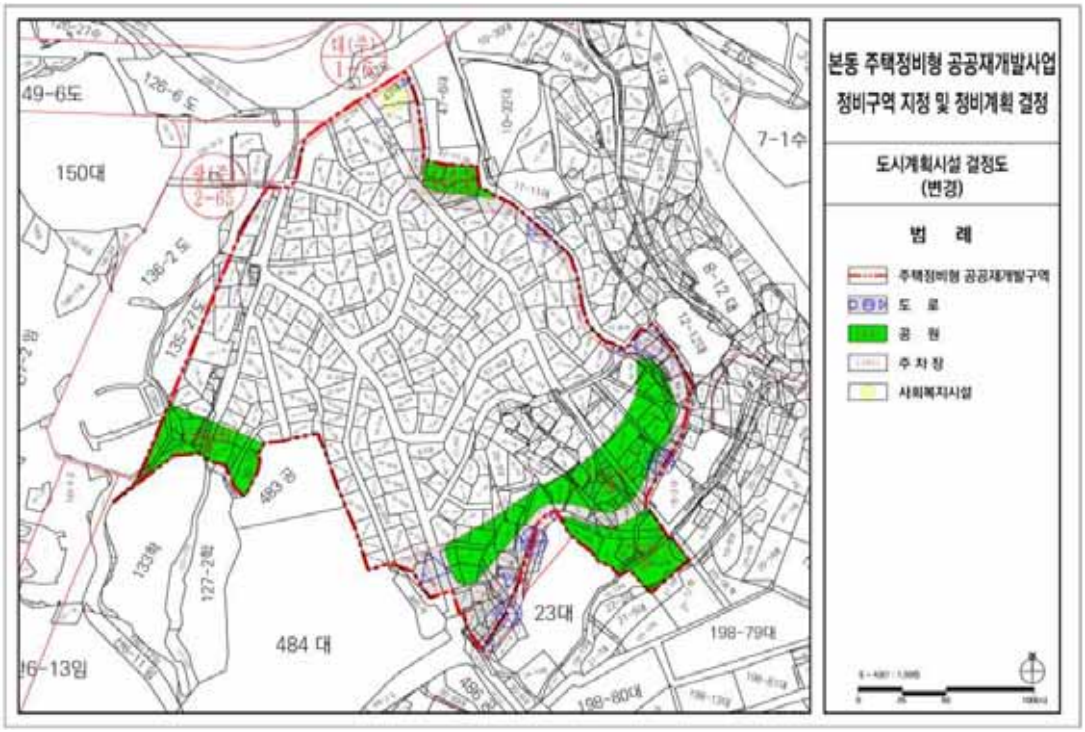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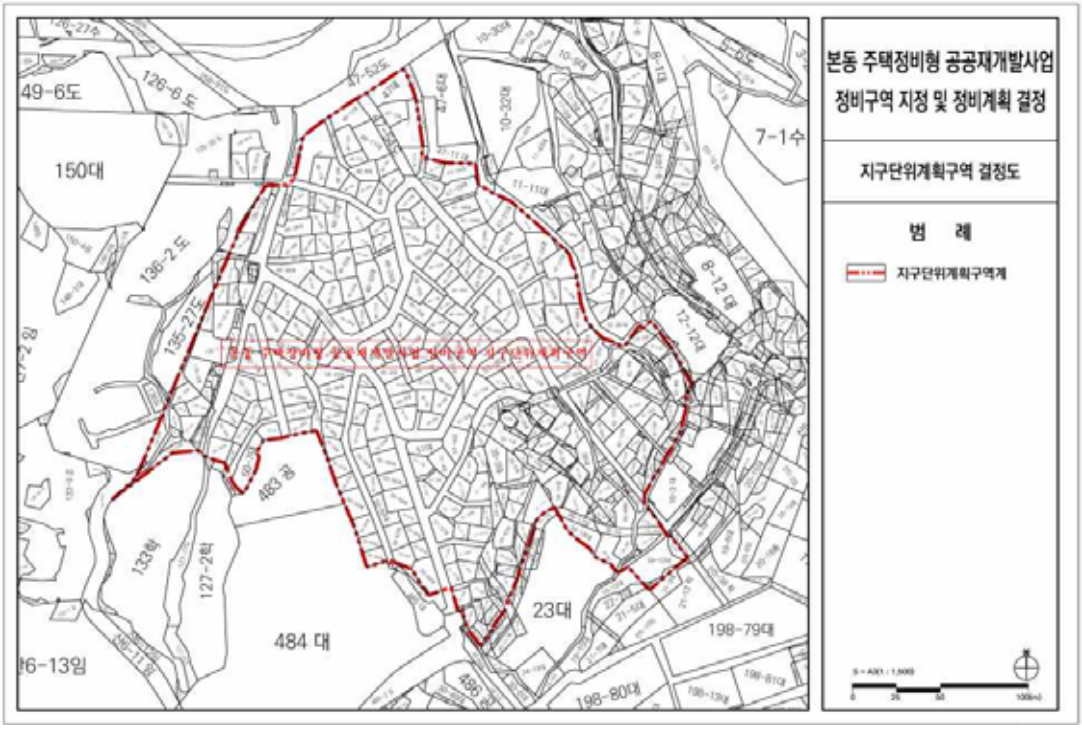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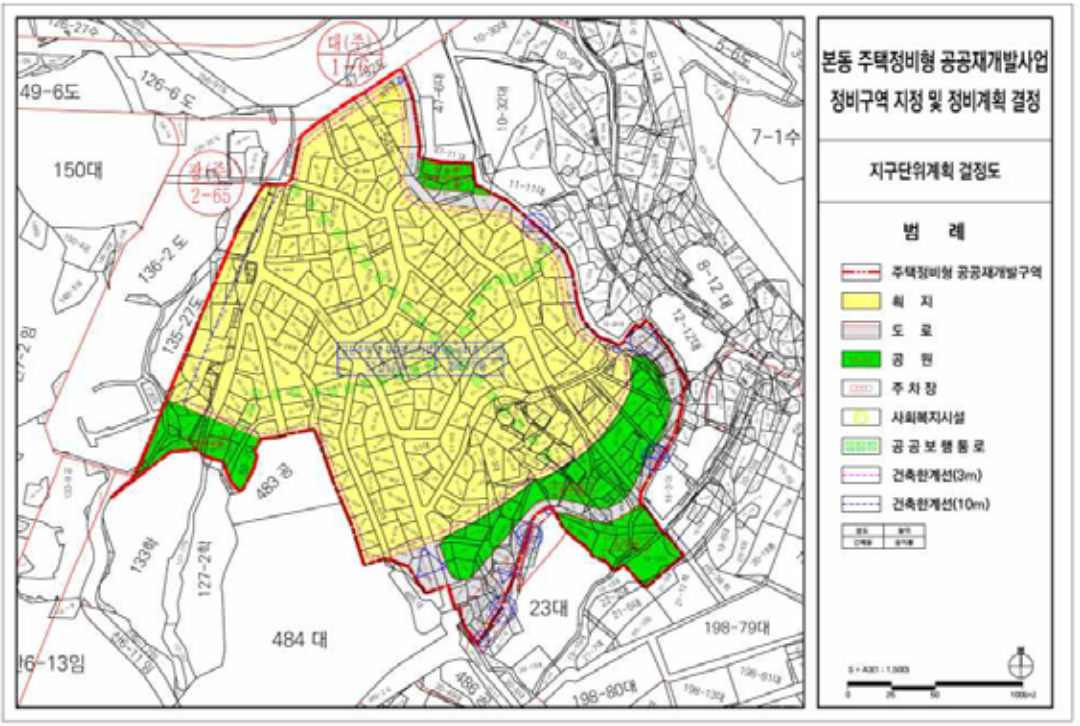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신설)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신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552호

천호 · 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천호 · 성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 10. 19.)로 천호 · 성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82호(2008. 12. 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68호(2009. 11. 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45호(2011. 2. 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92호(2011. 4. 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39호(2012. 5. 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50호(2013. 10. 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400호 (2015. 12. 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57호(2016. 8. 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2호(2017. 2. 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68호(2017. 7. 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14호(2017. 8. 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90호 (2018. 12. 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24호(2020. 3. 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09호(2020. 12. 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62호(2021. 8. 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11호(2021. 11. 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55호(2021. 11. 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7호(2023. 1. 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02호(2024. 6. 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8호(2025. 1. 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13호(2025. 3. 6.)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된 천호 · 성내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천호 · 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가.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 및 지정 목적(변경 없음)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			지정 목적
			기 정	증 감	변 경	
천호 · 성내 재정비 촉진지구	중심지형	강동구 천호동 453번지 일대	275,429.7	-	275,429.7	•도시정비체계 및 기반시설 재정비로 지역 중심의 개발여건을 마련하고 상업 · 업무 · 문화기능 등의 복합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환경의 적극적인 개선을 도모하고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나.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연도(변경 없음)

1) 기준 연도: 2006년

2) 목표 연도: 2027년

다.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변경)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275,429.7	-	275,429.7	100.0	-
업무	소 계	45,529.8	-	45,529.8	16.5	-
	일반업무	17,335.1	-	17,335.1	6.3	-
	업무복합	28,194.7	-	28,194.7	10.2	-
상업	소 계	130,362.5	증) 0.3	130,362.8	47.4	-
	판 매	15,451.1	-	15,451.1	5.6	-
	일반상업	50,636.9	감) 32.4	50,604.5	18.4	-
	근린상업	24,136.1	증) 32.7	24,168.8	8.8	-
	주상복합	40,138.4	-	40,138.4	14.6	-
주 거		36,923.1	-	36,923.1	13.4	-
계획 기반 시설	소 계	62,614.3	감) 0.3	62,614.0	22.7	-
	공 원	2,333.1	-	2,333.1	0.8	-
	공공공지	416.4	감) 193.8	222.6	0.1	-
	도 로	59,384.5	증) 193.5	59,578.0	21.6	-
	경 로 당	171.3	-	171.3	0.1	-
	사회복지시설	309.0	-	309.0	0.1	-

- 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변 경	• 일반상업, 근린상업, 공공공지, 도로 면적 변경	• 촉진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면적 단순 변경

2)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

구 분			기존세대수 (세대)	계획세대수(세대)				인구수 (인)
				소 계	일반분양	임대주택	기존세대	
합 계		기정	2,851	3,976	1,349	408	2,219	9,943
		변경	2,851	3,976	1,349	408	2,219	9,943
재정비 촉진구역	천호4	기정	360	670	499	171	-	1,675
	성내3	기정	76	160	160	-	-	400
		변경	-	-	-	-	-	-
	성내5	기정	-	407	327	80	-	1,020
		변경	-	-	-	-	-	-
	천호8	기정	196	520	363	157	-	1,300

구 분			기존세대수 (세대)	계획세대수(세대)				인구수 (인)
				소 계	일반분양	임대주택	기존세대	
	소 계	기정	632	1,757	1,349	408	-	4,395
		변경	556	1,190	862	328	-	2,975
존치관리구역		기정	2,219	2,219	-	-	2,219	5,548
		변경	2,295	2,786	487	80	2,219	6,968

- 변경사유

구 분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변 경	•성내3 · 성내5촉진구역 :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 •존치관리구역 통합관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따라 준공 된 촉진구역의 존치관리구역 전환 및 존치관리구역 통합에 따른 조서 변경

3)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구 분		면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66,302.4	감) 0.3	66,302.1	
도 로		59,384.5	증) 193.5	59,578.0	
공원 · 광장 · 공공공지 · 녹지		2,749.5	감) 193.8	2,555.7	
공공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1,985.6	-	1,985.6	대지지분+건축물: 기부채납
	공공청사	1,277.4	-	1,277.4	대지지분+건축물: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905.4	-	905.4	*대지지분: 기부채납 *건물: 표준건축비 매입(서울시)

※ 기정 면적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113호(2025. 3. 6.)로 기 고시된 면적 중 합계 면적 오기 정정
- (정정 전) 합계 66,471.9㎡ → (정정 후) 합계 66,302.4㎡
※ 성내5구역 공공시설(공공청사) 연면적 5,665.2㎡ 설치 및 조성(기부채납)
-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2020.)」의 공사비와 「기부채납 공공시설 설치비용 검증 가이드라인(2021. 7. 5.) 」 기준 적용
※ 천호8구역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임대주택 설치 및 조성(기부채납)
-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2024.)」의 공사비 기준 변경 적용(노인복지센터, 신축) 및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 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서울특별시, 2025. 1.)」의 대지지분 산정방식 적용

- 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 경	•도로 면적 변경 •공공공지 면적 변경	•지역 내 원활한 교통흐름 위한 도시계획도로 변경 및 폐지 따른 변경 •도시계획도로 폭원 변경에 따른 인접 공공공지 변경 및 폐지에 따른 변경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존계획(변경)

가) 공원 · 녹지계획(변경)

구 분		기 정	증 감	변 경	비 고
합 계	개소수(개)	10	감) 1	9	-
	면 적(㎡)	2,749.5	감) 193.8	2,555.7	-
공 원	개소수(개)	5	-	5	-
	면 적(㎡)	2,333.1	-	2,333.1	-
공공공지	개소수(개)	5	감) 1	4	-
	면 적(㎡)	416.4	감) 193.8	222.6	-

- 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변 경	•공공공지 ①: 시설 폐지(면적: 132.4㎡→ - (감 132.4㎡)) •공공공지 ③: 면적 변경(면적: 47.0㎡→30.7㎡(감 16.3㎡)) •공공공지 ④: 면적 변경(면적: 59.7㎡→31.0㎡(감 28.7㎡)) •공공공지 ⑤: 면적 변경(면적: 86.3㎡→69.9㎡(감 16.4㎡))	•소로 3-31 선형변경으로 인한 공공공지① 폐지 및 공공공지 ③ · ④ · ⑤ 면적 변경

나) 환경보존계획(변경 없음)

5) 교통계획(변경)

구 분	도면번호		도로구분	류별	폭원(m)	연장(m)	비 고
도로 확보계획	1	기정	소로	2	6~8	162	
	2	기정	소로	2	8	93	
	3	기정	소로	2	8	6	
	-	변경	-	-	-	-	도로 폐지
	4	기정	소로	3	4.5	8	
	4	변경	소로	3	4.5	5.5	도로 연장 변경
	5	기정	소로	3	6	110	
	5-1	기정	소로	3	6	45	
	6	기정	중로	3	3~15	277	
	7	기정	중로	3	10~12	163	
	8	기정	소로	1	10~12	240	
	8	변경	소로	1	10~12	240	도로 선형변경
	10	기정	소로	3	6	18	
	11	기정	소로	3	4	90	
	12	기정	소로	2	8	121	
	13	기정	소로	1	6	67	
	14	기정	소로	2	3~6	118	
	15	기정	소로	2	8	91	
	16	기정	소로	3	4	114	
	17	기정	소로	3	4	51	
	18	기정	소로	1	10	43	
	19	기정	소로	2	8	100	

구 분	도면번호		도로구분	류별	폭원(m)	연장(m)	비 고
	20	기정	중로	2	11~14	141	
	21	기정	소로	1	8~10	502	
	22	기정	소로	2	8	100	
	23	기정	중로	1	20	195	
	24	기정	소로	2	8	54	
	25	기정	중로	2	8~20	1,065	
	26	신설	소로	3	7~8	110	기 도시계획도로 폭원 변경에 따른 도로 확보계획 조서상 신설

– 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 경	•도로 3번 폐지 •도로 4번 연장 변경(8m→5.5m) •도로 8번 선형 변경 •도로 26번 신설(기 결정 도시계획도로 폭원 변경 6m→7~8m)	•미집행 구간의 실효에 따른 인접 도로 가각부 선형 변경 •지역 내 원활한 교통흐름 위한 변경, 신설 및 폐지

6) 경관계획(변경 없음)

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 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

가) 정비예정구역(변경)

지구명	구역명	구분	위치	면적(㎡)	정비수법	비고
천호성내 재정비 촉진지구	천호1촉진구역	기정	천호동 455-8 일대	10,505.8	전면개발	
		변경	천호동 455-8 일대	–	–	존치관리구역 전환 ('18. 1. 3. 준공)
	천호4촉진구역	기정	천호동 410-100 일대	17,394.2	전면개발	–
	천호8촉진구역	기정	천호동 166-4 일대	7,613.0	전면개발	–
	성내3촉진구역	기정	성내동 48-6 일대	6,740.2	전면개발	–
		변경	성내동 48-6 일대	–	–	존치관리구역 전환 ('25. 1. 8. 이전고시)
	성내5촉진구역	기정	성내동 15 일대	7,049.2	전면개발	–
		변경	성내동 15 일대	–	–	존치관리구역 전환 ('25. 4. 9. 이전고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에 따라 준공 된 촉진구역(천호1 · 성내3 · 성내5)은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

나) 구역별 계획(변경)

구분		위치	면적(㎡)	주된 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m)	비고
						기준	최대		
천호1 촉진구역	기정	천호동 455-8 일대	10,505.8	판매	60% 이하	714	810	140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변경	천호동 455-8 일대	–	–	–	–	–	–	존치관리구역 전환

구분		위치	면적(㎡)	주된 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m)	비고
						기준	최대		
천호4 촉진구역	기정	천호동 410-100 일대	17,394.2	주거, 근린생활	60% 이하	591	793	120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천호8 촉진구역	기정	천호동 166-4 일대	7,613.0	주거, 사회복지, 근린생활	60% 이하	520	800	140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성내3 촉진구역	기정	성내동 48-6 일대	6,740.2	업무, 판매, 주거, 근린생활	60% 이하	610	800	140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변경	성내동 48-6 일대	-	-	-	-	-	-	존치관리구역 전환
성내5 촉진구역	기정	성내동 15 일대	7,049.2	주거, 공공업무, 근린생활	60% 이하	500	650	140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변경	성내동 15 일대	-	-	-	-	-	-	존치관리구역 전환

- 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변경	• 천호1 · 성내3 · 성내5촉진구역 :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따라 준공 된 촉진구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함에 따른 조서 변경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변경)

가) 재정비촉진구역(변경)

구역명		사업구역면적(㎡)	용도지역	필지수	건물수	비고
계	기정	49,302.4	-	143	77	
	변경	25,007.2	-	64	35	-
천호1촉진구역	기정	10,505.8	일반상업	30	8	-
	변경	-	-	-	-	존치관리구역 전환
천호4촉진구역	기정	17,394.2	일반상업	23	10	-
천호8촉진구역	기정	7,613.0	일반상업	41	25	-
성내3촉진구역	기정	6,740.2	준주거, 일반상업	45	29	-
	변경	-	-	-	-	존치관리구역 전환
성내5촉진구역	기정	7,049.2	근린상업	4	5	-
	변경	-	-	-	-	존치관리구역 전환

- 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변경	•천호1 · 성내3 · 성내5촉진구역 :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따라 준공 된 촉진구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함에 따른 조서 변경

나) 존치구역(변경)

구역명			구역면적(㎡)	용도지역	필지수	건물수	비고
존치관리구역	천호1	기정	72,079.3	일반상업	259	148	
		변경	-	-	-	-	
	천호2	기정	55,339.8	일반상업, 제3종일반주거	160	82	
		변경	-	-	-	-	
	천호3	기정	5,227.0	일반상업	101	55	
		변경	-	-	-	-	
	성내1	기정	28,815.5	일반상업	120	111	
		변경	-	-	-	-	
	성내1-1	기정	6,299.0	일반상업	18	8	
		변경	-	-	-	-	
	성내2	기정	22,557.2	근린상업, 준주거, 제3종일반주거	85	71	
		변경	-	-	-	-	
	존치관리구역	신설	214,613.0	일반상업, 근린상업, 준주거, 제3종일반주거	743	475	구역통합

구역명		구역면적(㎡)	용도지역	필지수	건물수	비고
합계	기정	190,317.8	-	743	475	
	변경	214,613.0	-	746	48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에 따라 준공 된 촉진구역(천호1 · 성내3 · 성내5)은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
※ 존치관리구역은 하나의 구역으로 통합하여 관리

9)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 없음)

10) 용도지구 변경계획(해당 없음)

11)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

가)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 계획(변경)

구 분	구역명	주용도		건폐율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촉진구역	천호1	판매	-	60% 이하	-	존치관리구역 전환
	천호4	주거, 근린생활	주거, 근린생활	60% 이하	60% 이하	-
	천호8	주거, 사회복지, 근린생활	주거, 사회복지, 근린생활	60% 이하	60% 이하	-
	성내3	업무, 판매, 주거, 근린생활	-	60% 이하	-	존치관리구역 전환
	성내5	주거, 공공업무, 근린생활	-	60% 이하	-	존치관리구역 전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에 따라 준공 된 촉진구역(천호1 · 성내3 · 성내5)의 존치관리구역 전환에 따른 단순 조서 변경

나) 건축물의 용적률 계획(변경)

구 분	구역명		면적(㎡)	획지면적(㎡)	용적률		비고
					기준(%)	최대(%)	
촉진구역	천호1	기정	10,505.8	8,978.9	714	810	-
		변경	-	-	-	-	존치관리구역 전환
	천호4	기정	17,394.2	13,756.7	591	793	-
	천호8	기정	7,613.0	6,305.0	520	800	-
	성내3	기정	6,740.2	5,053.0	610	800	-
		변경	-	-	-	-	존치관리구역 전환
	성내5	기정	7,049.2	6,411.5	500	650	-
		변경	-	-	-	-	존치관리구역 전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에 따라 준공 된 촉진구역(천호1 · 성내3 · 성내5)의 존치관리구역 전환에 따른 단순 조서 변경

다) 건축물의 높이 계획(변경)

구 분	구역명	높이		비고
		기정(m)	변경(m)	
촉진구역	천호1	140	-	존치관리구역 전환
	천호4	120	120	-
	천호8	140	140	-
	성내3	140	-	존치관리구역 전환
	성내5	140	-	존치관리구역 전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에 따라 준공 된 촉진구역(천호1 · 성내3 · 성내5)의 존치관리구역 전환에 따른 단순 조서 변경

라) 건축배치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12)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변경)

가) 재정비촉진구역별 기반시설 순부담률 산정(변경)

구분			면적(㎡)	획지 면적(㎡)	기반시설(㎡)					국공유지(㎡)		순부담 면적(㎡)	순 부담률(%)	비고
					계	도로	공원 광장 공공공지 녹지	공공시설(대지지분+건축물)	공공 임대 주택	계획 기반 시설 내	기존 기반 시설 내			
민간부문	천호1촉진	기정	10,505.8	8,978.9	1,526.9	1,201.5	325.4	-	-	-	363.0	1,163.9	11.1	
		변경	-	-	-	-	-	-	-	-	-	-	-	존치관리 구역전환
	천호4촉진	기정	17,394.9	13,756.7	3,637.5	2,503.5	1,134.0	-	-	19.3	-	3,618.2	20.8	
	천호8촉진	기정	7,613.0	6,305.0	3,890.0	1,308.0	-	1,676.6	905.4	355.0	447.0	3,088.0	40.6	
	성내3촉진	기정	6,740.2	5,053.0	1,687.2	623.1	1,064.1	-	-	128.0	234.0	1,325.2	19.7	
		변경	-	-	-	-	-	-	-	-	-	-	-	존치관리 구역전환
	성내5촉진	기정	7,049.2	6,411.5	1,915.1	637.7	-	1,277.4	-	-	-	1,915.1	27.2	
		변경	-	-	-	-	-	-	-	-	-	-	-	존치관리 구역전환
	계	기정	49,303.1	40,505.1	12,656.7	6,273.8	2,523.5	2,954.0	905.4	502.3	1,044.0	11,110.4	22.5	
		변경	25,007.9	20,061.7	7,527.5	3,811.5	1,134.0	1,676.6	905.4	374.3	447.0	6,706.2	26.8	존치관리 구역제외

공공부문	천호1 존치관리	기정	68,280.1	66,773.1	1,507.0	1,507.0	-	-	-	-	-	-	-	
		변경	-	-	-	-	-	-	-	-	-	-	-	
	천호2 존치관리	기정	48,870.6	48,442.6	428.0	428.0	-	-	-	-	-	-	-	
		변경	-	-	-	-	-	-	-	-	-	-	-	
	천호3 존치관리	기정	5,227.0	4,686.5	540.5	540.5	-	-	-	-	-	-	-	
		변경	-	-	-	-	-	-	-	-	-	-	-	
	성내1 존치관리	기정	28,598.5	27,721.5	877.0	877.0	-	-	-	-	-	-	-	
		변경	-	-	-	-	-	-	-	-	-	-	-	
	성내1-1존 치관리	기정	6,299.0	5,952.0	347.0	347.0	-	-	-	-	-	-	-	
		변경	-	-	-	-	-	-	-	-	-	-	-	
	성내2 존치관리	기정	22,538.5	22,228.5	310.0	310.0	-	-	-	-	-	-	-	
		변경	-	-	-	-	-	-	-	-	-	-	-	
	존치관리	신설	204,108.9	196,247.6	4,009.5	4,009.5	-	-	-	-	-	-	-	존치관리 구역 통합 (국공유지 제외)
	구역 외	기정	2,843.0	-	2,843.0	2,843.0	-	-	-	-	-	-	-	
	계	기정	182,656.7	175,804.2	6,852.5	6,852.5			-	-	-	-	-	
		변경	206,951.9	196,247.6	6,852.5	6,852.5								

※ 기정 면적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113호(2025. 3. 6.)로 기 고시된 면적 중 성내5촉진구역의 순부담면적 및 공공부문 면적 합계 오기 정정
- 성내5구역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38호(2025. 1. 16.) 참고
- 공공부문 면적 합계 : (정정 전) 182,386.7㎡ → (정정 후) 182,656.7㎡

※ 성내5구역 공공시설(공공청사) 연면적 5,665.2㎡ 설치 및 조성(기부채납)
-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2020.)」의 공사비와 「기부채납 공공시설 설치비용 검증 가이드라인(2021. 7. 5.) 」 기준 적용

※ 천호8구역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임대주택 설치 및 조성(기부채납)
-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2024.)」의 공사비 기준 변경 적용(노인복지센터, 신축) 및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서울특별시, 2025. 1.)」의 대지지분 산정방식 적용
  -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1,676.6㎡(대지지분 355.9㎡, 환산부지면적 1,320.7㎡)
  - 공공임대주택: 905.4㎡(대지지분)

※ 공공부문 기반시설 면적은 존치지역 내 기반시설 중 확보가 필요한 면적(사유지)

– 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변경	•천호1·성내3·성내5촉진구역 :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 •존치관리구역 통합관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따라 준공 된 촉진구역의 존치관리구역 전환 및 존치관리구역 통합에 따른 조서 변경

나) 기반시설의 민간투자 사업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13)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

구 분	구역명	계획 세대수(세대)		임대주택수(세대)			
				계	전용 45㎡ 이하	전용 60㎡ 이하	전용 60~85㎡ 이하
합계		기정	1,757	408	168	163	77
재정비 촉진구역	천호4	기정	670	171	-	129	42
	천호8	기정	520	157	88	34	35
	성내3	기정	160	-	-	-	-
		변경	-	-	-	-	-
	성내5	기정	407	80	80	-	-
		변경	-	-	-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에 따라 준공 된 촉진구역(성내3 · 성내5)의 존치관리구역 전환에 따른 단순 조서 변경

14)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15)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변경)

가) 천호1재정비촉진구역(변경)

(1) 재정비촉진구역 결정조서(변경)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천호1 재정비촉진구역	천호동 455-8 일대	10,505.8	감) 10,505.8	-	

- 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변경	•천호1촉진구역 :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따라 준공 된 촉진구역의 존치관리구역 전환에 따른 조서 변경

나) 천호4재정비촉진구역(변경 없음)

다) 천호8재정비촉진구역(변경 없음)

라) 성내3재정비촉진구역(변경)

(1) 재정비촉진구역 결정조서(변경)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성내3 재정비촉진구역	성내동 48-6 일대	6,740.2	감) 6,740.2	-	

– 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변경	•성내3촉진구역 :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따라 준공 된 촉진구역의 존치관리구역 전환에 따른 조서 변경

마) 성내5재정비촉진구역(변경)

(1) 재정비촉진구역 결정조서(변경)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성내5 재정비촉진구역	성내동 15 일대	7,049.2	감) 7,049.2	-	

– 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변경	•성내5촉진구역 :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따라 준공 된 촉진구역의 존치관리구역 전환에 따른 조서 변경

16)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폐지)

– 존치관리계획은 폐지 후 지구단위계획 수립하여 관리

17) 광고물 관리계획(변경 없음)

18)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19) 방재계획(변경 없음)

20) 정보화계획(변경 없음)

21) 에너지 순환계획(변경 없음)

22) 특성화계획(변경 없음)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폐지	①	천호1 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동구 천호동 455-8일대	10,505.8	감) 10,505.8	-	서울시 고시 제2021-462호 ('21. 8. 26)	천호·성내 지구단위 계획구역 으로 통합
폐지	②	천호3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동구 천호동 409-3일대	5,227.0	감) 5,227.0	-	서울시 고시 제2021-611호 ('21. 11. 4)	
폐지	③	천호8 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동구 천호동 166-4 일대	7.613.0	감) 7.613.0	-	서울시 고시 제2021-611호 ('21. 11. 4)	
폐지	④	성내1-1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동구 성내동 49-14일대	6,299.0	감) 6,299.0	-	서울시 고시 제2021-611호 ('21. 11. 4)	
폐지	⑤	성내3 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동구 성내동 48-6 일대	6,740.2	감) 6,740.2	-	서울시 고시 제2024-302호 ('24. 6. 20)	
폐지	⑥	성내5 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동구 성내동 15번지 일대	7,049.2	감) 7,049.2	-	서울시 고시 제2020-124호 ('20. 3. 26)	
신설	①	천호·성내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동구 천호동 453 일대	-	증) 275,429.7	275,429.7	-	

- 변경사유서

구 분	위치	면적(㎡)	변경 사유
폐지	강동구 천호동 455-8 일대	10,505.8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일대에 광역차원의 체계적 관리를 유도하고자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 폐지 후 천호·성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통합관리
폐지	강동구 천호동 409-3 일대	5,227.0	
폐지	강동구 천호동 166-4 일대	7.613.0	
폐지	강동구 성내동 49-14 일대	6,299.0	

구 분	위치	면적(㎡)	변경 사유
폐지	강동구 성내동 48-6 일대	6,740.2	
폐지	강동구 성내동 15번지 일대	7,049.2	
신설	강동구 천호동 453 일대	275,429.7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일대에 광역차원의 체계적 관리를 유도하고자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없음)

1)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총 계		275,429.7	-	275,429.7	100.0	
주거지역	소계	87,612.0	-	87,612.0	31.8	
	제3종일반주거지역	60,877.0	-	60,877.0	22.1	
	준주거지역	26,735.0	-	26,735.0	9.7	
상업지역	소계	187,817.7	-	187,817.7	68.2	
	근린상업지역	14,913.2	-	14,913.2	5.4	
	일반상업지역	172,904.5	-	172,904.5	62.8	

2) 용도지구: 해당 없음

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위치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광로	2	5	50	주간선	7,200 (495)	천호대교 (천호사거리)	상일동시계 (성내동 산18-4)	건고 198호 ('71. 4. 7.)	천호대로 (부분편입)
기정	대로	3	110	25~31	보조간선	3,000 (268)	풍납동 광5	암사동 강변	건고 210호 ('75. 12. 17.)	올림픽로 (부분편입)
기정	중로	1	163	20	보조간선	300	천호동 434-2	천호동 406-2	서울시 고시 제1077호-312호 ('77. 8. 29.)	구천면길
기정	중로	1	천호2	8~20	보조간선	1,065 (354)	길동 413-45	천호동 550-6	서울시 고시 제2001-177호 ('01. 6. 5.)	진황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위치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43	천호동 566-8 (천호대로)	천호동 566-6	서울시 고시 제1993-467호 ('94. 1. 5.)	
기정	소로	1	2	10~12	집산도로	240	광로2-5 (천호동 451-20)	천호동 410-372 (진황도길)	-	
변경	소로	1	2	10~12	집산도로	240	광로2-5 (천호동 451-20)	천호동 410-372 (진황도길)	-	가각부 선형 변경
기정	중로	1	천호3	20	보조간선	195	광로2-5 (천호동 449)	천호동 166-43	서울시 고시 제3호('69. 1. 18.)	
기정	소로	2	10	8	집산도로	100	성내동 19-9	광로2-5 (성내동 19-1)	서울시 고시 제1992-335호 ('92. 10. 24.)	
기정	소로	3	31	6	집산도로	110	대로3-110 (천호동 572-3)	천호동 430-42	강동구 고시 제2020-195호 ('20. 12. 17.)	
변경	소로	3	31	7~8	집산도로	110	대로3-110 (천호동 572-3)	천호동 430-42	강동구 고시 제2020-195호 ('20. 12. 17.)	
기정	소로	3	46	6	집산도로	45	천호동 454-59	천호동 413-8	강동구 고시 제2023-7호 ('23. 1. 5.)	
기정	중로	3	천호1	10~12	집산도로	163	천호동 411-64	천호동 452-33	서울시 고시 제2008-482호 ('08. 12. 26.)	
기정	소로	1	4	8~10	집산도로	502	성내동 14-5	성내동 80-7	서울시 고시 제3호('69. 1. 18.)	
기정	중로	2	성내2	11~14	보조간선	141	광로2-5 (성내동 50-32)	성내동 43-11	서울시 고시 제2008-482호 ('08. 12. 26.)	
기정	중로	3	407	3~15	보조간선	277	광로2-5 (천호동 453-15)	천호동 409-3	서울시 고시 제2001-177호 ('01. 6. 5.)	
기정	소로	2	8	8	국지도로	91	성내동 48-27	성내동 48-14	서울시고시 제2008-482호 ('08. 12. 26.)	
기정	소로	3	7	6	국지도로	67	성내동 57-12 (천호대로)	성내동 48-27	서울시 고시 제2008-482호 ('08. 12. 26.)	
기정	소로	2	1	6~8	국지도로	162	대로3-110 (천호동 427-3)	천호동 425-105	서울시 고시 제2008-482호 ('08. 12. 26.)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100	광로2-5 (천호동 455)	천호동 455-5	강동구 고시 제4994-28호 ('94. 5. 21.)	
기정	소로	2	4	3~6	국지도로	118	천호동 410-42	천호동 409-34	서울시 고시 제2008-482호 ('08. 12. 26.)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위치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2	5	8	국지도로	121	광로2-5 (천호453-40)	천호동 453-6	서울시 고시 제2008-482호 ('08. 12. 26.)	
기정	소로	2	7	8	국지도로	6	천호동 430-2	천호동 430-14	서울시 고시 제2015-400호 ('15. 12. 17.)	
폐지	-	-	-	-	-	-	-	-	-	-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93	중로1-163 (천호동 425-8)	천호동 427-103	서울시 고시 제354호 ('90. 10. 24.)	
기정	소로	3	2	4	국지도로	51	천호동 427-23	천호동 427-31	서울시 고시 제354호 ('90. 10. 24.)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54	천호동 450-23	천호동 566-10	서울시 고시 제2008-482호 ('08. 12. 26.)	
기정	소로	3	3	4	국지도로	90	천호동 566-10	천호동 566-6	서울시 고시 제1993-467호 ('94. 1. 8.)	
기정	소로	3	45	4	국지도로	114	광로2-5 (성내동 13-9)	성내동 12-3	강동구 고시 제2020-115호 ('20. 7. 2.)	
기정	소로	3	5	4.5	국지도로	8	천호동 430-12	천호동 430-9	서울시 고시 제2015-400호 ('15. 12. 17.)	
변경	소로	3	5	4.5	국지도로	5.5	천호동 430-12	천호동 430-9	서울시 고시 제2015-400호 ('15. 12. 17.)	
기정	소로	3	6	6	국지도로	18	천호동 566-10	천호동 450-67	서울시 고시 제2015-400호 ('15. 12. 17.)	

※ ()는 천호·성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소로 1-2호선	소로 1-2호선	•변경(가각부 선형변경)	•인접 도시계획도로 실효에 따른 도로 가각부 선형 조정
소로 2-7호선	소로 2-7호선	•폐지	•지역 내 기반시설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폐지
소로 3-31호선	소로 3-31호선	•변경(폭원: 6m→7m~8m)	•지역 내 기반시설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변경
소로 3-5호선	소로 3-5호선	•변경(연장: 8m→5.5m)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 없음)

나) 지하공공보도시설

■ 지하공공보도시설 결정조서(변경 없음)

2) 공간시설(변경)

가) 공원

■ 공원 결정조서(변경 없음)

나)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폐지	①	공공공지	천호동 572-3 일대	132.4	감) 132.4	-	-
변경	③	공공공지	천호동 572-6 일대	47.0	감) 16.3	30.7	-
변경	④	공공공지	천호동 572-8 일대	59.7	감) 28.7	31.0	-
변경	⑤	공공공지	천호동 572-9 일대	86.3	감) 16.4	69.9	-
기정	⑦	공공공지	성내동 77-64 일대	91.0	-	91.0	-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①	공공공지	•폐지	•소로 3-31호선 폭원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폐지
③	공공공지	•변경(면적: 47.0㎡→30.7㎡, 감 16.3㎡)	•소로 3-31호선 폭원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
④	공공공지	•변경(면적: 59.7㎡→31.0㎡, 감 28.7㎡)	
⑤	공공공지	•변경(면적: 86.3㎡→69.9㎡, 감 16.4㎡)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없음)

가)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변경 없음)

■ 사회복지시설(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 없음)

나) 공공청사

■ 공공청사(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 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 가구 및 획지 결정(기정) 조서

구분		내 용	비고
기정	천호8	•가구(7,613㎡), 획지(6,305㎡) 결정	

■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내 용	비고
변경	가구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블록	31개소
변경	획지	•정비계획이 기 결정(정비사업 완료)된 일단의 계획적 개발단위 ※ 기 준공 촉진구역	3개소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 내용	변경 사유
가구	•총 31개소 가구계획	•대상지 일대 계획적 관리를 위해 일단의 도로로 둘러싸인 블록별 가구계획 수립
획지	•총 3개소 획지계획	•정비계획이 기 결정(정비사업 완료)된 지역의 계획적 개발단위 유지 위해 획지계획 수립

2) 공동개발에 관한 결정(변경)

■ 공동개발 결정(기정) 조서

구분		내 용	비고
기정	-	-	

■ 공동개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내 용	비고
변경	공동개발 특별지정	•일정한 도로 폭원 확보 위한 필지분할선이 계획된 필지 중, 개발 시 단독개발이 불가능한 필지 중 소유자가 상이한 최소한의 경우	10개소
변경	공동개발 지정	•소로 3-31호선 도로 폭원 확폭 계획에 따라 변경되는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과 연접한 필지 중 적정개발규모 유도가 필요한 경우	8개소
변경	공동개발 권장	•계획된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건축할 것을 권장	7개소

※ 최대개발규모 범위 내 자율적 공동개발 허용

※ 공동개발 특별지정이 계획된 필지는 공동개발 시 허용용적률이 아닌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며, 공공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등은 별도로 적용이 가능함

※ 공동개발 특별지정에 의해 토지 또는 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외에 상한용적률을 추가 부여하는 경우 필지 수를 기본으로 하고, 동일소유 필지 · 기 공동개발된 필지는 하나의 필지로 봄(단,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이전 소유자가 서로 상이한 필지에 한함)

※ 기 결정된 공동개발 특별지정 계획 변경 시, 區 도시 · 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통해 사업계획 및 인센티브 계획을 검토하여 최종 결정

※ 필지분할선이 계획된 필지는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19조에 따라, 필지분할선으로 분할된 필지는 공공시설 등(도로)으로 기부채납하고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함

■ 가구 · 획지 및 공동개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가구 번호	가구 면적(㎡)	법정동	지번	지목	면적(㎡)		계획내용	비고
						필지	계		
기정	-	7,613	천호동	166-4 일대	대	6,305.0	6,305.0	획지	천호8
변경	-	-	-	-	-	-	-	-	천호8
신설	A1	12,997.0	천호동	425-3	대	3,787.0			
			천호동	425-5	대	8,593.0			
			천호동	425-6	대	324.0			
			천호동	426-3	대	134.0			
			천호동	426-5	대	159.0			
신설	A2	11,316.2	천호동	427-2	대	106.0			
			천호동	427-3	대	2,071.0			
			천호동	427-4	대	381.0		필지분할선	
			천호동	427-5	대	108.0		필지분할선	
			천호동	427-6	대	129.0			
			천호동	427-7	대	83.0			
			천호동	427-8	대	83.0			
			천호동	427-9	대	86.0			
			천호동	427-10	대	517.0			
			천호동	427-12	대	136.0		필지분할선	
			천호동	427-13	대	93.0			
			천호동	427-17	대	99.0		필지분할선	
			천호동	427-18	대	66.0		필지분할선	
			천호동	427-20	대	133.0			
			천호동	427-26	대	119.0			
			천호동	427-27	대	116.0			
			천호동	427-28	대	112.0			
			천호동	427-34	대	192.0			
			천호동	427-39	대	199.0			
			천호동	427-40	대	99.0		필지분할선	
			천호동	427-41	대	85.0		필지분할선	
			천호동	427-42	대	112.0			
			천호동	427-43	대	95.0			
			천호동	427-44	대	85.0			
			천호동	427-45	대	76.0			
			천호동	427-46	도	35.0			
			천호동	427-47	대	75.0			
			천호동	427-48	대	81.0			
			천호동	427-49	대	48.0			
			천호동	427-50	대	17.0			

구 분	가구 번호	가구 면적(㎡)	법정동	지번	지목	면적(㎡)		계획내용	비고
						필지	계		
			천호동	427-51	대	76.0			
			천호동	427-52	대	7.0			
			천호동	427-53	대	111.0			
			천호동	427-59	대	396.0			
			천호동	427-62	대	20.0		필지분할선	
			천호동	427-63	대	53.0		필지분할선	
			천호동	427-66	대	5.0		필지분할선	
			천호동	428-1	대	1,033.0			
			천호동	429-1	대	152.0			
			천호동	429-2	대	669.0			
			천호동	429-3	대	175.0			
			천호동	429-4	대	79.0			
			천호동	429-5	대	83.0			
			천호동	429-6	대	119.0			
			천호동	429-9	대	340.0			
			천호동	429-11	대	155.0			
			천호동	429-13	대	152.0			
			천호동	430-1	대	206.0			
			천호동	430-3	대	57.0			
			천호동	430-5	대	195.0			
			천호동	430-8	대	248.0	698.0	공동개발 지정	
			천호동	430-13	대	255.0			
			천호동	430-7	대	175.0			
			천호동	430-14	대	261.0			
			천호동	430-15	대	242.0			
			천호동	430-16	대	7.0			
			천호동	430-41	도	42.0			
			천호동	430-42	대	42.0			
			천호동	430-51	도	33.0			
			천호동	572-6	잡	42.5			
			천호동	572-7	도	51.7	324.2	공동개발 지정	
			천호동	572-8	잡	59.7			
			천호동	572-9	잡	86.3			
			천호동	430-52	도	51.0		공동개발 권장	
신설	A3	1,105.0	천호동	427-22	대	112.0			
			천호동	427-23	대	106.0			
			천호동	427-24	대	99.0			
			천호동	427-25	대	112.0			

구 분	가구 번호	가구 면적(㎡)	법정동	지번	지목	면적(㎡)		계획내용	비고
						필지	계		
			천호동	427-29	대	452.0			
			천호동	427-35	대	122.0		필지분할선	
			천호동	427-36	대	56.0			
			천호동	427-65	대	46.0		필지분할선	
신설	A4	21,316.0	천호동	412-2	대	218.0			
			천호동	412-3	대	202.0			
			천호동	412-4	대	120.0			
			천호동	412-5	대	36.0			
			천호동	412-6	대	89.0			
			천호동	412-9	대	156.0			
			천호동	412-12	대	23.0			
			천호동	413-1	대	2,294.0			
			천호동	413-3	대	50.0			
			천호동	413-4	대	132.0			
			천호동	413-5	대	126.0			
			천호동	413-6	대	136.0			
			천호동	413-8	대	116.0	2,867.0	공동개발 특별지정, 필지분할선	
			천호동	414	대	2,751.0			
			천호동	415-5	대	175.0		필지분할선	
			천호동	415-8	대	106.0			
			천호동	415-9	대	93.0			
			천호동	415-10	대	112.0			
			천호동	415-12	대	79.0			
			천호동	415-14	대	172.0		필지분할선	
			천호동	415-15	대	86.0			
			천호동	415-16	대	86.0			
			천호동	415-18	대	89.0			
			천호동	415-23	대	638.0		필지분할선	
			천호동	415-25	대	106.0			
			천호동	415-26	대	106.0			
			천호동	415-27	대	106.0			
			천호동	415-28	대	119.0			
			천호동	415-29	대	159.0		필지분할선	
			천호동	415-31	대	119.0			
			천호동	415-32	대	119.0			
			천호동	415-33	대	175.0		필지분할선	
			천호동	416-2	대	162.0			
			천호동	416-3	대	913.0		필지분할선	

구 분	가구 번호	가구 면적(㎡)	법정동	지번	지목	면적(㎡)		계획내용	비고
						필지	계		
			천호동	416-5	대	165.0			
			천호동	416-6	대	225.0			
			천호동	416-7	대	198.0			
			천호동	416-8	대	135.0			
			천호동	416-9	대	89.0			
			천호동	416-10	대	165.0			
			천호동	416-11	대	76.0			
			천호동	416-12	대	528.0			
			천호동	416-15	대	149.0			
			천호동	416-16	대	40.0			
			천호동	416-17	대	23.0			
			천호동	416-18	대	17.0			
			천호동	416-19	대	80.0		필지분할선	
			천호동	417-3	대	121.0			
			천호동	417-5	대	684.0			
			천호동	417-7	대	132.0			
			천호동	417-71	대	10.0			
			천호동	417-72	대	9.0			
			천호동	418-5	대	903.0			
			천호동	418-12	대	430.0			
			천호동	419-3	대	3,722.0			
			천호동	420-6	대	1,175.0			
			천호동	421-4	대	779.0			
			천호동	421-10	대	1231.0			
			천호동	425-103	대	61.0			
			천호동	454	대	380.0			
			천호동	454-1	대	4,593.0			
			천호동	454-2	대	2,626.0		필지분할선	
			천호동	454-3	대	114.0		필지분할선	
			천호동	454-4	대	99.0			
			천호동	454-5	대	119.0			
신설	A5	10,110.0	천호동	454-6	대	102.0			
			천호동	454-7	대	119.0			
			천호동	454-8	대	106.0			
			천호동	454-9	대	106.0			
			천호동	454-10	대	106.0			
			천호동	454-11	대	106.0			
			천호동	454-12	대	99.0			

구 분	가구 번호	가구 면적(㎡)	법정동	지번	지목	면적(㎡)		계획내용	비고
						필지	계		
			천호동	454-13	대	199.0			
			천호동	454-14	대	166.0			
			천호동	454-86	도로	299.0			
			천호동	455	대	533.0			
			천호동	455-4	대	238.0			
신설	A6	1,051.0	천호동	454-20	대	109.0			
			천호동	454-21	대	99.0			
			천호동	454-22	대	109.0			
			천호동	454-23	대	99.0			
			천호동	454-24	대	116.0		필지분할선	
			천호동	454-25	대	116.0		필지분할선	
			천호동	454-26	대	99.0			
			천호동	454-27	대	99.0			
			천호동	454-28	대	106.0			
			천호동	454-29	대	99.0			
신설	A7	911.0	천호동	454-36	대	99.0			
			천호동	454-37	대	99.0			
			천호동	454-38	대	99.0			
			천호동	454-39	대	99.0			
			천호동	454-40	대	99.0		필지분할선	
			천호동	454-41	대	109.0		필지분할선	
			천호동	454-42	대	99.0			
			천호동	454-43	대	109.0			
			천호동	454-44	대	99.0			
신설	A8	7,243.0	천호동	454-15	대	2565.0		필지분할선	
			천호동	454-16	대	112.0			
			천호동	454-17	대	109.0			
			천호동	454-18	대	102.0			
			천호동	454-19	대	99.0			
			천호동	454-30	대	116.0			
			천호동	454-31	대	116.0			
			천호동	454-32	대	106.0			
			천호동	454-34	대	106.0			
			천호동	454-35	대	106.0			
			천호동	454-45	대	318.0			
			천호동	454-48	대	109.0			
			천호동	454-49	대	474.0			
			천호동	454-50	대	83.0			

구 분	가구 번호	가구 면적(㎡)	법정동	지번	지목	면적(㎡)		계획내용	비고
						필지	계		
			천호동	454-51	대	63.0			
			천호동	454-52	대	162.0			
			천호동	454-53	대	63.0			
			천호동	454-54	대	109.0			
			천호동	454-55	대	119.0			
			천호동	454-56	대	119.0			
			천호동	454-57	대	119.0			
			천호동	454-58	대	145.0			
			천호동	454-59	대	260.0		필지분할선	
			천호동	454-60	대	724.0		필지분할선	
			천호동	454-61	대	47.0			
			천호동	454-62	대	89.0			
			천호동	454-63	대	93.0			
			천호동	454-64	대	261.0		필지분할선	
			천호동	454-65	대	172.0		필지분할선	
			천호동	454-66	대	83.0		필지분할선	
			천호동	454-67	대	14.0		필지분할선	
			천호동	454-68	대	19.0		필지분할선	
			천호동	454-72	대	10.0			
			천호동	454-79	대	3.0			
			천호동	454-80	대	10.0			
			천호동	454-84	대	2.0			
			천호동	454-85	대	36.0		필지분할선	
신설	A9	5,197.0	천호동	408-5	대	17.0			
			천호동	408-6	대	63.0			
			천호동	408-10	대	23.0			
			천호동	408-11	대	23.0			
			천호동	408-12	대	237.0		필지분할선	
			천호동	408-13	대	13.0			
			천호동	408-18	도	33.0			
			천호동	409-2	도	255.0			
			천호동	409-4	대	17.0			
			천호동	409-6	대	192.0		필지분할선	
			천호동	409-7	대	20.0			
			천호동	409-8	대	17.0			
			천호동	409-10	대	119.0		필지분할선	
			천호동	409-11	대	50.0			
			천호동	409-26	대	36.0		필지분할선	

구 분	가구 번호	가구 면적(㎡)	법정동	지번	지목	면적(㎡)		계획내용	비고
						필지	계		
			천호동	409-27	대	69.0		필지분할선	
			천호동	409-28	대	76.0		필지분할선	
			천호동	409-29	대	23.0			
			천호동	409-30	대	66.0			
			천호동	409-31	대	56.0			
			천호동	409-34	대	132.0			
			천호동	409-35	대	26.0			
			천호동	409-36	대	36.0			
			천호동	409-38	대	40.0			
			천호동	409-46	대	17.0			
			천호동	409-48	대	7.0			
			천호동	409-50	대	51.0			
			천호동	410	전	13.0			
			천호동	410-1	대	87.0			
			천호동	410-3	대	40.0			
			천호동	410-4	대	73.0			
			천호동	410-5	대	66.0			
			천호동	410-6	대	36.0			
			천호동	410-7	대	129.0			
			천호동	410-8	대	142.0			
			천호동	410-9	대	76.0			
			천호동	410-10	대	79.0			
			천호동	410-11	대	106.0			
			천호동	410-12	대	56.0			
			천호동	410-13	대	10.0			
			천호동	410-14	대	43.0			
			천호동	410-15	대	3.0			
			천호동	410-16	대	26.0			
			천호동	410-17	대	53.0			
			천호동	410-18	대	66.0			
			천호동	410-20	대	63.0			
			천호동	410-21	대	46.0			
			천호동	410-22	대	43.0			
			천호동	410-23	대	17.0			
			천호동	410-24	대	50.0			
			천호동	410-25	대	40.0			
			천호동	410-26	대	53.0			
			천호동	410-27	대	79.0			

구 분	가구 번호	가구 면적(㎡)	법정동	지번	지목	면적(㎡)		계획내용	비고
						필지	계		
			천호동	410-28	대	76.0			
			천호동	410-31	대	26.0			
			천호동	410-32	대	30.0			
			천호동	410-33	대	30.0			
			천호동	410-34	대	73.0			
			천호동	410-36	대	63.0			
			천호동	410-37	대	53.0			
			천호동	410-38	대	13.0			
			천호동	410-39	대	30.0			
			천호동	410-41	대	26.0			
			천호동	410-42	대	8.0			
			천호동	410-101	도로	160.0			
			천호동	410-222	대	17.0			
			천호동	410-236	도로	43.0			
			천호동	410-237	대	7.0			
			천호동	410-238	대	23.0			
			천호동	410-239	대	17.0			
			천호동	410-240	대	13.0			
			천호동	410-241	대	7.0			
			천호동	410-251	대	20.0			
			천호동	410-252	대	17.0			
			천호동	410-253	대	2.0			
			천호동	411-1	대	60.0		필지분할선	
			천호동	411-3	대	7.0			
			천호동	411-4	대	144.0		필지분할선	
			천호동	411-39	대	128.0		필지분할선	
			천호동	411-41	대	60.0		필지분할선	
			천호동	411-42	대	44.0		필지분할선	
			천호동	411-43	대	17.0		필지분할선	
			천호동	411-44	대	30.0			
			천호동	411-45	대	13.0			
			천호동	411-46	대	7.0			
			천호동	411-47	대	56.0			
			천호동	411-48	대	13.0			
			천호동	411-49	대	23.0			
			천호동	411-50	대	92.0			
			천호동	411-54	대	143.0			
			천호동	411-58	대	23.0			

구 분	가구 번호	가구 면적(㎡)	법정동	지번	지목	면적(㎡)		계획내용	비고
						필지	계		
			천호동	411-59	대	129.0			
			천호동	411-61	대	62.0			
			천호동	411-71	대	2.0			
			천호동	411-72	대	10.0			
			천호동	411-73	대	17.0			
			천호동	411-74	대	54.0		필지분할선	
			천호동	411-75	대	20.0			
			천호동	411-76	대	44.0		필지분할선	
			천호동	411-77	대	36.0			
신설	A10	8,094.0	천호동	453-7	대	307.0			
			천호동	453-8	대	67.0			
			천호동	453-9	대	678.0			
			천호동	453-10	대	693.0			
			천호동	453-11	대	107.0			
			천호동	453-12	대	41.0			
			천호동	453-13	대	30.0			
			천호동	453-14	대	1,221.0			
			천호동	453-15	대	658.0		필지분할선	
			천호동	453-18	대	514.0			
			천호동	453-19	대	2,024.0		필지분할선	
			천호동	453-20	대	238.0		필지분할선	
			천호동	453-21	대	526.0		필지분할선	
			천호동	453-22	대	436.0		필지분할선	
			천호동	453-23	대	317.0		필지분할선	
			천호동	453-24	대	237.0		필지분할선	
신설	A11	11,726.0	천호동	452	대	716.0		필지분할선	
			천호동	452-1	대	876.0			
			천호동	452-3	대	627.0			
			천호동	452-4	대	1,787.0		필지분할선	
			천호동	452-5	대	469.0		필지분할선	
			천호동	452-6	대	149.0			
			천호동	452-7	대	116.0			
			천호동	452-8	대	132.0			
			천호동	452-9	대	221.0			
			천호동	452-10	대	112.0			
			천호동	452-11	대	172.0			
			천호동	452-12	대	331.0			
			천호동	452-15	대	245.0			

구 분	가구 번호	가구 면적(㎡)	법정동	지번	지목	면적(㎡)		계획내용	비고
						필지	계		
			천호동	452-16	대	40.0			
			천호동	452-17	대	37.0			
			천호동	452-18	대	57.0			
			천호동	452-19	대	50.0			
			천호동	452-20	대	260.0			
			천호동	452-21	대	521.0			
			천호동	452-22	대	807.0			
			천호동	452-26	대	83.0			
			천호동	452-30	대	70.0			
			천호동	452-31	대	158.0			
			천호동	452-32	대	159.0			
			천호동	452-33	대	162.0			
			천호동	452-70	도	6.0			
			천호동	452-71	도	3.0			
			천호동	452-73	대	73.0			
			천호동	452-74	대	27.0			
			천호동	452-75	전	10.0			
			천호동	452-76	대	160.0			
			천호동	453	대	431.0			
			천호동	453-1	대	472.0			
			천호동	453-2	대	314.0			
			천호동	453-3	대	430.0			
			천호동	453-5	대	1,008.0			
			천호동	453-6	대	329.0			
			천호동	453-40	대	61.0			
			천호동	453-58	대	45.0			
신설	A12	956.0	천호동	410-184	대	89.0		필지분할선	
			천호동	410-185	대	142.0		필지분할선	
			천호동	410-186	대	360.0	494.0	공동개발 권장, 필지분할선	
			천호동	410-188	대	61.0			
			천호동	410-189	대	73.0			
			천호동	410-187	대	194.0			
			천호동	410-250	대	17.0			
			천호동	566-1	대	20.0			
신설	A13	19,713.4	천호동	451	대	1,986.0		필지분할선	
			천호동	451-23	대	73.0			
			천호동	451-37	대	603.0		필지분할선	

구 분	가구 번호	가구 면적(㎡)	법정동	지번	지목	면적(㎡)		계획내용	비고
						필지	계		
			천호동	566	대	16,705.5		필지분할선	
			천호동	566-6	대	345.9			
신설	A14	7,588.8	천호동	450	대	3,249.0			
			천호동	450-67	도	54.0			
			천호동	450-68	도	1.0			
			천호동	451-4	대	76.0			
			천호동	451-5	대	73.0			
			천호동	451-6	대	89.0			
			천호동	451-7	대	195.0			
			천호동	451-8	대	357.0			
			천호동	451-9	대	202.0			
			천호동	451-10	대	96.0	158.0	공동개발 권장	
			천호동	451-11	대	26.0			
			천호동	451-152	대	36.0			
			천호동	451-12	대	113.0	243.1	공동개발 특별지정, 필지분할선(566-10)	
			천호동	566-10	대	130.1			
			천호동	451-13	대	36.0			
			천호동	451-14	대	125.0	216.3	공동개발 특별지정, 필지분할선	
			천호동	451-15	대	50.0			
			천호동	566-17	대	41.3			
			천호동	451-20	대	2,037.0	2104.9	공동개발 특별지정, 필지분할선	
			천호동	566-9	대	67.9			
			천호동	451-150	대	30.0			
			천호동	451-151	대	17.0			
			천호동	451-153	도	142.0			
			천호동	451-201	종	319.0	345.5	공동개발 특별지정, 필지분할선(566-16)	
			천호동	566-16	대	26.5			
신설	A15	10,072.0	성내동	48-1	대	594.0			
			성내동	48-28	대	106.0		필지분할선	
			성내동	48-29	대	93.0			
			성내동	48-35	대	669.0		필지분할선	
			성내동	48-39	대	96.0			
			성내동	48-41	대	175.0			
			성내동	48-42	대	129.0		필지분할선	
			성내동	48-43	대	99.0			
			성내동	49-11	대	7.0			
			성내동	49-14	대	727.0			

구 분	가구 번호	가구 면적(㎡)	법정동	지번	지목	면적(㎡)		계획내용	비고
						필지	계		
			성내동	62-4	대	2,963.0		필지분할선	
			성내동	64-13	대	2,365.0			
			성내동	77-27	대	116.0			
			성내동	77-29	대	119.0			
			성내동	77-30	대	119.0			
			성내동	77-37	대	508.0			
			성내동	77-38	대	484.0			
			성내동	77-40	대	175.0		필지분할선	
			성내동	77-44	대	132.0		필지분할선	
			성내동	77-54	대	186.0			
			성내동	77-55	대	210.0			
신설	A16	2,306.0	성내동	77-39	대	646.0			
			성내동	78-1	대	398.0			
			성내동	78-8	대	7.0			
			성내동	78-10	대	363.0			
			성내동	78-11	대	347.0			
			성내동	80-7	대	13.0			
			성내동	80-12	대	532.0			
신설	A17	1,290.0	성내동	77-9	대	112.0			
			성내동	77-10	대	106.0			
			성내동	77-11	대	106.0			
			성내동	77-12	대	106.0			
			성내동	77-13	대	106.0			
			성내동	77-14	대	109.0			
			성내동	77-15	대	109.0			
			성내동	77-16	대	106.0			
			성내동	77-17	대	106.0			
			성내동	77-18	대	106.0			
			성내동	77-19	대	106.0			
			성내동	77-20	대	112.0			
신설	A18	1,990.0	성내동	77-21	대	219.0			
			성내동	77-22	대	106.0			
			성내동	77-23	대	106.0			
			성내동	80-1	대	132.0			
			성내동	80-2	대	132.0			
			성내동	80-3	대	132.0			
			성내동	80-4	대	132.0			
			성내동	80-5	대	127.0			

구 분	가구 번호	가구 면적(㎡)	법정동	지번	지목	면적(㎡)		계획내용	비고
						필지	계		
			성내동	80-14	대	135.0			
			성내동	81-10	대	122.0			
			성내동	81-11	대	119.0			
			성내동	81-12	대	175.0			
			성내동	81-13	대	155.0			
			성내동	81-14	대	198.0			
신설	A19	3,920.0	성내동	46-9	대	116.0			
			성내동	46-10	대	96.0			
			성내동	46-11	대	116.0			
			성내동	46-12	대	142.0			
			성내동	46-13	대	169.0			
			성내동	47-7	대	126.0			
			성내동	47-8	대	139.0			
			성내동	47-9	대	155.0			
			성내동	47-10	대	162.0			
			성내동	47-28	대	162.0			
			성내동	47-29	대	152.0			
			성내동	77-2	대	132.0			
			성내동	77-3	대	119.0			
			성내동	77-4	대	109.0			
			성내동	77-5	대	119.0			
			성내동	77-6	대	132.0			
			성내동	77-7	대	126.0			
			성내동	77-8	대	136.0			
			성내동	77-31	대	159.0			
			성내동	81-1	대	238.0			
			성내동	81-2	대	179.0			
			성내동	81-4	대	212.0			
			성내동	81-5	대	106.0			
			성내동	81-6	대	122.0			
			성내동	81-16	대	152.0			
			성내동	81-17	대	169.0			
			성내동	81-19	대	175.0			
신설	A20	2,755.0	성내동	46-3	대	126.0			
			성내동	46-4	대	126.0			
			성내동	46-5	대	126.0			
			성내동	46-6	대	126.0			
			성내동	46-7	대	126.0			

구 분	가구 번호	가구 면적(㎡)	법정동	지번	지목	면적(㎡)		계획내용	비고
						필지	계		
			성내동	46-8	대	132.0			
			성내동	46-22	대	225.0			
			성내동	46-23	대	245.0			
			성내동	46-24	대	116.0			
			성내동	46-25	대	116.0			
			성내동	46-26	대	119.0			
			성내동	46-27	대	119.0			
			성내동	46-28	대	179.0			
			성내동	47-3	대	126.0			
			성내동	47-4	대	136.0			
			성내동	47-22	대	155.0			
			성내동	47-23	대	149.0			
			성내동	47-25	대	179.0			
			성내동	47-26	대	129.0			
			성내동	43-6	대	324.0			
			성내동	43-7	대	129.0			
			성내동	43-8	대	188.0			
			성내동	43-17	대	169.0			
			성내동	44-1	대	1,690.0			
			성내동	44-5	대	1,117.0			
			성내동	45-8	대	753.0			
			성내동	46-16	대	146.0			
			성내동	46-17	대	126.0			
			성내동	46-18	대	126.0			
신설	A21	8,591.9	성내동	46-19	대	122.0			
			성내동	47-1	대	112.0			
			성내동	47-12	대	99.0			
			성내동	47-13	대	102.0			
			성내동	47-15	대	142.0			
			성내동	47-16	대	126.0			
			성내동	47-17	대	106.0			
			성내동	47-18	대	109.0			
			성내동	47-19	대	129.0			
			성내동	47-20	대	142.0			
			성내동	51	대	2,634.9			
			성내동	50-5	대	291.0			
신설	A22	883.0	성내동	50-7	대	165.0			
			성내동	50-21	대	99.0			

구 분	가구 번호	가구 면적(㎡)	법정동	지번	지목	면적(㎡)		계획내용	비고
						필지	계		
			성내동	50-25	대	179.0			
			성내동	50-26	대	149.0			
신설	A23	3,112.0	성내동	43-1	대	278.0			
			성내동	43-11	대	1,164.0			
			성내동	43-19	대	472.0			
			성내동	45-1	대	338.0			
			성내동	45-5	대	56.0			
			성내동	48-2	대	314.0			
			성내동	48-4	대	235.0			
			성내동	48-12	대	255.0			
신설	A24	11,858.0	성내동	9-5	대	740.0			
			성내동	9-14	대	380.0			
			성내동	9-15	대	332.0			
			성내동	10-2	전	13.0			
			성내동	11-1	대	598.0			
			성내동	11-2	대	142.0			
			성내동	11-3	대	132.0			
			성내동	11-4	대	206.0			
			성내동	11-9	대	231.0			
			성내동	11-10	대	90.0			
			성내동	11-12	대	7.0			
			성내동	11-13	대	212.0			
			성내동	11-14	대	817.0			
			성내동	11-15	대	198.0			
			성내동	11-16	대	219.0			
			성내동	11-17	대	243.0			
			성내동	11-18	대	150.0			
			성내동	11-19	대	137.0			
			성내동	12-2	대	187.0			
			성내동	12-3	대	522.0		필지분할선	
			성내동	12-6	대	331.0			
			성내동	12-7	대	331.0			
			성내동	12-8	대	488.0			
			성내동	12-9	대	331.0			
			성내동	12-15	대	375.0			
			성내동	12-17	대	435.0			
			성내동	12-19	대	184.0			
			성내동	12-20	대	184.0			

구 분	가구 번호	가구 면적(㎡)	법정동	지번	지목	면적(㎡)		계획내용	비고
						필지	계		
			성내동	12-21	대	168.0			
			성내동	12-22	대	174.0			
			성내동	12-23	대	178.0			
			성내동	12-24	대	174.0			
			성내동	12-25	대	241.0			
			성내동	13-5	대	298.0		필지분할선	
			성내동	13-9	대	516.0			
			성내동	13-10	대	504.0			
			성내동	13-15	대	1,390.0			
신설	A25	1,571.0	성내동	42-1	대	73.0			
			성내동	42-2	대	160.0			
			성내동	42-4	대	243.0			
			성내동	42-5	대	197.0			
			성내동	42-6	대	191.0			
			성내동	42-7	대	201.0			
			성내동	42-8	대	76.0			
			성내동	42-9	대	56.0			
			성내동	42-10	대	79.0			
			성내동	42-11	도로	5.0			
			성내동	42-12	대	290.0			
신설	A26	2,735.0	성내동	12-13	대	352.0			
			성내동	12-26	대	179.0			
			성내동	12-27	대	173.0			
			성내동	12-29	대	167.0			
			성내동	12-30	대	171.0			
			성내동	12-31	대	179.0			
			성내동	12-32	대	173.0			
			성내동	12-33	대	179.0			
			성내동	12-34	대	173.0			
			성내동	12-35	대	228.0			
			성내동	12-36	대	203.0			
			성내동	12-37	대	214.0			
			성내동	12-38	대	171.0			
			성내동	12-39	대	173.0			
신설	B1	8,978.9	천호동	572	대	8,817.2		획지	
			천호동	572-1	대	161.7			
신설	B2	17,394.2	천호동	410-100	대	8,145.0		특별계획구역	

구 분	가구 번호	가구 면적(㎡)	법정동	지번	지목	면적(㎡)		계획내용	비고
						필지	계		
			천호동	410-103	도	38.1			
			천호동	410-104	도	1.0			
			천호동	410-105	대	7,335.2			
			천호동	410-266	대	19.0			
			천호동	410-379	대	4.7			
			천호동	410-380	대	34.8			
			천호동	410-381	대	7.5			
			천호동	452-34	대	105.0			
			천호동	452-35	대	373.0			
			천호동	452-36	대	93.0			
			천호동	452-37	대	106.0			
			천호동	452-38	대	132.0			
			천호동	452-39	대	102.0			
			천호동	452-40	대	291.0			
			천호동	452-45	대	158.0			
			천호동	452-67	도	15.0			
			천호동	452-69	도	271.0			
			천호동	452-82	도	49.0			
			천호동	566-4	대	41.4			
			천호동	566-5	대	70.6			
			천호동	566-14	대	1.9			
신설	B3	7,613.0	천호동	166-4	대	1,012.0		특별계획구역	
			천호동	166-105	대	271.0			
			천호동	166-106	대	263.0			
			천호동	166-107	대	330.0			
			천호동	166-108	대	330.0			
			천호동	166-109	대	264.0			
			천호동	166-110	대	396.0			
			천호동	166-111	도	403.0			
			천호동	166-114	대	61.0			
			천호동	166-115	대	67.0			
			천호동	397-170	대	205.0			
			천호동	410-159	대	40.0			
			천호동	410-182	대	3.0			
			천호동	450-18	대	112.0			
			천호동	450-19	대	119.0			

구 분	가구 번호	가구 면적(㎡)	법정동	지번	지목	면적(㎡)		계획내용	비고
						필지	계		
			천호동	450-20	대	116.0			
			천호동	450-21	대	122.0			
			천호동	450-22	대	116.0			
			천호동	450-23	대	119.0			
			천호동	450-24	대	239.0			
			천호동	450-25	대	139.0			
			천호동	450-26	대	129.0			
			천호동	450-35	대	235.0			
			천호동	450-36	대	109.0			
			천호동	450-37	대	129.0			
			천호동	450-38	대	275.0			
			천호동	450-40	대	241.0			
			천호동	450-41	대	241.0			
			천호동	450-42	대	146.0			
			천호동	450-43	대	142.0			
			천호동	450-44	대	157.0			
			천호동	450-45	대	221.0			
			천호동	450-46	대	241.0			
			천호동	450-47	대	23.0			
			천호동	450-48	도	2.0			
			천호동	450-49	도	399.0			
			천호동	450-53	도	2.0			
			천호동	451-111	대	161.0			
			천호동	566-11	대	6.0			
			천호동	566-12	대	6.0			
			천호동	566-13	대	21.0			
신설	B4	5,053.0	성내동	610	대	5,053.0		획지	
신설	B5	6,411.5	성내동	611	대	6,411.5		획지	

3) 최대개발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 최대개발규모 결정(기정) 조서

구분		내 용	비고
기정	성내1-1	•간선부(천호대로변): 미지정 •이면부(간선부 외): 1,500㎡ 이하	

■ 최대개발규모 결정(변경) 조서

구분	내 용	비고
변경	•간선부(천호대로, 올림픽로, 구천면로, 진황도로 등): 제한 없음 •이면부(간선부 외): 3,000㎡ 이하	결정도 참고

※ 간선부-이면부공동개발 시 간선부기준을 적용함
※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개발규모 적용 예외
‣ 기 개발된 대지면적이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 특별계획(가능)구역, 획지계획, 공동개발(특별지정/지정/권장)계획 등의 계획 지침에 따라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한 경우
‣ 역세권 활성화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개별법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 경우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원칙으로 함)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 내용	변경 사유
간선부	•최대개발규모 미적용	•간선변 계획적 개발 유도 위해 최대개발규모 미설정, 자율적 공동개발 유도
이면부	•최대개발규모 3,000㎡ 이내	•특화용도 유도 및 지하주차장 조성 가능하도록 최대개발규모 설정

나.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1) 불허용도에 관한 결정(변경)

■ 불허용도 결정(기정) 조서

구분		내 용	비고
기정	천호3	•관련 법령에 따라 당해 용도지역에서 제한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총포판매소, 장의사,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발매소 등 유사시설	
기정	성내1-1		

■ 불허용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내 용	비고
변경	1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주택)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용도 이외의 용도와 복합하는 경우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 정수장, 양수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골프연습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옥외철탑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건축자재관련업종, 간이공작소(목공소, 철공소, 알루미늄 공작업 등)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발매소 등 유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투전기업소, 카지노영업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대지에 한함)	일반 상업 지역
변경	2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주택)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용도 이외의 용도와 복합하는 경우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 정수장, 양수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골프연습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옥외철탑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건축자재관련업종, 간이공작소 (목공소, 철공소, 알루미늄 공작업 등)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발매소 등 유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투전기업소, 카지노영업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근린 상업 지역

구분		내 용	비고
변경	3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주택)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 정수장, 양수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골프연습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옥외철탑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건축자재관련업종, 간이공작소 (목공소, 철공소, 알루미늄 공작업 등)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발매소 등 유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투전기업소, 카지노영업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대지에 한함)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1의2 사행성게임물	준주거 지역
변경	4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주택)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 정수장, 양수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골프연습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옥외철탑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건축자재관련업종, 간이공작소 (목공소, 철공소, 알루미늄 공작업 등)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발매소 등 유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대지에 한함)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1의2 사행성게임물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변경	5	•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도 이외 용도	천호1, 성내3, 성내5

※ 「국토계획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당해 용도지역에서 제한되는 건축물 · 시설 불허
※ 특별계획구역 불허용도는 특별계획구역 계획 지침에 따름
※ 용도지역 등 한 대지에 서로 다른 불허용도가 적용될 경우, 면적이 더 넓은 대지에 적용되는 지침 적용
※ 1)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주택(전용 60㎡ 이하)은 불허용도로 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함
- 주차대수 기준: [전용 60㎡ 이하] 0.6대/세대 → 0.8대/세대 조성 시 허용
: [전용 30㎡ 이하] 0.5대/세대 → 0.7대/세대 조성 시 허용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불허용도	•불허용도 결정	•대상지의 입지상 중심성에 불부합하는 용도 불허

2) 권장용도에 관한 결정(변경)

■ 권장용도 결정(기정) 조서

구분		내 용	비고
기정	천호3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기정	성내1-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 권장용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내 용	비고
변경	A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대규모점포), 상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일반 · 근린 상업지역 (간선부)
변경	B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대규모점포), 상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일반 상업지역 (이면부)
변경	C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잡화, 의류(편집숍, Pop up 매장 등 전시연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일반상업지역 (로데오거리변)

구분		내 용	비고
변경	D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준주거지역 (천호옛길변)
변경	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복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장의사,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고시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준주거지역 (이면부)
변경	F	•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도 적용	천호1,성내3, 성내5 (기 준공 촉진구역)

※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은 권장용도에서 제외
※ 특별계획구역 권장용도는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 권장용도 면적: 권장용도는 전층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주차장을 제외한 전체 연면적의 10% 이상 설치 시 권장용도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
※ 용도지역 등 한 대지에 서로 다른 권장용도가 적용될 경우, 면적이 더 넓은 대지에 적용되는 지침 적용
※ '00. 7. 1 이전 용도지역 변경이 없거나 용도지역 상향된 지역에 한해 개편된 용적률 체계가 적용되는 지역은 권장용도를 의무이행 사항으로 해야만 허용용적률 적용 가능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 내용	변경 사유
권장용도	•권장용도 결정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중심지 기능 강화 위한 권장용도 계획

다. 건축물 밀도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1) 건폐율에 관한 결정(변경 없음)

■ 건폐율 결정 조서

구 분	내 용	비 고(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반상업지역	60% 이하	60% 이하
근린상업지역	60% 이하	60% 이하
준주거지역	60% 이하	6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50% 이하

※ 건폐율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4조 적용
※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를 따름
※ 특별계획구역 등에서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변경되는 용도지역은 당해 용도지역의 지침 적용

2) 용적률에 관한 결정(변경)

■ 용적률 결정(기정) 조서

구 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비 고
기정	천호1	714% 이하	-	810% 이하	
기정	천호3	500% 이하	60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기정	천호8	520% 이하	-	800% 이하	
기정	성내1-1	300% 이하	630% 이하	800% 이하	
기정	성내3	610% 이하	-	800% 이하	
기정	성내5	500% 이하	-	650% 이하	

■ 용적률 결정(변경) 조서

구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비고
변경	일반상업지역	800% 이하	88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71. 4. 상향
변경		300% 이하	630% 이하	800% 이하	’01. 6. 상향
변경	근린상업지역	400% 이하	530% 이하	600% 이하	’01. 6. 상향
변경		300% 이하	500% 이하	600% 이하	’01. 6. 상향
변경	준주거지역	300% 이하	360% 이하	400% 이하	-
변경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이하	275%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변경	정비계획 결정 지역	•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 적용			

※ 상한용적률산정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10조를 준수함
※ 법적용적률이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8조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말함
※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및 주거용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16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역세권 활성화사업 등 개별법 및 관련 기준에 따른 개발사업 추진 시 해당 사업 운영 기준의 용적률 체계를 적용함
※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를 따름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 00. 7. 1. 이후 용도지역 변경된 경우는 종전의 용적률 체계 적용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1조제2항제9호에 따라 용적률 최대한도 범위 완화 적용 가능
(부칙 제9644호 제2조에 따라 ’ 28. 5. 18 까지 한시 적용, 관련 규정 변경 시 그에 따름)

- 변경사유서

구분	적용 대상	변경 사유
용적률	용적률 계획 필지	용도지역별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등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적용

3) 높이에 관한 결정(변경)

■ 높이 결정(기정) 조서

구분		높이	비고
기정	천호1	140m 이하	
기정	천호3	60m 이하	
기정	천호8	140m 이하	
기정	성내1-1	간선 120m 이하, 이면 30m 이하	
기정	성내3	140m 이하	
기정	성내5	140m 이하	

■ 높이 결정(변경) 조서

구분			최고 높이	완화 높이	비고
변경	일반상업지역	간선도로변	140m 이하	150m 이하	
변경			120m 이하	140m 이하	
변경		이면도로변	120m 이하	-	
변경	근린상업지역	간선도로변	140m 이하	150m 이하	
변경		이면도로변	70m 이하	-	
변경	준주거지역	이면도로변	70m 이하	-	
변경	제3종일반주거지역	간선도로변	120m 이하	140m 이하	
변경		이면도로변	50m 이하	-	
변경	정비계획 결정지역		•정비계획으로 결정된 높이 적용		

※ 완화 높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기부채납 시 완화높이 적용, 상한용적률과 중복 적용 가능
- 완화 높이: 최고 높이 x [1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 대지면적)] ≤ 최고 높이의 1.2배 이내
※ 간선부-이면부 공동개발 시 간선부 높이 기준 적용
※ 역세권 활성화사업 등 개별법 및 관련 기준에 따른 개발사업 추진 시 해당 사업 운영 기준 적용

- 변경사유서

구분	적용 대상	계획 내용
높이	높이 계획 필지	•개발 여건 고려한 최고높이 계획 수립, 완화높이 적용 통한 사업실현성 확보

라. 건축물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1) 건축물 배치에 관한 결정(변경)

가) 건축선

■ 건축선 결정(기정) 조서

구분		건축선	비고
기정	천호1	•벽면한계선: 3~5m(현대백화점 북측) •건축한계선: 5m(천호대로, 올림픽로)	
기정	천호3	•건축한계선: 2.5m(중로1~천호2), 중심선으로부터 9m(중로3-407), 천호4구역으로부터 8m(동측 이면도로)	
기정	천호8	•건축한계선: 3m(천호대로163길)	
기정	성내1-1	•건축한계선: 5m(광로2-5), 3m(소로3-7), 2m(남측 이면도로)	
기정	성내3	•건축한계선: 5m(광로2-5), 3m(중로2-성내2, 소로2-8, 소로3-7)	
기정	성내5	•건축한계선: 5m(천호대로), 4m(소로3-45), 4~5.5m(천호대로162길), 3m(천호옛14길)	

■ 건축선 결정(변경) 조서

구분		적용지역	계획 내용	비고
변경	건축 한계선	천호대로	5m	
변경		구천면로	3m	
변경		올림픽로	3m~5m	
변경		천호대로157길	3m, 중심선으로부터 9m	
변경		천호옛길	1m~3m	
변경		기타 이면부	필요시 0.5m~3m	
변경	벽면한계선	성내동 64-13	3m	
변경	정비계획 결정지역	•정비계획으로 결정된 건축선 적용		

※ 필지분할선이 계획된 필지는 필지분할선으로부터 계획

※ 블록단위 개발 등 규모에 따라,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20조의 개별건축 또는 공동개발 시 건축선·필지분할선 계획을 따름

– 변경사유서

구분	적용 대상	변경 사유
건축한계선	건축한계선 계획 필지	•연속적인 가로경관 유도 위해 계획(간선부 건축한계선) •대지의 효율적 이용을 고려, 이격거리를 최소화하여 계획(이면부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벽면한계선 계획 필지	•벽면한계선과 공공보행통로를 연계하여 계획, 보행 연결 유도

2) 건축물 형태에 관한 결정(변경)

■ 건축물 형태 결정(기정) 조서

구분				건축선	비고
기정	천호3	건축물 형태	투시벽 및 투시형셔터	•걷고 싶은 거리변 건축물의 1층은 투시벽 및 투시형 셔터 설치 권장	
			1층 바닥높이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하는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 · 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	
		건축물 외관	재료/색채	•외벽면의 재료, 의장, 색채는 주변건물과 조화 •로데오거리변에 면한 건축물은 건축물의 저층부 및 전면부에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반사, 발광소재 사용 및 과도한 철골구조 노출 금지	
			설치시설 관련	•로데오거리변건축물 건축설비 도로변 노출 금지 •건물 입면에 건축설비 노출 자제, 옥상부에 설비설치 가능 공간 확보 권장	
			야간조명	•10층 이상의 건축물 건축 시 상향식 야간조명 설치 권장 •옥외설치 미술작품의 야간조명 설치 권장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등 관련규정 준수	
		기타 사항	담장 및 옹벽의 처리	•담장 설치 시 식재 담장 또는 투시형 담장 설치 권장 •옹벽은 자연석, 조경석 등을 사용하여 계단식으로 조성, 개방성을 고려	
기정	천호8	건축물 외부형태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입면을 지양하고 변화감있는 입면으로 계획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지나친 색채 사용 금지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 •물탱크, 냉난방시설 등의 부속시설의 외부노출 지양	
		저층부 외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질서있는 입면 계획 권장 •장대한 입면 및 돌출경관 지양 •쇼윈도 설치 및 야간조명 설치	
		재료/색채		•반사성재료 사용 금지 •넓은 면에 원색 계열재료 및 도료 사용 금지	

구분				건축선	비고
		진입구 처리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보도와 단차를 가급적 지양 •접근로는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 및 형태로 계획	
기정	성내 1-1	건축물 형태	투시벽 및 투시형셔터	•천호대로변 거리변건축물의 1층은 투시벽 및 투시형 셔터 설치 권장	
		건축물 외관	1층 바닥높이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하는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 · 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	
			재료/색채	•외벽면의 재료, 의장, 색채는 주변건물과 조화	
			설치시설 관련	•천호대로변 건축물 건축설비 도로변 노출 금지 •건물 입면에 건축설비 노출 자제 •옥상부에 설비설치 가능 공간 확보 권장	
			야간조명	•10층 이상의 건축물 건축 시 상향식 야간조명 설치 권장 •옥외설치 미술작품의 야간조명 설치 권장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 준수	
		기타 사항	담장 및 옹벽의 처리	•담장 설치 시 식재 담장 또는 투시형 담장 설치 권장 •옹벽은 자연석, 조경석 등을 사용하여 계단식으로 조성, 개방성을 고려	

■ 건축물 형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건축선	비고
변경	건축물 형태 및 색채	1층부 형태	•개구부는 연접 필지 내 기존 건축물의 높이와 조화되도록 건축 •구역 내 모든 건축물의 1층 개구부 및 1층부 창문은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설치 •간선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간선도로 방향으로 1층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설치해서는 아니됨	
		1층 바닥높이	•건축물의 1층 바닥 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와 동일 높이로 계획(무장애공간으로 계획)	
		외벽	•외벽의 외장, 재료, 색채에 있어 통일성을 유지하며, 주변 경관과 조화된 양질의 재료와 인접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색조 사용 •폭 10m 이상의 도로에 면한 1층부 가로활성화용도 건축물은 개구부 없는 벽면 노출 금지(단, 벽면에 조경 · 상층부와 연결된 디자인 등 설계적 요소 포함한 경우 제외)	
		투시벽 및 투시형셔터	•폭 10m 이상의 도로에 면한 1층부 가로활성화용도 건축물은 1층 전면 벽면 면적의 50% 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 •셔터 설치를 지양하되, 셔터 설치 시 가로에서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셔터면적의 ½ 이상이 개방되어있는 투시형으로 설치	

구분			건축선	비고
		측면공지 차폐	•대지의 측면경계선과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가 3m 미만이고 이격부분이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격공지는 조경식재 •3m 이상의 이격공지는 보행자를 위한 통로 또는 공개공간 등으로 조성 권장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 준수	
		기타 구조물	•옥탑, 냉각탑, 환기구, 냉방배기장치 등의 건축설비는 도로변에 노출 설치 금지 •보행로에 면한 건축물의 외벽면은 기계환기설비 및 쓰레기통 등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 설치금지 •담, 문, 지하층출입구 등은 건물의 벽면과 조화되는 재료 및 색채를 사용	환기구, 배관, 냉방재기장치 등의 설치 시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름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 사유
건축물 형태 및 색채	•1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건축물 외관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 마련 •가로경관 향상을 위한 옥외광고물 지침 및 기타 구조물 설치 지침 마련 •측면 공지의 적극적 활용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침 추가

마.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1)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변경)

■ 대지 내 공지 결정(기정) 조서

구분			계획 내용	비고
기정	천호3	전면공지	•중로1-천호2: 필지분할선에서 건축한계선 구간 2.5m(보도형) •중로3-407: 필지분할선에서 건축한계선 구간 3m(보도형) •소로2-4: 건축한계선에서 동측 도로경계선구간 6m(차도형), 그 외(보도형)	
기정	천호8	공개공지	•중로-천호2: 900㎡ 이상 조성(①+②),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 구간 : 보도형	
		전면공지	•중로1-천호3: 3m(보도형)	
		공공보행통로	•필로티구조(폭원6m 이상, 유효높이 6m 이상)	

구분			계획 내용	비고
기정	성내 1-1	공개공지	•광로2-5: 천호대로변과 성내3구역 공공공지 연접부에 설치	
		전면공지	•광로2-5: 5m(보도형 열린공간), 소로3-7: 3m(보도형), 남측 이면도로: 2m(차도형)	
기정	성내3	공개공지	•대지면적의 7%이상	
		전면공지	•광로2-5: 5m(보도형 열린공간), 중로2-성내2: 3m(보도형), 소로2-8: 3m(보도형), 소로3-7: 3m(보도형)	
기정	성내5	공개공지	•성내동 14-5일대 495㎡이상 조성(소공원형태)	
		전면공지	•천호대로변: 5m(보도형 열린공간), 소로3-45: 2m(보도형, 보도 외 차도), 천호대로162길: 2m(보도형, 보도 외 차도), 천호옛14길: 3m(보도형)	

■ 대지 내 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계획 내용	비고
변경	전면공지	•건축한계선을 통한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계획	
변경	공개공지	•천호대로변 및 천호옛길 공개공지 배치	
변경	대지안의 조경	•조경기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4조의 규정 준용 •식재기준: 「건축법」 제42조2항의 규정에 의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름	

※ 정비계획 결정지역은 정비계획으로 결정된 기준 적용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 사유
전면공지	•건축한계선을 통한 전면공지를 확보하여 원활한 차량 진출입 확보, 보행자 휴게공간 조성 및 가로 보행환경 개선 지침 마련
공개공지	•천호대로변 전면공지와 연계한 광장 등 오픈스페이스 조성

2)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 교통처리계획 결정(기정) 조서

구분			계획 내용	비고
기정	천호1	차량출입불허구간	•천호대로, 올림픽로, 현대백화점 동측 일부	
기정	천호3	통행체계	•중로3-407: 일방통행(진황도로→천호대로 / 북→남)	
기정	천호8	차량출입불허구간	•중로1-천호2, 중로1-천호3(일부), 소로2-6(일부)	
기정	성내 1-1	차량출입불허구간	•광로2-5	
		통행체계	•소로3-7: 일방통행(천호대로→이면도로 / 북→남)	
기정	성내3	차량출입불허구간	•광로2-5, 중로2-성내2, 소로2-8(도로 모퉁이 일부)	
		통행체계	•소로3-7: 일방통행(천호대로→천호옛17길)	
기정	성내5	차량출입불허구간	•천호대로변, 소로3-45, 천호대로162길, 천호옛14길	

■ 교통처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계획 내용	비고
변경	차량진출입불허구간	•간선도로변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진출입은 원칙적으로 불허 ※ 단, 기개설 또는 인·허가를 득한 경우 제외	
변경	공동주차출입구	•차량진출입으로 인한 영향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차출입구 계획	
변경	주차출입구	•차량 출입은 원칙적으로 이면도로변에서 허용하되, 이면도로변 차량 출입이 불가한 경우 간선도로변에서 차량진출입 제한적 허용	
변경	공공보행통로	•간선부-이면부를 통하는 일방통행도로를 공공보행통로로 지정	
변경	보차혼용통로	•대지내로 보행자와 차량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보도나 차도의 단차가 없도록 계획	

※ 정비계획 결정지역은 정비계획으로 결정된 기준 적용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 사유
교통처리계획	•차량진출입불허구간, 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 등을 설정하여 간선부-이면부로의 직접적인 통행을 불허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보행자의 안전 및 오픈스페이스 확보

바.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결정 조서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특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①	특별계획구역 ① (천호4촉진구역)	강동구 천호동 410-100 일대	17,394.2	
신설	②	특별계획구역 ② (천호8촉진구역)	강동구 천호동 166-4 일대	7,613.0	

–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면적(㎡)	결정 사유
①	특별계획구역 ① (천호4촉진구역)	17,394.2	•천호4 · 천호8 촉진구역은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고려 및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②	특별계획구역 ② (천호8촉진구역)	7,613.0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_ 특별계획구역① (천호4촉진구역)

구분			계획지침	비고
위치			•강동구 천호동 410-100번지 일대	
면적			•17,394.2㎡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공공시설 등 계획			•기 결정된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공공시설 계획을 준용	
건축물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	•591% 이하	

구분			계획지침	비고
		상한	•793% 이하	
	높이		•120m 이하	
건축물 배치	건축한계선		•중로1-천호2, 중로3-천호1, 소로2-4, 소로1-2: 3m	
차량출입허용구간			•중로3-천호1변, 소로1-2변 일부 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			•차량출입 허용구간 이외의 구간에서 차량 출입 불허	
기타사항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전 정비계획이 결정고시 되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 된 구역은 해당 고시된 사항으로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며, 세부개발계획 변경 시 본 지침을 따름 •정비계획이 수립된 단지가 관계 법령에 따른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변경할 경우 본 지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_ 특별계획구역② (천호8촉진구역)

구분			계획지침	비고
위치			•강동구 천호동 166-4번지 일대	
면적			•7,613.0㎡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공공시설 등 계획			•기 결정된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공공시설 계획을 준용	
건축물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사회복지시설(공공)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	•520% 이하	
		상한	•800% 이하	
	높이		•140m 이하	
건축물 배치	건축한계선		•중로1-천호3변: 3m	
대지 내 공지	전면공지		•중로1-천호3변: 3m	

구분		계획지침	비고
	공개공지	•진황도로변 900㎡ 이상 조성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 구간은 보도형 공개공지로 조성하고 연결공지는 공개공지1, 공개공지2와 일체형으로 조성	
	공공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지정(필로티구조: 폭원6m이상, 유효높이 6m 이상)	
차량출입허용구간		•중로1-천호3변 일부 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		•차량출입 허용구간 이외의 구간에서 차량출입 불허	
기타사항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전 정비계획이 결정고시 되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 된 구역은 해당 고시 된 사항으로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며, 세부개발계획 변경 시 본 지침을 따름 •정비계획이 수립된 단지가 관계 법령에 따른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변경할 경우 본 지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2)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결정

■ 특별계획가능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①	특별계획가능구역 ① (천호3존치관리구역)	강동구 천호동 408-12 일대	5,227.0	

※ 특별계획가능구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특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신청이 없는 경우, 고시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특별계획구역가능지에 대한 효력을 잃으며, 이 경우 일반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행위는 가능함
※ 특별계획가능구역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위 기준은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55조에 따름

-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면적(㎡)	결정 사유
①	특별계획가능구역 ① (천호3존치관리구역)	5,227.0	•로데오거리 활성화에 비해 신축이 없고 시설 노후화 심각 및 필지 형태 · 소유관계 복잡 등 여건상 개별 신축이 어려워, 통합개발을 통한 환경개선을 위해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

■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지침 _ 통합개발 시

구분	계획지침	비고
위치	•강동구 천호동 408-12번지 일대	
면적	•5,227㎡	

구분		계획지침	비고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계획 방향		•필지의 형태, 소유관계 복잡, 지적과 현황 건축물과의 형태 상이 등 여건상 개별신축이 어려워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통합개발을 통한 대상지 일대 환경개선 필요 •통합개발을 통해 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으로 공공성 확보	
공공시설 등 계획		•도로 기부채납: 지침도의 도시계획시설선 따라 도로 기부채납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건축물 기부채납: 「공공기여시설 우선순의 검토 기준(강동구)」에 따라 지역 필요 시설로 우선하여 기부채납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결정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잡화, 의류(편집숍, pop-up 매장 등 전시 연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사진관, 판매시설 중 상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건축물 밀도		•향후 세부개발계획수립 시 결정	
건축물 배치	건축한계선	•진황도로변: 3m / 천호대로157길: 1m / 천호대로159길: 1m~2m	
대지 내 공지	전면공지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	
	공공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6m) 1개소 이상 조성	
차량출입허용구간		•천호대로159길 동측변에서 차량 출입 가능	
차량출입불허구간		•차량출입 허용구간 이외의 구간에서 차량 출입 불허	
기타사항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전 정비계획이 결정고시 되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 된 구역은 해당 고시된 사항으로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며, 세부개발계획 변경 시 본 지침을 따름 •정비계획이 수립된 단지가 관계 법령에 따른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변경할 경우 본 지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지침 _ 분리개발 시

구분		계획지침	비고
위치		•강동구 천호동 408-12번지 일대	
면적		•5,227㎡ (① 2,427.4㎡ / ② 1,340.0㎡ / ③ 1,459.6㎡)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계획 방향		•필지의 형태, 소유관계 복잡, 지적과 현황 건축물과의 형태 상이 등 여건상 개별신축이 어려워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통합개발을 통한 대상지 일대 환경개선 필요 •분리개발을 통해 사업실현성 확보 및 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으로 공공성 확보	
공공시설 등 계획		•지침상 도로시설 기부채납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진황도로변 공공공지 기부채납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 도로 외 기부채납은 「공공기여시설 우선순위 검토 기준(강동구)」에 따라 지역필요시설로 우선하여 기부채납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결정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잡화, 의류(편집숍, pop-up 매장 등 전시 연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사진관, 판매시설 중 상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건축물 밀도		•향후 세부개발계획수립 시 결정	
건축물 배치	건축한계선	•진황도로변: 3m / 천호대로157길: 1m / 천호대로159길: 1m~2m	
대지 내 공지	전면공지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	
	공공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4m) 2개소 이상 조성	
차량출입허용구간		•천호대로159길 동측변에서 차량출입 가능	
차량출입불허구간		•차량출입 허용구간 이외의 구간에서 차량출입 불허	
기타사항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전 정비계획이 결정고시 되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 된 구역은 해당 고시 된 사항으로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며, 세부개발계획 변경 시 본 지침을 따름 •정비계획이 수립된 단지가 관계 법령에 따른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변경할 경우 본 지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사. 인센티브 계획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1)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에 관한 결정(변경)

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및 계획기준(기정)

■ 천호3존치관리구역

항목		산정기준	비고
공동개발	자율적 공동개발	•기준용적률×(대지면적÷150)×0.05	•기 개발된 필지, 동일소유자 필지 제외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0.05	•건축선 후퇴 등으로 인한 의무면적 제외
건축물 용도	전층 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 면적÷지상연면적)	•권장용도 면적: 연면적의 20% 이상 (주차장 제외)
보행 개선	가로지장물 이전설치 등	•기준용적률×0.05	-

■ 성내1-1존치관리구역

항목		산정기준	비고
공동개발	자율적 공동개발	•간선부: 기준용적률×2×α •이면부: 기준용적률×2×α	•2필지: α=0.35 •3필지: α=0.4 •4필지: α=0.45 •5필지 이상: α=0.5 ※ 기 개발된 필지, 동일소유자 필지 제외
건축물 용도	전층 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지상연면적)×2	•권장용도 면적: 연면적의 20% 이상 (주차장 제외)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천호대로변 미관지구 폐지에 따라 건축선 3m로 지정된 면적은 의무면적
공개공지	위치 준수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α	•필로티: α=2 •개방형: α=4 •지정위치 준수에 따른 30%p 추가
보행 개선	가로지장물 이전설치 등	•기준용적률×0.3	•지하철 출입구 제외

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및 계획기준(변경)

■ 유형A (일반상업지역 기준800%/허용880%)

항목		세부항목	산정기준	α or 정량	비고
탄소 중립	저영향개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대상 건축물 : 빗물부담량 기준의 1.5배 이상 설치 •그 외: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빗물부담량 기준 준수	기준용적률 × α	• α=0.05	
	신재생에너지 (재생열 등)	•지하개발면적의 0.375% 이상 지열 설치 시 (기후환경본부 방침 연동 적용)	기준용적률 × α	• α=0.05	
디자인 혁신	특색있는 건축설계	•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시(13개 항목 중 필수 3개 이상, 권장 5개 이상 준수하는 경우) ※ 구 도시·건축공동위 자문을 통해 결정	기준용적률 × α	• α=0.03	
	유니버셜 디자인 도입	•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BF인증)을 인증하는 경우	기준용적률 × α	•최우수: α=0.05 •우수: α=0.04 •일반: α=0.03	
녹지 생태 도심	입체녹지 조성	• '녹지생태도심 개방형녹지 조성 기준' 에 따른 개방형녹지 인정 한도 이상 설치하는 경우	기준용적률 × α	• α=0.05	
	개방형 공간조성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대지면적의 일정 비율 이상 조성하는 경우 (공공보행통로는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권을 설정하는 경우)	기준용적률× (조성면적/대지면적) × α	• α=0.05	
지역 맞춤형	전선지중화	•가로지장물·지상 전주·전선 등을 지중화 또는 이전 설치하는 경우	정량부여(기준 준수 시)	15%	

■ 유형B (일반상업지역 기준300%/허용630%)

항목		세부항목	산정기준	α or 정량	비고
획지 계획	공동개발 (지정, 권장)	•공동개발(지정, 권장) 계획 준수 시	기준용적률 × α	• α=0.5	
	자율적 공동개발	•자율적 공동개발 시 (최대개발규모 범위 이내)	기준용적률 × α	•2개: α=0.6 •3개: α=0.65 •4개: α=0.7 •5개 이상: α=0.75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전체 연면적의 10% 이상 설치 시 (주차장 제외)	기준용적률× (권장용도면적 /전체연면적) × α	• α=3.0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공개공지 조성 시(의무면적 제외)	기준용적률× {(설치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 × α	•개방형: α=4.0 •필로티형: α=2.0 •침상형: α=2.0	

항목			세부항목	산정기준	α or 정량	비고
	건축한계선		•건축한계선에 따른 전면공지 조성 시 (의무면적 제외) ※ 천호대로변 미관지구 폐지에 따라 건축한계선 3m에 해당하는 면적은 의무면적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α	•α=2.0	
주차 계획	공동주차통로		•공동주차통로 계획 준수 시	기준용적률 ×α	•α=0.1	
보행 또는 가로 환경 개선	전선지중화, 지하연결통로 등		•가로지장물지상 전주 · 전선 등을 지중화 또는 이전, 지하연결통로 설치 등의 경우	기준용적률 ×α	•α=0.35	
친환경	물환경	빗물 이용 시설	•빗물저류 · 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침투량(ton/hr)의 합 ≥ 건축면적 ×0.05 또는 대지면적 ×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기준용적률 ×α	•α=0.05	
		중수도	•총 사용량의 10% 이상 처리시설 설치 시	기준용적률 ×α	•α=0.05	
		자연 지반	•자연토양 및 투수성포장, 지하구조물 미설치시	기준용적률×(보존면적/대지면적) ×α	•α=0.05	
		옥상 녹화	•법적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까지만 허용	기준용적률×(녹화면적/대지면적) ×α	•α=0.05	
		녹색 주차장	•기준용적률×0.05 이내	기준용적률×(설치면적/대지면적) ×α	•α=0.05	
	대기 환경	환경 친화적 자동차	•[주거 300세대 이상]: 전체 주차수 5% 이상 전용 주차공간 제공 및 전체 주차 면수의 2% 이상 전기차충전용 콘센트 설치 시 •[비주거연면적 1만㎡ 이상]: 전체 주차면수 5% 이상 전용 주차공간 제공 및 전체 주차 면수의 1% 이상 전기차충전용 콘센트 설치 시 ※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 의무설치 대상은 제외	기준용적률 ×α	•α=0.05	
	열환경	생태 면적률	•관련 법령상 의무사항은 미적용, 자연지반 · 옥상녹화 · 녹색주차장과 중복 적용불가	기준용적률×(생태면적률 인정면적/대지면적) ×α	•α=0.05	

■ 유형C (근린상업지역 기준400%/허용530%)

항목			세부항목	산정기준	α or 정량	비고
획지 계획	공동개발 (지정, 권장)		•공동개발(지정, 권장) 계획 준수 시	기준용적률 ×α	•α=0.2	
	자율적 공동개발		•자율적 공동개발 시(최대개발규모 범위 이내)	기준용적률 ×α	•2개: α=0.2 •3개: α=0.25 •4개: α=0.3 •5개 이상: α=0.35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전체 연면적의 10% 이상 설치 시 (주차장 제외)	기준용적률× (권장용도면적 /전체연면적) ×α	•α = 0.3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공개공지 조성 시(의무면적 제외)	기준용적률× {(설치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 ×α	•개방형: α=2.0 •필로티형: α=1.0 •침상형: α=1.0	
	건축한계선		•건축한계선에 따른 전면공지 조성 시 (의무면적 제외) ※ 천호대로변 미관지구 폐지에 따라 건축한계선 3m에 해당하는 면적은 의무면적	기준용적률×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α	•α=1.0	
주차 계획	공동주차통로		•공동주차통로 계획 준수 시	기준용적률 ×α	•α=0.05	
보행 또는 가로 환경 개선	전선지중화, 지하연결통로 등		•가로지장물지상 전주·전선 등을 지중화 또는 이전, 지하연결통로 설치 등의 경우	기준용적률 ×α	•α=0.1	
친환경	물환경	빗물 이용 시설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침투량(ton/hr)의 합 ≥ 건축면적 ×0.05 또는 대지면적 ×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기준용적률 ×α	•α=0.05	
		중수도	•총 사용량의 10% 이상 처리시설 설치 시	기준용적률 ×α	•α=0.05	
		자연 지반	•자연토양 및 투수성포장, 지하구조물 미설치 시	기준용적률× (보존면적/대지면적) ×α	•α=0.05	
		옥상 녹화	•법적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까지만 허용	기준용적률× (녹화면적/대지면적) ×α	•α=0.05	
		녹색 주차장	•기준용적률×0.05 이내	기준용적률× (설치면적/대지면적) ×α	•α=0.05	
	대기 환경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거 300세대 이상]: 전체 주차수 5% 이상 전용 주차공간 제공 및 전체 주차 면수의 2% 이상 전기차충전용 콘센트 설치 시 •[비주거연면적 1만㎡ 이상]: 전체 주차면수 5% 이상 전용 주차공간 제공 및 전체 주차 면수의 1% 이상 전기차충전용 콘	기준용적률 ×α	•α=0.05	

항목			세부항목	산정기준	α or 정량	비고
			센트 설치 시 ※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 의무설치 대상은 제외			
	열환경	생태면적률	•관련 법령상 의무사항은 미적용, 자연지반 · 옥상녹화 · 녹색주차장과 중복 적용불가	기준용적률×(생태면적률 인정면적/대지면적) ×α	•α=0.05	

■ 유형D (근린상업지역 기준300%/허용500%)

항목			세부항목	산정기준	α or 정량	비고
획지계획	공동개발(지정, 권장)		•공동개발(지정, 권장) 계획 준수 시	기준용적률 ×α	•α=0.2	
	자율적 공동개발		•자율적 공동개발 시(최대개발규모 범위 이내)	기준용적률 ×α	•2개: α=0.2 •3개: α=0.25 •4개: α=0.3 •5개 이상: α=0.35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전체 연면적의 10% 이상 설치 시 (주차장 제외)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전체연면적) ×α	•α = 0.3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공개공지 조성 시(의무면적 제외)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α	•개방형: α=2.0 •필로티형: α=1.0 •침상형: α=1.0	
	건축한계선		•건축한계선에 따른 전면공지 조성 시 (의무면적 제외) ※ 천호대로변 미관지구 폐지에 따라 건축한계선 3m에 해당하는 면적은 의무면적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α	•α=1.0	
주차 계획	공동주차통로		•공동주차통로 계획 준수 시	기준용적률 ×α	•α=0.05	
보행 또는 가로 환경 개선	전선지중화, 지하연결통로 등		•가로지장물지상 전주 · 전선 등을 지중화 또는 이전, 지하연결통로 설치 등의 경우	기준용적률 ×α	•α=0.1	
친환경	물환경	빗물이용시설	•빗물저류 · 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침투량(ton/hr)의 합 ≥ 건축면적 ×0.05 또는 대지면적 ×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기준용적률 ×α	•α=0.05	
		중수도	•총 사용량의 10% 이상 처리시설 설치 시	기준용적률 ×α	•α=0.05	
		자연지반	•자연토양 및 투수성포장, 지하구조물 미설치 시	기준용적률×(보존면적/대지면적) ×α	•α=0.05	

항목			세부항목	산정기준	α or 정량	비고
		옥상 녹화	•법적 조경으로 산입 된 면적 제외,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 까지만 허용	기준용적률× (녹화면적/대지면적) ×α	•α=0.05	
		녹색 주차장	•기준용적률×0.05 이내	기준용적률× (설치면적/대지면적) ×α	•α=0.05	
	대기 환경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거 300세대 이상]: 전체 주차수 5% 이상 전용 주차공간 제공 및 전체 주차 면수의 2% 이상 전기차충전용 콘센트 설치 시 •[비주거연면적 1만㎡ 이상]: 전체 주차면수 5% 이상 전용 주차공간 제공 및 전체 주차 면수의 1% 이상 전기차충전용 콘센트 설치 시 ※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 의무설치 대상은 제외	기준용적률 ×α	•α=0.05	
	열환경	생태 면적률	•관련 법령상 의무사항은 미적용, 자연지반 · 옥상녹화 · 녹색주차장과 중복 적용불가	기준용적률× (생태면적률 인정면적 /대지면적) ×α	•α=0.05	

■ 유형E (준주거지역 기준300%/허용360%)

항목		세부항목	산정기준	α or 정량	비고
획지계획	공동개발 (지정, 권장)	•공동개발(지정, 권장) 계획 준수 시	기준용적률 ×α	•α=0.15	
	자율적 공동개발	•자율적 공동개발 시(최대개발규모 범위 이내)	기준용적률 ×α	•2개: α=0.15 •3개: α=0.2 •4개: α=0.25 •5개 이상: α=0.3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전체 연면적의 10% 이상 설치 시 (주차장 제외)	기준용적률× (권장용도면적 /전체연면적) ×α	•α=0.25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공개공지 조성 시(의무면적 제외)	기준용적률× {(설치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 ×α	•개방형: α=2.0 •필로티형: α=1.0 •침상형: α=1.0	
	건축한계선	•건축한계선에 따른 전면공지 조성 시 (의무면적 제외) ※ 천호대로변 미관지구 폐지에 따라 건축한계선 3m에 해당하는 면적은 의무면적	기준용적률× {(설치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 ×α	•α=1.0	

항목			세부항목	산정기준	α or 정량	비고
친환경	물환경	빗물 이용 시설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침투량(ton/hr)의 합 ≥ 건축면적 ×0.05 또는 대지면적 ×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기준용적률 × α	• α =0.05	
		중수도	•총 사용량의 10% 이상 처리시설 설치 시	기준용적률 × α	• α =0.05	
		자연 지반	•자연토양 및 투수성포장, 지하구조물 미설치 시	기준용적률× (보존면적/대지면적) × α	• α =0.05	
		옥상 녹화	•법적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까지만 허용	기준용적률× (녹화면적/대지면적) × α	• α =0.05	
		녹색 주차장	•기준용적률×0.05 이내	기준용적률× (설치면적/대지면적) × α	• α =0.05	
	대기 환경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거 300세대 이상]: 전체 주차수 5% 이상 전용 주차공간 제공 및 전체 주차 면수의 2% 이상 전기차충전용 콘센트 설치 시 •[비주거연면적 1만㎡ 이상]: 전체 주차면수 5% 이상 전용 주차공간 제공 및 전체 주차 면수의 1% 이상 전기차충전용 콘센트 설치 시 ※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 의무설치 대상은 제외	기준용적률 × α	• α =0.05	
	열환경	생태 면적률	•관련 법령상 의무사항은 미적용, 자연지반·옥상녹화·녹색주차장과 중복 적용불가	기준용적률× (생태면적률 인정면적/대지면적) × α	• α =0.05	

■ 유형F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준250%/허용275%)

항목		세부항목	산정기준	α or 정량	비고
탄소 중립	저영향개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대상 건축물 : 빗물부담량 기준의 1.5배 이상 설치 •그 외: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빗물부담량 기준 준수	기준용적률 × α	• α =0.05	
	신재생에너지 (재생열 등)	•지하개발면적의 0.375% 이상 지열 설치 시 (기후환경본부 방침 연동 적용)	기준용적률 × α	• α =0.05	
디자인 혁신	유니버셜 디자인 도입	•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BF인증)을 인증하는 경우	기준용적률 × α	•최우수: α =0.05 •우수: α =0.04 •일반: α =0.03	

항목		세부항목	산정기준	α or 정량	비고
녹지 생태 도심	입체녹지 조성	• '녹지생태도심 개방형녹지 조성 기준' 에 따른 개방형녹지 인정 한도 이상 설치하는 경우	기준용적률 × α	• α=0.05	
	개방형 공간조성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대지면적의 일정 비율 이상 조성하는 경우 (공공보행통로는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권을 설정하는 경우)	기준용적률× (조성면적/대지면적) × α	• α=0.05	
지역 맞춤형	전선지중화	•가로지장물 · 지상 전주 · 전선 등을 지중화 또는 이전 설치하는 경우	정량부여(기준 준수 시)	7%	

■ 유형G (정비계획 결정지역)

항목	세부항목	산정기준	α or 정량	비고
정비계획으로 결정한 인센티브 계획 적용				

2) 상한용적률 인센티브에 관한 결정

■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및 계획기준

항목		세부항목	비고
국토 계획법에 따른 항목	공공시설등 제공 시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토지 + (1.0~1.2)×α건축물 + 1.0×α현금] •가중치: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 – 사업부지의 용적률과 공공시설제공 부지의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허용 용적률로 적용 (다만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허용용적률이 없는 경우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허용용적률로 봄) – 사업부지 및 공공시설 제공부지에 각각의 용도지역이 있는 경우는 평균용적률(용적률 적용이 다른 부지면적으로 가중평균한 용적률)을 산정하여 적용함 – 공공시설 제공부지는 용도지역이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되는 경우 변경 전 허용용적률을 적용함 •α토지란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에는 '기부채납 부지' 및 '건축물(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토지지분' 포함 •α건축물이란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 등 부지(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α현금이란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 등 부지(현금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공공시설 등 부지제공 면적(기존 건축물 기부채납 시) = 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등 제공부지의 부지가액/용적률을 완화받는 부지의 부지가액) – 건축물 환산부지 면적(㎡) =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원) / 용적률을 완화받고자하는 부지가액(원/㎡) – 현금 환산부지 면적(㎡) = 현금 기부채납비용(원) / 용적률을 완화받고자하는 부지가액원(원/㎡)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지역에서의 허용용적률은 법적용적률1)을 적용 ※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8조, 제49조제3항, 제50조제1호 및 제2호와 제51조제2항 제2호에 따른 용도지역 용적률	

<table>
<tr><th colspan="2">항목</th><th>세부항목</th><th>비고</th></tr>
<tr><td rowspan="3">개별법에 따른 항목</td><td>공동개발 특별지정 이행 시</td><td>•공동개발(특별지정)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기준
<table>
<tr><th>공동개발 필지수</th><th>상한용적률 산정</th><th>비고</th></tr>
<tr><td>2필지</td><td>허용용적률+10%</td><td rowspan="5">- 허용용적률의 1.2배 이하
- 동일소유자, 기 공동개발 필지는 하나의 필지로 봄
- 구역 또는 필지 여건상 필요한 경우, 추가조건을 부여하여 용적률을 차등 계획 가능</td></tr>
<tr><td>3필지</td><td>허용용적률+20%</td></tr>
<tr><td>4필지</td><td>허용용적률+30%</td></tr>
<tr><td>5필지</td><td>허용용적률+40%</td></tr>
<tr><td>6필지 이상</td><td>허용용적률+50%</td></tr>
</table>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의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법적용적률의 1.2배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적용</td><td></td></tr>
<tr><td>임대주택 건립 시</td><td>•관련법률 및 조례, 「공동주택 건립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준주거지역 용적률계획 일괄 재정비(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 - 13호)」 등 관련 기준을 적용</td><td></td></tr>
<tr><td>지하철 출입구 등 설치 시</td><td>•지하철출입구등 건물 또는 대지 내 설치 시 인센티브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1조제2항에 따라 지하철 출입구·환기구·배전함(지하철출입구등)을 건물 또는 대지 내 설치 시 인센티브 제공
- 공공보도의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를 건물 또는 대지 내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거나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 지하철출입구 등 연결을 위한 통로를 설치·제공하는 경우(공공도로 상하부 설치)
•적용산식(대지에 설치할 경우): 허용용적률1) × (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의 건폐면적/대지면적) 이내
•적용산식(건물에 설치할 경우): 허용용적률1) × (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의 연면적/건물 연면적) 이내
※ 1)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지역에서의 허용용적률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3-8-2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외한 법적용적률 적용
•연결통로 공사비: '공공시설 등 제공 시 인센티브 산정기준'에 따라 공사비를 환산부지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하되, 계수는 1.2로 적용</td><td></td></tr>
<tr><td rowspan="2"></td><td>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등 설치 시</td><td>•적용산식: 허용용적률 × [1 + {(공개공지등 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타 계획항목과 연계되지 않고 공개공지 등 만을 설치할 경우에는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로 적용할 수 없음
※ 공개공지 등 설치에 따른 상한용적률은 산업기능 육성, 보행환경 개선 등 계획유도 항목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적용
•상한용적률로 적용되는 공개공지 등 면적 및 계획유도 항목 이행 조건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건폐율 및 높이 등 인센티브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
•완화 산식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6조제3항제1호에 따르되, 같은 조 제1항제2호에서 정한 의무면적을 제외하며 완화 범위는 허용용적률의 1.2배 이내로 함</td><td></td></tr>
<tr><td>친환경항목 적용 시</td><td>•적용대상: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서 정한 친환경건축물 의무인증 기준을 초과 획득한 건축물. 다만, 정비사업, 역세권사업 등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의 용적률 상향 및 공공기여 방안(기준)이 있는 사업은 해당 계획기준에 따름
•적용산식: 허용용적률 + 법적용적률 × Σ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β)
※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법적용적률은 변경 전 용도지역 용적률 적용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및 관계 법령 개정 시 의무기준 및 요율은 변경된 규정에 따름</td><td></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항목</th><th>세부항목</th><th>비고</th></tr>
<tr><td></td><td></td><td>
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β)
※ ① 및 ② 항목은 중복 적용불가
① ~ ③ 항목 중복 적용 시 완화비율은 최대 15% 적용 (0.7 × (Σ① ~ ③) ≧ 15% → 15% 적용)
④ 장수명주택인증은 관련 조례 개정 후 시행

① ZEB 인증
<table>
<tr><td>ZEB등급</td><td>ZEB1</td><td>ZEB2</td><td>ZEB3</td><td>ZEB4</td><td>ZEB5</td></tr>
<tr><td>완화비율</td><td>15%</td><td>14%</td><td>13%</td><td>12%</td><td>11%</td></tr>
</table>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1++획득하고, 에너지 자립율이 20%미만인 경우 완화비율: 10%

② 녹색건축 및 건축물에너지효율 인증
<table>
<tr><td>녹색건축인증 / 에너지효율인증</td><td>최우수 (그린1등급)</td><td>우수 (그린2등급)</td></tr>
<tr><td>1+등급</td><td>9%</td><td>6%</td></tr>
<tr><td>1 등급</td><td>6%</td><td>3%</td></tr>
</table>

③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table>
<tr><td>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td><td>15%이상</td><td>20%이상</td><td>25%이상</td></tr>
<tr><td>완화비율</td><td>5%</td><td>10%</td><td>15%</td></tr>
</table>

④ 장수명주택인증
<table>
<tr><td>장수명주택 인증등급</td><td>최우수</td><td>우수</td></tr>
<tr><td>완화비율</td><td>15%</td><td>10%</td></tr>
</table>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및 관계 법령 개정 시 의무기준 및 요율은 변경된 규정에 따름
</td><td></td></tr>
<tr><td rowspan="2">개별법에 따른 항목</td><td>특별 건축구역 도입 시</td><td>•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창의혁신디자인 적용 시 상한용적률 완화 가능
•창의·혁신디자인 건축물에 대해 서울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부여</td><td></td></tr>
<tr><td>지능형 건축물 인증 시</td><td>
•적용대상: 「건축법」 제65조의2의 제4항에 따라 인증 기준이 고시된 건축물
•적용산식: 기준용적률 × 지능형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
– 지능형건축물 기준 및 관계 법령 개정 시 의무기준 및 요율은 변경된 규정에 따름
•지능형 건축물 인증기관: IBS KOREA,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완화범위: 법적용적률의 1.2배 이내
[인증등급]
<table>
<tr><td colspan="2">구분</td><td>1등급</td><td>2등급</td><td>3등급</td><td>4등급</td><td>5등급</td></tr>
<tr><td colspan="2">심사기준</td><td>90%이상 득점</td><td>85%이상 90%미만</td><td>80%이상 85%미만</td><td>75%이상 80%미만</td><td>70%이상 75%미만</td></tr>
<tr><td colspan="2">각 분야별 과락점수</td><td>85%미만</td><td>80%미만</td><td>75%미만</td><td>70%미만</td><td>65%미만</td></tr>
<tr><td rowspan="3">심사 총평</td><td>비주거</td><td colspan="4">총 660점 평가항목 600점(각 분야별 100점) / 가산항목 30점(각 분야별 10점)</td></tr>
<tr><td>주거</td><td colspan="4">총 330점 평가항목 300점(각 분야별 100점) / 가산항목 30점(각 분야별 10점)</td></tr>
<tr><td>복합건축물</td><td colspan="4">용도별 바닥면적 가중치 적용</td></tr>
</table>
[지능형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
<table>
<tr><td>지능형 건축물 인증등급</td><td>1등급</td><td>2등급</td><td>3등급</td><td>4등급</td><td>5등급</td></tr>
<tr><td>건축기준 완화 비율</td><td>15%</td><td>12%</td><td>9%</td><td>6%</td><td>0%</td></tr>
</table>
</td><td></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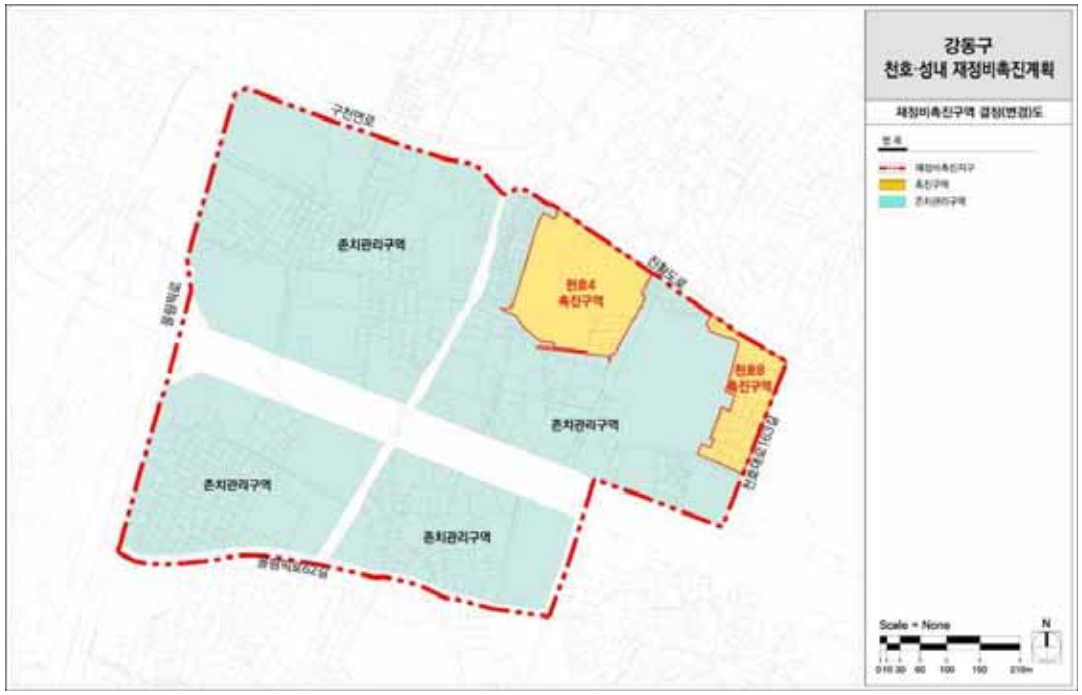
■ 천호 · 성내 재정비촉진지구 _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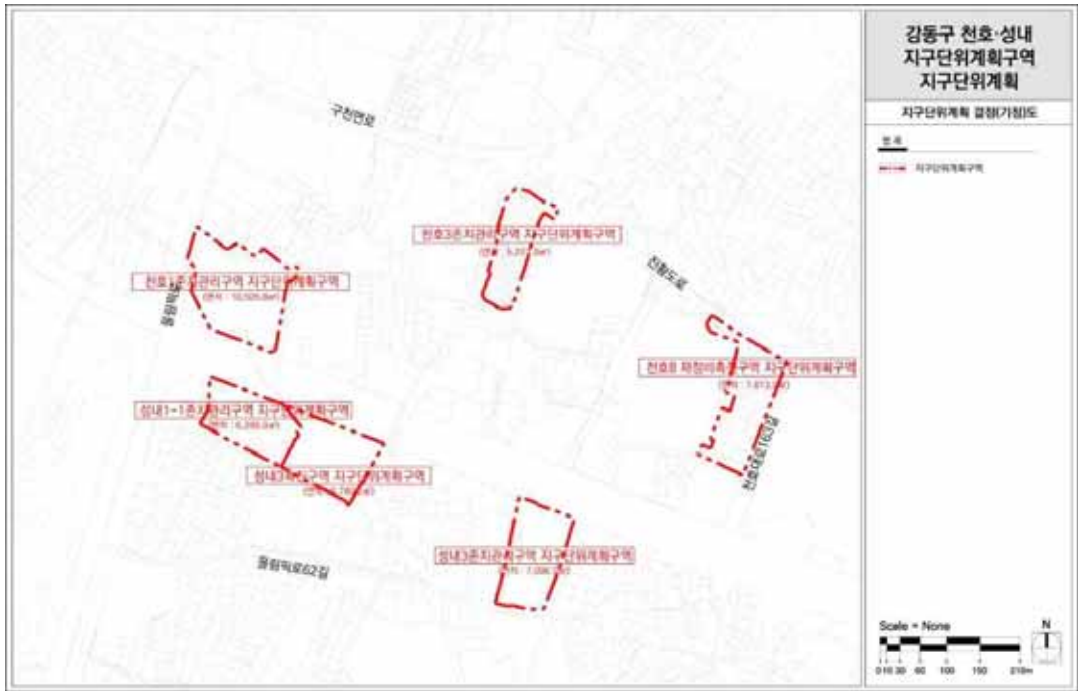
■ 천호 · 성내 재정비촉진지구 _ 재정비촉진지구 결정(기정)도



■ 천호 · 성내 재정비촉진지구 _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변경)도



■ 천호 · 성내 지구단위계획구역 _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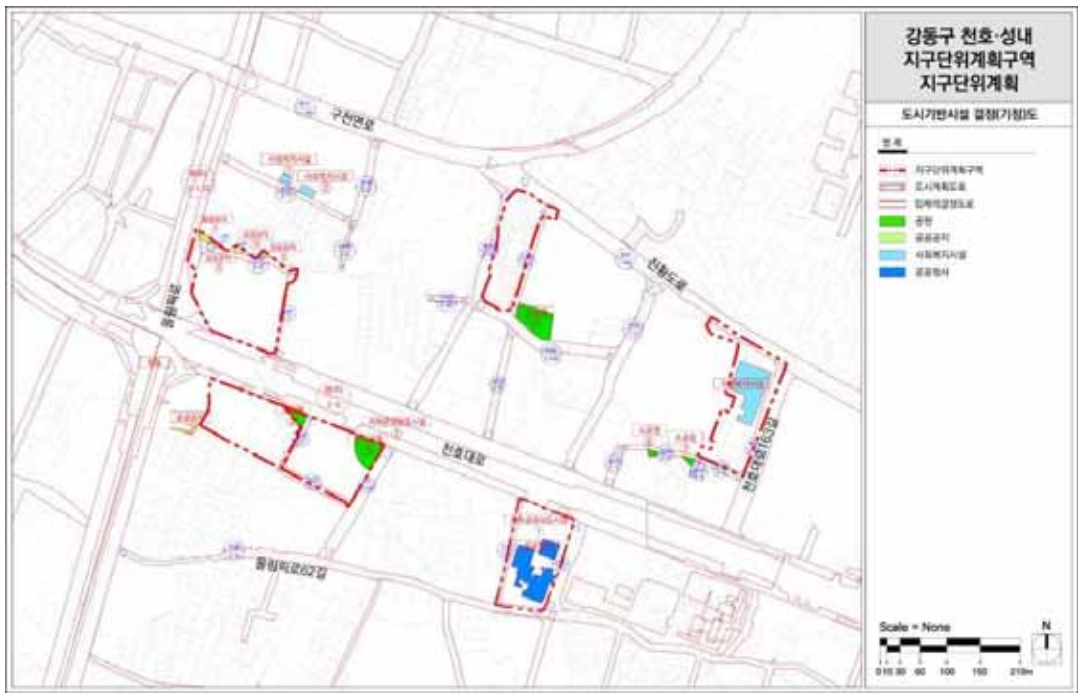
■ 천호 · 성내 지구단위계획구역 _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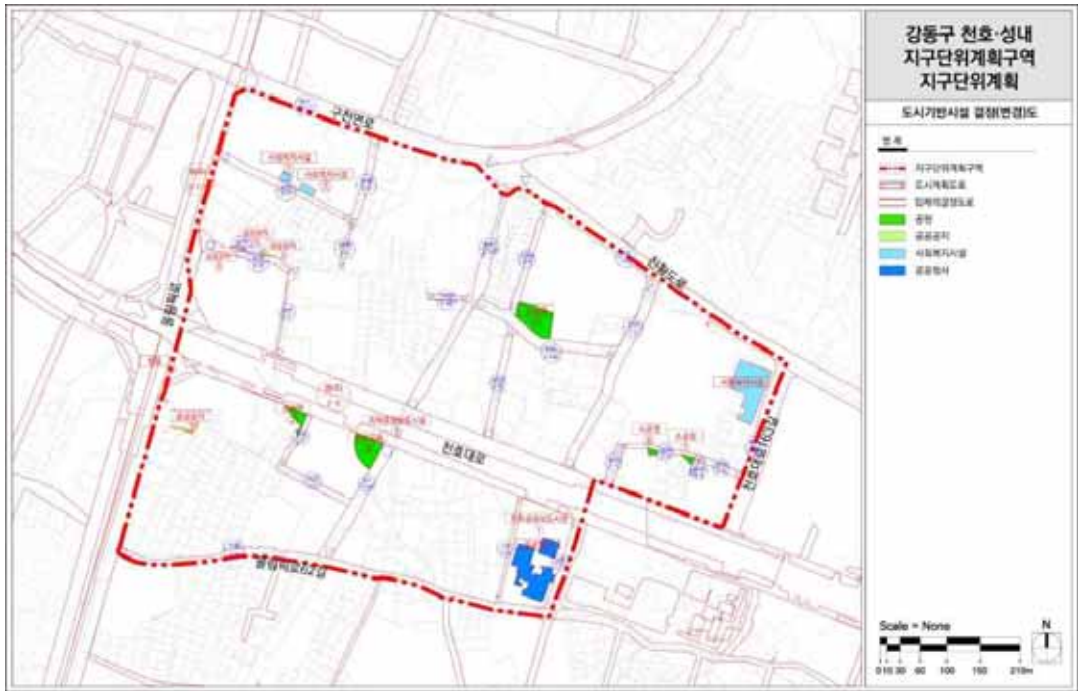
■ 천호 · 성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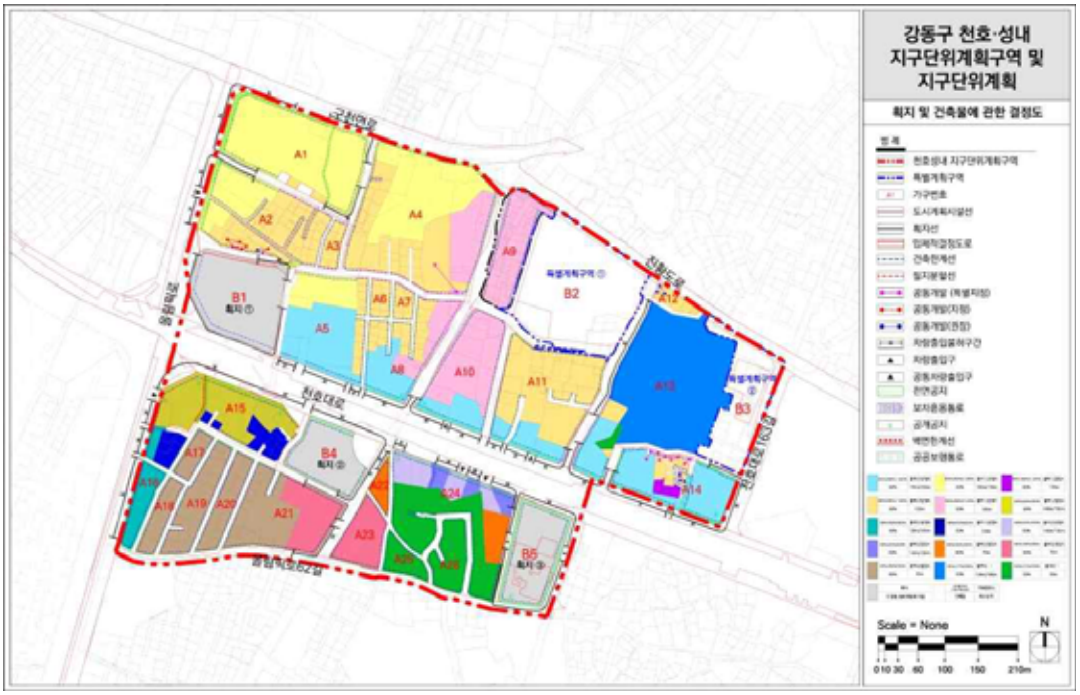
■ 천호 · 성내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기반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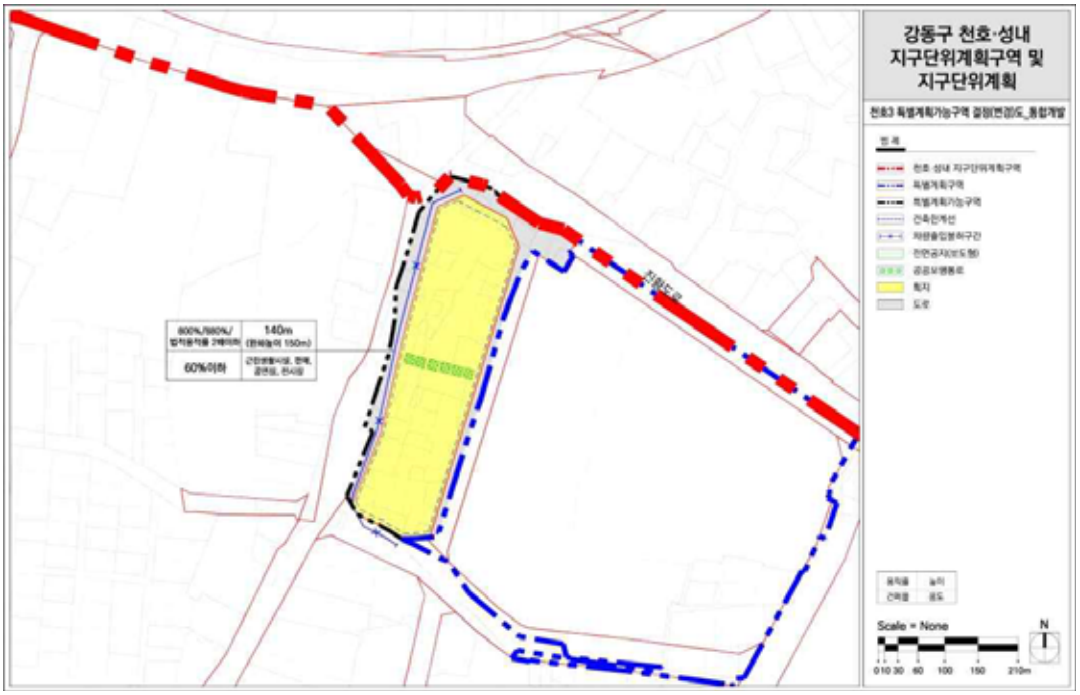
■ 천호 · 성내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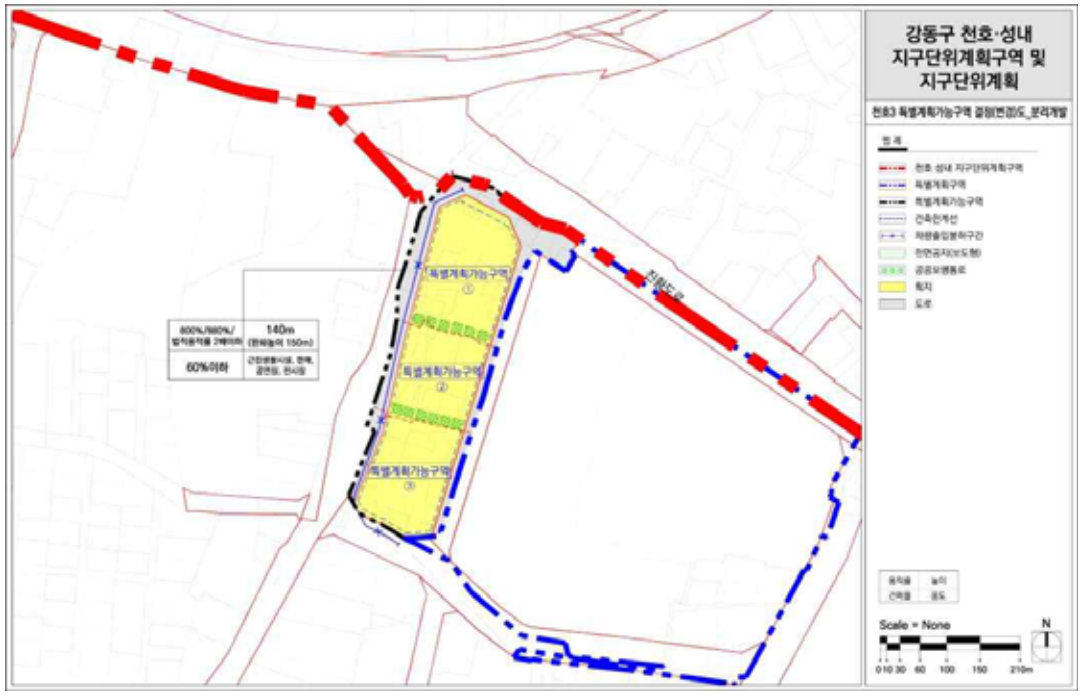
■ 천호 · 성내 지구단위계획구역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



■ 천호3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침도_통합개발 시



■ 천호3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침도_분리개발 시



※ 기타 관련사항은 「천호 · 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천호 · 성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서」에 따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553호

가락우창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64번지 일대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청취, 2025년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주민(재)공람 등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가락우창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가락우창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송파구 오금동 164번지 일대	-	증)17,235.6	17,235.6	-

※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3.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가.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추정 비례율	•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총자산 총액 X 100% • 추정비례율 : 106.1% ⇒ (6,271억원 - 2,647억원) ÷ 3,416억원 X 100 = 106.1% • 총 수입 추정 : 약 6,271억원 • 총 지출 추정 : 약 2,647억원 • 종전자산총액 추정 : 약 3,416억원
개별 종전 자산 추정액	• 약식 감정평가 추정을 통한 종전자산총액 산출 - 공동주택 :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KB시세 등을 기초로 추정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

	- 상가 : 임대사례에 따른 수익을 추정하여 단가 산정
추정 분담금 산출	•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조합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

조합원 분양가 추정액(a)		추정 권리가액(b)	추정분담금(a-b)
전용 59㎡형	12.2억원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 (106.1%)	조합원 분양가 추정액 - 추정 권리가액 (+ : 부담 / - : 환급)
전용 74㎡형	13.3억원		
전용 84㎡형	14.6억원		
전용 99㎡형	15.7억원		

※ 상기 분담금 추산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작성시점 현재의 정비계획과 설계 개요를 기준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개략적으로 추산한 예시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분담금은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통하여 확정됨

※ 상기 분담금 추산액은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토지등소유자의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내용, 물가상승률, 시공사와의 공사비 계약내용, 사업진행 속도 등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사항은 관련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하여 단계별로 고지 예정임

나.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산출근거

■ 종전자산가액 추정 : 341,550,885천원

구분	세대(호)수	토지면적 (㎡)	건물면적(㎡)		추정평가액(천원)		평가액 합계 (천원)	비고
			APT(공급)	상가(전용)	토지건물	공동주택		
APT	264	16,630.31	32,813.04	-	-	334,531,820	334,531,820	
상가	27	605.29	-	991.75	7,019,065	-	7,019,065	
합계		17,235.60	32,813.04	991.75	7,019,065	334,531,820	341,550,885	

■ 총 수입 산출 : 627,106,314천원

구분		공급 세대	전용면적 (㎡)	공급면적 (㎡)	분양가 (천원/전용㎡)	타입별 분양가 (천원)	총 분양수입 (천원)	비고
합계			-	-	-	-	627,106,314	-
분양	일반	17	59.99	82.55	23,910	1,434,361	24,384,137	인근 아파트의 KB시세, 거래사례 등을 참조하고 개별요인을 비교하여 산출
		23	74.95	98.73	20,840	1,561,958	35,925,034	
		63	84.99	110.31	20,180	1,715,098	108,051,174	
		32	99.99	127.09	18,430	1,842,816	58,970,112	
	조합	32	59.99	82.55	20,320	1,218,997	39,007,904	일반분양 단가의

구분		공급 세대	전용면적 (㎡)	공급면적 (㎡)	분양가 (천원/전용㎡)	타입별 분양가 (천원)	총 분양수입 (천원)	비고
	원	44	74.95	98.73	17,710	1,327,365	58,404,060	90% 적용
		124	84.99	110.31	17,150	1,457,579	180,739,796	
		64	99.99	127.09	15,670	1,566,843	100,277,952	
임대(소형)		48	59.99	82.55	5,705천원/공급3.3㎡	142,457	6,837,936	관련법령에 의거,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로 산출
		16	74.95	98.73	5,779천원/공급3.3㎡	172,606	2,761,696	
		8	84.99	110.31	5,807천원/공급3.3㎡	193,766	1,550,128	
근린 생활 시설	조합 원	1F	841.50	935.00	9,990	-	8,406,585	인근 상가의 거래 사례를 참조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층별효용비율로 배분하여 산출한 일반분양 단가 90% 적용
		B1F	570.00	750.00	3,140	-	1,789,800	

※ 상기 조합원 및 일반분양 세대수에 따른 분양수입은 현재 주택형별 토지등소유자의 수 등을 감안하여 임의적으로 배분한 것으로 향후 조합원 분양신청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기 가액은 소수점 또는 단위 절사 등으로 제곱미터 또는 평당 단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총 사업비 산출 : 264,677,168천원

구분	내용	비고
연면적	82,348.03 ㎡	-
직접 공사비	211,737,372 천원	850만원/연면적3.3㎡
간접 공사비	36,199,083 천원	보상비, 관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경비
금융 비용	4,343,890 천원	조합원 이주비 이자 지원은 조합원 개인부담으로 처리
예비비	12,396,823 천원	사업비(금융비용 제외)의 5%
총사업비	264,677,168 천원	

■ 분담금 예시

(단위 : 천원)

기존 타입 (공급/ 전용)	추정 평가액 (8층 기준)	비례율	추정 권리가격	타입	82/59	98/74	110/84	127/99
				일반	1,434,361	1,561,958	1,715,098	1,842,816
				조합원	1,218,997	1,327,365	1,457,579	1,566,843
93/76	1,074,290	106.1%	1,139,822	분담금	79,175	187,543	317,757	427,021
129/109	1,382,720	106.1%	1,467,066		-248,069	-139,701	-9,487	99,777
154/132	1,431,890	106.1%	1,519,235		-300,238	-191,870	-61,656	47,608

※ 마이너스(-)는 환급금임

4.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고
총 계		17,235.6	100.0	
획 지	소 계	17,235.6	100.0	
	획지1	17,235.6	100.0	공동주택

5.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7,235.6	-	17,235.6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17,235.6	-	17,235.6	100.0	

6.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가.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69	25~38 (30)	보조간선 도로	5,973 (87)	송파구 오금동 (대2-67)	강동구 암사동 (중2-134)	일반 도로	-	건고198 ('71.04.07)	-
기정	소로	1	-	10~11.5	국지 도로	- (205)	-	-	일반 도로	-	건고364 ('81.10.05)	서울시고시 제2021-567호 ('21.10.14)

7.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시설의 종류	면적 기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복리시설	합계	-	증) 2,660.0	2,660.0	
	경로당	-	증) 200.0	200.0	
	어린이집	-	증) 360.0	360.0	개방
	다함께 돌봄센터	-	증) 90.0	90.0	개방
	실내어린이놀이터	-	증) 167.0	167.0	개방
	작은도서관	-	증) 110.0	110.0	
	주민공동시설	-	증) 883.0	883.0	
	주민운동시설	-	증) 150.0	150.0	
	어린이놀이터	-	증) 700.0	700.0	
부대시설	경비실 및 관리실	-	증) 40.0	40.0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인가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건축법」 등 관련법령 기준 적용

8.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신설	가락우창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17,235.6	획지1	17,235.6	오금동 164번지일대	5	-	-	5	-	

9. 건축시설계획

■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최고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계획	법적상한		
신설	가락우창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17,235.6	획지1	17,235.6	오금동 164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50% 이하	225.5% 이하	300% 이하	135m이하 /35층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공급계획 : 471세대(분양 399세대, 공공 72세대)
- 전체 건립규모(전용면적 기준) ※세대수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결정(도시정비법 제54조)

건립규모		세대수	비율(%)	비고
합계		471	100.0	
85㎡이하	60㎡이하	97	20.60	공공주택 48세대 포함
	60㎡초과~85㎡이하	278	59.00	공공주택 24세대 포함
85㎡초과		96	20.40	

-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60% 이상(계획 : 79.60%)
- 국민주택규모 주택(85㎡ 이하) 건설 : 초과용적률의 50% 이상

심의완화 사항

- 2030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허용용적률 완화(10%)
  - 기준용적률 210% → 허용용적률 220% 이하
- 법적상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 법적상한용적률(299.99%) - 정비계획용적률(225.50%) = 74.49%의 50%인 37.245% 이상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건축물의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으로 발생한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
  - 동남로(보조간선도로, 30m)변 건축한계선 3m
  - 오금로49길(10m)변 건축한계선 3m
  - 동남로24길(15m)변 건축한계선 3m
- 건축한계선으로 발생한 전면공지는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로 조성
  - 동남로22길(10m)변 건축한계선 3m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차량출입 불허구간 : 동남로(보조간선도로, 30m)변 차량출입 불허구간 설정
- 전면공지
  - 보도형 전면공지 : 동남로, 오금로49길, 동남로24길변 폭 2.0m
  -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 : 동남로22길변 폭 2.0m

■ 용적률 계획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 (구역면적)	택지 (공동주택등)	신설 정비기반시설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택지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17,235.6	17,235.6	-	-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해당없음				
기준용적률	• 기준용적률 = 210%				
허용용적률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최대 20%) = 210% + 10% = 220% •인센티브 = 10%(돌봄시설 5% + 층간소음해소 1등급 5%)				
상한용적률	• 상한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용적률 완화				
	• 허용용적률 +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 ZEB5(5.5%) 적용 = 220.0% + 5.5% = 225.5%				
법적상한용적률	• 소형주택 건설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				
	• 법적상한용적률 = 299.99%(계획 기준) 이하			• 2030 서울특별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용도지역별 법적상한용적률 이하로서 건축심의에서 최종 확정	

구 분		항 목		인센티브량
세대 맞춤형 생활 환경 개선	돌봄시설	기준	• 지역에 필요한 놀이 · 돌봄시설* 설치 및 제공 (무상임대) - 기준용적률 X (조성면적(의무면적 제외) / 주민공동시설면적(의무면적)) X a ※a=0.1이하	5% 이내
		적용	• 어린이집 면적 : (계획) 360.0㎡, (의무) 198.0㎡ • 돌봄센터 면적 : (계획) 90.0㎡, (의무) 66.0㎡ • 실내어린이놀이터 면적 : (계획) 167.0㎡ • 돌봄시설 조성면적(의무면적 제외) = 360.0㎡ + 90.0㎡ + 167.0㎡ - 198.0㎡ - 66.0㎡ = 353.0㎡ • 주민공동시설 면적(의무면적) = 세대당 2.5㎡를 더한 면적 x 1.25(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471세대 x 2.5㎡) x 1.25 = 1,471.88㎡ ∴ 210.0% x (353.0㎡ / 1,471.88㎡) x 0.1 = 5.0%	5%

구 분		항 목		인센티브량
	층간소음 해소	기준	• 바닥(중량)충격음 차단성능 2등급 이상 - 1등급 5%, 2등급 3%	5% 이내
		적용	• 바닥(중량)충격음 차단성능 1등급 5% 적용	5%
합계		총 10% 적용		

※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적용하여 계획하였으며,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변경될 수 있음

▮임대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건설에 관한 계획

가. 모든 공공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함.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공공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함

라. 공공주택 배치계획

- 공공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 없이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동별·동내 혼합과 층별 혼합)하고,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동·호수 배정도 조합원과 서울특별시가 동일·동시에 공개 추첨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추첨 시 서울특별시가 필수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할 것

가)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계획기준		•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건설 :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				
상한용적률(정비계획용적률)		• 225.50%				
법적상한용적률		• 299.99% 이하 (300.00% 이하) ※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				
공공주택	용적률 증가분(%)	• 법적상한용적률 - 상한용적률 = 299.99% - 225.50% = 74.49%				
	증가된 용적률의 50%	• 74.49% X 0.5 = 37.245%				
	의무 연면적	• 17,235.6(대지면적) X 37.245% = 6,419.2㎡ 이상				
공공주택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확보계획		세대 규모(㎡)		세대수	지상층 연면적	비고
		전용면적	공급면적			
		합계		72	6,424.56㎡	6,424.56㎡ 〉 6,419.2㎡
		59.95㎡	82.55㎡	48	3,962.40㎡	
		74.95㎡	98.73㎡	16	1,579.68㎡	
		84.99	110.31	8	882.48㎡	

10.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결과

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보전	지형·지질	•현재의 상태를 유지한 단지 계획을 수립하여 지형변화를 최소화한 계획	-
	동·식물상	•보존 가치가 있거나 중요성이 있는 수목은 보존 또는 이전하고, 사업시행 시 기존 수목을 최대한 활용하여 잔여 수목은 조경업체 또는 인근 공사장으로 공급하여 이식 (사업지구 내 녹지율 최대한 30%이상 확보)	
	폐기물	•공사 및 운영 시 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공사 시 건설폐기물은 건설폐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준하여 처리	
	소음·진동	•공사 시 가설 방음판넬 설치, 공사차량 감속주행 및 야간작업 금지 •노후장비 이용을 지양하고 저소음 건설 장비를 선정하여 이용	
재난방지	수 해	•대상지로부터 서측으로 약 200m이내 지점에 성내천이 위치하나 태풍, 호우 등과 같은 우심피해 없음 •대상지는 한강 및 중랑천 보다 높은 고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 지역보다 높은 고도에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어 태풍 및 장마 등으로 인한 홍수재해에 유리함 •수해방지 응급장비를 완비하여 우발적인 홍수에 대비 •강우시 공사중에 발생되는 토사유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지작업시 절·성토 사면의 안정을 기하고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비닐 등의 덮개를 설치하고 사면 상·하부에 측구 등의 배수 시설을 설치 •정비구역 내 가능한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투수율을 제고	-
	화 재	•공동주택부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 진압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의무화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자연재해에 대비한 방재시스템 및 단지 내 상하수도 시설의 합리적인 설계반영	
	방 범	•주 보행로 등에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하고 휴게공간 등에 CCTV 모니터를 설치하여 안전성 확보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 및 범죄 발생 시 대처요령에 대한 시민 홍보	
	교 통	•단지 내 도로의 노상주차를 최대한 억제하여 사고발생시 교통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보조간선도로인 동남로(30m)변의 차량흐름의 방해를 최소화하고자 대상지의 기존 차량출입구인 동남로24길(15m)로 차량진출입하는 교통체계 수립	

나.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예측 반영사항	비고
비오톱	4등급/20%	○	· 개별비오톱유형평가는 평가제외등급 · 비오톱유형평가 4등급 지역	· 자연지반녹지,수공간, 인공지반녹지 등 적용 · 시설별특성과 경관을 고려한 조경수목 식재	
생태네트워크	녹지면적을 최대한확보	○	· 인접공원과의 연계성검토	· 공공보행축 확보	
동·식물상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저감	X	· 대상지는 도심 시가지로 현존량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해당사항없음	
자연환경자산	보호지정 지역생물 등 자연환경자산의 영향 최소화	X	· 대상지에는습지보호지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해당사항없음	
토지이용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 대상지는 사업의 시행이 획지내에서 이루어짐으로 인근지역의 직접적인 영향범주에 있지않으나 일부 유출 오염이 발생될 수 있음	· 공사시 방진망, 교통통제 등 토지이용 생활환경의 영향 최소화	
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	· 공사시 유출유류 및 토사발생	· 진출입부 세륜,세차시설 설치	
지형·지질	지형변동 최소화	○	· 불투수토양포장도 90%이상인 지역임 · 인공구조물 설치로 인한 부지 정지로 절·성토량 발생예상	· 무리한 정지계획 지양 · 현지형을 최대한 이용 · 적정녹지 계획으로 자연 토양기능 상실 최소화	
물순환, 수리·수문	생태면적률 확보	○	· 건축유형별 생태면적률 적용 기준 준수	· 건축유형별 생태면적률 적용 기준 준수	
수질	오수발생 저감	○	· 공사시 우수유출량 변동 및 토사유출 발생 · 공사인력에 의한 오수발생 · 공사장비에 의한 유류발생	· 토공작업은 가급적 우기를 피하여 실시 · 가배수로 설치	
바람 및 미기후	기후변화 최소화	○	· 기후현황 조사	· 녹지공간 연계로 기후변화 최소화	
악취	악취물질 발생량 억제	X	· 사업대상지의 영향권에는 악취배출 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해당사항없음	

11. 정비사업 시행계획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기존	계획	증	
신설	재건축사업	구역지정(변경)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가락우창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293	471	178	-

12.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범위		내용	비고
용도 제한을 통한 교육환경 보호	정비구역 전체		•불허용도계획을 통한 유흥업소(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등 교육환경 위해시설 입지 금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절대 정화구역	•설정기준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시행령 제21조
			•전염병 요양소, 폐기물처리시설, 호텔, 게임제공업, 특수목욕장, 무도장 등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용도 및 시설 입지 금지	
		상대 정화구역	•설정기준 : 학교 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전염병 요양소, 폐기물처리시설, 호텔, 게임제공업, 특수목욕장, 무도장 등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용도 및 시설 입지 금지 •호텔, 당구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 교육환경에 위해를 주는 용도 및 시설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입지 가능	
통학권 보행안전 대책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		•지정기준 : 초등학교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신호가안전표지 설치, 도로부속물설치, 노상주차장 설치 금지 등	

13.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현황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비고
	추진위/조합 설립 ~ 착공 전	착공 ~ 공사 완료	범죄예방설계 적용	
현재 추진준비위원회가 설립되어 사업 추진중으로 주민들이 거주중	•펜스 설치 및 유지 · 관리 •1일 오전 · 오후 1회 우범지역 순찰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규정 준수 안전 시공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비 계상	•방범용 CCTV는 사각지대 1개소 이상 설치 •수목의 식재로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수목의 간격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계획	-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가락우창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송파구 오금동 164번지 일대	-	증)17,235.6	17,235.6	100.0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결정내용	지정사유	비고
①	송파구 오금동 164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17,235.6㎡	• 양호한 주택공급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정비구역 지정 · 고시의 효력 등) 정비구역의 지정 · 고시가 있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 고시된 것으로 봄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7,235.6	-	17,235.6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17,235.6	-	17,235.6	100.0	

나. 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1)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69	25~38 (30)	보조간선 도로	5,973 (87)	송파구 오금동 (대2-67)	강동구 암사동 (중2-134)	일반 도로	-	건고198 ('71.04.07)	-
기정	소로	1	-	10~11.5	국지 도로	- (205)	-	-	일반 도로	-	건고364 ('81.10.05)	서울시고시 제2021-567호 ('21.10.14)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가 구	면 적(㎡)			비 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획 지	소 계	-	증)17,235.6	17,235.6	100.0	-
	획지1	-	증)17,235.6	17,235.6	100.0	공동주택

나.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가 구	용 도	비 고
신설	허용용도	획지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2)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 건폐율 계획

구 분	지 역	건폐율	비 고
신설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

나) 용적률 계획

구 분	용 적 률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상한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신설	210% 이하	220% 이하	225.5% 이하	300% 이하	정비계획	허용용적률 220% 상한용적률 225.5% 법적상한용적률 299.99%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구 분	인센티브		비 고
	돌봄시설	층간소음해소 1등급	
신설	5%	5%	총 10%

■ 상한용적률 완화 사항

구 분	용적률 완화	비 고
	ZEB 5등급	
신설	5.5%	총 5.5%

다) 높이 계획

구 분	지 역	높이기준	비 고
신설	제3종일반주거지역	35층 이하 (135m)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원칙 준수

다.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건축한계선	▪ 동남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
	▪ 오금로49길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
	▪ 동남로24길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
	▪ 동남로22길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

라.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전면공지	▪ 동남로변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 폭원 : 2m
	▪ 오금로49길변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 폭원 : 2m
	▪ 동남로24길변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 폭원 : 2m
	▪ 동남로22길변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로 조성 - 폭원 : 2m

2)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지역	계 획 내 용
차량출입 불허구간	▮ 동남로(30m)	▮ 도로에서 대지 안으로의 차량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

3) 환경관리계획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예측 반영사항	비고
비오톱	4등급/20%	○	· 개별비오톱유형평가는 평가제외등급 · 비오톱유형평가 4등급 지역	· 자연지반녹지,수공간, 인공지반녹지 등 적용 · 시설별특성과 경관을 고려한 조경수목 식재	
생태네트워크	녹지면적을 최대한확보	○	· 인접공원과의 연계성검토	· 공공보행축 확보	
동·식물상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저감	X	· 대상지는 도심 시가지로 현존량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해당사항없음	
자연환경자산	보호지정 지역생물 등 자연환경자산의 영향 최소화	X	· 대상지에는습지보호지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해당사항없음	
토지이용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 대상지는 사업의 시행이 획지내에서 이루어짐으로 인근지역의 직접적인 영향범주에 있지않으나 일부 유출 오염이 발생될 수 있음	· 공사시 방진망, 교통통제 등 토지이용 생활환경의 영향 최소화	
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	· 공사시 유출유류 및 토사발생	· 진출입부 세륜,세차시설 설치	
지형·지질	지형변동 최소화	○	· 불투수토양포장도 90%이상인 지역임 · 인공구조물 설치로 인한 부지 정지로 절·성토량 발생예상	· 무리한 정지계획 지양 · 현지형을 최대한 이용 · 적정녹지 계획으로 자연 토양기능 상실 최소화	
물순환, 수리·수문	생태면적률 확보	○	· 건축유형별 생태면적률 적용 기준 준수	· 건축유형별 생태면적률 적용 기준 준수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예측 반영사항	비고
수질	오수발생 저감	○	· 공사시 우수유출량 변동 및 토사유출 발생 · 공사인력에 의한 오수발생 · 공사장비에 의한 유류발생	· 토공작업은 가급적 우기를 피하여 실시 · 가배수로 설치	
바람 및 미기후	기후변화 최소화	○	· 기후현황 조사	· 녹지공간 연계로 기후변화 최소화	
악취	악취물질 발생량 억제	X	· 사업대상지의 영향권에는 악취배출 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해당사항없음	
대기질·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 발생억제	○	· 공사시 토량이동 및 공사차량 운행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 발생예상 · 운영시 이용차량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증가가 예상되나, 그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봄	· 이동식방진망 설치, 공사장내 차량 속도 제한, 주기적인 살수 시행 등	
온실가스	온실가스 배출감소 및 자체정화 최대화	○	· 난방 및 취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발생	· 도시가스 사용계획 및 정화 효율이 높은 조경식재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처리	○	· 공사시 현장사무소 운영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분뇨발생 · 공사장비 가동에 따른 폐유발생	· 분리수거용기 및 간이화장실 설치 · 폐유저장소 설치	
에너지	에너지 효율 극대화	○	· 주거면적 증가로 인한 에너지 사용량 증가	· 에너지 절감설비 활용	
소음·진동	생활소음·진동 및 소음환경기준	○	· 공사장비가동에 따른 소음 · 진동 영향 발생	· 공사장비 분산투입 · 가성방음판넬 설치(높이5m)	
경관	경관자원과의 조화	○	· 기존 건축물과 조화가 요구됨	· 북서측에 위치한 오금공원과 북동측에 위치한 성내천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 계획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 및 여가공간 최대확보	○	· 송파구에는 어린이공원88개소, 도시자연공원1개소, 근린공원 55개소 등 총 161여개의 공원과 문화시설이 위치함	· 대상지 내 조경녹지 및 공터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휴식공간 및 쉼터를 제공	
일조	수인한도 일부만족	△	· 일조 시뮬레이션 결과, 일조수인한도를 일부 만족함	· 인접대로 및 주거지역을 고려 적정 높이계획 수립	
보행친화공간	보행공간확보	○	· 보행공간 확보요함	· 보도형전면공지 확보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예측 반영사항	비고
인구 및 주거	인구 및 주거를 고려한 계획	-	· 인구 및 주거 현황 조사	· 471세대 계획	

4)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의 건설에 관한 결정조서

가. 모든 공공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함.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 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공공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함

라. 공공주택 배치계획

- 공공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 없이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동별 · 동내 혼합과 층별 혼합)하고,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동 · 호수 배정도 조합원과 서울특별시가 동일 · 동시에 공개 추첨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추첨 시 서울특별시가 필수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할 것

○ 주택의 규모별 비율(정비계획)

건립규모	전체 세대수	전체 비율(%)	공공주택 세대수	공공주택 비율(%)	
				전체세대수대비	전체비율
합 계	471	100.0	72	15.2	100.0
40㎡이하	-	-	-	-	-
40㎡초과~50㎡이하	-	-	-	-	-
50㎡초과~60㎡이하	97	20.5	48	10.2	66.7
60㎡초과~85㎡이하	278	59.0	24	5.0	33.3
85㎡초과	96	20.5	-	-	-

▢ 2025년 제5차(‘25.06.18.)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table>
<tr><th>구분</th><th>심의결과</th><th>심의의견</th><th>반영계획</th><th>비고</th></tr>
<tr><td rowspan="3">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td><td rowspan="3">수정가결</td><td>• 수정사항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세대수 계획, 높이계획, 용적률계획, 순부담 면적, 건축계획 및 정비계획은 주관부서 수정가결 요청(안) 반영</td><td>•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세대수 계획, 높이계획, 용적률계획, 순부담 면적, 건축계획 및 정비계획은 주관부서 수정가결 요청(안) 반영하였음</td><td>반영</td></tr>
<tr><td>• 조건사항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중 공공보행통로 항목은 타 항목으로 조정</td><td>•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중 공공보행통로(7.8%)는 ZEB5등급(5.5%)으로 변경하였음
<table>
<tr><th>구분</th><th>항목</th><th>산출량</th></tr>
<tr><td>기정</td><td>• 공공보행통로(7.8%)
• 돌봄시설(5%)
• 층간소음해소1등급(5%)</td><td>17.8%</td></tr>
<tr><td>변경</td><td>• ZEB5등급(5.5%)
• 돌봄시설(5%)
• 층간소음해소1등급(5%)</td><td>15.5%</td></tr>
</table></td><td>반영</td></tr>
<tr><td>- 향후, 건축심의(정비사업통합심의 등) 시, 동남로22길변 35층 측벽 계획 및 대상지 남측 가락상아1차아파트 높이계획에 따른 경관 및 일조 부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을 통한 주동 개수, 주동 형태 조정 및 높이 하향 방안 등 검토</td><td>• 향후 건축심의시 특별건축구역 지정등을 통한 주동 개수, 주동 형태 조정 및 높이 하향 방안 등 검토하여 계획하겠음</td><td>추후
반영</td></tr>
</table>

Ⅲ. 관련도면 : 붙임 참조

1. 정비구역 결정도
2.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없음)
4. 정비계획 결정도
5.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도서 : 생략

Ⅴ.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148), 송파구 주택사업과(☎02-2147-2904)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Ⅵ.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정비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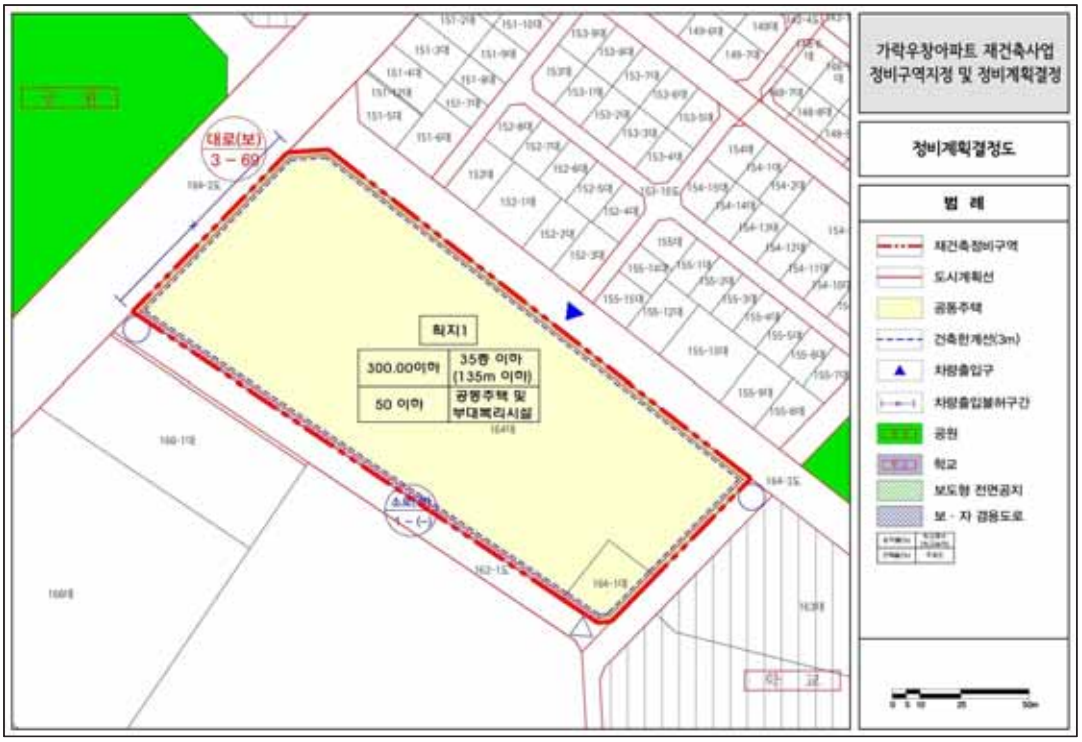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없음)



□정비계획 결정도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가락우창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
지구단위계획결정도
범 례
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선
도시계획도로
공원
학교
건축한계선(3m)
차량출입불허구간
차량출입구
보도형 전면공지
보 · 차 겸용도로
대로(보)
3 - 60
획지1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00이하
35층 이하
(135m 이하)
50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554호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연장 통지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25.9.26.(금))로 인해 지방세 관련 일부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세의 신고 · 납부 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기한연장 통지
 가. 관련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나. 대상 세목 : 9월 말 납기가 도래하는 세목(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 등) 외, 신고분(취득 · 등록세 등), 수시 부과분, 체납 고지분 등 모든 지방세 기한 연장
 다. 신고·납부 기한연장

당 초	변 경
2025. 9.29.(월)~10.15.(수)	2025. 10. 15.(수)

2. 위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울시청 세무과(☏02-2133-338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555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

연번	자치구	명 칭(예정)	위 치	면적(㎡)	비고
1	성북구	돌곶이·상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장위동 66-300번지 일대	94,411.1	

2. 권리기준산정일 : 2025. 10. 02.(목)
※ 당해 고시 게재일

3. 지정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를 위하여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건축물의 신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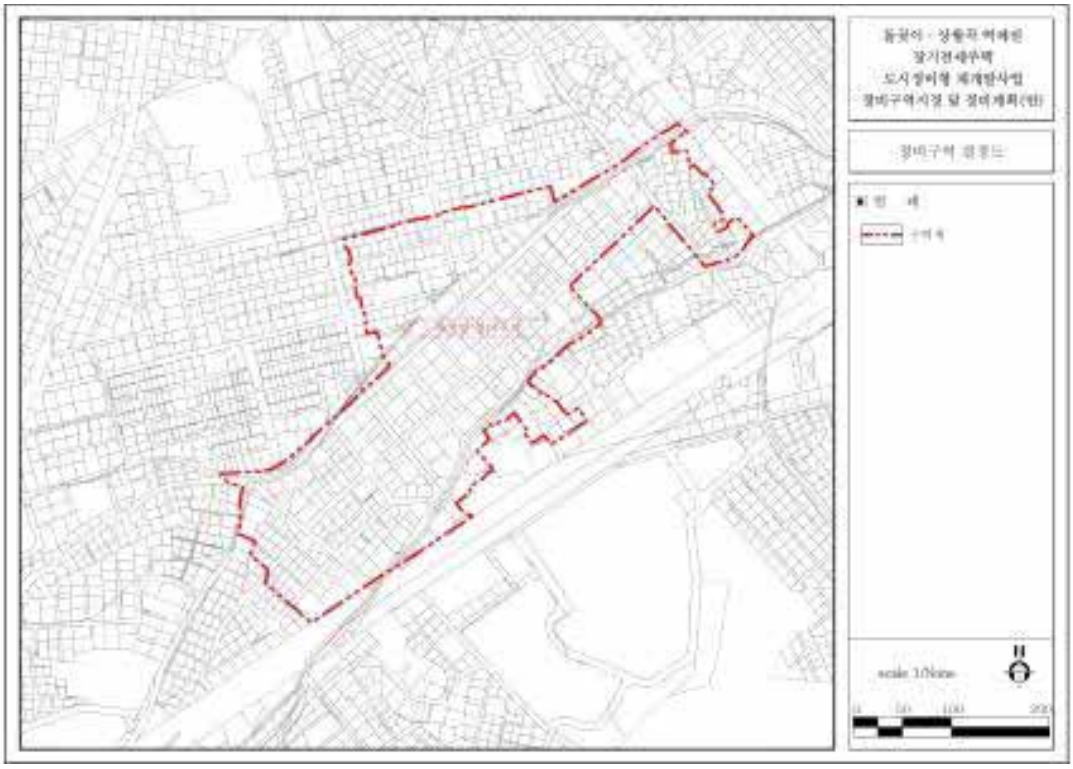
6. 안내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 (☎02-2133-7060) 또는 아래 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구	부서명	연락처	비고
성북구	주거정비과	02-2241-2874	

※ 성북구청(주거정비과-10478, 2025.9.25.)에서 권리기준산정일 요청한 일자에 따라 고시함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관계도면

○ 돌곶이 · 상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556호

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압구정 5구역(한양1,2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5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08.21.)에 의거 아파트지구(용도지구)로 최초 지정, 건설부 건축 4441-6149호(1977.03.29.)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02호(2008.06.12.)로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16호(2023.11.23.)로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17호(2023.11.23.)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내 압구정5구역 한양 1,2차아파트에 대하여 "2025년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5.08.04) 심의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압구정5구역(한양1,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압구정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5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

1. 압구정아파트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가. 용도지구(아파트지구)의 결정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압구정 아파트지구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836,456.5	-	836,456.5	1976.08.21. (건고 131호)

2.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총괄표(변경)

구 분		기 정		변경후		비 고
		면 적(㎡)	비 율(%)	면 적(㎡)	비 율(%)	
합 계		836,456.5	100.0	836,456.5	100.0	-
주거 용지	소 계	710,224.8	84.9	703,998.0	84.1	감) 6,226.8
	주택용지	710,224.8	84.9	703,998.0	84.1	감) 6,226.8

구 분		기 정		변경후		비 고
		면 적(㎡)	비 율(%)	면 적(㎡)	비 율(%)	
중심시설용지	소 계	17,169.0	2.1	17,169.0	2.1	-
	주구중심	12,264.2	1.5	12,264.2	1.5	-
	분구중심	4,904.8	0.6	4,904.8	0.6	-
도시계획시설용지	소 계	109,062.7	13.0	115,289.5	13.8	증) 6,226.8
	학교용지	14,135.6	1.7	14,135.6	1.7	-
	공원용지	16,456.9	2.0	20,623.9	2.5	증) 4,167.0
	도로용지	67,979.7	8.1	70,039.5	8.4	증) 2,059.8
	공공청사	480.0	0.1	480.0	0.1	-
	공공공지	1,145.8	0.1	1,145.8	0.1	-
	연결녹지	4,413.4	0.5	4,413.4	0.5	-
	공공청사·문화시설	4,451.3	0.5	4,451.3	0.5	-

나. 주구별 토지이용계획(변경)

▶ 2-1주구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2-2주구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2-3주구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경후		비 고
		면 적(㎡)	비 율(%)	면 적(㎡)	비 율(%)	
합 계		173,786.4	100.0	173,786.4	100.0	-
주거용지	소 계	154,193.3	88.7	147,966.5	85.1	감) 6,226.8
	주택용지	154,193.3	88.7	147,966.5	85.1	감) 6,226.8
중심시설용지	소 계	-	-	-	-	-
	주구중심	-	-	-	-	-
	분구중심	-	-	-	-	-
도시계획시설용지	소 계	19,593.1	11.3	25,819.9	14.9	증) 6,226.8
	공원용지	4,462.9	2.6	8,629.9	5.0	증) 4,167.0
	도로용지	6,899.1	3.9	8,958.9	5.1	증) 2,059.8
	연결녹지	3,779.8	2.2	3,779.8	2.2	-
	공공청사·문화시설	4,451.3	2.6	4,451.3	2.6	-

▶ 2-4주구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다. 용도지역 · 지구 계획(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836,456.5	-	836,456.5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21,012.5	-	21,012.5	2.5	
제2종일반주거지역	29,110.0	-	29,110.0	3.4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40,569.8	-	40,569.8	4.9	
제3종일반주거지역	745,130.6	-	745,130.6	89.1	
자연녹지지역	633.6	-	633.6	0.1	

2)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 적(㎡)	폭 원(m)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②	경관 지구	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	한남IC ~ 청담사거리	50,016 (15,479)	편측 18	서고 제2019-129호 (2019.04.17.)	

※ ( )은 압구정 아파트지구 내 면적임.

(이 하 여 백)

라.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금회 변경되는 도시계획시설에 한함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09	11~29.5	국지도로	4,100 (2,540)	신사동	영동교	일반도로	서고 제198호 (1971.4.7)	중복결정: (2구역) 유수지①, 대로3-A, 소로1-A (4구역) 소공원B,C, 광로2-18, 중로1-C
변경	중로	2	109	11~29.5	국지도로	4,100 (2,540)	신사동	영동교	일반도로	서고 제198호 (1971.4.7)	중복결정: (2구역) 유수지①, 대로3-A, 소로1-A (4구역) 소공원B,C, 광로2-18, 중로1-C, (5구역) 소공원 B,C
폐지	중로	3	11	12	국지도로	213	압구정489	대로3-71	일반도로	서고제2023-517호 (2023.11.23.)	구역내(5구역) 폐지
기정	중로	3	12	12	국지도로	81	대로2-28	중로3-11	일반도로	서고제2023-517호 (2023.11.23.)	구역내(5구역) 폐지
변경	중로	3	12	12	국지도로	67	대로2-28	압구정490	일반도로	서고제2023-517호 (2023.11.23.)	

※ ( )는 아파트지구 내 해당 사항임.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109	중로2-109	•구역내(5구역) 폭원 및 선형 조정 : B=20m, L=333m	• 정비계획(5구역) 수립에 따른 효율적 교통처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로 폭원 및 선형 조정
중로3-11	-	•폐지	• 정비계획(5구역) 수립에 따른 구역내 도로폐지
중로3-12	중로3-12	•도로 연장 변경 : B=12m, L=81m → 67m	• 정비계획(5구역) 수립에 따른 구역내 도로폐지

2)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A	공원	소공원	압구정동 493번지	-	증)4,167.0	4,167.0	-	
신설	B	공원	소공원	압구정동 497번지	-	증)3,571.7	3,571.7 (1,327.3)	-	( )는 중로2-109 중복결정
신설	C	공원	소공원	압구정동 497번지	-	증)3,689.3	3,689.3 (1,535.0)	-	

※ ( )는 도로 중복결정 데크공원 조성 면적임.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소공원	•공원 신설 - 면적 4,167.0㎡	• 대상지 내 수변 인접부에 주민 휴식 · 휴게공간을 위한 소공원 신설
B	소공원	•공원 신설 - 면적 3,571.7㎡	• 한강접근시설과 연계하여 접점부위 데크공원을 조성 휴게 · 휴식 · 조망 공간 형성
C	소공원	•공원 신설 - 면적 3,689.3㎡	• 한강접근시설과 연계하여 접점부위 데크공원을 조성 휴게 · 휴식 · 조망 공간 형성

3)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①	공공공지	-	압구정동 490 일원	693.0	감) 693.0	-	서고 제517호 (2023.11.23.)	-
기정	②	공공공지	-	압구정동 433-1 일원	1,145.8	-	1,145.8	서고제2025-136호 (2025.03.13.)	-

■ 공공공지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폐지	①	공공공지	공공공지 폐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공공공지 폐지

※ 아파트지구 범위 외 도시계획시설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함

마. 건축물 규제사항(변경없음)

바. 주구중심의 건축계획(변경없음)

사. 기존건축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기존건축물은 관련법 규정 및 개발기본계획지침에 따라 처리

아.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존치되는 압구정아파트지구 내 기존 주택용지, 중심시설용지, 개발잔여지 등의 개발은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시행

Ⅱ. 정비계획 결정(변경)

1. 정비사업의 명칭 :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5 재건축 정비구역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정비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⑤ 재건축 정비구역	강남구 압구정동 490번지 일원	65,736.1	증) 13,253.5	78,989.6	

■ 정비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정비사업 명 칭	변경내용	변경사유
-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⑤ 재건축 정비구역	•면적변경 : 65,736.1㎡ → 78,989.6㎡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5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구역 변경

(이 하 여 백)

3.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추정 비례율

-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종전자산 총액 X 100%
- 추정비례율 : 67.81%
  ⇒ (4조2,638억 - 1조3,978억) / 4조2,267억 X 100 = 67.81%
  - 총 수입 추정 : 4조2,638억
  - 총 지출 추정 : 1조3,978억
  - 종전자산총액 추정 : 4조2,267억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아파트는 KB부동산시세, 한국부동산원시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매도호가 및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고려하여 KB부동산시세 일반평균가를 주택형별 동일한 금액으로 일괄 추정하였으며, 상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평가전례 및 아파트 가격 균형 등을 고려하여 약식 추정함.

구분		전용면적 (㎡)	공급면적 (㎡)	건물면적 (㎡)	세대수	형별 평균가격 (백만원)	추정금액 (백만원)	비고
단지명	공급평형 (통칭평형)							
한양 1차	17.5 (19.0)	43.93	63.14	63.40	1	2,030	2,030	
	18.4 (19.6)	49.98 50.00	65.45 69.54	66.00 ~70.21	193	2,300	443,900	
	23.2 (25.1)	60.06 60.07	83.30 83.31	80.37 ~84.07	11	2,600	28,600	
	24.1 (26.3)	63.87 63.93	90.98 87.14	86.19 ~91.81	313	2,650	829,450	
	25.1 (26.9)	65.12 65.16	90.04 89.78	90.67 ~90.97	11	2,840	31,240	
	29.0 (30.8)	78.05	102.75	103.74 ~109.55	241	3,200	771,200	
	30.5 (32.3)	79.04	107.44	108.27 ~108.50	11	3,260	35,860	
한양 2차	32.1 (34.7)	83.04	115.49	116.55 ~116.56	11	3,500	38,500	
	33.7 (36.6)	91.21	121.76	120.68 ~122.92	120	3,625	435,000	
	38.0 (40.5)	103.01	134.87	136.16 ~137.52	12	3,950	47,400	
	46.9 (50.8)	121.32	168.79	170.33 ~171.05	12	4,400	52,800	
	45.0 (48.4)	134.88 147.40 147.41	160.57	162.05 ~165.25	150	4,720	708,000	
	53.8 (58.0)	175.90 175.92	192.55	194.58 ~194.60	144	5,450	784,800	
	81.3(펜트) (86.5)	264.3	286.35	291.08	2	9,000	18,000	
종전자산추정계 (1)		113,249.01	140,931.98	141,969.60	1,232	-	4,226,780	
종전자산추정계 (2)		현금청산비율 약 0% 가정					-	
비례율적용 종전자산계		(1) - (2)					4,226,780	

※공급면적, 건물면적 및 대지지분면적은 해당 주택형의 대표적인 면적을 기재하였으며, 대지지분이 일부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 대지지분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가격 산출하였음.

추정 분담금 산출

•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

권리자(조합원) 분양가 추정액		추정 권리가액	추정분담
전용57.8㎡(57A)	19.7904억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67.81%)	권리자분양가 추정액 - 추정권리가액 (+:부담/-:환급)
전용57.8㎡(57B)	19.7904억		
전용73.8㎡(73A)	23.7456억		
전용73.8㎡(73B)	23.7456억		
전용73.8㎡(73C)	23.7456억		
전용84.8㎡(84A)	27.6400억		
전용84.8㎡(84B)	27.6400억		
전용99.8㎡(99)	31.7840억		
전용106.8㎡(106)	33.8640억		
전용129.8㎡(129)	39.7632억		
전용153.8㎡(153)	43.3224억		
전용185.8㎡(185A)	52.0416억		
전용185.8㎡(185B)	52.0344억		
전용186.8㎡(186펜트)	105.3792억		
전용276.8㎡(276펜트)	153.3024억		

※ 해당 분담금은 추정액으로 향후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종후자산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4.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78,989.6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20,037.7	25.4	-
	도 로	7,692.0	9.8	공원중복 결정 (2,862.3㎡)
	공 원	8,565.7	10.8	도로 중복 제외
	녹 지	3,780.0	4.8	-
택 지 (획 지)	소 계	58,951.9	74.6	-
	공동주택용지	58,951.9	74.6	

나.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5,736.1	증) 13,253.5	78,989.6	100.0	-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65,736.1	증) 4,999.2	70,735.3	89.5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증) 8,254.3	8,254.3	10.5	-

※ 구역계 변경으로 인한 용도지역 편입면적 증가, 용도지역 변경 없음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면적 변경 - 증) 4,999.2㎡	• 구역계 변경으로 인한 용도지역 편입면적 증가, 용도지역 변경 없음
	자연녹지지역	• 면적 변경 - 증) 8,254.3㎡	

2)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용도지구	아파트지구	836,456.5 (65,736.1)	-	836,456.5 (65,736.1)	-	

※( )은 정비구역 내 면적임.

다. 도시 · 군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09	11~29.5 (20~22)	국지 도로	4,100 (333)	신사동	영동교	일반 도로	서고 제198호 (1971.4.7)	중복결정: (2구역) 유수지①, 대로3-A, 소로1-A (4구역) 소공원B,C, 광로2-18, 중로1-C
변경	중로	2	109	11~29.5 (20)	국지 도로	4,100 (333)	신사동	영동교	일반 도로	서고 제198호 (1971.4.7)	중복결정: (2구역) 유수지①, 대로3-A, 소로1-A (4구역) 소공원B,C, 광로2-18, 중로1-C, (5구역) 소공원 B,C
폐지	중로	3	11	12	국지 도로	213	압구정489	대로3-71	일반 도로	서고제2023-517호 (2023.11.23.)	구역내 폐지
기정	중로	3	12	12	국지 도로	81	대로2-28	중로3-11	일반 도로	서고제2023-517호 (2023.11.23.)	구역내 폐지
변경	중로	3	12	12	국지 도로	67	대로2-28	압구정490	일반 도로	서고제2023-517호 (2023.11.23.)	

※ ( )는 정비구역 내 수치임.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109	중로2-109	•구역내(5구역) 폭원 및 선형 조정 : B=20m, L=333m	• 정비계획(5구역) 수립에 따른 효율적 교통처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로 폭원 및 선형 조정
중로3-11	-	•폐지	• 정비계획(5구역) 수립에 따른 구역내 도로폐지
중로3-12	중로3-12	•도로 연장 변경 : B=12m, L=81m → 67m	• 정비계획(5구역) 수립에 따른 구역내 도로폐지

2)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③	녹지	완충녹지	압구정동 497	8,181.3	감) 8,181.3	-	-	
신설	A	녹지	연결녹지	압구정동 497	-	증) 3,780.0	3,780.0	-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③	완충녹지	•폐지	•압구정지구 순환 산책로 조성을 위해 완충녹지 폐지
A	연결녹지	•녹지 신설 - 면적 3,780.0㎡	•압구정지구 순환 산책로 조성을 위해 연결녹지 신설

3)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A	공원	소공원	압구정동 493번지	-	증)4,167.0	4,167.0	-	
신설	B	공원	소공원	압구정동 497번지	-	증)3,571.7	3,571.7 (1,327.3)	-	( )는 중로2-109 중복결정
신설	C	공원	소공원	압구정동 497번지	-	증)3,689.3	3,689.3 (1,535.0)	-	

※ ( )는 도로 중복결정 데크공원 조성 면적임.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소공원	•공원 신설 - 면적 4,167.0㎡	• 대상지 내 수변 인접부에 주민 휴식 · 휴게공간을 위한 소공원 신설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B	소공원	•공원 신설 – 면적 3,571.7㎡	• 한강접근시설과 연계하여 접점부위 데크공원을 조성 휴게 · 휴식 · 조망 공간 형성
C	소공원	•공원 신설 – 면적 3,689.3㎡	• 한강접근시설과 연계하여 접점부위 데크공원을 조성 휴게 · 휴식 · 조망 공간 형성

4)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①	공공공지	–	압구정동 490일원	693.0	감)693.0	–	서고 제2023-517호 (2023.11.23.)	–

■ 공공공지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폐지	①	공공공지	• 공공공지 폐지	•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공공공지 폐지

(이 하 여 백)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17,073.95	
신설	관리사무실	압구정동 490 일원	195.34	10㎡+(1,401세대-50세대) x0.05㎡=77.55㎡이상
	경비실		67.12	-
	소 계		16,811.49	1,000세대 이상 : (500㎡+ 1,401세대x2㎡)x1.25 = 4,127.50㎡
	경로당		650.90	경로당: 375㎡이상
	어린이놀이터		1,483.50	500㎡+1,401세대x0.7 =1,480.70㎡이상
	어린이집		1,039.19	어린이집 : 580㎡이상
	주민운동시설		947.60	-
	작은도서관		1,081.33	작은도서관 : 203㎡이상
	다함께돌봄센터		509.01	전용면적 66㎡ 이상
	주민공동시설		11,099.96	커뮤니티시설 등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인가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건축법」 등 관련 법령 기준 적용.

마.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

구 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계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신설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⑤ 재건축정비구역	78,989.6	획지	58,951.9	압구정동 490 일원	15	-	-	15	-	

(이 하 여 백)

바. 건축물에 관한 계획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2">구역구분</th><th colspan="2">가구 또는
획지 구분</th><th rowspan="2">위 치</th><th rowspan="2">주용도</th><th rowspan="2">건폐율
(%)</th><th colspan="2">용적률
(%)</th><th rowspan="2">높 이(m)</th><th rowspan="2">비 고</th></tr>
<tr><th>명 칭</th><th>면 적
(㎡)</th><th>명 칭</th><th>면 적
(㎡)</th><th>정비
계획</th><th>법정
상한</th></tr>
<tr><td>신설</td><td>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⑤
재건축정비구역</td><td>78,989.6</td><td>획지</td><td>58,951.9</td><td>압구정동
490 일원</td><td>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td><td>50
이하</td><td>263.23
이하</td><td>300
이하</td><td>250m
이하</td><td></td></tr>
</table>

<table>
<tr><td>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td><td>
▪ 주택공급계획 : 1,401세대
▪ 전체건립규모 ※ 세대수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2">세대수(임대)</th><th colspan="2">비 율(%)</th></tr>
<tr><td colspan="2">계</td><td>1,401</td><td>(140)</td><td>100.0</td><td>(10.0)</td></tr>
<tr><td rowspan="2">85㎡
이하</td><td>60㎡ 미만</td><td>363</td><td>(140)</td><td>25.9</td><td>(10.0)</td></tr>
<tr><td>60㎡ ~ 85㎡ 이하</td><td>587</td><td>(-)</td><td>41.9</td><td>(-)</td></tr>
<tr><td colspan="2">85㎡ 초과</td><td>451</td><td>(-)</td><td>32.2</td><td>(-)</td></tr>
</table>
-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67.8%
- 공공주택(국민주택규모) 건설 : 초과용적률의 50% 이상
※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에 따른 공공주택의 규모 및 세대수는 건축심의를 통해 확정.
</td></tr>
<tr><td>심의완화 사항</td><td>• 공공임대주택건설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 법적상한용적률 300% 이하</td></tr>
<tr><td>건축물의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td><td>•북측 압구정지구 순환도로: 6m
•동측 선릉로변 : 10m
•서측 중로1-10 : 10m
•남측부 : 6m</td></tr>
<tr><td rowspan="4">기타사항에 관한
계획</td><td>가로활성화 특화구간</td><td>• 선릉로, 중로1-10호선변 : 폭 20m
- 근린생활시설 및 공공개방커뮤니티시설 등 설치
• 담장설치를 불허하고 일반이 이용가능하도록 상시 개방</td></tr>
<tr><td>수변디자인 특화구간</td><td>• 선릉로189길변 : 폭 30m
- 한강변 첫 주동 : 20층 내외
- 소공원(데크공원) 및 연결녹지 등과 입체적으로 연결, 개방형 커뮤니티 등 다채로운 수변경관 계획 수립
• 담장설치를 불허하고 일반이 이용가능하도록 상시 개방</td></tr>
<tr><td>중 · 저층
배치구간</td><td>• 4,5구역 사이 중 · 저층배치</td></tr>
<tr><td>교통처리계획</td><td>• 학교가는길
- 압구정 초 · 중 · 고등학교 ~ 청담 초 · 중 · 고등학교를 연결하는 보행동선(학교가는길) 조성
- 24시간 일반이 이용가능하도록 상시 개방</td></tr>
</table>

※ 최고높이 250m이하(랜드마크 1개동에 한함), 그 외 주동은 200m 이하(50층 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시 조정 될 수 있음.

■ 개발가능(상한) 용적률 산정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산정내용</th></tr>
<tr><td colspan="2">토지이용계획</td><td>
<table>
<tr><th rowspan="2">계
(구역면적)</th><th rowspan="2">택 지
(공동주택)</th><th colspan="3">신설 기반시설</th><th rowspan="2">신설 정비기반
시설 내 국·공유지</th><th rowspan="2">획지 내
용도폐지되는
국·공유지</th></tr>
<tr><th colspan="2">토지면적</th><th rowspan="2">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부지</th></tr>
<tr><th>소 계</th><th>정비기반시설
(도로, 공원, 녹지)</th></tr>
<tr><td>78,989.6</td><td>58,951.9</td><td>20,640.5</td><td>20,037.7</td><td>602.8</td><td>13,810.9</td><td>-</td></tr>
</table>
</td></tr>
<tr><td colspan="2">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td><td>• 신설 기반시설 면적 +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면적 - 신설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획지 내 용도폐지되는 국·공유지
= 20,037.7㎡ + 602.8㎡ - 13,810.9㎡ - 0㎡ = 6,829.6㎡
• 순부담률 = (순부담면적 ÷ 현황대지면적) X 100
= (6,829.6㎡ ÷ 65,178.7㎡) X 100 = 10.48% (※ 10% 이상 충족)</td></tr>
<tr><td rowspan="2">건축물
기부채납</td><td>데크
공원</td><td>1. 데크공원 환산부지 면적(별도부지)
= 표준건축비 X 데크공원 연면적(㎡) ÷ 부지가액(원/㎡)
= 9,966,000원/㎡ X 2,862.3㎡ ÷ 47,320,000원 = 602.8㎡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내 용</th><th>비 고</th></tr>
<tr><td>①</td><td>공시지가</td><td>23,660,000원/㎡</td><td>2022년 사유지 공시지가 평균</td></tr>
<tr><td>②</td><td>표준건축비</td><td>9,966,000원/㎡</td><td>한강사업본부 시설부, “망원초록길 조성” 사업비 적용</td></tr>
<tr><td>③</td><td>건축물 연면적</td><td>2,862.3㎡</td><td>*소공원 면적 중 중로2-109 중복결정 (데크조성) 면적 적용</td></tr>
<tr><td>④</td><td>설치비용</td><td>28,525,681,800원</td><td>② X ③</td></tr>
<tr><td>⑤</td><td>부지가액</td><td>47,320,000원/㎡</td><td>공시지가의 2배 적용</td></tr>
<tr><td colspan="2">건축물 환산면적</td><td>602.8㎡</td><td>④ / ⑤</td></tr>
</table>
</td></tr>
<tr><td colspan="2">기준(허용)용적률</td><td>• 기준(허용)용적률 = 230% 이하(허용용적률 20% 상응하는 계획유도 포함)
<table>
<tr><th colspan="2">항 목</th><th>인센티브</th><th>적 용</th></tr>
<tr><td>열린단지</td><td>•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 상가 등 열린단지 조성 (지형도면고시)
- 개방공간, 열린 단지 조성기준 준수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개방되는 부분은 결정도면에 표시 (준공후에도 유지)</td><td>5%</td><td>담장미설치,
연도형상가 등
(*적용 5%)</td></tr>
<tr><td>BF인증</td><td>•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최우수등급 5%, 우수등급 4%, 일반등급 3%</td><td>5%p
이내</td><td>우수등급
(*적용 4%)</td></tr>
<tr><td>돌봄시설</td><td>• 지역에 필요한 놀이 · 돌봄시설 설치 및 제공 (무상임대)
- 기준용적률×(조성면적 (의무면적제외)/주민공동시설면적(의무면적)×a (※a=0.1 이하)
⇒ 230×(902.2㎡/4,127.5㎡)×0.1=5.0%</td><td>5%p
이내</td><td>(*적용 5%)</td></tr>
<tr><td>층간소음
해소</td><td>• 바닥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2등급 이상
- 1등급 5%, 2등급 3%</td><td>5%p
이내</td><td>2등급
(*적용 3%)</td></tr>
<tr><td>친환경
건축물</td><td>① 에너지효율등급 및 ZEB 인증
- ZEB1 7.5%(15%), ZEB2 7%(14%), ZEB3 6.5%(13%), ZEB4 6%(12%), ZEB5 5.5%(11%), 에너지효율 1++ 3%(6%), 에너지효율 1+ 1.5%(3%)
② 녹색건축 인증
- 최우수 등급 3%(6%), 우수 등급 1.5%(3%)
※ 친환경 항목 및 인센티브량은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등 관련 기준 변경 시 연동</td><td>7.5%p
(15%p)
이내</td><td>녹색건축
최우수등급
(*적용 3%)</td></tr>
<tr><td colspan="2">합 계</td><td>20%
이내</td><td>20%
(*적용 20%)</td></tr>
</table>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은 건축심의 전 완화항목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td></tr>
<tr><td colspan="2">개발가능
용적률
산정</td><td>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X (1+ 1.3X가중치X α(토지) + 0.7X α(건축물))
= 230% x (1 + 1.3 X 0.10563 + 0.7 X 0.01023) = 263.23%</td></tr>
</table>

구 분	산정내용	
	※ α(토지) = 공공시설등부지(토지*) 제공면적/공공시설등부지(토지*)제공 후 부지면적 = 6,226.8㎡ / 58,951.9㎡ = 0.10563 α(건축물) = 공공시설등부지(건축물환산부지) 제공면적/공공시설등부지(토지*)제공 후 부지면적 = 602.8㎡ / 58,951.9㎡ = 0.01023 ※ 가중치 = 공공시설 용적률 / 사업부지 용적률 = 230.0% / 230.0% = 1	
법정 상한용적률	• 법적상한용적률 = 300% 이하	• 완화된 용적률의 1/2이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 (300% - 263.23%) / 2 = 18.385% 이상

※ 건축시설계획에 관한 사항은 건축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정(' 24.10.16.)」 시행일 이전 열람공고(' 24.09.13.~10.14.)한 경우로 종전 규정 적용.

사. 교통 및 동선처리 계획

<table>
<tr><th>구분</th><th>지점</th><th>개선방안</th></tr>
<tr><td rowspan="2">주변가로
및
교차로</td><td>Ⓐ</td><td>•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2018.1」 개선방안 반영</td></tr>
<tr><td>-</td><td>• 주변 분석대상 교차로 최적신호운영방안 제시 : 2개소</td></tr>
<tr><td>진출입
동선</td><td>-
-</td><td>• 사업지 진출입동선체계 수립
<table>
<tr><th>구분</th><th>접속도로</th><th>진출입구 운영</th></tr>
<tr><td>북측</td><td>선릉로189길</td><td>3지교차로(비신호)</td></tr>
<tr><td>서측</td><td>중로1-10</td><td>3지교차로(비신호)</td></tr>
<tr><td>동측</td><td>선릉로</td><td>3지교차로(비신호)</td></tr>
</table>
• 사업지 진출입구 회전반경 확보 : R=6.0m</td></tr>
<tr><td rowspan="3">보행 및 자전거</td><td>-</td><td>• 사업지내 자전거보관소설치
- 법정주차대수의 20.0%이상 확보</td></tr>
<tr><td>-</td><td>• 사업지 주변도로상 보도,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설치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도로명</th><th colspan="2">보도(m)</th><th rowspan="2">보행로
(보도부속형전면공지)</th><th rowspan="2">자전거도로</th></tr>
<tr><th>사업지측</th><th>맞은편</th></tr>
<tr><td>북측</td><td>선릉로189길</td><td>2.25</td><td>2.25</td><td>-</td><td>1.5</td></tr>
<tr><td>서측</td><td>중로1-10</td><td>2.25</td><td>2.25</td><td>-</td><td>1.5</td></tr>
<tr><td>동측</td><td>선릉로</td><td>3.00</td><td>3.00</td><td>-</td><td>1.5</td></tr>
</table></td></tr>
<tr><td>-
-</td><td>• 보행동선 단절지점 횡단보도 설치 : 9개소
• 자전거 횡단도 설치 : 7개소</td></tr>
<tr><td>주차</td><td>-
-
-</td><td>· 계획주차대수 : 3,860대
· 법정주차대수 : 1,989대
· 주차수요대수(2030년) : 2,008대
- 법정의 194.1%, 수요의 192.3% 확보</td></tr>
</table>

구분	지점	개선방안
		- 확장형 주차면 계획대수의 30.0%이상 확보 - 경형 주차면 계획대수의 10.0%미만 확보 - 장애인 주차면 법정대수의 3.0%이상 확보 - 가족배려 주차면 계획대수의 10.0%이상 확보 - 가족배려(확장형) 주차면 가족배려주차대수의 50.0%이상 확보 -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면 계획주차대수의 5.0%이상 확보
	-	• 주차램프 및 주차장출입구 전면 차량경고등 설치
교통안전 및 기타	- -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 차량경고등 : 4개소 - 노면표시 • 주정차단속카메라 설치 : 1개소

아.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보전		• 현재 지형을 최대한 고려, 실시계획 수립시 절성토 균형이 되도록 계획하여 외부유출, 내부유입을 최소화 •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해 지상부의 오픈스페이스, 녹지공간 등을 최대한 확보 • 도시생태계 회복을 위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수목 식재 • 공사 및 운영시 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 환경성 검토를 통해 정비구역내 정비사업에 의한 환경영향에 따라 영향저감방안 강구 • 생태면적률 30%이상, 자연지반율 10%이상 확보	-
재난방지	화재	• 공동주택 부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 진압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의무화 •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 긴급재난구조차량 접근 및 소방차등의 접근로 배려	-
	수해	• 자연토양유지 및 공원 등 녹지·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률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 자연재해에 대비한 방재시스템 및 단지내 상하수도시설의 합리적인 설계 반영	-
	교통	•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

자.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 고
반경200m이내 대상지 남동측 학교1개소 (청담고등학교)	• 대상지 내 일부지역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함 •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교육환경 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승인을 받아 사업추진 • 교육환경보호를 위해 차량이 출입하는 지구내 진입도로 주변으로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등의 교통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 추후 사업시행계획 시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 먼지 등을 최소화하여 교육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음	

차. 정비구역을 분할·통합하거나 결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관련 계획 : 해당사항 없음

카.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1) 정비구역의 주택멸실 현황

■ 건축물 동수

구역내 건축물 동수			구역내 건축물 동수		
계	주거용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계	유허가	무허가
15	15	-	15	15	-

■ 거주현황

유형별 주택 호수		거주 가구수			구역내 거주 인구수			비 고
		소 계	가옥주	세입자	소 계	가옥주	세입자	
계	1,232	1,232	659	573	2,834	1,516	1,318	
단독주택	-	-	-	-	-	-	-	
공동주택	1,232	1,232	659	573	2,834	1,516	1,318	

※ 주택호수 : 공동주택은 1세대를 1호로 산정.
※ 구역내 거주 가구수 및 인구수 : 주민등록상 세대수 기준으로 작성하되, 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 1세대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1개 가구로 작성.
※ 거주 인구수 : 세대당 2.3인 적용(강남구 통계연보 2023)

■ 규모별, 유형별 거주현황

구 분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 계	단 독	다가구	기 타	소 계	아파트	연 립	다세대	기 타
합 계		1,232	-	-	-	-	1,232	1,232	-	-	-
60㎡ 이하	소 계	194	-	-	-	-	194	194	-	-	-
	30㎡이하	-	-	-	-	-	-	-	-	-	-
	30㎡초과 ~ 50㎡이하	194	-	-	-	-	194	194	-	-	-
	50㎡초과 ~ 60㎡이하	-	-	-	-	-	-	-	-	-	-
60㎡초과 ~ 85㎡이하		598	-	-	-	-	598	598	-	-	-
85㎡ 초과	소 계	440	-	-	-	-	440	440	-	-	-
	85㎡초과 ~ 135㎡이하	145	-	-	-	-	145	145	-	-	-
	135㎡초과	295	-	-	-	-	295	295	-	-	-

※ 주택(건축물)의 규모는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으로 작성.

2) 정비사업으로 인해 새로 건축되는 주택 현황

구 분		계	조합원분양	일반분양	임대주택	비 고
합 계		1,401	1,232	29	140	-
60㎡ 이하	소 계	363	194	29	140	-
	30㎡이하	-	-	-	-	-
	30㎡초과 ~ 50㎡이하	-	-	-	-	-
	50㎡초과 ~ 60㎡이하	363	194	29	140	-
60㎡초과 ~ 85㎡이하		587	587	-	-	-
85㎡ 초과	소 계	451	451	-	-	-
	85㎡초과 ~ 135㎡이하	155	155	-	-	-
	135㎡초과	296	296	-	-	-

※ 조합원 및 일반분양 규모는 관리처분 인가시 확정되는 사항으로 추후 조정될 수 있음.

타. 세입자 주거대책

- 세입자들에게 정비계획 주요 추진단계를 사전에 통지하고, 이주시기 등을 협의 조정하여 재건축으로 인한 세입자 피해를 최소화하겠음.

파.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조경	단지	• 단지 앞 정원에 1m 이하의 관목을 식재하고, 단지 중앙부는 지하고 2m 이상 교목 식재하여 시야 확보	-
	주차장	• 출구 주변에는 조경수를 지양하고 조명과 조경간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시야 확보	-
조명	단지	• 공동출입구와 계단은 조명을 설치하여 불안감 감소 • 주차장, 정원은 조도 15룩스 이상으로 하여 시야 확보	-
	주차장	• 주차장법 규정에 따른 70룩스 조도 유지 • 지하주차장 조명은 눈부심방지 조명을 설치하고 벽, 천장, 유입로에는 조명을 설치하도록 함	-
자연적 접근통제	단지	• 주 출입구에는 출입차단기를 설치하고 경비원을 배치 •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관제실의 관측상황을 지속적으로 순찰요원과 공유	-

하.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가 구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G2	획지	58,951.9	압구정동 490번지 일대	58,951.9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거.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구 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 수	세대수	세대규모(전용)	비 고 (연면적)
신설	획지 (공동주택)	58,951.9	8	140세대	57.8㎡	10,907.70㎡

■ 공공주택 공급면적 산정

계획기준		•공공주택 건설 : 도시정비법에서의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공공주택은 공공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					
법적상한용적률		•300% 이하(건축심의에서 최종결정)					
상한용적률		•263.23%					
공공주택 의무면적	용적률 증가분	•300% - 263.23% = 36.77%					
	증가된 용적률의 50%	•36.77% × 0.5 = 18.385%					
	의무 연면적	•58,951.9㎡(대지면적) × 18.385% = 10,838.31㎡ 이상					
공공임대주택 확보계획 (건축심의에서 최종결정)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연면적	비 율	비 고
		57.80㎡	77.91㎡	140	10,907.70㎡	100.0%	
		합 계		140	10,907.70㎡	100.0%	〉10,838.31㎡

너.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더.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1	비오톱	비오톱보전등급 향상	■	• 비오톱유형 평가도 2,3등급, 개별비오톱 평가도 평가제외 및 2,3등급	• 자연지반녹지, 수공간, 인공지반녹지 등 적용	-
2	생태 네트워크	녹지·수생태 연결성 확보	■	• 대상지내에는 일부 식재된 조경수목 외 자연녹지는 거의 없음	• 대상지 내 녹지계획을 수립 및 주변 자연자원과 주거지간의 연계성 강화	-
3	동·식물상	동·식물상 보호	-	• 도심지(대지)로 해당사항 없음	-	-
4	자연환경 자산	자연환경 보전	-	• 해당 사항 없음	-	-
5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 토지이용 현황 및 용도지역 조사	• 공동주택, 도로 및 공원을 반영한 종합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
6	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	• 토양오염 발생하지 않음	-	-
7	지형·지질	지형·지질영향 최소화	■	• 대상지 대부분 평탄한 지형임	• 평지 형태로 지형변화는 경미하며, 건축터파기 공사로 부분적 지형변화 발생	-
8	물순환, 수리·수문	자연물순환 유지	■	• 대상지 내 녹지 계획	• 생태면적률 30.07%	-
9	수질	수질오염 방지	■	• 지표 수질 및 지하수질 현황 조사, 공사 중 토사유출 및 오수 발생	• 공사 중 수질저감 계획 수립 • 우수, 하수 처리방안 계획	-
10	바람	바람길 및 미기후 개선	■	• 서울기상대 기상현황 조사 분석, 주풍향 등 검토	• 향후 세부 계획 시 바람방향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녹지 수목 식재 통한 미기후 개선	-
11	열	열환경 영향 최소화	■	• 불투수포장비율이 높은 5층 이상 주거지로 온도가 높은 편	• 향후 충분한 녹지 조성으로 열환경 개선	-
12	대기질·미세먼지	대기오염 최소화	■	• 공사장 장비가동 시 비산먼지 및 배기가스 배출 영향	• 세륜측면살수시설, 방진망 설치, 주기적인 살수 등 저감, 환경정화수종 식재	-
13	악취	악취공해 해결	-	• 해당 사항 없음	-	-
14	온실가스	온실가스 저감	■	• 난방, 취사연료 사용과 차량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 대상지 내 청정연료 사용, 에너지 절감, 녹지 계획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15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발생량 최소화	■	• 공사장 건설폐기물 발생 및 운영 시 생활 및 분뇨폐기물 발생	•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통한 폐기물 발생 감량	-
16	에너지	에너지절약/ 효율 극대화	■	• 지역 에너지 소비현황 조사, 난방, 취사, 전력 사용으로 인한 에너지 이용량 증가	• 향후 에너지 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신재생에너지 검토 예정	-
17	소음·진동	소음·진동 최소화	■	• 공사 시 장비투입에 따른 공사장 소음 유발 • 운영 시 교통소음으로 인한 영향	• 공사 중 가설방음판넬, 저소음저진동 장비 사용, 녹지 완충공간 조성	-
18	경관	주변경관과의 조화	■	• 시가화된 지역으로 인공경관이 주를 이룸	• 인근 주거지와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을 유도해 지상 70층 이하로 계획, 폐쇄적인 경관이 형성되지 않도록 다양한 층수 배치 • 측벽의 노출이 많은 조망으로 특화계획 마련하여 한강변의 다채로운 경관 형성 유도	-
19	휴식 및 여가공간	양질의 휴식, 여가공간 확보	■	• 대상지 내 휴식·여가공간 부족 • 주변 공공시설과 연계 부족	• 주변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 신설	-
20	일조	일조 침해 최소화	■	• 연평균 및 월별, 계절별 일조 시간 검토	• 높이 70층이하 규모의 사업계획 수립, 일조권 침해 수인한도 준수	-
21	보행 친화공간	보행친화형 도시 조성	■	• 보행공간 확보요함	• 보행자도로 및 보행동선 조성, 열린단지 조성으로 보행공간 확보	-
22	전파장해	전파장해 영향 저감	-	• 해당 사항 없음	-	-
23	인구	인구 동태를 고려한 계획 수립	-	• 해당 사항 없음	-	-
24	주거	주거 환경을 고려한 계획 수립	-	• 해당 사항 없음	-	-
25	산업	산업 동태를 고려한 계획 수립	-	• 해당 사항 없음	-	-

러.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본 사업지구는 전체가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어 단지내 생육상태가 양호한 조경수에 대하여, 추후 사업시행인가 전 구체적인 수목활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머.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1) 현황 가구수 및 인구수

유형별 주택 호수		거주 가구수			구역내 거주 인구수			비 고
		소 계	가옥주	세입자	소 계	가옥주	세입자	
계	1,232	1,232	659	573	2,834	1,516	1,318	
단독주택	-	-	-	-	-	-	-	
공동주택	1,232	1,232	659	573	2,834	1,516	1,318	

2) 계획 가구수 및 인구수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세대수(세대)	인구수(인)	세대수(세대)	인구수(인)	
계	1,232	2,834	1,401	3,223	-
60㎡ 이하	194	446	363	835	-
60㎡ ~ 85㎡	598	1,376	587	1,350	-
85㎡ 초과	440	1,012	451	1,038	-

※ 거주 인구수 : 세대당 2.3인 적용(강남구 통계연보 2023)

버. 구역 내 옛길, 옛물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건축자산 및 한옥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 : 해당사항 없음

(이 하 여 백)

Ⅲ.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남구 압구정동, 청담동 일대	1,167,719.5 (78,989.6)	-	1,167,719.5 (78,989.6)	-

※ ( )은 특별계획구역5 해당 사항임.

2. 용도지역 · 지구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167,719.5	100.0	-
주거지역	소 계		1,101,508.8	94.3	-
	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43,334.7	3.7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181,844.1	15.6	-
		제2종일반주거지역	29,709.6	2.5	-
		제3종일반주거지역	846,620.4	72.5	-
녹지지역	소 계		66,210.7	5.7	-
	자연녹지지역		66,210.7	5.7	-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 적(㎡)	폭 원(m)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아파트지구	-	압구정동	836,456.5	-	건고제1979-131호 (1971.08.21.)	압구정지구
기정	경관지구	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	한남IC-청담사거리	50,016.0	편측 18	서고제2019-129호 (2019.04.17.)	압구정로

※ ( )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해당 사항임.

3.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m)							
기정	광로	2	18	40	주간선 도로	6,500 (369)	압구정동	포이동	일반 도로	건고제46호 (1976.04.07.)	구역내(4구역) 5m 확폭, 중복결정: 중로1-C, 중로2-109
기정	대로	2	28	30~44	보조 간선도로	4,300 (2,577)	청담동 (광로14)	잠원동	일반 도로	건고제503호 (1969.08.27.)	구역내(4구역) 5m 확폭
기정	대로	2	30	30	주간선 도로	6,717 (402)	압구정동	포이동 (광로27)	일반 도로	건고제503호 (1969.08.27.)	-
기정	대로	2	63	30~65 (52)	주간선 도로	4,100 (584)	장충 체육관	압구정동	일반 도로	건고제426호 (1978.12.29.)	논현로 (동호대교)
기정	대로	3	71	25~27 (25)	보조 간선도로	4,900 (332)	압구정동	도곡동 (대로2-28)	일반 도로	건고제198호 (1971.04.07.)	중복결정: 철도②,③
기정	대로	3	A	10~30	특수 도로	280	압구정도 434	압구정동 378-1	보행자 전용도로	서고제2025-136호 (2025.03.13.)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중로1-136, 중로2-289, 중로2-109, 연결녹지①, 하천①
기정	중로	1	2	16	국지 도로	310	압구정동 434	중로 2-109	일반 도로	서고제2023-517호 (2023.11.23.)	중복결정: 유수지①
기정	중로	1	4	21	국지 도로	122	대로 2-28	중로 2-3	일반 도로	서고제2023-517호 (2023.11.23.)	-
기정	중로	1	6	23.5	국지 도로	486	대로 2-28	압구정 369-1	일반 도로	서고제2023-517호 (2023.11.23.)	-
기정	중로	1	10	20	국지 도로	280	대로 2-28	중로 2-109	일반 도로	서고제2023-517호 (2023.11.23.)	도로 일부 입체결정 (지상권 설정)
기정	중로	2	1	18.5	국지 도로	143	대로 2-28	압구정 408	일반 도로	서고제2023-517호 (2023.11.23.)	-
기정	중로	2	3	15	국지 도로	456	중로 1-2	현대 백화점	일반 도로	서고제2023-517호 (2023.11.23.)	-
기정	중로	2	8	16.5	국지 도로	420	대로 2-28	중로 2-109	일반 도로	서고제2023-517호 (2023.11.23.)	-

구 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m)							
기정	중로	2	109	11~29.5	국지 도로	4,100 (2,832)	신사동	영동교	일반 도로	서고제198호 (1971.04.07.)	중복결정: (2구역) 유수지①, 대로3-A, 소로1-A (4구역) 소공원B,C, 광로2-18, 중로1-C
변경	중로	2	109	11~29.5	국지 도로	4,100 (2,832)	신사동	영동교	일반 도로	서고제198호 (1971.04.07.)	중복결정: (2구역) 유수지①, 대로3-A, 소로1-A (4구역) 소공원B,C, 광로2-18, 중로1-C, (5구역) 소공원 B,C
기정	중로	1	C	20~22	국지 도로	117.3	압구정동 481	광로 2-18	지하 도로	서고제2025-503호 (2025.09.11)	중복결정: 소공원B, 광로2-18, 중로2-109
기정	중로	2	15	15	국지 도로	50	중로 2-109	압구정 414	일반 도로	서고제2023-517호 (2023.11.23.)	-
기정	중로	3	5	12~15	국지 도로	206	압구정 449	중로 1-6	일반 도로	서고제2023-517호 (2023.11.23.)	-
기정	중로	3	7	12	국지 도로	246	중로 1-6	중로 2-8	일반 도로	서고제2023-517호 (2023.11.23.)	-
폐지	중로	3	11	12	국지 도로	213	중로 1-10	대로 3-71	일반 도로	서고제2023-517호 (2023.11.23.)	구역내 폐지
기정	중로	3	12	12	국지 도로	81	대로 2-28	중로 3-11	일반 도로	서고제2023-517호 (2023.11.23.)	구역내 폐지
변경	중로	3	12	12	국지 도로	67	대로 2-28	압구정 490	일반 도로	서고제2023-517호 (2023.11.23.)	
기정	중로	3	13	12	국지 도로	141	대로 3-71	청담 고등학교	일반 도로	서고제2023-517호 (2023.11.23.)	-
기정	소로	1	A	11.5	국지 도로	160	압구정동 392 일대	압구정동 392 일대	지하 도로	서고제2025-136호 (2025.03.13.)	중복결정: 중로2-109, 연결녹지①
기정	소로	1	14	10~12	국지 도로	207	대로 2-28	중로 2-109	일반 도로	서고제2023-517호 (2023.11.23.)	-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해당 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109	중로2-109	•구역내(5구역) 폭원 및 선형 조정 : B=20m, L=333m	• 정비계획(5구역) 수립에 따른 효율적 교통처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로 폭원 및 선형 조정
중로3-11	-	•폐지	• 정비계획(5구역) 수립에 따른 구역내 도로폐지
중로3-12	중로3-12	•도로 연장 변경 : B=12m, L=81m → 67m	• 정비계획(5구역) 수립에 따른 구역내 도로폐지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구 분	입체적 결정 범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중로1-10	도 로	압구정동 487 일원	길 이	-	증) 119.5m	119.5m	* 비도시계획시설 : 지하에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폭	-	증) 20.0m	20.0m	
				높 이	-	해발 12.5 ~ 지상부 (현황레밸 해발 18.5m)	해발 12.5 ~ 지상부 (현황레밸 해발 18.5m)	
				면 적	-	증) 2,390.0㎡	2,390.0㎡	

※ 입체결정 도로의 길이, 폭, 높이, 면적은 구적 값으로 향후 측량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주차장	압구정동 428	13,381.0	-	13,381.0	-	중복결정: 공원②(지상)

3) 철도

■ 철도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①	철도	지하철 역사 (3호선 압구정역)	압구정동 429-1 일원	5,800.0 (2,506.0)	서고 287호 (1981.07.30.)	중복결정: 대로2-63, 대로2-30
기정	②	철도	지하철 역사 (분당선 압구정 로데오역)	청담동 84 일원	6,488.0 (2,489.0)	건고 87호 (2005.04.16.)	중복결정: 대로3-71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 장(m)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기정	①③	철도	일반철도(분당선)	왕십리역	삼성동 172-20	6,830	190,795.0 (4,227.0)	건로 6호 (2007.01.18.)	중복결정: 대로3-71

※ ( ) 연장 및 면적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해당 사항임.

나. 공간시설

1) 녹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녹지	완충녹지	압구정동 390 일원	24,224.3	-	24,224.3	-	중복결정: 유수지①, 교통광장①, 대로3-A, 소로1-A
기정	②	녹지	완충녹지	압구정동 479	5,696.0	-	5,696.0	-	-
폐지	③	녹지	완충녹지	압구정동 497	8,181.3	감) 8,181.3	-	-	-
기정	④	녹지	완충녹지	압구정동 505,506,507,147	13,260.0	-	13,260.0	-	-
기정	A	녹지	연결녹지	압구정동 498	3,056.2	-	3,056.2	서고제2025-503호 (2025.09.11)	4구역
기정	B	녹지	연결녹지	압구정동 480	2,478.5	-	2,478.5	서고제2025-503호 (2025.09.11)	4구역
기정	C	녹지	연결녹지	압구정동 480	1,301.3	-	1,301.3	서고제2025-503호 (2025.09.11)	4구역
신설	A	녹지	연결녹지	압구정동 497	-	증) 3,780.0	3,780.0	-	5구역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③	완충녹지	•폐지	•압구정지구 순환 산책로 조성을 위해 완충녹지 폐지
A	연결녹지	•녹지 신설 - 면적 3,780.0㎡	•압구정지구 순환 산책로 조성을 위해 연결녹지 신설

2) 공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공원	-	압구정동 422 일원	6,987.0	-	6,987.0	서고 제2004-343호 (2004.11.05.)	중복결정: 유수지①
기정	②	공원	-	압구정동 428 일원	13,381.0	-	13,381.0	서고 제2004-343호 (2004.11.05.)	중복결정: 주차장①
기정	⑥	공원	소공원	압구정동 397 일원	4,400.0	-	4,400.0	서고제2023-517호 (2023.11.23.)	-
기정	⑦	공원	소공원	압구정동 510 일원	5,030.0	-	5,030.0	서고제2023-517호 (2023.11.23.)	-
기정	A	공원	문화 공원	압구정동 482 일원	4,462.9	-	4,462.9	서고제2025-503호 (2025.09.11)	-
기정	B	공원	소공원	압구정동 498 일원	1,721.8 (1,366.9)	-	1,721.8 (1,366.9)	서고제2025-503호 (2025.09.11)	4구역, 중복결정: 중로1-C, 중로2-109
기정	C	공원	소공원	압구정동 498 일원	4,480.6 (1,895.7)	-	4,480.6 (1,895.7)	서고제2025-503호 (2025.09.11)	4구역, 중복결정: 중로2-109
신설	A	공원	소공원	압구정동 493 일원	-	증) 4,167.0	4,167.0	-	5구역
신설	B	공원	소공원	압구정동 497 일원	-	증) 3,571.7	3,571.7 (1,327.3)	-	5구역, 중복결정: 중로2-109
신설	C	공원	소공원	압구정동 497 일원	-	증) 3,689.3	3,689.3 (1,535.0)	-	

※ ( )는 도로 중복결정 데크공원 조성 면적임.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A	소공원	•공원 신설 - 면적 4,167.0㎡	• 대상지 내 수변 인접부에 주민 휴식 · 휴게공간을 위한 소공원 신설
신설	B	소공원	•공원 신설 - 면적 3,571.7㎡	• 한강접근시설과 연계하여 접점부위 데크공원을 조성 휴게 · 휴식 · 조망 공간 형성
신설	C	소공원	•공원 신설 - 면적 3,689.3㎡	• 한강접근시설과 연계하여 접점부위 데크공원을 조성 휴게 · 휴식 · 조망 공간 형성

3) 광장

■ 공원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①	광장 157호	교통광장	한남대교남단 (한강둔치일원)	216,218.0 (8,376.0)	서고 제1997-200호 (1997.06.17.)	중복결정: 녹지① (중복면적: 2,348.0㎡)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해당 사항임.

4)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①	공공공지	-	압구정동 490 일원	693.0	감) 693.0	-	서고 제517호 (2023.11.23.)	-
기정	②	공공공지	-	압구정동 433-1 일원	1,145.8	-	1,145.8	서고제2025-136호 (2025.03.13.)	-

■ 공공공지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폐지	①	공공공지	공공공지 폐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공공공지 폐지

다. 공공 · 문화체육시설

1) 학교

■ 학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학교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학교	중교	신사중교	압구정동 410	15,000.0	-	15,000.0	서고 제256호 (1981.07.07.)	-
기정	②	학교	고교	현대고교	압구정동 423,424,425	18,500.0	-	18,500.0	서고 제162호 (1978.04.17.)	-
기정	③	학교	초교	압구정초교	압구정동 469	14,135.6	-	14,135.6	서고 (1975.12.08.)	-
기정	④	학교	중교	압구정중교	압구정동 471	15,000.0	-	15,000.0	서고 (1991.12.31.)	-
기정	⑤	학교	고교	압구정고교	압구정동 470	17,422.0	-	17,422.0	서고 (1991.12.31.)	-
기정	⑥	학교	초교	청담초교	청담 142	14,774.0	-	14,774.0	서고 (1991.12.31.)	-
기정	⑦	학교	중교	청담중교	청담 143	14,754.0	-	14,754.0	서고 (1991.12.31.)	-
기정	⑧	학교	고교	청담고교	청담 514,526	13,884.0	-	13,884.0	서고 (1991.12.31.)	-
기정	⑨	학교	-	-	압구정동 423,424	14,999.8	-	14,999.8	서고 (1991.12.31.)	-

2)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청사	-	압구정동 426 일원	480.0	-	480.0	서고제2025-136호 (2025.03.13)	
기정	A	공공청사	-	압구정동 489	4,451.3	-	4,451.3	서고제2025-503호 (2025.09.11)	

■ 공공청사 건축범위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건폐율	용적률	높 이	연면적(㎡)	비 고(관리청)
기정	공공청사	공공업무 사무소	50% 이하	250% 이하	지하1층~1층	1,262.9	강남구청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은 강남구로 귀속되며, 강남구청장(공공업무사무소)이 운영 및 관리함.
※ 향후 토지가격 및 건축계획 등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 · 층고 · 형태는 조정될 수 있음.

3) 문화시설

■ 문화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문화시설	공연장 및 도서관	압구정동 414 일원	3,000.0	-	3,000.0	서고제2025-517호 (2023.11.23.)	
기정	A	문화시설	-	압구정동 489	4,451.3	-	4,451.3	서고제2025-503호 (2025.09.11)	

■ 문화시설 건축범위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건폐율	용적률	높 이	연면적(㎡)	비 고(관리청)
기정	문화시설	공공팝업 스토어	50% 이하	250% 이하	지하1층~5층	9,784.2	서울시청 k-콘텐츠(창조산업과) k-뷰티(뷰티패션산업과) k-관광(관광산업과)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은 서울특별시로 귀속되며, 서울특별시장(공공팝업스토어)이 운영 및 관리함.
※ 향후 토지가격 및 건축계획 등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 · 층고 · 형태는 조정될 수 있음.
※ 공공기여 시설의 세부용도에 대해서는 서울시 기부채납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추후 확정됨.

라. 방재시설

1) 유수지

■ 유수지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유수지	유수 시설	압구정동 422 신사공원	6,732.2	-	6,732.2	서고 제2013-315호 (2023.11.23.)	중복결정: 공원①,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일원					중로2-109, 중로1-2, 연결녹지①
기정	①	하천	하천 시설	압구정동 378-1 일원	(865.7)	-	(865.7)	-	중복결정: 대로3-A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해당 사항임.

4.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 가구 및 획지 설정기준

구 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 고
가구	-	•6m 이상 도로로 구획되는 블록을 기준으로 가구 설정	10개소
계획단위	특별계획구역	•정비사업 추진단지(추진위 승인 ~ 준공전) •미추진 단지 중 부지면적 1만㎡이상 또는 200세대 이상	9개소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적으로 통합개발을 통해 도시기능 도입이 필요하나 다수의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주민의 동의에 따라 추진이 필요한 지역	-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토지소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이나 기 건축이 완료된 지역(과소필지)	-
	공동개발(권장)	•기 건축된 필기 중 토지소유자가 동일한 필지 •토지소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이나 기 건축이 완료된 지역 ※ 도로에 의해 단절되지 않은 연접된 필지간 통합적 공동개발 가능	-
	자율적 공동개발	•2필지 이상의 자율적 공동개발을 통하여 집단적으로 노후건축물의 정비를 유도하며,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권장함 •자율적 공동개발을 통해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도시생활주택 150세대) 개발, 인근 단지와 통합 재건축시 RA-3코드 기준 적용 가능 - 연접된 아파트단지와의 상호 합의를 전제로 공동개발을 권장함	기존 개발잔여지

나. 가구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가구번호 (도면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A	압구정동 414 일원	93,576.5	특별계획구역 1
B	압구정동 434 일원	218,850.2	특별계획구역 2, 7
C	압구정동 369-1 일원	82,445.6	특별계획구역 3

가구번호 (도면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D	압구정동 447 일원	100,258.8	
E	압구정동 458 일원	123,404.2	
F	압구정동 464 일원	58,295.4	
G	압구정동 481 일원	178,686.6	특별계획구역 4, 5, 8
I	압구정동 513 일원	75,781.7	특별계획구역 6, 8, 9
J	압구정동 143 일원	29,526.1	

다.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도면번호)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A	A1	압구정동 414일원	60,580.0	-	60,580.0	특별계획구역 1 (미성1,2차 APT)
	A2	압구정동 408일원	5,982.8	-	5,982.8	
B	B1	압구정동 434일원	14,685.4	-	14,685.4	특별계획구역 2 (현대9,11,12차 APT)
	B3	압구정동 429일원	10,473.1	-	10,473.1	특별계획구역 7 (현대백화점)
C	C1	압구정동 369-1일원	76,750.0	-	76,750.0	특별계획구역 3 (현대1,2,3,4,5,6,7, 10,13,14차APT, 현대빌라트, 대림빌라트)
D	D1	압구정동 447일원	97,526.4	-	97,526.4	
E	E1	압구정동 455일원	96,148.0	-	96,148.0	
	E2	압구정동 458일원	10,035.6	-	10,035.6	
F	F1	압구정동 465일원	26,201.6	-	26,201.6	
G	G1	압구정동 481일원	88,457.2	-	88,457.2	특별계획구역 4 (현대8차, 한양4,6차 APT)
	G2	압구정동 490일원	55,395.0	증) 3,556.9	58,951.9	특별계획구역 5 (한양 1,2차 APT)
	G3	압구정동 494일원	10,203.4	-	10,203.4	특별계획구역 8 (갤러리아백화점)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도면번호)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I	I1	압구정동 513일원	41,590.0	-	41,590.0	특별계획구역 9 (한양5,7,8차 APT)
	I2	압구정동 515일원	8,549.8	-	8,549.8	특별계획구역 8 (갤러리아백화점)
	I3	압구정동 518일원	2,986.1	-	2,986.1	특별계획구역 9 (기아자동차)
	I4	압구정동 521일원	1,579.6	-	1,579.6	기존 개발잔여지
J	-	-	-	-	-	-

※ 기존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기반시설은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 상기면적은 향후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획지 결정(변경)사유서

획지번호	면 적(㎡)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변경후	
G2	55,395.0	증) 3,556.9	58,951.9	• 정비계획(5구역) 수립에 따른 획지계획 변경

5. 건축물 용도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권장용도

구 분	도면표시	전 층	저 층(1~3층)	비 고
권장 용도	a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제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사무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서점 •판매시설	-

※ 건축물 용도계획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및 주택법 개정시 개정된 내용 적용.
※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나. 허용용도

구 분	도면표시	전 층	비 고
허용 용도	1	•공동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RA-3, RA-(3)

※ 건축물 용도계획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및 주택법 개정시 개정된 내용 적용.
※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다. 불허용도

구 분	도면표시	전 층	비 고
불허 용도	A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RA-3, RA-(3)
	B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업무시설(1층에 한함), 총포판매소, 장의사, 게임제공업소,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RG-3, CG-3
	C	•단독주택 및 공급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 단, 위 용도 중 시(市)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외하며, [별표1]의 가이드라인 적용	CG-3 [별표1]

※ 건축물 용도계획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및 주택법 개정시 개정된 내용 적용.
※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라. 용도완화

-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비주거시설로서 압구정아파트지구의 자족성 강화를 위한 건축물 용도완화
- 현 건축물 용도의 특성(대규모 판매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운영 중)을 고려 건축물 용도완화

구 분	현재 제3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가능한 건축물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도완화계획수립	비 고
용도 완화	•판매시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9조에 의거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미만(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함) •업무시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9조에 의거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미만	•용도완화계획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바닥면적 제한 완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의거 완화	준주거지역에서 건축가능한 규모로 판매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면적제한 완화

※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6. 건축물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건폐율에 관한 결정조서

용도지역	건폐율	코드구분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RA-3, RA-(3)
		RG-3
		CG-3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 건폐율은 관련 법령에 따름.
※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나. 용적률에 관한 결정조서

용도 지역	용적률			비 고	코드 구분
	기 준	허 용	상 한		
제3종 일반주거 지역	170%이하	170%이하	300%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되는 지역 적용	RA-(3)
	200%이하	200%이하	300%이하	제2종(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되는 지역 적용	RA-(3)
	230%이하	230%이하	300%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예정법정상한용적률 300% 이하로서 건축위원회 심의 시 확정	RA-3

용도지역	용적률			비 고	코드 구분
	기 준	허 용	상 한		
	250%이하	250%이하	법적용적률 2배 이하	단, 공동주택이 주용도로서 부지면적이 5,000㎡이상 또는100(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150세대)세대 이상 (공동)개발 시 또는 공동주택 통합개발 시 코드 RA-3을 적용	RG-3
	250%이하	250%이하	법적용적률 2배 이하		CG-3

※ 상한용적률은 향후 변화된 구역여건을 반영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완화항목 및 인센티브를 확인하여 심의를 통하여 수립 및 결정.
※ 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필지는 관련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을 따름.
※ 기준(허용) 용적률 170%, 200%, 230%를 적용하는 공동주택은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2022.11.)」에 따라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항목을 준용하여 허용용적률 20%[기준(허용)용적률 200%인 경우 10%]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단, 향후 관련계획 및 기준 변경시 변경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적용)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 용적률은 관련 법령에 따름.
※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시 용적률은 관련 법령 및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름.
※ 용도지역 상향부지는 재건축 추진 시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별도 이행.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기준을 따름)
※ 상한용적률 선정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적용하고, 그 외의 기타 획지의 경우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상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계획기준에 따름.
※ 본 지구단위계획 차기 재정비 시 공동주택 용적률 체계는 아파트지구 외의 일반지역과 동일한 기준 적용 예정.
※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을 따름.

다. 허용용적률 의무사항

- 대지규모가 5,000㎡ 이상 또는 건립예정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은 150세대 이상)를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항목 중 총20% 이상 적용하여야 한다
- 아래의 항목 이외 입지적 특성 및 사회여건변화에 대응하는 공공성 등을 확보하여 市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적용 가능

■ 허용용적률 완화에 따른 의무사항

구 분		적용기준
1	우수디자인	15%p
2	장수명주택	우수등급 이상: 10%p
3	녹색건축물 인증	녹색건축물 최우수 등급: 6%p / 녹색건축물 우수 등급: 3%p
4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3%p
5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건축물의 총에너지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의 비율	20% 초과: 3%p / 20% 이하 15% 초과: 2%p / 15% 이하 10% 초과: 1%p
6	지능형 건축물	1등급: 15%p / 2등급: 12%p / 3등급: 9%p / 4등급: 6%p
7	공공보행통로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등 조성(지역권*설정) •기준용적률 X (조성면적/대지면적) X a ※ a=1이하 - 지역권 : 통행 등 일정목적으로 타인토지를 자기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등기)
8	열린단지	•단지 외곽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 상가 등 열린단지*로 조성(지형도면고시) •개방공간, 열린단지조성기준 준수 (위원회가 인정시) ※ 개방되는 부분은 결정도면에 표시(준공후에도 유지)
9	공개공지	•지역주민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공원·광장 형태 등으로 설치 •기준용적률 X (조성면적(의무면적 제외)/대지면적) X a ※ a=1이하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에 따른 설치기준 준수시/실내형 공개공지 포함

구 분		적용기준	
10	돌봄시설	•지역에 필요한 놀이·돌봄시설*설치 및 제공(무상임대)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제외)/주민공동시설면적(의무면적))×a ※ 국공립어린이집,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키움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실내어린이놀이터 등	5%p
11	방재안전	•화재·소방 피난 안전 등 공동주택 시설성능 개선 •기준 : 시설 성능을 의무기준 보다 초과 설치·개선하는 경우 관련 위원회 심의·자문을 통해 적용	5%p
12	지역기반시설정비	•사업구역 주변 환경정비(도로, 공원, 통학로등/주택단지와 직접 관련된 시설) •기준 : 기준용적률 X (환산부지면적*/대지면적) X a ※ a=1 이하 ※ 환산부지면적 : 정비비용/사업지 대지가액(서울시 기부채납 인센티브 운영기준 준용)	5%p 이내
13	지역특화	•감성디자인 등 정책사업, 지역 맞춤형 항목 신설 가능 •지역여건에 맞는 항목 및 산정방식 신설(위원회에서 인정시)	10%p 이내

※ 기준(허용) 용적률 170%, 200%, 230%를 적용하는 공동주택은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2022.11.)」에 따라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항목을 준용하여 허용용적률 20%[기준(허용)용적률 200%인 경우 10%]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단, 향후 관련계획 및 기준 변경시 변경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적용)

라.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높 이		비 고	코드구분
	기 준	최 고		
재건축단지 (아파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기준을 따름			RA-3, RA-(3)
기존 개발잔여지	-	5층 이하	단, 공동주택이 주용도로서 부지면적이 5,000㎡ 이상 또는 100(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150세대)세대 이상 (공동)개발시 또는 공동주택 통합개발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기준을 따름	RG-3
기존 중심시설	-	5층 이하		CG-3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 높이는 관련 법령에 따름
※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을 따름

(이 하 여 백)

7. 건축물 배치 · 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선 및 대지내 공지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 고
건축선	건축한계선	올림픽대로(한강변 굴곡부)		•올림픽대로 경계선 등으로부터 20m	조성위치는 결정도를 따름
		광역통경축	강남대로(한남대교)	•도로경계선 등으로부터 10m	
			논현로(동호대교)	•도로경계선 등으로부터 10m	
			언주로(성수대교)	•도로경계선 등으로부터 10m	
		지구통경축	압구정로11길, 39길	•도로경계선 등으로부터 10m	
			선릉로	•도로경계선 등으로부터 10m	
			압구정로~한강 연계도로	•도로경계선 등으로부터 10m	
			압구정로 61길	•도로경계선 등으로부터 5m	
		압구정로		•도로경계선 등으로부터 6m ※ 획지14(압구정동 520-524)는 획지의 크기를 고려하여 도로경계선 등으로부터 3m 지정	
		한강변 연접부(중로2-109, 완충녹지)		•도로·녹지경계선 등으로부터 6m	
		이면부		•도로·공원경계선 등으로부터 1~5m	
	벽면한계선	강남대로, 논현로, 언주로, 압구정로 61길		•통경축변 15층이상 건축물의 경우 벽면 후퇴(11층 이상부터 적용) - 건축한계선으로부터 3m	조성위치는 결정도를 따름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건축한계선 지정구간		• 도로의 보행공간과 일체화된 보행공간 조성(대지경계로부터 폭 3m 구간) • 한강변 굴곡부에 계획된 건축한계선 20m 구간 내 10m는 방음식재구간으로 조성 • 압구정로변으로 계획된 건축한계선 6m 구간에 대하여 대지 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에 생기는 전면공지는 보행공간(4m)과 조경공간으로 조성 - 조경공간 내에는 가로수, 벤치 등을 일체형으로 조화롭게 조성하여 가로정원으로 계획, 단 판매를 위한 시설물 설치 불허 • 가로활성화특화구간 내 전면공지는 가로형 조경으로 조성	조성위치는 결정도를 따름
	공공보행통로	공동주택용지		•폭 6m이상 및 24시간 개방 •공공보행통로 주변 부대복리시설 배치로 커뮤니티가로 조성	조성위치는 결정도를 따름
	근린광장(권장)	공동주택용지		•단지 중심부 보행동선이 교차되는 곳에 어린이놀이터, 근린광장 등 주민휴게시설 조성	조성위치는 결정도를 따르되 계획여건에 따라 조정가능
	생태녹지조성구간			• 소음 및 공해 방지, 녹지네트워크를 위해 선형 녹지공간 계획	조성위치는 결정도를 따름

※ 광역통경축 및 지구통경축에 해당하는 도로변의 건축한계선 및 벽면한계선은 공원 및 녹지시설 확보시 해당시설 폭원만큼 이격한 것으로 봄

나.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 고
배치 및 형태	공동 주택	RA-3 RA-(3)	• 광역통경축 또는 지구통경축변의 건축선(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및 배치의 경우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따름 • 건축물 배치 시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아파트단지 조성기준(2020.01, 서울시)에 따라 배치계획 수립 • 도로변은 프라이버시 보호 및 소음저감을 위한 공간 확보 • 공원 및 녹지 주변은 쾌적한 보행환경과 풍부한 녹지환경 조성 • 단지 내부 배치는 타워형, 판상형, 혼합형의 혼합 배치로 일률적인 판상 형태의 이미지 탈피 •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연출 및 개방감 있는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한강변 첫 주동은 중저층(15층~20층 이하)로 배치하고, 주변여건 및 공공기여 등을 고려하여 해당 범위 내에서 시(市)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완화범위 결정 • 주동 형태가 상이하더라도 통경축 확보를 위한 배치 고려 • 주거지로서의 차분한 분위기와 안정감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성하되, 미관적으로 단조롭지 않고 세련되게 연출 •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 및 기준 준용하여 계획 • 대지와 도로의 경계부에 담장 등의 설치를 지양하고 커뮤니티시설 및 열린 조경시설 등을 배치하여 생활가로를 조성하여 열린공간으로 계획	-
배치 및 형태	부대 및 복리 시설	RA-3, RA-(3)	• 가로활성화 특화구간 및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우선 배치 • 전면도로를 향하여 전면부 및 주출입구 계획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은 3층이하, 1층부 층고는 4m이상으로 계획 • 주택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 법정 면적의 1/3이상은 개방형 커뮤니티시설 확보	-
	특화 구간	수변부 건축물 디자인 특화구간	• 벽면 외관의 시각적 분절효과 등을 통해 다양하면서도 동질감 있는 건축물 외관 경관 창출 • 한강변 조망을 최대화하고 새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여 수변주거로서 상징성을 나타낼수 있는 주동배치 • 저층부(2층 이하) 부대 및 복리시설 등 공공개방커뮤니티시설 배치	
		가로 활성화 특화구간	• 벽면 외관의 시각적 분절효과 등을 통해 다양하면서도 동질감 있는 건축물 외관 경관 창출 • 저층부(2층 이하) 부대 및 복리시설, 근생시설 등 배치 • 저층부(2층 이하) 가로와의 개방성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외벽면 투시형 재료 사용 • 논현로변 특화디자인 등을 적용하여 가로활성화 도모(권장) • 압구정로변 저층부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하여 가로활성화 유도(권장)	
		중저층 배치구간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및 위압적 경관 완화를 유도하기 위해 중저층 배치(권장)	
		수변커뮤니티 배치구간	• 남·북방향의 공공보행통로와 한강변을 연결하는 입체보행교와 만나는 접점부에 수변 커뮤니티시설(개방형) 조성	
		디자인타워 배치구간	• 도심부 진입경관거점으로서 상징적인 디자인으로 주동계획	
기타 외관 요소	옥외설비	지구단위 계획구역 전체	• 에어컨 실외기가 외벽면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가능한 별도의 설치공간 계획	-
	담장의 설치		• 원칙적으로 금지, 필요시 높이 1m이하의 투시형 목책 또는 식재등의 마운딩 가능	-
	광고물 설치제한		• 판류형 간판 설치 금지하고 입체형으로 설치 • 건물 신축시 건판설치 및 교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간판게시틀 등의 입면디자인 도입	-

8.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특별계획구역 ①	압구정동 414일원	86,671.8	-	86,671.8	미성1차,2차APT
기정	특별계획구역 ②	압구정동 434일원	192,910.5	-	192,910.5	현대6,11,12차
기정	특별계획구역 ③	압구정동 369-1일원	397,815.7	-	397,815.7	현대1,2,3,4,5,6,7,10,13,14차APT, 현대빌라트,대림빌라트
기정	특별계획구역 ④	압구정동 481일원	118,859.6	-	118,859.6	현대8차, 한양3,4,6차 APT
기정	특별계획구역 ⑤	압구정동 490일원	78,989.6	-	78,989.6	한양1,2차APT
기정	특별계획구역 ⑥	압구정동 513일원	60,179.6	-	60,179.6	한양5,7,8차 APT
기정	특별계획구역 ⑦	압구정동 429일원	10,473.1	-	10,473.1	현대백화점
기정	특별계획구역 ⑧	압구정동 494일원	20,362.9	-	20,362.9	갤러리아백화점
기정	특별계획구역 ⑨	압구정동 518일원	2,986.2	-	2,986.2	기아자동차

나.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특별계획구역 1(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 2(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 3(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 4(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 5(변경)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기정	변경	
위 치		• 압구정동 490일원	• 압구정동 490일원	한양1,2차APT
구역면적		• 78,989.6㎡	• 78,989.6㎡	
용도지역 • 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 / 특화경관지구 / 아파트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 / 특화경관지구 / 아파트지구	
획지계획		• 획지 H2	• 획지 G2 : 58,951.9㎡	
기반시설계획		-	•도로 : 7,692.0㎡ •공원 : 8,565.7㎡ •녹지 : 3,780.0㎡	
공공시설 등 계획		• 한강변 공공시설 제공(순부담) 비율 : 10% 내외 원칙 • 도로 : 교통영향평가 결과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도로 설치 • 공원 및 녹지 :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원 및 녹지 설치 • 지역필요시설 등 기반시설은 세부개발계획(정비계획 등) 수립 시 결정(변경 및 신설)하고 합지적 세부개발계획(정비계획) 수립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기반시설 면적 등은 변경될 수 있음	•한강변 공공시설 제공(순부담) 비율 : 10% 내외 원칙	지침도에 따름
용도계획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 공동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부대 • 복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등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밀도계획	건폐율	• 50% 이하	• 50% 이하	
	용적률	• 기준(허용)용적률 : 230% 이하 • 상한용적률 : 300% 이하 ※ 본 지구단위계획 "3-3.-다. 허용용적률 의무사항" 준수	•기준(허용)용적률 : 230.00% 이하 •상한용적률 : 300.00% 이하	
	높이	•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기준을 따름	•최고높이 250m이하	
건축선 및 대지내 공지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선릉로(대로 3-71) 10m - 압구정로~한강 연계도로(중로1-10) 10m - 선릉로 189길변(중로2-109) : 6m - 이면부(이면도로) 6m	• 건축한계선 - 선릉로 189길변(중로2-109) : 6m - 선릉로(대로 3-71) 10m - 압구정로~한강 연계도로(중로1-10) 10m - 남측 이면부 6m	
	대지내 공지	• 전면공지, 공공보행통로, 근린광장(권장) : 본 지구단위계획 "3-4. 건축물 배치 • 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에 따름	• 공동주택 동측 출입구 완화차로 구간에 선릉로변 건축한계선(10m) 내 3m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조성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기정	변경		
건축물 배치 및 형태	배치 및 형태	• 공동주택, 부대 및 복리시설, 수변부건축물디자인 특화구간, 가로활성화 특화구간 : 본 지구단위계획 "3-4. 건축물 배치·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에 따름	가로 활성화 특화구간	• 선릉로, 중로1-10호선변 : 폭 20m - 근린생활시설 및 공공개방커뮤니티시설 등 설치 • 담장설치를 불허하고 일반이 이용가능하도록 상시 개방	지침도에 따름
			수변 디자인 특화구간	• 선릉로189길변 : 폭 30m - 한강변 첫 주동 : 20층 내외 - 소공원(데크공원) 및 연결녹지 등과 입체적으로 연결, 개방형 커뮤니티 등 다채로운 수변경관 계획 수립 • 담장설치를 불허하고 일반이 이용가능하도록 상시 개방	
	기타 외관요소	• 옥외설비, 담자의 설치, 광고물 설치제한 : 본 지구단위계획 "3-4. 건축물 배치·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에 따름	중저층 배치구간	•4,5구역 사이 중·저층배치	
교통처리계획		• 차량출입불허구간, 단지 내 주차 및 차량동선, 단지 내 보행동선 : 본 지구단위계획 "4-1.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에 따름	• 공동주택 진출입구 - 선릉로 189길 : 1개소, 선릉로 : 2개소, 서측(중로1-10) 도로 : 1개소 ※ 차량출입불허구간은 지침도에 따름 •학교가는길 - 압구정 초·중·고등학교 ~ 청담 초·중·고등학교를 연결하는 보행동선(학교가는길) 조성 - 24시간 일반이 이용가능하도록 상시 개방		지침도에 따름
기타에 관한 사항		• 세부개발계획 수립 방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매뉴얼(2023.03)」 3-7-2 "특별계획구역 정의" 를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현상설계 등에 의한 창의적 개발안을 적극 권장 • 인구 및 주택수용에 관한 사항 - 공공주택을 확보할 경우 1~2인 가구 증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규모로 맞춤형 주거유형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 - 분양 및 공공주택은 내·외부 마감재 품질 등 사전협의 및 건축심의 시 동일수준 건축기준을 적용하고, 동일조건으로 동호수추첨 배정하여 계층 혼합 - 인구 및 주택계획의 적정성,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구체적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반영	•세부개발계획 수립 방식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매뉴얼(2023.03)」 3-7-2 "특별계획구역 정의" 를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현상설계 등에 의한 창의적 개발안을 적극 권장 •인구 및 주택수용에 관한 사항 - 공공주택을 확보할 경우 1~2인 가구 증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규모로 맞춤형 주거유형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 - 분양 및 공공주택은 내·외부 마감재 품질 등 사전협의 및 건축심의 시 동일수준 건축기준을 적용하고, 동일조건으로 동호수추첨 배정하여 계층 혼합 - 인구 및 주택계획의 적정성,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구체적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반영		

※ 「서울시 정비지원 신속통합기획(서울특별시)」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계획구역 지침에도 불구하고 신속통합기획(안) 우선 적용
※ 상한용적률은 향후 변화된 구역여건을 반영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완화항목 및 인센티브를 확인하여 심의를 통하여 수립 및 결정
※ 건축물 용도계획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및 「주택법」 개정시 개정된 내용 적용

■ 특별계획구역 6(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 7(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 8(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 9(변경없음)

9.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가.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구 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 고
교통처리	차량출입 불허구간	간선도로변 및 교차로 가각부 일원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내에서는 대지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 차량 출입구간 적용(철거 후 신축 시 적용)	지정위치는 결정도를 따름
	단지내 주차 및 차량동선	공동주택 (RA-3, RA-(3))	•비상차량을 제외한 단지내 지상주차를 금지 •단지내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지양하고 가급적 보도와 같은 형태의 재료 및 형태로 조성 •단지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단지 내 보행동선	공동주택 (RA-3, RA-(3))	•학교 · 공원 등 보행다발 시설과 연계되는 곳에 단지 내 보행자도로를 조성 •보행자도로는 인접단지의 보행자도로와 연계하여 조성 •보행축상에 조경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설치	

※ 기존 건축물의 경우 현 차량진출입을 허용하며, 신축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계획지침 적용

10.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계획의 입안) 제4항 제9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처리 등)의 규정에 의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지의 분할, 교환에 관한 사항(필지분할가능선, 필지교환가능선 포함)(획지는 제외)
2. 자율적 공동개발, 단, 일반필지 공동개발에 따라 대지규모가 3,000㎡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재건축 구역과 공동개발에 따라 재건축구역(공동개발하려는 필지 중 가장 큰 필지)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예외
3. 공개공지, 전면공지 등 대지안의 공지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
4. 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5. 대지내 통로(공공보행통로)의 성격, 설치계획(위치변경 및 신규설치에 한함)의 변경
6. 법령이나 지침의 재 · 개정에 따라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시행지침의 변경
7. 교통영향평가서 심의를 거쳐 차량 출입구가 변경되는 경우, 이에 따른 차량출입 불허구간의 변경

Ⅳ. 특별계획구역 5 세부개발계획 결정

1.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특별계획구역 5	강남구 압구정동 490번지 일원	78,989.6	-	78,989.6	-

2.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78,989.6	-	78,989.6	100.0	-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70,735.3	-	70,735.3	89.5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8,254.3	-	8,254.3	10.5	-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 적(㎡)	폭원(m)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아파트지구	-	압구정동	836,456.5	-	건고제1979-131호 (1971.08.21.)	압구정지구
기정	경관지구	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	한남IC- 청담사거리	50,016	편측 18	서고제2019-129호 (2019.04.17.)	압구정로

3.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계획(변경)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09	11~29.5 (20~22)	국지 도로	4,100 (333)	신사동	영동교	일반 도로	서고 제198호 (1971.4.7)	중복결정: 유수지①, 대로3-A, 소로1-A 소공원B,C, 광로2-18, 중로1-C
변경	중로	2	109	11~29.5 (20)	국지 도로	4,100 (333)	신사동	영동교	일반 도로	서고 제198호 (1971.4.7)	중복결정: (2구역) 유수지①, 대로3-A, 소로1-A (4구역) 소공원B,C, 광로2-18, 중로1-C, (5구역) 소공원 B,C
폐지	중로	3	11	12	국지 도로	213	압구정489	대로3-71	일반 도로	서고제2023-517호 (2023.11.23.)	구역내 폐지
기정	중로	3	12	12	국지 도로	81	대로2-28	중로3-11	일반 도로	서고제2023-517호 (2023.11.23.)	구역내 폐지
변경	중로	3	12	12	국지 도로	67	대로2-28	압구정490	일반 도로	서고제2023-517호 (2023.11.23.)	

※ ( )는 정비구역 내 수치임.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109	중로2-109	•구역내(5구역) 폭원 및 선형 조정 : B=20m, L=333m	• 정비계획(5구역) 수립에 따른 효율적 교통처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로 폭원 및 선형 조정
중로3-11	-	•폐지	• 정비계획(5구역) 수립에 따른 구역내 도로폐지
중로3-12	중로3-12	•도로 연장 변경 : B=12m, L=81m → 67m	• 정비계획(5구역) 수립에 따른 구역내 도로폐지

나.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③	녹지	완충녹지	압구정동 497	8,181.3	감) 8,181.3	-	-	
신설	A	녹지	연결녹지	압구정동 497	-	증) 3,780.0	3,780.0	-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③	완충녹지	•폐지	•압구정지구 순환 산책로 조성을 위해 완충녹지 폐지
A	연결녹지	•녹지 신설 - 면적 3,780.0㎡	•압구정지구 순환 산책로 조성을 위해 연결녹지 신설

다.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A	공원	소공원	압구정동 493번지	-	증)4,167.0	4,167.0	-	
신설	B	공원	소공원	압구정동 497번지	-	증)3,571.7	3,571.7 (1,327.3)	-	( )는 중로2-109 중복결정
신설	C	공원	소공원	압구정동 497번지	-	증)3,689.3	3,689.3 (1,535.0)	-	

※ ( )는 도로 중복결정 데크공원 조성 면적임.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소공원	•공원 신설 - 면적 4,167.0㎡	• 대상지 내 수변 인접부에 주민 휴식 · 휴게공간을 위한 소공원 신설
B	소공원	•공원 신설 - 면적 3,571.7㎡(1,327.3㎡)	• 한강접근시설과 연계하여 접점부위 데크공원을 조성 휴게 · 휴식 · 조망 공간 형성
C	소공원	•공원 신설 - 면적 3,689.3㎡(1,535.0㎡)	• 한강접근시설과 연계하여 접점부위 데크공원을 조성 휴게 · 휴식 · 조망 공간 형성

라.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①	공공공지	-	압구정동 490일원	693.0	감)693.0	-	서고제2023-517호 (2023.11.23.)	-

■ 공공공지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폐지	①	공공공지	공공공지 폐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공공공지 폐지

4.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가구번호 (토면번호)	위치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변경후	
G	압구정동 481 일원	178,686.6	-	178,686.6	• 특별계획구역 4,5,8

2) 획지 결정(변경)조서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도면번호)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G	G1	압구정동 481일원	88,457.2	-	88,457.2	특별계획구역 4 (현대8차, 한양4,6차 APT)
	G2	압구정동 490일원	55,395.0	증) 3,556.9	58,951.9	특별계획구역 5 (한양 1,2차 APT)
	G3	압구정동 494일원	10,203.4	-	10,203.4	특별계획구역 8 (갤러리아백화점)

■ 획지 결정(변경)사유서

가구번호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변경후	
G2	55,359.0	증) 3,556.9	58,951.9	• 정비계획(5구역) 수립에 따른 획지계획 변경

나.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 5	세부개발계획	비 고
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좌동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등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좌동	

다. 건축물 밀도에 관한 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 5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밀도계획	건폐율	• 50% 이하	• 5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 230.00% 이하 •상한용적률 : 300.00% 이하	•기준용적률 : 230.00% 이하(허용용적률 20% 상응 인센티브 의무) •상한용적률 : 263.23% 이하 •법적상한용적률 : 300.00% 이하	
	높이	•최고높이 250m이하	•최고높이 250m이하(랜드마크 1개동에 한함) ※ 그 외 주동은 200m 이하(50층 이하)	

라. 건축선 및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 5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건축선 및 대지내 공지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선릉로 189길변(중로2-109) : 6m, 선릉로(대로3-71) 10m, 압구정로~한강 연계도로(중로1-10) 10m, 남측 이면부 6m	좌동	
	대지내 공지	• 공동주택 동측 출입구 완화차로 구간에 선릉로변 건축한계선(10m) 내 3m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조성(구분지상권 설정)	좌동	

마. 건축물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 5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건축물 배치 및 형태	가로 활성화 특화구간	• 선릉로, 중로1-10호선변 : 폭 20m - 근린생활시설 및 공공개방커뮤니티시설 등 설치 • 담장설치를 불허하고 일반이 이용가능하도록 상시 개방	좌동	
	수변 디자인 특화구간	• 선릉로189길변 : 폭 30m - 한강변 첫 주동 : 20층 내외 - 소공원(데크공원) 및 연결녹지 등과 입체적으로 연결, 개방형 커뮤니티 등 다채로운 수변경관 계획 수립 • 담장설치를 불허하고 일반이 이용가능하도록 상시 개방	좌동	
	중저층 배치구간	•4,5구역 사이 중·저층배치	좌동	

바.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 5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교통처리계획	• 공동주택 진출입구 - 선릉로 189길 : 1개소, 선릉로 : 2개소, 서측(중로1-10) 도로 : 1개소 ※ 차량출입불허구간은 지침도에 따름 •학교가는길 - 압구정 초·중·고등학교 ~ 청담 초·중·고등학교를 연결하는 보행동선(학교가는길) 조성 - 24시간 일반이 이용가능하도록 상시 개방	좌동	

사.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 5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기타에 관한 사항	•세부개발계획 수립 방식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매뉴얼(2023.03)」 3-7-2 “특별계획구역 정의”를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현상설계 등에 의한 창의적 개발안을 적극 권장 •인구 및 주택수용에 관한 사항 – 공공주택을 확보할 경우 1~2인 가구 증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규모로 맞춤형 주거유형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 – 분양 및 공공주택은 내·외부 마감재 품질 등 사전협의 및 건축심의 시 동일수준 건축기준을 적용하고, 동일조건으로 동호수추첨 배정하여 계층 혼합 – 인구 및 주택계획의 적정성,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구체적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반영부개발계획 수립시 반영	좌동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세부개발계획 결정조서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위 치		▪압구정동 490일원	좌동	-
구역면적		▪78,989.6㎡	좌동	-
용도지역▪지구		▪제3종일반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 / 특화경관지구 / 아파트지구	좌동	-
획지계획		▪획지 G2 : 58,951.9㎡	좌동	-
기반시설계획		•도로 : 7,692.0㎡ •공원 : 8,565.7㎡ •녹지 : 3,780.0㎡	좌동	
공공시설 등 계획		•한강변 공공시설 제공(순부담) 비율 : 10% 내외 원칙	•한강변 공공시설 제공(순부담) 비율 : 10% 내외 원칙 - 순부담 : 6,829.6㎡(10.48%)	-
용도계획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좌동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등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좌동	-
밀도계획	건폐율	▪50% 이하	좌동	-
	용적률	•기준용적률 : 230.00% 이하 •상한용적률 : 300.00% 이하	•기준용적률 : 230.00% 이하(허용용적률 20% 상응 인센티브 의무) •상한용적률 : 263.23% 이하 •법적상한용적률 : 300.00% 이하	-
	높이	•최고높이 250m이하	•최고높이 250m이하(랜드마크 1개동에 한함) ※ 그 외 주동은 200m 이하(50층 이하)	-
건축선 및 대지내 공지	건축선	▪건축한계선 - 선릉로 189길변(중로2-109) : 6m, 선릉로(대로 3-71) 10m, 압구정로~한강 연계도로(중로1-10) 10m, 남측 이면부 6m	좌동	-
	대지내 공지	▪공동주택 동측 출입구 완화차로 구간에 선릉로변 건축한계선(10m) 내 3m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조성	좌동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건축물 배치 및 형태	가로 활성화 특화구간	• 선릉로, 중로1-10호선변 : 폭 20m - 근린생활시설 및 공공개방커뮤니티시설 등 설치 • 담장설치를 불허하고 일반이 이용가능하도록 상시 개방	좌동	-
	수변 디자인 특화구간	• 선릉로189길변 : 폭 30m - 한강변 첫 주동 : 20층 내외 - 소공원(데크공원) 및 연결녹지 등과 입체적으로 연결, 개방형 커뮤니티 등 다채로운 수변경관 계획 수립 • 담장설치를 불허하고 일반이 이용가능하도록 상시 개방	좌동	-
	중저층 배치구간	•4,5구역 사이 중·저층배치	좌동	-
교통처리계획		• 공동주택 진출입구 - 선릉로 189길 : 1개소, 선릉로 : 2개소, 서측(중로1-10)도로 : 1개소 ※ 차량출입불허구간은 지침도에 따름 •학교가는길 - 압구정 초·중·고등학교 ~ 청담 초·중·고등학교를 연결하는 보행동선(학교가는길) 조성 - 24시간 일반이 이용가능하도록 상시 개방	좌동	-
기타에 관한 사항		•세부개발계획 수립 방식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매뉴얼(2023.03)」 3-7-2 “특별계획구역 정의”를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현상설계 등에 의한 창의적 개발안을 적극 권장 •인구 및 주택수용에 관한 사항 - 공공주택을 확보할 경우 1~2인 가구 증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규모로 맞춤형 주거유형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 - 분양 및 공공주택은 내·외부 마감재 품질 등 사전협의 및 건축심의 시 동일수준 건축기준을 적용하고, 동일조건으로 동호수추첨 배정하여 계층 혼합 - 인구 및 주택계획의 적정성,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구체적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반영부개발계획 수립시 반영	좌동	-

□ 2025년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table>
<tr><th>연 번</th><th>심의의견</th><th>조치계획</th><th>반영여부</th></tr>
<tr><td rowspan="2">1</td><td>[수정사항]</td><td></td><td></td></tr>
<tr><td>• 높이 계획, 건축한계선, 공공기여 계획 및 순부담 면적은 구청장 수정가결 요청(안) 반영</td><td>• 압구정5구역 제2025-1호(2025.1.3) 조합요청으로 수정요청함.
(최고높이 290m 이하 → 250m 이하)
<table>
<tr><th>구분</th><th>수정사항</th><th>조치계획</th><th>비고</th></tr>
<tr><td>높이</td><td>250m</td><td>250m</td><td rowspan="3"></td></tr>
<tr><td>건축
한계선</td><td>- 북측 압구정지구
순환도로: 6m
(데크공원 연결 부분
삭제)
-동측 선릉로변 : 10m
-서측 중로 1-10 : 10m
-남측부 : 6m</td><td>- 북측 압구정지구
순환도로: 6m
(데크공원 연결 부분
삭제)
-동측 선릉로변 : 10m
-서측 중로 1-10 : 10m
-남측부 : 6m</td></tr>
<tr><td>공공기여
(순부담)</td><td>6,829.6㎡</td><td>6,829.6㎡</td></tr>
</table></td><td>반 영</td></tr>
<tr><td>2</td><td>• 랜드마크타워 높이는 특화설계를 전제로 250m 이하 1개동으로 결정하고, 그 외동은 50층 이하, 200m 이하로 할것(한강변 첫 주동은 20층 이하)</td><td>• 최고높이 250m 이하(랜드마크 1개동에 한함)
※ 그 외 주동은 200m 이하(50층 이하),
한강변 첫 주동은 20층 이하</td><td>반 영</td></tr>
<tr><td rowspan="2">3</td><td>[조건사항]</td><td></td><td></td></tr>
<tr><td>• 대지 중 데크공원 접근로 일부만 성토 처리</td><td>• 데크공원으로 접근되는 접근로 일부(소공원 등)만 성토 유지하였음
※ 심의계획안과 동일</td><td>반 영</td></tr>
<tr><td>4</td><td>• 대상지 동측 선릉로는 건축한계선 계획 등과 연계하여 1개 차선 추가 확보</td><td>• 대상지 동측 선릉로에 1개 차선 추가 확보하고 건축한계선에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를 설치함</td><td>반 영</td></tr>
<tr><td>5</td><td>• 데크공원은 교통안전(시거확보 등)을 위해 가능한 한 양측 교차로변에서 이격시키고, 가각부에 시설물(E.V., 관리사무소 등) 배치는 지양할 것</td><td>• 데크공원은 교통안전을 위해 양측 교차로변에서 5m 이격하였고, 가각부에는 최대한 시설물은 배치하지 않음</td><td>반 영</td></tr>
</table>

Ⅴ. 관계도면 : 붙임참조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관련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Ⅵ. 정비계획 수립 도서 :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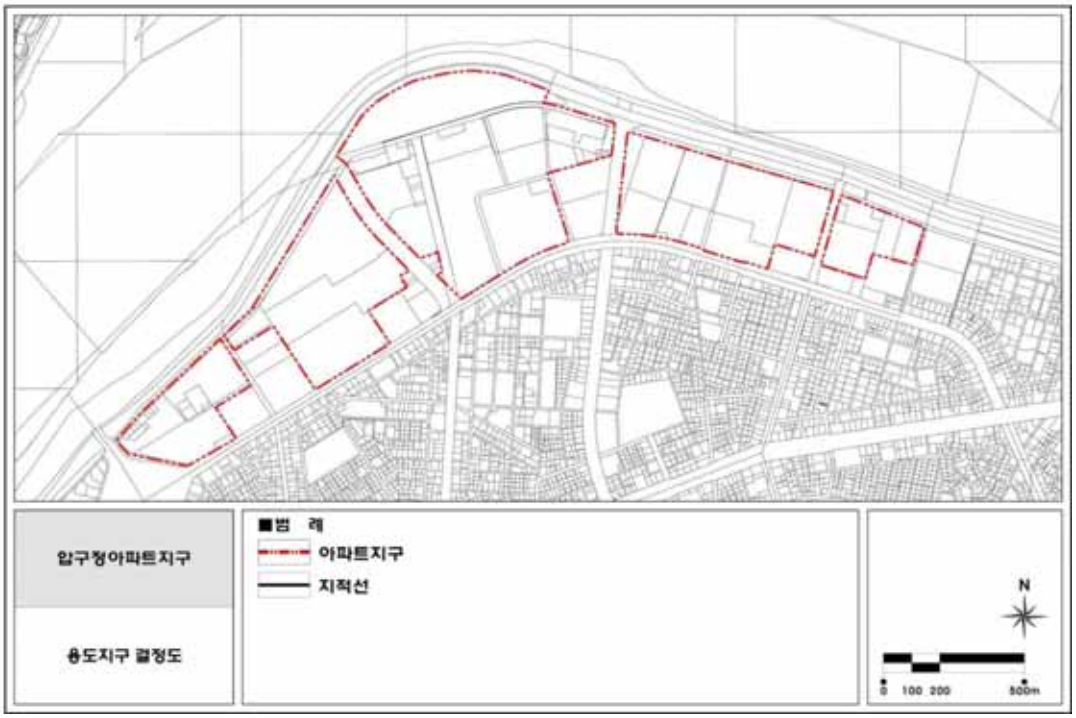
Ⅶ. 열람장소

※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147) 및 강남구 재건축사업과(☎02-3423-6063)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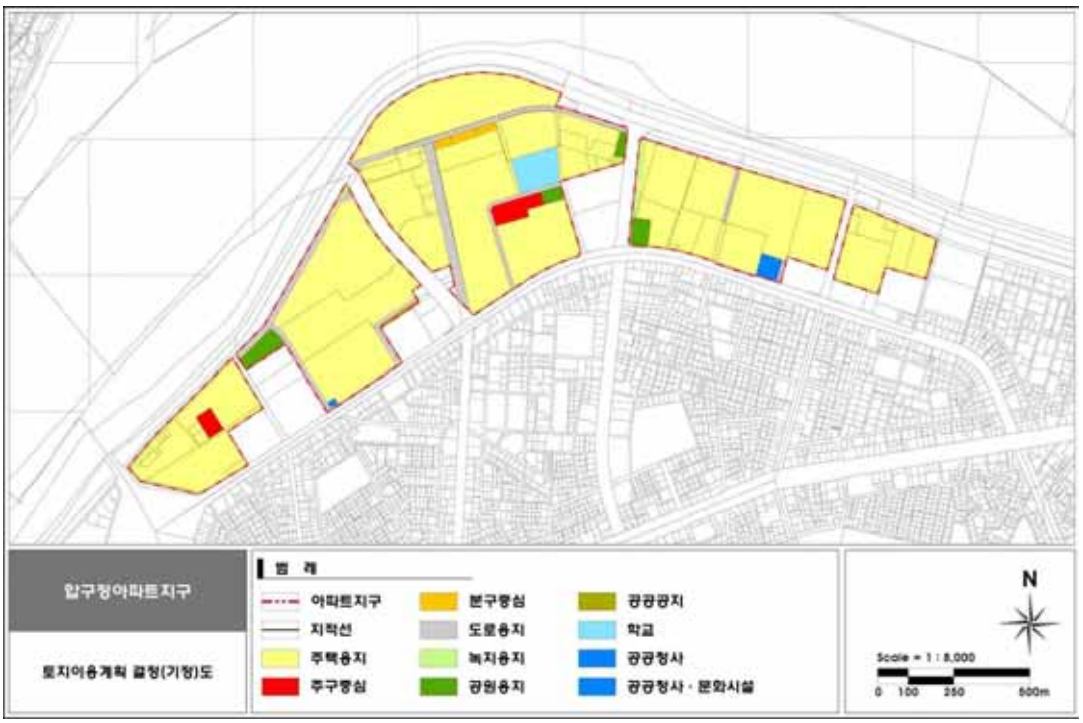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압구정 아파트지구 용도지구(아파트지구) 결정도(변경없음)



■ 압구정 아파트지구 토지이용계획 결정(기정)도



■ 압구정 아파트지구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도



■ 압구정 아파트지구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변경없음)



■ 압구정 아파트지구 도시계획시설결정(기정)도



■ 압구정 아파트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정비구역 결정(기정)도



■ 정비구역 결정(변경)도



■ 용도지역·지구 결정(기정)도



■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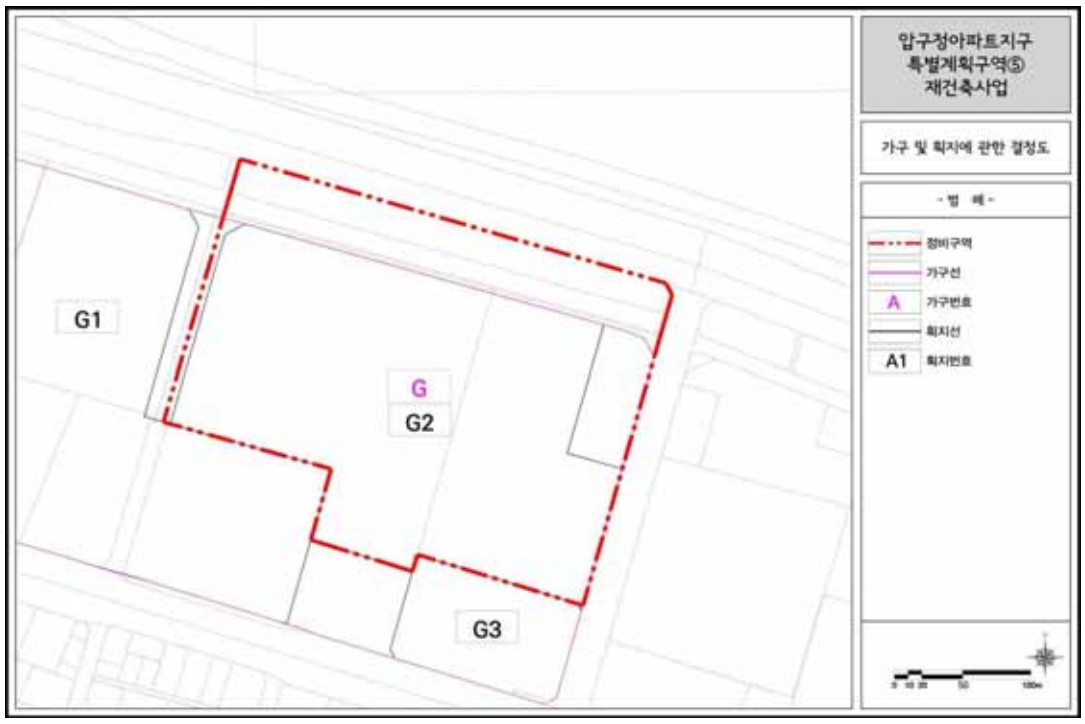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결정도



■ 정비계획 결정도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⑤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도
- 범 례 -
G2
대로(보) 3 - 71
대로(보) 2 - 28
중로(국) 2 - 109
중로(국) 1 - 10
중로(국) 3 - 11
중로(국) 3 - 12
중로(국) 3 - 13
SCALE=1: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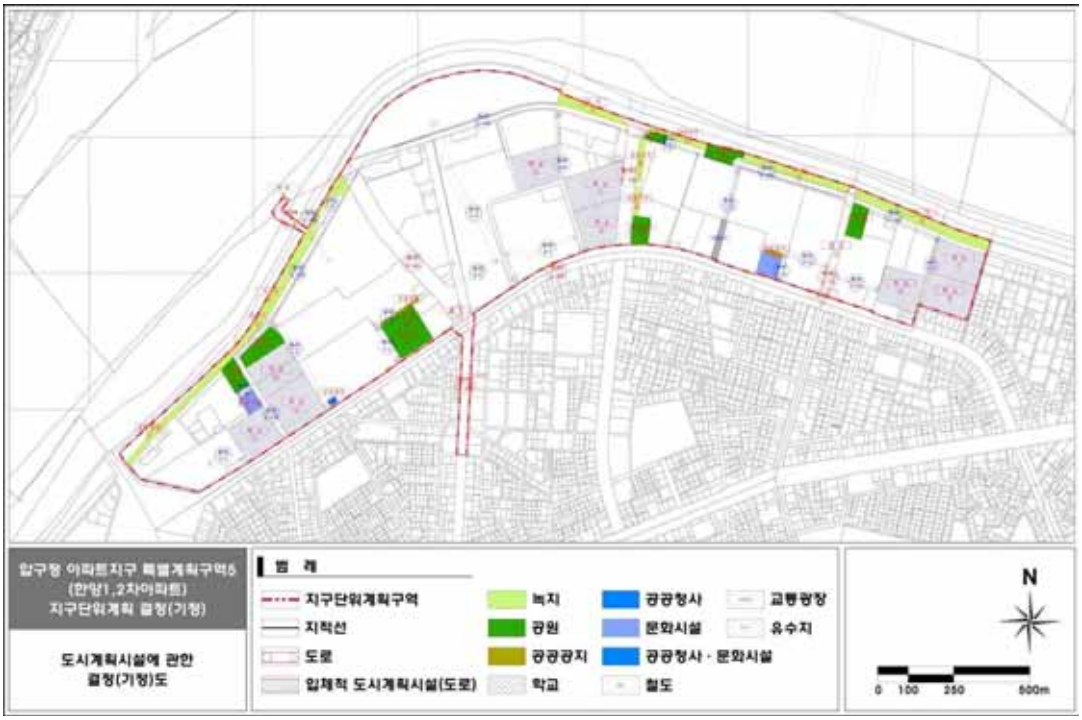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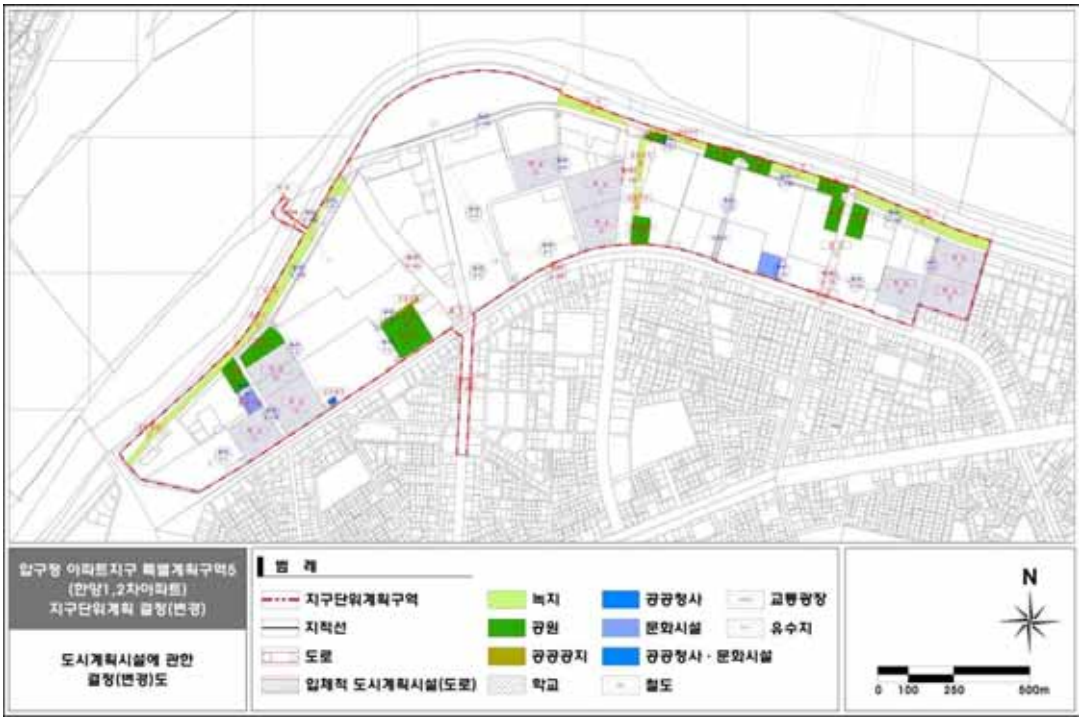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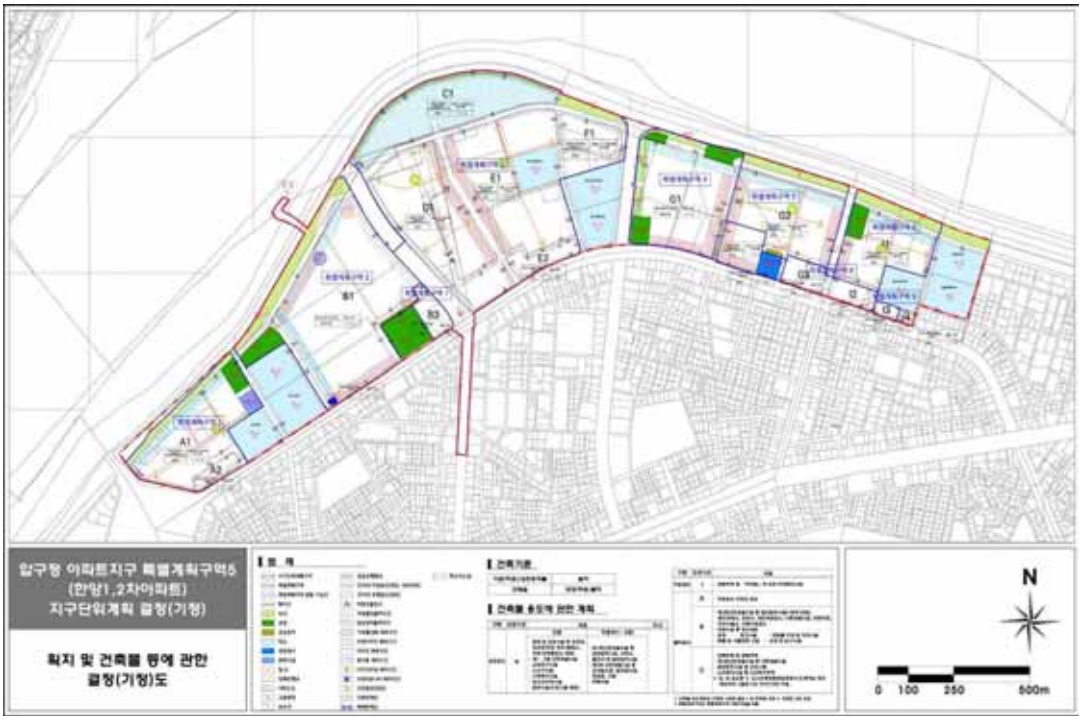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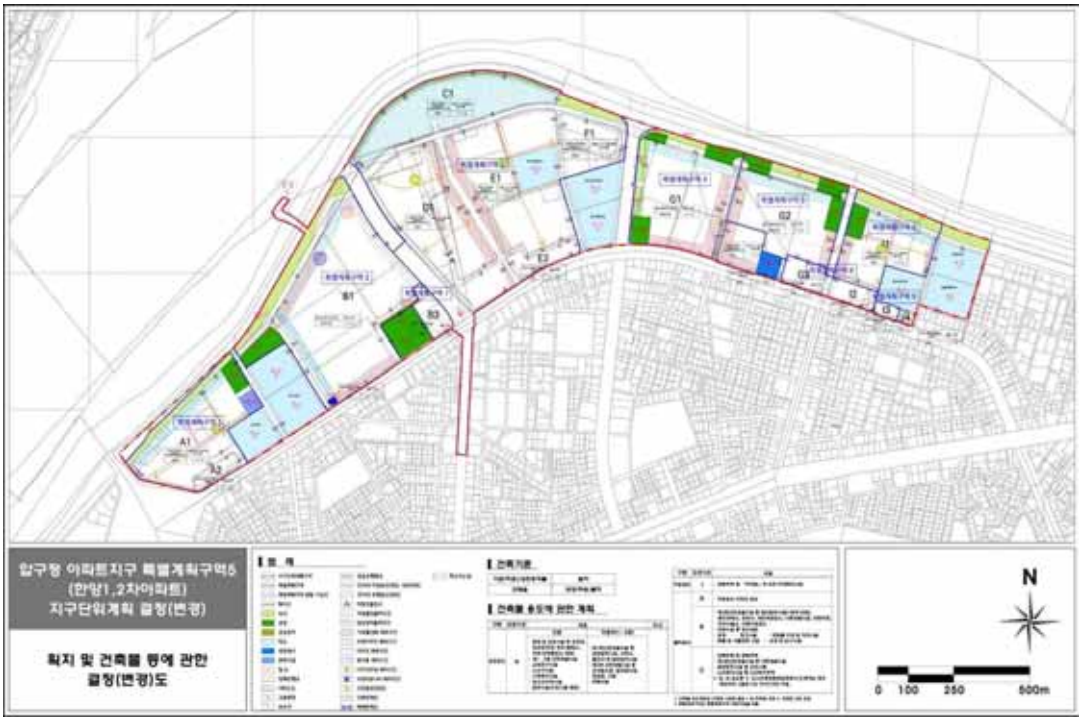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558호

도시관리계획[대림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BYC) 세부개발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328호(1996.12.4.)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되고, 제2000-310호(2000.11.6.) 및 제2020-288호(2020.7.9.), 제2024-529호(2024.11.7.), 영등포구고시 제2025-108호(2025.06.19)로 결정된 대림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BYC)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대림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BYC) 세부개발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대림동 일대의 도시가치와 도시안전이 증진되는 거점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림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BYC)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고자 함

Ⅱ.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대림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영등포구 대림동 1104-1 일대	49,560.5	-	49,560.5	2000.11.06. (서고 제2000-310호)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기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개공지	구역내 5개소(위치지정) ※ 특별계획구역은 해당 별도지침준수	• BYC특별계획구역 공개공지 위치변경(도면참조)
쌈지형공지	구역내 4개소	-

■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개공지	구역내 4개소(위치지정) ※ 특별계획구역은 해당 별도지침준수	• BYC특별계획구역 공개공지 위치변경(도면참조)
쌈지형공지	구역내 4개소	-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개공지	•BYC특별계획구역 공개공지 폐지 및 변경	• 건축심의 의견 반영에 따른 BYC특별계획구역 내 공개공지 계획 변경

4. 인센티브 운영계획(변경없음)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특별계획구역	대림동 1104-1 일대	16,358.5	최초결정일 2000.11.06. (서고 제2000-310호)

■ 계획기준(기정)

구분		계획기준		비고
위치		• 대림동 1104-1 일대		
토지이용		• 광역중심지 기능수행을 위한 상업 · 업무 복합개발		
용도지역 · 지구계획		•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구 및 획지	가구	• 가구(V)	• 16,358.5㎡(BYC부지)	
건축물 밀도	건폐율	일반상업/준주거지역	• 60% 이하	
	용적률	일반상업지역	• 기준/허용/상한 : 300% 이하 / 630% 이하 / 조례용적률 2배 이하	
		준주거지역	• 기준/허용/상한 : 300% 이하 / 360% 이하 / 조례용적률 2배 이하	
최고높이		• 일반상업지역 : 120m 이하 (완화높이 : 144m 이하 적용) • 준주거지역 : 60m 이하		완화높이적용 (공공시설등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 용적률과 중복 적용)
건축물 용도	불허용도	전층	• 해당 용도지역 내 불허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및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 위락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단, 주차장 제외) • 장례식장	
	권장용도	전층	• 판매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1층	• 판매시설 중 상점	
건축물 배치	건축 한계선	• 도림천변 : 5m(차도 부속형 전면공지 1~3m) / 구역 서측 : 3m(일부구간 차도 부속형 전면공지1m) / 구역 동측 : 6m(보도 부속형 전면공지 3m)		
공공시설 확보계획	공공기여 계획	• 도로 및 건축물 공공기여 ⇒ 대지면적의 26% 이상 - 도로 : 중로2-1(B=14~15m), 중로3-1(B=12m), 소로1-1(B=10m), 소로1-A(B=4~10m), 소로3-A(B=6m) - 공원(1,129㎡) - 방수설비 부지(2,143㎡ : 방수설비부지 656㎡, 중복결정_도로 358㎡/소공원 1,129㎡) •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계획(2015.08.25.)」에 따라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영등포구 및 서울시 통합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공공기여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조성계획 및 도입용도 등을 결정하도록 한다.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로계획에 대한 교통량조사 및 교통계획 수립을 통해 공공기여의 적정성을 검토 ※ 공공기여량 산정(연면적 등)은 세부개발계획 시점에 재산정하고, 건축허가 시점에 확정됨

구분	계획기준	비고
기타 계획지침	• 공개공지 : 3개소(대지면적의 10% 이상 확보, 「건축법」에 따른 의무면적 포함) ① 서측 교차로 주변 ② 입체보행통로 주변 ③ 소공원 주변 • 공공보행통로(지정) : 2개소 ① 구역 내 동서 방향(6m~6.3m) ② 구역 내 남북 방향(6m) ※ 공공보행통로의 위치는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심의를 통하여 조정 가능하며 필로티형으로 할 경우 높이 6m 이상으로 할 것 • 입체보행통로(지정) : 1개소(구로디지털단지 ↔ BYC 연결)	※ 공개공지는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설치 ※입체보행통로는 공공보행통로와 연결되도록 설치

■ 용적률 완화항목 및 내용(변경없음) : 변경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및 상한 용적률을 따름

■ 계획기준(변경)

구분		계획기준		비고
위치		• 대림동 1104-1 일대		
토지이용		• 광역중심지 기능수행을 위한 상업 · 업무 복합개발		
용도지역 · 지구계획		•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구 및 획지	가구	• 가구(V)	• 16,358.5㎡(BYC부지)	
건축물 밀도	건폐율	일반상업/준주거지역	• 60% 이하	
	용적률	일반상업지역	• 기준/허용/상한 : 300% 이하 / 630% 이하 / 조례용적률 2배 이하	
		준주거지역	• 기준/허용/상한 : 300% 이하 / 360% 이하 / 조례용적률 2배 이하	
최고높이		• 일반상업지역 : 120m 이하 (완화높이 : 144m 이하 적용) • 준주거지역 : 60m 이하		완화높이 적용 (공공시설등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 용적률과 중복 적용)
건축물 용도	불허용도	전층	• 해당 용도지역 내 불허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및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 위락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단, 주차장 제외) • 장례식장	
	권장용도	전층	• 판매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1층	• 판매시설 중 상점	
건축물 배치	건축 한계선	• 도림천변 : 5m(차도 부속형 전면공지 1~3m) / 구역 서측 : 3m(일부간 차도 부속형 전면공지1m) / 구역 동측 : 6m(보도 부속형 전면공지 3m)		

구분		계획기준	비고
공공시설 확보계획	공공기여 계획	• 도로 및 건축물 공공기여 ⇒ 대지면적의 26% 이상 - 도로 : 중로2-1(B=14~15m), 중로3-1(B=12m), 소로1-1(B=10m), 소로1-A(B=4~10m), 소로3-A(B=6m) - 공원(1,129㎡) - 방수설비 부지(2,143㎡ : 방수설비부지 656㎡, 중복결정_도로 358㎡/소공원 1,129㎡) •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계획(2015.08.25.)」에 따라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영등포구 및 서울시 통합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공공기여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조성계획 및 도입용도 등을 결정하도록 한다.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로 계획에 대한 교통량조사 및 교통계획 수립을 통해 공공기여의 적정성을 검토 ※ 공공기여량 산정(연면적 등)은 세부개발계획 시점에 재산정하고, 건축허가 시점에 확정됨
기타 계획지침		• 공개공지 : 2개소(대지면적의 10% 이상 확보, 「건축법」에 따른 의무면적 포함) ① 서측 공공보행통로 주변 ② 입체보행통로 주변 • 공공보행통로(지정) : 2개소 ① 구역 내 동서 방향(6m~6.3m) ② 구역 내 남북 방향(6m) ※ 공공보행통로의 위치는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심의를 통하여 조정 가능하며 필로티형으로 할 경우 높이 6m 이상으로 할 것 • 입체보행통로(지정) : 1개소(구로디지털단지 ↔ BYC 연결)	※ 공개공지는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설치 ※입체보행통로는 공공보행통로와 연결되도록 설치

■ 용적률 완화항목 및 내용(변경없음) : 변경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및 상한 용적률을 따름

4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Ⅲ. 특별계획구역(BYC)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조서

1 특별계획구역(BYC)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기정	변경		
공개 공지	• 3개소(대지면적의 10% 이상 확보, 「건축법」에 따른 의무면적 포함) ① 서측 교차로 주변 ② 입체보행통로 주변 ③ 소공원 주변	• 2개소(대지면적의 10% 이상 확보, 「건축법」에 따른 의무면적 포함) ① 서측 공공보행통로 주변 ② 입체보행통로 주변	좌동	-

(2) 차량출입 및 보행동선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3) 공공기여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라. 인센티브 운영계획(특별계획구역)
(1) 계획유도 인센티브(70%이내)
■ 용적률 인센티브 유형 : A(일반상업지역)

구분	계획내용
위치특성	• 일반상업지역 ※특별계획구역(BYC) 공통 적용
기준/허용용적률	• 일반상업지역(300%이하 / 630%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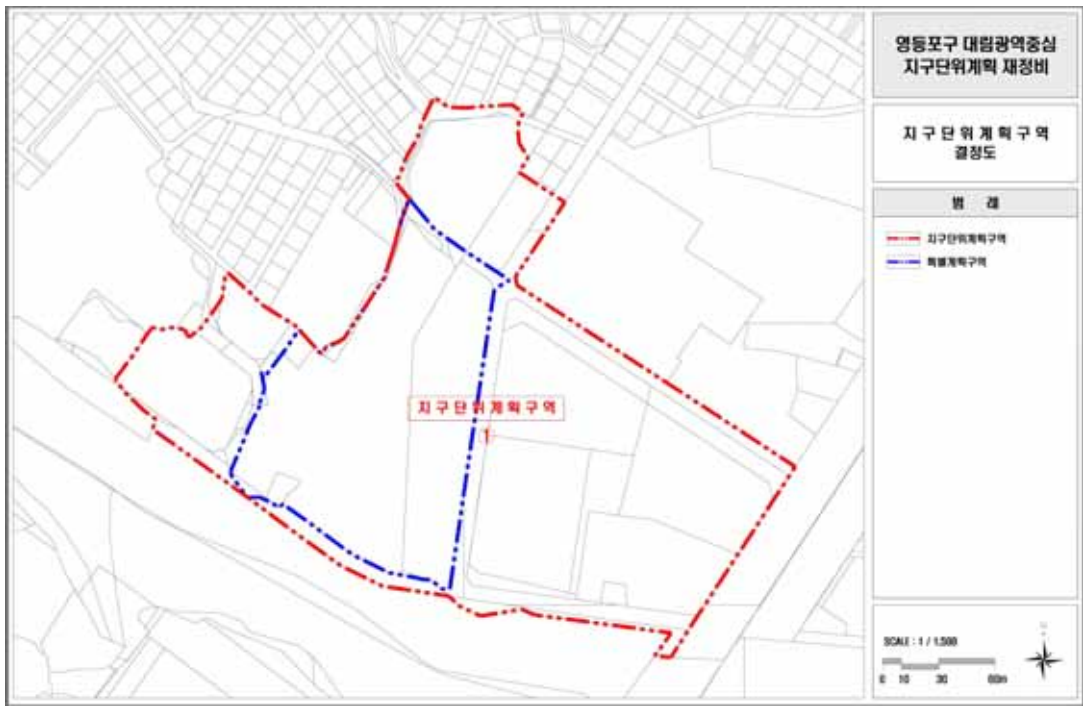
구분			완화조건	완화내용	비고
계획유도 인센티브 (70%이내)	획지계획		획지단위 개발시	기준용적률 X 0.2	60%적용
	권장용도	전층	50% 이상 설치시 (주차장 제외)	(권장용도 면적 ÷ 건축연면적) X 기준용적률	
		1층	1층 벽면길이 및 바닥면적의 1/2이상 설치시	기준용적률 X 0.2 이내	
	공개공지		설치시	(설치면적 - 의무면적)÷ 대지면적 X 기준용적률 X 0.4 ※「건축법」에 따른 의무면적 초과시	쌈지형공지 포함
	건축선		건축한계선 및 벽면선이 지정되어 조성지침에 따라 조성하는 경우로 의무면적 초과시 (공공보행통로와 중복결정 불가)	(조성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X 기준용적률 X 0.4	
	공공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 조성시	조성면적 / 대지면적 X 기준용적률 ※ 필로티구조시 : 조성면적/대지면적 X 기준용적률 X 0.7	18.00%p → 17.00%p 적용
	입체보행통로		입체보행통로 조성시	기준용적률 X 0.6이내	180%p 적용 ※ 특별계획구역 (BYC)은 지하철 출입구와 직접 연결되는 데크 조성 시
	보행개선		가로지장물 지중화 또는 이전 설치시	기준용적률 X 0.2이내	
	건축물 개방		입체보행통로와 연계한 건축물내 공익시설 설치시	제공면적/ 연면적 X 기준용적률 X 0.5	

■ 용적률 인센티브 유형 : B (준주거지역) (변경없음)
■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전체 인센티브의 30% 이상) - 공통사항(변경없음)

Ⅲ. 관계도면 : 붙임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에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89) 및 영등포구 도시계획과(☎02-2670-3533)에 관련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고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 (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기시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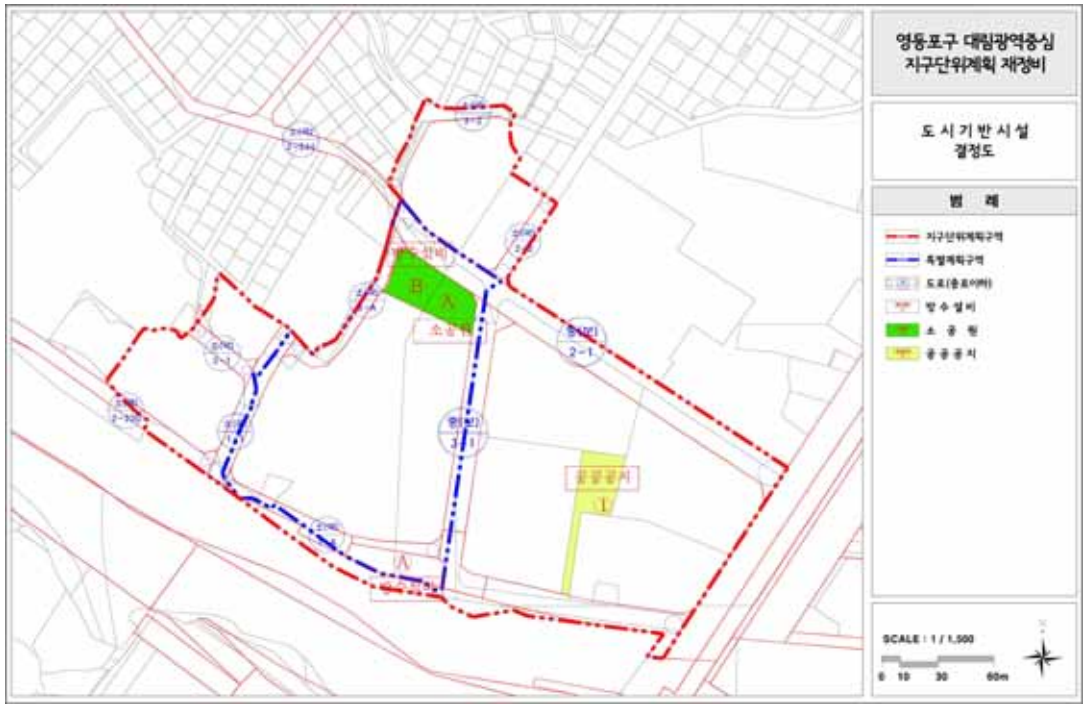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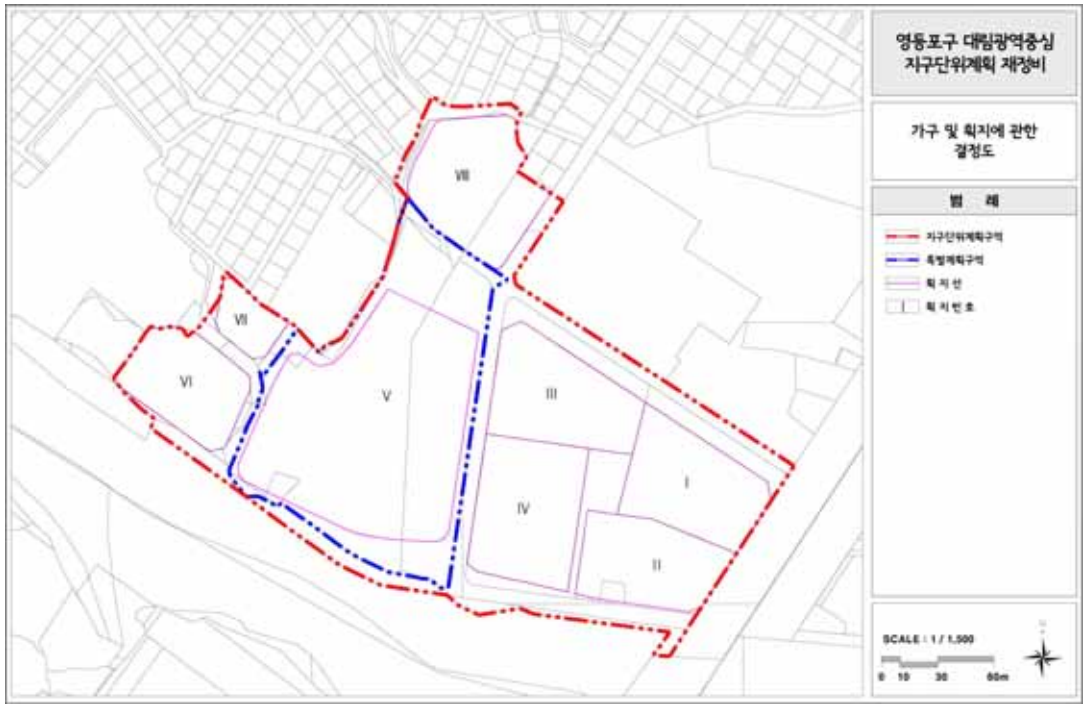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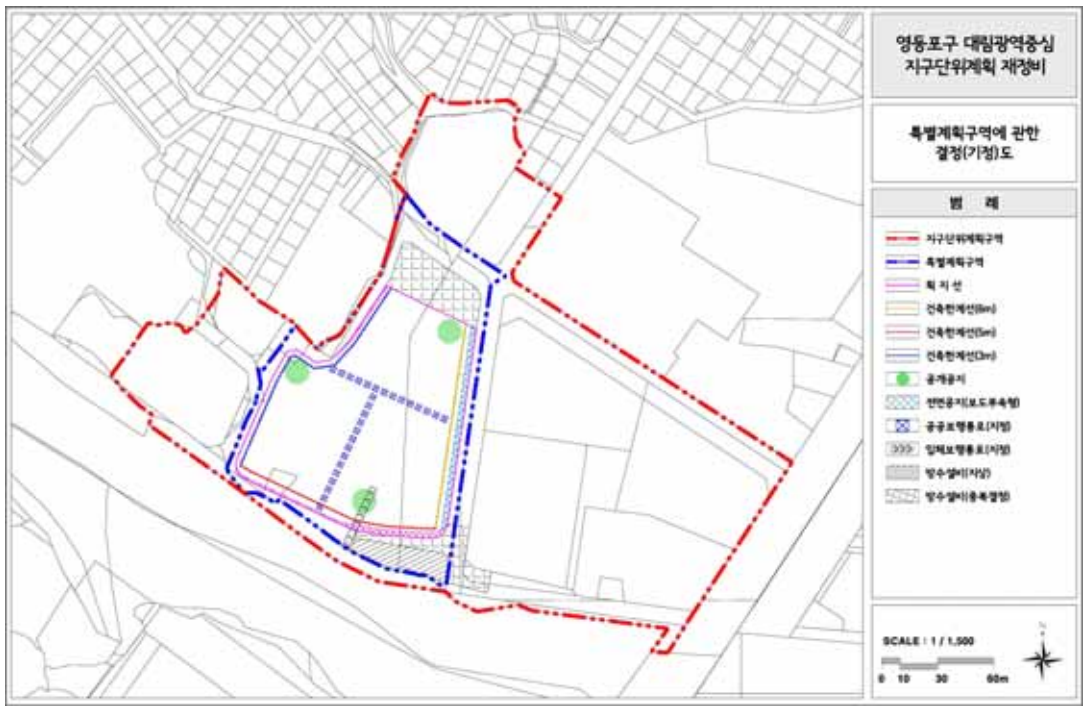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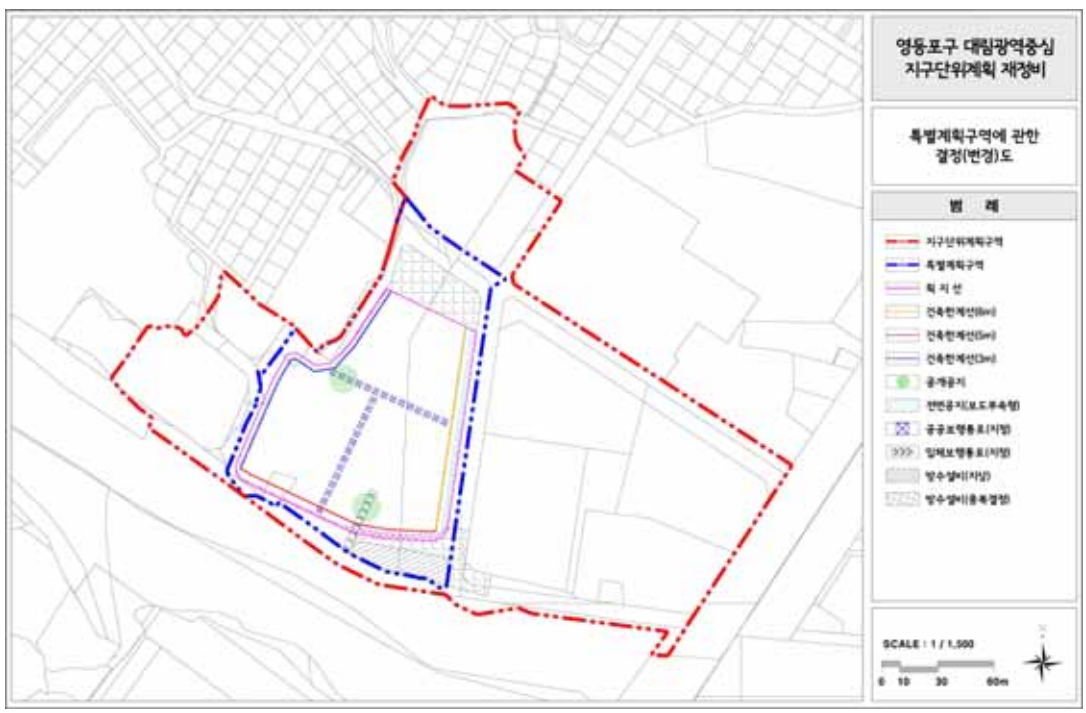
■ 가구 및 획지계획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기정)도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도



■ 특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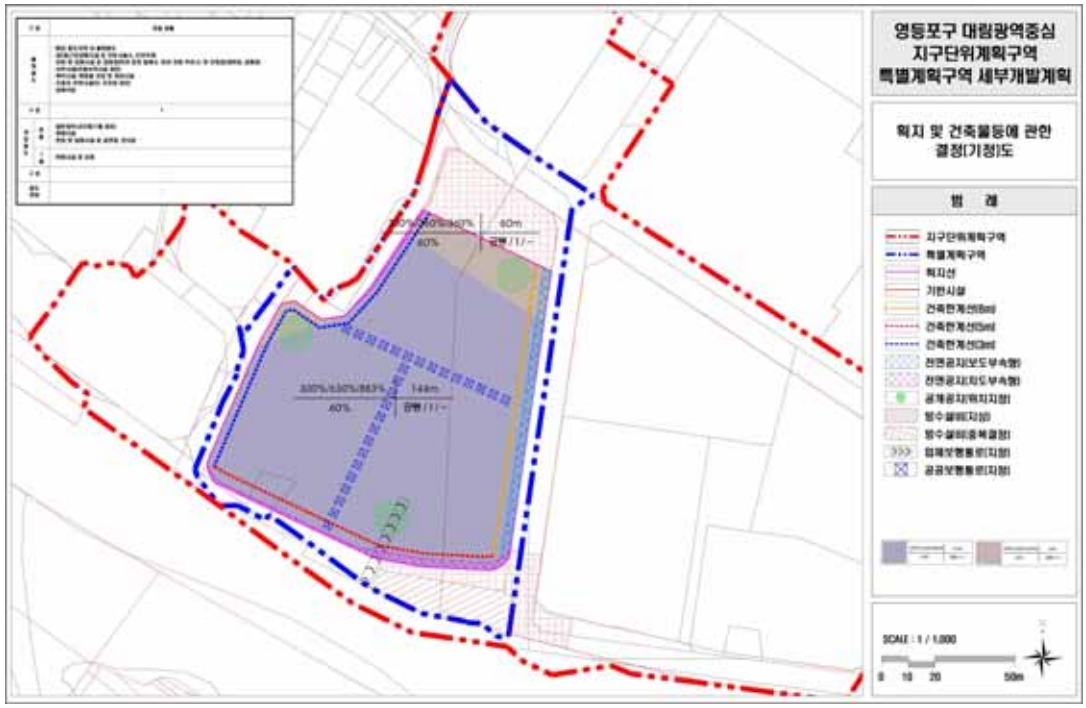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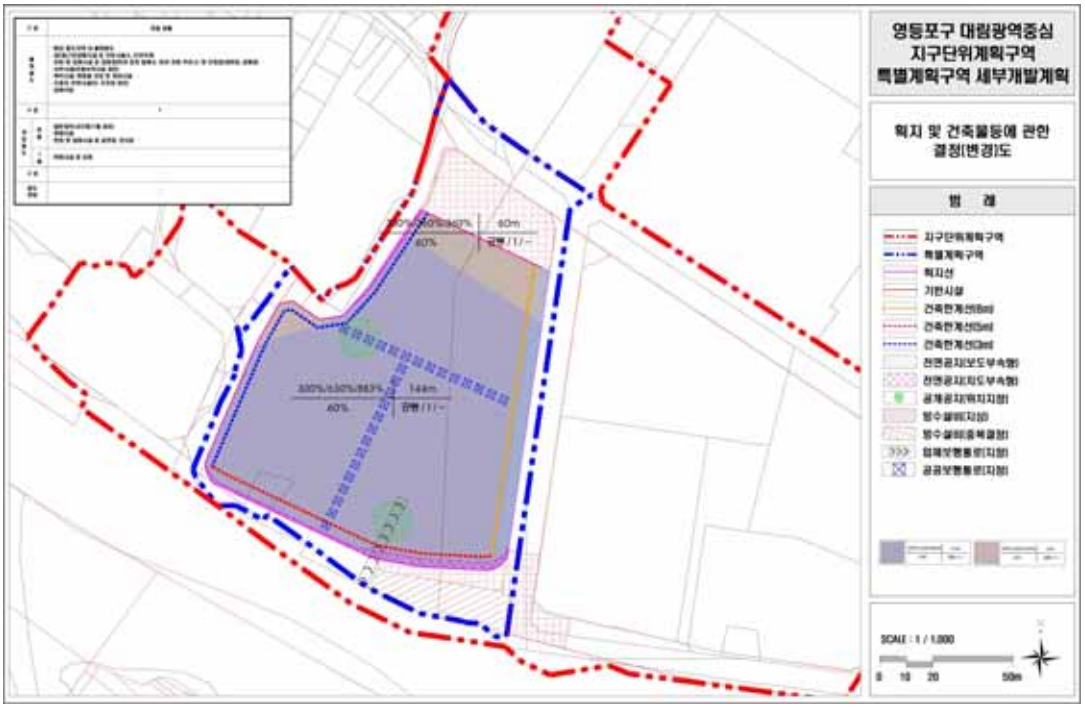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559호

서초구 양재동 1-26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87호(2022. 12. 15.) 및 제2024-296호(2024. 06. 20.)로서 서초구 양재동 1-26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33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공급촉진지구를 지정(변경)하고,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변경)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서초구 양재동 1-26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Ⅱ.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변경없음)
3.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4.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5.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

1) 수용인구 : 467인(변경없음)
2) 주택건설계획 : 342세대
[기정] 공공임대 89세대, SH선매입 82세대, 민간임대 171세대

구 분		세대수(세대)	비 율(%)	가구당 인구수	수용인구(인)	비 율(%)	비 고
공공 임대주택	25 Type	34	9.94	1	34	7.27	-
	45 Type	10	2.92	1	10	2.14	-
	49 Type	23	6.73	1	23	4.92	-
	68 Type	13	3.80	2.65	34	7.37	-
	69 Type	9	2.63	2.65	24	5.10	-
	소 계	89	26.02	-	125	26.74	-

구 분		세대수(세대)	비 율(%)	가구당 인구수	수용인구(인)	비 율(%)	비 고
SH 선매입	25 Type	82	23.98	1	82	17.54	-
	소 계	82	23.98	-	82	17.54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5 Type	36	10.52	1	36	7.70	-
	45 Type	66	19.30	1	66	14.12	-
	49 Type	16	4.68	1	15	3.21	-
	68 Type	24	7.02	2.65	66	14.12	-
	69 Type	29	8.48	2.65	77	14.98	-
	소 계	171	50.00	-	260	55.63	-
합 계		342	100.00	-	467	100.00	-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대상을 고려하여 가구당 인구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행복주택 공급계층별 가구당 인구수 기준' 을 적용

[변경] 공공임대 89세대, 민간임대 253세대

구 분		세대수(세대)	비 율(%)	가구당 인구수	수용인구(인)	비 율(%)	비 고
공공 임대주택	25 Type	34	9.94	1	34	7.27	-
	45 Type	10	2.92	1	10	2.14	-
	49 Type	23	6.73	1	23	4.92	-
	68 Type	13	3.80	2.65	34	7.37	-
	69 Type	9	2.63	2.65	24	5.10	-
	소 계	89	26.02	-	125	26.74	-
SH 선매입	25 Type	-	-	-	-	-	-
	소 계	-	-	-	-	-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5 Type	118	34.50	1	118	25.24	-
	45 Type	66	19.30	1	66	14.12	-
	49 Type	16	4.68	1	15	3.21	-
	68 Type	24	7.02	2.65	66	14.12	-
	69 Type	29	8.48	2.65	77	14.98	-
	소 계	253	73.98	-	342	71.67	-
합 계		342	100.00	-	467	100.00	-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대상을 고려하여 가구당 인구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행복주택 공급계층별 가구당 인구수 기준' 을 적용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없음)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붙임] (도면게재생략)(변경없음)

[붙임]
Ⅰ. 도시·군관리계획(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3)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2. 건축물 용도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3.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변경)조서(변경)
1) 건축물 밀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2) 건축물 높이에 관한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3) 용적률 적용[의무사항] : 신설(변경)
[기정]

구 분		기 준	적용내용	비고
공공기여율		변경없음	변경없음	
비주거비율		변경없음	변경없음	
주택 건설 기준	주택규모	전용면적 20㎡ ~ 60㎡ - 1인 (셰어형포함)세대 : 실사용면적 25㎡ 이상 - 2인이상 세대 : 실사용면적 45㎡	• 공공임대 : SH선매입 : 공공지원민간임대 - 세대수기준 = 26.02% : 23.98% : 50.00% - 건축물 연면적 기준 = 24.02% : 13.75% : 50.03% • 공공임대주택 : 89세대 : 25Type(34세대), 45Type(10세대), 49Type(23세대) 68Type(13세대), 69Type(9세대) • SH선매입 : 25Type(82세대)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171세대 : 25Type(36세대), 45Type(66세대), 49Type(15세대) 68Type(25세대), 69Type(29세대)	
건축물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변경없음	변경없음	
주민공공시설 (커뮤니티시설)		변경없음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1 준용

[변경]

구 분		기 준	적용내용	비고
공공기여율		변경없음	변경없음	
비주거비율		변경없음	변경없음	
주택 건설 기준	주택규모	전용면적 20㎡ ~ 60㎡ - 1인 (셰어형포함)세대 : 실사용면적 25㎡ 이상 - 2인이상 세대 : 실사용면적 45㎡	• 공공임대 : 공공지원민간임대 - 세대수기준 = 26.02% : 73.98% - 건축물 연면적 기준 = 24.02% : 63.78% • 공공임대주택 : 89세대 : 25Type(34세대), 45Type(10세대), 49Type(23세대) 68Type(13세대), 69Type(9세대)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253세대 : 25Type(118세대), 45Type(66세대), 49Type(15세대) 68Type(25세대), 69Type(29세대)	
건축물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변경없음	변경없음	
주민공공시설 (커뮤니티시설)		변경없음	변경없음	

4. 건축물 배치·형태·경관계획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Ⅱ.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변경없음)

Ⅲ. 방재계획(변경없음)

Ⅳ.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변경없음)

Ⅴ.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Ⅵ. 공사의 관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Ⅶ.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Ⅷ. 관계도면(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560호

서초구 양재동 1-26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86호(2022.12.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52호(2023.04.27.)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97호(2024. 06. 20.) 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1항 및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된 서초구 양재동 1-26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 처리하고, 같은조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주택건설사업
2.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서초구 양재동 1-26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청년주택안심주택) 신축공사
3. 사업주체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4. 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 ~ 2026년
5. 사업개요(변경)
 가. 대지위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26번지
 나. 대지면적(변경없음) : 2,446.7㎡
 다. 건폐율(변경없음) : 52.99%(건축면적 : 1,296.39㎡)
 라. 용적률(변경없음) : 874.64%(용적률산정용 연면적 : 21,399.89㎡)
 마. 용 도(변경) :
  [기정] 공동주택(공공임대 89세대/선매입82세대/민간임대171세대), 근린생활시설
  [변경] 공동주택(공공임대 89세대/민간임대 253세대), 근린생활시설
 바. 규 모(변경없음) : 1개동, 지하7층/지상22층, 연면적 32,667.40㎡
 사. 의제처리사항(변경없음)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 상수도공급신청, 배수설비설치신고
6. 기타사항
 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장은 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 결정 시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군계획시설은 각각 지정·결정 전으로 환원된 것으로 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561호

방학신동아1단지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272번지 일대 방학신동아1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청취, 2025년 제6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주민(재)공람 등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방학신동아1단지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방학신동아1단지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도봉구 방학동 272번지 일대	-	증) 140,872.6	140,872.6	-

2. 토지 등 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가. 추산액

추정 비례율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분양대상 대지 및 건축물 등 총 추산액 - 총 사업비) ÷ 종전 토지 및 건축물 총 추산액 X 100 •추정비례율 : 100.97% ⇒ (3,144,772,450천원 - 1,827,734,052천원) ÷ 1,304,312,800천원 X 100% ≒ 100.97%

종전 토지 및 건축물 총 추산액	•아파트는 부동산 시세조회(KB부동산,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및 최근 실거래가 평균 등을 참작하여 개략적으로 추정 •아파트外(근린생활시설 등)는 방학신동아1단지아파트 내 상가 등의 최근 거래사례를 조사한 후 위치별 · 층별 · 면적별 가격형성 요인 등을 고려하여 개략적으로 추정 •아파트 소유자 ≒ 14,282억원 •아파트外(근린생활시설 등) 소유자 ≒ 188억원

추정 분담금 산출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산액 - (종전자산 추산액 X 추정비례율)

권리자 분양가 추산액		추정 권리가액	추정 분담금
전용 43.90㎡	572,900천원	개별 종전자산 추산액 X 추정비례율(100.97%)	권리자 분양가 추산액 - 추정 권리가액 (+ : 부담 / - : 환급)
전용 49.90㎡	640,900천원		
전용 59.90㎡	736,100천원		
전용 72.90㎡	840,650천원		
전용 84.95㎡	923,950천원		
전용 100.90㎡	1,042,950천원		
아파트外	34,520,250천원		

※ 상기 분담금 추산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작성시점 현재의 정비계획과 설계 개요를 기준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을 개략적으로 추산한 예시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분담금은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통하여 확정됨

※ 상기 분담금 추산액은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토지등소유자의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내용, 물가상승률, 시공사와의 공사비 계약내용, 사업진행속도 등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사항은 관련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하여 단계별로 고지 예정임

※ 상기 조합원 및 일반분양 세대수에 따른 분양수입은 현재 주택형별 토지등소유자의 수 등을 감안하여 임의적으로 배분한 것으로 향후 조합원 분양신청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기 가액은 소수점 또는 단위 절사 등으로 제곱미터 또는 평당 단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나. 산출근거

■ 종전자산가액 추정 : 1,304,312,8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건물면적(㎡)		세대수	일반평균시세(2025년 03월)		종전자산 (세대평균)	종전자산추산액
	공급	전용		KB부동산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58.14	43.35	468	28,000	27,750	300,000	140,400,000
	71.02	51.27	80	33,500	33,250	349,000	27,920,000
	73.43	53.16	605	36,000	34,250	359,000	217,195,000
	83.53	62.22	464	40,500	40,000	415,000	192,560,000
	97.67	70.62	780	44,500	43,750	461,000	359,580,000
	112.32	84.87	424	55,000	54,500	543,000	230,232,000
	131.70	112.49	192	74,500	74,500	719,000	138,048,000
	146.76	126.89	156	79,500	79,500	784,000	122,304,000
	합계		3,169	-	-	-	1,428,239,000

(단위 : 천원)

구분	건물면적(㎡)		세대수	일반평균시세(2025년 03월)		종전자산 (세대평균)	종전자산추산액
	공급	전용		KB부동산	한국부동산원		
아파트外	동명칭		해당 층		종전자산추산액		
	상가동, 55동(상가), 유치원		1~2층, 지하층		18,897,700		
	합계		-		18,897,700		
현금청산액					-142,823,900		
종전자산 총계					1,304,312,800		

※ 상기 종전 토지 및 건축물 추산액은 개략적으로 추산한 금액이며, 토지등소유자 유형별의 종전자산은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복수의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으로 산정될 예정임

※ 청산세대를 감안하여 추산하였으며, 상기 면적과 세대수, 호수 등은 건축물 대장, 한국부동산원 KAIS 및 각종 공부자료 등을 기준으로 추산하였음

■ 총 수입 산출 : 3,144,772,450천원

구분		공급세대 (세대)	공급면적 (㎡)	3.3㎡당 분양단가(천원)	세대별 분양금액 (천원)	분양수입 (천원)
아파트	조합원분양	230	59.67	31,700	572,900	131,767,000
		490	67.98	31,200	640,900	314,041,000
		1,060	81.71	29,800	736,100	780,266,000
		131	99.31	28,000	840,650	110,125,150
		845	115.80	26,400	923,950	780,737,750
		34	137.37	25,100	1,042,950	35,460,300
		총 2,790	-	-	-	2,152,397,200
	일반분양	85	59.67	37,300	674,000	57,290,000
		181	67.98	36,700	754,000	136,474,000
		391	81.71	35,000	866,000	338,606,000
		49	99.31	32,900	989,000	48,461,000
		311	115.80	31,000	1,087,000	338,057,000

구분		공급세대 (세대)	공급면적 (㎡)	3.3㎡당 분양단가(천원)	세대별 분양금액 (천원)	분양수입 (천원)
		12	137.37	29,500	1,227,000	14,724,000
		총 1,029	-	-	-	933,612,000
	국민주택규모임대	49	59.67	5,760	104,000	5,096,000
		40	67.98	5,740	118,000	4,720,000
		142	81.71	5,580	138,000	19,596,000
		49	115.80	5,570	195,000	9,555,000
		총 280	-	-	-	38,967,000
	소계	4,099	-	-	-	3,124,976,200
아파트外		-	5,259 (연면적)	-	-	34,520,250
매출부가세 수입차감액				-	-	-14,724,000
총 수입				-	-	3,144,772,450

※ 일반분양 분양가는 인근 신축아파트 시세수준, 실거래가 등을 감안하여 일반분양가 평균을 33,600천원/3.3㎡으로 추정하며, 주택형별 격차율은 인근 신축아파트 격차율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추정
※ 조합원 분양가는 주택형별 일반분양가의 85%로 적용
※ 근린생활시설 등의 분양가는 인근지역 신축아파트 단지 내 상가 및 유치원의 시세 등을 감안하여 개략적으로 추정

■ 총 지출(사업비) 산출 : 1,827,734,052천원

항 목	금 액(천원)	포함 내용
공사비	1,354,982,090	건축공사비, 건축물철거비, 정비기반시설공사비 등
보상비	161,381,890	국공유지 매입비, 손실보상, 현금청산 등
관리비	5,555,471	조합운영비, 각종 소송비, 회계감사비 등
설계감리비	44,520,839	설계비, 감리비 등
외주용역비	51,789,635	정비사업전문관리, 감정평가 등
각종부담금	18,551,909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상하수도부담금, 도시가스부담금, 지역난방부담금 등
제세공과금	22,158,807	보존등기, 법인세 등
기타경비	7,140,128	광고선전비, 분양보증수수료 등
예비비	78,706,251	-
항목별 사업비 계	1,744,787,020	-
대여금이자	82,947,032	정비사업 대여금 이자
중도금이자	-	개별부담으로 사업비에서 제외
이주비이자	-	개별부담으로 사업비에서 제외
총합계	1,827,734,052	-

※ 상기 추산액은 금회 정비계획과 개략적인 설계 개요에 기반하여 개략적으로 추산한 사업비로서 향후 물가상승률, 시공사와의 공사비 계약내용, 사업진행속도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관련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하여 단계별로 고지될 예정임

■ 추정분담금 예시

(단위 : 천원)

전용면적(㎡)	예상평균 종전자산	추정권리가액		예상분양가		분담금 추산액	
		비례율	권리가액	주택형	분양가	분담금 추산액	구분
43.35	300,000	100.97%	302,900	43.90	572,900	270,000	추가분담
				49.90	640,900	338,000	추가분담
				59.90	736,100	433,200	추가분담
				72.90	840,650	537,750	추가분담
				84.95	923,950	621,050	추가분담
				100.90	1,042,950	740,050	추가분담
51.27	349,000	100.97%	352,400	43.90	572,900	220,500	추가분담
				49.90	640,900	288,500	추가분담
				59.90	736,100	383,700	추가분담
				72.90	840,650	488,250	추가분담
				84.95	923,950	571,550	추가분담
				100.90	1,042,950	690,550	추가분담
53.16	359,000	100.97%	362,500	43.90	572,900	210,400	추가분담
				49.90	640,900	278,400	추가분담
				59.90	736,100	373,600	추가분담
				72.90	840,650	478,150	추가분담
				84.95	923,950	561,450	추가분담
				100.90	1,042,950	680,450	추가분담
62.22	415,000	100.97%	419,000	43.90	572,900	153,900	추가분담
				49.90	640,900	221,900	추가분담
				59.90	736,100	317,100	추가분담
				72.90	840,650	421,650	추가분담
				84.95	923,950	504,950	추가분담
				100.90	1,042,950	623,950	추가분담
70.62	461,000	100.97%	465,500	43.90	572,900	107,400	추가분담
				49.90	640,900	175,400	추가분담
				59.90	736,100	270,600	추가분담
				72.90	840,650	375,150	추가분담
				84.95	923,950	458,450	추가분담
				100.90	1,042,950	577,450	추가분담
84.87	543,000	100.97%	548,300	43.90	572,900	24,600	추가분담
				49.90	640,900	92,600	추가분담
				59.90	736,100	187,800	추가분담
				72.90	840,650	292,350	추가분담
				84.95	923,950	375,650	추가분담
				100.90	1,042,950	494,650	추가분담
112.49	719,000	100.97%	726,000	43.90	572,900	-153,100	환급
				49.90	640,900	-85,100	환급
				59.90	736,100	10,100	추가분담
				72.90	840,650	114,650	추가분담
				84.95	923,950	197,950	추가분담
				100.90	1,042,950	316,950	추가분담
126.89	784,000	100.97%	791,600	43.90	572,900	-218,700	환급
				49.90	640,900	-150,700	환급

전용면적(㎡)	예상평균 종전자산	추정권리가액		예상분양가		분담금 추산액	
		비례율	권리가액	주택형	분양가	분담금 추산액	구분
				59.90	736,100	-55,500	환급
				72.90	840,650	49,050	추가분담
				84.95	923,950	132,350	추가분담
				100.90	1,042,950	251,350	추가분담
아파트外	18,897,700	100.97%	19,081,007	-	34,520,250	예상분양가 - 추정권리가액 (+ : 부담, - : 환급)	

※ 상기 분담금 추산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작성시점 현재의 정비계획과 설계 개요를 기준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을 개략적으로 추산한 예시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분담금은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통하여 확정됨

※ 상기 분담금 추산액은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토지등소유자의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내용, 물가상승률, 시공사와의 공사비 계약내용, 사업진행 속도 등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사항은 관련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하여 단계별로 고지 예정임

※ 상기 조합원 및 일반분양 세대수에 따른 분양수입은 현재 주택형별 토지등소유자의 수 등을 감안하여 임의적으로 배분한 것으로 향후 조합원 분양신청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기 가액은 소수점 또는 단위 절사 등으로 제곱미터 또는 평당 단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비율(%)	비고
합계		140,872.6	100.0	
정비기반시설 등	소계	16,924.5	12.0	
	도로	911.0	0.6	
	근린공원	10,499.5	7.4	
	어린이공원	2,524.0	1.8	
	공공공지	226.0	0.2	
	하천	2,764.0	2.0	
획 지	소계	123,948.1	88.0	
	획지1	52,858.0	37.5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	70,340.1	50.0	
	획지3	750.0	0.5	유치원

4. 용도지역·지구 조서 :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분	면적(㎡)			비율(%)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	140,872.6	-	140,872.6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1,437.4	-	11,437.4	8.1
제3종일반주거지역	129,435.2	-	129,435.2	91.9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

구분	지구 세분	위치	면적(㎡)	연장(㎞)	폭원(m)	비고
경관지구	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	연산군묘~ 방학사거리	43,613.0 (5,722.0)	1.7 (0.38)	양측 15	방학로

※ ( )는 정비구역 내 면적 및 연장임

5.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2	24	10~30	보조간선도로	2,801	우이동 4-2	방학사거리	일반도로	건고시 제2126호 ('66.1.8.)	-
변경	대로	2	24	10~33 (30~33)	보조간선도로	2,801 (64)	우이동 4-2	방학사거리	일반도로	건고시 제2126호 ('66.1.8.)	노선 일부 확폭
기정	중로	2	97	15~18	-	8,900	쌍문동	중계동	-	건고시 제18호 ('72.9.4.)	-
변경	중로	2	97	15~18 (15~18)	-	8,900 (315)	쌍문동	중계동	-	건고시 제18호 ('72.9.4.)	노선 일부 확폭
폐지	소로	3	-	6	-	17	방학동 498-11	방학동 495-4	-	-	-

※ ( )는 정비구역 내 변경 구간의 폭원 및 연장임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2-24	대로 2-24	•일부구간 도로 확폭 - 폭원: 30m → 30~33m	•방학로변 가감속차로 확보를 위한 도로 확폭
중로 2-97	중로 2-97	•일부구간 도로 확폭 - 폭원: 15m → 15~18m	•정비사업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를 고려하여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도로 확폭
소로 3-	-	•시설 폐지	•정비사업으로 인한 시설 폐지

나. 공간시설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①	공원	근린공원	도봉구 방학동 270-2번지 일대	-	증) 10,499.5	10,499.5	-	-
신설	②	공원	어린이 공원	도봉구 방학동 271-4번지 일대	-	증) 2,524.0	2,524.0	-	-

■ 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근린공원	•근린공원 신설 - 면적 : 10,499.5㎡	•정비사업으로 인한 공원 신설 - 발바닥공원(공공공지)과 연계한 공원 계획을 통해 오픈스페이스 조성 등 효율적인 공원 활용도 제고
②	어린이 공원	•어린이공원 신설 - 면적 : 2,524.0㎡	•정비사업으로 인한 공원 신설 - 주변 지역자원과 연계한 그린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대상지 남측 공원 조성

2)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①	공공 공지	공공 공지	도봉구 방학동 270-2번지 일대	7,000.0	감) 6,708.0	292.0	'99.10.18.	발바닥 공원
신설	②	공공 공지	공공 공지	도봉구 방학동 271-5번지 일대	-	증) 226.0	226.0	-	-

■ 공공공지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 공지	•오기 정정 - 면적 : 7,000.0㎡ → 8,248.0㎡ (증 1,248.0㎡) •부분 폐지 - 면적 : 8,248.0㎡ → 292.0㎡ (감 7,956.0㎡)	•공공공지 면적 오기 정정 •정비구역 내 발바닥공원(공공공지)을 포함한 공원 변경으로 공공공지 부분 폐지
②	공공 공지	•공공공지 신설 - 면적 : 226.0㎡	•중랑천권역(서울특별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방학로15길에 접한 복개구간 범위에 대해 추후 복개 철거 · 하천 복원 가능하도록 공공공지 신설

다. 방재시설 : 변경없음

1) 하천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하천명	하천등급	구간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거리(㎞)			
기정	-	방학천	지방하천	도봉구 방학동 587-2번지선	도봉구 방학동 중랑천(국가) 합류점	3.04 (0.23)	56,719 (2,764)	-	-

※ ( )는 정비구역 내 거리 및 면적임 / 하천 복원을 고려하여 구역 내 포함
※ 발바닥공원 포함 공원확보에 따른 공공기여로 하천 복원은 사업시행자 부담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의 종류		위치	법정		계획면적 (㎡)	비고
			기준	면적(㎡)		
주민공동시설	합 계	획지 1,2	1,000세대 이상 (500㎡ + (4,099세대 × 2.0㎡)) × 1.25	10,872.5	20,135.0	-
	경로당		2,000세대 이상 725㎡ + ((4,099세대 - 2,000세대) × 0.2㎡)	1,144.8	1,600.0	-
	어린이집		2,000세대 이상 725㎡ + ((4,099세대 - 2,000세대) × 0.2㎡)	1,144.8	1,600.0	-
	작은도서관		2,000세대 이상 298㎡ + ((4,099세대 - 2,000세대) × 0.1㎡)	507.9	660.0	-
	주민운동시설		500세대 이상	-	5,000.0	-
	어린이놀이터		500㎡ + (4,099세대 × 0.7㎡)	3,369.3	5,000.0	-
	주민공동시설		-	-	4,400.0	-
	다함께돌봄센터		500세대 이상	66.0	1,875.0	-
관리사무소			50세대 이상 10㎡ + ((4,099세대 - 50세대) × 0.05㎡)	212.45	350.0	-
경비실			-	-	160.0	-
서울형 키즈카페			-	-	825.0	-

※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제8조의4 및 〈별표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및 제55조의2 등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음

7.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		가구 또는 획지		위치	정비개량 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방학신동아 1단지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140,872.6	획지1	52,858.0	도봉구 방학동 271-1번지 일대	37	-	-	37	-	-
			획지2	70,340.1	도봉구 방학동 272번지 일대						
			획지3	750.0	도봉구 방학동 272-1번지 일대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건축법」 등 관련 법령 기준 적용

8. 건축물에 관한 계획

가.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구역</th><th colspan="2">가구 또는 획지</th><th rowspan="2">위치</th><th rowspan="2">주된 용도</th><th rowspan="2">건폐율
(%)</th><th colspan="2">용적률(%)</th><th rowspan="2">높이
(최고층수)</th></tr>
<tr><th>명칭</th><th>면적(㎡)</th><th>명칭</th><th>면적(㎡)</th><th>상한</th><th>법적상한</th></tr>
<tr><td rowspan="3">신설</td><td rowspan="3">방학신동아
1단지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td><td rowspan="3">140,872.6</td><td>획지1</td><td>52,858.0</td><td>도봉구 방학동
271-1번지 일대</td><td rowspan="2">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td><td rowspan="2">50
이하</td><td rowspan="2">263.11
이하</td><td rowspan="2">299.97
이하</td><td rowspan="2">해발고도
180m 이하
(47층 이하)</td></tr>
<tr><td>획지2</td><td>70,340.1</td><td>도봉구 방학동 272번지
일대</td></tr>
<tr><td>획지3</td><td>750.0</td><td>도봉구 방학동
272-1번지 일대</td><td>유치원</td><td colspan="4">관계 법령에 따름</td></tr>
<tr><td colspan="2">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td><td colspan="9">[건립규모 및 비율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
•건립규모 : 총 4,099세대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전용면적
(㎡)</th><th colspan="3">세대수</th><th rowspan="2">비율
(%)</th></tr>
<tr><th>합계</th><th>분양주택</th><th>국민주택규모 주택</th></tr>
<tr><td rowspan="3">60㎡ 이하</td><td>43</td><td>364</td><td>315</td><td>49</td><td>8.9</td></tr>
<tr><td>49</td><td>711</td><td>671</td><td>40</td><td>17.3</td></tr>
<tr><td>59</td><td>1,593</td><td>1,451</td><td>142</td><td>38.9</td></tr>
<tr><td rowspan="2">60㎡ 초과 ~
85㎡ 이하</td><td>72</td><td>180</td><td>180</td><td>-</td><td>4.4</td></tr>
<tr><td>84</td><td>1,205</td><td>1,156</td><td>49</td><td>29.4</td></tr>
<tr><td>85㎡ 초과</td><td>100</td><td>46</td><td>46</td><td>-</td><td>1.1</td></tr>
<tr><td colspan="2">합계</td><td>4,099</td><td>3,819</td><td>280</td><td>100.0</td></tr>
</table>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조정될 수 있음</td></tr>
<tr><td colspan="2">심의완화 사항</td><td colspan="9">•허용용적률 20% 이내(사업성 보정계수 2.0 적용)
- 공공보행통로 10%, 열린단지 5%, 돌봄시설 5%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 법적상한용적률 : 299.97% 이하</td></tr>
<tr><td colspan="2">건축물의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td><td colspan="9">•건축한계선(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 시루봉로·방학로변 : 획지선으로부터 5m
- 방학로15길변 : 획지선으로부터 3~10m
- 그 외 : 획지선으로부터 3m</td></tr>
<tr><td rowspan="2">기타
사항</td><td>공공보행
통로</td><td colspan="9">•공공보행통로 : 2개소(폭 8m, 10m)
※ 학교, 공원 접근성을 고려하여 공공보행통로 조성구간 지역권 설정</td></tr>
<tr><td>전면공지</td><td colspan="9">•보도형 전면공지 조성
- 시루봉로·방학로변 : 건축한계선 후퇴부 5m
- 방학로15길변 : 건축한계선 후퇴부 3~10m
- 그 외 : 건축한계선 후퇴부 3m
※ 시루봉로, 방학로, 방학로15길변 보도형 전면공지 조성구간 지역권 설정</td></tr>
</table>

구분	구역		가구 또는 획지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최고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상한	법적상한	
	열린단지	•신학초 및 타단지 연접부를 제외한 단지 외각 열린단지 조성 – 시루봉로변 : 근린생활시설 또는 개방형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가로를 활성화를 위한 개방공간 조성 – 방학로변 : 간선도로변 보행량을 고려하여 단지 경계부 수목식재 등 시각적 열린단지 조성 (1m 미만 단차 발생 시 조경석 설치, 생울타리 조성 등) – 방학로15길 및 공원경계부 : 보행량을 고려하여 단차·장애물이 없이 보행을 통해 단지 내부로 접근 가능하도록 조성하고 신학초 정문 일대 공공보행통로 기능을 고려한 오픈스페이스 조성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사항에 대하여 입주민 모집공고 시 지역권 설정 및 열린단지 조성 사항 명기

나. 용적률 계획

구분		산정내용				
토지이용계획		구역면적(㎡)	대지면적(획지1,2)(㎡)	신설 정비기반시설 면적(㎡)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대지 내 용도 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140,872.6	123,198.1	16,924.5	11,520.7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순부담 면적(㎡) : 신설 정비기반시설 면적 -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 대지 내 용도 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 16,924.5 – 11,520.7 = 5,403.8				
용적률	기준	•210.0% 이하				
	허용	•250.0% 이하 –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X 사업성 보정계수) = 210% + (20% X 2.0) = 250%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항목 – 공공보행통로(10%), 열린단지(5%), 돌봄시설(5%) ⇒ 20% 적용 ▶ 사업성 보정계수(공시지가 보정계수) 산정 – 서울시 공동주택 평균 공시지가 / 대상단지 평균 공시지가 = (7,274,646원/㎡) / (2,829,669원/㎡) ≒ 2.57 (2.0 적용)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에 대해서 최종 결정함 ※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방안 세부기준」의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 산식에 따라 산정한 보정계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올림한 값을 적용함 ※ 사업성 보정계수는 추후 공시지가 및 계획내용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상한	•263.11% 이하 = 250% + (230% X 1.3 X 1 X 0.04386) = 263.11%				

		◦ 가중치 = 1.0 ◦ α토지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16,924.5㎡ − 11,520.7㎡) / (140,872.6㎡ − 16,924.5㎡ − 750.0㎡) = 0.04386
	법정 상한	•299.97% 이하 (건축계획용적률)

※ 공공시설 등 제공에 관한 사항은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등 관련 기준에 따름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구분	항목		인센티브량
공공보행통로	기준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지역권* 설정) − 기준용적률 X (조성면적 / 대지면적) X a ※ a=1이하 * 지역권 : 통행 등 일정목적으로 타인토지를 자기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등기로 설정)	10% 이내
	적용	•획지 내 2개의 공공보행통로 조성 (지역권* 설정) 210.0% X (6,622.6㎡ / 123,198.1㎡) X 1.0 = 11.29% * 지역권 : 통행 등 일정목적으로 타인토지를 자기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등기로 설정)	11.29%
열린단지	기준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 상가 등 열린단지* 조성(지형도면 고시) − 개방공간, 열린단지 조성기준 준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개방되는 부분은 결정도면에 표시 (준공 후에도 유지)	5%
	적용	•열린단지 시루봉로변, 방학로변, 방학로15길 및 공원경계부 단지 외곽 개방 = 5%	5%
돌봄시설	기준	•지역에 필요한 놀이 · 돌봄시설* 설치 및 제공(무상임대) − 기준용적률 X (조성면적 / 주민공동시설면적*) X a ※ a=0.1이하 (단, 법적의무설치 면적 제외, 건축조례 제3조제7항에 따른 용적률 완화 중복 불가) * 국공립어린이집,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키움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실내어린이놀이터 등	5% 이내
	적용	•돌봄시설 210% X ((1,875.0㎡ + 825.0㎡ − 66.0㎡) / 10,872.5㎡) X 0.1 = 5.09%	5.09%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합계			20.0% (21.38%)

※ 「2030 서울특별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적용하여 계획하였으며,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변경될 수 있음

9.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항목	지점	개선방안
주변가로 및 교차로	-	•시루봉로상 사업지 제척구간 도시계획도로 확폭 시 차로운영계획 제시
	주변교차로	•사업지 주변 교차로 신호운영 최적화방안 제시(4개소)
	Ⓐ신설교차로	•사업지 북측 방학로 상 차량 진출입구 설치(1개소) - 4지교차로 및 신호운영 - 교차로 내 유도선 설치
	- ㉮ ㉯	•사업지 주변 도시계획도로 완화차로 설치 - 사업지 북측 방학로상 완화차로 설치(B=3.0m, L=64.0m) - 사업지 차량 진출입로 시루봉로상 완화차로 설치(B=3.0m, L=60.0m)
진출입 동선	- Ⓑ신설교차로 Ⓒ신설교차로	•시루봉로상 차량 진출입구 설치(3개소) - Ⓑ 신설교차로 1차로형 회전교차로 운영 - Ⓒ 신설교차로 1차로형 회전교차로 운영
	-	•사업지 내 주요 가각부 회전반경 확보(R=6.0m 이상)
주차장 계획	-	•법정주차대수: 3,778대 •주차수요대수: 4,332대(2034년 기준, 원단위법, 평일) •향후 세부적인 건축계획 수립 시 각 단지별 법정 및 주차수요를 충족하는 주차계획대수 확보 필요
대중교통, 자전거 및 보행	범례참조	•사업지 내 공공보행통로 확보(B=8.0m ~ 10.0m) •보행동선 단절지점에 횡단보도(8개소) 및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2개소) •방학로 및 시루봉로상 버스정류장 이전설치(2개소)
교통안전 및 기타	범례참조	•사업지 주변 노면표시 설치
	범례참조	•교통안전표지판 설치(21개소)
	범례참조	•방학3동 주민센터 및 존치구역 주차장 진입을 위한 보도턱 낮춤 설치(3개소)

10.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 결과

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도시경관	•대상지 주변의 건축물과 조화되는 경관을 형성할 수 있는 스카이라인 계획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경계획을 통해 특색 있는 경관 연출	-
환경보전	•환경성 검토를 통해 정비사업으로 인한 환경 저해요소를 검토하여 환경영향 저감방안 마련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
재난방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나. 환경성 검토 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의 반영사항	비고
자연경관	비오톱	-	○	•비오톱유형평가 4, 5등급 - 개별비오톱 평가제외지역	•비오톱 분석결과 대상지는 대부분 지역이 보호가치가 낮은 비오톱 현황을 보이고 있음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로 도시생태 기능 강화 도모	-
	생태 네트워크	녹지연결성 확보	○	•시가화지역으로 산림식생 등 미분포	•계획대상지 내부 자연지반 및 인공지반 녹지 계획을 통한 녹지 공간 확보	-
	동·식물상	동식물상 보호	○	•계획대상지 북측 도봉산 (북한산 국립공원) 위치	•기 조성된 시가지에 위치하며 공사 시 저감방안 수립하여 영향 최소화	-
	자연환경 자산	자연환경 보전	○	•야생생물 보호구역 위치 (약 1.5㎞ 이격)	-	-
생활환경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조사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
	토양	토양오염	○	•토양오염 우려 기준 만족	•공사장비에 의한 폐유 처리대책 수립	-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의 반영사항	비고
		최소화		•토양오염 유발시설물 없음 •공사장비로 인한 폐유 발생 등 토양오염 발생 우려	•토양오염 발생 시 신고 및 적법처리 계획 수립	
	지형 · 지질	지형·지질 변동 최소화	○	•서고동저 지형 •경사 1° 미만, 1° ~3° 미만의 평탄지로 전체의 90%이상 차지	•공사 시 과도한 정지계획 지양 •토사 외부유출 방지를 위한 침사지, 가배수로 설치	-
	수질, 물순환, 수리 · 수문	생태면적률 30.0% 이상, 수질오염 최소화	○	•수질현황 BOD Ia~II등급 •공사 시 토사 및 우수유출 발생	•생태면적률 계획 - 계획대상지 : 37.35%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
	바람	바람길 확보	○	•기상현황 분석	•바람길을 고려한 배치계획 수립 및 녹지계획	-
	열	열환경 최소화	○	•계획대상지 주변 노후화된 아파트가 위치함	•열섬효과 최소화하는 바람길 확보	-
	대기질 · 미세먼지	대기오염 최소화	○	•공사 시 건설장비 가동 및 토량 이동에 따른 일시적인 대기오염 물질 발생 •운영 시 연료사용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 발생	•공사 시 비산먼지 발생 저감대책 수립 •운영 시 에너지 사용량 절감 계획 수립	-
생활환경	온실가스	온실가스 저감	○	•공사 시 및 운영 시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예상	•공사 시 저감방안 수립 •에너지 절감 설비 시설 설치, 청정연료(LNG) 사용 계획	-
	에너지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	•향후 에너지 사용량 추정	•에너지 절감 설비 시설 설치, 청정연료(LNG) 사용 계획	-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 처리	○	•공사 시 및 운영 시 폐기물 발생 예상	•도봉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의 반영사항	비고
	소음·진동	소음·진동 영향	○	•공사 시 소음진동 영향 •운영 시 도로교통소음 예상	•저소음, 저진동 장비사용 •공사 시 가설방음판넬 및 운영 시 방음벽 설치	-
	경관	조망권 확보	○	•건축물 계획으로 인한 주변경관 변화 발생	•주변지역과 연계된 조화롭고 통일감 있는 계획 수립	-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 및 여가공간 최대 확보	○	•휴식 및 여가공간 부족	•계획대상지 내에 공원, 어린이 놀이터, 부대복리시설 등을 계획하여 휴식 및 여가공간 조성	-
	일조	일조침해 최소화	○	•대상지 북동측~북측~북서측 주거지역에 대한 일조영향 예상	•일조시간 확보를 위한 관련법 준수를 통해 일조영향 최소화	-
	보행친화 공간	보행환경 개선	○	•협소한 도로와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보행환경 열악	•현 교통체계 정비 및 주민들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 계획 수립	-
사회경제환경	인구	인구 고려한 계획 수립	○	•서울시 도봉구 인구 현황 조사	-	-
	주거	주거 고려한 계획 수립	○	•서울시 도봉구 주거 현황 조사	-	-

11.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대상지 서측 서울신학초등학교 연접, 대상지 북측 신방학중학교 입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1항에 의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인가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 예정 •공사 시 교육환경 장애요소(소음, 먼지 등)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계획	-

12.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대상지 및 주변 지역에 방범이 취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장소에 방범등, CCTV 등 설치 •방범등, CCTV 등의 설치 위치는 주민 요청 및 현장조사를 반영하여 선정	-

13.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현황	증감	계획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	방학신동아1단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3,169	증) 930	4,099	-

14.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분	가구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신설	합계	-	123,948.1	-
	획지1	도봉구 방학동 271-1번지 일대	52,858.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	도봉구 방학동 272번지 일대	70,340.1	
	획지3	도봉구 방학동 272-1번지 일대	750.0	유치원

15.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모든 공공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함. 필요 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공공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함.
- 공동주택 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외관, 마감, 생활환경(채광, 조망) 등을 동일(유사)하게 계획하고 적절한 비율로 혼합하여 특정 동 · 층 및 라인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도록 건설하며, 임대주택의 선정은 공개 추첨의 방식을 통해 선정하며, 조합원의 동 · 호수 선정 이전 또는 함께 추첨되도록 관리처분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함.
- 용적률 완화로 공급되는 공공주택 중 전용면적 40㎡를 초과하는 공공주택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며, 장기전세주택의 50%는 미리내집으로 활용

■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 확보계획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 colspan="4">내용</th></tr>
<tr><td colspan="2">법적상한용적률
(건축계획용적률)</td><td colspan="4">•299.97% 이하</td></tr>
<tr><td colspan="2">상한용적률
(정비계획용적률)</td><td colspan="4">•263.11% 이하</td></tr>
<tr><td rowspan="3">국민주택규모
주택 의무면적</td><td>용적률 증가분</td><td colspan="4">•299.97% - 263.11% = 36.86%</td></tr>
<tr><td>증가된 용적률의
50%</td><td colspan="4">•18.43% (36.86% X 50%)</td></tr>
<tr><td>의무 연면적</td><td colspan="4">•22,705.41㎡ 이상 (대지면적 123,198.1㎡ X 18.43%)</td></tr>
<tr><td colspan="2" rowspan="3">국민주택규모 주택 확보 계획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td><td>전용면적(㎡)</td><td>공급면적(㎡)</td><td>세대수</td><td>연면적(㎡)</td></tr>
<tr><td>43.90</td><td>59.67</td><td>49</td><td>2,923.83</td></tr>
<tr><td>49.90</td><td>67.98</td><td>40</td><td>2,719.20</td></tr>
</table>

구분	내용			
	59.90	81.71	142	11,602.82
	84.95	115.80	49	5,674.20
	합 계		280	22,920.05
	∴ 22,920.05㎡ 〉 22,705.41㎡(의무 연면적)			

Ⅱ. 방학신동아1단지아파트 재건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방학신동아1단지아파트 재건축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봉구 방학동 272번지 일대	-	증) 140,872.6	140,872.6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위치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도봉구 방학동 272번지 일대	-	증) 140,872.6	140,872.6	•방학신동아1단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 : 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분	면적(㎡)			비율(%)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	140,872.6	-	140,872.6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1,437.4	-	11,437.4	8.1
제3종일반주거지역	129,435.2	-	129,435.2	91.9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구분	지구 세분	위치	면적(㎡)	연장(㎞)	폭원(m)	비고
경관지구	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	연산군묘~ 방학사거리	43,613.0 (5,722.0)	1.7 (0.38)	양측 15	방학로

※ ( )는 정비구역 내 면적 및 연장임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2	24	10~30	보조간선도로	2,801	우이동 4-2	방학사거리	일반도로	건고시 제2126호 ('66.1.8.)	-
변경	대로	2	24	10~33 (30~33)	보조간선도로	2,801 (64)	우이동 4-2	방학사거리	일반도로	건고시 제2126호 ('66.1.8.)	노선 일부 확폭
기정	중로	2	97	15~18	-	8,900	쌍문동	중계동	-	건고시 제18호 ('72.9.4.)	-
변경	중로	2	97	15~18 (15~18)	-	8,900 (315)	쌍문동	중계동	-	건고시 제18호 ('72.9.4.)	노선 일부 확폭
폐지	소로	3	-	6	-	17	방학동 498-11	방학동 495-4	-	-	-

※ ( )는 정비구역 내 변경 구간의 폭원 및 연장임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2-24	대로 2-24	•일부구간 도로 확폭 - 폭원: 30m → 30~33m	•방학로변 가감속차로 확보를 위한 도로 확폭
중로 2-97	중로 2-97	•일부구간 도로 확폭 - 폭원: 15m → 15~18m	•정비사업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를 고려하여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도로 확폭
소로 3-	-	•시설 폐지	•정비사업으로 인한 시설 폐지

2) 공간시설

가)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①	공원	근린공원	도봉구 방학동 270-2번지 일대	-	증) 10,499.5	10,499.5	-	-
신설	②	공원	어린이 공원	도봉구 방학동 271-4번지 일대	-	증) 2,524.0	2,524.0	-	-

■ 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근린공원	•근린공원 신설 - 면적 : 10,499.5㎡	•정비사업으로 인한 공원 신설 - 발바닥공원(공공공지)과 연계한 공원 계획을 통해 오픈스페이스 조성 등 효율적인 공원 활용도 제고
②	어린이 공원	•어린이공원 신설 - 면적 : 2,524.0㎡	•정비사업으로 인한 공원 신설 - 주변 지역자원과 연계한 그린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대상지 남측 공원 조성

나)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①	공공공지	공공공지	도봉구 방학동 270-2번지 일대	7,000.0	감) 6,708.0	292.0	'99.10.18.	발바닥 공원
신설	②	공공공지	공공공지	도봉구 방학동 271-5번지 일대	-	증) 226.0	226.0	-	-

■ 공공공지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공지	•오기 정정 - 면적 : 7,000.0㎡ → 8,248.0㎡ (증 1,248.0㎡) •부분 폐지 - 면적 : 8,248.0㎡ → 292.0㎡ (감 7,956.0㎡)	•공공공지 면적 오기 정정 •정비구역 내 발바닥공원(공공공지)을 포함한 공원 변경으로 공공공지 부분 폐지
②	공공공지	•공공공지 신설 - 면적 : 226.0㎡	•중랑천권역(서울특별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방학로15길에 접한 복개구간 범위에 대해 추후 복개 철거 · 하천 복원 가능하도록 공공공지 신설

3) 방재시설 : 변경없음

가) 하천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하천명	하천등급	구간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거리(㎞)			
기정	-	방학천	지방하천	도봉구 방학동 587-2번지선	도봉구 방학동 중랑천(국가) 합류점	3.04 (0.23)	56,719 (2,764)	-	-

※ ( )는 정비구역 내 거리 및 면적임 / 하천 복원을 고려하여 구역 내 포함
※ 발바닥공원 포함 공원확보에 따른 공공기여로 하천 복원은 사업시행자 부담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가구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신설	합계	-	123,948.1	-
	획지1	도봉구 방학동 271-1번지 일대	52,858.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	도봉구 방학동 272번지 일대	70,340.1	
	획지3	도봉구 방학동 272-1번지 일대	750.0	유치원

나.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획지	용도	비고
신설	허용 용도	획지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제1호 부대시설 및 제2호 복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 단,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획지2		
		획지3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2)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 조서

가) 건폐율 계획

구분	획지	건폐율	비고
신설	획지1	50%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		
	획지3		유치원

나) 용적률 계획

구분	획지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비고
				상한용적률 (정비계획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건축계획용적률)	
신설	획지1	210.0% 이하	250.0% 이하	263.11% 이하	299.97%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					
	획지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8조에 따름				유치원

※ 획지1,2 허용용적률 : 사업성 보정계수 2.0 적용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구분	항목		인센티브량
공공보행통로	기준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지역권* 설정) - 기준용적률 X (조성면적 / 대지면적) X a ※ a=1이하 * 지역권 : 통행 등 일정목적으로 타인토지를 자기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등기로 설정)	10% 이내
	적용	•획지 내 2개의 공공보행통로 조성 (지역권* 설정) 210.0% X (6,622.6㎡ / 123,198.1㎡) X 1.0 = 11.29% * 지역권 : 통행 등 일정목적으로 타인토지를 자기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등기로 설정)	11.29%
열린단지	기준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 상가 등 열린단지* 조성(지형도면 고시) - 개방공간, 열린단지 조성기준 준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개방되는 부분은 결정도면에 표시 (준공 후에도 유지)	5%
	적용	•열린단지 시루봉로변, 방학로변, 방학로15길 및 공원경계부 단지 외곽 개방 = 5%	5%
돌봄시설	기준	•지역에 필요한 놀이 · 돌봄시설* 설치 및 제공(무상임대) - 기준용적률 X (조성면적 / 주민공동시설면적*) X a ※ a=0.1이하 (단, 법적의무설치 면적 제외, 건축조례 제3조제7항에 따른 용적률 완화 중복 불가) * 국공립어린이집,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키움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실내어린이놀이터 등	5% 이내
	적용	•돌봄시설 210% X ((1,875.0㎡ + 825.0㎡ - 66.0㎡) / 10,872.5㎡) X 0.1 = 5.09%	5.09%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합계			20.0% (21.38%)

※ 「2030 서울특별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적용하여 계획하였으며,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변경될 수 있음

■ 상한용적률 완화 계획

구분	용적률 완화		비고(%)
	공공시설 기부채납(%) (상한용적률)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법적상한용적률)	
합계	13.11	36.86	총 49.97

다) 높이 계획

구분	획지	높이 (최고층수)	비고
신설	획지1	해발고도 180m 이하 (47층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		
	획지3	관계 법령에 따름	유치원

다. 건축물 배치 · 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 조서

1) 건축선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건축한계선	시루봉로·방학로변	•획지선으로부터 5m
	방학로15길변	•획지선으로부터 3~10m
	그 외	•획지선으로부터 3m

2)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공공보행통로	공동주택 획지 내 (획지1,2)	•단지 내 동서간 공공보행통로 8m 조성 •단지 내 남북간 공공보행통로 10m 조성
전면공지	획지 내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3) 경관계획 관한 결정 조서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주동배치	공동주택 획지 내 (획지1,2)	•시루봉로, 방학로변 배치 이격하여 통경구간 및 보행공간 확보 •시루봉로에서 도봉산 조망이 가능하도록 열린 배치계획 수립 •상징적 도시경관 창출을 위한 중앙부 초고층 건축 배치
외부공간 및 조경		•주변 현황 등의 외부공간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열린단지 계획
스카이라인		•도봉산 방향으로 열린 경관을 형성 •주변지역과 조화를 고려한 주동의 높이 다양화

라.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1)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차량진출입구	방학로변	•공동주택 차량 진출입구 1개소 설치
	시루봉로변	•공동주택 차량 진출입구 4개소 설치

Ⅲ 2025년 제6차(’ 25.07.03.)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구분		심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수정사항	1	•도시계획시설 계획, 공공기여계획, 순부담면적, 정비계획, 용적률계획,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및 주택공급계획은 구청장 수정가결 요청(안) 반영	•구청장 수정가결 요청(안)에 대하여 심의 조건사항을 반영하여 보완 조치하였음	반영
	2	•공공공지를 공원으로 시설 변경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치수안전과 협의 의견을 고려하여 해당 부지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부합할 수 있도록 방학천 복개구간(하천시설)을 정비구역에 포함하여 정비(하천복원)	•방학천 복개구간(하천시설)을 구역 내 포함하고 향후 정비사업 시행 시 하천복원을 시행하겠음	반영

구분		심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조건사항	3	•교통 분산 및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획지2 시루봉로 우측 하단부에 추가 진출입구를 확보	•시루봉로변 진출입구 1개소를 추가 확보하였음	반영
	4	•대지조성계획은 주변 도로 및 보도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	•도로 및 보도와 단지간 단차를 최소화하고, 자연경사 처리하였음	반영
	5	•열린단지 인센티브 항목은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 계획 내용 제시	•열린단지 세부 기준을 명기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음	반영
	6	•시루봉로는 대상지 일대 교통처리계획 및 진출입구 교차로 운영계획 등과 연계하여 확폭 필요성 검토	•주변 아파트의 개발 가능성 등 장기적 차원에서 시루봉로를 추가 확보토록 하겠음	반영
	7	•가로변 돌출경관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카이라인 등 경관계획 및 주동 높이 계획 조정	•층수 및 주동배치 조정을 통해 층수 격차를 줄였음	반영

Ⅳ. 관련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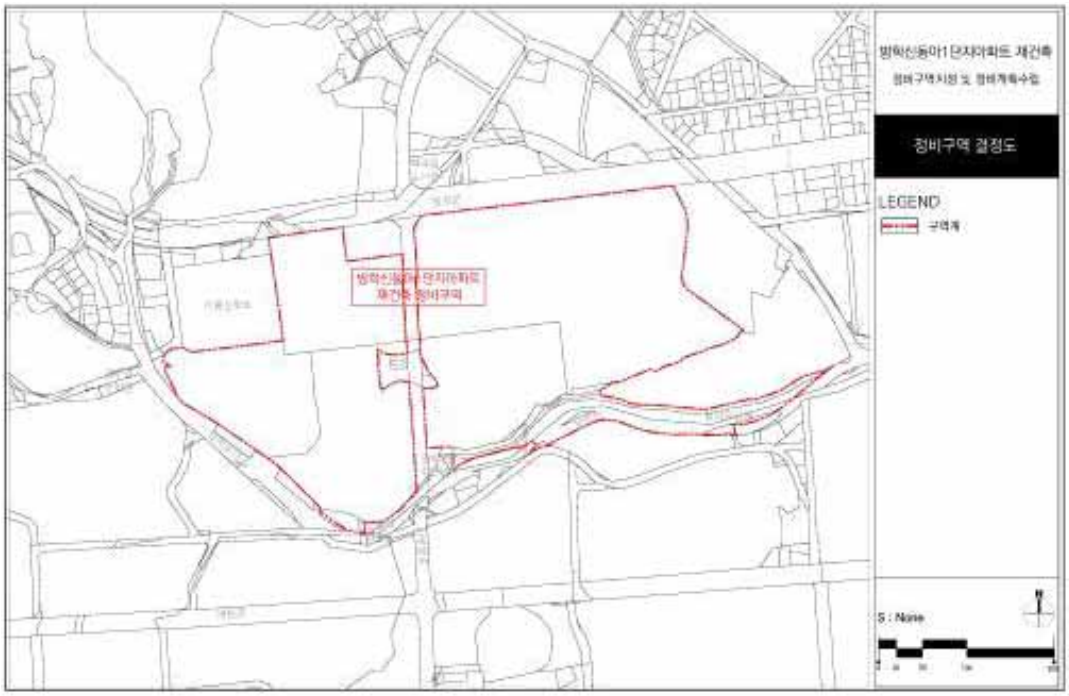
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도서 : 생략

Ⅵ.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283), 도봉구 재건축재개발과(☎02-2091-3407)에 관계 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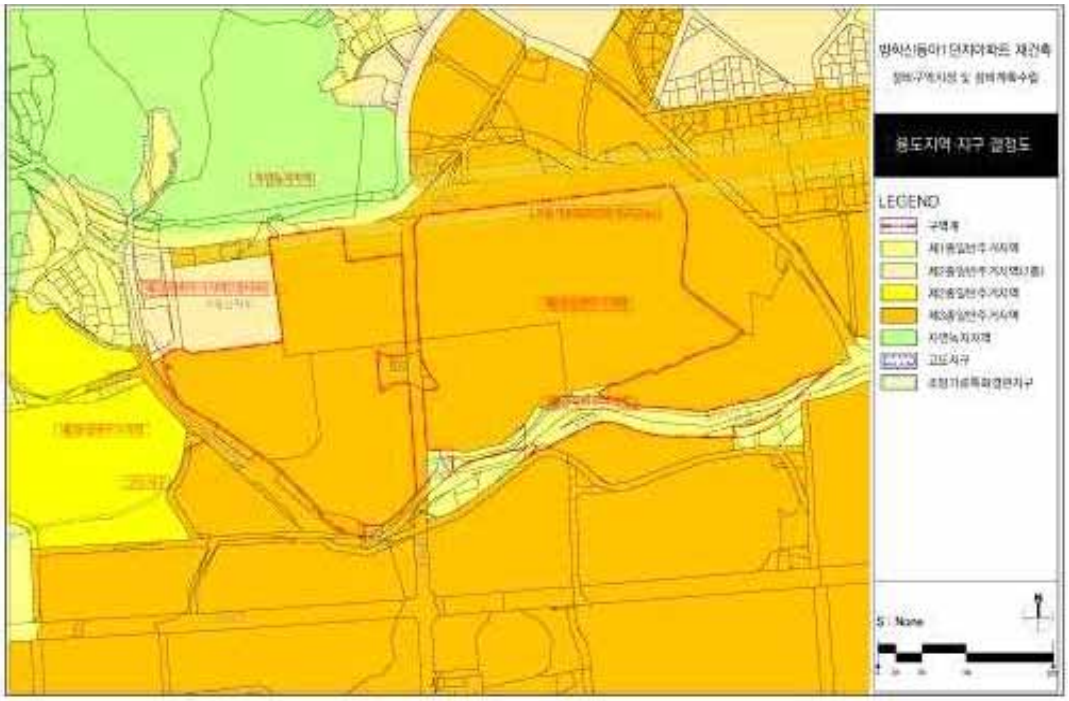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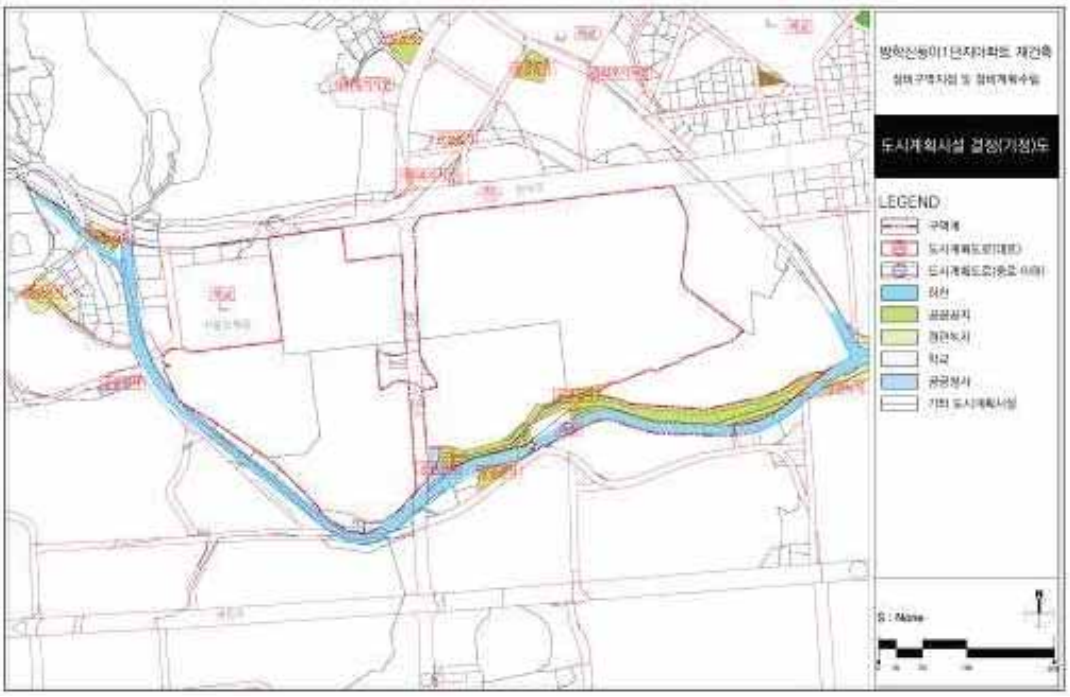
【 정비구역 결정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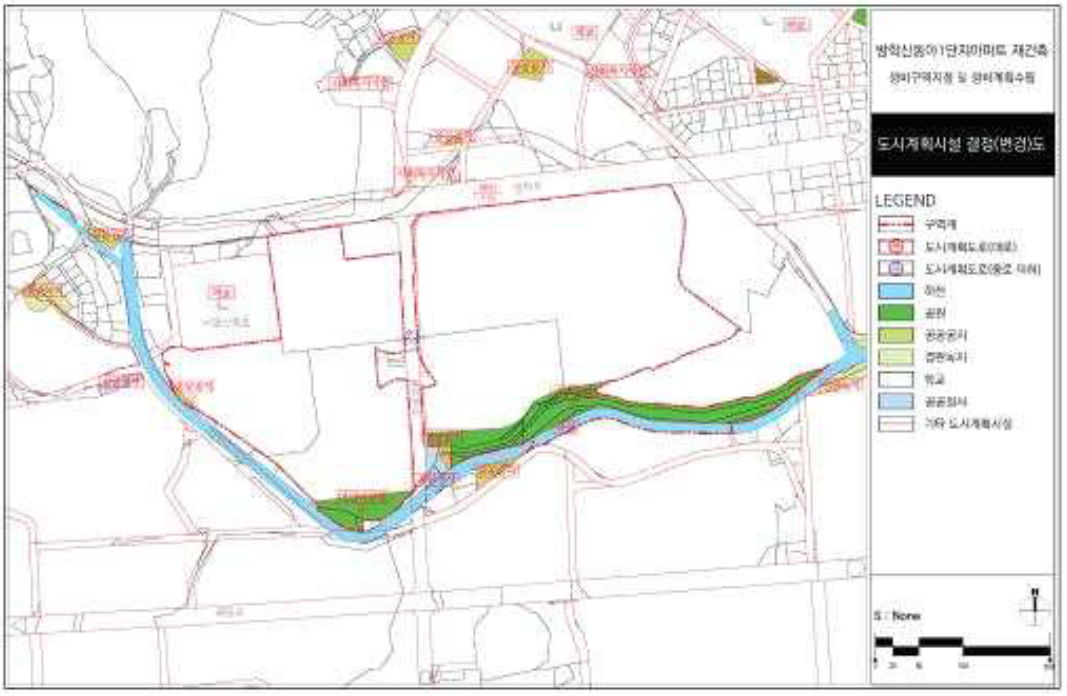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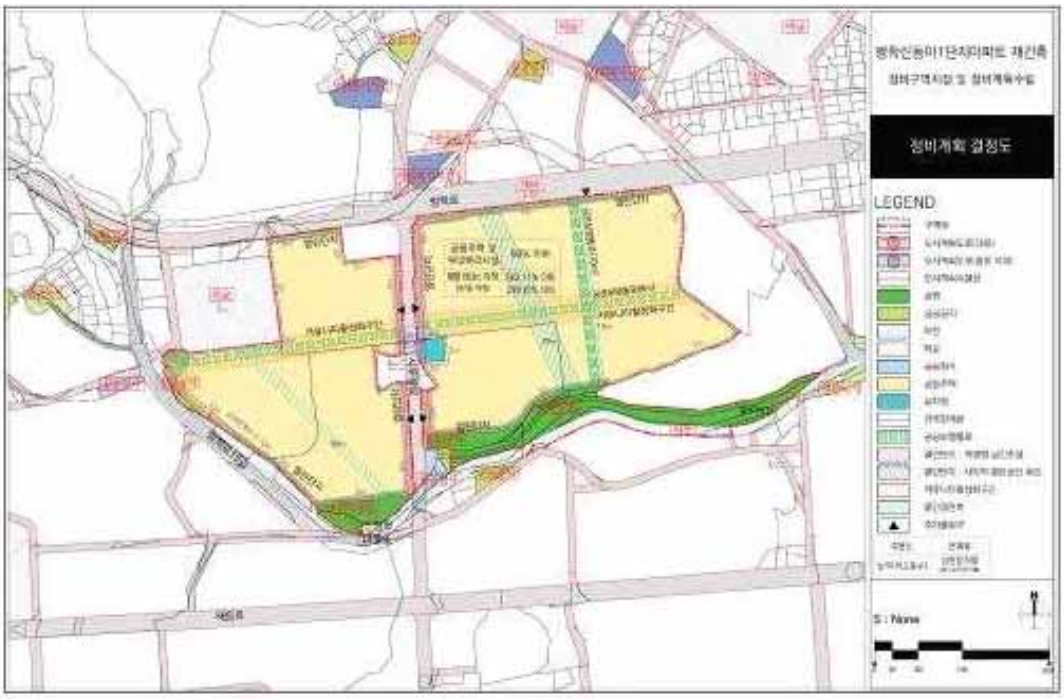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 정비계획 결정도 】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792호

종합건설사업자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이사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10. 2. ~ 2025. 10. 16.(14일간)

2. 처분사전통지 사항

연번	업 체 명 (대표)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예정된 처분내용	청문실시		처분 근거
						일시 및 장소	주재자	
1	㈜공감종합건설 (대표 김현재)	건축 공사업 01-4215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 196 , 602호(길동) (길동)	하도급대금(건설기계 대여대금) 미지급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2025.10.31.(금) 10:00 건설혁신담당관 청문실	담당 사무관 김문수	제82조 제1항 제8호
2	㈜공감종합건설 (대표 김현재)	건축 공사업 01-4215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 196 , 602호(길동) (길동)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2025.10.31.(금) 11:00 건설혁신담당관 청문실	담당 사무관 김문수	제82조 제1항 제8호

3.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담당관 ☏02)2133-8128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793호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시정명령)하고, 이 사실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이사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10. 2. ~ 2025. 10. 16.(14일간)

2. 처분대상 및 내용

업 체 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위반 법규	처분내용	처분 근거
㈜공감종합건설 (김현재)	건축공사업 01-4215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 196 , 602호(길동) (길동)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법 제34조 제2항	시정명령 2025. 10. 31.(금)까지 신림동 1432-23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세웅에게 교부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우리 시로 제출할 것.	법 제81조 제4호
㈜공감종합건설 (김현재)	건축공사업 01-4215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 196 , 602호(길동) (길동)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법 제34조 제2항	시정명령 2025. 10. 31.(금)까지 신림동 1432-23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신양하이텍금속산업㈜에게 교부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우리 시로 제출할 것.	법 제81조 제4호

3.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담당관 ☏02)2133-8128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802호

국가유산수리업등 신규 등록 공고

국가유산수리업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 신청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신규 등록 현황

업체명	수리업종 (등록번호)	법인번호	대표자 성 명	영업장 소재지	업체 연락처	수리 등록일 (신고일)
㈜명광문화재	보수단청업 (01-01-0026)	110111- 0932151	김지연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67길 2, 비2층 지-14호	02-2088-8669	'25.9.1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원담당관(☎ 02-2133-7920) 또는 문화유산보존과(☎ 02-2133-26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809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예고서를 소유자에게 2차례 송달하였으나 부재로 인해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④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①항 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10. 02. ~ 2025. 10. 15.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및 압류 내역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비고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007816303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47길 45-21(상계동, 공용)	수도요금	2022년 10월 등 15납기	15회	3,947,640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	압류예정일
		성 명	주민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47길 45-21(상계동, 공용)	김*선	200721-1****** (2회송달 부재)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449번지 25호 14통 4반	3,947,640	2025.6.4. 이후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소재석(02-3146-330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810호

반환기간 경과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제4항에 의거,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반환청구가 없는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10. 2. ~ 2025. 10. 28.

2.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82조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 별첨

4. 송달내용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 기간 내에 관련 규정에 의거 보관 목적, 보관 기간, 이행사항을 확인하셔서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간주하여 서울특별시 세입으로 귀속 조처됨을 알려 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방재시설과(☏02-6438-2416)로 문의 바랍니다.

공시송달 내역(반환기일 종료 후 5년 이상 경과 세입세출외현금)

현금종류	수납일자	적요	부서	납부자	반환기일	보관액(원)
기타보증금 (원인자부담금)	2022-08-12	중화펌프장신설공사 원인자부담금 정기예금 별단예금 전환	방재시설부	확인불가	2008-12-31 2005-07-09 2006-08-04 2010-04-30 2014-07-31 2014-07-31 2014-07-31 2015-06-30 2016-09-14 2017-09-30 2019-08-10 2020-08-10 2020-09-10 2022-08-12 2023-08-12	4,495,481
보관금 (환불)	2016-08-04 (2016. 6. 21.)	용두3 뱃물펌프장 신설공사 지장물이설비 환불금 No.96 - ㈜예스코 -공공예금에서 별단으로	방재시설부	㈜ 예스코	2016-06-29	11,975,700
보증금 (계약보증)	2019-02-01 (2017. 12. 19.)	청계천 생태환경 개선공사(2단계) 계약보증금 No.259	방재시설부	충정종합건설(주)	2017-01-04	2,011,950
보증금 (선금보증)	2011-06-10	이대동대문병원 부지 공원조성공사 선금보증금 반환 (강북보상센터) NO.3662	방재시설부	전문건설공제조합	2011-07-11	4,100,008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811호

도시관리계획(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특별계획구역⑧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에 의거 아파트지구(용도지구)로 최초 지정, 건설부 건축 4441-6149호(1977.3.29.)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02호(2008.6.12.)로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16호(2023.11.23.)로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17호(2023.11.23.)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특별계획구역⑧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입안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열람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특별계획구역⑧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미래공간담당관(☎02-2133-7623)
다. 열람내용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주요내용
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남구 압구정동, 청담동 일원	1,167,719.5	-	1,167,719.5	서고 제2023-217호 (2023.11.23)	-

2.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교통시설 : 변경

1) 도로 : 변경

▌도로 결정(변경) 조서

연번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1	기정	광로	2	18	40	주간선 도로	6,500 (369)	압구정동	포이동	일반도로	건고 제46호 (1976.04.07)	구역내(4구역) 5m 확폭, 중복결정: 중로1-C, 중로2-109
2	기정	대로	2	28	30~44	보조간선 도로	4,300 (2,557)	청담동 (광로14)	잠원동	일반도로	건고 제503호 (1969.08.27)	구역내(4구역) 5m 확폭
3	기정	대로	2	30	30	주간선 도로	6,717 (402)	압구정동	포이동 (광로27)	일반도로	건고 제503호 (1969.08.27)	-
4	기정	대로	2	63	30~65 (52)	주간선 도로	4,100 (584)	장충체육관	압구정동	일반도로	건고 제426호 (1978.12.29)	논현로 (동호대교)
5	기정	대로	3	71	25~27 (25)	보조간선 도로	4,900 (332)	압구정동	도곡동 (대로2-28)	일반도로	건고 제198호 (1971.04.07)	중복결정: 철도②,③
	변경	대로	3	71	25~27 (25)	보조간선 도로	4,900 (332)	압구정동	도곡동 (대로2-28)	일반도로	건고 제198호 (1971.04.07)	중복결정: 철도②,③ 광장②
6	기정	대로	3	A	10~30	특수 도로	280	압구정동 434	압구정동 378-1	보행자 전용도로	서고 제2025-136호 (2025.03.13.)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중로1-136, 중로2-289, 중로2-109, 연결녹지①, 하천①
7	기정	중로	1	2	16	국지도로	310	압구정동 434	중로2-109	일반도로	서고제2023-517호 (2023.11.23)	중복결정: 유수지①
8	기정	중로	1	4	21	국지도로	122	대로2-28	중로2-3	일반도로	서고제2023-517호 (2023.11.23)	-
9	기정	중로	1	6	23.5	국지도로	486	대로2-28	압구정 369-1	일반도로	서고제2023-517호 (2023.11.23)	-
10	기정	중로	1	10	20	국지도로	280	대로2-28	중로2-109	일반도로	서고제2023-517호 (2023.11.23)	도로 일부 입체결정 (지상권 설정)
11	기정	중로	2	1	18.5	국지도로	143	대로2-28	압구정 408	일반도로	서고제2023-517호 (2023.11.23)	-
12	기정	중로	2	3	15	국지도로	456	중로1-2	현대 백화점	일반도로	서고제2023-517호 (2023.11.23)	-
13	기정	중로	2	8	16.5	국지도로	420	대로2-28	중로2-109	일반도로	서고제2023-517호 (2023.11.23)	-
14	기정	중로	2	109	11~29.5	국지도로	4,100 (2,828)	신사동	영동교	일반도로	서고 제198호 (1971.04.07.)	중복결정: (2구역) 유수지①, 대로3-A, 소로1-A (4구역) 소공원B,C, 광로2-18, 중로1-C, (5구역) 소공원 B,C

연번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15	기정	중로	1	C	20~22	국지도로	117.3	압구정동 481	광로 2-18	지하 도로	서고제2025-503호 (2025.09.11)	중복결정: 소공원B, 광로2-18, 중로2-109
16	기정	중로	2	15	15	국지도로	50	중로2-109	압구정 414	일반도로	서고제2023-517호 (2023.11.23.)	-
17	기정	중로	3	5	12~15	국지도로	206	압구정 449	중로1-6	일반도로	서고제2023-517호 (2023.11.23.)	-
18	기정	중로	3	7	12	국지도로	246	중로1-6	중로2-8	일반도로	서고제2023-517호 (2023.11.23)	-
19	기정	중로	3	12	12	국지도로	67	대로2-28	압구정 490	일반도로	서고제2023-517호 (2023.11.23)	-
	변경	중로	3	12	12	국지도로	67	대로2-28	압구정 490	일반도로	서고제2023-517호 (2023.11.23)	선형조정 (가각 추가)
20	기정	중로	3	13	12	국지도로	141	대로3-71	청담 고등학교	일반도로	서고제2023-517호 (2023.11.23)	-
21	신설	중로	3	14	10	국지도로	60.5	중로3-13	대로2-28	일반도로	-	-
22	기정	소로	1	A	11.5	국지 도로	160	압구정동 392 일대	압구정동 392 일대	지하 도로	서고제2025-136호 (2025.03.13.)	중복결정: 중로2-109, 연결녹지①
23	기정	소로	1	14	10~12	국지도로	207	대로2-28	중로2-109	일반도로	서고제2023-517호 (2023.11.23)	-

※ ( )은 구역 내 해당사항임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3-71	대로 3-71	• 일부 구간 중복결정	• 선릉로(대로 3-71) 하부 지하광장 설치를 위한 일부구간 중복결정
중로 3-12	중로 3-12	• 선형 조정 (가각 추가)	• 압구정로에서 중로3-12 진입을 위한 도로 가각 추가
-	중로 3-14	• 도로 신설 - 폭원 : 10m - 연장 : 60.5m	• 압구정로와 선릉로 교차구간 일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로 신설

2) 주차장 : 변경없음

3) 철도 : 변경

▌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철도	지하철 역사 (3호선 압구정역)	압구정동 429-1 일원	5,800.0 (2,506.0)	서고 287호 (1981.07.30)	중복결정 : 대로 2-63 대로 2-30
변경	②	철도	지하철 역사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	청담동 84 일원	6,488 (2,489.0)	건고 87호 (2005.04.16)	중복결정 : 대로 3-71 광장②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변경	③	철도	일반철도 (분당선)	왕십리역	삼성동 172-20	6,830 (251)	190,795 (4,227)	건고 6호 (2007.01.18)	중복결정 : 대로 3-71 광장②

※ ( )의 연장 및 면적은 구역 내 해당사항임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②	철도	• 일부 구간 중복결정 - 중복결정 면적 : 872.8㎡	• 선릉로(대로 3-71) 하부 지하광장 설치를 위한 일부 구간 중복결정
③	철도	• 일부 구간 중복결정 - 중복결정 면적 : 233.5㎡	• 선릉로(대로 3-71) 하부 지하광장 설치를 위한 일부 구간 중복결정

(이 하 여 백)

나. 도시공간시설 : 변경

1) 녹지 : 변경없음

2) 공원 : 변경없음

3) 광장 : 변경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광장 157호	교통광장	한남대교남단 (한강둔치일원)	216,218 (8,376)	서고 제1997-200호 (1997.06.17)	중복결정 : 녹지① (중복면적:2,348㎡)
신설	②	광장 (압구정로데오역)	지하광장	압구정로데오역	2,045.6	-	중복결정 : 대로3-71 철도②,③

※ ( ) 안은 구역 내 해당사항임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②	광장 (압구정로데오역)	• 광장 신설 - 면적 : 2,045.6㎡	• 지하철역 및 지상공간을 연결하는 시민 여가 · 휴게공간 조성

4) 공공공지 : 변경없음

다. 공공 · 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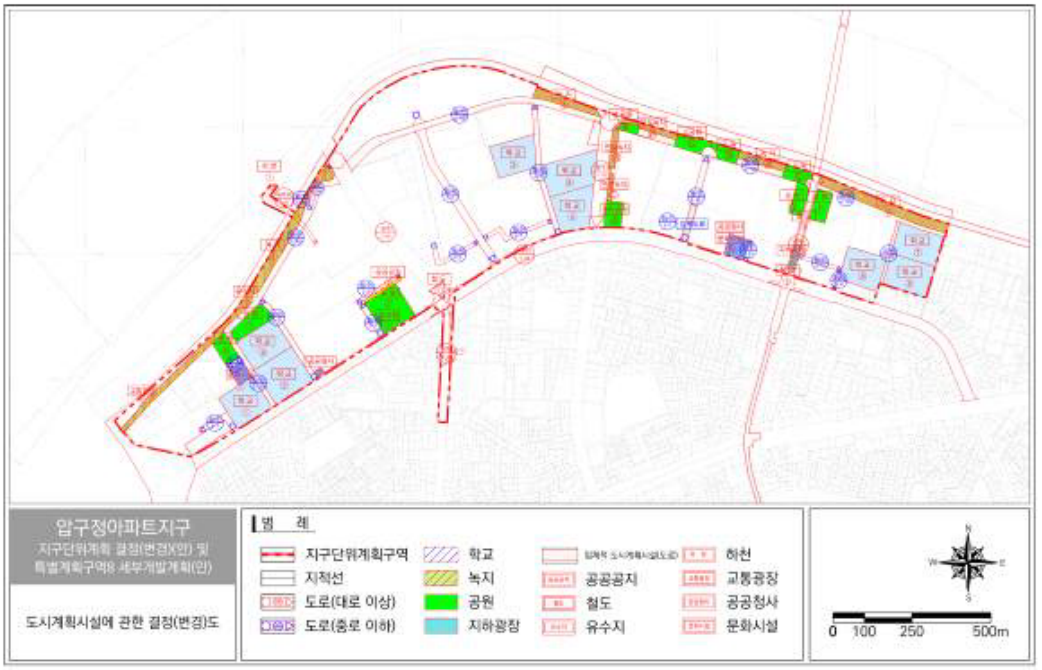
라. 방재시설 : 변경없음

(이 하 여 백)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 생략(열람도서 참조)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 생략(열람도서 참조)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변경)

<table>
<tr><th colspan="3" rowspan="2">구분</th><th colspan="3">계획내용</th></tr>
<tr><th colspan="2">기정</th><th>변경</th></tr>
<tr><td colspan="3">위치</td><td colspan="2">• 압구정동 494일원</td><td>• 좌동</td></tr>
<tr><td colspan="3">구역면적</td><td colspan="2">• 20,363.0㎡</td><td>• 20,362.9㎡
(오기 정정)</td></tr>
<tr><td colspan="3">용도지역 · 지구</td><td colspan="2">• 제3종일반주거지역 / 특화경관지구</td><td>• 좌동</td></tr>
<tr><td colspan="3">획지계획</td><td colspan="2">• 획지 H4, I2</td><td>• 획지 G3, I2
(4구역 결정고시에 따른 획지번호 변경)</td></tr>
<tr><td colspan="3">기반시설계획</td><td colspan="2">•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압구정로변 차로 확보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참조)</td><td>• 좌동</td></tr>
<tr><td rowspan="2">용도계획</td><td>불허용도</td><td>획지 H4 ,I2</td><td colspan="2">•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업무시설(1층에 한함), 총포판매소, 장의사, 게임제공업소,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다중이용업소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공장 •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 창고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 단, 위용도 중 시(市)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외하며, [별표1]의 운영기준 적용</td><td>• 좌동</td></tr>
<tr><td>권장용도</td><td>획지 H4 ,I2</td><td>전층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제외)
• 제1 · 2종 근린생활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사회복지시설
• 청소년 수련시설
•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td><td>저층부(1~2층)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사무소, 출판사 등 일반 업무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서점
• 판매시설</td><td>• 좌동</td></tr>
<tr><td rowspan="2">밀도계획</td><td>건폐율</td><td>획지 H4 ,I2</td><td colspan="2">• 50% 이하</td><td>• 50% 이하
※ 창의·혁신 선정후 특별건축구역(건축심의) 지정시 최대 60% 이내 결정</td></tr>
<tr><td>용적률</td><td>획지 H4 ,I2</td><td colspan="2">• 기준(허용)용적률 : 250% 이하
• 상한 용적률 : 법적 용적률 2배 이하</td><td>획지 G3
• 기준(허용)용적률 : 250% 이하
• 상한 용적률 : 법적 용적률 2배 이하
※ 창의·혁신 선정후 (결과 56.1% 이내) 특별건축구역(건축심의) 지정시 최종용적률 부여
획지 I2
• 기준(허용)용적률 : 250% 이하
• 상한 용적률 :</td></tr>
</table>

구분			계획내용	
			기정	변경
				법적 용적률 2배 이하 ※ 창의·혁신 선정후 (결과 55.8% 이내) 특별건축구역(건축심의) 지정시 최종용적률 부여
	높이	획지 H4 ,I2	• 5층 이하	• 60m 이하
건축선 및 대지내 공지	건축선	획지 H4 ,I2	• 건축한계선 – 선릉로(대로 3-71) 10m, 압구정로 6m, 이면부 3m	• 건축한계선 -선릉로(대로 3-71) 10m, 압구정로 6m, 신설도로(중로 3-14) 2m, 그 외 이면도로 3m
	대지내 공지	획지 H4 ,I2	• 본 지구단위계획 "3-4. 건축물 배치·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에 따름	• 좌동 ※ 획지G3 서측도로(중로3-12)변 보도부속형 전면공지(3m)로 조성 ※ 획지I2 신설도로(중로3-14)변 보도부속형 전면공지(2m)로 조성
건축물 배치 및 형태	배치 및 형태		• 테마별 색상 적용 및 입면구조 분절, 창호 변화를 통해 개성있는 구성 연출 • 복합 건축물의 경우 저층부는 중층부 및 고층부와 구분되는 안정감 있는 재료 사용 및 필로티 조성을 통해 개방감 확보	• 좌동
	야간경관 특화구간		–	• 압구정로, 선릉로변 일부 구간 설치 • 본 지구단위계획 "3-4. 건축물 배치·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에 따름
	기타 외관요소		• 옥외설비, 담장의 설치, 광고물 설치제한 : 본 지구단위계획 "3-4. 건축물 배치·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에 따름	• 좌동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공공기여 총량		–	• 공공기여 기준 대지면적 : 18,694.5㎡ • 공공기여 비율 : 10.25% ※ 공시지가의 2배 적용 (공시지가: 47,940,000원/㎡)
	공공시설, 기반시설 및 설치비용		–	• 도로 (토지) • 도시계획시설(지하광장) 설치제공 • 청담고 부지 내 공공시설등(디자인센터 등 문화복합시설) 설치제공
창의·혁신 디자인 세부 계획	창의·혁신 디자인 적용에 따른 계획		–	• 건축물 형태 및 외관 계획 ※ 창의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 참고 (시행지침)
	공공성 확보		–	• 녹지환경 개선 및 활성화 • 지역 기여 프로그램·시설 도입 • 전망·휴식 등을 위한 공간 조성 • 공공공간 및 공유공간의 연결

구분	계획내용	
	기정	변경
		※ 창의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 참고 (시행지침)
교통처리계획	• 차량출입불허구간, 단지 내 주차 및 차량동선, 단지 내 보행동선 : 본 지구단위계획 "④-1.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에 따름	• 좌동 ※ 획지 G3 : 선릉로변 차량진출입 일부구간 허용 ※ 획지 I2 : 6구역 내 중로 3-13의 개설 전까지 한시적으로 선릉로변 차량진출입 허용
기타사항	• 지역여건, 상가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市)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획지H4, I2 주거용도 허용여부 및 비율 결정 • 높이 및 건폐율 관련 사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공공기여 계획, 창의적인 건축계획 등과 연계하여 시(市)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완화 가능 • 역세권사업 허용 : 역세권 사업 시행 시 개별 역세권 사업관련 기준 적용	• 좌동 (획지번호만 변경)

(이 하 여 백)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밀도 계획	건폐율	획지 G3,I2	• 개발규모 완화조건 추가 명기	• 서울시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사업 진행에 따른 특례사항 반영
	용적률	획지 G3,I2		
	높이	획지 G3,I2	• 개발규모 완화조건 추가 명기	• 서울시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사업 진행에 따라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한 완화사항 반영
건축선 및 대지내 공지	건축선		• 이면부 3m → 이면도로 3m • 신설도로(중로 3-14) 2m	• 서울시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사업 진행에 따른 건축선 재조정
	대지 내 공지		• 획지 G3 서측도로(중로3-12)변 보도부속형 전면 공지 조성 • 획지 I2 신설도로(중로3-14)변 보도부속형 전면공지(2m)로 조성	• 서울시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사업 진행에 따른 사항 반영
건축물 배치 및 형태	야간경관 특화구간		• 야간경관 특화구간 항목 추가	• 미디어파사드 등 다양한 조명방식을 활용하여 압구정로변 특화상권 및 청담명품거리와 연속되는 경관거점 조성 및 다채로운 도시경관 창출 • 주거지역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특화구간 설정 및 관리
공공 기여에 관한 사항	공공기여 총량		• 공공기여 기준 대지면적 및 공공기여율 명기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에 따른 공공기여 비율(순부담) 명기
	공공시설, 기반시설 및 설치비용		• '도로' 항목 추가 • '지하광장' 항목 추가 • '청담고 부지 내 공공시설등' 항목 추가	•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을 위한 공공기여 항목 명기
창의·혁신디자인 세부계획			• 창의·혁신디자인 세부계획 (창의혁신 디자인 적용에 따른 계획, 공공성 확보 계획) 항목 추가	• 향후 창의·혁신디자인 이행담보를 위한 건축물 배치 및 형태 계획 설정
교통처리계획			• 선릉로변 차량진출입 일부구간 허용	• 지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영향 최소화 및 주변 정비구역 개발시점을 고려, 선릉로변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일부 허용

Ⅱ.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안) : 생략(열람도서 참조)

Ⅲ.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안)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특별계획구역 8	압구정동 494일원	20,362.9	-	20,362.9	서고 제2023-217호 (2023.11.23)	갤러리아백화점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2.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교통시설 : 변경

1) 도로 : 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연번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1	기정	대로	3	71	25~27 (25)	보조간선 도로	4,900 (179.5)	압구정동	도곡동 (대로2-28)	일반도로	건고 제198호 (1971.04.07.)	중복결정: 철도②,③
	변경	대로	3	71	25~27 (25)	보조간선 도로	4,900 (179.5)	압구정동	도곡동 (대로2-28)	일반도로	건고 제198호 (1971.04.07.)	중복결정: 철도②,③ 광장②
2	기정	중로	3	12	12	국지도로	67	대로2-28	압구정 490	일반도로	서고제2023-517호 (2023.11.23)	-
	변경	중로	3	12	12	국지도로	67	대로2-28	압구정 490	일반도로	서고제2023-517호 (2023.11.23)	선형조정 (가각 추가)
3	기정	중로	3	13	12	국지도로	141	대로3-71	청담 고등학교	일반도로	서고제2023-517호 (2023.11.23)	-
4	신설	중로	3	14	10	국지도로	60.5	중로3-13	대로2-28	일반도로	-	-

※ ( )은 특별계획구역 내 해당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3-71	대로 3-71	• 일부구간 중복결정	• 선릉로(대로 3-71) 하부 지하광장 설치를 위한 일부 구간 중복결정
중로 3-12	중로 3-12	• 선형 조정 (가각 추가)	• 압구정로에서 중로3-12 진입을 위한 도로 가각 추가
-	중로 3-14	• 도로 신설 - 폭원 : 10m - 연장 : 60.5m	• 압구정로와 선릉로 교차구간 일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2) 주차장 : 변경없음

3) 철도 : 변경

▌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변경	②	철도	지하철 역사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	청담동 84 일원	6,488 (2,489.0)	건고 87호 (2005.04.16)	중복결정 : 대로 3-71 광장②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변경	③	철도	일반철도 (분당선)	왕십리역	삼성동 172-20	6,830 (251)	190,795 (4,227)	건고 6호 (2007.01.18)	중복결정 : 대로 3-71 광장②

※ ( )은 특별계획구역 내 해당사항임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②	철도	• 일부 구간 중복결정 - 중복결정 면적 : 872.8㎡	• 선릉로(대로 3-71) 하부 지하광장 설치를 위한 일부구간 중복결정
③	철도	• 일부 구간 중복결정 - 중복결정 면적 : 233.5㎡	• 선릉로(대로 3-71) 하부 지하광장 설치를 위한 일부구간 중복결정

(이 하 여 백)

나. 도시공간시설 : 변경

1) 녹지 : 변경없음

2) 공원 : 변경없음

3) 광장 : 변경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②	광장 (압구정로데오역)	지하광장	압구정로데오역	2,045.6 (981.2)	-	중복결정 : 대로3-71 철도②,③

※ ( )은 특별계획구역 내 해당사항임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②	광장 (압구정로데오역)	• 광장 신설 - 면적 : 2,045.6㎡	• 지하철역 및 지상공간을 연결하는 시민 여가·휴게공간 조성

4) 공공공지 : 변경없음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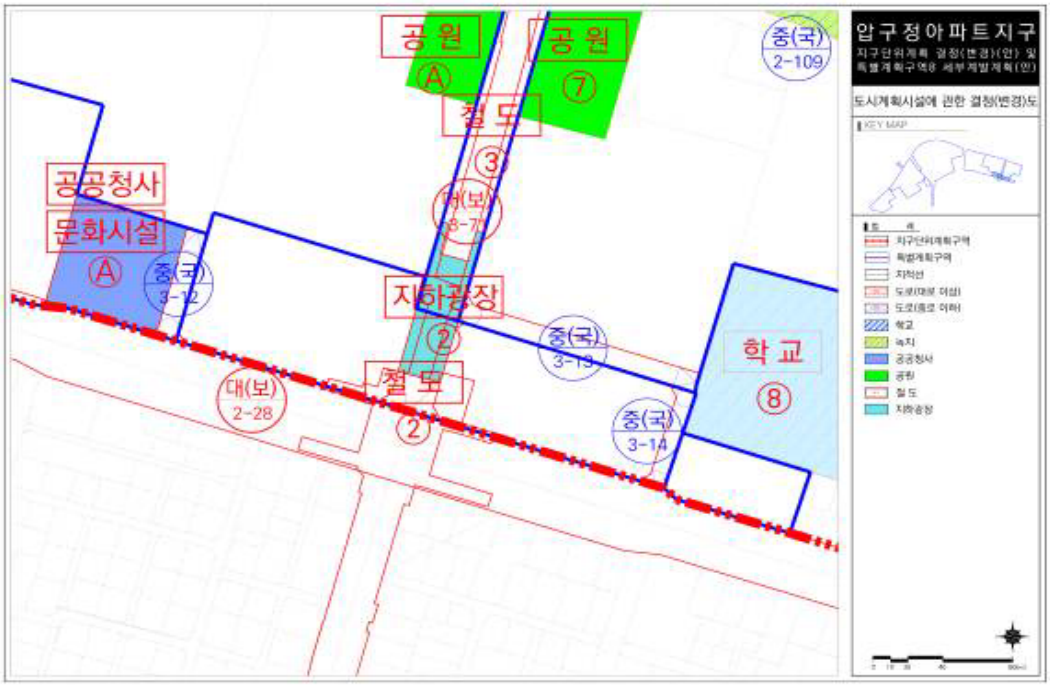
라. 방재시설 : 변경없음

(이 하 여 백)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3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 건축물, 건축물 배치 · 형태 및 경관계획,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안) : 생략(열람도서 참조)

라.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

마. 기타사항

세부내용, 도면 등의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열람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누리집(http://www.seoul.go.kr)→서울소식→공고→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에서도 확인가능

- 본 열람내용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미래공간담당관(☎02-2133-76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813호

종합공사시공업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있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 등으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5.10.2. ~ 2025.10.16.(14일간)

2. 처분 사전통지 사항

업 체 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예정된 처분내용	청문실시		처분 근거
					일시 및 장소	주재자	
㈜더에이알티 (정우진)	건축 공사업 01-4625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482, 2층(독산동)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2025.11.7.(금) 10:00 건설혁신담당관 청문실	담당 사무관 김문수	법 제82조 제1항

3.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19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815호

반환기한 경과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권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4조(세입세출외현금의 귀속)」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 장기보관금을 반환처리하고자 하나, 소재지 불명 ·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명: 반환기한 경과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지방재정법 제82조(금권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4조(세입세출외현금의 귀속)

3. 공시송달 대상

발생일자	내 용	반납 대상액	공고사유
2016.04.27	취업후 학자금 과오납분 환급(11,12월)	137,000	소재지 및 대상자 불명
2016.04.27	취업후 학자금 과오납분 환급	92,540	소재지 및 대상자 불명

4. 공고기간: 공고일(서울시 시보 게재일)로부터 14일간

5. 유의사항
   가. 공고내용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서울특별시청 인력개발과 후생노무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 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인력개발과 후생노무팀
   - 연 락 처: 02-2133-5772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817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지방세징수법」 제33조,「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9조에 근거하여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예고서를 소유자 거주지(주민등록표 등 · 초본상) 및 본점소재지(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10. 2. ~ 2025. 10. 16.(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공시송달 공고사항 : 체납내역 및 압류에 관한 사항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 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 제5항을 준용하여 송달받을 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는 마스킹 처리.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등기우편송달내역
		과 목	체납납기	체납횟수	체납액	예고서상 납부기간	
000259521	중구 동호로17길 143-1	수도 요금	2023-11 ~2025-05	11회	24,380원	2025.9.11 ~ 2025.09.23 2025. 9.25~ (당초 압류예정일)	‣등기번호 : 1152101231864 ‣반송사유 : 폐문부재

압류물건	압류물건 소재지	압류물건 소유자			압류액	공시송달 이후 압류예정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지		
부동산 (건물)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32-1324	김*수	530315-2*****	서울특별시 마포구 손기정로4안길 15 지하층1호	24,380	2025-10-17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등기우편 송달내역
		과 목	체납납기	체납횟수	체납액	예고서상 납부기간	
026285455	중구 동호로15가길 37	수도 요금	2022-09 ~2025-07	18회	39,960원	2025.9.11 ~ 2025.09.23 2025. 9.25~ (당초 압류예정일)	‣등기번호 : 1152101231865 ‣반송사유 : 수취인 불명

압류물건	압류물건 소재지	압류물건 소유자			압류액	공시송달 이후 압류예정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지		
부동산 (토지)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32-263	고*림	540206-1******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45길 44-4	39,960	2025-10-17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등기우편 송달내역	
		과 목	체납납기	체납횟수	체납액	예고서상 납부기간		
041464004	중구 동호로11마길 20-3, 102호	수도 요금	2023-09 ~2025-07	12회	26,740원	2025.9.11 ~ 2025.09.23 2025. 9.25~ (당초 압류예정일)	‣ 등기번호 : 1152101231900 ‣ 반송사유 : 폐문부재	
압류물건	압류물건 소재지	압류물건 소유자					압류액	공시송달 이후 압류예정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지				
부동산 (집합건물)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32-501 102호	이*원	610408-1******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26번길 25-22 203			26,740	2025-10-17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등기우편 송달내역	
		과 목	체납납기	체납횟수	체납액	예고서상 납부기간		
041464013	중구 동호로11마길 20-3, 101호	수도 요금	2024-03 ~2025-07	9회	18,030원	2025.9.11 ~ 2025.09.23 2025. 9.25~ (당초 압류예정일)	‣ 등기번호 : 1152101231900 ‣ 반송사유 : 폐문부재	
압류물건	압류물건 소재지	압류물건 소유자					압류액	공시송달 이후 압류예정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지				
부동산 (집합건물)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32-501 101호	이*원	610408-1******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26번길 25-22 203			18,030	2025-10-17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등기우편 송달내역	
		과 목	체납납기	체납횟수	체납액	예고서상 납부기간		
041464031	중구 동호로11마길 20-3, 201호	수도 요금	2022-07 ~2025-07	19회	199,130원	2025.9.11 ~ 2025.09.23 2025. 9.25~ (당초 압류예정일)	‣ 등기번호 : 1152101231900 ‣ 반송사유 : 폐문부재	
압류물건	압류물건 소재지	압류물건 소유자					압류액	공시송달 이후 압류예정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지				
부동산 (집합건물)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32-501 201호	이*원	610408-1******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26번길 25-22 203			199,130	2025-10-17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등기우편 송달내역	
		과 목	체납납기	체납횟수	체납액	예고서상 납부기간		
041464068	중구 동호로11마길 20-3, 402호	수도 요금	2027-07 ~2025-07	19회	185,350원	2025.9.11 ~ 2025.09.23 2025. 9.25~ (당초 압류예정일)	‣ 등기번호 : 1152101231865 ‣ 반송사유 : 수취인 불명	
압류물건	압류물건 소재지	압류물건 소유자					압류액	공시송달 이후 압류예정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지				
부동산 (집합건물)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32-501 402호	이*원	610408-1******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26번길 25-22 203			538,930	2025-10-17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등기우편 송달내역	
		과 목	체납납기	체납횟수	체납액	예고서상 납부기간		
026285455	용산구 신흥로27길 6-9	수도 요금	2023-07 ~2025-05	13회	538,930원	2025.9.11 ~ 2025.09.26 2025. 9.29~ (당초 압류예정일)	‣ 등기번호 : 1152101231880 ‣ 반송사유 : 주소불명	
압류물건	압류물건 소재지	압류물건 소유자					압류액	공시송달 이후 압류예정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지				
부동산 (건물)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1-1165	최*석	801208-1******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42길 27-4			538,930	2025-10-17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등기우편 송달내역	
		과 목	체납납기	체납횟수	체납액	예고서상 납부기간		
026287188	용산구 신흥로32길 33	수도 요금	2022-07 ~2025-07	19회	42,180원	2025.9.11 ~ 2025.09.26 2025. 9.29~ (당초 압류예정일)	‣ 등기번호 : 1152101231882 ‣ 반송사유 : 폐문부재	
압류물건	압류물건 소재지	압류물건 소유자					압류액	공시송달 이후 압류예정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지				
부동산 (건물)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1-355	임*희	640825-2******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216번길 50 301호			42,180	2025-10-17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등기우편 송달내역
		과 목	체납납기	체납횟수	체납액	예고서상 납부기간	
026294402	용산구 신흥로 80-4	수도 요금	2027-07 ~2025-07	19회	41,170원	2025.9.11 ~ 2025.09.26 2025. 9.29~ (당초 압류예정일)	‣등기번호 : 11521012318 84 ‣반송사유 : 폐문부재

압류물건	압류물건 소재지	압류물건 소유자			압류액	공시송달 이후 압류예정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지		
부동산 (건물)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15-17	사회적협동조합에이치에이치**해방촌	270151-0******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 80-4, 지층	41,170	2025-10-17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등기우편 송달내역
		과 목	체납납기	체납횟수	체납액	예고서상 납부기간	
026294411	용산구 신흥로 80-4	수도 요금	2027-07 ~2025-07	19회	147,410원	2025.9.11 ~ 2025.09.26 2025. 9.29~ (당초 압류예정일)	‣등기번호 : 11521012318 84 ‣반송사유 : 폐문부재

압류물건	압류물건 소재지	압류물건 소유자			압류액	공시송달 이후 압류예정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지		
부동산 (건물)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15-17	사회적협동조합에이치에이치**해방촌	270151-0******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 80-4, 지층	147,410	2025-10-17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등기우편 송달내역
		과 목	체납납기	체납횟수	체납액	예고서상 납부기간	
026297660	용산구 신흥로11길 43-4	수도 요금	2023-05 ~2025-07	14회	64,070원	2025.9.11 ~ 2025.09.26 2025. 9.29~ (당초 압류예정일)	‣등기번호 : 111521012318 70 ‣반송사유 : 폐문부재

압류물건	압류물건 소재지	압류물건 소유자			압류액	공시송달 이후 압류예정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지		
부동산 (건물)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20-5	사회적협동조합***과함께	210151-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맨내로 158-11 203호	64,070	2025-10-17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등기우편 송달내역
		과 목	체납납기	체납횟수	체납액	예고서상 납부기간	
026298324	용산구 신흥로11나길 19,	수도 요금	2023-07 ~2025-07	13회	163,670원	2025.9.11 ~ 2025.09.26 2025. 9.29~ (당초 압류예정일)	‣등기번호 : 1152101231887 ‣반송사유 : 수취인 불명

압류물건	압류물건 소재지	압류물건 소유자			압류액	공시송달 이후 압류예정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지		
부동산 (건물)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33-18	사회적협동조합**	270151-0******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11나길 19	163,670	2025-10-17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등기우편 송달내역
		과 목	체납납기	체납횟수	체납액	예고서상 납부기간	
026302269	용산구 신흥로3나길 10	수도 요금	2022-07 ~2025-07	19회	42,180원	2025.9.11 ~ 2025.09.26 2025. 9.29~ (당초 압류예정일)	‣등기번호 : 1152101231894 ‣반송사유 : 폐문부재

압류물건	압류물건 소재지	압류물건 소유자			압류액	공시송달 이후 압류예정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지		
부동산 (건물)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41-13 박*미 지분	박*미	581003-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로7번길 26-2	42,180	2025-10-17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등기우편 송달내역
		과 목	체납납기	체납횟수	체납액	예고서상 납부기간	
026303713	용산구 신흥로 43	수도 요금	2022-07 ~2025-07	19회	365,410원	2025.9.11 ~ 2025.09.26 2025. 9.29~ (당초 압류예정일)	‣등기번호 : 111521012318888 ‣반송사유 : 폐문부재

압류물건	압류물건 소재지	압류물건 소유자			압류액	공시송달 이후 압류예정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지		
부동산 (토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38-10	오*근	470106-1*****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 43	365,410	2025-10-17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등기우편 송달내역
		과 목	체납납기	체납횟수	체납액	예고서상 납부기간	
026306786	용산구 소월로30길 53-3	수도 요금	2022-11 ~2025-07	17회	35,780원	2025.9.11 ~ 2025.09.26 2025. 9.29~ (당초 압류예정일)	‣등기번호 : 1152101231889 ‣반송사유 : 폐문부재

압류물건	압류물건 소재지	압류물건 소유자			압류액	공시송달 이후 압류예정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지		
부동산 (토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5-1503	김*정	821210-2*****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47가길 27	35,780	2025-10-17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등기우편 송달내역
		과 목	체납납기	체납횟수	체납액	예고서상 납부기간	
026308130	용산구 신흥로 23	수도 요금	2023-09 ~2025-07	12회	26,110원	2025.9.11 ~ 2025.09.26 2025. 9.29~ (당초 압류예정일)	‣등기번호 : 1152101231890 ‣반송사유 : 폐문부재

압류물건	압류물건 소재지	압류물건 소유자			압류액	공시송달 이후 압류예정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지		
부동산 (토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5-760	최*안	731111-2*****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77길 28-4	26,110	2025-10-17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등기우편 송달내역
		과 목	체납납기	체납횟수	체납액	예고서상 납부기간	
026308455	용산구 신흥로3길 17, 302호	수도 요금	2023-11 ~2025-07	11회	31,470원	2025.9.11 ~ 2025.09.26 2025. 9.29~ (당초 압류예정일)	‣등기번호 : 1152101231891 ‣반송사유 : 폐문부재

압류물건	압류물건 소재지	압류물건 소유자			압류액	공시송달 이후 압류예정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지		
부동산 (집합건물)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43-7 302호	김*원	771205-2*****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3길 17 302호	31,470	2025-10-17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등기우편 송달내역
		과 목	체납납기	체납횟수	체납액	예고서상 납부기간	
038254918	용산구 신흥로7길 32, 1층 1호	수도 요금	2023-03 ~2025-07	15회	69,390원	2025.9.11 ~ 2025.09.26 2025. 9.29~ (당초 압류예정일)	‣등기번호 : 1152101231899 ‣반송사유 : 폐문부재

압류물건	압류물건 소재지	압류물건 소유자			압류액	공시송달 이후 압류예정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지		
부동산 (건물)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36-13	사회적협동조합**	270151-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맨내로 158-11 3층	69,390	2025-10-17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등기우편 송달내역
		과 목	체납납기	체납횟수	체납액	예고서상 납부기간	
038254927	용산구 신흥로7길 32, 1층 2호	수도 요금	2023-03 ~2025-07	15회	55,180원	2025.9.11 ~ 2025.09.26 2025. 9.29~ (당초 압류예정일)	‣등기번호 : 1152101231899 ‣반송사유 : 폐문부재

압류물건	압류물건 소재지	압류물건 소유자			압류액	공시송달 이후 압류예정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지		
부동산 (건물)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36-13	사회적협동조합**	270151-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맨내로 158-11 3층	55,180	2025-10-17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등기우편 송달내역
		과 목	체납납기	체납횟수	체납액	예고서상 납부기간	
038254936	용산구 신흥로7길 32, 2층 1호	수도 요금	2023-03 ~2025-07	15회	55,270원	2025.9.11 ~ 2025.09.26 2025. 9.29~ (당초 압류예정일)	‣등기번호 : 1152101231899 ‣반송사유 : 폐문부재

압류물건	압류물건 소재지	압류물건 소유자			압류액	공시송달 이후 압류예정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지		
부동산 (건물)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36-13	사회적협동조합**	270151-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맨내로 158-11 3층	55,270	2025-10-17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등기우편 송달내역	
		과 목	체납납기	체납횟수	체납액	예고서상 납부기간		
038254945	용산구 신흥로7길 32, 2층 2호	수도 요금	2023-03 ~2025-07	15회	55,170원	2025.9.11 ~ 2025.09.26 2025. 9.29~ (당초 압류예정일)	‣등기번호 : 1152101231899 ‣반송사유 : 폐문부재	
압류물건	압류물건 소재지	압류물건 소유자					압류액	공시송달 이후 압류예정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지				
부동산 (건물)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36-13	사회적협동조합**	270151-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맨내로 158-11 3층			55,170	2025-10-17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등기우편 송달내역	
		과 목	체납납기	체납횟수	체납액	예고서상 납부기간		
038254963	용산구 신흥로7길 32, 1층 2호 일반용	수도 요금	2023-03 ~2025-07	15회	33,300원	2025.9.11 ~ 2025.09.26 2025. 9.29~ (당초 압류예정일)	‣등기번호 : 1152101231899 ‣반송사유 : 폐문부재	
압류물건	압류물건 소재지	압류물건 소유자					압류액	공시송달 이후 압류예정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지				
부동산 (건물)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36-13	사회적협동조합**	270151-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맨내로 158-11 3층			33,300	2025-10-17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등기우편 송달내역	
		과 목	체납납기	체납횟수	체납액	예고서상 납부기간		
038254972	용산구 신흥로7길 32, 1층 1호 일반용	수도 요금	2023-03 ~2025-07	15회	121,220원	2025.9.11 ~ 2025.09.26 2025. 9.29~ (당초 압류예정일)	‣등기번호 : 1152101231899 ‣반송사유 : 폐문부재	
압류물건	압류물건 소재지	압류물건 소유자					압류액	공시송달 이후 압류예정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지				
부동산 (건물)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36-13	사회적협동조합**	270151-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맨내로 158-11 3층			121,220	2025-10-17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등기우편 송달내역
		과 목	체납납기	체납횟수	체납액	예고서상 납부기간	
040357014	용산구 신흥로29길 18, 301호	수도 요금	2024-05 ~2025-07	8회	132,560원	2025.9.11 ~ 2025.09.26 2025. 9.29~ (당초 압류예정일)	‣등기번호 : 1152101231893 ‣반송사유 : 폐문부재

압류물건	압류물건 소재지	압류물건 소유자			압류액	공시송달 이후 압류예정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지		
부동산 (집합건물)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9-7 301호	이*영	991018-2*****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29길 18 301호	132,560	2025-10-17

3.「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재산압류예고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같은 법」 제31조 제2항에 “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에는 고지서가 도달한 날” 을 납부기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송달의 효력 발생일(2025. 10. 16.)이 납부기한임을 알려드립니다.

※ 압류예정일 전 체납액을 납부하실 의사가 있으신 경우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신용현 주무관(☎ 02-3146-2115)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821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예고서를 소유자에게 주민등록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④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①항 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10. 2. ~ 2025. 10. 16.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비고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026331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85가길 31(서계동 33-170)	수도요금	2023. 5납기 등 14납기	14회	1,926,530원	
026330244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73길 91-5(서계동 33-208)	수도요금	2022. 9납기 등 16납기	16회	2,510,700원	

나. 압류 내역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번호 (불가사유)	주 소		
부동산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33-170 토지, 건물	김○례	601205-2****** (등기번호115210123146 5 폐문부재) (등기번호115210226143 4 폐문부재)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동로 157, 101동 301호(창포동, 금호어울림아파트)	1,926,530원	2025. 10. 17. 이후
부동산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33-208 토지, 건물	이○희	520123-2****** (등기번호115210123146 6 폐문부재) (등기번호115210226143 5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73길 91-5(서계동)	2,510,700원	2025. 10. 17. 이후

3.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이 공고문에 대해 의견제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동 법 제27조에 따라 공고기간 내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 혹은 유선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의견제출기관 :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5.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김재영(☎02-3146-208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828호

도시관리계획(경희궁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경희궁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1946)를 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도시관리계획(경희궁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나. 위　　치: 종로구 신문로2가 1-101 일대
   다. 규　　모: 132,804.5㎡

2. 공개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3. 공개방법
   가. 공개기간: 2025. 10. 02.(목) ~ 2025. 10. 15. (14일간)
   나. 공개장소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836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전용차로의 설치) 및 제160조 제3항에 따라 전용차로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의견진술)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부재, 이사,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및 제160조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백*철 등 453명
4. 공고기간 : 2025. 10. 2. ~ 2025. 10. 22.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기한 : 2025. 10. 2. ~ 2025. 10. 22.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시 증빙서류와 함께 인터넷(http://cartax.seoul.go.kr)또는 서울특별시 교통지도단속반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감경(50%)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동명의 및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의견제출처
   - 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4층 교통지도단속반 과태료과징팀
   - 전화번호 : 02-2133-4570~79 팩스번호 : 02-2133-4904
   ※ 서울시 교통위반단속조회(http://cartax.seoul.go.kr)에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붙임 :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의견제출 대상 및 의견진술서 작성예시. 1부.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	03소81**	백*철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8-27 19:17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2	경기80사47**	전*희	경기도 안양시	2025-08-26 08:1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	53머82**	차*정	경기도 남양주시	2025-08-26 15:58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4	807노20**	이*관	경기도 광명시	2025-08-28 08:30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5	180가10**	이*은	경기도 고양시	2025-08-31 12:49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6	10라82**	강*경	경기도 안성시	2025-08-31 15:48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7	227마26**	박*원	충청북도 청주시	2025-08-30 12:04	홍제동 홍제삼거리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8	30우77**	(*)*원*판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8-26 17:18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9	66부73**	제*수	경기도 이천시	2025-08-27 20:17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10	62고75**	주*회*노*진*래*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08-27 20:24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11	54거24**	(*)*두*	인천광역시 중구	2025-08-28 10:43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2	294노26**	C*E*E*G*U	경기도 안산시	2025-08-29 08:3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3	24고64**	주*회*솔*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8-29 21:09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14	68구63**	전*욱	경기도 화성시	2025-08-28 11:23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15	285노42**	이*영	경기도 양주시	2025-08-29 11:26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16	841다56**	주*회*포*스*탈	경기도 남양주시	2025-08-25 11:23	압구정로데오역~성수대교	50,000
17	81노38**	지*구	경기도 하남시	2025-08-27 08:5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8	18우56**	주*회*정*토*	경상북도 울진군	2025-08-28 16:27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19	811너77**	(*)*이*테*	경기도 구리시	2025-08-27 04:11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20	191호75**	주*회*화*관*개*	경기도 포천시	2025-08-16 09:48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21	94어14**	조*운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2025-08-25 08:05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22	367수72**	대*나	경기도 부천시	2025-08-26 09:3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3	경기35사12**	동*협*조*	경기도 안양시	2025-08-26 09:16	장지동 장지역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24	237누66**	H*N*G*A*G*H*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08-28 16:54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5	69거32**	구*경	경기도 남양주시	2025-08-29 09:31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50,000
26	156나29**	주*회*로*앤*우	경기도 구리시	2025-08-29 17:3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7	205다25**	J*A*G*A*Y*N	경기도 시흥시	2025-08-25 14:42	장지동 장지역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28	60가18**	P*Y*S*T*U	경상남도 김해시	2025-08-27 10:14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29	53무62**	이*수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5-08-22 11:08	영등포구 샛강역 1번출구 앞	50,000
30	142호22**	최*현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08-22 11:55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31	333보67**	오*혁	경기도 평택시	2025-08-25 08:22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32	140보77**	장*수	경상남도 진주시	2025-08-25 16:19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33	224호91**	김*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08-13 13:02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34	233호44**	신*은	경기도 부천시	2025-08-20 09:22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35	194호79**	김*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8-13 10:49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36	04로98**	더*유*인*라*어*식*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8-14 10:29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37	185가34**	남*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8-25 18:4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8	275누90**	W*N*Y*F*N	경기도 성남시	2025-08-26 17:21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39	55고73**	정*성	경기도 남양주시	2025-08-25 17:3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40	301루98**	주*회*에*엠*앤*	경기도 남양주시	2025-08-25 18:55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50,000
41	45루90**	변*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025-08-25 09:47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42	65로18**	P*A*M*N*H*E*	경기도 성남시	2025-08-27 18:1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43	경기88사18**	김*우	경기도 남양주시	2025-08-28 18:21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44	50서27**	뉴*아*앤*주*희*	경기도 성남시	2025-08-25 09:11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45	20호38**	정*희	경기도 화성시	2025-08-18 17:0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46	224하56**	무*무*이*진*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08-21 09:10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47	143너70**	신*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8-03 13:3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48	164노93**	김*진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08-27 20:24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49	201라54**	T*O*V*A*H*S*A*	경기도 화성시	2025-08-27 11:2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50	222우77**	김*영	경기도 수원시	2025-08-27 07:27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51	61버52**	법*법*해*	경기도 남양주시	2025-08-29 20:3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52	69무62**	(*)*스*케*솔*션*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08-27 20:0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53	279누17**	주*철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5-08-14 12:56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54	83두65**	박*환	경상남도 창녕군	2025-08-25 21:40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55	62고99**	홍*빈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8-27 07:40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56	289로53**	이*주	경기도 의정부시	2025-08-25 12:18	창동역~환승주차장교차로	50,000
57	21거09**	J*N*A*W*N	경기도 부천시	2025-08-26 16:46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58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8-25 11:31	양재동 양재IC 하행	60,000
59	124더49**	임*환	경기도 고양시	2025-08-25 08:3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60	391두13**	박*순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08-26 15:52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61	116하33**	K*M*S*N*Y*	충청남도 아산시	2025-08-17 16:08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62	서울32아30**	고*복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8-28 08:51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63	55조78**	C*H*M*A*A*A	울산광역시 울주군	2025-08-30 17:22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64	69어97**	C*I*U*N*E*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8-29 19:18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65	117서76**	주*회*더*지*임*	경기도 부천시	2025-08-27 10:36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66	21주01**	이*섭	경기도 안성시	2025-08-27 18:53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67	40도76**	김*림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8-29 20:19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68	175하81**	(*)*엠*에*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08-20 11:00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69	13모28**	김*화	경기도 남양주시	2025-08-25 09:09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70	03조06**	안*현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08-26 08:31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71	64도60**	정*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08-23 15: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2	50,000
72	60가18**	P*Y*S*T*U	경상남도 김해시	2025-08-27 10:12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73	237누66**	H*N*G*A*G*H*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08-28 16:52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74	280누17**	안*수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5-08-07 20:1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75	18노61**	박*호	경기도 양평군	2025-08-25 10:39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76	247노18**	주*회*세*인*라	경기도 이천시	2025-08-20 07:27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1 (여의도동, 수정아파트)	50,000
77	서울31바51**	함*재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08-27 12:43	잠실새내역교차로~종합운동장교차로	50,000
78	151두95**	(*)*이*브*글*벌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8-28 12:22	잠실새내역교차로~종합운동장교차로	50,000
79	222머81**	(*)*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7-28 07:09	복정역~장지교교차로	50,000
80	90조47**	장*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25-08-26 18:3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81	333보67**	오*혁	경기도 평택시	2025-08-25 08:2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82	132어88**	K*A*K*Y*E*A	경기도 성남시	2025-08-29 12:29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83	181허15**	박*준	충청남도 천안시	2025-08-12 09:19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84	700호14**	E*R*L*J*H*H*N*Y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08-08 07:42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60,000
85	116하33**	K*M*S*N*Y*	충청남도 아산시	2025-08-17 16:07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86	195하31**	윤*봉	경기도 의정부시	2025-08-11 23:49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87	221호67**	김*훈	경기도 의정부시	2025-08-21 20:46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88	185다50**	(*)*원*트*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8-25 14:58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89	155호35**	주*회*마*컴*니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08-14 09:50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90	230호34**	홈*서*스*식*사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08-09 13:50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2 (여의도동)	50,000
91	03너20**	이*이	경기도 화성시	2025-08-27 18:22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92	181하20**	강*빈	경기도 동두천시	2025-08-14 20:29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93	333보67**	오*혁	경기도 평택시	2025-08-25 08:26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94	54러76**	A*A*H*A*V*B*I*A*F*I*A*I*D*N*V*C*	부산광역시 강서구	2025-08-25 18:06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95	190우79**	송*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08-19 10:59	오류IC~ 개봉사거리	50,000
96	182오88**	(*)*울*너*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5-08-18 08:46	서울여대~화랑대사거리	50,000
97	64너59**	조*환	경기도 김포시	2025-08-18 07:21	고촌IC~ 개화교	50,000
98	03누52**	김*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08-21 14:45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2 (여의도동)	50,000
99	248도55**	차*훈	경기도 안양시	2025-08-26 17:2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00	353노42**	안*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08-23 11:36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9 (여의도동, 한양아파트)	50,000
101	181호97**	박*형	경기도 시흥시	2025-08-13 11:1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02	348나28**	김*화	경기도 고양시	2025-08-28 10:49	홍제동 홍제삼거리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103	서울32사43**	임*성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8-28 08:58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104	29러93**	유*재	인천광역시 강화군	2025-08-29 09:06	홍제동 홍제삼거리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105	97누52**	최*영	경기도 광명시	2025-08-29 19:43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106	60주19**	오*선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5-08-30 11:19	진관동 구파발역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07	233호49**	편*성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08-20 08:24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108	175하81**	(*)*엠*에*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08-20 10:59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109	12머67**	김*현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8-25 07:00	헌릉로 염곡사거리 방향	50,000
110	65무69**	(*)*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8-27 14:30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111	816우17**	주*회*이*엘*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5-08-27 08:5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12	03두21**	정*용	경기도 용인시	2025-08-27 10:06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113	35모35**	하*자	경기도 양주시	2025-08-27 09:17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114	45수96**	(*)*부*펀*	경기도 성남시	2025-08-28 17:5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15	202고73**	한*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08-13 20:20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116	152소50**	강*복	경기도 의정부시	2025-08-28 17:37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117	160마58**	소*진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25-08-29 13:59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118	62로96**	정*수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8-29 09:33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19	109누18**	Q*A*M*N*X*E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5-08-30 11:17	수색동 경의중앙선 수색역1번출구 공영주차장	50,000
120	287머56**	이*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08-29 15:4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21	49조88**	윈*인*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8-29 19:05	국립현충원교차로~흑석역	50,000
122	160마58**	소*진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25-08-29 13:58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123	140보77**	장*수	경상남도 진주시	2025-08-25 16:21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124	04가31**	김*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8-25 14:1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25	227구46**	농*회*법*두*촌*식*사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2025-08-26 09:4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26	348나28**	김*화	경기도 고양시	2025-08-26 08:03	홍제동 홍제삼거리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127	서울31사85**	엄*진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08-26 08:39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128	64부91**	최*명	경기도 안성시	2025-08-30 10:29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29	100부19**	주*규	충청남도 예산군	2025-08-30 13:00	내곡교~어린이병원	50,000
130	서울31자16**	김*구	경기도 부천시	2025-08-28 16:29	압구정역교차로~성수대교남단교차로	50,000
131	46구88**	유*진	경기도 남양주시	2025-08-26 08:56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132	75고95**	씨*이*스*주*	경기도 안양시	2025-08-29 07:53	헌릉로 내곡IC~염곡IC	60,000
133	63마10**	전*출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5-08-28 13:4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34	242저62**	주*회*와*박*	경기도 파주시	2025-08-25 18:07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2 (여의도동)	50,000
135	360우45**	김*호	경기도 화성시	2025-08-25 15:1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36	804너23**	이*헌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08-25 17:26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137	172버94**	김*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8-25 07:42	국립현충원교차로~흑석역	50,000
138	29마33**	백*현	경기도 김포시	2025-08-18 07:21	개화교	50,000
139	63버69**	주*회*엘*스	경기도 수원시	2025-07-07 17:56	서초ic~양재ic	50,000
140	14주05**	김*옥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08-29 17:1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41	41오24**	강*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08-30 12:53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142	42조81**	씨*에*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8-29 11:2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43	14도68**	(*)*인*엉*즈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8-29 12:2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44	163노20**	최*규	경기도 평택시	2025-08-30 10:19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45	64부91**	최*명	경기도 안성시	2025-08-30 10:27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46	71소33**	P*A*Z*E*H*	경기도 안산시	2025-08-29 13:36	서초동 서초IC 상행	60,000
147	817나10**	김*화	충청북도 청주시	2025-08-25 09:06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148	서울은평타78**	김*철	경기도 남양주시	2025-08-23 19:14	종로2가교차로~종로3가교차로	40,000
149	45수29**	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5-08-26 17:15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150	65소73**	(*)*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8-27 20:51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시외방향)	50,000
151	55노67**	김*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8-27 19:49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152	124누18**	김*선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8-27 11:31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153	244두72**	문*길	경기도 고양시	2025-08-27 19:4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154	222우77**	김*영	경기도 수원시	2025-08-27 07:26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155	133하85**	(*)*이*빌*티	경기도 안양시	2025-08-27 13:11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56	149우52**	F*N*M*I*I*N*	경기도 시흥시	2025-08-28 11:41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57	147두47**	김*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08-28 20:49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158	57어39**	장*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8-29 14:17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59	81보55**	강*희	경기도 안산시	2025-08-29 16:56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160	193다83**	정*찬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08-03 14:28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61	134누99**	주*회*타*의*향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08-12 17:42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62	181허15**	박*준	충청남도 천안시	2025-08-19 08:54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63	경기81바64**	(*)*통*화*	경기도 구리시	2025-08-25 10:20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60,000
164	84버01**	최*봉	경기도 양주시	2025-08-25 17:42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165	84고53**	권*택	경기도 안양시	2025-08-25 08:42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166	62우53**	박*흥	경기도 시흥시	2025-08-25 07:21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167	90조47**	장*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25-08-26 08:5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68	228주84**	주*회*엔*미*	경기도 광주시	2025-08-26 18:33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169	42구64**	이*하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08-27 13:47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70	199하69**	주*회*인*스*딩*	경기도 안성시	2025-08-18 18:19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71	21주01**	이*섭	경기도 안성시	2025-08-27 18:51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72	59더29**	S*A*O*O*M*R*D*H*N	울산광역시 동구	2025-08-28 16:23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173	40저30**	국*산*렌*(*)	경기도 안성시	2025-08-28 18:06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174	21주01**	이*섭	경기도 안성시	2025-08-27 18:52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175	서울31자20**	김*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08-28 09:04	하계5.6단지 교차로	50,000
176	83소48**	금*롱	경기도 안양시	2025-08-28 07:38	중계근린공원	50,000
177	254다89**	최*선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8-28 09:03	하계역	50,000
178	29두25**	주*회*생*대*브*더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8-28 09:2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79	383무70**	김*현	경기도 수원시	2025-08-29 20:08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180	14소26**	이*철	경기도 고양시	2025-08-27 08:03	은평뉴타운10단지앞	50,000
181	56나45**	양*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08-26 17:46	천호대교	50,000
182	서울31자84**	김*완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8-27 08:46	강동구청역~성내교	50,000
183	02고34**	우*수	경기도 의정부시	2025-08-26 18:38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184	37라28**	윤*영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08-26 09:11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185	90로73**	김*용	경기도 안양시	2025-08-25 13:26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186	824러21**	조*화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08-27 11:5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87	36오16**	한*용	경기도 김포시	2025-08-28 07:50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88	38수84**	김*기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5-08-31 15:41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89	83머08**	이*철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8-27 13:40	삼성교~강남경찰서교차로	50,000
190	123저20**	박*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08-27 08:36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191	232머64**	이*대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5-08-31 06:23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192	서울31바57**	명*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8-26 17:1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93	46누04**	김*정	경기도 남양주시	2025-08-27 07:57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194	197가82**	권*희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5-08-21 10:01	영등포구 샛강역 1번출구 앞	50,000
195	경기32바57**	문*철	경기도 성남시	2025-07-12 17:58	서초IC~반포IC	50,000
196	175거17**	장*식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08-27 10:21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197	172서67**	황*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2025-08-28 17:2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98	68너50**	최*준	경기도 의정부시	2025-08-29 19:23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199	190허18**	엘*R*	경기도 김포시	2025-08-08 18: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50,000
200	경기48바52**	권*규	경기도 구리시	2025-08-28 10:42	종합운동장교차로~잠실새내역교차로	50,000
201	11거30**	설*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5-08-19 07:03	경문고교교차로~이수역사거리	50,000
202	83무06**	위*주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8-29 07:29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203	152고13**	신*용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5-08-25 16:2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04	24루04**	강*순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08-26 18:2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205	24루04**	강*순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08-28 09:26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206	14나66**	홍*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08-26 21:00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50,000
207	184부18**	이*상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08-26 10:14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50,000
208	62루65**	김*영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5-08-27 09:11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50,000
209	07어36**	이*연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8-23 18:15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210	37머94**	최*선	경기도 의정부시	2025-08-29 08:50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211	09오46**	이*실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8-29 09:44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212	83조71**	이*연	경기도 남양주시	2025-08-28 19:41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213	179하96**	김*호	경기도 성남시	2025-06-28 12:14	매헌시민의숲사거리~말죽거리공원사거리	50,000
214	84저10**	엄*순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8-29 17:15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15	164머17**	황*수	경기도 양주시	2025-08-23 22:20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216	123조20**	강*순	경기도 성남시	2025-08-21 18:11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21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50,000
217	서울31아22**	고*문	경기도 의정부시	2025-08-26 08:15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218	59로49**	최*섭	인천광역시 강화군	2025-08-26 18:15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219	61고29**	김*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08-28 17:36	개화역~개화사거리	50,000
220	62루56**	최*순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5-08-27 14:09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21	22러27**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08-28 13:09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22	31보64**	김*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8-28 20:3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223	324마97**	박*숙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5-08-29 09:47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224	223고47**	서*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08-23 13:55	이수교차로~총신대입구역	50,000
225	02구68**	문*엘	경기도 화성시	2025-08-30 10:10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26	25러86**	김*석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8-30 15:00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27	30주21**	서*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8-21 11:15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34-2 (신사동)	50,000
228	24러37**	양*근	경기도 남양주시	2025-08-26 12:20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229	03주07**	이*미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8-28 07:2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30	서울31바61**	박*걸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08-28 10:3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31	03무55**	김*봉	대전광역시 서구	2025-08-28 18:3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32	12마77**	김*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2025-08-28 20:50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33	72다32**	송*혁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08-28 09:31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60,000
234	226조93**	조*실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08-31 23:09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235	124하93**	한*현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8-11 19:31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50,000
236	130호54**	박*희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5-08-22 15:48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37	396구29**	장*철	경기도 시흥시	2025-08-25 09:13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238	서울32자41**	박*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8-26 08:21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239	68도14**	기*복	경기도 성남시	2025-08-27 08:58	장지동 장지역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240	63구95**	노*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08-27 09:36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241	53노62**	박*환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8-28 07:59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42	31어01**	김*정	인천광역시 서구	2025-08-29 07:48	개화교	50,000
243	370라36**	김*환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08-28 15:34	롯데백화점앞	50,000
244	222호88**	주*회*와*에*생*과*	경기도 화성시	2025-08-19 09:00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245	68주66**	김*주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5-08-25 08:38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246	서울30머24**	이*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8-26 07:4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47	10우45**	U*M*N*V*N*A*S*E*A*I*G*I	경기도 화성시	2025-08-29 18:32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48	21머09**	(*)*광*업	경기도 고양시	2025-08-30 18:05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49	06라33**	주*회*스*월*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8-27 10:27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250	54더84**	이*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08-28 17:43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251	09오46**	이*실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8-29 09:45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252	18거82**	이*희	경기도 안양시	2025-08-29 13:38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53	152허31**	(*)*이*비*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8-21 10:0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54	368나77**	김*영	인천광역시 서구	2025-08-29 08:21	개화교~개화사거리	50,000
255	126하38**	주*회*위*팜	경기도 남양주시	2025-08-22 19:30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256	181허15**	박*준	충청남도 천안시	2025-08-12 09:17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57	149가74**	김*섭	경기도 양주시	2025-08-25 13:06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258	16저06**	김*흥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8-25 07:24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259	32구06**	권*진	경기도 안양시	2025-08-25 09:35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60	16거62**	H*T*A*H*U*N*	경기도 화성시	2025-08-25 15:5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261	32구06**	권*진	경기도 안양시	2025-08-25 09:36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262	54러76**	A*A*H*A*V*B*I*A*F*I*A*I*D*N*V*C*	부산광역시 강서구	2025-08-25 12:28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63	18노61**	박*호	경기도 양평군	2025-08-25 10:38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264	16거62**	H*T*A*H*U*N*	경기도 화성시	2025-08-25 15:49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265	05누20**	동*노*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08-26 09:24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50,000
266	24다63**	최*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5-08-25 08:05	낙성대입구~까치고개교차로	50,000
267	서울강남거21**	김*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7-13 16:39	논현역~반포역	4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68	362부67**	P*A*W*N*I	경기도 안산시	2025-08-26 12:58	종합운동장교차로~잠실새내역교차로	50,000
269	18보09**	임*명	충청남도 아산시	2025-08-25 19:1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70	78너59**	조*형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08-25 19:23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60,000
271	205러93**	최*석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8-27 12:10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272	03누02**	유*수	경기도 고양시	2025-08-27 20:4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73	222우77**	김*영	경기도 수원시	2025-08-27 07:25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74	83저47**	김*영	경기도 남양주시	2025-08-27 09:18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275	28루80**	박*현	경기도 김포시	2025-08-27 19:56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276	39어63**	홍*기	경기도 남양주시	2025-08-20 19:00	강남소방서앞	50,000
277	59더29**	S*A*O*O*M*R*D*H*N	울산광역시 동구	2025-08-28 16:21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278	29모01**	권*옥	충청북도 증평군	2025-08-26 19:30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279	16수94**	P*A*J*N*M*N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5-08-26 07:27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280	36라51**	정*훈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8-26 09:35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50,000
281	28두83**	빅*톤*설*주*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8-27 09:3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82	31마96**	이*형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8-27 07:43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283	96구25**	배*석	경기도 양주시	2025-08-28 21:47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284	서울32자51**	유*림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08-21 20:20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285	08오56**	주*회*라*레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08-01 16:02	압구정역~가로수길교차로	50,000
286	142두79**	N*U*E*T*I*H*O*G	경기도 수원시	2025-08-28 19:21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287	259두94**	조*미	경기도 화성시	2025-08-28 18:42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288	24우67**	임*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8-29 07:42	흑석역~한강대로남단교차로	50,000
289	84무10**	박*성	경기도 안산시	2025-08-29 16:07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90	23소80**	T*A*T*I*I*N	경기도 부천시	2025-08-29 18:1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91	242거73**	C*I*I*G*U*N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8-29 08:45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292	11수53**	J*A*G*I*G*H*N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8-28 08:2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93	825더63**	구*선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08-29 08:53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294	383무70**	김*현	경기도 수원시	2025-08-29 20:07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95	345거39**	임*옥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8-30 16:20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296	55조78**	C*H*M*A*A*A	울산광역시 울주군	2025-08-30 17:24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297	27로89**	R*H*A*A*M*T*Q*R	경기도 포천시	2025-08-30 12:26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298	04소02**	Z*A*G*I*O*H*N	경기도 수원시	2025-08-30 00:46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299	26어08**	김*찬	충청남도 아산시	2025-08-31 12:44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300	348나28**	김*화	경기도 고양시	2025-08-29 07:10	홍제동 홍제삼거리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301	116거98**	조*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025-08-29 20:12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302	13너04**	김*형	경기도 성남시	2025-08-27 08:35	내곡교~서울특별시립어린이병원	50,000
303	75고95**	씨*이*스*주*	경기도 안양시	2025-08-28 07:53	내곡교~서울특별시립어린이병원	60,000
304	138소66**	Z*E*G*A*G*O	경기도 부천시	2025-08-27 19:03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50,000
305	50고06**	이*창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08-28 19:06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306	236수97**	K*M*M*T*I*	경상남도 김해시	2025-08-28 09:23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307	36도76**	장*덕	경기도 의정부시	2025-08-29 12:52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308	94모61**	주*회*창*홈	경기도 광주시	2025-08-29 08:2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09	83주86**	농*회*법*주*회*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8-29 08:49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310	208오71**	표*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08-29 17:14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311	230호34**	홈*서*스*식*사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08-11 19:25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12 (여의도동, 광장아파트)	50,000
312	193다83**	정*찬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08-12 13:22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313	69누45**	O*A*A*E*A*M*	충청북도 괴산군	2025-08-30 19:06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314	45루90**	변*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025-08-25 09:45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315	181허15**	박*준	충청남도 천안시	2025-08-19 08:56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316	02고34**	우*수	경기도 의정부시	2025-08-26 18:30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317	33노95**	이*민	부산광역시 사상구	2025-08-28 20:3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18	158라78**	L*X*A*G*H*N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08-28 17:35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319	388거88**	고*창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5-08-30 16:45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320	05하28**	주*회*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8-17 16:50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50,000
321	193다83**	정*찬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08-03 14:29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322	193다83**	정*찬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08-12 13:21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323	33고12**	김*현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8-29 18:27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324	200부93**	장*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8-30 17:22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325	02구68**	문*엘	경기도 화성시	2025-08-30 10:12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326	82어88**	주*회*월*미*	경기도 화성시	2025-08-26 11:0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27	186두87**	P*R*D*N*E*I*D*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8-26 08:16	천호대교~광장사거리	50,000
328	86구09**	(*)*원*이*알	서울특별시 중구	2025-08-27 12:01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329	95라07**	(*)*른*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5-08-27 18:25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330	201라54**	T*O*V*A*H*S*A*	경기도 화성시	2025-08-27 11:19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331	37허78**	김*현	대구광역시 동구	2025-08-22 07:19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332	85다12**	(*)*레*팩*리	경기도 남양주시	2025-08-29 19:12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333	61구90**	전*영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8-29 18:29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334	94너49**	우*주	경기도 하남시	2025-08-29 07:42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335	802조92**	명*푸*주*회*	경기도 여주시	2025-08-29 09:3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36	96우01**	주*회*와*드*라*스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8-29 13:3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37	255부18**	임*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08-29 15:3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38	55어10**	주*회*휴*리*홀*스	경기도 성남시	2025-08-29 17:17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339	819조52**	김*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5-08-29 17:25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340	825러15**	욕*리*델*시*타*보*수*점	경기도 수원시	2025-08-04 10:33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341	16거62**	H*T*A*H*U*N*	경기도 화성시	2025-08-25 15:51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342	378어47**	박*균	경기도 남양주시	2025-08-25 12:29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343	서울91자85**	문*윤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8-26 18:1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344	230모89**	J*N*H*N*X*N	경기도 화성시	2025-08-30 15:34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345	168두14**	이*지	경기도 의정부시	2025-08-29 18:43	한양아파트앞사거리~성수대교남단교차로	50,000
346	95수49**	조*성	경기도 남양주시	2025-08-25 19:57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347	54러76**	A*A*H*A*V*B*I*A*F*I*A*I*D*N*V*C*	부산광역시 강서구	2025-08-25 12:27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348	80거33**	윤*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08-26 08:5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49	서울31사78**	조*식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5-08-27 07:51	난곡사거리~봉림교	50,000
350	서울91자26**	강*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8-26 16:30	압구정역교차로~ 성수대교남단교차로	50,000
351	23우04**	김*연	경기도 화성시	2025-08-28 20:20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352	16부85**	김*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08-26 17:41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353	16부85**	김*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08-28 17:43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354	242무31**	차*망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8-29 11:09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55	87우80**	서*성철	충청남도 금산군	2025-08-27 08:46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356	서울32사70**	육*용	경기도 의정부시	2025-08-29 08:36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357	176호24**	장*숙	경기도 용인시	2025-08-05 08:36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358	190호82**	김*우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5-08-12 07:59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359	174하82**	황*준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8-21 17:3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360	42로84**	김*욱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5-08-25 20:36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361	서울31자89**	변*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5-08-25 17:4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362	29나33**	최*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8-20 07:28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여의도동)	50,000
363	372라36**	김*호	경기도 의정부시	2025-08-26 18:21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364	253가97**	박*형	인천광역시 서구	2025-08-27 09:38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50,000
365	서울32사52**	박*규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8-26 10:12	한양아파트앞사거리~성수대교남단교차로	50,000
366	101허23**	윤*균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07-28 17:21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367	서울89자52**	이*필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5-08-25 07:50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368	169호31**	오*진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8-06 09:36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369	87루78**	김*덕	경기도 성남시	2025-08-27 10:38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370	14어29**	고*혁	경기도 시흥시	2025-08-27 11:33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371	242오29**	이*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8-27 17:18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372	서울32자15**	임*혁	경기도 고양시	2025-08-23 10:38	영등포구 샛강역 1번출구 앞	50,000
373	87보23**	김*헌	경기도 용인시	2025-08-27 04:02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374	82거21**	정*규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5-08-27 18:22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375	224호81**	공*복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7-28 19:3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76	05구77**	이*연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08-28 16:09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시외방향)	50,000
377	05나71**	김*선	인천광역시 서구	2025-08-28 19:2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78	113서26**	안*엽	경기도 용인시	2025-08-26 13:58	종각역~ 종로2가교차로	50,000
379	서울31바90**	방*근	경기도 수원시	2025-08-29 09:11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380	62마76**	강*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8-29 18:04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381	25모46**	이*혁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8-29 10:30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382	13머77**	정*모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5-08-29 10:39	홍제동 홍제삼거리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383	서울32바54**	김*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8-29 08:57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384	13구21**	강*균	경기도 안산시	2025-08-25 18:12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3 (여의도동)	50,000
385	92구05**	윤*진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8-29 17:35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386	148모72**	심*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5-08-14 13:22	녹번역~홍은사거리	50,000
387	45저45**	이*숙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8-28 09:0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88	37무13**	신*균	경기도 의정부시	2025-08-28 08:11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389	95다70**	오*은	경기도 용인시	2025-08-29 08:1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90	64나48**	남*우	경기도 가평군	2025-08-26 08:39	개화교~개화사거리	50,000
391	서울31자14**	박*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8-29 18:0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92	서울84자48**	이*건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8-29 07:16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393	서울32바65**	김*수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08-29 18:39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394	서울86자29**	정*철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08-25 13:21	영등포역~영등포로터리	50,000
395	229하34**	정*수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08-18 18:05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396	28로06**	홍*일	경기도 하남시	2025-08-28 17:30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397	225거48**	정*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5-08-19 17:42	천호대교북단	50,000
398	53라38**	박*용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8-28 07:36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399	66서75**	한*희	경기도 양주시	2025-08-29 09:30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400	111라37**	신*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08-25 17:15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401	05모14**	고*자	부산광역시 북구	2025-08-30 13:29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402	서울구로카80**	문*현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08-16 19:16	구로소방서교차로~동양미래대학교앞교차로	40,000
403	179소58**	장*민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8-29 07:49	잠실역~잠실3사거리	50,000
404	182러86**	한*남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08-29 14:24	정동사거리~서대문역	50,000
405	서울38아54**	김*욱	경기도 김포시	2025-08-25 20:27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406	143구15**	주*회*디*앤*	경기도 성남시	2025-08-26 17:5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407	49너29**	다*이*씨*주*	경기도 고양시	2025-08-14 09:13	동산육교~구파발사거리	50,000
408	36누50**	주*회*삼*씨*에*건*	경기도 부천시	2025-08-27 08:04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409	36저24**	X*J*N*E*	경기도 오산시	2025-08-29 06:04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410	43러19**	주*회*다*나*데*메*	경기도 남양주시	2025-08-25 08:01	개화교	50,000
411	386서66**	김*화	경상북도 포항시	2025-08-30 13:29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412	249노59**	A*K*B*D*F*R*S*B*O*U*A*E*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5-08-26 15:37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413	203다67**	B*E*F*A*K*I*D*N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5-08-26 09:38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414	193다83**	정*찬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08-03 14:27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415	32구06**	권*진	경기도 안양시	2025-08-25 09:37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416	204도23**	박*희	전라남도 목포시	2025-08-26 19:36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417	14로17**	양*재	전라남도 구례군	2025-08-26 10:52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418	244주10**	주*회*앙*그*	경기도 남양주시	2025-08-27 08:11	대치역~도곡역	50,000
419	115모64**	김*찬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08-28 08:13	영등포역교차로~영등포로터리	50,000
420	55저07**	천*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5-08-28 08:23	고촌IC~개화교	50,000
421	경기91배68**	송*한	경기도 파주시	2025-08-28 09:53	무악재역~독립문역	50,000
422	72모12**	P*A*C*E*G*I	경기도 수원시	2025-08-26 11:03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60,000
423	87로44**	양*호	경기도 포천시	2025-08-27 08:1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424	48거68**	(*)*엔*경*지*연*소	대구광역시 남구	2025-08-26 10:2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425	62마76**	강*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8-27 18:2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426	181허15**	박*준	충청남도 천안시	2025-08-12 09:18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427	15너23**	오*렬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8-25 17:24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428	14구06**	김*화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08-29 09:06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429	37수59**	(*)*양*너*	경기도 평택시	2025-08-25 08:16	은평뉴타운CNG충전소~은평지문교	50,000
430	388마65**	장*영	경기도 고양시	2025-08-27 08:32	개화교~개화사거리	50,000
431	28거65**	하*현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5-08-26 14:42	압구정역~성수대교남단교차로	50,000
432	서울32자46**	김*홍	경기도 남양주시	2025-08-26 18:20	육사야구장~화랑대사거리	50,000
433	77서50**	J*N*A*Y*N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08-27 17:20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60,000
434	813주63**	주*회*원*트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08-27 09:31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50,000
435	59더29**	S*A*O*O*M*R*D*H*N	울산광역시 동구	2025-08-28 16:22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436	151너85**	조*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2025-08-25 18:09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437	127저78**	유*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8-27 09:2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438	47수26**	정*경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07-07 10:29	서초IC~반포IC	50,000
439	56구78**	정*철	충청남도 당진시	2025-08-29 14:43	홍은동 북한산 더샵아파트(시외방향)	50,000
440	서울32아52**	김*현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8-26 20:18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441	서울31아56**	이*규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08-26 08:17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442	143호81**	조*철	경기도 시흥시	2025-08-11 09:4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443	65주84**	김*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8-27 08:11	대치역~도곡역	50,000
444	89모20**	이*록	경기도 김포시	2025-08-25 17:3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445	서울31바94**	권*진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8-27 08:23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446	서울31아24**	정*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8-25 07:43	삼성교~강남경찰서교차로	50,000
447	서울31자22**	강*태	경기도 구리시	2025-08-25 07:31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50,000
448	서울동대문파89**	오*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08-19 10:53	동묘앞역~신설동역	40,000
449	서울31아21**	김*근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5-08-24 14:55	영등포구 샛강역 1번출구 앞	50,000
450	93다58**	노*미	경기도 남양주시	2025-08-28 09:22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451	36두32**	대*전*(*)	경기도 시흥시	2025-08-25 18:4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452	서울31사17**	정*목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8-26 18:20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453	64부99**	최*철	경기도 김포시	2025-08-26 09:23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50,000

과태료 부과처분 관련 의견제출서 제출 안내

- 귀하의 차량이 전용차로 통행 위반으로 단속되어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임을 통지하여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요의견제출 대상(**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준거**)

구 분	증 빙 서 류
범죄의 예방 · 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 ·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기관장확인서(해당 기관 공문)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공사계약서, 기관장 확인서(해당 기관 공문)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병명이 기재된 응급환자 진료확인서(의료기관 발행)
화재 · 수해 · 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기관장확인서(해당 기관 공문)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 · 하차를 돕는 경우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 가능한 증빙서류

- 의견제출서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제출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의견을 심의하여 결과를 별도 통보하여드립니다.
- 의견제출서는 일련의 우편물 발송기관 주소 또는 팩스로 발송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팩스 제출 시 수신여부 확인)
- 서울시 고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https://cartax.seoul.go.kr)를 통해서 별도 입이 의견제출서를 바로 작성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의견제출 항목은 증빙서류의 작성여부 및 관련 법에 의한 운전자 의무(조치)사항 이행여부도 심의대상이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3급), 미성년자는 의견 제출기한 내에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과태료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동차 공동명의자 중 일부만 감경대상인 경우,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과태료 감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의견제출서 작성 서식(예시)

의 견 제 출 서

차 량 번 호	위 반 일 시	위 반 장 소
○○가○○○○	○○○○년 ○○월 ○○일 ○○시 ○○분	○○로 ○○길 ○○주변 ○○○○앞

- 제출의견 기재 : (단속된 사안 및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 제출자 성명 : ○○○ - 제출자 주소 : ○○시 ○○구 ○○로 ○○, 상세주소 입력 - 제출자 전화번호 :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납부 안내

-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면 일련에 기재된 입금계좌 또는 은행 창구·ATM기, 이택스(https://etax.seoul.go.kr)에서 의견 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해당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부과된 과태료는 납부기한 경과시 첫달에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 1개월마다 1.2% 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가산된 과태료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차 종	이 륜 자 동 차	승 용 자 동 차	승 합 자 동 차
과태료	40,000원	50,000원	60,000원
체납시 최대 과태료	70,000원	87,500원	105,000원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임대자동차 운행자정보 제출 안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번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에 임대한 자동차의 운행자 정보를 과태료 부과기관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 문서24(https://doc.gdoc.go.kr)를 통해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차량임대계약서 사본, 기타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면허증 사본 등)
- 의견진술 기한까지 자동차 운행자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차 대여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838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3조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 취소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고 조합 사업장폐쇄 및 대표자 연락두절,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인해 우편송달이 불가한 조합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따라 청문조서의 열람·확인 관련 사항을 통지하오니 희망하시는 청문 당사자(대표자)께서는 기한 내 청문조서를 열람·확인 및 정정 신청바랍니다.

2025년 10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청문 당사자(조합)

연번	인가번호	조합명	조합 소재지	대표자
1	서울특별시 제2011-19호	참소망의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457, 2층	강병용
2	서울특별시 제2012-8호	서현의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680	이영미

2. 청문개최 사유(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참소망, 서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 정지
 ㅇ (서현)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 「의료법」 상 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 위반 내용 :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의료업을 하지 아니한 때(「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5의2호)

3.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5층 공정경제과

4. 열람·확인 및 정정기간 : 2025. 11. 3.(월)까지

5. 관련법령
 ㅇ 「행정절차법」 제34조(청문조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청문조서의 열람 등)

6.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경제과(담당자 ☎02-2133-53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개정 2022. 7. 11.>

청문조서 정정요구서

예정된 처분의 제목		
청문조서 열람확인의 일시 및 장소		
당사자	성 명(명칭)	
	주 소	
청문조서의 정정대상 내용		
정정 요구의 내용		
기 타		
「행정절차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청문조서의 정정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당사자등 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청에 문서로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839호

중도매업 허가취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부류 중도매인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제6호를 위반하여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기준을 미달한 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였으나, 사전통지서가 본인에게 송달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10. 2. ~ 2025. 10. 15.

2. 처분대상 및 내용

허가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4-4-0393	어판왕 어업회사법인(주) (김*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들로 674	3개월 무실적 (2025년 5월, 7월, 8월)	중도매업 허가취소

3. 처분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제3항 제6호
- 동법 제82조(허가 취소 등) 제5항 제1호
-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4

4. 이의제기 안내
-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농수산유통과 ☎02)2133-4466으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842호

종합건설사업자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있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처분사전 통지(청문실시통지)를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 등으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이사불명,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5.10.2. ~ 2025.10.16.(14일간)

2. 처분 사전통지 사항

업 체 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재지	위반내용	예정된 처분내용	청문실시		처분 근거
					일시 및 장소	주재자	
인보종합 건설㈜ (박춘건)	건축 공사업 01-4598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27, 4층(사당동)	종합공사시공업 실태조사(2022년 자본금) 자료 미제출하여 시정명령하였으나 미이행	영업정지	2025.10.24.(금) 11:00 건설혁신담당관 청문실	사무관 김문수	법 제82조 제1항 제5호
㈜제이엔에이치종합 건설 (김지누)	건축 공사업 01-0644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 56 (한남동)	종합공사시공업 실태조사(2022년 자본금) 자료 미제출하여 시정명령하였으나 미이행	영업정지	2025.10.24.(금) 13:00 건설혁신담당관 청문실	사무관 김문수	법 제82조 제1항 제5호

3.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담당관 ☏02)2133-8125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844호

반환기한 5년 이상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제4항 및 제64조(세입세출외현금의 귀속) 제1항에 의거, 반환기한이 5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반환청구가 없는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세입으로 귀속조치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내용 : 반환기한 5년 이상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 10. 2. ~ 2025. 10. 16.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82조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 제4항 및 제64조 제1항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 별첨

5. 송달내용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 시 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 등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서울특별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문의사항: 서울시청 홍보기획관 홍보담당관(☎ 02-2133-6455)

반환기한 종료 후 5년 이상 경과 세입세출외현금

현금종류	수납일자	적요	부서	납부자	반환기일	보관액(원)
보관금-원천공제액	2016-03-29	2015 뉴딜일자리(시민청 청년활동가) 건강보험료 환급	홍보기획관 홍보담당관	확인불가	2016-04-30	37,820
보관금-원천공제액	2016-03-29	2015 뉴딜일자리(시민청 청년활동가) 장기요양보험료 환급	홍보기획관 홍보담당관	확인불가	2016-04-30	2,700
보관금-원천공제액	2018-05-10	2018 뉴딜일자리 「시민청 청년활동가」 4월 급여 지급	홍보기획관 홍보담당관	확인불가	2018-06-10	251,44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84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방수설비, 하수도, 공원) 결정(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 영등포구 일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방수설비) 결정(안) 및 종로구 일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공원)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고 관계도서를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서면) 또는 서울도시계획포털(온라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방수설비, 하수도, 공원) 결정(안)

1) 방재시설(방수설비)

■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방수설비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459-5 ~ 영등포구 여의도동 87	-	70,885	70,885	-	• 중복결정사항 : 1) 도로 - 대로3-48 : 394㎡(394㎡) - 대로3-18 : 21,407㎡(21,407㎡) - 대로1-6 : 483㎡(483㎡) - 중로1-1 : 3,057㎡(3,057㎡) - 중로1-2 : 256㎡(256㎡) - 중로1-3 : 519㎡(519㎡) - 중로1-69 : 232㎡(232㎡) - 중로3-174 : 5,261㎡(5,107㎡) - 중로3-A : 143㎡(143㎡) - 소로3-2 : 434㎡ - 소로3-1 : 907㎡(907㎡) - 소로2-A : 113㎡(113㎡) - 소로2- : 136㎡(136㎡) - 기타도로 : 150㎡(150㎡) 2) 광장 - 교통광장1 : 2,816㎡(2,816㎡) - 일반광장2 : 284㎡(3㎡) 3) 공원(보라매) : 15,164㎡(9,658㎡) 4) 주차장 : 375㎡(92㎡) 5) 하천 - 대방천 : 1,365㎡(964㎡), - 도림천 189㎡ - 한강(국가하천) : 3170㎡(2,211㎡) 6) 철도 : 12,668㎡(12,668㎡, 7호선, 신림선 등) 7) 수도공급 : 7,186㎡(1,858㎡)

* 비고에 ( )는 중복결정 중 입체적 결정(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구간) 면적임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 고
신설	Ⓐ	방수설비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459-5 ~ 영등포구 여의도동 87	길이(m)	-	증)4,543	4,543	-	
				폭(m)	-	증)10.4 ~ 12.0	10.4 ~ 12.0		
				높이(m)*	-	증)-18.3 ~ -57.1	-18.3 ~ -57.1		
				면적(㎡)	-	증)56,051	56,051		

* 입체적 결정 높이(해수면 기준)는 구조물 상·하단 높이에 보호층(H=6.0m)을 포함한 값이며, 세부사항은 종단면도 참조

■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방수설비	•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 신설 - 면적: 70,855㎡ • 입체적 결정 범위(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구간) - 길이 / 폭 / 높이 : 4,543m / 10.4m~12.0m / -18.3m ~ -57.1m ※ 높이는 해수면 기준으로 산정하고 구조물 상하단 높이에 보호층(H=6m)을 포함 - 면적: 56,051㎡(전체 방수설비 중 터널구간에 대한 입체적 결정)	• 도림천과 대방천 일대 침수피해를 방지하고자 침수방지 시설인 방수설비(방수로) 신설 결정

2) 환경기초시설(하수도)

■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연장(m)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신설	①	하수도	종로구 효자동 8번지 (지하문로)	종로구 서린동 88-1번지 (서린공원)	지하문로, 세종대로, 광화문 지하도로	2,321*	24,609	-	• 중복결정사항 1) 도로 - 광로1-1 : 886㎡(886㎡) - 광로3-78 : 2,174㎡(1,111㎡) - 광로3-7 : 438㎡(438㎡) - 대로3-120 : 14,586㎡(7,018㎡) - 대로1-40 : 578㎡(578㎡) - 대로2-106 : 4,217㎡(4,217㎡) - 중로1- : 1,866㎡(1,866㎡) - 중로2-2 : 1,981㎡(1,981㎡) - 소로2- : 99㎡(99㎡) - 기타도로 : 1,027㎡(229㎡) 2) 광장 - 교통광장 : 3,286㎡(3,286㎡) - 일반광장 : 886㎡(886㎡) 3) 공원 - 송현문화공원 : 570㎡(238㎡) - 서린공원 : 128㎡(128㎡)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연장(m)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4) 주차장 - 적선동주차장 : 1,565㎡(610㎡) - 송현문화공원주차장 : 560㎡(238㎡) 5) 하천(청계천) : 98㎡ 6) 철도 - 도시철도(3호선): 404㎡(404㎡) - 도시철도(5호선): 191㎡(191㎡) 7) 공공청사 : 92㎡(92㎡)

* (A노선) L=1,464m, B=8.8m / (B노선) L=249m, B=8.8m / (C노선) L=608m, B=10.8m
** 비고에 ( )는 중복결정 중 입체적 결정(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구간) 면적임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구 분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신설	①	하수도	종로구 효자동 8 ~ 종로구 서린동 88-1	길이(m)	-	증) 2,321	2,321	
				폭(m)	-	증) 8.8 ~ 10.8	8.8 ~ 10.8	
				높이(m)*	-	증) -15.5 ~ -49.6	-15.5 ~ -49.6	
				면적(㎡)	-	증) 22,463	22,463	

* 입체적 결정 높이(해수면 기준)는 구조물 상·하단 높이에 보호층(H=6.0m)을 포함한 값이며, 세부사항은 종단면도 참조

■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①	하수도	• 도시계획시설(하수도) 신설 - 연장: 2,321m - 폭원: 8.8m ~ 10.8m - 면적: 24,609㎡ • 입체적 결정: 빗물배수터널 구간	광화문 일대의 반복적 침수를 예방하여 시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빗물배수터널을 건설코자 도시계획시설(하수도)을 결정하고,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구간에 대해 입체적 결정함

3) 공간시설(공원)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①	공원	소공원	서린동 82 일대	1,514	감) 758	756	'76. 4. 7. (건설부고시 제46호)	하수도 중복 (128㎡)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서린공원	• 면적 변경: 1,514.0㎡→756.0㎡(감 758.0㎡)	체계적인 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하수도(통합관리센터) 설치에 따른 공원 일부 축소

나.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 날로부터 21일간

다. 열람 및 의견 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02-2133-8407) 및 서울도시공간포털(https://urban.seoul.go.kr/)
- (방수설비) 영등포구 도시계획과, 동작구 도시계획과
- (하수도, 공원) 종로구 도시개발과

라. 관련도서: 홈페이지 게시자료 및 열람장소에 비치된 자료 참조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846호

「2040 서울 공업지역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공고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2040 서울 공업지역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주민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최 목적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2. 개최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2025. 10. 30.(목) 14:00~15:50
나. 장 소: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강당(4층)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3. 2040 서울 공업지역기본계획(안) 개요
가.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목표년도 2040년
- 공간적: 16.76㎢(다른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 제외)

나. 주요내용
- 계획의 기본방향,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등
- 공업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관리 및 활성화 방향
- 공업지역 유형별 관리방향, 기반시설 계획방향, 환경관리방향 등

4. 기타사항
가. 의견서 제출
- 제출기간: 2025.10.30.(목) ~ 2025.11. 5.(수)
- 제출방법: 방문 및 우편(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2층 도시계획과)
또는 전자우편(njyuni@seoul.go.kr)
- 의견서식: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02-2133-83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40 서울 공업지역기본계획」 공청회 -

의 견 제 출 서

의 견 자 인적사항	성 명		연락처	
	주 소			
의 견 내 용				

상기와 같이 「2040 서울 공업지역기본계획」 공청회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2040 서울 공업지역기본계획」 공청회 관련 의견수렴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동 의 자: (서명)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864호

공유재산 변상금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9조 규정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 확정부과 및 독촉고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 법적근거
가. 사전통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89조 (변상금의 부과)
나. 연 체 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연체료의 징수)
다.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송달)

○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공유재산 변상금 독촉고지

대 상 자	무단점유사실 및 독촉고지 내역	송달주소
윤○래	- 무단점유재산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198-13 - 점유기간 : 2018.07.01. ~ 2024.12.31. - 점유면적 및 요율 : 4.0㎡, 5% - 독촉내역 : 9,187,640원(원금: 7,187,390원, 연체료: 2,000,250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대로 100길 40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략적 사항을 기재하였음

○ 공시송달 기간 : 2025. 10. 2. ~ 2025. 10. 16. (15일 간)

○ 문의사항은 수탁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산관리부(☎02-3410-718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고 시

◈ 종로구고시 제2025-151호

도시관리계획(부암동 지구단위계획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116호(2004.4.20.)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148호(2011.6.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255호(2021.6.3.)로 결정(변경)된, 「부암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부암동 370-12번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하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종 로 구 청 장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1)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3	주차장	부암동 370-12	598	감)598	-	서울시고시 제2009-168호 ('09.04.23)	-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3	주차장	• 주차장 폐지 • 위치 : 부암동 370-12 • 면적 : 59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고 실효 시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해제입안 신청된 사항으로, • 동 사업 추진에 따른 경제성 및 지역간 확충된 주차시설의 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주차장 설치 실효성이 저조하여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 변경(폐지)하고자 함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위 치	면적	구분	
		기정	변경
부암동 370-12 일대	598㎡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부암동 지구단위계획 민간지침 '제11조' 에 따름

■ 변경사유서

위 치	변경사유
부암동 370-12 일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해제 후 대상지 일대의 체계적·계획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부암동 지구단위계획 민간지침 '제11조' 에 따라 대상지를 관리함

라. 관련 도서 : 생략(종로구청 건축과 및 주차관리과 비치 도서와 같음)

마. 기타 사항

○ 궁금한 사항은 종로구 건축과(☎02-2148-2813) 및 주차관리과(☎02-2148-33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안)도

기정



변경(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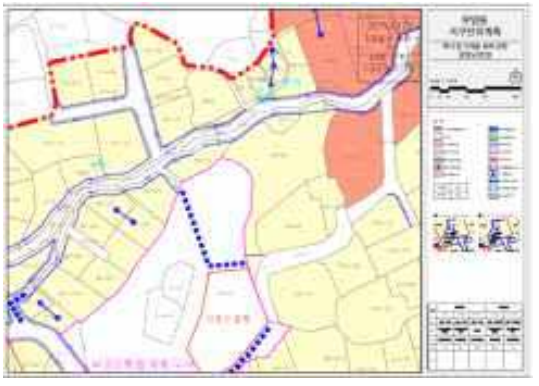


■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안)도 (교통처리계획)

기정



변경(안)



◈ 성북구고시 제2025-15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68-435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성 북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A	25-31	집산	676	상월곡동 23-112	장위동 233-30	일반도로	-	서고시 제2024-448호 ('24.9.19.)	
변경	대로	3	A	25-31	집산	676 (94)	상월곡동 23-112 (장위동 68-639)	장위동 233-30 (장위동 68-432)	일반도로	-	서고시 제2024-448호 ('24.9.19.)	
신설	소로	3	702	6	국지	45	장위동 68-440	장위동 48-449	일반도로	-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사유서

구분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대로 3-A	대로 3-A	• 도로 확폭 - B = 2.0~2.5m(구역 내) - L = 94m(구역 내)	• 장위15구역 변경결정에 따른 대로 3-A호선 내 일부 구간을 확폭하는 사항으로,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지정요건 충족 및 지역주민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진출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도로 확폭
신설	-	소로 3-702	• 도로 신설 - B = 6m - L = 45m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지정요건 충족 및 지역주민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진출입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도로 확보

라. 지형도면의 작성

○ 성북구 도시계획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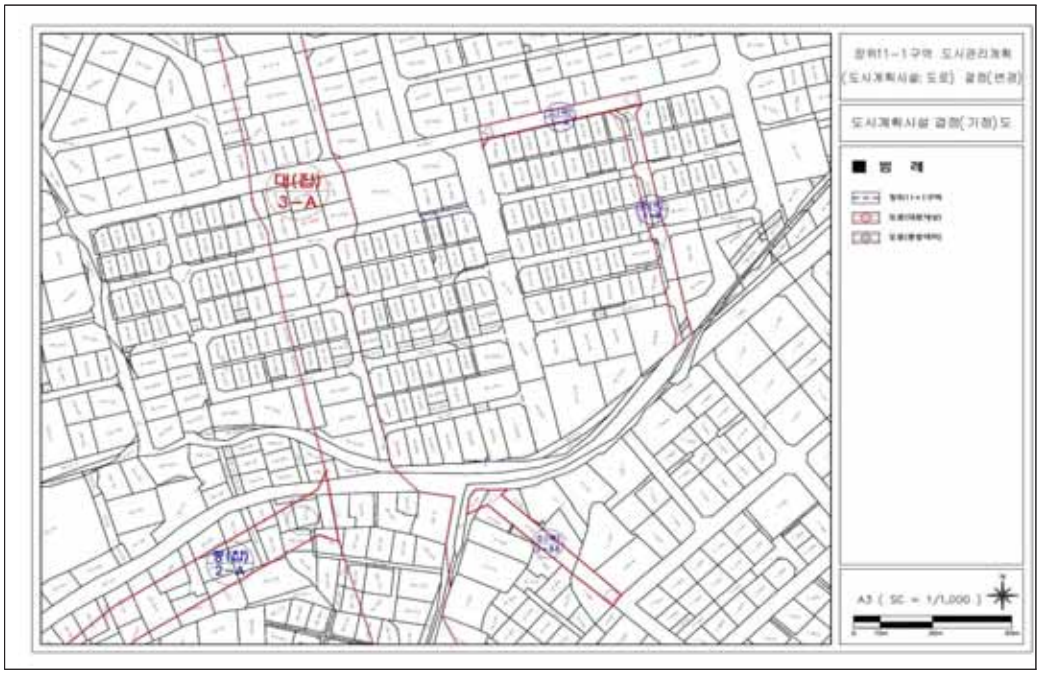
마.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도시계획과(☎02-2241-2764)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 기정



○ 변경



◈ 서대문구고시 제2025-132호

도시계획시설(백련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1. 건설부고시 제2181호(1966.2.5.)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최초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27호(2025.7.31.)로 최종 변경 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68호(2023.10.26.)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결정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9-133호(2019.9.19.)와 제2020-117호(2020.6.29.)로 최초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백련근린공원) 보상사업」에 대하여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공고 제2025-1211호(2025.9.11.)로 열람공고를 마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본 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통지를 갈음하며,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10월 2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산11-332 등 3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사업의 명칭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백련근린공원) 보상사업
다. 사업의 면적 : 8,840.5㎡
라. 사업의 내용 : 토지보상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바.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장
사.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고시일 ~ 2028. 6. 27.까지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물건의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 별도첨부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02-330-19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	지분	소 유 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내용	
계	3필지	9,042	8,840.5							
홍은동 산11-332	임야	8,509	8,307.5	1	재단법인 ***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	-	-	-	백련도시자연공원구역 저촉 (201.5㎡)
홍은동 311	대지	473	473	1	재단법인 ***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	-	-	-	
홍은동 312-1	대지	60	60	1	재단법인 ***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	-	-	-	

◈ 마포구고시 제2025-161호

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고시

1. 우리 구 상암동 31번지 (주)공무점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주택법」제15조에 의거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15조제6항 및「주택법 시행령」제30조제5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건축지원과(☏02-3153-9422)에서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열람가능합니다.

2025년 10월 2일
마 포 구 청 장

가. 사 업 명 : 어쩌다집@상암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주) 공무점
다.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31번지 외 1필지
라. 대지면적 : 1,860㎡
마. 규　　모 : 지하1층 / 지상 14층, 연면적 6,948.57㎡
바. 용　　도 :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형주택 110세대]
사. 사업시행기간 : 2025. 4. ~ 2027. 12.
아. 사업계획승인일 : 2025. 9. 17.
자. 의제되는 사항 :「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등
차. 관련도면 : 마포구청 도시환경국 건축지원과 비치 도면과 같음(문의: ☎02-3153-9415)

◈ 마포구고시 제2025-163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4-166호로 결정된 마포구 성산동 200-433 ~ 95-9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5-29호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5-66호로 실시계획(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5-143호로 실시계획(변경) 고시된 성산동 200-433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변경)을 고시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일
마 포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다. 사업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성 명	조혜순	이용선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재울미래로 *, *동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

마. 시행기간(변경)

구분	기정	변경
시행기간	실시계획인가 고시일~2025.10.31.	실시계획인가 고시일~2025.11.30.

바. 실시계획 변경사유 : 기존 사업시행자(사망) 및 사업시행자 변경에 따른 편입토지 매입 절차상 기간 소요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자. 사업계획서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차. 사업 위치도(변경없음)
카. 관계도서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개선과(☎02-3153-9754)에 비치

◈ 강서구고시 제2025-8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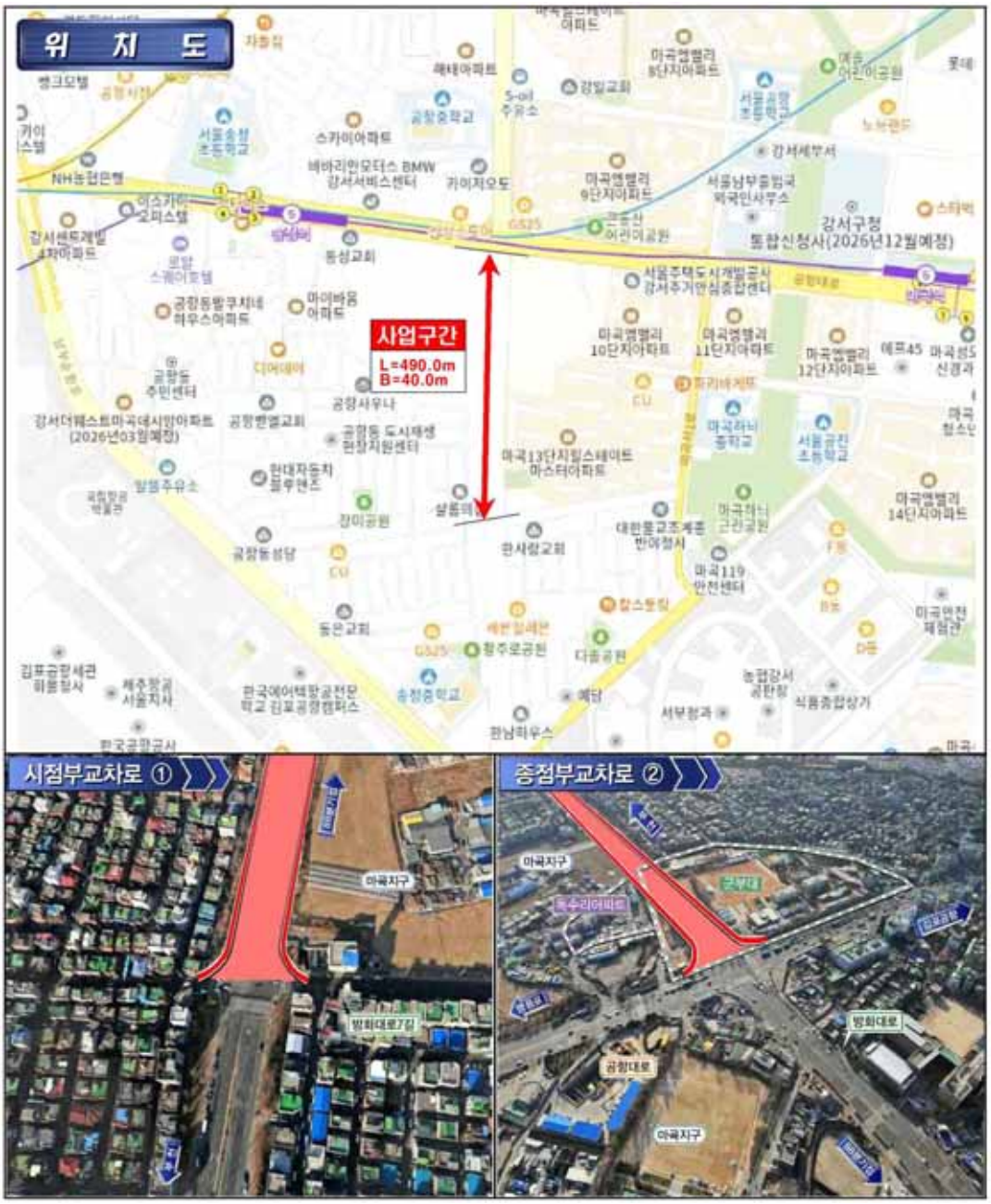
1. 건설부고시 제198호(1971.4.7.)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72호(1978.3.2.)변경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603호(1978.11.15.)로 지적승인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06호(2015.04.23.)로 공항동 군부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강서구공고 제2025-1453호(2025.8.6.) 열람공고 된 「방화대로 군부대 주변 도로개설 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일
강 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강서구 공항동 707-2 ~ 공항동 36-16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사업명칭: 방화대로 군부대 주변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규모
  ○ 면　적: 25,731.3㎡
  ○ 규　모: 양방향 8차로 (B=40m, L=490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 주　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
마. 사업착공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 2027.12.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의 지번,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따로붙임
사.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청 도로과(☎2600-69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토지조서 및 용지도

위 치 도 및 현 장 사 진


위 치 도
사업구간
L=490.0m
B=40.0m
시점부교차로 ①
증점부교차로 ②
마곡지구
방화대로7길
공항대로
방화대로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사 업 명 : 방화대로 군부대 주변도로 개설공사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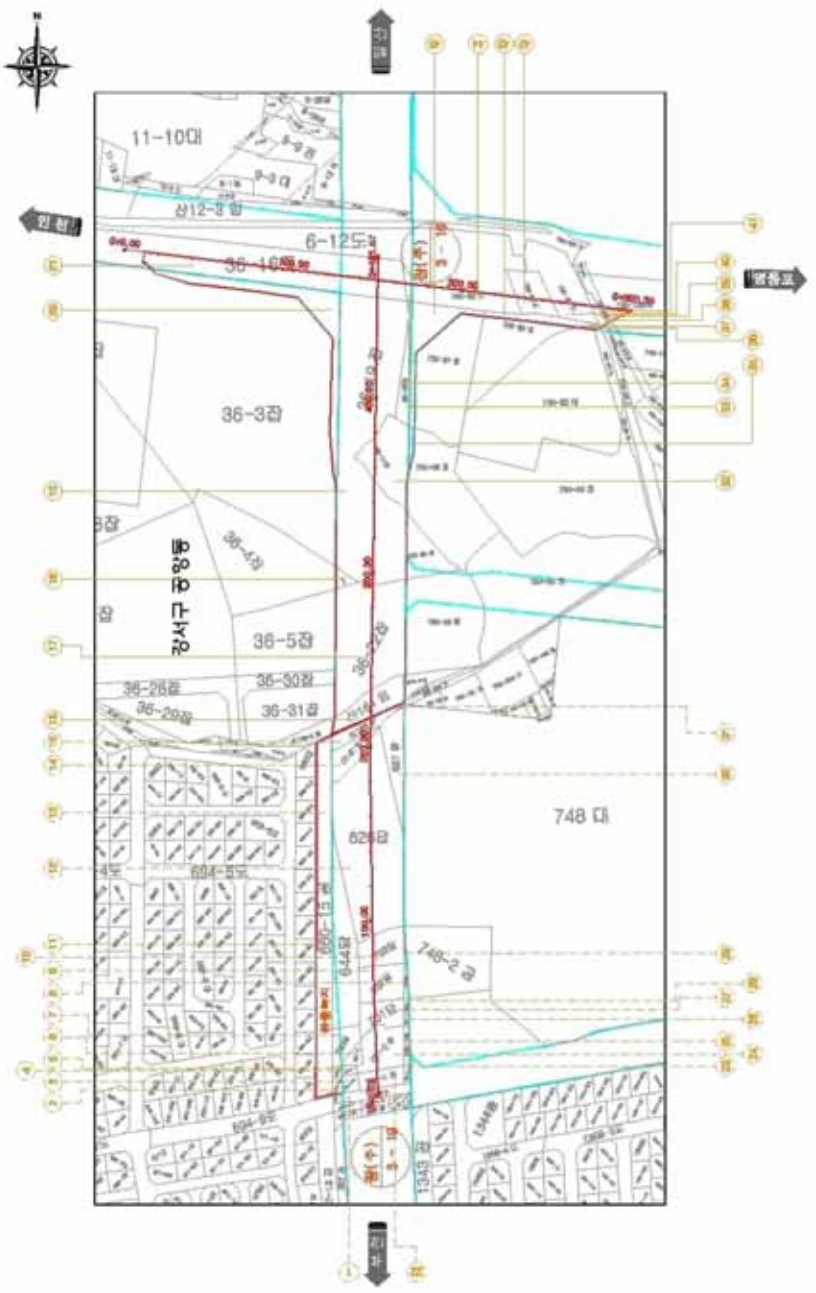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	사용 또는 수용할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외의 권리명세및 소유자,권리자 성명주소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내용
1	공항동	707-2	구	237	223	서울특별시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			
2	공항동	860-1	답	44	44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	공항동	860-3	유	92	92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	공항동	860	답	29	29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	공항동	860-2	도	48	48	서울특별시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			
6	공항동	700-1	유	94	94	서울특별시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			
7	공항동	700	답	250	25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	공항동	705	답	39	39	에스에이치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9	공항동	702	답	523	523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	공항동	703	답	506	506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	공항동	644	답	1,072	1,072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2	공항동	626	답	3,475	3,475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3	공항동	660-15	공원	1,923.3	1,923.3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4	공항동	산161	임	347	347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5	공항동	산163	구	198	198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6	공항동	산164	임	694	694	국방부 최*애 최*임 박*우 김*화 이*원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서울 관악구 신림동 1730 신림프르지오 108-301 부천시 계남로 195 중동상록마을 310-105 의정부시 신곡동 684 은하수A 109-805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로 247(33-11, 113-1702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11로 17, 3층			
17	공항동	36-22	잡	2,492	2,492	국	국방부			
18	공항동	36-21	잡	92	92	국	교통부			
19	공항동	36-19	잡	5,354	5,354	국	국방부			
20	공항동	36-3	잡	18,380	1,222	국	국방부			
21	공항동	36-16	도	5,458	1,439	국	기획재정부			
22	공항동	701-1	유	273	273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3	공항동	706-5	유	41	41	서울특별시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			
24	공항동	701-2	유	601	601	서울특별시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			
25	공항동	706-1	유	69	69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6	공항동	706-4	유	14	14	서울특별시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			
27	공항동	701	답	400	4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8	공항동	706	답	26	26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			
29	공항동	704	답	15	15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0	공항동	627	답	556	556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1	공항동	628	구	5	5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2	공항동	36-17	답	1,045	1,045	국	국방부			
33	공항동	36-18	잡	323	323	국	국방부			
34	공항동	6-12	도	3,045	35	국	국토교통부			
35	마곡동	730-86	답	2,472	63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36	마곡동	730-91	도	301	10	에스에이치공사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37	마곡동	730-82	대	4,979	13	에스에이치공사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38	마곡동	730-319	구	150	32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9	마곡동	730-89	도	754	50	국	국토교통부			
40	마곡동	730-50	도	959	204	국	국토교통부			
41	마곡동	730-736	도	4,391	52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2	마곡동	730-83	도	486	187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43	마곡동	730-88	대	1,470	255	에스에이치공사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44	마곡동	730-62	도	2,715	627	국	국토교통부			
45	마곡동	730-87	잡	2,748	679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 끝 -				

〔 용지도 〕

용 지 도


11-10대
삼12-3 광
6-12도
36-10철도
36-3잡
강서구 공항동
36-4잡
36-5잡
36-25잡
36-29잡
36-30잡
36-31잡
748 대
624잡
694-5도
644잡
748-2 광
1344잡
1345 잡
염창로
방화
부천

◈ 서초구고시 제2025-176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주차장) 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1.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00-62호(2000.10.02.)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되고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21-218호(2021.10.21.)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주차장)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었으며,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22-196호(2022.11.03.)로 실시계획 고시된 양재동 301-6번지 외 2개 부지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주차장) 사업의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주차관리과(02-2155-72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일
서 초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01-6, 298, 298-11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주차장)사업
- 명 칭 : 구룡공영주차장 신축

다. 면적 및 규모
- 사업시행지 면적 : 2,575.9㎡
- 건축면적 : 900.11㎡
- 연 면 적 : 9,792.62㎡
- 층 수 : 지하4층/지상4층
- 건축물 용도

〈당 초〉

주 시설		부대 및 편익시설		
시설명	면적(㎡)		시설명	면적(㎡)
주차장 (지하1~4층, 163면)	7,317.66	4층	인공지능육성센터	557.79
		3층	느티나무쉼터	620.69
		2층	서리풀노리학교	784.54
		1층	늘봄카페 및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511.94
		소계		2,474.96
총 계	9,792.62㎡			

〈변 경〉

주 시설		부대 및 편익시설		
시설명	면적(㎡)		용 도	면적(㎡)
주차장 (지하1~4층, 163면)	7,317.66	4층	1종 근린생활시설	557.79
		3층	1종 근린생활시설	620.69
		2층	1종 근린생활시설	784.54
		1층	1종 근린생활시설	511.94
		소계		2,474.96
총 계	9,792.62㎡			

※ 상기내용 외 변동사항 없음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초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23.03.~2027.06.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일련번호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1	서초구 양재동 301-6	주차장	998.5	-	서초구청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	-
2	서초구 양재동 298	공원	1487.4	-	서초구청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	주차장 중복결정
3	서초구 양재동 298-11	도로	90	-	서초구청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	주차장 중복결정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음)

구 공 고

◈ 종로구공고 제2025-1338호

익선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 건축물 불허용도에 관한 결정(변경)-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142호(2018.5.10.)호로 최초 결정된, 「익선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 불허용도에 관한 결정(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종 로 구 청 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건축물에 관한 용도 결정조서 : 변경
   1) 불허용도 : 변경
      ■ 불허용도 결정(변경)조서

도면 표시번호	적용 구역	위치	변 경 사 유
불허3	돈화문로 구역	1층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용도 중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돈화문로 변에서 점포깊이 6m 까지 불허, 단 한옥 건축시에는 전체 허용)
		전층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용도 중 • 공동주택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목욕탕, 세탁소, 탁구장, 체육도장,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시설, 양수장, 정수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자동차영업소, 총포판매소,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검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등,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국악기, 공예품, 생활한복관련 제외)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 공연장(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제외) 및 전시장을 제외한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생활권수련시설을 제외한 수련시설, 운동시설, 관광숙박시설을 제외한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차장을 제외한 자동차관련시설, 교정및군사시설, 발전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야영장시설

도면 표시번호	적용 구역	위치	변 경 사 유
불허4	태화 관길 구역	전층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용도 중 • 공동주택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목욕탕, 세탁소, 탁구장, 체육도장,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시설, 양수장, 정수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자동차영업소, 총포판매소,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검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등,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국악기, 공예품, 생활한복관련 제외)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 공연장(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제외) 및 전시장을 제외한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생활권수련시설을 제회한 수련시설, 운동시설, 관광숙박시설을 제외한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차장을 제회한 자동차관련시설, 교정및군사시설, 발전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야영장시설

■ 불허용도 결정(변경)도 : 변경 없음

■ 불허용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불허3 불허4	• 기 존 - 불허 3 : 태화관길 구역 - 불허 4 : 돈화문로 구역 • 변 경 - 불허 3 : 돈화문로 구역 - 불허 4 : 태화관길 구역	• 도시관리계획(익선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내 건축물의 불허 용도 관련 정정 사항이 있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변경한 사항으로,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의 돈화문로변의 계획(1층 불허용도)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기존 결정도의 내용을 따라 변경내용과 같이 결정(변경)

마. 기타 사항

○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시관리계획(안) 도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종로구 건축과(☎02-2148-28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산구공고 제2025-1295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4029호(2024.12.19.) 및 제294호(2025.5.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된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360번지 일대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내 한남3 어린이공원(가칭) 등 공원 2개소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2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하고자 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용 산 구 청 장

1. 도시계획시설(공원)명 :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어린이공원(가칭) 등 2개소

2.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35-13 등 2개소

3. 면　　적

연번	공원명	소재지	면적(㎡)	도시계획시설결정일(최초)	비 고
1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어린이공원(가칭)	보광동 35-13일대	2,855.8	서고223호(2017.6.29)	
2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소공원(가칭)	보광동 393일대	6,576.4	서고49호(2023.2.16)	

4. 공원조성계획(안): 열람장소(공원녹지과)에 비치

5. 재열람공고사유: 2025년 제6차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의견 반영

6. 관계도서 : 열람장소(공원녹지과)에 비치

7.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8.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원녹지과 (☎ 02-2199-7593)

9. 본 공원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내
한남3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조서

1. 총괄표 (위치 : 서울시 보광동 31-13 일대)

구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2,855.80	1,401.70	-	-	-	63	
기반시설	소 계	654.50	654.50	-	-	-	-	
	도 로	437.50	437.50	-	-	-	-	
조경시설		-	-	-	-	-	3	
휴양시설		112.20	112.20	-	-	-	23	
유희시설		635.00	635.00	-	-	-	9	
관리시설		-	-	-	-	-	28	
녹지		1,454.10	-	-	-	-	-	
시 설 율 (법정 60%)		(1,401.70 / 2,855.80) x 100 = 49.08%						
건 폐 율 (법정 5%)		-						

2. 시설조서

구분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	2,855.80	1,401.70	-	-	-	-	63	
기반시설	소계		-	654.50	654.50	-	-	-	-	-	
	도 로(소계)	-	전지역	437.50	437.50	-	-	-	-	-	
	진입광장-1	가-1	보광동33-9	130.00	130.00	-	-	-	-	-	
	진입광장-2	가-2	보광동35-38	87.00	87.00	-	-	-	-	-	
조경시설	소계		-	-	-	-	-	-	-	3	
	파고라	①	전지역	-	-	-	-	-	-	3	
휴양시설	소계		-	112.20	112.20	-	-	-	-	23	
	포켓쉼터	나	전지역	35.70	35.70	-	-	-	-	-	
	포켓쉼터-1	나-1	보광동33-4	5.10	5.10	-	-	-	-	-	
	포켓쉼터-2	나-2	보광동45-1	5.10	5.10	-	-	-	-	-	
	포켓쉼터-3	나-3	보광동44	5.10	5.10	-	-	-	-	-	
	포켓쉼터-4	나-4	보광동54-1	5.10	5.10	-	-	-	-	-	
	포켓쉼터-5	나-5	보광동35-39	5.10	5.10	-	-	-	-	-	
	포켓쉼터-6	나-6	보광동35-50	5.10	5.10	-	-	-	-	-	
	포켓쉼터-7	나-7	보광동35-16	5.10	5.10	-	-	-	-	-	
	휴게쉼터	다	전지역	68.00	68.00	-	-	-	-	-	
	휴게쉼터-1	다-1	보광동45-3	40.00	40.00	-	-	-	-	-	
	휴게쉼터-2	다-2	보광동35-31	28.00	28.00	-	-	-	-	-	
	평의자	②	전지역	-	-	-	-	-	-	6	
	등의자	③	전지역	-	-	-	-	-	-	14	
	앉음벽	④	전지역	8.50	8.50	-	-	-	-	3	L=16.5m
유희시설	소 계		-	635.00	635.00	-	-	-	-	9	
	놀이터	라	보광동43-2	635.00	635.00	-	-	-	-	-	
	조합놀이대	⑤	보광동43-2	-	-	-	-	-	-	1	
	유아조합놀이대	⑥	보광동53-1	-	-	-	-	-	-	1	
	그네	⑦	보광동42-1	-	-	-	-	-	-	2	
	시소	⑧	보광동43-1	-	-	-	-	-	-	2	
	흔들놀이대	⑨	보광동52	-	-	-	-	-	-	3	
관리시설	소 계		-	-	-	-	-	-	-	28	
	안내시설	⑩	전지역	-	-	-	-	-	-	9	
	볼라드	⑪	전지역	-	-	-	-	-	-	19	
녹지	소계		-	1,454.10	-	-	-	-	-	-	
	녹지		전지역	1,454.10	-	-	-	-	-	-	

3. 도로조서

- 공원시설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합계				165.8	437.5				
신설	소로	3	1	3	70.0	219.0	연결로	가-1	가-2	
		3	2	2	72.0	145.0	연결로	소로3-1	소로3-1	
		3	3	6	6.8	30.0	진입로	부지경계	소로3-2	
		3	4	2	8.5	16.0	진입로	부지경계	소로3-2	
		3	5	3	8.5	27.5	진입로	가-2	부지경계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내
한남4소공원(가칭) 조성계획 결정조서

1. 총괄표 (위치 : 서울시 보광동 393 일대)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 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6,576.40	1,304.40	-	-	-	48	
기반 시설	소 계	924.00	924.00	-	-	-	-	
	도 로	677.50	677.50	-	-	-	-	
	광 장	246.50	246.50	-	-	-	-	
조경시설		58.50	58.50	-	-	-	4	
운동시설		87.00	87.00	-	-	-	1	
휴양시설		154.50	154.50	-	-	-	21	
관리시설		-	-	-	-	-	22	
녹 지 및 기 타		5,352.40	80.00	-	-	-	-	
시 설 율 (법정 20%)		(1,304.40 / 6,576.40) x 100 = 19.83%						
건 폐 율 (법정 5%)		(0.00 / 6,576.40) x 100 =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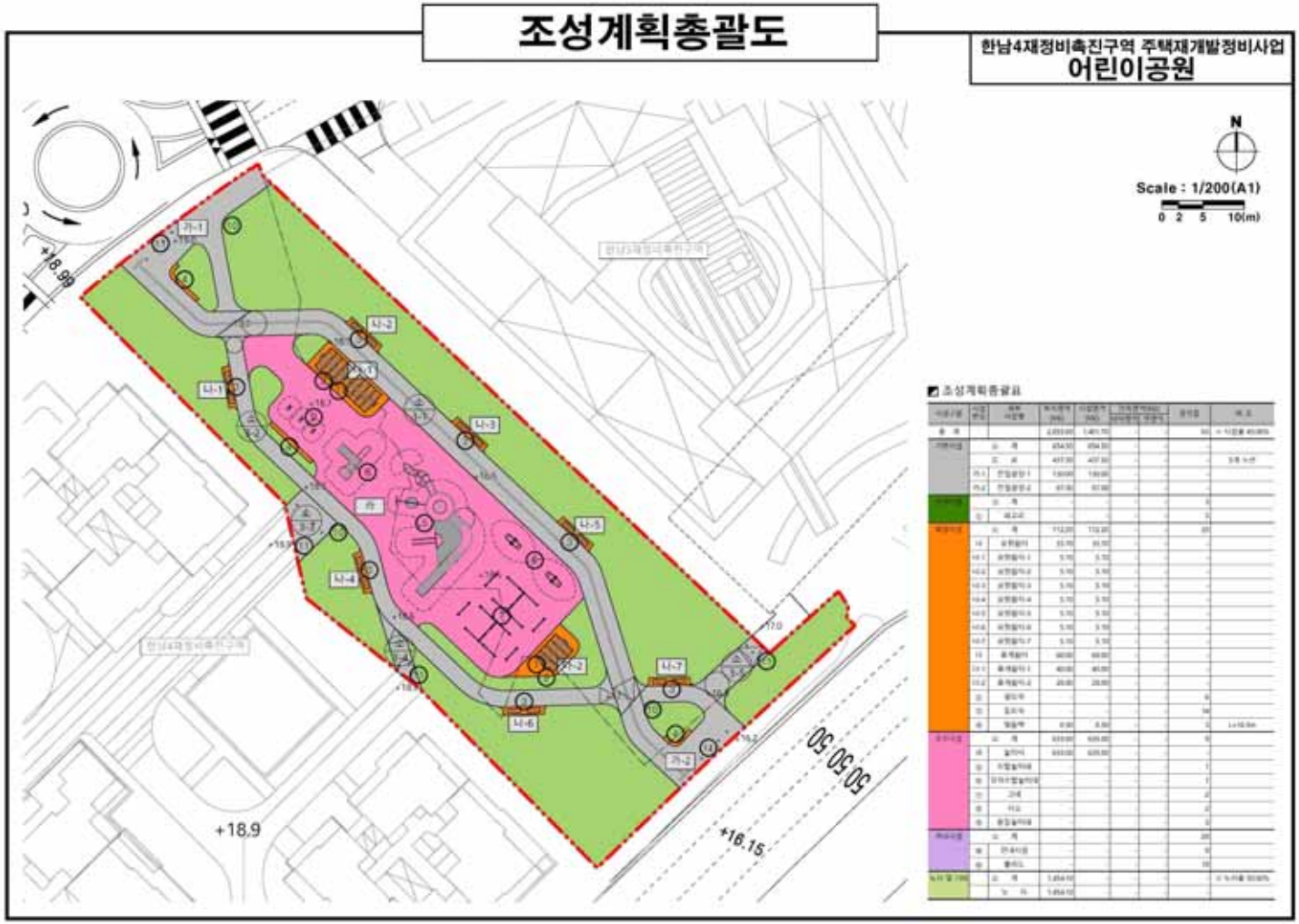
2. 시설조서

구 분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	6,576.40	1,304.00	-	-	-	-	48	
기반시설	소 계		-	924.00	924.00	-	-	-	-	-	
	도로		전지역	677.50	677.50	-	-	-	-	-	4노선
	진입광장-1	가-1	보광동420-1	19.00	19.00	-	-	-	-	-	
	진입광장-2	가-2	보광동215-2	18.00	18.00	-	-	-	-	-	
	중심광장-1	나-1	보광동421	26.50	26.50	-	-	-	-	-	
	중심광장-2	나-2	보광동399-2	183.00	183.00	-	-	-	-	-	
조경시설	소 계		-	58.50	58.50	-	-	-	-	4	
	이야기마당	다	보광동415-1	58.50	58.50	-	-	-	-	-	
	파고라	①	보광동399-2	-	-	-	-	-	-	2	
	조형파고라	②	보광동393	-	-	-	-	-	-	1	
	스토리가벽	③	보광동415-1	-	-	-	-	-	-	1	
운동시설	소 계		-	87.00	87.00	-	-	-	-	1	
	운동마당	라	보광동412	87.00	87.00	-	-	-	-	-	
	체력단련시설	④	보광동412	-	-	-	-	-	-	1	
휴양시설	소 계		-	154.50	154.50	-	-	-	-	21	
	휴게쉼터-1	마-1	보광동403	56.00	56.00	-	-	-	-	-	
	휴게쉼터-2	마-2	보광동393	98.50	98.50	-	-	-	-	-	
	다각벤치	⑤	보광동403	-	-	-	-	-	-	5	
	원형벤치	⑥	보광동422-1	-	-	-	-	-	-	1	
	평의자	⑦	전지역	-	-	-	-	-	-	8	
	앉음벽	⑧	전지역	-	-	-	-	-	-	7	L=48m
관리시설	소 계		-	-	-	-	-	-	-	22	
	안내시설	⑨	전지역	-	-	-	-	-	-	9	
	볼라드	⑩	전지역	-	-	-	-	-	-	13	
녹지및기타	소 계		-	5,352.40	80.00	-	-	-	-	-	
	녹지		전지역	5,272.40	-	-	-	-	-	-	
	기타(옹벽)	⑪	전지역	80.00	80.00	-	-	-	-	-	

3. 도로조서

- 공원시설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합 계				236.5	677.5				
신설	소로	3	1	3	159.5	480.5	진입로	부지경계	부지경계	
		3	2	3	11.5	35.0	연결로	다	소로3-1	
		3	3	3	50.0	115.0	연결로	나-2	소로3-2	
		3	4	3	15.5	47.0	연결로	마-1	나-2	


조성계획총괄도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어린이공원
N
Scale : 1/200(A1)
0 2 5 10(m)
조성계획종괄표
+18.99
+18.9
+16.15
50 50 50

조성계획총괄도



◈ 용산구공고 제2025-1306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696호(2021.12.16.) 및 제57호(2024.1.2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된 서울시 용산구 동빙고동 60번지 일대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내 한남5구역 문화공원(가칭) 등 공원 2개소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2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용 산 구 청 장

1. 도시계획시설(공원)명 :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내 문화공원(가칭) 등 2개소

2.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빙고동 42-17 등 2개소

3. 면　　적

연번	공원명	소재지	면적(㎡)	도시계획시설결정일(최초)	비 고
1	한남5구역 문화공원(가칭)	동빙고동 42-17	7,187	서고696호(2021.12.16.)	
2	한남5구역 소공원(가칭)	서빙고동 134	2,383	서고696호(2021.1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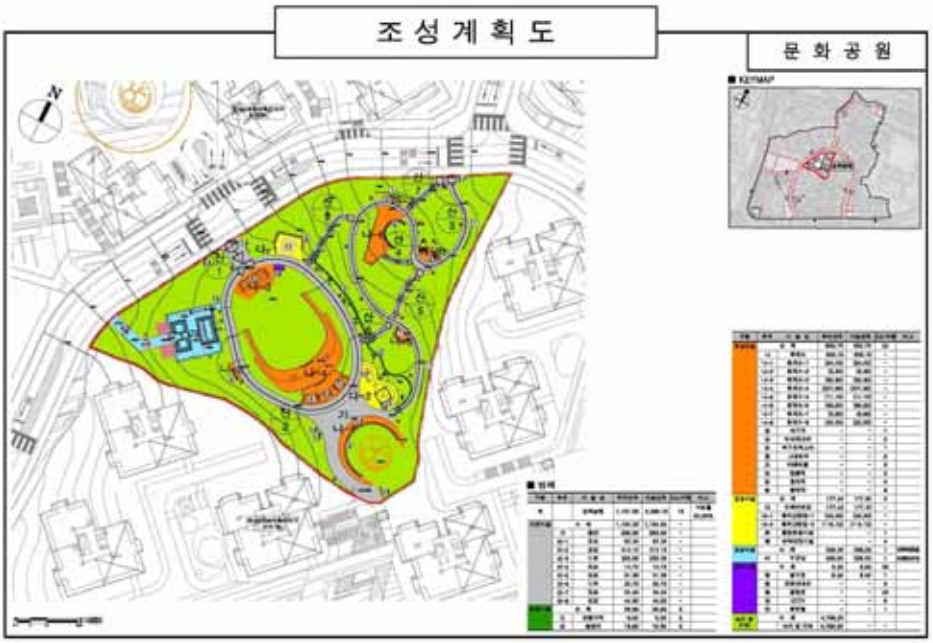
4. 공원조성계획(안): 열람장소(공원녹지과)에 비치

5. 관계도서 : 열람장소(공원녹지과)에 비치

6. 열람기간 : 시보게제일로부터 14일 이상

7.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원녹지과 (☎ 02-2199-7593)

8. 본 공원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조 성 계 획 도
문 화 공 원


조 성 계 획 도
소 공 원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내
문화공원 조성계획결정조서(최초결정)

1. 총괄표(위치:용산구 동빙고동 42-17일대)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7,187.00	2,398.70				72	
공원시설	소 계		2,398.70	2,398.70				-	
	기반시설	광장	269.80	269.80				-	
		도로	924.50	924.50				-	
	조경시설		28.80	28.80				5	
	휴양시설		653.70	653.70				25	
	운동시설		177.40	177.40				5	
	교양시설		338.00	338.00				1	
	관리시설		6.50	6.50				36	
녹지 및 기 타			4,788.30	-				-	
시설율 (법정 -%)			(2,398.70㎡ ÷ 7,187.00㎡) × 100 = 33.38%						
건폐율 (법정 20%)			(44.50㎡ ÷ 7,187.00㎡) × 100 = 0.61%						

2. 시설조서(최초결정)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7,187.00	2,398.70					72	
기반시설	계			1,194.30	1,194.30					-	
	광장	가	부지내	269.80	269.80					-	
	도로		〃	924.50	924.50					-	
조경시설	계			28.80	28.80					5	
	조형가벽	①	부지내	9.00	9.00					3	
	플랜터	②	〃	19.80	19.80					2	
	계			653.70	653.70					25	
휴양시설	휴게소	나	부지내	653.70	653.70					-	
	휴게소-1	나-1	〃	(84.20)	(84.20)					-	
	휴게소-2	나-2	〃	(9.30)	(9.30)					-	
	휴게소-3	나-3	〃	(82.80)	(82.80)					-	
	휴게소-4	나-4	〃	(327.90)	(327.90)					-	
	휴게소-5	나-5	〃	(17.70)	(17.70)					-	
	휴게소-6	나-6	〃	(98.20)	(98.20)					-	
	휴게소-7	나-7	〃	(8.60)	(8.60)					-	
	휴게소-8	나-8	〃	(25.00)	(25.00)					-	
	파고라	③	〃	-	-					1	
	연식파고라	④	〃	-	-					2	
	막구조파고라	⑤	〃	-	-					1	
	그네의자	⑥	〃	-	-					2	
	바테이블	⑦	〃	-	-					3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앉음벽	⑧	〃	-	-					3	
	등의자	⑨	〃	-	-					4	
	평의자	⑩	〃	-	-					9	
운동시설	계			177.40	177.40					5	
	체력단련장	다	부지내	177.40	177.40					-	
	체력단련장-1	다-1	〃	(59.30)	(59.30)					-	
	체력단련장-2	다-2	〃	(118.10)	(118.10)					-	
	종합운동시설	⑪	〃	-	-					1	
	체력단련시설	⑫	〃	-	-					4	
교양시설	계			338.00	338.00					1	
	부군당	라	부지내	338.00	338.00					1	건축면적 44.50M2
관리시설	계			6.50	6.50					36	
	음수전	⑬	부지내	6.50	6.50					1	
	공원안내판	⑭	〃	-	-					8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비고
								바닥 면적	연 면적		
	공원등	⑮	〃	-	-					20	
	CCTV	⑯	〃	-	-					6	
	분전함	⑰	〃	-	-					1	
녹지 및 기타				4,788.30	-					-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합 계					924.50	산책로	–	–	
신설	산책로	–	1	6.0	8.2	52.30	진입로	북서측 대지경계	산-2	
신설	산책로	–	2	3.0	138.0	414.10	산책로	산-1	산-1	
신설	산책로	–	3	2.0	147.1	303.00	진입로	북측 대지경계	광장	
신설	산책로	–	4	1.5	9.8	14.70	산책로	산-3	휴게소 나-6	
신설	산책로	–	5	2.0	18.0	37.30	산책로	산-3	산-3	
신설	산책로	–	6	2.0	11.3	22.70	산책로	산-3	산-2	
신설	산책로	–	7	2.0	16.0	34.50	산책로	북측 대지경계	산-3	
신설	산책로	–	8	2.0	23.0	45.90	산책로	산-3	산-2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내
소공원 조성계획결정조서(최초결정)

1. 총괄표(위치:용산구 서빙고동 134일대)

구 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공작물(기)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2,383.00	474.80				23	
공원시설	소 계	474.80	474.80				-	
	기반시설	302.60	302.60				-	
	조경시설	-	-				1	
	휴양시설	139.70	139.70				4	
	운동시설	32.50	32.50				3	
	관리시설	-	-				15	
녹지 및 기 타		1,908.20	-				-	
시설율 (법정 20%)		(474.80㎡ ÷ 2,383.00㎡) × 100 = 19.92%						
건폐율 (법정 5%)		(0.0㎡ ÷ 0.0㎡) × 100 = 0.0%						

2. 시설조서(최초결정)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2,383.00	474.80					23	
기반시설	계			302.60	302.60					-	
	도 로		부지내	302.60	302.60					-	
조경시설	계			-	-					1	
	조형가벽	①	부지내	-	-					1	
휴양시설	계			139.70	139.70					4	
	휴게소	가	부지내	139.70	139.70					-	
	휴게소-1	가-1	〃	(130.00)	(130.00)					-	
	휴게소-2	가-2	〃	(9.70)	(9.70)					-	
	파고라	②	〃	-	-					1	
	야외테이블	③	〃	-	-					1	
	등의자	④	〃	-	-					2	
운동시설	계			32.50	32.50					3	
	체력단련장	나	부지내	32.50	32.50					-	
	체력단련시설	⑤	〃	-	-					3	
관리시설	계			-	-					15	
	공원안내판	⑥	부지내	-	-					2	
	공원등	⑦	〃	-	-					10	
	CCTV	⑧	〃	-	-					2	
	분전함	⑨	〃	-	-					1	
녹지 및 기타				1,908.20	-					-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합 계					302.60	산책로	–	–	
신설	산책로	–	1	2.0	6.3	14.20	진입로	남동측 대지경계	산-2	
신설	산책로	–	2	2.0	109.9	222.70	산책로	휴게소 가-1	휴게소 가-1	
신설	산책로	–	3	1.5	10.1	15.50	진입로	북동측 대지경계	산-2	
신설	산책로	–	4	2.0	7.8	16.90	진입로	북측 대지경계	산-2	
신설	산책로	–	5	1.5	10.8	16.50	진입로	북측 대지경계	산-2	
신설	산책로	–	6	1.5	10.3	16.80	진입로	서측 대지경계	산-2	

◈ 광진구공고 제2025-1125호

도시관리계획(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국립서울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57호(2012.9.27.)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17-56호(2017.6.15.), 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21-113호(2021.7.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2호(2024.2.1.)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관리계획(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국립서울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일
광 진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광진구청 도시계획과(☎02-450-7682)
다. 열람(안) 주요내용
Ⅰ.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없음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1) 도로 : 변경없음
(2) 철도 : 변경없음
(3) 철도 부대시설 : 변경없음
(4)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주차장	중곡동 29-1	4,875.0	-	4,875.0	2012.9.27. (서고 제2012-257호)	중복결정 지상:공공공지
변경	①	주차장	중곡동 29-1	4,875.0	-	4,875.0	2012.9.27. (서고 제2012-257호)	중복결정 지상:사회복지시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②	주차장	중곡동 221-6	695.0	-	695.0	2009.1.2. (광진구고시 제2008-55호)	노외주차장
기정	③	주차장	중곡동 230-12	1,757.4	-	1,757.4	1999.4.27. (광진구고시 제1999-13호)	노외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주차장	▪ 중복결정(변경) - 중복결정 지상 : 공공공지 → 사회복지시설	▪ 지하 주차장 및 지상 공공공지로 중복결정된 해당 부지의 지상부 공공공지를 전면폐지하고 사회복지시설로 변경결정하여 지상부·지하부 복합개발을 통해 주차장 및 주민편의시설을 도입하고자 함

2) 공간시설(변경)

(1) 공원 : 변경없음

(2)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공지	중곡동 29-1	4,875.0	-	4,875.0	2012.9.27. (서고 제2012-257호)	중복결정 지하:주차장
폐지	①	공공공지	중곡동 29-1	4,875.0	감) 4,875.0	-	-	-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공지	▪ 공공공지 폐지 - 면적 : 4,875.0㎡	▪ 지하 주차장 및 지상 공공공지로 중복결정된 해당 부지의 지상부 공공공지를 전면폐지하고 사회복지시설로 변경결정하여 지상부·지하부 복합개발을 통해 주차장 및 주민편의시설을 도입하고자 함

3) 유통 및 공급시설 : 변경없음

4)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1) 학교 : 변경없음

(2) 체육시설 : 변경없음

(3)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사회복지시설	중곡동 29-1	-	증) 4,875.0	4,875.0	-	중복결정 지하:주차장

○ 사회복지시설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신설 - 면적 : 4,875.0㎡	▪ 지하 주차장 및 지상 공공공지로 중복결정된 해당 부지의 지상부 공공공지를 전면폐지하고 사회복지시설로 변경결정하여 지상부·지하부 복합개발을 통해 주차장 및 주민편의시설을 도입하고자 함 ▪ 중복결정: 지하 주차장

○ 건축물의 범위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비고
60 이하	200 이하	3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3.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가구 결정(변경)조서

(1) 주거지역 : 변경없음

(2) 공공용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위치	가구번호	면적(㎡)	비고
기정	중곡동 168-8대	GR-1	3,690.0	중곡문화체육센터
기정	중곡동 30-75대	GR-8	187.6	중곡역
기정	중곡동 30-77대	GR-8	35.8	중곡역
기정	중곡동 29-1대	GR-8	5,348.8	공공공지(주차장)
변경	중곡동 29-1대	GR-8	5,348.8	사회복지시설(주차장)
기정	중곡동 220-22학	GR-14	5,616.6	중광초등학교
기정	중곡동 230-12차	GR-15	1,757.4	주차장
기정	중곡동 229-5대	GR-16	2,242.6	중곡시장
기정	중곡동 229-15대	GR-16	1,553.7	중곡시장
기정	중곡동 221-6차	GR-17	695.0	주차장

○ 가구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GR-8	GR-8	중곡동 29-1대	▪ 공공공지 폐지 및 사회복지시설 신설에 따른 변경 - 공공공지(주차장) → 사회복지시설(주차장)	▪ 지하 주차장 및 지상 공공공지로 중복결정된 해당 부지의 지상부 공공공지를 전면폐지하고 사회복지시설로 변경결정하여 지상부·지하부 복합개발을 통해 주차장 및 주민편의시설을 도입하고자 함

2) 획지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대지규모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Ⅱ. 국립서울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주차장	중곡동 29-1	4,875.0	-	4,875.0	2012.9.27. (서고 제2012-257호)	중복결정 지상:공공공지
변경	①	주차장	중곡동 29-1	4,875.0	-	4,875.0	2012.9.27. (서고 제2012-257호)	중복결정 지상:사회복지시설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주차장	▪ 중복결정(변경) - 중복결정 지상 : 공공공지 → 사회복지시설	▪ 지하 주차장 및 지상 공공공지로 중복결정된 해당 부지의 지상부 공공공지를 전면폐지하고 사회복지시설로 변경결정하여 지상부·지하부 복합개발을 통해 주차장 및 주민편의시설을 도입하고자 함

나) 공간시설
1) 공원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공지	중곡동 29-1	4,875.0	-	4,875.0	2012.9.27. (서고 제2012-257호)	중복결정 지하:주차장
폐지	①	공공공지	중곡동 29-1	4,875.0	감) 4,875.0	-	-	-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공지	▪ 공공공지 폐지 - 면적 : 4,875.0㎡	▪ 지하 주차장 및 지상 공공공지로 중복결정된 해당 부지의 지상부 공공공지를 전면폐지하고 사회복지시설로 변경결정하여 지상부·지하부 복합개발을 통해 주차장 및 주민편의시설을 도입하고자 함

다) 공공 · 문화체육시설

1)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사회복지시설	중곡동 29-1	-	증) 4,875.0	4,875.0	-	중복결정 지하:주차장

○ 사회복지시설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사회복지 시설	▪ 사회복지시설 신설 - 면적 : 4,875.0㎡	▪ 지하 주차장 및 지상 공공공지로 중복결정된 해당 부지의 지상부 공공공지를 전면폐지하고 사회복지시설로 변경결정하여 지상부 · 지하부 복합개발을 통해 주차장 및 주민편의시설을 도입하고자 함 ▪ 중복결정: 지하 주차장

○ 건축물의 범위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비고
60 이하	200 이하	3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3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기정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가구번호	위치	필지면적(㎡)	획지면적(㎡)	가구번호	위치	필지면적(㎡)	획지면적(㎡)	
특별계획구역	GR-8	29-1대	4,875.0	46,257.7	GR-8	29-1대	4,875.0	46,257.7	-
		29-2도	494.4			29-2도	494.4		
		29-92대	473.8			29-92대	473.8		
		30-1대	19,561.3			30-1대	19,561.3		
		30-78도	694-5			30-78도	694-5		
		30-79공	1,276.7			30-79공	1,276.7		
		30-80대	18,190.8			30-80대	18,190.8		
		30-81도	691.2			30-81도	691.2		
	▪ 병원 환자에 대한 진료 및 입원·치료에 대한 연속성 유지를 위해 단일대지를 분할하여 단계별로 개발토록 함				▪ 병원 환자에 대한 진료 및 입원·치료에 대한 연속성 유지를 위해 대지분할가능선을 지정하여 단계별로 개발토록 함 - 1단계 (S1) : 19,561.3㎡ {병원 증축, 도로 확폭(622.3㎡)} - 2단계 (S2) : 18,190.8㎡ {대지분할 및 신축, 소공원(1,276.7㎡) 및 공공공지(지하주차장)(4,875.0㎡), 도로(1,237.2㎡) 조성} ※기존도로(용마산로23길) 면적 제외(503.2㎡)			

○ 변경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가구번호	위치	필지면적(㎡)	획지면적(㎡)	가구번호	위치	필지면적(㎡)	획지면적(㎡)	
특별계획구역	GR-8	29-1대	4,875.0	46,257.7	GR-8	29-1대	4,875.0	46,257.7	-
		29-2도	494.4			29-2도	494.4		
		29-92대	473.8			29-92대	473.8		
		30-1대	19,561.3			30-1대	19,561.3		
		30-78도	694-5			30-78도	694-5		
		30-79공	1,276.7			30-79공	1,276.7		
		30-80대	18,190.8			30-80대	18,190.8		
		30-81도	691.2			30-81도	691.2		
	▪ 병원 환자에 대한 진료 및 입원·치료에 대한 연속성 유지를 위해 단일대지를 분할하여 단계별로 개발토록 함				▪ 병원 환자에 대한 진료 및 입원·치료에 대한 연속성 유지를 위해 대지분할가능선을 지정하여 단계별로 개발토록 함 - 1단계 (S1) : 19,561.3㎡ {병원 증축, 도로 확폭(622.3㎡)} - 2단계 (S2) : 18,190.8㎡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가구번호	위치	필지면적 (㎡)	획지면적 (㎡)	가구번호	위치	필지면적 (㎡)	획지면적 (㎡)	
					{대지분할 및 신축, 소공원(1,276.7㎡) 및 사회복지시설(지하주차장)(4,875.0㎡), 도로(1,237.2㎡) 조성} ※기존도로(용마산로23길) 면적 제외(503.2㎡)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 세부개발계획 2단계 개발계획 중 공공공지 폐지 및 사회복지시설로 변경 - 공공공지(지하주차장)(4,875.0㎡) → 사회복지시설(지하주차장)(4,875.0㎡)	▪ 지하 주차장 및 지상 공공공지로 중복결정된 해당 부지의 지상부 공공공지를 전면폐지하고 사회복지시설로 변경결정하여 지상부·지하부 복합개발을 통해 주차장 및 주민편의시설을 도입하고자 함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라. 관련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마. 기타사항

- 열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도시계획과(☎02-450-76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북구공고 제2025-1310호

도시관리계획(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62호(2014.12.26.)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66호(2016.11.24.) 및 제2022-412호(2022.10.13.)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3-763호(2023.6.8.) 및 제2025-44호(2025.4.17.)로 (재)열람공고 된 도시관리계획(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25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 공고합니다.
3.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일
강 북 구 청 장

가. 재열람사유: 지구단위계획 주요내용 변경 등

나. 공 고 일: 2025.10.2.(목)

다. 열 람 기 간: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9일간(2025.10.21.까지)

라. 열 람 장 소: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도시계획과(☎02-901-6873)
1) 2025.10. 2.~10.17.: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 강북구청 6층
2) 2025.10.20.~10.2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58 코스타타워 7층

마. 도시관리계획(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북구 미아동 194-5일대	132,786.9	-	132,786.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462호 (2014.12.26.)

2)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3)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4)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5)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6)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7) 인센티브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8)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9)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바. 관계도면: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사. 기타사항

위 사항은 서울시 도시 · 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절차보완 사항으로 결정 조서 내용은 변경 할 수 없음

◈ 은평구공고 제2025-1653호

불광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열람 공고

1. 건설교통부 고시 제138호(1977.7.14.)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396호(2023.9.14.)로 변경 결정되었으며, 서울시 고시 제155호(1995.6.5.)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서울시 고시 제2025-498(2025.9.11.)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불광근린공원에 대하여 불광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은 평 구 청 장

가. 공 원 명: 불광근린공원
나. 위　　치: 은평구 불광동 산33-1 일원
다. 면　　적: 118,349.2㎡
라.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안)의 내용
- 불광근린공원(변경) 세부
1) 기반시설(도로및광장) : 13,267.5㎡ → 13,351.6㎡ (증84.1㎡)
2) 휴양시설 : 1,255㎡ → 1,325.8㎡ (증70.8㎡)
3) 녹지 및 기타 : 97,985.2㎡ → 97,830.3㎡ (감154.9㎡)
※ 세부조서 및 도면 별첨 참조
마.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바. 열람장소 : 은평구청 공원녹지과
사. 본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은평구청(공원녹지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공원녹지과, ☎ 351-80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불광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은평구 불광동 산33-1번지 일원)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건축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건축면적 (㎡)	연면적 (㎡)		
계		118,349.2	19,469.0	2	1,380.6	6,044.5	5	118,349.2	19,623.9	2	1,380.6	6,044.5	6	
기반시설	소 계	13,267.5	13,267.5					13,351.6	13,351.6					증) 84.1㎡
	도 로	11,806.5 (858.0)	11,806.5 (858.0)					11,890.6 (858.0)	11,890.6 (858.0)					도시계획도로 시설면적 미반영
	광 장	1,461.0	1,461.0					1,461.0	1,461.0					-
조경시설		1,727.2	1,727.2				4	1,727.2	1,727.2				4	-
휴양시설		1,255.0	1,255.0				1	1,325.8	1,325.8				2	증) 70.8㎡
운동시설		1,302.7	1,302.7					1,302.7	1,302.7					-
교양시설		2,235.0	1,340.0	1	1,340.0	6,003.9		2,235.0	1,340.0	1	1,340.0	6,003.9		-
편익시설		576.6	576.6	1	40.6	40.6		576.6	576.6	1	40.6	40.6		-
녹지 및 기타		97,985.2						97,830.3						감) 154.9㎡
시설율 (법정40%)		((118,349.2 - 97,985.2) / 118,349.2) x 100 = 17.20%						((118,349.2 - 97,830.3) / 118,349.2) x 100 = 17.33%						
건폐율		(1,380.6 / 118,349.2) x 100 = 1.17%						(1,308.6 / 118,314.2) x 100 = 1.17%						

2. 시설조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합계				118.349.2	19,469.0		2동	1,380.6	6,044.5	5			118,349.2	19,623.9		2동	1,380.6	6,044.5	6	
기반시설	소계			13,267.5	13,267.5								13,351.6	13,351.6						증) 84.1㎡
	도로			11,806.5 (858.0)	11,806.5 (858.0)								11,890.6 (858)	11,890.6 (858)						증) 84.1㎡ 도시계획도로 시설면적 미포함
	진입광장	가	1개소	1,461.0	1,461.0						가	1개소	1,461.0	1,461.0						-
		가-1	불광동 산59-32임	1,461.0	1,461.0						가-1	불광동 산59-32임	1,461.0	1,461.0						-
조경시설	소계			1,727.20	1,727.20					4			1,727.20	1,727.20					4	-
	다목적 잔디광장	다	불광동 산58-3임	1,663.2	1,663.2						다	불광동 산58-3임	1,663.2	1,663.2						-
	파고라	①	4개소	64.0	64.0					4	①	4개소	64.0	64.0					4	-
		①-1	불광동 산54-5임	(16.0)	(16.0)					1	①-1	불광동 산54-5임	(16.0)	(16.0)					1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①-2	불광동 산54-5임	(16.0)	(16.0)					1	①-2	불광동 산54-5임	(16.0)	(16.0)					1	-
		①-3	불광동 산58-3임	(16.0)	(16.0)					1	①-3	불광동 산58-3임	(16.0)	(16.0)					1	-
		①-4	불광동 산58-3임	(16.0)	(16.0)					1	①-4	불광동 산58-3임	(16.0)	(16.0)					1	-
휴양시설	소계			1,255.0	1,255.0					1			1,325.8	1,325.8					2	증) 70.8㎡
휴양시설	휴게소	라	20개소	1,255.0	1,255.0						라	22개소	1,325.8	1,325.8						증) 70.8㎡
		라-1	불광동 산58-3임	50.0	50.0						라-1	불광동 산58-3임	50.0	50.0						-
휴양시설	휴게소	라-2	불광동 산58-3임	122.0	122.0						라-2	불광동 산58-3임	122.0	122.0						-
		라-3	불광동 산59-5임	28.0	28.0						라-3	불광동 산59-5임	28.0	28.0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라-4	불광동 산59-5임	59.7	59.7						라-4	불광동 산59-5임	59.7	59.7						-
	라-5	불광동 산33-1임	485.8	485.8						라-5	불광동 산33-1임	485.8	485.8						-
	라-6	불광동 산58-3임	136.9	136.9						라-6	불광동 산58-3임	136.9	136.9						-
	라-7	불광동 산54-5임	51.1	51.1						라-7	불광동 산54-5임	51.1	51.1						-
	라-8	불광동 산54-5임	53.0	53.0						라-8	불광동 산54-5임	53.0	53.0						-
	라-9	불광동 산54-5임	57.1	57.1						라-9	불광동 산54-5임	57.1	57.1						-
	라-10	불광동 산58-2임	15.0	15.0						라-10	불광동 산58-2임	15.0	15.0						-
	라-11	불광동 산58-3임	17.5	17.5						라-11	불광동 산58-3임	17.5	17.5						-
	라-12	불광동 산58-3임	43.9	43.9						라-12	불광동 산58-3임	43.9	43.9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휴양시설	라-13	불광동 산58-3임	13.5	13.5						라-13	불광동 산58-3임	13.5	13.5						-
	라-14	불광동 산58-3임	13.5	13.5						라-14	불광동 산58-3임	13.5	13.5						-
	라-15	불광동 산60-1임	40.5	40.5						라-15	불광동 산60-1임	40.5	40.5						-
	라-16	불광동 산33-1임	13.5	13.5						라-16	불광동 산33-1임	13.5	13.5						-
휴게소	라-17	불광동 산58-14임	13.5	13.5						라-17	불광동 산58-14임	13.5	13.5						-
	라-18	불광동 산58-2임	13.5	13.5						라-18	불광동 산58-2임	13.5	13.5						-
	라-19	불광동 산58-3임	13.5	13.5						라-19	불광동 산58-3임	13.5	13.5						-
	라-20	불광동 산54-5임	13.5	13.5						라-20	불광동 산54-5임	13.5	13.5						-
										라-21	불광동 산54-10임	56.7	56.7						장 56.7㎡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라-22	불광동 산54-10임	14.1	14.1						증) 14.1㎡
	파고라										①-5	불광동 산54-10	-	-					1	
	장의자		전지역							1		전지역							1	71개소
운동시설	소계			1,302.7	1,302.7								1,302.7	1,302.7						-
	체력단련장	아	불광동 산33-1임 외	476.9	476.9						아	불광동 산33-1임 외	476.9	476.9						-
		아-1	불광동 산33-1임 외	238.1	238.1						아-1	불광동 산33-1임 외	238.1	238.1						-
		아-2	불광동 산33-1임 외	116.2	116.2						아-2	불광동 산33-1임 외	116.2	116.2						-
		아-3	불광동 산33-1임 외	122.6	122.6						아-3	불광동 산33-1임 외	122.6	122.6						-
	운동장	차	불광동 산54-5임	397.0	397.0						차	불광동 산54-5임	397.0	397.0						-
	배드민턴장	카		428.8	428.8						카		428.8	428.8						-
교양시설	소계			2,235	1,340		1동	1,340.0	6,003.9				2,235	1,340		1동	1,340.0	6,003.9		-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도서관	3	불광동 산59-32임	2,235	1,340	R.C	1동	1,340.0	6,003.9		3	불광동 산59-32임	2,235	1,340	R.C	1동	1,340.0	6,003.9		-
편익시설	소계			576.6	576.6		1동	40.6	40.6				576.6	576.6		1동	40.6	40.6		-
	주차장	자	1개소	536	536						자	1개소	536	536						-
		자-2	불광동 산59-32임	536	536						자-2	불광동 산59-32임	536	536						-
	화장실	4	1개소	40.6	40.6	FRC	1동	40.6	40.6		4	1개소	40.6	40.6	FRC	1동	40.6	40.6		-
		4-1	불광동 산58-3임	31.6	31.6			31.6	31.6		4-1	불광동 산58-3임	31.6	31.6			31.6	31.6		-
		4-2	불광동 산54-5임	9.0	9.0			9.0	9.0		4-2	불광동 산54-5임	9.0	9.0			9.0	9.0		-
녹지 및 기타	소계			97,985.2									97,830.3							감) 154.9㎡

3. 도로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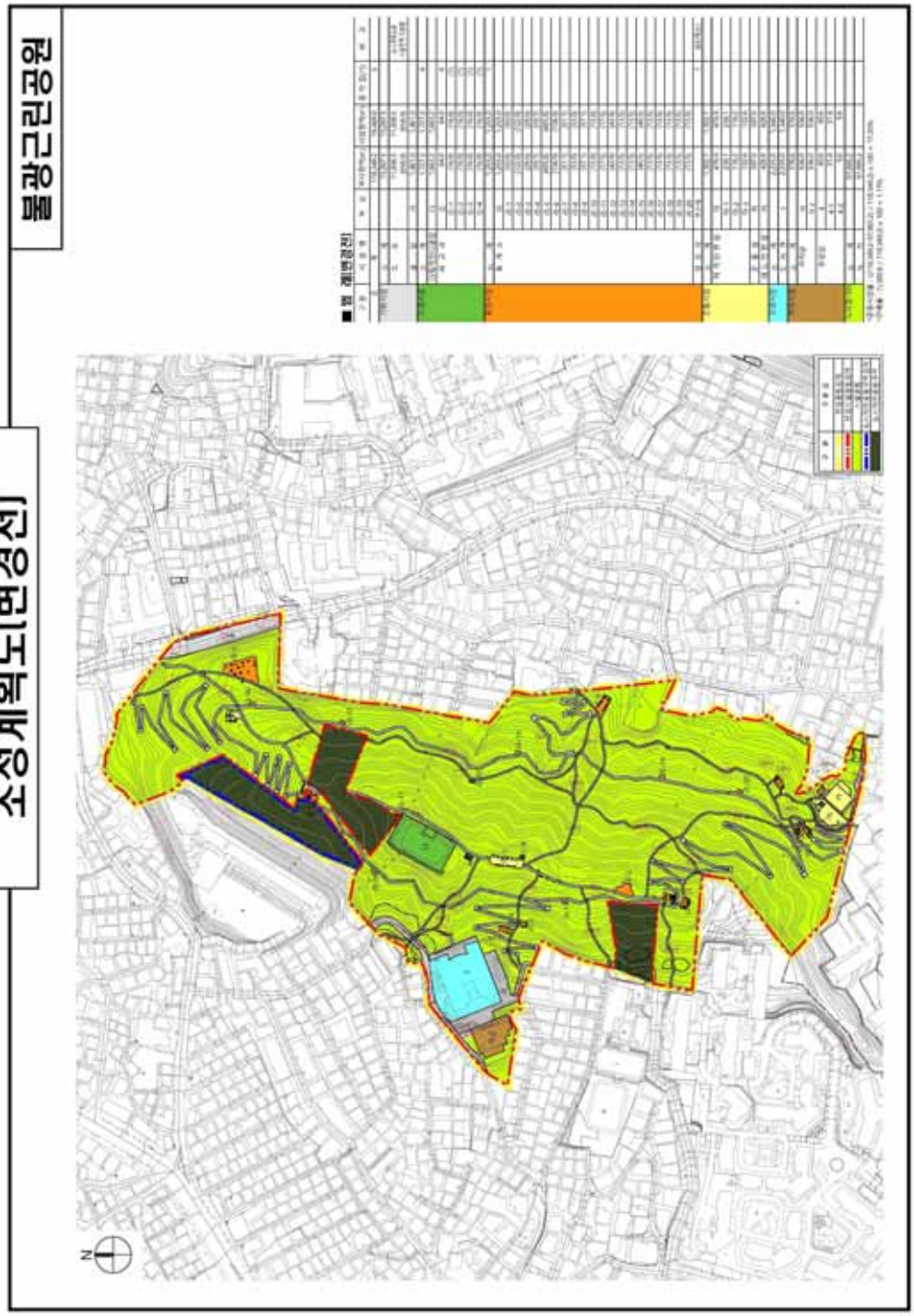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5,677	11,806.5				
변경					5,690	11,890.6				증) 84.1㎡
당초	중 로	소계			104	1,438				
당초		3	1	12	104	1,438	진입로	불광동 산33-4도	불광동 213도	
당초	소 로	소계			301	346 (858)	진입로연결			
변경					314	430.1 (858)	진입로연결			증) 84.1㎡
당초		3	4	6	107	(577)	〃	불광동 산58-3임	소로 3-9	도시계획 도로
당초		3	5	6	11	64	〃	소로 3-9	주차장 (자)	
당초		3	6	3	36	107	〃	불광동 331-210임	광장 (가-2)	
당초		3	9	4	75	(281)	〃	소로 3-4	불광동 산59-73임	도시계획 도로
당초		3	10	2	72	175	〃	불광동 산54-5임	산책로 1	
변경		3	10	2 ~ 4.5	85	259.1		불광동 산54-10	산책로 1	
당초	산책로	소계			5,272	10,022.5				
당초			1	1.5	86	133.3	〃	불광동 산54-5임	산책로 2	
당초			2	1.5	202	304.4	〃	산책로 1	산책로 16	
당초			3	1.5	214	326.9	〃	산책로 2	산책로 4	
당초			4	1.5	200	303.2	〃	대암아파트	체력단련장 (아-1)	
당초			6	1.5	220	488.2	〃	산책로 4	불광동 산 58-14	
당초			9	1.5	60	90.7	〃	불광동 산34-25도	산책로 10	
당초			10	1.5	128	193.7	〃	불광동 산34-25도	휴게소 (라-5)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11	2.0	194	386.0	"	휴게소 (라-5)	체력단련장 (아-3)	
당초			12	1.5	27	48.3	"	산책로 10	산책로 11	
당초	산책로		14	2.0	147	293.8	"	불광동 산58-14	체력단련장 (아-1)	
당초			16	2.0	131	378.2	"	휴게소 (라-1)	체력단련장 (아-1)	
당초			17	1.5	65	82.2	"	휴게소 (라-1)	산책로 37	
당초			18	1.5	82	122.8	"	불광동 산58-3임	휴게소 (라-1)	
당초			20	1.5	78	121.6	"	불광동 산58-3임	산책로 16	
당초			21	1.5	111	182.5	"	소로 3-6	산책로 16	
당초			24	1.5	107	160.8	"	불광동 산 59-71	산책로 14	
당초			26	1.5	23	44.5	"	광장 (가)	산책로 38	
당초			32	1.5	94	142.3	"	산책로 2	산책로 4	
당초			35	1.5	84	127.9	"	산책로 4	산책로 6	
당초			36	1.5	37	52.7	"	산책로 35	산책로 6	
당초			37	1.5	43	65.8	"	아미산자락 소공원	산책로 2	
당초			38	1.5	39	62.0	"	산책로 24	산책로 24	
당초			39	1.5	30	46.7	"	불광동 산58-3임	산책로 24	
당초			40	0.8	8	8.2	"	산책로 1	운동장 (차)	
당초			41	1.8	13	28.0	"	배드민턴장 (카)	운동장 (차)	
당초			42	1.2	5	6.0	"	산책로 1	휴게소 (라-9)	
당초			43	1.2	8	11.0	"	산책로 3	휴게소 (라-9)	
당초			44	1.2	5	7.4	"	산책로 3	산책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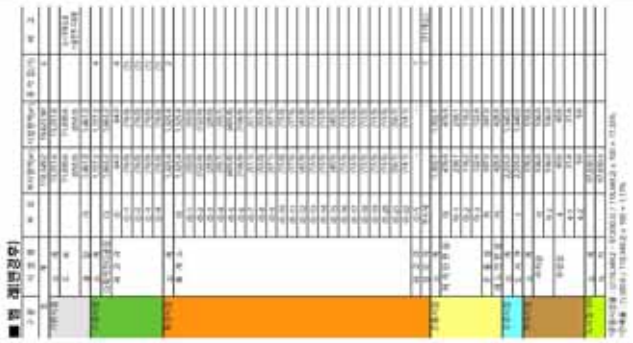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45	2.0	215	452.7	"	산책로 4	산책로 46	데크로드
당초			46	2.0	1,161	2,368.9	"	불광동 산54-5임	불광동 산34-25도	데크로드
당초			47	2.0	1,180	2,415.5	"	산책로 2	산책로 46	데크로드
당초			48	2.0	275	566.3	"	소로 3-6	산책로 47	데크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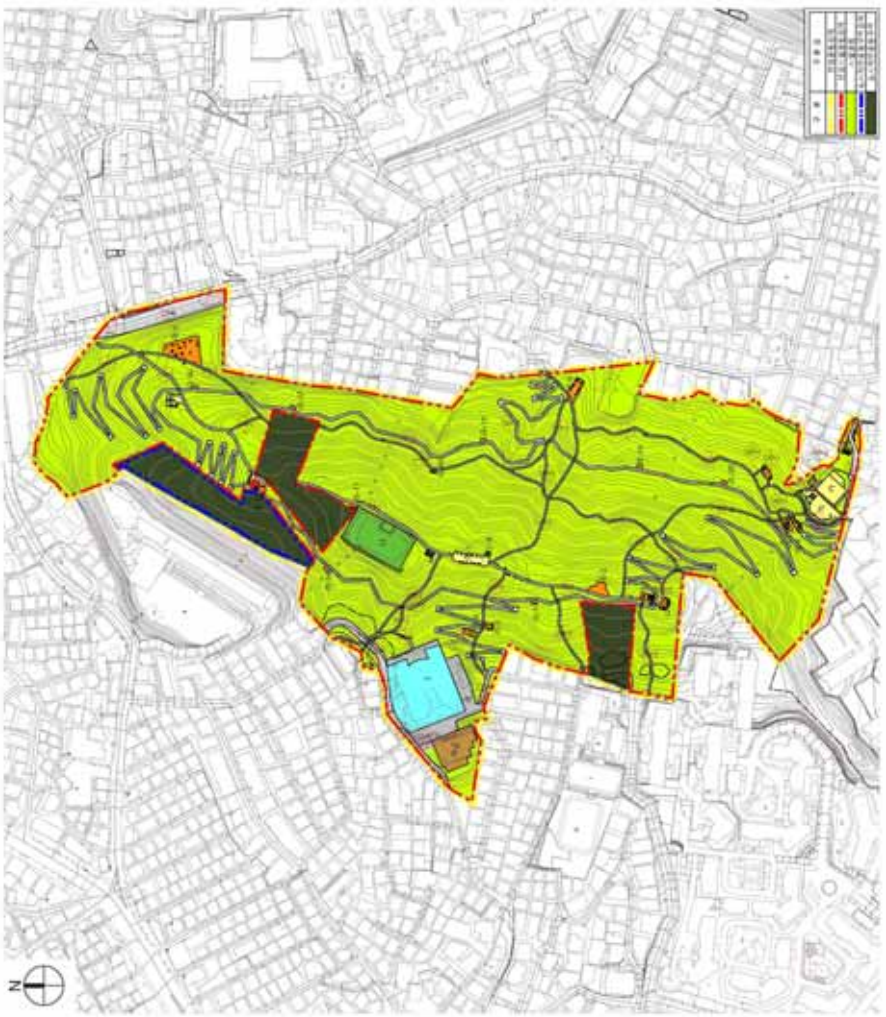
조성계획도(변경전)



조성계획도(변경후)

물광근린공원





◈ 구로구공고 제2025-1707호

도시관리계획(개봉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 공고
- 구로구 개봉동 170-33일원 개봉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607호(2023.12.28.)로 결정(변경)된 개봉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개봉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사업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일
구 로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구로구청 도시계획과(☏02-860-2280)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으며, 구로구 홈페이지 및 서울도시계획포털에서도 열람가능

다. 열람내용 : 도시관리계획(개봉역 지구단위계획, 개봉동 170-33일원 개봉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공공기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 공공기여 계획(기정)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기준(허용)
용적률</th><th rowspan="2">상한
용적률</th><th rowspan="2">공공
기여율</th><th colspan="5">공공기여면적</th><th rowspan="2">비고
(구성비)</th></tr>
<tr><th>구 분</th><th>구성비</th><th>총면적</th><th>부지제공</th><th>환산부지</th></tr>
<tr><td rowspan="5">제3종일반
주거지역
→
근린
상업지역</td><td rowspan="5">250%</td><td rowspan="5">600%</td><td rowspan="5">부지면적의
29.17% 이상
(788.09㎡)</td><td>합 계</td><td>29.20%</td><td>789.00㎡</td><td>378.21㎡</td><td>410.79㎡</td><td rowspan="5">100.0%</td></tr>
<tr><td>공공주택</td><td>8.62%</td><td>232.98㎡</td><td>232.98㎡</td><td>-</td></tr>
<tr><td>지역필요시설</td><td>20.58%</td><td>556.02㎡</td><td>145.23㎡</td><td>410.79㎡</td></tr>
<tr><td colspan="5">기준 788.09㎡(29.17%) ≤ 계획 789.00㎡(29.20%)</td></tr>
</table>

주) 공공기여시설은 세부건축계획 성능수준, 설비 등 조성계획을 관할 관리청과 협의 후 건축 인·허가 시 확정하여 준공 시 기부채납함
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한 도로(중로3-4) 가각부의 기부채납 부분은 공공기여 산정에서 제외

■ 공공기여시설 세부내역(기정)

구 분	총 공공 기여면적	부지 제공면적	환산 부지면적	공공 기여율 (비 율)	지상 연면적	지하 연면적	연면적 계	비고 (관리청)
공공주택	232.98㎡	232.98㎡	-	8.62% (29.50%)	1,468.89㎡	949.93㎡	2,418.82㎡	서울특별시
지역필요시설	556.02㎡	145.23㎡	410.79㎡	20.58% (70.50%)	679.76㎡	828.09㎡	1,507.85㎡	구로구
계	789.00㎡	378.21㎡	410.79㎡	29.20% (100.0%)	2,148.65㎡	1,778.02㎡	3,926.67㎡	-

■ 공공기여 계획(변경)

구 분	기준(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공공 기여율	공공기여면적					비고 (구성비)
				구 분	구성비	총면적	부지제공	환산부지	
제3종일반 주거지역 → 근린 상업지역	250%	600%	부지면적의 29.17% 이상 (788.09㎡)	합 계	29.20%	789.02㎡	182.13㎡	606.89㎡	100.0%
				공공주택	-	-	-	-	
				지역필요시설 (공공산후조리원)	29.20%	789.02㎡	182.13㎡	606.89㎡	
				기준 788.09㎡(29.17%) ≤ 계획 789.02㎡(29.20%)					

주) 공공기여시설은 세부건축계획 성능수준, 설비 등 조성계획을 관할 관리청과 협의 후 건축 인·허가 시 확정하여 준공 시 기부채납함
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한 도로(중로3-4) 가각부의 기부채납 부분은 공공기여 산정에서 제외

■ 공공기여시설 세부내역(변경)

구 분	총 공공 기여면적	부지 제공면적	환산 부지면적	공공 기여율 (비 율)	지상 연면적	지하 연면적	연면적 계	비고 (관리청)
공공주택	-	-	-	-	-	-	-	-
지역필요시설 (공공산후조리원)	789.02㎡	182.13㎡	606.89㎡	29.20% (100.0%)	1,017.33㎡	661.76㎡	1,679.09㎡	구로구
계	789.02㎡	182.13㎡	606.89㎡	29.20% (100.0%)	1,017.33㎡	661.76㎡	1,679.09㎡	-

3) 가구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4)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 변경

가) 기준용적률의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 변경없음

나) 용적률 유형별 인센티브 계획 기준 : 변경없음

다) 개봉동 170-33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 : 변경

■ 기정

구 분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 내용	비고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공공기여율	• 부지면적의 29.17% 이상	• 부지면적의 29.20% 계획	기준 용적률 250% 상한 용적률 60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 하여야함
	공공기여시설 설치기준	• 공공주택 30% 이상 권장 • 한가지 유형의 시설이 50%를 초과하여 설치하지 않는 것을 권장	• 공공주택 8.62%(29.50%) • 지역필요시설 20.58%(70.50%)		
건축물 용도구분	비주거비율	• 지상 용적률 10% 이상	• 주거 : 비주거 = 83.31% : 16.69%		
		• 전체 연면적 20% 이상	• 주거 : 비주거 = 79.98% : 20.02%		
	주거비율	• 「도시계획조례」 별표3 적용	• 주거용적률 499.41%		
주택건설 기준	주택규모	• 공공주택 : 전용 85㎡ 이하	• 공공주택 : 전용 46.91㎡ (12세대), 59.85㎡(7세대) 계획		
		• 민간주택(분양) : 기준 없음	• 공동주택(아파트): 전용 46.91㎡, 59.85㎡, 84.90㎡ 계획		
건축물 형태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	• 3가지 의무적 이행 적용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 친환경 건축물 - 역사문화 보전(해당 시)	• 2가지 이행적용(역사문화 해당없음)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 친환경 건축물		
주민 공동시설		• 관련규정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설치대상이 아닌 100세대 미만인 경우 : 100㎡ 이상	• 158세대 -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시설 150㎡ 이상 계획 - 용도 : 라운지, 기타주민공동시설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준용

주2) 향후, 건축계획 및 인허가 등에 따라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내에서 계획내용의 면적 및 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 변경

구 분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 내용	비고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공공기여율	• 부지면적의 29.17% 이상	• 부지면적의 29.20% 계획	기준 용적률 250% 상한 용적률 60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 하여야함
	공공기여시설 설치기준	• 공공주택 30% 이상 권장 • 한가지 유형의 시설이 50%를 초과하여 설치하지 않는 것을 권장	• 지역필요시설 29.20%(100.0%)		
건축물 용도구분	비주거비율	• 지상 용적률 10% 이상	• 주거 : 비주거 = 83.33% : 16.67%		
		• 전체 연면적 20% 이상	• 주거 : 비주거 = 79.84% : 20.16%		
	주거비율	• 「도시계획조례」 별표3 적용	• 주거용적률 499.96%		
주택건설 기준	주택규모	• 공공주택 : 전용 85㎡ 이하	• 공공임대주택(LH매입임대주택) - 전용 29㎡(299세대)		

구 분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 내용	비고
		• 민간주택(분양) : 기준 없음	-		
건축물 형태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	• 3가지 의무적 이행 적용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 친환경 건축물 - 역사문화 보전(해당 시)	• 2가지 이행적용(역사문화 해당없음)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 친환경 건축물		
주민 공동시설		• 관련규정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설치대상이 아닌 100세대 미만인 경우 : 100㎡ 이상	• 세대당 1.5㎡이상 확보 -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시설 492.04㎡ 이상 계획 - 용도 : 도서실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준용
주2) 향후, 건축계획 및 인허가 등에 따라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내에서 계획내용의 면적 및 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5) 기타 도시관리계획(안)에 관한 사항 : 관계도서 참조

라. 관련도면 : 생략 (열람장소 및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와 같음)

◈ 구로구공고 제2025-1713호

온수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08.0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11호 (1999.01.20.)로 공원조성계획 최초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11호(2025.06.12.)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최종 고시된 온수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본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일
구 로 구 청 장

1. 공원현황
   가. 도시계획시설(공원)명 : 온수근린공원
   나. 위　　치 :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 산4-24 일대
   다. 면　　적 : 425,237.40㎡
   　　구로구(163,983.70㎡), 양천구(261,253.70㎡)

2. 공고내용 : 온수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안)
   가. 목　　적 : 온수근린공원 벽산지구 내 기 조성된 지역의 현행화 및 유아숲체험원 조성계획을 수립·반영하여 유아가 자연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고자 함
   나. 변경내용 : 온수근린공원(벽산지구) 내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등에 따른 시설 종류 및 면적 변경
   　※ 2025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의견 반영
   다. 변경내역
   　- 온수근린공원(벽산지구) 시설면적 : 3,767.60㎡ → 5,518.25㎡ (증 1,750.65㎡)
   　· 기반시설 : 2,428.50㎡ → 2,385.38㎡ (감 43.12㎡)
   　· 조경시설 : 397.03㎡ → 264.35㎡ (감 132.68㎡)
   　· 휴양시설 : 244.54㎡ → 331.15㎡ (증 86.61㎡)
   　· 유희시설 : 433.66㎡ → 299.66㎡ (감 134.00㎡)
   　· 운동시설 : 263.87㎡ → 229.76㎡ (감 34.11㎡)
   　· 교양시설 : 0㎡ → 1,990.95㎡ (증 1,990.95㎡)
   　· 편익시설 : 0㎡ → 17.00㎡ (증 17.00㎡)

· 녹지 및 기타 : 22,307.10㎡ → 20,556.45㎡ (감 1,750.65㎡)

3. 관계도서 : 게재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4. 열람기간 : 2025. 10. 2. ~ 10. 16.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열람장소 : 구로구청 공원녹지과(☎02-860-3097)

6. 본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작구공고 제2025-1719호

도시관리계획[동작구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72호(2014.10.30.)로 결정된 「동작구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울도시공간포털에 주민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일
동 작 구 청 장

Ⅰ. 열람기간: 2025. 10. 2. ~ 2025. 10. 16.(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Ⅱ.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동작구청 8층 도시계획과 (장승배기로 70, 8층)

Ⅲ. 열람내용: 도시관리계획[동작구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Ⅳ.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

구역명	위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동작구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 대방동 405번지 일대	57,025.0	감) 1,083.6	55,94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72호 (2014.10.30.)

※ 구역의 범위, 세부 계획 등 관련도서는 열람장소 및 서울도시계획포털에서 확인 가능

Ⅴ. 관계도서: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Ⅵ. 의견제출방법: Fax 02-828-4325, e-mail yjh413@dongjak.go.kr
- 서면 및 온라인(팩스 · 이메일) 또는 '서울도시공간포털'에서 주민의견서 제출 가능
- 서울도시공간포털 : urban.seoul.go.kr

Ⅶ. 기타사항
- 공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도시계획과(02-820-19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작구공고 제2025-1736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을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1.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5-22호(2025.2.27.)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된 “상도동 283-226번지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보상” 을 시행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며,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를 하오니, 본 열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본 열람공고로 갈음합니다.

2025년 10월 2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83-226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 명 칭 : 상도동 283-226번지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보상
다. 사업규모
- 규 모 : 3,096.5㎡
- 용 도 : 사회복지시설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작성고시일로부터 2026.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별첨
사.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아. 열람장소 : 동작구청 핵심정책추진단 (☎ 02-820-1088)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1	상도동 283-226	임야	3,096	3,096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기획재정부	3,096/3,096				사용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	이용 현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상도동 283-226	건물 (1층)	벽돌조	49.58	주거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 ○○○	한○호				기존무허가 건물
2	상도동 283-226	건물 (1층)	벽돌조	26.44	주거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	임○준				기존무허가 건물
3	상도동 283-226	건물 (1층)	벽돌조	26.44	주거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길 ○○○	이○원				기존무허가 건물
4	상도동 283-226	건물 (1층)	벽돌조	49.58	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	박○기				기존무허가 건물

주민공람 의견서

(No.)

구 분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을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공 람 기 간	2025. 10. 2. ~ 2025. 10. 16.(15일간)			
의견 제출자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 주 지		
		물건지 (건물,토지,등)		
	전화번호	(핸드폰 :)		
의 견 제 목				
의 견 요 지				

2025년 월 일

의견제출자 : (서명)

동작구청장 귀하

◈ 관악구공고 제2025-1852호

도시계획시설(관악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안)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369호(1980.11.1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54호(2020.6.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종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72호(2025.4.3.)로 조성계획(변경)결정된 관악산근린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본 공원조성계획(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일
관 악 구 청 장

가. 공 원 명 : 관악산근린공원(원신지구)
나. 위　　치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86-7 일대
다. 면　　적 : 1,765,534.7㎡(원신지구 51,453,70㎡)
라. 공원조성계획 변경(안) : 붙임참조
마.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바. 열람장소 : 관악구청 6층 공원녹지정책과(☎02-879-6525)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악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지구별 : 관악구 봉천동 산48-5일대, 금천구 독산동 산118-4 일대)

구 분		변경 전						구 분	변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1,765,534.70	494,756.13	63	32,356.84	86,481.43	882	계	1,765,534.70	498,282.55	64	32,688.55	86,813.14	883	증 3,526.42㎡
시설지구	소계	1,765,534.70	494,756.13	63	32,356.84	86,481.43	882	소계	1,765,534.70	498,282.55	64	32,688.55	86,813.14	883	증 3,526.42㎡
	독산지구	102,145.00	16,302.32	4	81.00	81.00	113	독산지구	102,145.00	16,302.32	4	81.00	81.00	113	
	금천체육지구	103,306.80	44,931.36	5	4,339.36	12,862.80	146	금천체육지구	103,306.80	44,931.36	5	4,339.36	12,862.80	146	
	산기슭지구	14,084.90	8,417.26	2	583.48	1,847.48	34	산기슭지구	14,084.90	8,417.26	2	583.48	1,847.48	34	
	목골지구	6,213.50	1,160.87	-	-	-	11	목골지구	6,213.50	1,160.87	-	-	-	11	
	댓골지구	2,115.00	246.25	-	-	-	13	댓골지구	2,115.00	246.25	-	-	-	13	
	삼성산지구	37,874.90	9,235.41	-	-	-	49	삼성산지구	37,874.90	9,235.41	-	-	-	49	
	금천삼각지구	47,205.30	9,100.28	-	-	-	33	금천삼각지구	47,205.30	9,100.28	-	-	-	33	
	은행숲지구	1,145.00	33.36	-	-	-	-	은행숲지구	1,145.00	33.36	-	-	-	-	
	선우지구	87,892.70	30,020.62	1	749.05	749.05	13	선우지구	87,892.70	30,020.62	1	749.05	749.05	13	
	난곡지구	23,409.00	5,548.55	-	-	-	12	난곡지구	23,409.00	5,548.55	-	-	-	12	
	난향지구	10,186.40	3,098.15	1	59.00	59.00	30	난향지구	10,186.40	3,098.15	1	59.00	59.00	30	
	목골산지구	57,402.50	4,329.67	-	-	-	4	목골산지구	57,402.50	4,329.67	-	-	-	4	
	미성지구	10,198.10	3,722.30	1	1,408.30	1,636.30	39	미성지구	10,198.10	3,722.30	1	1,408.30	1,636.30	39	
	난우지구	22,425.20	4,664.72	-	-	-	31	난우지구	22,425.20	4,664.72	-	-	-	31	
	법원단지지구	7,634.30	295.05	-	-	-	8	법원단지지구	7,634.30	295.05	-	-	-	8	
	양지지구	10,586.00	2,453.24	-	-	-	37	양지지구	10,586.00	2,453.24	-	-	-	37	
	하늘지구	21,039.90	5,578.78	1	27.80	27.80	56	하늘지구	21,039.90	5,578.78	1	27.80	27.80	56	

구 분	변경 전						구 분	변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난곡로지구	409.70	409.70	-	-	-	-	난곡로지구	409.70	409.70	-	-	-	-	
난향숲길지구	25,838.20	534.71	-	-	-	22	난향숲길지구	25,838.20	534.71	-	-	-	22	
원신지구	51,453.70	5,613.31	1	246.80	246.80	22	원신지구	51,453.70	9139.73	1	246.80	246.80	23	증 3,526.42㎡
약수암지구	62,302.30	9,833.53	5	211.54	267.88	8	약수암지구	62,302.30	9,833.53	5	211.54	267.88	8	
신우지구	9,401.20	-	-	-	-	-	신우지구	9,401.20	-	-	-	-	-	
고시원지구	31,712.30	11,581.88	-	-	-	5	고시원지구	31,712.30	11,581.88	-	-	-	5	
샘말지구	12,284.00	8,728.42	1	13.80	13.80	30	샘말지구	12,284.00	8,728.42	1	13.80	13.80	30	
희망지구	10,119.10	780.23	-	-	-	-	희망지구	10,119.10	780.23	-	-	-	-	
신림계곡지구	379,598.90	93,390.68	12	4,093.59	16,091.62	19	신림계곡지구	379,598.90	93,390.68	12	4,093.59	16,091.62	19	
청룡산지구	86,287.30	17,338.82	3	2,027.32	2,662.66	34	청룡산지구	86,287.30	17,338.82	3	2,027.32	2,662.66	34	
낙성대지구	487,033.30	193,251.43	26	18,515.80	49,935.24	81	낙성대지구	487,033.30	193,251.43	26	18,515.80	49,935.24	81	
인헌지구	5,030.00	1,541.91	-	-	-	32	인헌지구	5,030.00	1,541.91	-	-	-	32	
남현지구	14,446.20	-	-	-	-	-	남현지구	14,446.20	-	-	-	-	-	
관음사지구	24,754.00	2,613.32	-	-	-	-	관음사지구	24,754.00	2,613.32	1	331.71	331.71	-	
시설률 (법정 40%)	(494,756.13 / 1,765,534.70) × 100 = 28.02%							(498,282.55 / 1,765,534.70) × 100 = 28.22%						증 3,526.42㎡
건폐율 (법정 10%)	(32,356.84 / 1,765,534.70) × 100 = 1.83%							(32,688.55 / 1,765,534.70) × 100 = 1.85%						

2. 시설조서 (시설별 : 관악구 봉천동 산48-5일대, 금천구 독산동 산118-4 일대)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1,765,534.70	494,756.13	63	32,356.84	86,481.43	882	1,765,534.70	498,282.55	63	32,356.84	86,481.43	883	증 3,526.42㎡ (증 1기)
기반시설	소 계	176,250.54	136,774.29	-	-	-	-	177,835.54	138,359.29	-	-	-	-	증 1,585.00㎡
	도 로	149,9 95.89	110,519.64	-	-	-	2	151,580.89	112,104.64	-	-	-	2	증 1,585.00㎡
	광 장	26,254.65	26,254.65	-	-	-	-	26,254.65	26,254.65	-	-	-	-	-
조경시설		27,606.47	27,606.47	-	-	-	21	27,820.18	27,820.18	-	-	-	21	증 213.71㎡
휴양시설		45,798.50	45,798.50	1	125	125	516	45,915.26	45,915.26	1	125	125	516	증 116.76㎡
유희시설		12,727.06	12,727.06	-	-	-	59	12,727.06	12,727.06	-	-	-	59	-
운동시설		81,184.43	81,184.43	12	8,971.43	21,926.87	225	82,623.92	82,623.92	13	8,971.43	21,926.87	225	증 1,439.49㎡
교양시설		166,976.55	166,976.55	24	20,239.12	59,792.65	10	166,976.55	166,976.55	24	20,239.12	59,792.65	10	-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편 익 시 설	20,074.77	20,074.77	15	2,199.91	3,671.53	7	20,151.07	20,151.07	15	2,199.91	3,671.53	7	증 76.30㎡
관 리 시 설	2,714.06	2,714.06	11	821.38	965.38	42	2,809.22	2,809.22	11	821.38	965.38	43	증 95.16㎡ (증 1기)
그 밖의 시설	900.00	900.00	-	-	-	-	900.00	900.00	-	-	-	-	-
녹지 및 기타	1,231,302.32	0.00	-	-	-	-	1,227,775.9	0.00	-	-	-	-	감 3,526.42㎡
시 설 률 (법정 40%)	(494,756.13 / 1,765,534.70) × 100 = 28.02%						(498,282.55 / 1,765,534.70) × 100 = 28.22%						
건 폐 율 (법정 10%)	(32,356.84 / 1,765,534.70) × 100 = 1.83%						(32,688.55 / 1,765,534.70) × 100 = 1.85%						

관악산근린공원(원신지구)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85-1 일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51,453.70	5,613.31	1	246.80	246.80	22	51,453.70	9,139.73	1	246.80	246.80	23	증 3,526.42㎡ (증 1기)
기반시설	소 계	2,913.94	2,913.94	-	-	-	-	4,498.94	4,498.94	-	-	-	-	증 1,585.00㎡
	도 로	2,913.94	2,913.94	-	-	-	-	4,498.94	4,498.94	-	-	-	-	증 1,585.00㎡
	광장	-	-	-	-	-	-	-	-	-	-	-	-	
조경시설		1,643.60	1,643.60	-	-	-		1,857.31	1,857.31	-	-	-	-	증 213.71㎡
휴양시설		808.97	808.97	-	-	-	13	925.73	925.73	-	-	-	13	증 116.76㎡
유희시설		-	-	-	-	-	-	-	-	-	-	-	-	-
운동시설		-	-	-	-	-	9	1,439.49	1,439.49	-	-	-	9	증 1,439.49㎡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교양시설	-	-	-	-	-	-	-	-	-	-	-	-	-
편익시설	-	-	-	-	-	-	76.30	76.30	-	-	-	-	증 76.30㎡
관리시설	246.80	246.80	1	246.80	246.80	-	341.96	341.96	1	246.80	246.80	1	증 95.16㎡ (증 1기)
녹지 및 기타	45,840.39	-	-	-	-	-	42,313.97	-	-	-	-	-	감 3,526.42㎡

2.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합 계				51,453.70	5,613.31		1	246.80	246.80	22			51,453.70	9,139.73		1	246.80	246.80	23	증 3,526.42㎡
기반시설	소 계			2,913.94	2,913.94								4,498.94	4,498.94						증 1,585.00㎡
	도 로			2,913.94	2,913.94								4,498.94	4,498.94						증 1,585.00㎡
조경시설	소 계			1,643.60	1,643.60								1,857.31	1,857.31						증 213.71㎡
	맞이마당	가	신림동 산86-6	534.60	534.60						가	신림동 산86-6	534.60	534.60						
	조형 파고라	나	신림동 산86-6	20.90	20.90						나	신림동 산86-6	20.90	20.90						
	파고라	다	신림동 산86-6	6.20	6.20						다	신림동 산86-6	6.20	6.20						
	초정	라	신림동 산86-6	12.50	12.50						라	신림동 산86-6	12.50	12.50						
	농기구 보관소	마	신림동 산86-7	24.00	24.00						마	신림동 산86-7	24.00	24.00						
	작업대	바	신림동 산86-7	4.80	4.80						바	신림동 산86-7	4.80	4.80						
	토양미생물 관찰시설	사	신림동 산86-7	0.80	0.80						사	신림동 산86-7	0.80	0.80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퇴비장	아	신림동 산86-7	24.00	24.00						아	신림동 산86-7	24.00	24.00						
	잔디마당	자	신림동 산86-6	515.70	515.70						자	신림동 산86-6	515.70	515.70						
	생태연못	차	신림동 산86-6	154.10	154.10						차	신림동 산86-6	154.10	154.10						
	창포원	카	신림동 산86-7	134.70	134.70						카	신림동 산86-7	134.70	134.70						
	계류	타	신림동 산86-6	115.90	115.90						타	신림동 산86-6	115.90	115.90						
	계단	파	신림동 산86-6	4.00	4.00						파	신림동 산86-6	4.00	4.00						
	양봉체험원	하	신림동 산86-7	7.00	7.00															폐지
	야생조류 관찰대	거	신림동 산86-7	11.20	11.20															폐지
	스탠드	너	신림동 산86-6	-	-															폐지
	목교	더	신림동 산86-6	24.90	24.90						더	신림동 산86-6	24.90	24.90						
	데크	러	신림동 산86-6	32.30	32.30						러	신림동 산86-6	32.30	32.30						
	토양미생물 관찰원	머	신림동 산86-7	16.00	16.00						머	신림동 산86-7	16.00	16.00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화단1										어	신림동 산85-19	202.23	202.23						잔디 202.23㎡
	화단2										저	신림동 산85-19	29.68	29.68						잔디 29.68㎡
휴양시설	소 계			808.97	808.97					13			925.73	925.73					13	잔디 116.76㎡
	쉼터	버	신림동 산86-6	61.80	61.80						버	신림동 산86-6	61.80	61.80						
	휴게쉼터1	서	신림동 1713-6	747.17	747.17						서	신림동 1713-6	747.17	747.17						
	휴게쉼터2										처	신림동 산85-1	86.76	86.76						잔디 86.76㎡
	목재쉼터										커	신림동 산85-1	30.00	30.00						잔디 30.00㎡
	사각파고라	①	휴게쉼터	-	-					1	①	휴게쉼터							1	
	평의자	②	휴게쉼터	-	-					9	②	휴게쉼터							9	
	등의자	③	휴게쉼터	-	-					3	③	휴게쉼터							3	
운동시설	소 계			-	-					9			1,439.49	1,439.49					9	잔디 1,439.49㎡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체력단련시설	④	휴게쉼터	-	-					9	④	휴게쉼터							9	
	테니스장										터	신림동 산85-19	1,439.49	1,439.49						증 1,439.49㎡
편익시설	소계												76.30	76.30						증 76.30㎡
	주차장										퍼	신림동 산86-6	76.30	76.30						증 76.30㎡
관리시설	소 계			246.80	246.80			246.80	246.80				341.96	341.96			246.80	246.80	1	증 95.16㎡
	관리소	1	신림동 산86-6	246.80	246.80			246.80	246.80		1	신림동 산86-6	246.80	246.80			246.80	246.80		
	관리실										2	신림동 산85-19	95.16	95.16					1	증 95.16㎡
녹지 및 기타	소 계			45,840.39									42,313.97							감 3,526.42㎡
	녹지			45,840.39									42,313.97							감 3,526.42㎡

3.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2)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1,648.75	2,913.94				
변경					2,357.32	4,498.94				
당초	소 계				110.43	302.62				
변경					332.93	1,020.93				
당초	소로	3	1	2.5	29.74	69.04	진입로	공원 경계	휴게쉼터 서	
당초		3	2	3.0	80.69	233.58	진입로	목교 더	녹지대	
변경		3	2	3.0	116.06	333.52	진입로	목교 더	산책로 42	
신설		3	3	3.0	187.13	618.37	진입로	공원 경계	소로 3-3	
신설	소 계				1,538.32	2,611.32				
변경					2,024.39	3,478.01				
당초	산책로		1	1.2	248.84	287.78	산책로	산책로 18	소로 3-2	
변경			1	1.0	75.38	71.45	산책로	산책로 18	산책로 11	
당초			2	0.5	10.80	7.16	산책로	산책로 1	녹지대	
폐지										
당초			3	0.5	16.29	10.29	산책로	산책로 1	녹지대	
폐지										
당초			4	0.5	22.22	11.94	산책로	산책로 5	산책로 33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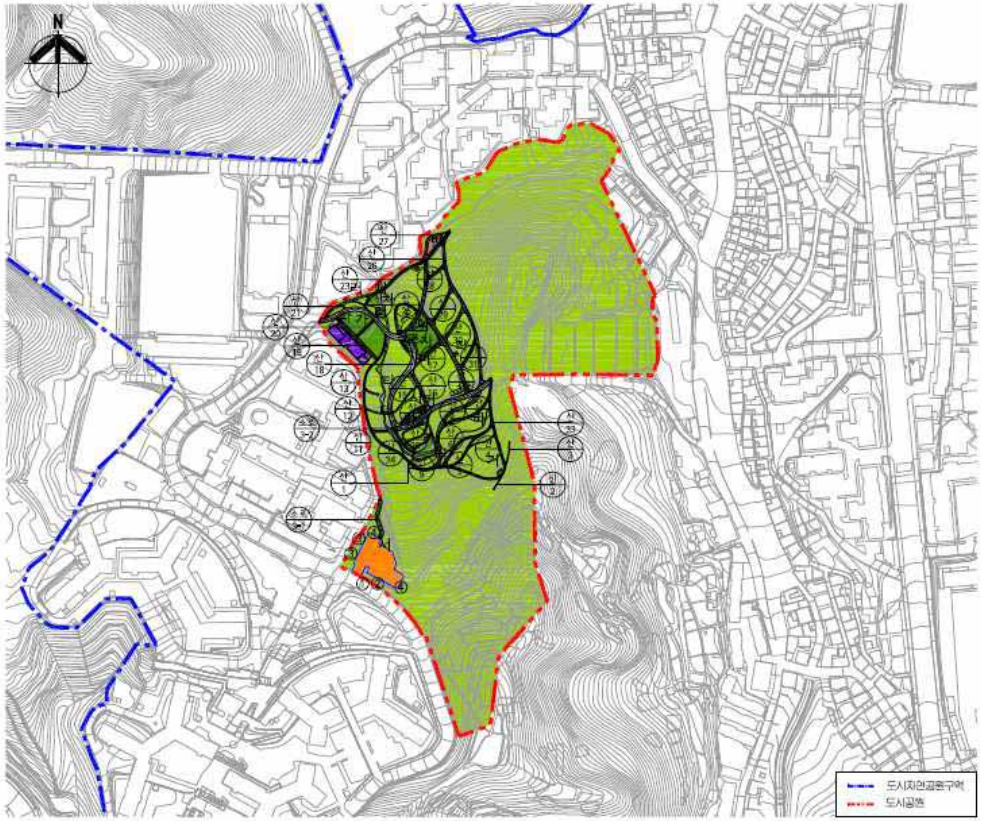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2)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산책로		5	1.0	29.11	31.01	산책로	산책로 1	산책로 6	
폐지										
당초			6	1.2	48.54	62.33	산책로	산책로 1	산책로 33	
폐지										
당초			7	1.5	40.20	64.35	산책로	산책로 8	산책로 33	
폐지										
당초			8	2.0	67.21	148.02	산책로	산책로 1	소로 3-2	
변경			8	2.0	53.46	118.79	산책로	데크 러	소로 3-2	
당초			9	0.8-2.0	95.14	86.58	산책로	산책로 9	산책로 9	
당초			10	0.8	28.90	21.27	산책로	소로 3-2	산책로 34	
당초			11	1.2	10.60	15.34	산책로	산책로 1	목교 더	
변경			11	1.2	11.21	14.00	산책로	산책로 1	목교 더	
당초			12	0.8	8.88	7.84	산책로	산책로 1	목교 더	
당초			13	1.2	10.96	12.10	산책로	산책로 1	녹지대	
변경			13	1.0	14.36	15.48	산책로	산책로 1	계류 타	
당초			14	0.6-1.2	23.06	20.39	산책로	산책로 16	산책로 18	
당초			15	0.8	26.35	21.00	산책로	산책로 18	산책로 16	
당초			16	2.0	30.11	73.55	산책로	소로 3-2	산책로 18	
당초			17	2.0	24.76	58.94	산책로	산책로 18	산책로 32	
당초			18	3.5-4.8	142.61	454.46	산책로	공원 경계	소로 3-2	
당초			19	3.5-6.0	39.62	150.80	산책로	산책로34	산책로 18	
당초			20	1.4	16.84	23.48	산책로	산책로 19	산책로 18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2)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산책로		21	1.0	5.10	3.98	산책로	산책로 23	산책로 18	
폐지										
당초			22	0.8	12.26	9.81	산책로	산책로 23	산책로 18	
폐지										
당초			23	1.5	103.80	160.06	산책로	녹지대	공원 경계	
변경			23	1.5	79.15	117.96	산책로	녹지대	산책로 18	
당초			24	2.0	58.92	125.13	산책로	산책로 18	산책로 23	
당초			25	1.5-2.0	36.60	52.60	산책로	산책로 24	산책로 24	
당초			26	1.5-2.2	108.70	187.29	산책로	소로 3-2	산책로 23	
당초			27	1.2	32.20	38.72	산책로	산책로 23	산책로 23	
당초			28	1.5	14.90	30.20	산책로	산책로 26	산책로 24	
당초			29	1.5	28.01	53.28	산책로	산책로 26	산책로 32	
당초			30	2.0	25.87	58.57	산책로	산책로 26	산책로 32	
당초			31	1.5	22.26	42.06	산책로	산책로 26	산책로 32	
당초			32	2.5	68.26	161.91	산책로	산책로 24	소로 3-2	
당초			33	1.2	61.05	91.58	산책로	녹지대	공원 경계	
폐지										
당초			34	1.5	19.35	27.50	산책로	소로 3-2	데크 러	
신설			35	1.2	32.67	39.21	산책로	소로 3-3	휴게쉼터 서	
신설			36	1.2	88.84	106.60	산책로	소로 3-3	산책로 38	
신설			37	1.2	134.79	161.75	산책로	소로 3-3	소로 3-3	
신설			38	1.2	115.34	138.63	산책로	소로 3-3	공원경계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2)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산책로		39	1.2	11.65	14.12	산책로	산책로 37	산책로 9	
신설			40	1.5	61.43	92.17	산책로	산책로 42	산책로 42	
신설			41	1.3	4.56	5.93	산책로	휴게쉼터 처	산책로 42	
신설			42	1.5~2.0	392.30	704.41	산책로	산책로 43	산책로 42	
신설			43	1.5~2.0	97.91	181.94	산책로	공원 경계	산책로 42	

조성계획도 [변경전]

원신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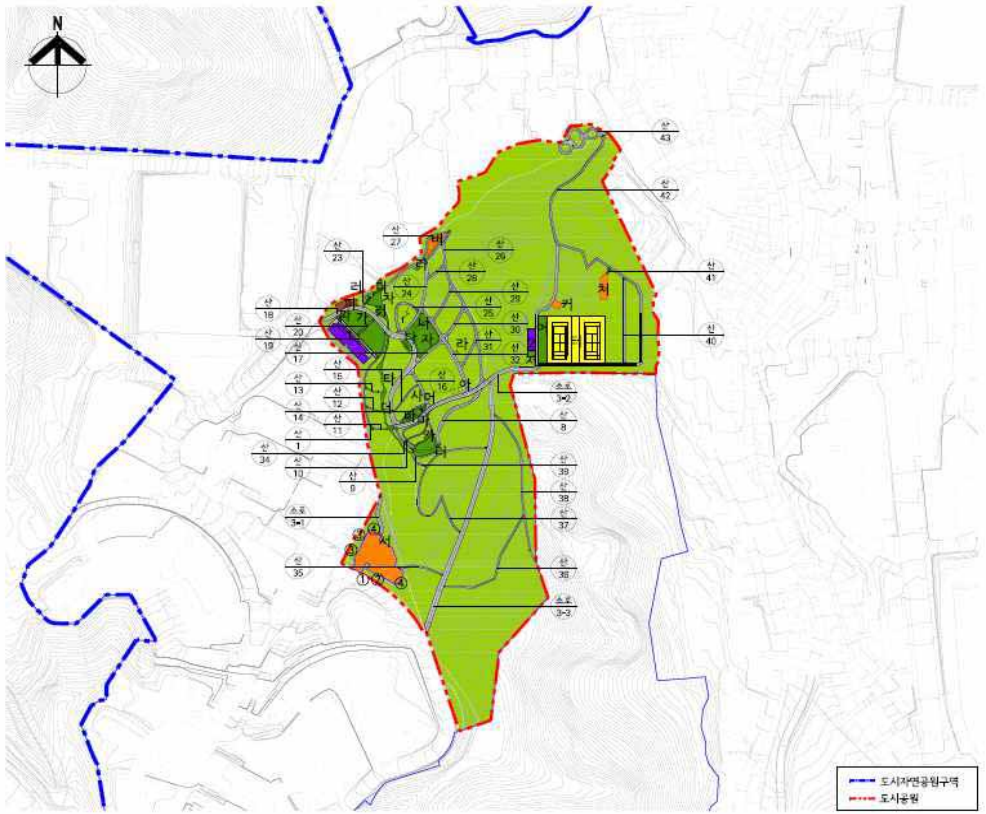
■사설조서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개)	비고
합계			51,453,70	5,613,31	-	1	246,80	246,80	22	
기반시설	소계		2,913,94	2,913,94	-	-	-	-	-	
	도로		2,913,94	2,913,94	-	-	-	-	-	
조성시설	소계		1,643,60	1,643,60	-	-	-	-	-	
	맹이마당	가	534,60	534,60	-	-	-	-	-	
	조형파고라	나	26,90	26,90	-	-	-	-	-	
	파고라	다	6,20	6,20	-	-	-	-	-	
	초정	라	12,50	12,50	-	-	-	-	-	
	농기구보관소	마	24,00	24,00	-	-	-	-	-	
	작업대	바	4,80	4,80	-	-	-	-	-	
	조형연못및분수대	사	6,80	6,80	-	-	-	-	-	
	퍼걸러	아	24,00	24,00	-	-	-	-	-	
	잔디마당	자	515,70	515,70	-	-	-	-	-	
	생태연못	차	154,10	154,10	-	-	-	-	-	
	참로원	카	134,70	134,70	-	-	-	-	-	
	계류	타	115,90	115,90	-	-	-	-	-	
	계단	파	4,00	4,00	-	-	-	-	-	
	양풍체험원	하	7,00	7,00	-	-	-	-	-	
	야생초화원대	거	11,20	11,20	-	-	-	-	-	
	스탠드	너	-	-	-	-	-	-	-	
	목교	더	24,90	24,90	-	-	-	-	-	
	데크	러	32,30	32,30	-	-	-	-	-	
	조형미술관입구	머	16,00	16,00	-	-	-	-	-	
휴양시설	소계		608,97	608,97	-	-	-	-	13	
	쉼터	버	61,80	61,80	-	-	-	-	-	
	휴게쉼터	서	747,17	747,17	-	-	-	-	-	
	사각파고라	①	-	-	-	-	-	-	1	
	팔각정	②	-	-	-	-	-	-	9	
	등탁지	③	-	-	-	-	-	-	3	
문화시설	소계		-	-	-	-	-	-	9	
	체력단련시설	④	-	-	-	-	-	-	9	
공익시설	소계		246,80	246,80	-	1	246,80	246,80	-	
	관리소	1	246,80	246,80	-	1	246,80	246,80	-	
녹지 및 기타	소계		45,840,39	-	-	-	-	-	-	
	녹지		45,840,39	-	-	-	-	-	-	

Scale=1:1,500
0 10 40 80 150

조성계획도 [변경후]

원신지구



■시설조서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합계			51,453,70	9,136,73	-	1	246,80	246,80	23	
기반시설	소계		4,498,94	4,498,94	-	-	-	-	-	
	도로		4,498,94	4,498,94	-	-	-	-	-	
조경시설	소계		1,857,31	1,857,31	-	-	-	-	-	
	맞이마당	가	534,60	534,60	-	-	-	-	-	
	초량마고라	나	20,90	20,90	-	-	-	-	-	
	마고라	다	6,20	6,20	-	-	-	-	-	
	초정	라	12,50	12,50	-	-	-	-	-	
	농기구보관소	마	24,00	24,00	-	-	-	-	-	
	창업대	바	4,80	4,80	-	-	-	-	-	
	초량마을공동우물터	사	0,80	0,80	-	-	-	-	-	
	피바위	아	24,00	24,00	-	-	-	-	-	
	잔디마당	자	515,70	515,70	-	-	-	-	-	
	생태연못	차	154,10	154,10	-	-	-	-	-	
	창포원	카	134,70	134,70	-	-	-	-	-	
	계류	타	115,90	115,90	-	-	-	-	-	
	계단	파	4,00	4,00	-	-	-	-	-	
	목교	더	24,90	24,90	-	-	-	-	-	
	데크	러	32,30	32,30	-	-	-	-	-	
	초량마을전망쉼터	머	16,00	16,00	-	-	-	-	-	
	화단1	어	202,23	202,23	-	-	-	-	-	
	화단2	저	29,88	29,88	-	-	-	-	-	
휴양시설	소계		825,73	825,73	-	-	-	-	13	
	쉼터	버	61,80	61,80	-	-	-	-	-	
	휴게쉼터1	서	747,17	747,17	-	-	-	-	-	
	휴게쉼터2	처	86,76	86,76	-	-	-	-	-	
	독서쉼터	커	30,00	30,00	-	-	-	-	-	
	사각마고라	①	-	-	-	-	-	-	1	
	평의자	②	-	-	-	-	-	-	9	
	등의자	③	-	-	-	-	-	-	3	
운동시설	소계		1,439,49	1,439,49	-	-	-	-	9	
	체력단련시설	④	-	-	-	-	-	-	9	
	테니스장	터	1,439,49	1,439,49	-	-	-	-	-	
편익시설	소계		76,30	76,30	-	-	-	-	-	
	초차장	퍼	76,30	76,30	-	-	-	-	-	
관리시설	소계		341,96	341,96	-	1	246,80	246,80	1	
	관리소	1	246,80	246,80	-	1	246,80	246,80	-	
	관리실	2	95,16	95,16	-	-	-	-	1	
녹지 및 기타	소계		42,313,97	-	-	-	-	-	-	
	녹지		42,313,97	-	-	-	-	-	-	

Scale = 1:1,500
0 10 40 80 150

◈ 서초구공고 제2025-1912호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공사완료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82-50호(1982.2.3.)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25-137호(2025.8.7.)로 변경결정 및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25-161호(2025.9.11.)로 실시계획인가 된 동덕여자중·고등학교(서초구 방배동 산82번지 일대)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서 초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산82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 명칭 : 도시계획시설(학교) 내 산림(식생) 이전 및 복원공사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교지(학교시설) 합계	34,724.4	증) 323	35,047.4	100.0	
체육장	9,171	-	9,171	26.2	
교사용대지	25,553.4	증) 323	25,876.4	73.8	

- 학교시설 부지 내 식생 이전 및 복원 면적 : 323.0㎡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 성명 : 학교법인 동덕학원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13길 60(하월곡동 23-1)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고시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41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운항구역/ 점용위치	점용목적	점용면적	점용기간	
㈜골든블루 마리나 (대표 김재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올림픽대로 683(반포동)	행주대교 ~ 잠실대교	수상레저사업	동력선 1척 (스피드호) 무동력 카약 20대	2025.9.23. ~ 2025.10.31.	2025. 9.22.
			마리나선박대여업	동력선 1척 (리치몬드 호)	2025.9.23. ~ 2025.12.31	2025. 9.22.

사업소공고

◈ 미래한강본부공고 제2025-412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을 위반으로 단속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의해 과태료부과전에 처분내용을 통지하고자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이의제기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간 이후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2025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1. 건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행위자(사전통지 과태료 부과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 “세부내역 별첨 참조”

4. 공 고 기 간 : 2025. 10. 02. ~ 2025. 10. 15. (14일)

5. 자진납부기간 : 2025. 10. 16. ~ 2025. 10. 29. (14일)

6. 수령방법
-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에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수령하시기바랍니다.

7. 공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02-3780-08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 년월	사전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 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번호	반송 일자	반송 사유	공시송달 번호	공시 송달일	공시 송달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기본 주소	부서 코드	부서 명	위반장소
1	10-2 8870 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 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25-09	005318	1	931028-*****	최*열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이륜차	2025-08-28 20:51	50,000	2025-09-05	2025-10-31	10788345 38371	2025-09-16	기타	제2025-412호	1	2025-09-26	2025-10-02	2025-10-15	0263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26길 40, 402호(장안동, 마하나임)	6114357	운영총괄과	반포한강공원내 잠수교 남단 교각주변
2	10-2 8870 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 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25-09	005322	1	800923-*****	김*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자동차	2025-08-30 18:25	50,000	2025-09-05	2025-10-31	10788345 38374	2025-09-16	기타	제2025-412호	1	2025-09-26	2025-10-02	2025-10-15	037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재울미래로 2	6114357	운영총괄과	난지한강공원내 제2주차장인근도로
3	10-2 8870 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 및이용관련 위반과태료	2025-09	005399	1	841121-*****	심*석	지정된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자동차	2025-09-05 03:02	50,000	2025-09-10	2025-10-31	10788345 52428	2025-09-18	기타	제2025-412호	1	2025-09-26	2025-10-02	2025-10-15	44264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산하5로 66	6114357	운영총괄과	잠원한강공원 내 신사나들목 입구 부근(50조9002)자동차

◈ 미래한강본부공고 제2025-413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수시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위반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수시분)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1. 건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행위자 (수시분 과태료 부과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 “세부내역 별첨 참조”

4. 공고기간 : 2025. 10. 02. ~ 2025. 10. 15. (14일)

5. 수령방법
-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에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6. 공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02-3780-08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반송 구분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대상	과세년월	과세번호	부과일자	납기일자	공시송달 여부	반송일자	반송사유	공시송달 일	공시시작일	공시종료일
1	부과 고지	890724-*******	황*권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자동차	2025-08	001050	2025-08-11	2025-09-30	Y	2025-08-25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2	부과 고지	970130-*******	하*재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자동차	2025-08	001053	2025-08-11	2025-09-30	Y	2025-08-22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3	부과 고지	960507-*******	한*준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5-08	001054	2025-08-11	2025-09-30	Y	2025-08-22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4	부과 고지	730415-*******	송*호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이륜차	2025-08	001056	2025-08-11	2025-09-30	Y	2025-08-22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5	부과 고지	810620-*******	민*준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5-08	001059	2025-08-11	2025-09-30	Y	2025-08-21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6	부과 고지	960815-*******	YI********GIL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이륜차	2025-08	001071	2025-08-11	2025-09-30	Y	2025-08-22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7	부과 고지	720312-*******	홍*호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08	001075	2025-08-11	2025-09-30	Y	2025-08-21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8	부과 고지	610602-*******	김*현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08	001077	2025-08-11	2025-09-30	Y	2025-08-22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9	부과 고지	850401-*******	방*석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08	001079	2025-08-11	2025-09-30	Y	2025-08-21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10	부과 고지	610628-*******	남*호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08	001080	2025-08-11	2025-09-30	Y	2025-08-25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11	부과 고지	720312-*******	홍*호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08	001082	2025-08-11	2025-09-30	Y	2025-08-21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선택	반송 구분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대상	과세년월	과세번호	부과일자	납기일자	공시송달 여부	반송일자	반송사유	공시송달 일	공시시작일	공시종료일
12	부과 고지	610602-*******	김*현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08	001083	2025-08-11	2025-09-30	Y	2025-08-22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13	부과 고지	660903-*******	임*식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08	001084	2025-08-11	2025-09-30	Y	2025-08-22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14	부과 고지	850401-*******	방*석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08	001086	2025-08-11	2025-09-30	Y	2025-08-21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15	부과 고지	820613-*******	최*택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08	001087	2025-08-11	2025-09-30	Y	2025-08-22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16	부과 고지	610628-*******	남*호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08	001088	2025-08-11	2025-09-30	Y	2025-08-25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17	부과 고지	880511-*******	김*인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5-09	001089	2025-09-08	2025-10-31	Y	2025-09-15	수취인불명	2025-09-26	2025-10-02	2025-10-15
18	부과 고지	770224-*******	황*영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5-09	001090	2025-09-08	2025-10-31	Y	2025-09-12	이사불명	2025-09-26	2025-10-02	2025-10-15
19	부과 고지	910424-*******	이*훈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이륜차	2025-09	001092	2025-09-08	2025-10-31	Y	2025-09-17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20	부과 고지	950206-*******	유*연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5-09	001093	2025-09-08	2025-10-31	Y	2025-09-19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21	부과 고지	750117-*******	김*철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5-09	001094	2025-09-08	2025-10-31	Y	2025-09-19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22	부과 고지	760115-*******	유*희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이륜차	2025-09	001095	2025-09-08	2025-10-31	Y	2025-09-18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선택	반송 구분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대상	과세년월	과세번호	부과일자	납기일자	공시송달 여부	반송일자	반송사유	공시송달 일	공시시작일	공시종료일
23	부과 고지	180111-*******	아**설㈜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5-09	001096	2025-09-08	2025-10-31	Y	2025-09-12	수취인불명	2025-09-26	2025-10-02	2025-10-15
24	부과 고지	020520-*******	이*엽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5-09	001097	2025-09-08	2025-10-31	Y	2025-09-17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25	부과 고지	690427-*******	임*상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이륜차	2025-09	001098	2025-09-08	2025-10-31	Y	2025-09-17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26	부과 고지	970503-*******	김*수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주차행위**********이륜차	2025-09	001099	2025-09-08	2025-10-31	Y	2025-09-18	폐문부재	2025-09-26	2025-10-02	2025-10-15
27	부과 고지	860820-*******	주*정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주차행위**********이륜차	2025-09	001100	2025-09-08	2025-10-31	Y	2025-09-17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28	부과 고지	831015-*******	최*호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주차행위**********이륜차	2025-09	001101	2025-09-08	2025-10-31	Y	2025-09-18	폐문부재	2025-09-26	2025-10-02	2025-10-15
29	부과 고지	970519-*******	김*현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주차행위**********이륜차	2025-09	001103	2025-09-08	2025-10-31	Y	2025-09-18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30	부과 고지	030207-*******	YA***QI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주차행위**********이륜차	2025-09	001104	2025-09-08	2025-10-31	Y	2025-09-17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31	부과 고지	760923-*******	이*수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주차행위**********이륜차	2025-09	001105	2025-09-08	2025-10-31	Y	2025-09-12	주소불명	2025-09-26	2025-10-02	2025-10-15
32	부과 고지	020210-*******	고*준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5-09	001106	2025-09-08	2025-10-31	Y	2025-09-17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33	부과 고지	890925-*******	전*호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5-09	001107	2025-09-08	2025-10-31	Y	2025-09-19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선택	반송 구분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대상	과세년월	과세번호	부과일자	납기일자	공시송달 여부	반송일자	반송사유	공시송달 일	공시시작일	공시종료일
34	부과 고지	730323-*******	송*수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5-09	001108	2025-09-08	2025-10-31	Y	2025-09-18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35	부과 고지	570625-*******	채*명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5-09	001109	2025-09-08	2025-10-31	Y	2025-09-17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36	부과 고지	881210-*******	이****동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5-09	001111	2025-09-08	2025-10-31	Y	2025-09-18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37	부과 고지	821123-*******	박*현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이륜차	2025-09	001112	2025-09-08	2025-10-31	Y	2025-09-12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38	부과 고지	690430-*******	김*종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이륜차	2025-09	001114	2025-09-08	2025-10-31	Y	2025-09-18	폐문부재	2025-09-26	2025-10-02	2025-10-15
39	부과 고지	761018-*******	GU******AY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이륜차	2025-09	001116	2025-09-08	2025-10-31	Y	2025-09-18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40	부과 고지	110111-*******	주*****커피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5-09	001117	2025-09-08	2025-10-31	Y	2025-09-12	이사불명	2025-09-26	2025-10-02	2025-10-15
41	부과 고지	031205-*******	금*호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이륜차	2025-09	001118	2025-09-08	2025-10-31	Y	2025-09-12	주소불명	2025-09-26	2025-10-02	2025-10-15
42	부과 고지	110111-*******	(주*****리아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5-09	001119	2025-09-08	2025-10-31	Y	2025-09-12	수취인불명	2025-09-26	2025-10-02	2025-10-15
43	부과 고지	000912-*******	RA**********ISH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이륜차	2025-09	001121	2025-09-08	2025-10-31	Y	2025-09-18	폐문부재	2025-09-26	2025-10-02	2025-10-15
44	부과 고지	145011-*******	주**********리티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5-09	001124	2025-09-08	2025-10-31	Y	2025-09-18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선택	반송 구분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대상	과세년월	과세번호	부과일자	납기일자	공시송달 여부	반송일자	반송사유	공시송달 일	공시시작일	공시종료일
45	부과 고지	871001-*******	이*원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이륜차	2025-09	001127	2025-09-08	2025-10-31	Y	2025-09-18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46	부과 고지	940211-*******	김*철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5-09	001128	2025-09-08	2025-10-31	Y	2025-09-17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47	부과 고지	821226-*******	남*미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5-09	001130	2025-09-08	2025-10-31	Y	2025-09-18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48	부과 고지	821226-*******	남*미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5-09	001130	2025-09-08	2025-10-31	Y	2025-09-18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49	부과 고지	910830-*******	박*태(****비)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5-09	001131	2025-09-08	2025-10-31	Y	2025-09-19	폐문부재	2025-09-26	2025-10-02	2025-10-15
50	부과 고지	790928-*******	박*관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이륜차	2025-09	001133	2025-09-08	2025-10-31	Y	2025-09-18	폐문부재	2025-09-26	2025-10-02	2025-10-15
51	부과 고지	780105-*******	송*홍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이륜차	2025-09	001134	2025-09-08	2025-10-31	Y	2025-09-12	수취인불명	2025-09-26	2025-10-02	2025-10-15
52	부과 고지	750422-*******	박*탁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5-09	001135	2025-09-08	2025-10-31	Y	2025-09-17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53	부과 고지	960920-*******	LI*****NG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이륜차	2025-09	001136	2025-09-08	2025-10-31	Y	2025-09-17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54	부과 고지	931011-*******	WE*****NG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5-09	001137	2025-09-08	2025-10-31	Y	2025-09-19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55	부과 고지	921024-*******	김*훈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5-09	001138	2025-09-08	2025-10-31	Y	2025-09-17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선택	반송 구분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대상	과세년월	과세번호	부과일자	납기일자	공시송달 여부	반송일자	반송사유	공시송달 일	공시시작일	공시종료일
56	부과 고지	660521-*******	임*철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5-09	001139	2025-09-08	2025-10-31	Y	2025-09-18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57	부과 고지	011130-*******	NI*****NG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5-09	001140	2025-09-08	2025-10-31	Y	2025-09-18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58	부과 고지	990615-*******	김*환김*수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5-09	001141	2025-09-08	2025-10-31	Y	2025-09-18	폐문부재	2025-09-26	2025-10-02	2025-10-15
59	부과 고지	670531-*******	정*재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이륜차	2025-09	001142	2025-09-08	2025-10-31	Y	2025-09-18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60	부과 고지	861224-*******	김*구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이륜차	2025-09	001143	2025-09-08	2025-10-31	Y	2025-09-18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61	부과 고지	690908-*******	심*욱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5-09	001144	2025-09-08	2025-10-31	Y	2025-09-17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62	부과 고지	770629-*******	권*길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이륜차	2025-09	001145	2025-09-08	2025-10-31	Y	2025-09-12	수취인불명	2025-09-26	2025-10-02	2025-10-15
63	부과 고지	961008-*******	권*완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이륜차	2025-09	001146	2025-09-08	2025-10-31	Y	2025-09-17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64	부과 고지	800914-*******	안*화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5-09	001147	2025-09-08	2025-10-31	Y	2025-09-18	폐문부재	2025-09-26	2025-10-02	2025-10-15
65	부과 고지	850704-*******	이*호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5-09	001150	2025-09-08	2025-10-31	Y	2025-09-19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66	부과 고지	720904-*******	이*환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이륜차	2025-09	001151	2025-09-08	2025-10-31	Y	2025-09-18	폐문부재	2025-09-26	2025-10-02	2025-10-15

선택	반송 구분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대상	과세년월	과세번호	부과일자	납기일자	공시송달 여부	반송일자	반송사유	공시송달 일	공시시작일	공시종료일
67	부과 고지	950331-*******	황*석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이륜차	2025-09	001153	2025-09-08	2025-10-31	Y	2025-09-18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68	부과 고지	960716-*******	박*재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이륜차	2025-09	001155	2025-09-08	2025-10-31	Y	2025-09-19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69	부과 고지	680302-*******	박*혁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주차 행위**********자동차	2025-09	001157	2025-09-08	2025-10-31	Y	2025-09-18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70	부과 고지	610505-*******	정*경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주차행 위**********이륜차	2025-09	001158	2025-09-08	2025-10-31	Y	2025-09-17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71	부과 고지	600108-*******	김*태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5-09	001159	2025-09-08	2025-10-31	Y	2025-09-17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72	부과 고지	800209-*******	강*민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5-09	001161	2025-09-08	2025-10-31	Y	2025-09-19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73	부과 고지	700825-*******	신*우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이륜차	2025-09	001162	2025-09-08	2025-10-31	Y	2025-09-18	폐문부재	2025-09-26	2025-10-02	2025-10-15
74	부과 고지	850704-*******	조*근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5-09	001163	2025-09-08	2025-10-31	Y	2025-09-19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75	부과 고지	770202-*******	박*남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자동차	2025-09	001164	2025-09-08	2025-10-31	Y	2025-09-18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76	부과 고지	940226-*******	황*철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이륜차	2025-09	001166	2025-09-08	2025-10-31	Y	2025-09-17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77	부과 고지	214914-*******	유*****실업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5-09	001174	2025-09-08	2025-10-31	Y	2025-09-19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선택	반송 구분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대상	과세년월	과세번호	부과일자	납기일자	공시송달 여부	반송일자	반송사유	공시송달 일	공시시작일	공시종료일
78	부과 고지	720312-*******	홍*호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09	001175	2025-09-08	2025-10-31	Y	2025-09-17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79	부과 고지	610628-*******	남*호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09	001177	2025-09-08	2025-10-31	Y	2025-09-19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80	부과 고지	660321-*******	황*천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주차행위**********자동차	2025-09	001179	2025-09-08	2025-10-31	Y	2025-09-18	폐문부재	2025-09-26	2025-10-02	2025-10-15
81	부과 고지	610628-*******	남*호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09	001186	2025-09-08	2025-10-31	Y	2025-09-19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82	부과 고지	610628-*******	남*호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09	001187	2025-09-08	2025-10-31	Y	2025-09-19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83	부과 고지	720309-*******	김*완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09	001188	2025-09-08	2025-10-31	Y	2025-09-18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84	부과 고지	720309-*******	김*완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09	001188	2025-09-08	2025-10-31	Y	2025-09-18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85	부과 고지	720312-*******	홍*호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09	001189	2025-09-08	2025-10-31	Y	2025-09-17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86	부과 고지	720312-*******	홍*호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09	001189	2025-09-08	2025-10-31	Y	2025-09-17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87	부과 고지	850401-*******	방*석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09	001191	2025-09-08	2025-10-31	Y	2025-09-17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88	부과 고지	720312-*******	홍*호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09	001192	2025-09-08	2025-10-31	Y	2025-09-17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선택	반송 구분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대상	과세년월	과세번호	부과일자	납기일자	공시송달 여부	반송일자	반송사유	공시송달 일	공시시작일	공시종료일
89	부과 고지	720309-*******	김*완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09	001193	2025-09-08	2025-10-31	Y	2025-09-18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90	부과 고지	610628-*******	남*호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09	001194	2025-09-08	2025-10-31	Y	2025-09-19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91	부과 고지	041012-*******	TR*******NH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이륜차	2025-09	001197	2025-09-08	2025-10-31	Y	2025-09-18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92	부과 고지	720412-*******	김*병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자동차	2025-09	001198	2025-09-08	2025-10-31	Y	2025-09-17	폐문부재	2025-09-26	2025-10-02	2025-10-15
93	부과 고지	940903-*******	송*석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5-09	001199	2025-09-08	2025-10-31	Y	2025-09-12	주소불명	2025-09-26	2025-10-02	2025-10-15
94	부과 고지	610628-*******	남*호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09	001202	2025-09-08	2025-10-31	Y	2025-09-19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95	부과 고지	720312-*******	홍*호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09	001203	2025-09-08	2025-10-31	Y	2025-09-17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96	부과 고지	850401-*******	방*석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09	001204	2025-09-08	2025-10-31	Y	2025-09-17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97	부과 고지	720309-*******	김*완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09	001206	2025-09-08	2025-10-31	Y	2025-09-18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98	부과 고지	610628-*******	남*호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09	001207	2025-09-08	2025-10-31	Y	2025-09-19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99	부과 고지	610628-*******	남*호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09	001216	2025-09-08	2025-10-31	Y	2025-09-19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선택	반송 구분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대상	과세년월	과세번호	부과일자	납기일자	공시송달 여부	반송일자	반송사유	공시송달 일	공시시작일	공시종료일
100	부과 고지	720312-*******	홍*호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09	001218	2025-09-08	2025-10-31	Y	2025-09-17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101	부과 고지	610628-*******	남*호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09	001219	2025-09-08	2025-10-31	Y	2025-09-19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102	부과 고지	850401-*******	방*석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09	001220	2025-09-08	2025-10-31	Y	2025-09-17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103	부과 고지	660813-*******	고*영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09	001221	2025-09-08	2025-10-31	Y	2025-09-17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104	부과 고지	610628-*******	남*호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09	001224	2025-09-08	2025-10-31	Y	2025-09-19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105	부과 고지	720309-*******	김*완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09	001225	2025-09-08	2025-10-31	Y	2025-09-18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106	부과 고지	720312-*******	홍*호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09	001226	2025-09-08	2025-10-31	Y	2025-09-17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107	부과 고지	660813-*******	고*영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09	001228	2025-09-08	2025-10-31	Y	2025-09-17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108	부과 고지	750313-*******	신*수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09	001235	2025-09-08	2025-10-31	Y	2025-09-18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109	부과 고지	720312-*******	홍*호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09	001236	2025-09-08	2025-10-31	Y	2025-09-17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110	부과 고지	610828-*******	정*순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09	001237	2025-09-08	2025-10-31	Y	2025-09-18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선택	반송 구분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대상	과세년월	과세번호	부과일자	납기일자	공시송달 여부	반송일자	반송사유	공시송달 일	공시시작일	공시종료일
111	부과 고지	660813-*******	고*영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09	001241	2025-09-08	2025-10-31	Y	2025-09-17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112	부과 고지	660915-*******	양*진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09	001242	2025-09-08	2025-10-31	Y	2025-09-19	폐문부재	2025-09-26	2025-10-02	2025-10-15
113	부과 고지	610628-*******	남*호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09	001243	2025-09-08	2025-10-31	Y	2025-09-19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114	부과 고지	720312-*******	홍*호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09	001244	2025-09-08	2025-10-31	Y	2025-09-17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115	부과 고지	660903-*******	임*식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09	001248	2025-09-08	2025-10-31	Y	2025-09-18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116	부과 고지	720309-*******	김*완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09	001252	2025-09-08	2025-10-31	Y	2025-09-18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117	부과 고지	750313-*******	신*수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09	001255	2025-09-08	2025-10-31	Y	2025-09-18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118	부과 고지	720312-*******	홍*호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09	001258	2025-09-12	2025-10-31	Y	2025-09-22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119	부과 고지	681224-*******	이*옥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09	001262	2025-09-12	2025-10-31	Y	2025-09-23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120	부과 고지	720309-*******	김*완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09	001265	2025-09-12	2025-10-31	Y	2025-09-23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121	부과 고지	660813-*******	고*영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09	001267	2025-09-12	2025-10-31	Y	2025-09-23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선택	반송 구분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대상	과세년월	과세번호	부과일자	납기일자	공시송달 여부	반송일자	반송사유	공시송달일	공시시작일	공시종료일
122	부과 고지	610628-*******	남*호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09	001268	2025-09-12	2025-10-31	Y	2025-09-24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123	부과 고지	750313-*******	신*수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09	001269	2025-09-12	2025-10-31	Y	2025-09-23	기타	2025-09-26	2025-10-02	2025-10-15

◈ 한성백제박물관공고 제2025-28호

한성백제박물관 2025년 자료 공개 구입 공고

한성백제박물관에서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수집하여 전시·연구·교육에 활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박물관 자료(유물)를 구입하고자 하니 소장 기관·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10월 2일
한성백제박물관장

1. 구입대상자료: 서울의 역사·문화와 관련된 선사~고려시대 자료

구분	내용
선사~고려시대 관련 실물 자료	○ 선사~고려시대 자료 - 선사시대: 석기·토기·금속기류 등 - 삼국~통일신라시대: 토도기·와전·금속기류 등 - 고려시대: 토도기·금속기류 등 ○ 한국 고대사 관련 문헌 자료 -『삼국사기』,『삼국유사』 등 백제 관련 서적 등
한성백제 유적 관련 사진 자료	○ 한성백제 유적 관련 근현대(1970년대 이전) 사진, 사진첩, 유리원판, 필름 등 - 풍납동 토성, 몽촌토성, 삼성동 토성, 석촌동 고분군, 가락동 고분군, 아차산 보루, 암사동 유적, 미사리 유적 등

2. 참가자격: 문화유산 매매업자 및 법인 등
※ 도굴품 및 도난품 등 불법 문화유산과 문화유산 관련 사범은 매도신청 불가
※ 문화유산 매매업자의 경우 반드시 사업체명으로 매도신청 할 것

3. 서류접수기간: 2025년 10월 13일(월)부터 10월 17일(금)까지
※ 방문접수시간: 평일 09:30~11:30, 13:30~17:00(토·일요일 제외)

4. 접수방법: 직접 방문·우편 또는 전자우편 접수(우편은 마감일 도착 분까지만 유효함)
① 직접 방문·우편: 한성백제박물관 유물과학과(05540,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71)
② 전자우편: wukuku@seoul.go.kr
※ 접수 완료 후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신청서류
① 매도신청서(소정양식: 한성백제박물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1통
② 매도신청자료명세서(소정양식: 한성백제박물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1통

③ 문화유산 매매업자인 경우 문화유산 매매업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④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매도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각 1통
⑤ 신청 자료의 컬러사진(3"×5") 2매 또는 디지털 파일

6. 자료접수: 신청 서류 및 자료의 사진을 검토한 후 평가대상 자료로 선정된 경우는 개별 통지하여 실물을 접수함.
※ 실물 접수 기간: 2025. 10. 22.(수)~10. 31.(금)
※ 위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7. 구입자료 선정 및 가격평가: 한성백제박물관 구입자료 평가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심의・평가에 따름
※ 구입 예정 자료는 인터넷 공개를 통해 불법 문화유산 여부 검증.
※ 최종 선정된 자료의 평가금액에 매도 신청자가 동의할 경우는 매매계약 체결.

8. 구입결정: 구입대상으로 선정된 자료는 매도 희망자와 매매약정을 체결하되 구입가격은 구입자료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평가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9. 소유권이전: 매매약정 체결 후, 대금 지급과 동시에 자료에 대한 소유권은 한성백제박물관으로 이전됨.

10. 기타 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② 구입 대상에서 제외된 자료는 제외 결정일로부터 10일 내에 본인에게 통보하며 소정의 절차에 의해 반환(반환 시 자료접수증 반드시 지참).
③ 자료 접수 및 반환으로 발생하는 운송비 및 제반 비용은 매도 신청자 부담.
④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성백제박물관 유물과학과(02-2152-5934)로 문의.

정 정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557호

도시관리계획(강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363호(2025.7.3.)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강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에 대하여 일부 오기·누락 사항이 있어 이를 정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정정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정 사유

• 2025-363호(2025.7.3.)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강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조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공동개발계획, 관광숙박 특화구역에 대한 일부 내용에 오기·누락 등이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함

Ⅱ. 정정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해당사항 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 정정

< 정정 전 >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면적(㎡)			결정사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화곡동 980-16번지 일원	-	증) 74,862.5	74,862.5	•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강서지구중심 기능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고자 함

< 정정 후 >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치	면적(㎡)	결정사유
신설	-	화곡동 980-16번지 일원	• 신설 : 74,862.5	•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강서지구중심 기능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 : 해당사항 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1) 최대개발규모 설정 기준 : 해당사항 없음

2) 공동개발 계획 : 정정

< 정정 전 >

▌가구 및 공동개발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가 구		위 치	면 적(㎡)	계획내용	비 고
	번 호	면 적(㎡)				
상업지역	GR04	3,757.2	화곡동 987-1대	874.4		
			화곡동 987-3대	285.9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 개발필지
			화곡동 987-15대	185.5		
			화곡동 987-5대	297.9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 개발필지
			화곡동 987-6대	425.8		
			화곡동 987-12대	169.3		
			화곡동 987-13대	188.8		
			화곡동 987-14대	187.1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 개발필지
			화곡동 987-7대	445.0		
			화곡동 987-8대	191.1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 개발필지
			화곡동 987-9대	171.6		
			화곡동 987-10대	167.9		
			화곡동 987-11대	166.9		

< 정정 후 >

▌가구 및 공동개발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가 구		위 치	면 적(㎡)	계획내용	비 고
	번 호	면 적(㎡)				
상업지역	GR04	3,757.2	화곡동 987-1대	874.4		
			화곡동 987-3대	285.9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 개발필지
			화곡동 987-15대	185.5		
			화곡동 987-5대	297.9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 개발필지
			화곡동 987-6대	425.8		
			화곡동 987-12대	169.3		
			화곡동 987-13대	188.8		
			화곡동 987-14대	187.1		
			화곡동 987-7대	445.0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 개발필지
			화곡동 987-8대	191.1		
			화곡동 987-9대	171.6		
			화곡동 987-10대	167.9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 개발필지
			화곡동 987-11대	166.9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나.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다. 관광숙박 특화구역에 관한 계획

1) 관광숙박 특화구역

▌관광숙박 특화구역 지정 관한 결정조서 : 정정

< 정정 전 >

구 분	계획내용
적용대상	• GR2 중 6개 필지 : 1,890.8㎡, GR5 : 3,184.2㎡
완화조건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결정(단, 대지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자치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정정 후 >

구 분	계획내용
적용대상	• GR2 중 6개 필지 : 1,890.8㎡, GR5 : 3,184.2㎡
완화조건	• 모텔 1개소 포함하여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결정(단, 대지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자치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해당사항 없음

5.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 : 해당사항 없음

Ⅲ.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정정고시 전문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강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화곡동 980-16번지 일원	-	증) 74,862.5	74,862.5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치	면적(㎡)	결정사유
신설	-	화곡동 980-16번지 일원	• 신설 : 74,862.5	•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강서지구중심 기능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없음)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74,862.5	-	74,862.5	100.0	
주거지역	소 계	46,526.6	-	46,526.6	62.1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2,221.5	-	2,221.5	3.0	
	제2종일반주거지역	8,849.5	-	8,849.5	11.8	
	제3종일반주거지역	35,455.6	-	35,455.6	47.3	
상업지역	소 계	28,335.9	-	28,335.9	37.9	
	일반상업지역	28,335.9	-	28,335.9	37.9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없음)

▌보호지구 결정 조서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중요시설물 제한 내용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공항로 일대	건축물의 높이와 용도의 제한	57,931,000 (74,862.5)	서고시제120호 (77.4.22)	김포 공항

※ ( )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면적임

2.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신설)

가. 교통시설

1) 도로

▌도로 총괄표

류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5	5,029 (662)	126,968 (15,732)	2	281 (51)	2,664 (408)	5	4,140 (444)	117,926 (13,320)	8	608 (167)	6,378 (2,004)
대로	1	3,770 (444)	113,100 (13,320)	0	0	0	1	3,770 (444)	113,100 (13,320)	0	0	0
중로	5	677 (167)	9,080 (2,004)	0	0	0	1	239	3,824	4	438 (167)	5,256 (2,004)
소로	9	582 (51)	4,788 (408)	2	281 (51)	2,664 (408)	3	131	1,002	4	170	1,122

※ ( )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임

▌도로 결정 조서

구 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등 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39	30	주간선 도로	3,770 (444)	등촌동 628	외발산동 대로3-83	일반도로	건고제198호 (71.4.7)
신설	중로	2	1	16	집산 도로	239	화곡동 1111-8	화곡동 1002-7	일반도로	-
신설	중로	3	1	12	집산 도로	40	대로 2-39호선	화곡동 1102-18	일반도로	-
신설	중로	3	2	12	집산 도로	43	대로 2-39호선	중로 2-1호선	일반도로	-
신설	중로	3	3	12	집산 도로	43	중로 2-1호선	화곡동 1111-8	일반도로	-
기정	중로	3	B	12	국지 도로	312 (167)	화곡동 980-18	소로 3-4호선	일반도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207호 (21.1.7)
기정	소로	1	A	8	국지 도로	177 (51)	소로 3-4호선	화곡동 1002-3	일반도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207호 (21.1.7)
신설	소로	1	4	12	국지 도로	104	대로 2-39호선	화곡동 980-20	일반도로	-
신설	소로	2	1	7~8	국지 도로	45	대로 2-39호선	화곡동 1096-35	일반도로	-
신설	소로	2	2	8	국지 도로	39	대로 2-39호선	중로 2-1호선	일반도로	-
신설	소로	2	3	7~8	국지 도로	47	중로 2-1호선	화곡동 1111-8	일반도로	-
신설	소로	3	1	7~8	국지 도로	34	대로 2-39호선	화곡동 1103-10	일반도로	-
신설	소로	3	2	6	국지 도로	51	대로 2-39호선	화곡동 1002-7	일반도로	-
신설	소로	3	3	6	국지 도로	44	중로 2-1호선	화곡동 1002-3	일반도로	-
신설	소로	3	4	7~8	국지 도로	34	대로 2-39호선	화곡동 999-2	일반도로	-

※ 도로 연장에서 ( )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연장임

▌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중로 2-1호선	• 신설 - 위치 : 화곡동 1111-8~화곡동 1002-7 - 폭원 : 16m, 연장 : 239m	• 지역 내 도로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토지이용현황을 고려 도시계획시설로 신규 결정
-	중로 3-1호선	• 신설 - 위치 : 대로2-39호선~화곡동 1102-18 - 폭원 : 12m, 연장 : 40m	• 지역 내 도로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토지이용현황을 고려 도시계획시설로 신규 결정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중로 3-2호선	• 신설 - 위치 : 대로2-39호선~중로2-1호선 - 폭원 : 12m, 연장 : 43m	• 지역 내 도로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토지이용현황을 고려 도시계획시설로 신규 결정
-	중로 3-3호선	• 신설 - 위치 : 중로2-1호선~화곡동 1111-8 - 폭원 : 12m, 연장 : 43m	• 지역 내 도로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토지이용현황을 고려 도시계획시설로 신규 결정
-	소로 1-4호선	• 신설 - 위치 : 대로2-39호선~화곡동 980-20 - 폭원 : 12m, 연장 : 104m	• 지역 내 도로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토지이용현황을 고려 도시계획시설로 신규 결정
-	소로 2-1호선	• 신설 - 위치 : 대로2-39호선~화곡동 1096-35 - 폭원 : 7~8m, 연장 : 45m	• 지역 내 도로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토지이용현황을 고려 도시계획시설로 신규 결정
-	소로 2-2호선	• 신설 - 위치 : 대로2-39호선~중로2-1호선 - 폭원 : 8m, 연장 : 39m	• 지역 내 도로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토지이용현황을 고려 도시계획시설로 신규 결정
-	소로 2-3호선	• 신설 - 위치 : 중로2-1호선~화곡동 1111-8 - 폭원 : 7~8m, 연장 : 47m	• 지역 내 도로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토지이용현황을 고려 도시계획시설로 신규 결정
-	소로 3-1호선	• 신설 - 위치 : 대로2-39호선~화곡동 1103-10 - 폭원 : 7~8m, 연장 : 34m	• 지역 내 도로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토지이용현황을 고려 도시계획시설로 신규 결정
-	소로 3-2호선	• 신설 - 위치 : 대로2-39호선~화곡동 1002-7 - 폭원 : 6m, 연장 : 51m	• 지역 내 도로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토지이용현황을 고려 도시계획시설로 신규 결정
-	소로 3-3호선	• 신설 - 위치 : 중로2-1호선~화곡동 1002-3 - 폭원 : 6m, 연장 : 44m	• 지역 내 도로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토지이용현황을 고려 도시계획시설로 신규 결정
-	소로 3-4호선	• 신설 - 위치 : 대로2-39호선~화곡동 999-2 - 폭원 : 7~8m, 연장 : 34m	• 지역 내 도로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토지이용현황을 고려 도시계획시설로 신규 결정

나. 공간시설(해당없음)

다. 공공 · 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1) 공공청사(변경없음)

▌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1	강서 구청	공공 청사	화곡동 980-16	5,594.4	-	5,594.4	서고시제50호 (1976.3.15)	
기정	2	강서 경찰서	공공 청사	화곡동 980-27	7,352.8	-	7,352.8	서고시제50호 (1976.3.15)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1) 최대개발규모 설정 기준

구 분	적용대상	최대개발규모	비 고
간선변(화곡로)	간선변 상업지역	자율적 공동개발	GR1~GR7
이면부 주거지역	먹자골목 활성화지역	자율적 공동개발	GR8~GR11

※ 가구 단위 초과 개발 시 특별계획구역으로 관리

2) 공동개발 계획

구 분	계획 내용	비 고
공동개발 지정	• 기 공동개발 필지	11개소
공동개발 권장	• 전면 폭 너비가 좁은 이면부 필지 경우로, 토지이용의 비효율성이 예상되는 경우 • 필지규모 100㎡ 이하로 적정개발규모 유도가 필요한 경우	8개소
자율적 공동개발	• 개발 단위 개발 가능 • 1가구단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접한 필지간 자율적 공동개발 가능 - 동일가구 내 공동개발(권장)과 연계하여 자율적 공동개발 가능 - 다음의 경우 자율적 공동개발 불가 ① 부정형, 세장형 (단변:장변 = 1:3이상) ② 인접 필지가 맹지, 부정형, 세장형이 되는 경우	그 외

▌가구 및 공동개발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가 구		위 치	면 적(㎡)	계획내용	비 고
	번 호	면 적(㎡)				
상업지역	GR01	4,256.8	화곡동 1097대	2,300.9		
			화곡동 1097-2대	204.6		
			화곡동 1097-4대	498.2		
			화곡동 1097-5대	391.1		
			화곡동 1097-6대	274.6		
			화곡동 1097-9대	587.4		
상업지역	GR02	3,901.6	화곡동 1105대	360.3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 개발필지
			화곡동 1105-1대	363.3		
			화곡동 1105-2대	447.6		
			화곡동 1105-3대	290.2		
			화곡동 1105-4대	275.4		
			화곡동 1105-5대	284.6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 개발필지
			화곡동 1105-6대	258.8		
			화곡동 1105-7대	124.6		
			화곡동 1105-8대	142.5		
			화곡동 1105-9대	306.4		
			화곡동 1105-10대	328.3		
			화곡동 1105-11대	329.2		
			화곡동 1105-12대	390.4		
상업지역	GR03	4,656.6	화곡동 998-1대	242.0		
			화곡동 998-2대	1,074.1		
			화곡동 998-5대	228.1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 개발필지
			화곡동 998-6대	236.7		
			화곡동 998-7대	235.7		
			화곡동 998-11대	206.3		
			화곡동 998-12대	211.9		
			화곡동 998-13대	188.1		
			화곡동 998-20대	11.9		
			화곡동 998-8대	240.7		
			화곡동 998-9대	1,428.4		
			화곡동 998-10대	220.5		
			화곡동 998-16대	132.2		
상업지역	GR04	3,757.2	화곡동 987-1대	874.4		
			화곡동 987-3대	285.9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 개발필지
			화곡동 987-15대	185.5		
			화곡동 987-5대	297.9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 개발필지
			화곡동 987-6대	425.8		
			화곡동 987-12대	169.3		
			화곡동 987-13대	188.8		
			화곡동 987-14대	187.1		
			화곡동 987-7대	445.0	공동개발	기공동

구 분	가 구		위 치	면 적(㎡)	계획내용	비 고
	번 호	면 적(㎡)				
			화곡동 987-8대	191.1	(지정)	개발필지
			화곡동 987-9대	171.6		
			화곡동 987-10대	167.9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 개발필지
			화곡동 987-11대	166.9		
상업지역	GR05	3,184.2	화곡동 1116대	195.0		
			화곡동 1116-1대	242.5		
			화곡동 1116-2대	362.0		
			화곡동 1116-3대	648.3		
			화곡동 1116-5대	360.7		
			화곡동 1116-6대	357.0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 개발필지
			화곡동 1116-7대	362.0		
			화곡동 1116-8대	413.9		
			화곡동 1116-11대	242.8		
상업지역	GR06	6,047.8	화곡동 1117대	427.1		
			화곡동 1117-1대	329.3		
			화곡동 1117-2대	328.3		
			화곡동 1117-3대	161.3		
			화곡동 1117-4대	158.3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 개발필지
			화곡동 1117-17대	296.6		
			화곡동 1117-5도	42.6		
			화곡동 1117-7대	679.5		
			화곡동 1117-10대	330.4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 개발필지
			화곡동 1117-24대	298.4		
			화곡동 1117-11대	340.2	공동개발 (권장)	토지이용의 효율화
			화곡동 1117-14대	347.4		
			화곡동 1117-12대	332.2		
			화곡동 1117-13대	410.6		
			화곡동 1117-15대	335.5		
			화곡동 1117-16대	384.5	공동개발 (권장)	과소 필지
			화곡동 1117-23대	12.9		
			화곡동 1117-26대	1.3		
			화곡동 1117-18대	365.6		
			화곡동 1117-19대	465.8		
주거지역	GR07	662.2	화곡동 980-1대	662.2		
주거지역	GR08	3,065.6	화곡동 1112-1대	246.5		
			화곡동 1112-2대	139.2		
			화곡동 1112-3대	137.5		
			화곡동 1112-4대	133.2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 개발필지
			화곡동 1112-5대	130.9		
			화곡동 1112-6대	421.8		
			화곡동 1112-7대	142.1		

구 분	가 구		위 치	면 적(㎡)	계획내용	비 고
	번 호	면 적(㎡)				
			화곡동 1112-8대	137.5		
			화곡동 1112-9대	139.2		
			화곡동 1112-10대	529.6		
			화곡동 1112-11대	133.9		
			화곡동 1112-12대	148.4		
			화곡동 1112-15도	168.3		
			화곡동 1112-19대	211.1		
			화곡동 1112-20대	246.4		
주거지역	GR09	2,924.6	화곡동 1115대	201.3		
			화곡동 1115-1대	177.9	공동개발 (권장)	이면부 필지
			화곡동 1115-2대	219.8		
			화곡동 1115-3대	174.5	공동개발 (권장)	이면부 필지
			화곡동 1115-4대	229.1		
			화곡동 1115-5대	202.6		
			화곡동 1115-6대	214.5		
			화곡동 1115-7대	488.3		
			화곡동 1115-8대	343.5		
			화곡동 1115-9대	175.9		
			화곡동 1115-10대	497.2		
주거지역	GR10	4,770.8	화곡동 1119대	478.3	공동개발 (권장)	이면부 필지
			화곡동 1119-1대	147.8		
			화곡동 1119-3대	146.1	공동개발 (권장)	이면부 필지
			화곡동 1119-4대	195.0		
			화곡동 1119-5대	145.1	공동개발 (권장)	이면부 필지
			화곡동 1119-6대	188.8		
			화곡동 1119-7대	478.5		
			화곡동 1119-8대	257.1	공동개발 (권장)	이면부 필지
			화곡동 1119-20대	272.3		
			화곡동 1119-9대	189.9		
			화곡동 1119-10대	602.0		
			화곡동 1119-11대	360.0		
			화곡동 1119-12대	174.7		
			화곡동 1119-13대	356.5		
			화곡동 1119-14도	61.6		

구 분	가 구		위 치	면 적(㎡)	계획내용	비 고
	번 호	면 적(㎡)				
			화곡동 1119-15대	180.8		
			화곡동 1119-16대	168.7		
			화곡동 1119-17대	168.7		
			화곡동 1119-18대	198.9		
주거지역	GR11	1,962.9	화곡동 1118-2대	540.6		
			화곡동 1118-3대	697.6		
			화곡동 1118-4대	232.6		
			화곡동 1118-5대	229.4		
			화곡동 1118-6대	262.7		
주거지역	GR12	5,594.4	화곡동 980-16대	5,594.4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1) 불허용도

▌불허용도 결정 조서

구 분	위 치	불허용도	비 고
A1 (상업 지역)	전면부 (일반상업지역)	• 옥외철탑골프연습장, 마권 유사 시설과 관람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폐차장,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야영장 시설	GR1, GR2, GR3, GR4, GR5, GR6
A2 (주거 지역)	전면부 및 이면부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수리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유사시설, 동 · 식물원, 종교시설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 운수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야영장 시설	GR7, GR8, GR9, GR10, GR11
특별 계획 구역	특별계획구역	• 특별계획 수립 내용에 따름	GR1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계 법령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 · 지구에서 제한되는 건축물 및 시설 등은 입지가 불가하며, 관계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용도인 경우에도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불허용도는 입지 할 수 없음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해당 법률에 따라 금지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음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8조 제2항에 따른 공항시설보호지구에서 제한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음

※ 「공항시설법」에따른 제56조(금지행위) 및 「조류및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제28조(공항주변의 부적합한 토지이용 방지)에 따른 건축물은 건축 할 수 없음

2) 권장용도

▌권장용도 결정 조서

구 분	위 치	권장용도		비 고
B1 (상업 지역)	화곡로변	전 층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관광숙박시설	GR1, GR2, GR3, GR4, GR5, GR6
B2 (상업 지역)	화곡로 이면부	2층 이하 (특화거리 연접)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자. 일반음식점	GR5, GR6
B3 (주거 지역)	전면부 및 이면부	2층 이하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자. 일반음식점	GR7, GR8, GR9, GR10, GR11
특별 계획 구역	특별계획구역	• 특별계획 수립 내용에 따름		GR12

나. 건축물의 개발밀도

1) 건폐율

▌건폐율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건폐율	비 고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4조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60% 이하	

2) 용적률

▌용적률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비 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220% 이하	법적 용적률 2배이하	A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이하	275% 이하	법적 용적률 2배이하	B
일반상업지역	800% 이하	880% 이하	법적 용적률 2배이하	C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 특별계획구역은 해당 특별계획구역 지침에 따름

(이 하 여 백)

3) 인센티브 계획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결정조서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_유형A : 일반상업지역

구 분	세부항목		계획기준	산정기준	α (일반기준)	인센티브 배분
탄소 중립	저영향개발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에 따른 기준시설 별 빗물분담량 기준의 1.5배 이상 초과하여 설치하는 경우	기준용적률 X α	0.03	24%
	신재생에너지		• '서울시 녹색설계 기준'에 따른 재생열 의무기준 이상을 준수하는 경우 (기후환경본부 및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등 관련 방침 연동 적용)	기준용적률 X α	0.03	24%
디자인 혁신	유니버셜 디자인		•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BF)' 인증시	기준용적률 X α	0.03	24%
지역 맞춤형	지역 특화 용도	권장 용도	• B1:권장용도를 적용범위 내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10%이상 설치하는 경우 (관광숙박시설 제외)	기준용적률 X α	0.03	24%
		가로 활성화	• B2:권장용도를 적용범위 내 건축물 2층 이하 연면적의 50% 이상 설치하는 경우 ※ B1 · B2공동개발시 B2 권장용도만 인센티브 적용			
	실내 공개공간		• 건축물 내부에 공공에게 개방된 실내 공개공간 조성시	기준용적률 X (설치면적/연면적) X α	0.3	24%
합계			-	-	-	120%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유형

구 분	용도지역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량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유형A	일반상업지역	800% 이하	880% 이하	80%(시뮬레이션=인센티브X150%내외=120%내외)

※ 허용용적률의 산출 : 기준용적률과 해당 인센티브의 합계이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음
※ 관계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면적은 인센티브 면적에서 제외
※ 관광숙박 특화계획에 따른 용적률 체계는 별도 적용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_유형B · C : 일반주거지역

구 분	세부항목	계획기준	산정기준	α (일반기준)	인센티브 배분	
					2종	3종
탄소 중립	저영향개발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에 따른 기준시설 별 빗물분담량 기준의 1.5배 이상 초과하여 설치하는 경우	기준용적률 X α	0.03	6%	7.5%
	신재생에너지	• '서울시 녹색설계 기준'에 따른 재생열 의무기준 이상을 준수하는 경우(기후환경본부 및 녹생건축물설계기준 등 관련 방침 연동 적용)	기준용적률 X α	0.03	6%	7.5%
디자인 혁신	유니버셜 디자인	•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BF)' 인증시	기준용적률 X α	0.03	6%	7.5%
지역 맞춤형	지역특화용도	• 권장용도를 적용범위 내 건축물 2층 이하 연면적의 50%이상 설치하는 경우	기준용적률 X α	0.05	10%	12.5%
	실내 공개공간	• 건축물 내부에 공공에게 개방된 실내 공개공간 조성시	기준용적률 X (설치면적/연면적) X α	0.4	8%	10%
합계		-	-	-	36%	45%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유형

구 분	용도지역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량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유형B	제2종일반 주거지역	200% 이하	220% 이하	20%(시뮬레이션=인센티브X150%내외=30%내외)
유형C	제3종일반 주거지역	250% 이하	275% 이하	25%(시뮬레이션=인센티브X150%내외=38%내외)

※ 허용용적률의 산출 : 기준용적률과 해당 인센티브의 합계이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음
※ 관계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면적은 인센티브 면적에서 제외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결정조서

• 공공시설 등 제공시 산정식

$$\text{상한용적률} = \text{기준(허용)용적률} \times (1+1.3\times\text{가중치}\times\alpha\text{토지}+1.0\times\alpha\text{현금 · 건축물})$$

- 인센티브계수 : 토지 1.3, 건축물 1.0, 현금 1.0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용도지역이 상향되는 경우 변경전 허용용적률을 적용함)
- α토지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로 제공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α건축물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로 제공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 등 부지(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α현금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로 제공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 등 부지(현금 환산부지) 제공 면적 비율
- 기타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 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에 따름

• 지하철출입구 등 설치시 산정식

(대지)상한용적률= 허용용적률×(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 건폐면적/대지면적)이내
(건물)상한용적률= 허용용적률×(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 연면적/건물연면적)이내

• 공개공지 등 설치시 산정식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법적용적률×{(공개공지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 공개공지 등 :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 용적률 완화비율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의무면적을 제외하며, 완화범위는 법적용적률의 1.2배 이내로 함
-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법적용적률은 변경 전 용도지역 용적률 적용
- 기타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에 따름

• 지능형 건축물 건축시 산정식

상한용적률 = 법적용적률×(1+완화비율)

지능형 건축물 인증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건축기준 완화 비율	15%	12%	9%	6%	0%

• 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 비율(B)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법적용적률 × Σ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B)]

- ①~③ 항목 중복 적용시 완화비율은 최대 15% 적용
- ④ 장수명주택인증은 관련 조례 개정 후 시행

① 에너지효율등급 및 ZEB 인증

구분	ZEB1	ZEB2	ZEB3	ZEB4	ZEB5	에너지효율 1++	에너지효율 1+
완화비율	15%	14%	13%	12%	11%	6%	3%

② 녹색건축 및 건축물에너지효율 인증

완화조건	최대완화비율
녹색건축물최우수등급	6%
녹색건축물우수등급	3%

③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	15%이상	20%이상	25%이상
완화비율	5%	10%	15%

④ 장수명주택인증

장수명주택 인증등급	최우수	우수
완화비율	15%	10%

• 관광숙박 건립형 건축시 산정식

상한용적률= 허용용적률+ 법적용적률X 용적률 완화 비율(최대 20%)
- (객실비율 70%미만) = 880% + 800% X 16% = 1,008%
- (객실비율 80%이상) = 880% + 800% X 20% = 1,040%

• 객실비율은 전체 연면적에 대한 객실 사용 바닥면적 합계로서 호텔 운영을 위한 주차장, 기계실/전기실 지원시설 및 복도, 화장실의 공용면적은 객실 연면적에 포함

항 목	처리기준 및 계수			비 고
	0.8	0.9	1.0	
상대정화구역	-	O	X	
객실비율	70% 미만	-	80% 이상	최저계수부터 직선보간법으로 부여

• 용적률 완화범위

용도지역		용적률		비 고
		현행 조례	최대 완화범위	
주거지역	준주거	400%이하	+80%	+20%p이하
상업지역	중심상업	1,000%이하(800%이하)	+200%(+160%)	
	일반상업	800%이하(600%이하)	+160%(+120%)	
	근린상업	600%이하(500%이하)	+120%(+100%)	
	유통상업	600%이하(500%이하)	+120%(+100%)	

※ ( )안은 서울도심의 경우 적용
※ 조례용적률 + 200%p를 초과하는 경우 市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다. 건축물의 높이 계획

1) 높이 계획

▌최고높이계획 결정조서

구 분	최고높이	블록명	비 고
일반상업지역	80m 이하	GR1, GR2, GR3, GR4, GR5, GR6	• 「공항시설법」 제34조(장애물 제한 등)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약57.86m)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35조(항공학적 검토위원회)에 따라 결정
제2·3종일반주거지역	60m 이하	GR7, GR8, GR9, GR10, GR11	

※ 특별계획구역은 해당 특별계획구역 지침에 따름
※ 건축물 높이가 본 지구단위계획 최고높이를 초과하거나, 「공항시설법」 상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인 건축물, 구조물, 그 밖에 장애물은 설치불가

마. 건축물 배치·형태 및 형태에 관한 계획

1) 건축물의 배치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획목표	계획내용		비 고
건축한계선	• 간선변(화곡로)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	상업지역 화곡로변	3m	가로활성화 유도
	• 기존 상권 중심지역 활성화 목표에 따른 보행환경 개선	상업지역 이면부 6m이하 도로변	2m	
		상업지역 남, 북측 도로변	2m	
		주거지역		
	• 보행자의 안전·편의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주거지역 도로변, 4m 이하 내부 도로변	1m	
벽면 지정선	• 먹자골목 활성화를 위한 연속적이고 정연한 가로 조성	건축물 외벽면이 공항대로 46번길 벽면지정선에 1/20이상 접하도록 계획(2층높이에 한함)	2m	

2) 건축물의 형태

▌건축물의 형태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적용구역	비 고
건축물 형태	1층 바닥높이	• 접한 보도 또는 전면공지에서 장애인 등이 진출입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단차없이 조성	구역전체	규제
	개구부	• 폭 20m이상의 가로에 면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노출하여서는 안됨(폭 20m 미만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도 개구부를 전면도로에 면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	구역전체	규제
건축물 배치	건축한계선	• 건축물의 주된 벽면 방향은 전면도로 방향과 일치 •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지상부분이 건축한계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할 수 없음	구역전체	규제
건축물 외관	색채	• 외벽면의 색채는 주변과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원색 사용은 지양	구역전체	권장
	야간조명	• 간선변 10층 이상 건축 시 상향식 야간조명 설치 권장 • 옥외 미술장식품의 야간조명 설치 권장 • 투시형 벽면 설치 시 내·외부 조명을 설치하여 가로분위기를 배려할 수 있도록 함	구역전체	권장

구 분		계획내용	적용구역	비 고
		• 이면부 야간경관의 향상 및 보행활동 활성화 유도 • 대규모 개발지 및 전면도로변, 도로가각부에 대하여 권장		
기타 사항	자연지반 보존	• 지하부는 인공구조물 설치를 지양하고, 저층부의 바닥, 비건폐지 등을 자연재료 또는 투수성 재료로 조성 권장	구역전체	권장
	옥상녹화	• 건축물 이용자의 휴게 및 만남의 장소와 도심지내 생물서식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옥상녹화 설치 권장	구역전체	권장
	녹색주차장 투수성포장	•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열섬효과 방지 등 도시생태순환을 개선하기 위해 잔디 등 투수성재료를 사용한 녹색 주차장 및 대지내 투수성포장 설치 권장	구역전체	권장
	중수도시설 및 빗물관리시설	• 도시내 물순환 재생을 도모하고 수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중수도 및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권장	구역전체	권장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약	•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여 공생할 수 있도록 태양열, 바이오에너지,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과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건축물을 권장	구역전체	권장
	옹벽처리	• 옹벽은 자연석, 조경석 등을 사용, 계단식으로 조성	구역전체	규제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대지 내 공지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등으로 인해 생기는 건축선 후퇴 공간으로 일반대중에게 항상 개방되는 공지 - 차도형 : 4m 이하 내부 도로변 - 보도형 : 차도형 제외 전체(단, 화곡로변 버스베이 등 설치시 차도부속형 가능)	
	공개공지	• 연면적, 대지면적 및 보행결절부 등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시설설치를 권장	6개소
	대지내조경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규정 준용	

나.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계획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 이면도로의 보행자 안전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정	
	공동주차출입구	• 차량통행에 혼잡이 예상되는 간선도로(화곡로)에 보행편의 등을 위해 지정	3개소

다. 관광숙박 특화구역에 관한 계획

1) 관광숙박 특화구역

▌관광숙박 특화구역 지정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적용대상	• GR2 중 6개 필지 : 1,890.8㎡, GR5 : 3,184.2㎡
완화조건	• 모텔 1개소 포함하여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결정(단, 대지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자치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2) 관광숙박 특화구역 밀도 계획

가) 용적률

▌용적률에 관한 결정조서

기준(허용) 용적률	상한용적률		산정방법
	관광숙박시설	공공시설등	
800% (880%) 이하	법적용적률의 30%p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 관광숙박시설 상한용적률=허용용적률+법적용적률X용적률 완화 비율(최대 30%) - (객실비율 70%미만) = 880% + 800% X 24% = 1,072% - (객실비율 80%이상) = 880% + 800% X 30% = 1,120%

※ 상한용적률의 최대한도는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이고 공공시설 등 제공시 및 타법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 가능
※ 조례용적률 + 200%p를 초과하는 경우 市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용적률 완화 세부기준

항 목	처리기준 및 계수			비 고
	0.8	0.9	1.0	
객실비율	70% 미만	-	80% 이상	• 전체 연면적에 대한 객실 사용 바닥면적의 합계로서 호텔 운영을 위한 주차장, 기계실/전기실 지원시설 및 복도, 화장실의 공용면적은 객실 연면적에 포함

※ 최저계수부터 직선보간법으로 부여

나) 건폐율 · 높이 · 개발규모

▌건폐율 · 높이 · 개발규모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건폐율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서 허용하는 범위 이내
높이	• 지구단위계획으로 제한된 높이의 1.3배 이내(기타 법률에 따른 제한 완화 불가)
개발규모	• 특화구역 면적 이내

※ 그 외 세부기준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준수
※ 관련 법률 또는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그에 따름
※ 건폐율, 높이 완화 중복 적용 불가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1	강서지구중심 특별계획구역	화곡동 980-16번지	-	증) 5,594.4	5,594.4	-

▌특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 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결정사유
신설	1	강서지구중심 특별계획구역	화곡동 980-16번지	5,594.4	• 강서구청 이전부지로써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통해 공공 및 주민편의 기능이 강화된 원도심의 생활문화 중심지 육성 도모

나.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구 분	계획내용
면 적	• 5,594.4㎡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1 (세부개발계획 수립시시설 폐지) • 도로(소로 2-4) : 폭원변경(8m→12m)반영
기반시설확보	• 확보비율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결정 • - 공공시설 : 도로확폭(남측 8m→12m) • - 건축물 내 공공시설 설치
권장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관람장(마권장유사시설 제외)·전시장,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노유자시설, 업무시설(단, 오피스텔제외)
불허용도	• 옥외철탑골프연습장, 마권 유사시설과 관람장,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폐차장,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시설, 야영장시설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	• 건폐율 : 30%이하 • 용적률 : 150%이하 • 높 이 : 7층 이하 •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조서(서울시고시 제2016-82호)
건축한계선	• 화곡로, 이면도로변,공항대로 46길변: 3m
기타사항	• 공개공지 : 화곡로변 및 특별계획구역 결절지역인 도로 가각부에 설치하여 열린공간 확보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라 전면공지 및 보도 조성 • 차량출입불허구간 : 화곡로변54길 및 가각부 지정

※ 용도지역 변경여부, 용적률 체계, 건폐율, 높이, 공공기여비율 등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변경 검토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구 분	세부항목	계획기준	인센티브 배분
디자인 혁신	특색있는 건축설계	• 창의적 디자인(구체적인 건축디자인) 제안 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녹지 생태도시	개방형 공간조성	• 구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대지면적의 일정 비율 이상 조성하는 경우 (꼭대기층 개방 등)	-
주차계획	공동주차장	• 구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동주차장을 확보하는 경우(시민에게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포함)	-
건축물 개방	건축물 내 공익시설 설치	•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계획수립 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구 분	세부항목	계획기준	인센티브 배분
국토계획법에 따른 항목	기반시설 제공시	• 구민이 활용 가능한 녹지·도로·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보 시	-
	지하철출입구 등을 건물 또는 대지내 설치 시	• 공공보도의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하철 출입구 또는 환기구를 건물 또는 대지 내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거나 구분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 지하철 출입구 등 연결을 위한 통로를 설치·제공하는 경우(공공도로 상하부 설치)	-
다른 법률에 따른 항목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등 설치	•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말함	-
지능형 건축물	지능형 건축물 인증 시	•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의 인증심사기준에 따름	-
친환경 건축물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 인증 시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서 정한 친환경 건축물 의무인증기준을 초과 획득한 건축물	-

5.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처리 등) 등의 규정에 따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4항 제9호 규정에 의해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경미한 사항의 처리는 자치구청장이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자문) 필요여부를 판단하여 처리

계획내용	비 고
•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
• 공동개발(지정, 권장) 변경에 관한 사항	
• 공개공지, 쌈지형공지, 대지내 통로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	
•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의 변경	
• 수종·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 구역과 연접한 필지의 공동개발(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계획내용	비 고
• 건축선에 접해야 하는 건축물 벽면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변경(법령이나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시행지침의 변경 또는 경미한 변경사항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Ⅳ. 관계도면 : 붙임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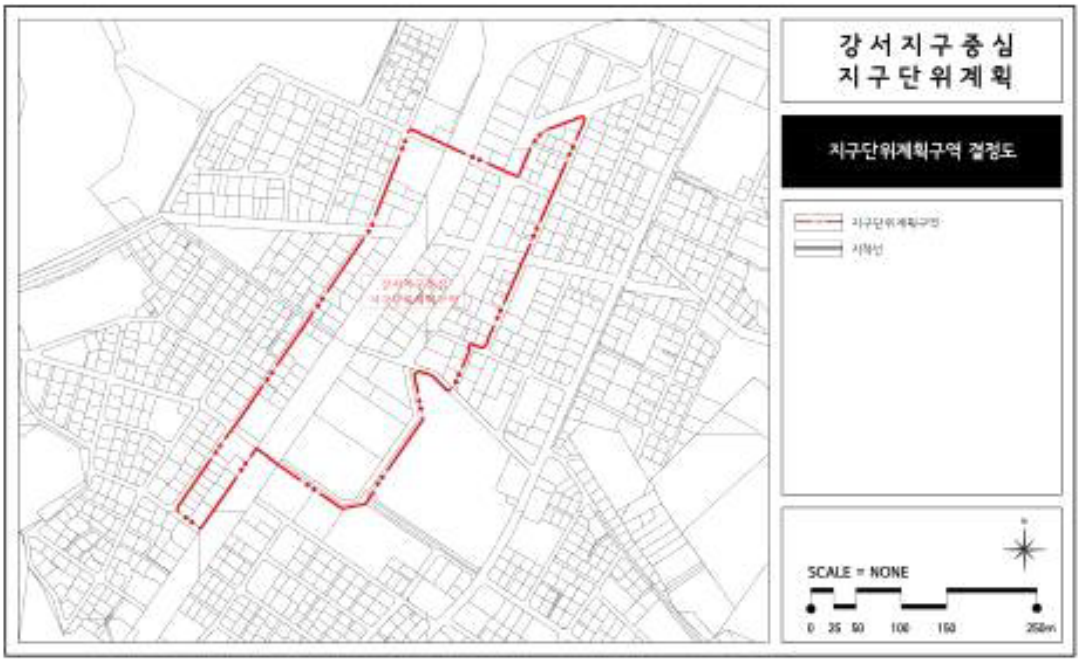
Ⅴ.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과(☎02-2600-1737)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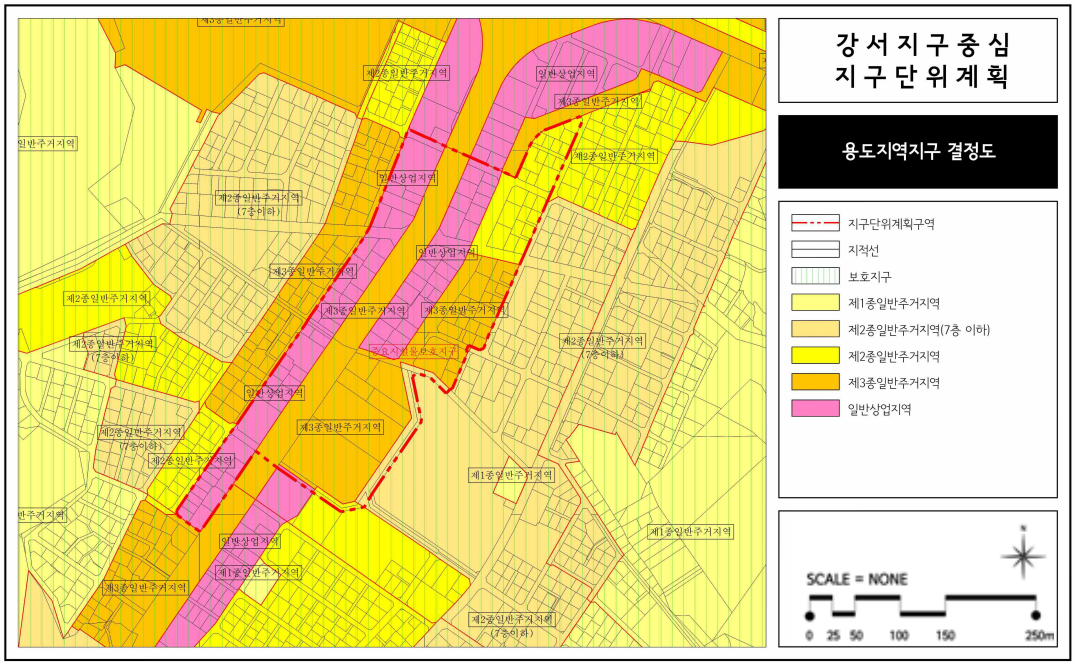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 및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_관계도면>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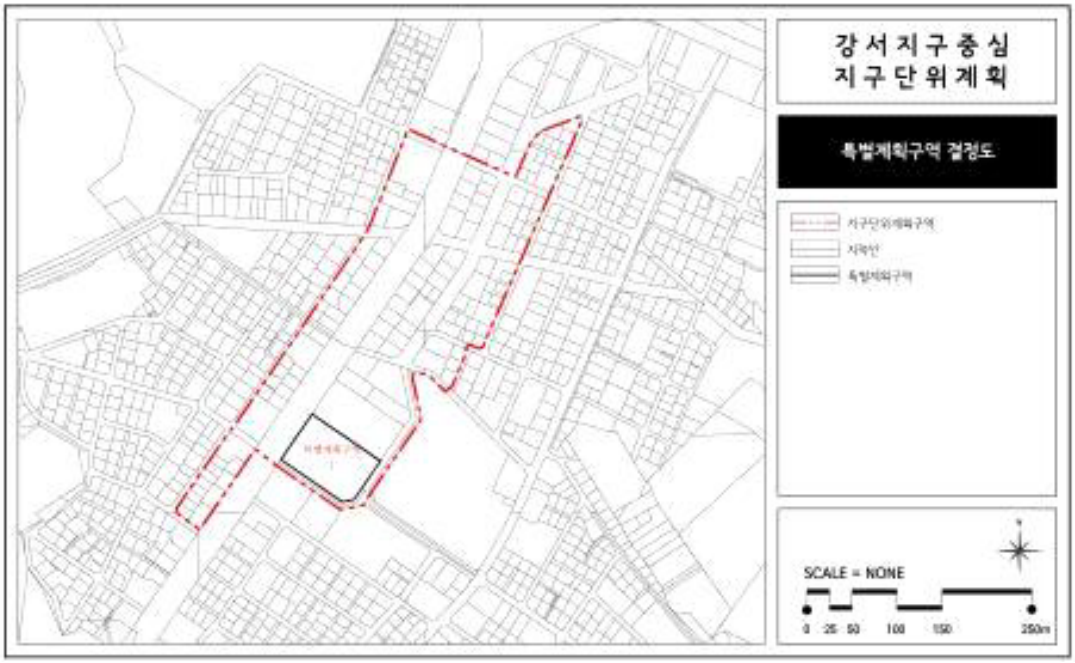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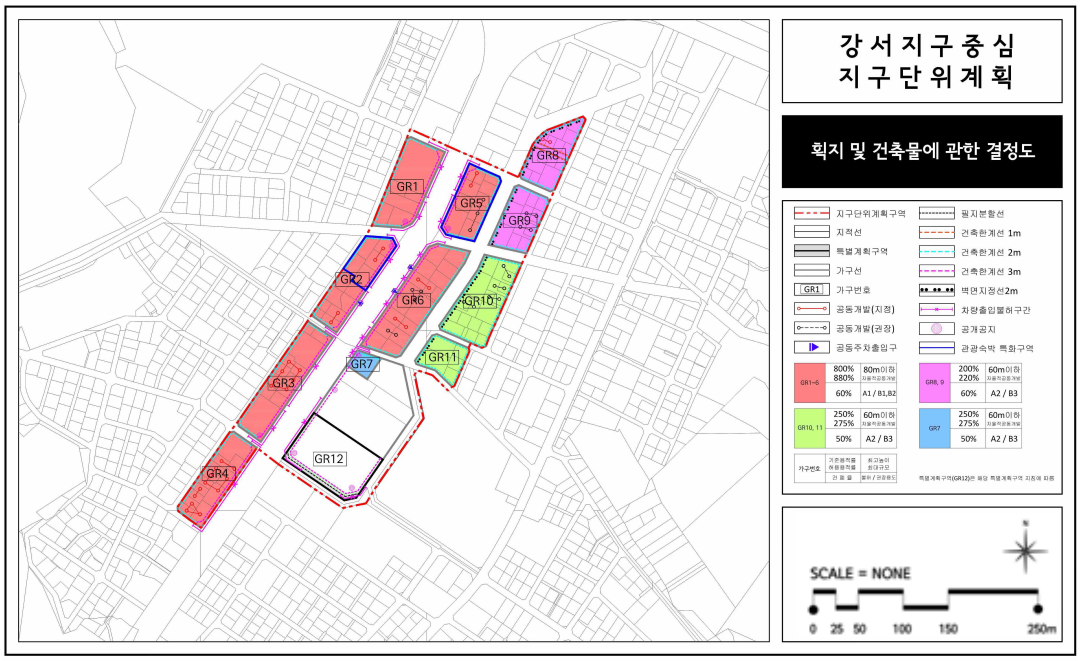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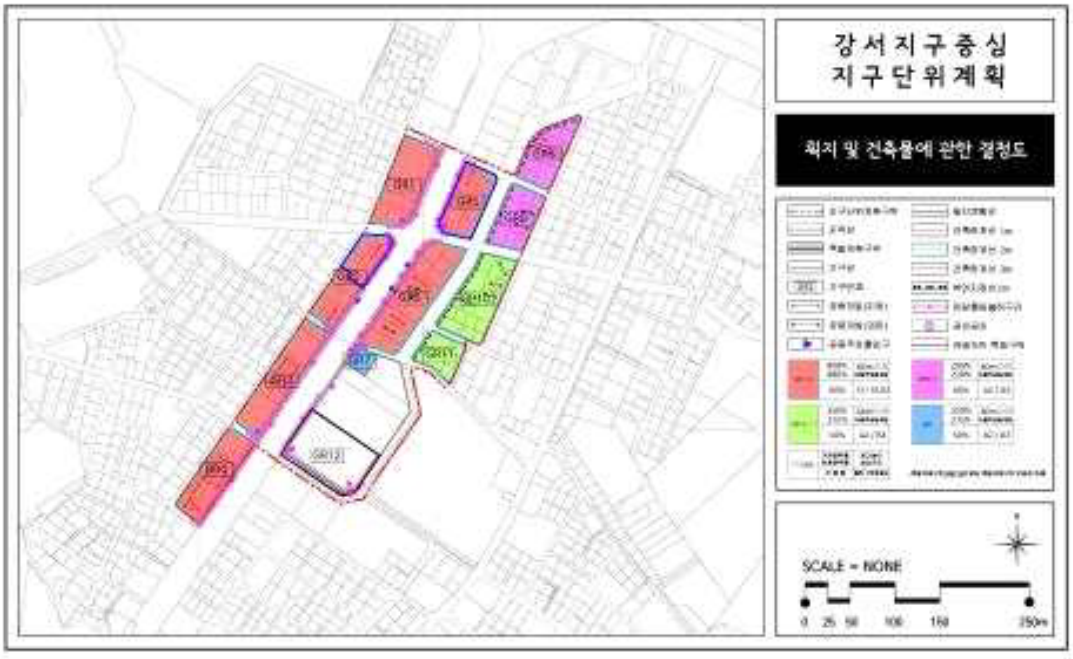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 해당사항 없음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정정 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정정 후





기관의 장
선람

공람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홍보기획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02-2133-6455 문의 : ☎120